

北韓法令集

下

2022. 10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부문

건설감독법

제1장 건설감독법의 기본	34
제2장 건설감독절차와 방법	34
제3장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	37
제4장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8

건설법

제1장 건설법의 기본	40
제2장 건설총계획	41
제3장 건설설계	43
제4장 건설시공	45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47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8

건설설계법

제1장 건설설계법의 기본	52
제2장 건설설계의 작성	53
제3장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56
제4장 건설설계의 과학화	58
제5장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

도시경영법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62
제2장 건물관리	63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64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66
제5장 원림조성	67
제6장 도시미화	68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

도시미화법

제1장 도시미화법의 기본	72
제2장 도시구획정리	73
제3장 건물, 시설물의 미화	74
제4장 도시청소	75
제5장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

량정법

제1장 량정법의 기본	79
제2장 량곡수매	80
제3장 량곡보관	82
제4장 량곡가공	83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84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

사회주의상업법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88
제2장 상품공급 및 판매	89
제3장 수 매	91
제4장 사회급양	93
제5장 편의봉사	94
제6장 상품보관관리	95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96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	97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8

살림집법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102
제2장 살림집의 건설	103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105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106
제5장 살림집의 관리	109
제6장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1

상수도법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114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115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116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118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제1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기본	121
제2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	121
제3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생산과 조건보장	122
제4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공급과 수송, 리용	124
제5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5

시, 군발전법

제1장 시, 군발전법의 기본	127
제2장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	127

제3장 지방경제발전	129
제4장 지방문화발전	136
제5장 시, 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지원	139
원림법	
제1장 원림법의 기본	142
제2장 원림의 조성	143
제3장 원림의 관리	145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6
주민연료법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148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149
제3장 주민연료의 수송	150
제4장 주민연료의 공급	151
제5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2
편의봉사법	
제1장 편의봉사법의 기본	155
제2장 편의봉사망의 조직	156
제3장 편의봉사망의 운영	158
제4장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0
하수도법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162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163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164
제4장 버림물의 처리	165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66
화장법	168

국토·환경보호부문

간석지법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172
제2장 간석지의 조사	173
제3장 간석지의 개간	173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176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7

갑문법

제1장 갑문법의 기본	179
제2장 갑문건설	180
제3장 갑문관리	181
제4장 갑문운영	183
제5장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4

공원, 유원지관리법

제1장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기본	186
제2장 공원, 유원지의 건설	187
제3장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	188
제4장 공원, 유원지의 리용	190
제5장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1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4
-----------------	-----

대기오염방지법

제1장 대기오염방지법의 기본	197
제2장 대기오염의 감시	198
제3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강화	200
제4장 대기환경의 보호	201
제5장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03

대동강오염방지법

제1장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기본	205
제2장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원칙	207
제3장 오염물질의 배출과 처리	208
제4장 대동강의 생태환경보호	210
제5장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13

도로법

제1장 도로법의 기본	217
제2장 도로건설	218
제3장 도로관리	219
제4장 도로리용	221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22

물자원법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224
제2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225
제3장 물자원의 보호	226
제4장 물자원의 리용	227
제5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228

바다오염방지법

제1장 바다오염방지법의 기본	230
제2장 바다오염방지계획과 바다환경조사	231
제3장 육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33
제4장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35
제5장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236
제6장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38

방사성오염방지법

제1장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기본	240
제2장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241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	243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244
제5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245
제6장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47

보통강오염방지법

제1장 보통강오염방지법의 기본	249
제2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조사	250
제3장 보통강오염물질의 처리	252
제4장 보통강의 보호관리	254
제5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	255
제6장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56

산림법

제1장 산림법의 기본	260
제2장 산림조사 및 산림건설계획	261
제3장 산림조성	262
제4장 산림보호	264
제5장 산림자원의 리용	266
제6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68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제1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의 기본	273
제2장 연해 및 강하천에서의 배수송	274
제3장 연해 및 강하천부두와 배길의 관리	278
제4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79

유용동물보호법

281

자연보호구법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285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286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287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288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90

재자원화법

제1장 재자원화법의 기본	292
제2장 재자원화계획	293
제3장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의 관리	294
제4장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97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299
제2장 재해방지	301
제3장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303
제4장 비상재해위기대응	304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307
제6장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과 공급	310
제7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11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제1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기본	313
제2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314
제3장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315
제4장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	316
제5장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	318
제6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19

토지법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321
제2장 토지소유권	322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322
제4장 토지보호	323
제5장 토지건설	326
제6장 토지관리	328

폐기폐설물취급법

제1장 폐기폐설물취급법의 기본	331
제2장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332
제3장 폐기폐설물의 처리	333
제4장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35

하천법

제1장 하천법의 기본	337
제2장 하천의 정리	338
제3장 하천의 보호	339

제4장 하천의 리용	340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41

해상탐색 및 구조법

제1장 해상탐색 및 구조법의 기본	343
제2장 해상탐색 및 구조체계	345
제3장 배보고 및 구조통신	347
제4장 구조조종과 구조	349
제5장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51

환경보호법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353
제2장 환경관리	355
제3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357
제4장 환경오염의 방지	360
제5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64

환경영향평가법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368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369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370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371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2

재정·금융·보험부문

국가예산수입법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374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375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376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383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84

령수증법	386
------------	-----

발권법

제1장 발권법의 기본	391
제2장 화폐제조	391
제3장 화폐발행과 회수	392
제4장 화폐관리	392

보험법

제1장 보험법의 기본	393
제2장 보험계약	394
제3장 인체보험	397
제4장 재산보험	398
제5장 보험회사	400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402

상업은행법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405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406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407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410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411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411

상품식별부호관리법	413
-----------------	-----

외화관리법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417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418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420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20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제1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기본	423
제2장 신고의무기관	425
제3장 금융정보기관	429
제4장 감독통제기관	430
제5장 국제적협력	431
제6장 제재 및 신고	431

재정법

제1장 재정법의 기본	433
제2장 국가예산	434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436
제4장 재정총화	438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39

전자결제법	442
-------------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446
-----------------	-----

중앙은행법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450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451

제3장 중앙은행권	451
제4장 화폐류통조직	452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4

지방예산법

제1장 지방예산법의 기본	456
제2장 지방예산제의 실시	457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458
제4장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의 보장	459
제5장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1

화폐류통법

제1장 화폐류통법의 기본	463
제2장 현금류통	464
제3장 무현금류통	466
제4장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7

회계검증법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469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470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471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4

회계법

제1장 회계법의 기본	476
제2장 회계계산	477
제3장 회계분석	479
제4장 회계검증	479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80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부문

공업도안법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484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485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486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487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89

과학기술법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491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492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494
제4장 과학기술심의회와 보급	495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497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499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500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1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제1장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기본	503
제2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실행	504
제3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	506
제4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의 조건보장	508
제5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9

기상법

제1장 기상법의 기본	511
제2장 기상관측	512
제3장 기상예보	513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514
제5장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15

기상수문법

제1장 기상수문법의 기본	517
제2장 기상수문관측	518
제3장 기상수문예보	519
제4장 기상수문시설의 관리	521
제5장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22

발명법

제1장 발명법의 기본	524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525
제3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	528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530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3

방송법

제1장 방송법의 기본	535
제2장 방송기관	536
제3장 방송일군	537
제4장 방송편집물	538
제5장 방송기술사업	539
제6장 방송사업의 조건보장	540
제7장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1

방송시설법

제1장 방송시설법의 기본	543
제2장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544
제3장 방송시설의 관리운영	545
제4장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47

상표법

제1장 상표법의 기본	549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550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551
제4장 상표권의 보호	553
제5장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55

소프트웨어보호법

제1장 소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557
제2장 소프트웨어의 등록	557
제3장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559
제4장 소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561
제5장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62

소프트웨어산업법

제1장 소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564
제2장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565
제3장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	567
제4장 소프트웨어제품의 유통	568
제5장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569
제6장 소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0

우주개발법	572
-------------	-----

원산지명법

제1장 원산지명법의 기본	575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576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577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578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79

유기산업법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581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582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583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584
제5장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85

유전자전생물안전법

제1장 유전자전생물안전법의 기본	587
제2장 유전자전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588
제3장 유전자전생물의 관리	590
제4장 유전자전생물자료의 보호	593
제5장 유전자전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4

이동통신법

제1장 이동통신법의 기본	596
제2장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597
제3장 이동통신의 봉사 및 리용	599
제4장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1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602
제2장 저작권의 대상	603
제3장 저작권자	604
제4장 저작물의 리용	605
제5장 저작권접권자	607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8

전기통신법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610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611
제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612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4

전자인증법

제1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615
제2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616
제3장 전자인증기관	618
제4장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9

전파관리법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621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622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623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4

체신법

제1장 체신법의 기본	626
제2장 전기통신	627
제3장 우편통신	628
제4장 방송시설운영	630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631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2

출판법

제1장 출판법의 기본	635
제2장 출판기관	636
제3장 출판계획과 계약	636
제4장 출판물원고의 집필과 편집	637
제5장 출판물의 인쇄와 발행	637
제6장 출판물의 보급	638
제7장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9

컴퓨터망관리법

제1장 컴퓨터망관리법의 기본	640
제2장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641
제3장 컴퓨터망의 가입	642
제4장 컴퓨터망정보봉사	643
제5장 컴퓨터망보안	644
제6장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6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제1장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647
제2장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등록	648
제3장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저작권	649
제4장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650
제5장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51

교육·문화·체육부문

고등교육법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654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655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656
제4장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657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658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660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62

교원법

제1장 교원법의 기본	664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665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666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668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669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	670

교육강령집행법

제1장 교육강령집행법의 기본	672
제2장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672
제3장 교육강령의 집행	673
제4장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	676
제5장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676

교육법

제1장 교육법의 기본	678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679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680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681
제5장 교육조건보장	682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4

도서관법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685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686
제3장 출판물의 수집	687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688
제5장 도서관봉사	689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1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693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694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696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9

문화유산보호법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701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702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703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704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706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07

민족유산보호법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710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711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713

제4장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714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	718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9

보통교육법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722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723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724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726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727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8

산업미술법

제1장 산업미술법의 기본	731
제2장 산업미술계획	732
제3장 산업미술의 창작	733
제4장 산업미술의 심의	734
제5장 산업미술의 보급, 리용	735
제6장 산업미술인재양성 및 조건보장	736
제7장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37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739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740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742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743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744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5

원격교육법

제1장 원격교육법의 기본	748
제2장 원격교육체계의 수립	749
제3장 학생모집	749
제4장 원격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	751
제5장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보장	753
제6장 원격교육에 대한 지도통제	754

청년교양보장법

제1장 청년교양보장법의 기본	755
제2장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청년의 임무	756
제3장 청년사업부문의 조건보장	758
제4장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	759
제5장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	760

체육법

제1장 체육법의 기본	763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764
제3장 체육기술	765
제4장 체육과학	767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768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9

체육시설법

제1장 체육시설법의 기본	771
제2장 체육시설의 건설	772
제3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773
제4장 체육시설의 리용	774
제5장 체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5

보건부문

공중위생법	778
-------------	-----

금연법	782
-----------	-----

담배통제법	787
-------------	-----

마약관리법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793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794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797
제4장 마약의 수출입	799
제5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00

비상방역법

제1장 비상방역법의 기본	807
제2장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	808
제3장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수립	810
제4장 전염병위기시 대응	812
제5장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819
부 칙	824

수입물자소독법	825
---------------	-----

식품위생법	828
-------------	-----

약초법

제1장 약초법의 기본	832
제2장 약초의 재배	833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834
제4장 약초의 수매	836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7

의료법

제1장 의료법의 기본	839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840
제3장 환자치료	841
제4장 의료감정	843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44

의약품관리법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846
제2장 의약품생산	847
제3장 의약품검정	848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849
제5장 의약품리용	851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1

인민보건법

제1장 인민보건법의 기본원칙	853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854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855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857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857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858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9

전염병예방법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860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861
제3장 전염경로차단	863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864
제5장 비상방역	865
제6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9

사회복지부문

여성권리보장법

제1장 여성권리보장법의 기본	874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875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876
제4장 노동의 권리	877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878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879
제7장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1

년로자보호법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882
제2장 년로자의 부양	883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884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885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886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86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제1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기본	889
제2장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적혜택	890
제3장 사회보장에 의한 국가적혜택	894
제4장 공로자에 대한 특별우대	900
제5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1

아동권리보장법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905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6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7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09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910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2

육아법

제1장 육아법의 기본	913
제2장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913
제3장 어린이양육조건보장	916
제4장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0

장애자보호법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923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924

제3장 장애자의 교육	925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926
제5장 장애자의 노동	927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8
적십자회법	931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제1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의 기본	935
제2장 배치 및 수속	936
제3장 살림집 건설 및 배정	936
제4장 생활필수품, 식량, 빨감의 보장	937
제5장 치료보장, 사회적 우대	938
제6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9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1장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기본	941
제2장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	942
제3장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옹호	944
제4장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	946
제5장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8

북남경제협력부문

개성공업지구법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954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955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956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959
제5장 분쟁해결	960
부 칙	960
북남경제협력법	961

외교·대외경제부문

가공무역법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966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967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968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969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0
경제개발구법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972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973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974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976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978
제6장 장려 및 특혜	980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981
부 칙	981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982
국제상품전람회법	987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제1장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991
제2장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992
제3장 국제철도화물의 수송자	993
제4장 짐임자	994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996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997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998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1000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1000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001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002
기술수출입법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1004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1005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1005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06
대외결제법	1008
대외경제계약법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1012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013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1014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1015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016

대외경제중재법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1018
제2장 중재합의	1020
제3장 중재부	1021
제4장 중재절차의 진행	1024
제5장 재결문의 작성과 중재절차의 종결	1026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1027
제7장 재결의 집행	1028
대응조치법	1030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1032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1033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1035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1037
제5장 관 세	1039
제6장 통화 및 금융	1040
제7장 장려 및 특혜	1041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1043
부 칙	1043
무역법	
제1장 무역법의 기본	1044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	1045
제3장 무역계획	1048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1049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051
상업회의소법	1053
세관법	
제1장 세관법의 기본	1056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1059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1060
제4장 관세와 선박통세, 세관료금	1064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8
수출품원산지법	1071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제1장 정치	1075
제2장 경제	1076
제3장 문화	1077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078

제5장 기구	1079
제6장 구장, 구기	1083
부 칙	1084
외국인기업법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1085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1086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1087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088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1089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1090
제3장 로동과 휴식	1091
제4장 로동보수	1091
제5장 로동보호	1093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094
제7장 종업원의 해임	1094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1095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기본	1096
제2장 자본의 조성	1097
제3장 재정수입	1098
제4장 비용	1099
제5장 리윤	1100
제6장 재정청산	1100
제7장 감독통제 및 신고	1101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1102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1103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1105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1106
제5장 화 해	1108
제6장 제 재	1109
외국인투자법	111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1115
제2장 기업소득세	1116
제3장 개인소득세	1118
제4장 재산세	1119
제5장 상속세	1120

제6장 거래세	1120
제7장 영업세	1121
제8장 자원세	1122
제9장 도시경영세	1123
제10장 자동차리용세	1123
제11장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24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1126
제2장 창설등록	1127
제3장 주소등록	1127
제4장 세무등록	1128
제5장 세관등록	1129
제6장 제재 및 신소	1130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기본	1131
제2장 회계검증기관의 설립과 운영	1132
제3장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1133
제4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1134
제5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1137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1138
제2장 회계계산	1139
제3장 회계검증	1144
제4장 감독통제 및 신소	1145
외국투자은행법	
제1장 외국인투자은행법의 기본	1147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영업	1148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1150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해산	1151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1153
조약법	1154
종합무역장관리법	
제1장 종합무역장관리법의 기본	1158
제2장 종합무역장의 건설	1159
제3장 종합무역장의 관리	1160
제4장 종합무역장의 운영	1161
제5장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2

종합설비수입법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1163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1164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1166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1167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8

출입국법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1170
제2장 국민의 출입국	1171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1172
제4장 통행검사	1174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1176
제6장 제재	1177

토지임대법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1179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1180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1181
제4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1183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1184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184

합영법

제1장 합영법의 기본	1186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1187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1188
제4장 합영 기업의 결산과 분배	1190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191

합작법	1193
-----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1197
제2장 경제지대의 개발	1198
제3장 경제지대의 관리	1200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1202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1203
제6장 장려 및 특혜	1205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1206
부 칙	1207

헌 법

사회주의헌법	32
--------------	----

주권부문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80
국기법	92
국장법	101
국적법	105
지방주권기관법	108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114
혁명사적사업법	117

행정부문

공무원자격판정법	126
공인법	130
금수산태양궁전법	134
기구법	140
기밀법	146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151
문헌법	159
법제정법	163
신소청원법	174
주민행정법	180
평양시관리법	185

행정검열법	193
행정구역법	198

형·민사부문

가족법	204
구타행위방지법	211
대외민사관계법	215
마약범죄방지법	224
민법	230
민사소송법	264
상속법	304
세외부담방지법	312
손해보상법	317
해사소송관계법	325
형민사감정법	335
형법	339
형법부칙(일반범죄)	381
형사소송법	383

재판·인민보안부문

검찰감시법	440
공민등록법	446
공증법	449
군중신고법	455
도로교통법	461
독성물질취급법	474
변호사법	482

소방법	487
인민보안단속법	496
인민보안법	504
재판소구성법	509
정보보안법	512
중재법	521
총기류관리법	533
판결, 판정 집행법	539
폭발물처리법	546
행정처벌법	550
화약류취급법	593

계획·노동·재산관리부문

가격법	602
국토계획법	606
기업소법	612
도시계획법	622
노동보호법	629
노동정량법	641
물자소비기준법	646
부동산관리법	653
사회주의노동법	660
사회주의재산관리법	670
설비관리법	677
인민경제계획법	685
자재관리법	696
재산집행법	702
통계법	712

에너지·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부문

광천법	718
귀금속관리법	724
금속공업법	728
기계공업법	736
내화물관리법	745
석탄법	752
에너지기관리법	766
연유법	773
원자력법	781
유색금속법	788
재생에너지법	795
전력법	802
주물품협동생산법	818
중소탄광법	822
중소형발전소법	831
지하자원법	838
화학공업법	849
흑색금속법	858

교통운수부문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868
무역집배송선중개법	874
민용항공법	879
배길표식법	894
배등록법	899
배안전법	905
선원법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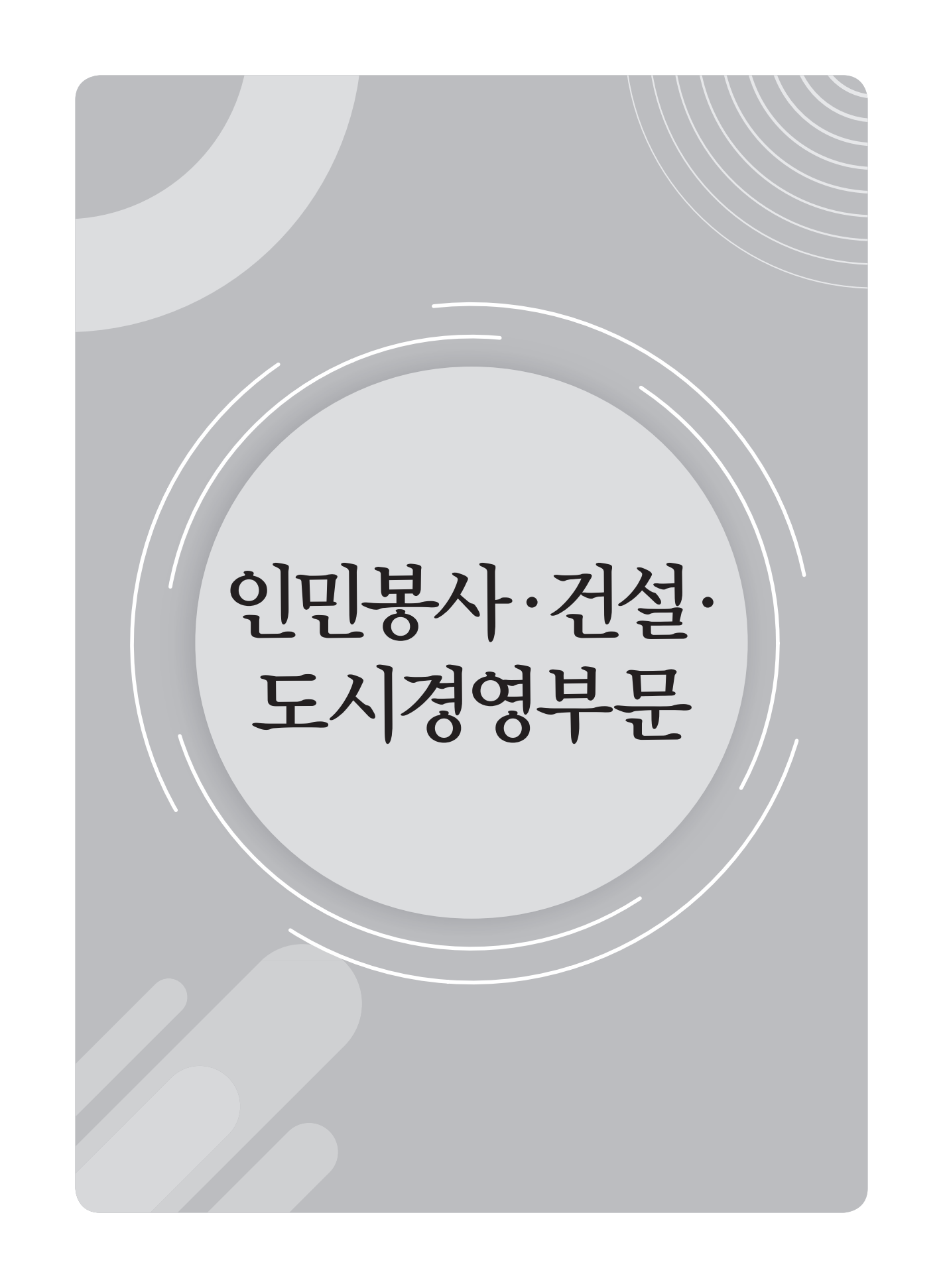
수로법	923
자동차운수법	931
지하철도법	938
철도법	946
철도차량법	959
철도화물수송법	966
항만법	974
항무감독법	985
해사감독법	996
해상집수송법	1017
해운법	1029

농업·임업·수산부문

과수법	1046
농약법	1052
농업법	1058
농작물종자관리법	1070
농장법	1077
림업법	1089
부림소관리법	1096
소금법	1104
수산법	1113
수의방역법	1120
수의약품관리법	1128
양어법	1133
인삼법	1140
작물유전자원관리법	1148
잠업법	1154
축산법	1162

계량·규격·품질감독부문

계량법	1172
국경동식물검역법	1182
국경위생검역법	1188
국경통과지점관리법	1193
규격법	1201
무역화물검수법	1207
상품식별부호법	1211
수출입상품검사법	1216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1221
제품생산허가법	1227
품질감독법	1233
허풍방지법	1241



인민봉사·건설·
도시경영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감독법

주체103(2014)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호로 채택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8호로 수정보충

제1장 건설감독법의 기본

제1조 (건설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감독법은 건설감독절차와 방법,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며 위법건설행위를 없애고 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건설감독체계의 수립원칙)

건설감독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은 건설에서 위법행위를 미리 막고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통일적인 건설감독통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건설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제3조 (건설감독결과의 처리원칙)

국가는 건설감독결과의 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건설감독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국가는 건설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건설감독은 해당 자격을 소유하고 건설감독권한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제5조 (다른 법의 적용)

건설감독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건설감독절차와 방법

제6조 (건설감독의 대상과 방법)

건설감독은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개건, 복구, 대보수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 정상감독과 집중감독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 (건설감독원의 파견)

건설감독기관은 감독관할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대상에 건설감독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중요건설대상에 대한 건설감독원의 파견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8조 (검사원배치, 질검사위원회조직운영)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능력있는 검사원들을 건설현장에 배치하며 해당 일군들로 질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시공의 질을 공정별로 담보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 시공주검사원들의 배치와 활동정형, 질검사위원회의 조직운영정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장의 전개, 관리, 지대정리)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건설장을 전개하고 건설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 위생적인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며 주변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부지안의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의 철거정형, 공사용가설 건물과 시설물, 울타리의 설치정형, 로동안전 및 환경보호대책정형, 공사가 끝난후 지대정리 정형 같은것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정별심의)

건설감독기관은 건설대상의 규모와 특성, 공사단계에 맞게 공정별심의체계를 세우고 비준된 배치계획안과 설계안, 설계공학적으로 요구에 맞게 기술설계를 작성한 정형, 국내산마감건축재를 반영한 정형, 공법에 맞는 자재, 설비, 휘틀, 기공구의 준비정형 같은 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공정별심의는 해당 공정을 시공하기전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감독, 설계, 품질감독,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일군들을 망라하여 한다.
공정별심의를 받지 않은 공정은 시공할수 없으며 공정검사와 공사실적확인을 할수 없다.

제11조 (건설시공에서 자재와 설비, 장치물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자재와 설비, 장치물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검사와 검수를 정확히 하며 합격품만을 건설시공에 리용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시공에 쓰이는 세멘트, 강재, 골재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 장치물의 규격이 설계와 시공기준에 맞는가를 검사하고 합격된것만을 리용하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정검사방법과 평가)

공정검사는 시공주검사원과 건설주검사원, 질검사위원회가 검사확인한 공정에 대하여 건설감독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감독원은 공정별심의에서 결정된 대로 시공하였는가, 설계와 시공기준, 공법의 요구를 지켰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건설공정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공구를 리용하여 검사지표들이 정해진 기준에 도달되었는가를 과학기술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었을 경우 공정검사합격증을 발급하며 불합격된 공정에 대하여서는 퇴치할 내용과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제13조 (공사실적확인, 자재소비정형감독, 질등급평가)

건설감독기관은 공정검사결과에 따라 공사실적확인을 해주며 자재소비정형을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실적확인에는 공정검사합격증이 있는 공정에 한하여서만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해당 공사 또는 구간에 포함된 모든 공정들이 검사에서 합격된 경우 공사별 질등급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중간검사)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시공단계 또는 건설주, 시공주가 교체되거나 일정한 기간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 중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중간검사를 바로하도록 감독하며 공사도중에 건설대상의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검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중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간검사에서는 공정검사와 질등급평가결과,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재확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15조 (종합검사)

건설감독기관은 종합검사에 참가하여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가 종합검사를 바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을 할수 없다.

제16조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설물의 질과 운영준비상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누구도 리용할수 없다.

준공검사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7조 (건설물의 질보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의 질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18조 (위법건설행위에 대한 감독)

건설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위법건설행위를 감독한다.

1. 승인된 건설총계획, 건설명세서, 건설설계, 건설계획, 건설허가문건이 없이 건설하는 행위
2. 승인된 건설총계획, 건설명세서, 건설설계와 어긋나게 건설하는 행위
3. 설계와 시공을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행위
4. 건설계획, 건설허가와 어긋나게 제멋대로 시공주를 정하거나 개인에게 청부하여 건설하는 행위
5.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있던 건설물을 철거시키거나 건설장을 전개하는 행위
6.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을 조업, 리용하게 하였거나 조업, 리용하는 행위
7. 대상건설이 끝난후 공사용가설건물을 제때에 철거하지 않고 리용하거나 파는 행위
8. 그밖에 법적요구를 위반하고 건설하는 행위

제19조 (건설감독을 받을 의무)

건설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감독통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의 감독통제를 받지 않고는 건설을 할수 없으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위법건설행위를 묵인조장시키거나 건설감독통제에 불응 또는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

제20조 (범위반조서의 작성)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감독과정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위법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조서나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조서, 확인서에는 위법사실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21조 (결함퇴치)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총계획과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준공검사과정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것을 퇴치할 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하고 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 (작업의 중지)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과정에 결함이 나타나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위법자료의 제기)

건설감독일군은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주려 할 경우 위법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법자료에는 범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법사실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힌다.

제24조 (위법자료의 심의결정)

위법자료에 대한 심의결정은 해당 기관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다.

해당 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일안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위법자료의 이관)

건설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권한밖의 처벌을 주어야 하겠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자료를 권한있는 행정처벌기관 또는 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위법자료의 이관은 위법자료이관결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는 범위반조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26조 (신소와 그 처리)

건설감독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정확히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7조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건설감독지도기관과 지방인민 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해당 건설감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건설감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감독사업조건보장)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감독사업조건을 보장할 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설계문건을 비롯하여 건설감독에 필요한 자료와 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건설감독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0조 (손해보상)

이 법을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1조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주체82(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0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1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6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7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3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주체106(2017)년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18호로 수정보충
주체106(2017)년	8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73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1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57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2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8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6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5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7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11호로 수정보충

제1장 건설법의 기본

제1조 (건설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총계획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 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건설분야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건설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건설, 항만건설, 관개 건설같은데 큰 힘을 넣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살림집, 시설물을 수많이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하여주고 있다.

국가는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생산적건설과 비생산적건설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도시살림집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3조 (건설의 계획화원칙)

건설을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제4조 (건설의 주체성원칙)

건설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게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 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옹계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륭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도록 한다.

제5조 (건설의 집중화, 효과성제고원칙)

국가는 건설에서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과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건설물의 조업기일을 보장하고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6조 (건설의 전문화, 공업화, 현대화원칙)

국가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건설의 전문화와 공업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제7조 (건설의 정규화, 정상화원칙)

국가는 건설을 정규직, 정상화하여 건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건설물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건설비를 낮추도록 한다.

제8조 (건설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건설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건설공법, 록색건축, 지능건축 같은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설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9조 (건설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건설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건설총계획

제10조 (건설총계획과 그 작성기초)

건설총계획은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건설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세운다.

제11조 (건설총계획의 작성원칙)

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영원히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력사유적, 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방향과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장, 기업소를 원료, 연료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5. 도시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며 수도를 비롯한 큰 도시주변에는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금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 들여야 한다.
7.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8. 산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결합하며 립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조선식건물보존구획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우수망, 상하수도망, 난방망, 가스공급망, 송배전망, 통신망같은 하부구조건설을 앞세우며 현대적인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형식을 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야지대에 건설하는 건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하는것을 장려한다.
13. 건물배치를 울타리식으로 하지 말며 거리쪽에서 건물과 건물사이로 건물뒤쪽이 환히 들여다보일수 있게 하여 도시형성상 립체감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물사이에 록지구획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공해를 막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건축물을 다기능화하여 리용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 건물의 면적과 건물사이의 격리거리를 그 사명과 건설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과 건물의 특성에 따르는 위생학적조건, 방화안전조건, 재해방지조건, 경영조건같은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부지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과학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7.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며 태풍, 큰물, 사태, 해일, 지진같은 자연피해를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국방상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12조 (건설총계획의 분류)

건설총계획은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으로 나누어 세운다.

제13조 (건설총계획의 승인)

건설총계획은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승인없이 건설총계획을 변경할수 없다.

제14조 (건설순위의 결정)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순위를 정하고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5조 (건설위치지정서, 건설명시서의 발급)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명시서발급신청을 하기전에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과 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며 대상에 따라 건설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사선안전검사, 수질검사, 지진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위치지정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건설명시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발급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이 발급한다.

제16조 (토지의 리용허가)

승인된 건설총계획령역안에 있는 토지는 건설부지로 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순위에 맞게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토지리용허가를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에 근거하여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설계

제17조 (설계의 선행)

건설설계를 잘하는 것은 전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의 3자합의에 기초하여 설계를 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설계력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설계를 건설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한다.

제18조 (설계계약)

건설설계는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9조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의 보장)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설계기관, 기업소에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과제서는 정해진 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해당 기술과제서심사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자원개발대상,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의 기술과제서는 대상에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과학기술심의를 받은 다음 해당 기술과제서심사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기술과제서의 작성 및 심사승인기준과 절차,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0조 (설계작성단계)

건설설계는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에 준하여 과제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 앞서 측량 및 지질조사를 하며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정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고 특색있게 창조적으로 대상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21조 (설계의 질보장)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구현하고 설계를 건설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을 살릴수 있게 다양한 형식으로 하며 건설자금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도 미확성과 편리성을 보장할수 있게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물의 구조적안정성과 상수도의 압력, 건축조명을 기준대로 보장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축음향, 전기, 난방같은 모든 대상의 설계에서 기술공학적으로요구와 정해진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기술공학적으로요구와 기준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2조 (설계작성에서 대상책임제)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서 대상책임제를 실시하며 설계의 실현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조 (설계안의 검토와 합의)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안을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안을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합의하여야하여야 한다.

제24조 (설계합평회)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안을 설계합평회의 의견을 받아 완성하여야 한다.

설계합평회에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와 해당 부문 일군이 참가한다.

제25조 (설계의 심의, 승인)

건설설계는 설계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설계가 국가의 건설정책과 최신건축기술, 지방과 대상의 특성, 정해진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가, 면적리용률과 부지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실리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었는가, 설계, 시공, 운영단위의 3자합의에 준하여 설계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건설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건설설계를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시공과정에 건설설계를 고치려 할 경우에는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에 대하여서는 이 법 제 19조에 따라 기술과제서심사도 다시 받는다.

제26조 (대외건설대상설계와 수출설계, 수입설계)

대외건설대상설계와 수출설계, 수입설계의 승인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27조 (설계총화)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완공된 건설물에 대한 설계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상 결함과 퇴치정형, 공사조건에 따르는 설계변경정형, 설계예산집행정형 같은것을 검토총화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시공

제28조 (시공주기관, 기업소의 조직)

건설시공은 건설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건설의 기본공정이다.

국가는 건설부문별로 시공주기관, 기업소를 조직하고 시공에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29조 (대상건설계획의 맞물림)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상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았거나 건설자재를 50%이상 준비하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수 없다.

제30조 (건설허가)

건설허가는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허가는 내각이 한다.

건설허가기관은 대토복구정형과 건설계획맞물림정형, 건설대상의 하부구조능력, 시공주기

관, 기업소, 단체의 시공능력과 시공조건, 건축물의 리용률, 건설로 인하여 환경에 주는 영향 같은것을 정확히 검토, 확인하고 그것이 기준대로 보장된 조건에서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설을 시작할수 없다.

제31조 (건설부지의 정리)

지방인민위원회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허가를 받은 부지에 있는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 이설하며 도로, 상하수도같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시공계약)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시공조직과 지도)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조직과 지도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시공에 앞서 건설자들이 리용할 침실과 식당, 위생실, 세목장같은 가설건물을 위생방역 상요구에 맞게 꾸리고 건설자들의 숙식조건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2. 시공을 설계와 기술규정, 공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3. 능률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를 갖추고 현대적인 건설공법과 질 좋은 건설재료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건설물의 질과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시공과 함께 지대정리를 따라세우고 나무심기와 록지조성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여 교통안전과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시공과정에 주변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7. 건설자들이 생활을 제정된 질서와 규범대로, 문화위생적으로 하며 생활과정에 나오는 오수, 오물을 망탕 버리지 말고 정화하여 내보내거나 정해진 장소에 보내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이 끝난 다음 가설건물을 제때에 철거하며 주변의 어지러운 흔적을 말끔히 없애야 한다.

제34조 (공정별심의, 시공의 질검사, 공사실적확인)

건설감독기관은 건설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공정별심의체계를 세우고 공정시공에 앞서 비준된 배치계획안, 설계안과 설계공학적으로 요구에 맞게 기술설계를 작성한 정형, 공법에 맞는 자재와 설비, 휘틀, 기공구를 준비한 정형같은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건설감독기관은 건설현장에 검사원과 감독원을 두고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같은 시공의 모든 질검사단계에서 건설물이 승인된 설계와 기술규정, 건설공법의 요구대로 시공되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질검사에서 합격된 공정에 대하여서만 공사실적확인을 해주며 건설용자재,

물자소비정형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공정별심의를 받지 않은 공정에 대하여서는 질검사와 공사실적확인을 할수 없으며 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계속할수 없다.

제35조 (건설자재, 대상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이 보장된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를 시공에 앞서 워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36조 (건설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골재 및 부재생산기지, 건설기계의 생산, 수리기지를 꾸려 골재와 부재생산을 늘이고 건설작업을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대적건설기계설비와 기공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제37조 (준공검사의 기본요구)

준공검사는 완공된 건설물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건설물의 준공검사를 건설현장에서 엄격히 진행하도록 한다.

제38조 (준공검사방법)

건설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는 건설대상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또는 단계별로 할수 있다.

제39조 (준공검사신청)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시공과 설비의 무부하시운전을 끝내고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건설물의 완공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부하시운전과 준공검사준비정형을 확인하고 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에 대하여서는 부하시운전단계에서 기술과제서의 요구대로 시공되었는가에 대한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검토, 확인을 받은 조건에서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40조 (준공검사위원회)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해당 전문부문 일군으로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준공검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검사한다.

1. 건설과 관련한 승인문건과 기술문건, 검사문건같은것의 구비정형
2. 승인된 건설설계와 기술규정, 공법의 요구를 지킨 정형
3. 건설물의 구조적안전성, 미확성, 환경지표, 설비의 능력과 믿음성, 안전성같은 질적지표들의 보장정형
4. 건설설계예산집행정형과 자재, 물자소비정형
5. 건설물의 운영준비정형

제41조 (준공검사결과의 평가)

준공검사위원회는 준공검사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 대상설비생산기관, 기업소는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안에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42조 (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받은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을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조업 또는 리용할수 없다.

제43조 (건설물의 질보증)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4조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국가의 건설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개선하며 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제45조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대상건설의 착공정형과 건설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미완성건설을 줄이며 건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한다.

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 (협동시공)

국가계획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요건설대상의 협동시공분담을 정확히 하고 시공에 대한 지휘를 잘하며 협동시공규률을 지켜야 한다.

제47조 (현물평가제)

재정은행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의 질을 높이고 로력, 자재, 자금을 절약하며 건설기간을 줄일수 있도록 현물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건설과학연구사업)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건설구조도식과 과학적인 계산방법, 현대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연구, 질 좋고 다양한 건설재료와 능률적인 건설설비, 기공구의 연구개발, 도입을 비롯한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야 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건설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9조 (건설기준의 제정, 적용)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축발전의 추세, 앞선 건설과학기술의 성과와 건설경험에 기초하여 건설기준을 바로정하고 그것을 건설설계와 시공에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승인없이 진행되는 비법적인 건설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벌금, 변상,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

기술과제서와 건설명시서, 설계의 작성과 심의, 시공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처벌 또는 변상처벌을 준다.

건설기술자격을 소유한자가 해당 자격을 리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제52조 (공사중지, 건설물몰수, 건설물철거, 문건회수, 권한박탈, 자금공급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설물을 몰수 또는 철거시키거나 건설문건을 회수하거나 건설주, 시공주권한을 박탈하거나 건설자금공급을 중지한다.

1. 국가의 승인없이 건설하였을 경우
2. 건설총계획을 위반하고 건설하였을 경우

3. 건물의 면적을 정해진 기준보다 크게 하였을 경우
4.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을 질적으로 하지 않아 설계의 요구와 구조적안전성을 보장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5. 공정검사를 받지 않거나 공정검사에서 불합격된 내용을 퇴치하지 않고 건설하였을 경우
6. 전문건설기업소가 아닌 단위나 개인에게 청부하여 건설하였을 경우
7. 건설허가를 받고 1년이상 착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여러해동안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인민생활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53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국가의 승인없이 건설하였거나 건설총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변경시켜 국가의 건설정책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건설위치지정서, 건설명시서의 발급 및 토지리용허가질서를 어겼을 경우
3. 기술과제서의 작성, 심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를 망탕 변경시켜 설계와 공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로력, 자재, 자금을 낭비하였을 경우
4. 설계를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와 맞지 않게 작성하였거나 설계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설계의 작성 및 심의, 승인질서를 어겨 건설에 지장을 주었거나 로력, 자재, 자금을 낭비하였을 경우
5. 정해진 합의와 환경영향평가, 방사선안전검사, 수질검사, 지진안전성평가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대상건설계획을 제대로 맞물려주지 않았거나 건설허가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건설계획,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하였을 경우
7. 시공계약을 정해진대로 맺지 않았거나 전문건설기업소가 아닌 단위나 개인에게 청부하여 건설하였을 경우
8.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하였거나 건설명시서와 설계, 기술규정, 공법의 요구에 어긋나게 시공하였거나 공정별심의와 질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하였거나 설계와 공법에 맞지 않는 자재, 질이 보장되지 않는 자재로 시공하여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로력, 자재, 자금을 낭비하였을 경우
9. 착공하여놓고도 여러해동안 건설을 진행하지 않아 국가의 건설정책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시공에 앞서 건설자들에게 침실과 식당, 위생실, 세목장같은 숙식조건과 생활조건을 정해진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그들이 생활을 비문화적, 비위생적으로 하게 하였거나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시공과정에 주변환경을 파괴 또는 오염시켰을 경우

11. 시공의 질검사와 준공검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2. 질검사와 준공검사, 질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을 정해진 기간안에 퇴치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을 조업, 리용하게 하였거나 조업, 리용, 밀매하였을 경우
13. 부당한 조건을 내대면서 건설허가를 받은 대상공사를 가로막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아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공사가 끝난 후 가설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이관, 인수하여 리용하거나 밀매하였을 경우
15. 건설용자재와 물자를 비법처리하였거나 파손, 부패변질, 류용, 류실, 분실하였을 경우
16. 공사를 중지시켰으나 계속하였을 경우

앞항 1~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설계법

주체110(202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6호로 채택

제1장 건설설계법의 기본

제1조 (건설설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설계법은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건설설계부문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건설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건설설계의 기본원칙)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옹계 결합시키는것은 건설설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설계에서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의 원칙을 구현하며 건설물을 대상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비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게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제3조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

건축을 정치화, 정책화하는것은 주체건축의 일관한 방침이다.

국가는 건축에서 우리 사상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 우리 당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직관적으로 구현되도록 한다.

제4조 (실리보장의 원칙)

국가는 모든 건설물을 건설자금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미학성과 편리성이 보장되게 설계하여 건설에서 최소지출, 최대실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설계의 선행원칙)

설계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건설에서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국가는 설계력량을 강화하고 설계계획화와 설계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설계를 시공에 1년이상 앞세우도록 한다.

제6조 (건설설계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선진건축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계방법을 과학화하며 설계수단을 현대화하여 건설설계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건설설계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건설설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8조 (다른 법규의 적용)

건설설계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건설법과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건설설계의 작성

제9조 (건설설계의 구분과 설계단계)

건설설계는 건설총계획, 건설물설계, 시공조직설계로 구분한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건설총계획은 총계획, 세부계획, 지구 및 구획계획으로, 건설물설계는 과제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로, 시공조직설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0조 (설계작성기관)

건설총계획, 과제설계, 기술설계는 해당 부문의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작업설계는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작성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도 작성할수 있다.

시공조직설계는 전문시공조직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건설대상의 규모가 작고 시공이 표준화되어있는 대상인 경우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도 작성할수 있다.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의 부문별설계작성자격은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정해준다.

제11조 (설계의 주문)

대상건설을 진행하려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부문의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를 선정하여 설계작성을 주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주문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상급기관을 통하여 설계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설계작성을 주문받은 설계기관, 기업소는 주문내용을 료해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일안에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설계의 계획화)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설계를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과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에 따라 대상건설계획에 앞서 위 건설주와 설계기관, 기업소에 설계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설계계약)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설계계약서에는 설계단계와 설계기간, 설계조건보장, 설계가격 같은것을 밝힌다.
설계계약을 맺지 않고는 건설설계를 작성할수 없다.

제14조 (설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보장)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단계에 따라 승인된 기술과제서와 건설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과제서에는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생산력배치, 과학기술적요구, 투자의 경제적효과성, 건설자재보장조건 같은 기술경제적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설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작성과 관련하여 설계기관, 기업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생활감정, 우수한 문화와 풍습, 우리 나라의 자연 지리적 및 기후적조건, 구체적현실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민족성과 현대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들에 구호나 표어를 게시하여 건축물에 정치사상성이 직관적으로 구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건설물의 사명과 용도에 맞게 실용적으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보장할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5. 조화성과 통일성, 비반복성, 조형예술성을 보장하며 건설물의 특성과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게 미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평탄한 지대에는 규모있게 구획을 갈라놓고 건물을 배치하며 기복이 있고 평탄하지 못한 지형에는 자연기복을 리용하여 건물을 배치할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7. 살림집구획안의 도로를 차들이 어길수 있게 2선으로 내고 그 옆에 록지와 가로수, 가로등, 걸음길, 자전거길을 배치하며 그 다음에 건물을 앉히는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건설지역의 수림화와 원림화, 건물의 록화를 실현하며 건설물을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친환경적으로, 록색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측량 및 지질조사자료, 지진평가자료, 기상관측자료 같은 과학적인 측정자료에 기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건설물의 구조적안전성을 보장하며 태풍과 큰물, 사태, 해일, 지진, 폭설, 벼락, 화재 같은것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설계하여야 한다.
11. 생산기술공정과 상하수도, 전기, 체신, 랭난방, 공기조화, 조명, 음향, 원림, 가구 같은 모든 부문을 과학기술적요구, 설계공학적요구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2. 부지리용률과 건축면적리용률을 높이고 건설자금과 자재를 최대한 절약할수 있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며 최소지출, 최대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13. 건식공법을 비롯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적극 받아들일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14. 설계와 관련한 기준, 승인된 기술과제서와 건설명시서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제16조 (측량 및 지질조사)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 앞서 건설부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량 및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설계지도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 및 지질조사는 단계별조사과제에 따라 건설총계획, 과제설계, 기술설계단계에서 한다. 승인된 측량 및 지질조사자료가 없이는 건설설계를 작성할수 없다.

제17조 (건설총계획)

건설총계획은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으로 구분하며 대상에 따라 국토건설총계획 또는 도시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작성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문에 따라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총계획을 주문할 때 설계기관, 기업소에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부지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계안작성)

설계기관, 기업소는 해당 비상설건설심의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안은 건설현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사와 과학적인 측량 및 지질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과 같은 생산기술공정을 갖춘 건설대상은 공정설계를 작성하여 해당 설계지도기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한 다음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기념비적건설대상은 설계현상모집사업을 조직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정한다.

제19조 (과제설계)

규모가 큰 중요건설대상과 새로운 기술공정을 받아들이는 건설대상, 특수한 구조형식이나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이는 건설대상은 과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과제설계를 작성한 다음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제설계에는 2개이상의 설계방안을 반영한 설계도면과 설계예산서, 기술경제적지수분석표, 경제적효과성분석표, 설명서, 계산서, 연구보고서, 설계경력서가 속한다.

제20조 (기술설계)

모든 건설대상은 기술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순위에 따라 과제설계 또는 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대상별로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설계에는 설계도면과 설계예산서, 기술경제적지수분석표, 설명서, 계산서, 연구보고서, 설계경력서, 시운전지도서가 속한다.

제21조 (작업설계)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에 앞서 승인된 기술설계에 준하여 구체적인 시공조건에 맞게 건설물의 세부적요소와 작업내용을 밝힌 작업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투자규모가 작고 시공방법이 표준화되어있는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작업설계를 작성하지 않을수 있다.

제22조 (설계합평회)

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를 설계합평회의 의견을 받아 완성하여야 한다.

설계합평회에는 설계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와 해당 부문 일군을 비롯하여 필요한 성원들이 참가한다.

제23조 (설계합의)

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설계를 합의해주어야 한다.

제3장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제24조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기관)

건설설계는 설계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1. 시, 군건설총계획과 중요대상의 건설총계획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내각이 승인하며 그밖의 건설총계획과 세부계획, 지구 및 구획계획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한다.
2. 설계안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심의한다.
3. 과제설계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 다음 내각이 심의, 승인한다.
4. 기술설계는 규모와 대상에 따라 도(직할시)설계지도기관, 중앙설계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설계로는 건설을 할수 없다.

제25조 (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건설설계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설계일군과 과학자, 기술자,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 같은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설총계획과 설계안, 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심의한다.

제26조 (설계의 심의방법)

설계심의를 부문별, 기술전문별로 해당 내용을 검토한 다음 제기된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설계의 수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다.

제27조 (설계의 승인)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최종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의 건설정책과 설계기준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질과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은 설계는 승인할수 없다.

제28조 (승인된 설계의 시달)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승인된 설계를 설계기관, 기업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심의에서 의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의견을 붙인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심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설계를 수정하여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29조 (부결된 설계문건의 반송)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설계를 부결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설계기관, 기업소에 설계문건을 돌려보내야 한다.

설계문건을 돌려받은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를 수정하여 다시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0조 (설계의 심의, 승인기간)

설계심의, 승인기관은 설계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설계문건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5일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제31조 (승인된 기술설계의 유효기간)

승인된 기술설계의 유효기간은 승인된 날부터 5년이다.

유효기간안에 건설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착공하지 못한 건설대상의 기술설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2조 (설계의 실현)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의 실현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별로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뢰에 따라 명시측량과 확인측량, 지질상태 확인, 준공검사측량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2. 공정별심의에 참가하여 설계대로 시공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설계대로 시공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기술합의를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제33조 (설계의 변경)

승인된 설계는 자의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공정별심의와 시공과정에 설계를 변경시켜야 할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건설감독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 설계심의, 승인가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설계총화)

설계기관, 기업소는 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완공된 건설물에 대한 설계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상결합과 퇴치정형, 공사조건에 따르는 설계변경정형, 설계예산집행정형 같은것을 검토총화하여야 한다.

제35조 (설계에서 대상책임제)

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심의, 승인가관은 설계의 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과 실현에서 대상책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설계의 과학화

제36조 (설계부문의 과학기술발전계획)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선진건축과학기술의 연구, 도입)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선진적인 건설구조도식과 과학적인 계산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며 녹색건축, 지능건축기술을 비롯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설설계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38조 (건설설계의 표준화, 규격화)

중앙설계지도기관은 건설물의 유형별표준설계를 다양화하고 구조요소들의 표준설계를 끊임 없이 발전시키며 부호식설계기술을 받아들여 건설설계의 표준화, 규격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39조 (설계방법의 과학화, 설계수단의 현대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설계수단을 충분히 갖추며 최첨단수준의 설계응용프로그램과 체계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활용하여 설계방법의 과학화, 설계수단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40조 (건축정보모형화기술의 도입)

중앙설계지도기관은 건축정보모형화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설계방식을 연구발전시켜 건설설계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제41조 (건설지역의 수자화, 정보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시공측량, 준공검사측량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모든 건설지역을 수자화, 정보화하여 건설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2조 (건축과학기술자료의 보급)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설계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건축과학기술자료보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앞선 건축발전추세자료, 과학기술자료를 정상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내각과 중앙설계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국가의 건설정책과 건축발전추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한다.

제44조 (설계의 전문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인민경제부문별, 지역별로 전문설계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설계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45조 (설계력량의 강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설계력량을 강화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설계일군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46조 (건설설계기준의 제정)

건설설계기준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제정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축발전추세와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건설설계와 관련한 기준을 바로 결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감독통제)

건설설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건설설계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

건설설계자격을 소유한 자가 그것을 리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제49조 (변상처벌)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질서를 어겨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변상처벌을 준다.

제50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설계작성자격에 맞지 않는 건설대상을 설계하였을 경우
2. 설계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설계의 주문과 계약질서를 어기고 설계하였을 경우
4. 기술과제서를 비롯한 설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설계작성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승인된 측량 및 지질조사자료가 없이 설계하였을 경우
6. 승인된 건설총계획, 건설명세서, 기술과제서와 어긋나게 설계하였을 경우
7. 정해진데 따라 설계안을 비준받지 않고 설계하였거나 비준된 설계안과 어긋나게 설계하였을 경우
8. 설계기준의 요구대로 설계하지 않았을 경우
9. 설계합의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하지 않아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설계의 심의, 승인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하지 않아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승인되지 않은 설계를 내보내어 위법건설을 조장시켰을 경우
12. 설계대로 시공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기술합의를 제때에 하지 않아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승인된 설계를 자의대로 변경시켰을 경우
14. 설계상결함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앞항 1~14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1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주체81(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령 제1337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령 제416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령 제1968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3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제1조 (도시경영법의 사명)

도시경영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있게 꾸려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은 도시경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도시경영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에 큰 힘을 쏟으며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맞게 도시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리용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물과 시설물을 우리 인민의 땀흘려 마련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그 수명을 늘이고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4조 (건물과 시설물의 등록원칙)

건물과 시설물을 정확히 등록하는것은 도시경영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을 제때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관리한계와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제5조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도시경영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세우며 주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

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알뜰히 꾸리도록 한다.

제6조 (도시경영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도시경영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도시경영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 (도시경영부문의 과학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이 늘어나고 현대적으로 건설되는데 맞게 도시경영부문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 (도시경영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시경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건물관리

제9조 (건물의 보수)

건물관리는 도시경영사업의 중심과업이다.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제10조 (건물의 분류와 관리분담)

국가소유의 건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생산건물로 나누어 관리한다.

살림집과 공공건물관리는 도시경영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며 생산건물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1조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리용허가)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가족수, 출퇴근거리, 직업상특성, 필요한 건물의 면적 같은 것을 고려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리용허가증이 없이는 국가소유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쓸수 없다.

제12조 (건물의 보수형태)

건물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대보수와 중보수는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지어준 건물의 대보수와 중보수는 해당 협동농장이한다.

소보수는 건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한다.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의 건물을 위탁보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수비를 건물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3조 (건물의 보수주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수주기에 따라 건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건물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14조 (건물의 보수시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건물이 보수를 장마철전으로, 겨울나이를 위한 건물의 보수를 겨울철전으로 끝내며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병원건물의 보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생산건물보수는 공장건물보수월간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건물의 개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물, 낡은 건물을 쓰기 편리하고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계획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건물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건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시키며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건물의 인계)

다른 건물로 옮겨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쓰던 건물을 건물관리기관에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건물의 비품을 가져가거나 시설물을 뜯어가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7조 (개인살림집의 국가소유로 전환)

도시경영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개인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전환시켜줄 것은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넘겨받고 보상하여야하여야 한다.
살림집소유권을 국가소유로 넘긴 공민은 그 살림집을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18조 (건물의 보호)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시설, 불끄는 시설, 파괴시설을 늘 정비하여 사고를 미리 막으며 화재와 벼락의 피해로부터 건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건물가까이에서 폭발물을 터치거나 땅을 파는 것 같은 건물의 수명과 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제19조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정상적운영)

상하수도, 난방시설을 잘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도시를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시설을 보수정비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0조 (먹는물의 생산과 공급)

지방정권기관과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생산을 늘여 주민들에게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건설기관은 공급기준에 비하여 먹는물생산량이 적은 주민지구의 상수도시설을 개진, 확장, 신설하여야 한다.

제21조 (먹는물의 수질기준보장)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 수질기준에 이르는 먹는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수질기준에 이르지 못한 먹는물은 주민들에게 공급할수 없다.

해당 기업소는 먹는물의 정제와 소독에 쓰이는 약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생보호구역의 선정)

먹는물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수원지, 배수지, 뽕프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한다.

위생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3조 (위생보호구역의 관리)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위생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위생보호구역안에서는 빨래, 목욕 같은 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4조 (먹는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먹는물을 정해진 용도대로 써야 하며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먹는물은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25조 (오수, 산업폐수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관망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버림물을 정해진 기준대로 정화, 멸균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26조 (물빼기시설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수관을 비롯한 물빼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제때에 보수정비하며 주민지구에 비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주민지구의 물빼기시설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으며 우수관에는 오수관을 연결시킬수 없다.

제27조 (난방열의 생산, 공급)

난방열을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류량과 온도, 압력으로 열을 보내고 열효률을 높여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실내온도를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관리)

상하수도, 난방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망에 대한 보수정비와 보온을 잘하여 먹는물과 난방열의 도중손실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보수정비한 상하수도, 난방시설에 대하여 도시경영기관의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난방관합거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으며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관망에서 먹는물과 난방열을 뽑아쓰거나 거기에 설치된 변들을 조작할수 없다.

제29조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과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인입관건설명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관, 난방관에 새로 인입관을 연결하는 건설명시를 받으려 할 경우 도시경영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제31조 (도시도로와 하천의 계획적정리)

도시도로, 하천의 정리상태는 도시의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도로와 하천의 실태를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도시도로와 하천의 관리분담)

도시도로에는 도시령역안에 있는 차길, 가로록지, 걸음길, 가로등, 다리, 굴길, 지하건능길, 지상건능길, 도로보호안전시설물, 도로표식물 같은 것이, 도시하천에는 도시령역안으로 흐르는 강, 내, 개울과 그 보호리용시설물이 속한다.

도시도로와 하천의 관리는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그러나 전용도로와 중요하천의 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33조 (도시도로의 현대화)

국가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를 포장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버스, 전차정류소를 만들어놓으며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는 립체다리나 지하건능길, 지상건능길을 건설하고 현대적인 가로등,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 (도시도로의 보수정비)

도시경영기관은 도로를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m당 관리제의 원칙에 따라 분담된 구간의 도로를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보수나 청소, 눈치기 같은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성원들이 발광조끼를 입도록 하여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은 도로를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m당 관리제의 원칙에 따라 분담된 구간의 도로를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보수나 청소, 눈치기 같은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성원들이 발광조끼를 입도록 하여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35조 (차 씻는 시설의 운영)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입구에 차 씻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며 포장 도로와 잇닿은 작은 길의 일정한 구간을 포장하여야 한다.

운수기재를 운영하거나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짐실이와 차청소를 잘하며 도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아스팔트도로의 리용)

아스팔트도로로 무한궤도차를 몰고다니려 하거나 도로에서 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의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공사가 끝나는 차제로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7조 (도시하천관리)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의 필요한 곳에 제방을 쌓으며 하천바닥파기, 물풀, 오물의 제거, 강기습보호림의 조성, 하천보호리용시설물의 불비한 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보호리용시설물을 애호하며 그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원림조성

제38조 (록지면적의 확장)

원림조성을 잘하고 그 면적을 늘이는것은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문화휴식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지역의 특성,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원림특화설계를 발전시키며 원림록화면적을 계획적으로 늘여 도시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제39조 (가로수와 가로록지의 조성)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로선별로 종류를 규정하여 가로수를 심고 생나무 울타리와 꽃, 잔디 같은 것으로 녹지를 규모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가로수의 종류를 바꿀수 없다.

제40조 (공원, 유원지의 관리)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와 마을의 곳곳에 크고작은 공원과 유원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동물원, 식물원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동물원과 식물원을 우리 나라의 동물과 식물을 위주로 하여 꾸리고 그 종류를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42조 (나무모, 꽃모의 생산)

도시경영기관은 나무모, 꽃모의 생산을 늘여 그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무모, 꽃모, 꽃종자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나무, 꽃, 잔디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 꽃, 잔디 같은 것이 잘 자랄수 있게 물을 주며 병해충을 없애고 김매기와 나무의 모양만들기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

제44조 (원림지역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원림지역안에 있는 꽃과 나무를 꺾지 말며 그곳에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원림지역안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잔디 같은 것을 뜯수 없다.

제6장 도시미화

제45조 (건물, 시설물의 주변관리)

도시미화사업은 도시경영부문앞에 나선 문화혁명의 중요과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하는 건물과 시설물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

국가는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거두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4월과 10월을 도시미화월간으로,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한다.

제47조 (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곳에 오물장과 오물통을 설치하고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며 그속에 있는 유용물질을 회수, 리용하여야 한다.

공민은 오물을 반드시 오물장이나 오물통에 버려야 한다.

제48조 (구획의 정리)

도시경영기관은 꽃밭정리, 어린이놀이터꾸리기, 물도랑치기 같은 구획정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49조 (문화휴식시설과 공동위생시설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스, 전차정류소, 극장, 영화관주변에 문화휴식시설을 갖추고 살림집구획과 공원, 유원지, 광장, 운동장 같은 공공장소주변에 공동위생시설을 깨끗이 꾸리며 그것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건물, 시설물, 운수수단의 도색, 장식물의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의 도색을 서로 대조되게 하며 퇴색된 건물, 시설물, 운수수단을 제때에 도색하여야 한다.

거리, 유보도, 공원 같은 곳에는 가로등, 전기장식등, 소개판, 간판, 조각 같은 장식물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안에는 전화선, 전기선 같은 것을 늘이려 할 경우에는 지방정권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유해가스, 먼지의 방지)

생산과정에 유해가스와 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업소는 가스, 먼지잡이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지구로 유해가스와 먼지를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도시에서 유해가스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료전기재를 몰고다닐수 없으며 도시의 중심구역에서 나무잎 같은 연기가 나는 물질을 불태울수 없다.

제52조 (보이라운영시설의 관리)

보이라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창고, 탄재모이터, 탄재잡이시설을 갖추어 석탄가루와 탄재가 비바람에 날리거나 씻겨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화장시설의 관리)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화장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문화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묘는 해당 기관이 승인한 일정한 지역에만 쓰며 오래된 묘지는 정리할수 있다.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4조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국가의 도시경영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5조 (중앙도시경영기관의 임무)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전국의 도시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6조 (건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의 등록)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건물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를 정해진 기간안에 지방정권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단체소유의 건물과 시설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57조 (주민지구토지의 리용)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구획, 위생보호구역, 공원,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대상설계에 예견되지 않은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제58조 (대상건설에 대한 검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 시설물의 수요와 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기본건설계획에 맞물리며 대상건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구획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물과 시설물은 넘겨주고 받을수 없다.

제59조 (도시경영일군에 대한 국가적배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보호관리사업에서 공로를 세워 주민들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도시경영일군에게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배려를 돌린다.

제60조 (도시경영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은 도시경영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경영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상업기관은 건물의 소보수에 필요한 세멘트, 유리 같은 자재와 공구를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제61조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도시경영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2조 (대상건설의 중지와 철거, 원상복구, 손해보상)

도시경영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은 중지시키거나 철거시키며 허가없이 건물에 든 자는 그 건물에서 내보낸다.

건물과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도시경영용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데 돌려췌거나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9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시미화법의 기본

제1조 (도시미화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은 도시의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도시청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도시미화사업은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일터를 알뜰히 꾸려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도시미화사업에는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 도시청소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계획적인 도시미화사업원칙)

도시미화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도시를 더욱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도시미화를 위한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제4조 (전군중적인 도시미화사업원칙)

도시미화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관리구간을 정하여주고 전체 인민이 도시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원칙)

국가는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도시미화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 (도시미화사업의 과학화, 현대화원칙)

국가는 도시미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도시미화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도시미화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7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시미화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8조 (해당 법규의 적용)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도시구획정리

제9조 (도시구획설계의 작성)

도시구획설계의 작성은 도시계획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도시계획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구획설계를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도시구획설계의 요구준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구획정리사업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1조 (담당관리구획의 분담)

담당관리구획을 정해주는 사업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에 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관리구획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12조 (건물, 시설물의 주변정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의 건물, 시설물과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관리구획안에 새로 꾸릴 것은 꾸리고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대상은 옮기거나 없애야 한다.

제13조 (차길과 걸음길보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의 차길과 걸음길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차길과 걸음길에 대한 포장은 전문기업소가 한다.

제14조 (원림구성)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에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민은 나무와 꽃을 꺾거나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울타리정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울타리를 건물과 거리에 어울리면서도 깨끗하게 현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울타리는 개진, 보수하거나 없애야 한다.

제16조 (물도랑정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의 물도랑을 규모있게 만들며 오물과 감탕을 제때에 걷어내며 비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도랑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7조 (공동묘지와 화장터주변정리)

도시경영기관은 공동묘지, 화장터와 그 주변을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 기관이 승인한 곳에만 묘를 쓰며 화장터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구획정리가 완성된 건설물의 인계인수)

도시경영기관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새로 건설한 건물, 시설물을 넘겨받을 경우 구획정리가 완성된 다음 넘겨받아야 한다.

구획정리를 하지 않은 건설물은 넘겨줄수 없다.

제3장 건물, 시설물의 미화

제19조 (건물, 시설물의 설계)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물, 시설물설계를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대상별로 지방의 특색을 살릴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건물, 시설물의 도색)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퇴색되었거나 어지러워진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도색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의 도색은 승인된 색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색으로 바꾸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건물, 시설물의 등록, 보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물, 시설물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하여 기술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며 보수주기에 따라 계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제때에 질적으로 보수하여

야 한다.

제22조 (건물, 시설물의 개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거나 도시미화에 손상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개조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의 개조는 승인된 설계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다.

승인없이 건물, 시설물을 개조할수 없다.

제23조 (공동위생실의 설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구획과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공공장소의 주변에 공동위생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민은 공동위생실의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24조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의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전기선, 통신선 같은 것을 새로 늘이려 할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하로 늘여야 한다.

이미 설치된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 같은 것은 도시미화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간판, 구호판, 표시판의 제작 및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판과 구호판, 표시판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문화성 있게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규격을 지켜야 한다.

간판과 구호판, 표시판을 승인없이 설치할수 없다.

제26조 (불장식)

해당 설계기관은 도시건물과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불장식설계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품위있게 하여야 한다.

불장식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불장식을 개조하려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도시청소

제27조 (청소담당구간의 분담)

청소담당구간을 분담하는 사업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청소담당구간을 빠짐없이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제28조 (담당구간의 청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담당구간청소를 정상적으로 깨끗이 하며 오물을 제때에 버려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장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려놓고 오물을 정해진 곳에만 버리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휴지통의 설치)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극장, 영화관, 정류소, 공원, 유원지, 식당주변 같은 공공장소에 휴지통을 문화성있게 만들어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오물의 처리)

오물처리하는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도시의 살림집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는 도시경영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한다. 이 경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을 정해진 처리장소에 제때에 실어내기가야 한다.

제31조 (오물의 재자원화)

도시경영기관은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오물을 재자원화하여야 한다.

제32조 (눈치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눈이 내렸을 경우 담당구간에 쌓인 눈을 제때에 쳐내야 한다. 이 경우 눈치기와 얼음까기를 하면서 도로를 파손시키지 말며 쳐낸 눈은 규모있게 쌓아놓거나 제때에 없애야 한다.

도로관리공과 도로에 나와 눈치기를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발광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광조끼를 수요에 맞게 준비하고있어야 하며 도로는 치기를 하는 경우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차세척시설의 설치)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입구나 필요한 장소에 차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짐실이와 차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도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먼지잡이시설의 설치, 석탄보관)

먼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먼지잡이시설을 갖추고 먼지가 날려 대기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석탄가루와 탄재가 바람에 날리거나 비물에 씻겨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요구)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는 국가의 도시미화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 (지도기관)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재정기관, 해당 기관은 도시미화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미화사업에서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도입하고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여 도시미화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제38조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 운영)

해마다 4월과 10월을 《도시미화월간》으로,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정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에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제39조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파손시키는 행위

1. 거리와 극장, 영화관, 공원, 유원지 같은 공공장소에서 휴지, 담배꽂초, 음식찌꺼기 같은 것을 망탕 버리는 행위
2. 오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3.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보기 흉한 물건을 밖에 내놓거나 지붕에 올려놓는 행위
4. 건물에 각종 안테나, 굴뚝을 보기 흉하게 설치하는 행위
5. 나무와 꽃을 꺾거나 못쓰게 만드는 행위
6. 잔디를 밟거나 잔디밭에 들어가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놀이를 하는 행위
7.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차청소를 하는 행위
8. 승인되지 않은 집짐승을 기르는 행위

제40조 (감독통제)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시미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 처벌을 준다.

1. 구획정리를 하지 않고 건설물을 넘겨주어 그 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담당관리구획분담을 바로하지 않아 그 정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담당관리구획안의 건물, 시설물과 그 주변정리, 차길과 걸음길보수, 원림조성, 울타리 정리, 물도랑정리, 공동묘지, 화장터정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건물, 시설물의 등록, 보수, 도색, 공동위생실의 관리, 전기선, 통신선, 안테나선, 간판과 구호판, 표시판 같은것의 설치 및 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담당구간청소, 오물처리, 차청소질서, 대기오염방지질서를 어겨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조건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도시미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 운영을 위한 조직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8. 이 법 제39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제4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주체86(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9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23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8호로 수정보충

제1장 량정법의 기본

제1조 (량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은 량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정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량곡의 계획소비원칙)

량정사업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모든 량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량정체계안에서 류통시키며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한다.

제3조 (량정부문 성과의 공고화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량정정책에 의하여 인민적인 식량공급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량정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량정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나간다.

제4조 (량곡수매원칙)

량곡수매를 잘하는 것은 량곡원천을 확보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량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국가적인 량곡수요와 농장원들의 리익을 다같이 고려하는 원칙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량곡수매를 진행하고 량곡수매정형을 엄격히 총화대책하도록 한다.

제5조 (량곡보관원칙)

량곡보관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량곡의 손실을 없애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량곡담보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량곡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도록 한다.

제6조 (량곡가공원칙)

량곡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가공제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량곡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량곡가공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량곡공급원칙)

량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고 공업원료와 집집승먹이를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 (량곡예비조성원칙)

국가는 예비량곡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곡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 (량정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량정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량곡수매

제10조 (량곡수매조직)

량곡수매는 생산된 량곡을 국가가 사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 량정기업소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량곡을 제때에 수매하여야 한다.

제11조 (량곡수매와 교류, 판매방법)

량곡수매는 국가투자몹에 의한 의무수매와 계약에 의한 수매로 나누어 농업지도기관소속 량곡수매검사기관이 한다. 그러나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량곡수매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량곡과 비경지 또는 터밭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량곡은 영농물자교류소를 통하여 필요한 영농물자와 교환하거나 판매할수 있다.

제12조 (량곡수매계획의 작성과 수행)

국가계획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은 해마다 량곡수매계획을 의무수매계획과 계약수매계획으로 나누어 세워야 한다.

의무수매계획은 토지와 관개용수, 전력리용몹, 국가가 투자한 영농물자리용몹 같은것에 해당하는 량곡량을 수매하는것으로 세워 년초에 농업지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달

한 의무수매계획은 변경시킬수 없다.

계약수매계획은 총알곡생산계획가운데서 의무수매계획과 농장들이 자체소비할 량곡 같은것을 고려하여 세운다.

농업지도기관과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량곡생산정형의 장악)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은 량곡생산정형을 대상별, 곡종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량곡을 생산하는 토지를 사금채취같이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계약에 따르는 량곡을 해당 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량곡을 농업지도기관에 제때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량곡수매대상)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량곡의무수매계획에 따르는 량곡을 먼저 수매한 다음 계약에 따르는 량곡을 수매하며 자체소비와 관련한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나머지 량곡을 소비하여야 한다.

부업지, 원료기지, 실습지 같은데서 생산한 량곡은 국가계획에 따라 수매하게 된 량곡을 먼저 수매한 다음 나머지 량곡으로 용도별계획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량곡을 수매시키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생산한 량곡을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고 국가량곡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해진데 따라 소비하여야 한다.

제15조 (량곡의 계량)

농업지도기관소속 량곡수매검사기관은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계량수단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량곡의 잡질률, 물기률)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하려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한 기준아래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소속 량곡수매검사기관은 수매하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량곡의 품질검사)

수매량곡에 대한 품질검사는 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품질감독기관의 위임에 따라 농업지도기관도 품질검사를 할수 있다.

품질검사에는 량곡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을 립회시킨다.

제18조 (수매량곡의 포장)

량곡은 포장한 것으로 수매한다. 그러나 곡종에 따라 포장하지 않고 수매할수 있다.

량곡을 수매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해진 용기에 담고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3장 량곡보관

제19조 (량곡의 장악)

량곡보관은 량곡의 손실을 막으며 그것을 질량적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 특성과 용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량곡의 보관기관)

량곡보관은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수매한 량곡을 국가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 수 있다.

제21조 (량곡창고의 배치)

농업지도기관은 량곡창고를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한 량곡창고를 없애로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량곡창고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량에 맞게 량곡창고를 건설하며 량곡을 신고부리는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울타리, 도랑 같은 량곡보호 구조물을 정해진대로 만들며 량곡창고구내길과 량곡을 신고부리는 장소를 포장하여야 한다.

제23조 (보관량곡검사, 국가예비량곡보관)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하는 량곡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바꾸어쌓기와 쌀벌레잡이소독, 짐승피해막이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쌀벌레잡이약품 같은것을 제때에 생산보장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관하는 국가예비량곡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새로 생산한 량곡과 바꾸어야 한다.

제24조 (량곡창고구역보호)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량곡보관과 관련이 없는 건물을 짓거나 폭발성, 인화성물질을 두지 말며 량곡창고에 불끄기시설과 기재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량곡창고구역에서는 불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5조 (량곡보관용기, 보호재)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마대, 가마니, 방수포 같은 용기와 보호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보관용기를 정해진대로 관리하며 그 회수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6조 (량곡의 수송)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유개시설이 갖추어진 수단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유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단으로 량곡을 실어나를 경우에는 방수포 같은 것을 씌워 눈비를 맞지 않게 하여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나 독성물질 같은것을 량곡과 함께 실어나를수 없다.

제27조 (량곡의 입출고, 실사)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에서 량곡의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며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실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량곡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량곡경비조직)

량곡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경비체계를 바로세우고 경비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건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중요량곡경비초소를 나오거나 없앨수 없다.

제4장 량곡가공

제29조 (량곡가공의 기본요구)

량곡가공은 식량을 먹기 편리하게 하고 공업원료, 집짐승먹이로 리용되는 량곡을 용도에 맞게 만드는 사업이다.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인민들의 기호와 영양학적요구, 공업부문의 수요대로 가공하여야 한다.

제30조 (량곡가공기업소)

국가량곡가공은 량정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량곡을 가공할수 있다.

국가의 량정체계밖에서 량곡을 가공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 (량곡가공능력의 조성)

농업지도기관은 량곡을 가공하는 기업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곡종별수요에 따라 가공능력을 조성하여야 한다.

량곡가공기업소를 없애려 할 경우에는 도농업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출미률, 실수률)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량곡가공 공정과 설비를 개조하여 량곡의 가공손실을 없애고 출미률과 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해마다 량곡의 출미률과 실수률기준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33조 (가공제품의 질제고)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량곡가공시설과 제품은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가공부산물회수)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과정에 나오는 쌀겨, 강냉이눈을 비롯한 부산물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제35조 (가공시설의 보수)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시설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수한 량곡가공시설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가공설비생산기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가공설비, 부속품생산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가공설비, 부속품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가공전력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은 량곡가공에 필요한 전력을 영농용에 포함시켜 가공용으로 따로 계획화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제38조 (량곡수급지휘)

량곡수급과 공급은 량곡에 대한 지역사이의 소비균형을 맞추고 인민들의 식량과 인민경제부

문에 요구되는 량곡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은 량곡수급지령체계를 세우고 량곡수급지휘에서 기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량곡공급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량곡종합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국가량곡수매계획에 기초하여 식량년도 국가량곡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40조 (량곡수급계획)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따라 량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1조 (량곡수급기지)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도농업지도기관은 량곡수급계획에 따르는 량곡수급기지를 바로 정하고 주고받는 지역을 맞물려주어야 한다.

해당 농업지도기관과 량정기업소는 소비지로 보내게 된 량곡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2조 (량곡운수수단 보장)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식량수송이 긴장할 경우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수단을 동원시킬수 있다.

제43조 (량곡공급기준량)

로동자, 사무원의 식량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직종, 대상에 따라 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식량을 정해진 식량공급기준량, 곡종과 다르게 공급하거나 2중으로 공급할수 없다.

식량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제44조 (식량공급대상의 등록)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등록하고 식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량공급대상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 (식량공급소, 량곡판매소의 배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인원의 분포상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식량공급소, 량곡판매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식량공급소, 량곡판매소는 량곡공급 및 판매시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계량을 정확히 하며 봉사성을 높여야 한다.

제46조 (부업지, 비알곡생산단위의 종업원식량)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식량은 자체생산한 량곡으로 보장한다.
남새, 공예작물 같은 비알곡작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 식량을 해당 단위에서 보장할수 없는 경우 농업지도기관이 공급한다.

제47조 (공업원료, 집짐승먹이)

농업지도기관과 량정기업소는 공업원료, 집짐승먹이량곡을 용도별계획에 따라 해당한 곡종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량곡재고량과 용도, 소비기준을 따져보고 필요한 량만큼 공급하여야 한다.

제48조 (량곡절약)

량곡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량곡을 량비하지 말고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밀주행위를 할수 없다.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9조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량정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량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0조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량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의 임무)

농업지도기관은 량곡생산과 수매, 보관, 가공, 공급, 소비정형을 늘 료해하고 량곡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교육기관은 량정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량정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3조 (량정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량정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수매용상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 (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곡생산과 수매실적을 허위보고하거나 비법처리하는것을 비롯하여 량곡의 생산과 수매, 보관, 가공, 공급, 소비에서 위법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 (손해보상, 몰수, 회수 및 이관)

정해진 출미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량곡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또는 밀주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몰수하고 비법처리 또는 류용, 량비된 량곡과 소비과정에 남은 량곡은 회수하며 그 가운데서 국가량곡수매분과 국가량곡공급분에 해당하는 량곡은 농업지도기관에, 그밖의 량곡은 해당 기관에 넘긴다.

제5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량곡을 국가량정체제안에서 류통시키지 않았을 경우
2. 시달된 국가량곡의무수매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변경시켰을 경우
3. 생산한 량곡을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량곡생산과 의무수매실적을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4. 수매하는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지 않았거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5. 량곡보관을 정한대로 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거나 량곡경비체계를 바로 세우지 않아 화재, 분실, 도난 같은 사건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6. 량곡의 포장용기에 대한 보관관리와 회수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량곡수매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국가의 량정체제밖에서 량곡을 가공하였거나 량곡의 가공실적을 루락시켰을 경우
8. 량곡을 정해진 공급기준량과 용도별계획, 곡종과 다르게 공급, 소비하거나 2중으로 공급, 소비하였을 경우
9. 량곡수송조건을 구실로 공급받은 량곡을 팔아 버렸을 경우

앞항 1~9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7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주체81(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1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5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50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5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8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5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제1조 (사회주의상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업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 통과 봉사사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은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사회주의상업은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협동단체가 진행하는 상업이다.

사회주의상업에는 상품공급 및 판매, 사회급양, 편의봉사, 수매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상품공급, 판매원칙)

국가는 상품공급과 판매에서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상품의 생산 및 수입에 정확히 맞물리고 상품을 제때에 수요자에게 공급, 판매하도록 한다.

제4조 (상품원천조성과 확보원칙)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원천을 조성하며 수매, 가공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5조 (봉사원칙)

국가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 상업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봉사활동에서 인민성, 문화성, 현대성,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6조 (상업관리원칙)

국가는 통일적인 상업관리체계를 세우고 사회주의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살려나가도록 한다.

제7조 (상품류통원칙)

국가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상품류통체계를 바로세워 생산, 수입한 상품이 국가적인 등록, 인증체계안에서 국영상업망을 통하여 류통되도록 한다.

제8조 (상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상품공급 및 판매

제9조 (상품공급 및 판매의 기본요구)

상품공급 및 판매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 판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의 확보, 지역간교류)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 수입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품의 생산, 수입, 분배, 공급 및 판매계획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만들며 그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수입, 분배, 공급 및 판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품의 생산, 수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 수입하여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의 분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중앙지표의 상품수량을 넘겨받아 도(직할시)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넘겨받은 상품수량과 자체지표의 상품수량을 시(구역), 군민민위원회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본위로 상품분배단위를 내올수 없다.

제13조 (상품공급계약)

상업 및 상품생산, 수입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생산, 수입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14조 (식료품의 공급, 판매)

지방인민위원회와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상업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15조 (상비상품의 공급, 판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한 일용잡화, 건재상품, 농촌상점에 갖추어놓아야 할 상품 같은 상비상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비상품을 떨구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16조 (어린이용상품의 공급 및 판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용상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여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17조 (협동농장에 대한 상품보장)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총량가운데서 중요상품의 일정한 몫을 남겨두었다가 협동농장결산분배시기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상품을 생산, 수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에 보내줄 상품을 제때에 생산, 수입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요대상의 상품보장)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탄광, 광산, 발전소, 학원, 애육원, 육아원 같은 중요대상에 필요한 상품을 정해진 기준대로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은 기준에 따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상품의 자체가공)

지방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식료가공반과 리용생산반을 내오고 여러가지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세소상품 같은 상품에 대한 자체로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20조 (여행자용상품판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는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을 확보하며 주요 역구내와 정류소에 여행자상점과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여행용품과 지방특산물, 청량음료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역구내와 역사, 열차안에서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일용상품에 대한 신용보증제)

전기용품, 전자제품 같은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상품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 (상품류통의 장악지휘)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류통에 대한 장악지휘체계를 세우고 중요상품확보와 공급, 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휘하여야 한다.
체화되었거나 못쓰게 된 상품 같은것을 제때에 조절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상품예비의 조성)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자연피해와 특수하게 제기되는 대상에 필요한 상품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한 상품예비는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공급한다.

제24조 (직매점의 운영)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에서는 자기 부문 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상품을 위주로 하여 팔아주면서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한데 기초하여 상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직매점에서는 수입상품을 팔수 없다.
시, 군직매점에서는 8월 3일인민소비품을 기본으로 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25조 (상품의 수송, 송달)

도매상업기관, 기업소와 운수기관은 상품을 수송계획과 주문계약에 따라 수송,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 (상품의 비법처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주민용상품을 빼내거나 생산, 수입한 상품을 개별적공민에게 직접 넘겨주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27조 (상품의 비법공급, 판매행위 금지)

상업기관, 기업소는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상품을 공급, 판매하거나 개별적공민들로부터 상품을 넘겨받아 판매하는 행위, 품질감독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상품,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수 매

제28조 (수매의 기본요구)

수매를 잘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켜 주민들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상업지도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농업생산물과 공업원료원천을 동원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매에서 자원성원칙준수)

수매기관, 기업소는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수매시키는자의 리익을 옹게 결합시키고 자원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수매의 구분)

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한다.

수매기관, 기업소는 지표별수매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수매하여 주민들로부터 농부산물, 축산물, 약초, 고자재 같은 것을 자유수매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매의 다각화)

수매품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중앙지표 제외)를 직접 수매하는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각화하며 수매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야 한다.

제32조 (수매의 다양화)

해당 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수매원천의 분산성과 수매품종의 특성에 맞게 계약수매, 현물교역수매, 위탁수매, 예약수매, 순회수매 같은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제33조 (수매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기지와 원천을 조성하고 늘이며 수매원천을 조사장악하여 수매품총액 및 지표별, 시기별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식료농산물의 계약수매)

상업기관, 기업소는 국영 및 협동농장공동경영에서 생산한 남새, 축산물(중앙지표 제외) 같은 식료농산물을 생산단위와 계약을 맺고 수매받아 인민들에게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와 국영 및 협동농장은 수매계약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산나물, 산과일의 수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산나물과 산과일이 많이 나는 시기에 채취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 그것을 더 많이 수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제정, 수매선전)

국가계획기관과 규격지도기관은 해당 기관별로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을 정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수매선전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37조 (여유물건의 수매와 수매자의 신분확인금지)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여유로 가지고있는 물건을 수매받

아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사회급양

제38조 (사회급양의 기본요구)

사회급양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여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이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기호와 위생영양학적요구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여야 한다.

제39조 (음식물의 가지수)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이 즐기는 대중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지방적특색을 잘 살리는 원칙에서 음식물의 가지수를 늘여야 한다.

제40조 (음식물의 질)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생산을 전문화, 과학화하여 조리강습과 경연, 경험교환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음식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41조 (청량음료)

사회급양 및 청량음료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청량음료를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청량음료는 필요한 곳에 청량음료점과 야외매대 같은 것을 꾸려놓고 봉사하여야 한다.

제42조 (이동봉사매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생활상편리와 수요에 맞게 이동봉사매대를 내오고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봉사할수 있다. 이동봉사매대의 허가와 등록, 봉사구역설정과 봉사방법,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43조 (주식물의 가공)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와 로동자구, 농촌리에 밥공장, 국수공장, 빵공장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꾸리고 주식물을 가공하여 공급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4조 (음식물의 생산, 봉사위생)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당의 주방설비와 비품, 도구 같은것을 그 특성에 맞게 갖추고 음식물생산과 봉사에서 위생문화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보건기관은 사회급양일군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려관봉사)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려관을 꾸려놓아야 한다. 려관에서는 봉사조직을 잘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1차가공품과 반제품의 생산)

지방인민위원회와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제품공장을 꾸리고 1차가공제품과 반제품을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47조 (원자재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사회급양 및 식료가공원료기지를 꾸리고 식당과 식료상점에 여러가지 원자재를 계획화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경지를 원료기지로 리용할수 있으며 무역회사와 주문계약을 맺고 봉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여 리용할수 있다.

제5장 편의봉사

제48조 (편의봉사의 기본요구)

편의봉사를 바로하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리용편의 같은 편의봉사망을 꾸리고 업종을 정해주며 앞선 봉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편의봉사에서 신용보증제)

편의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가정문화용품 같은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0조 (편의봉사시설의 관리운영)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시설을 인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관리운영하며 편의봉사에서 문화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편의수매)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수매시키려는 소비품을 수매하여 팔거나 다시 수리가공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52조 (가내편의봉사)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가내작업반(가내편의봉사원 포함)

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가내작업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3조 (편의봉사용자재, 부속품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용자재, 부속품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고 구입할수 있다.

제6장 상품보관관리

제54조 (상품보관관리의 기본요구)

상품보관관리는 상품을 질량적으로 검수선별하고 정확히 보관하며 상품의 손실을 없애고 품종구색을 갖추어 인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보관관리에 필요한 창고를 기준대로 갖추고 상품을 그 특성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상품기준재고와 상품회전률)

상업기관, 기업소는 기준에 따르는 상품재고를 가지고있어야 하며 상품류통조직을 개선하여 상품회전률을 높여야 한다.

상품기준재고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6조 (상품검수와 입출고)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검수와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고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잘하여 상품류통과정에 사고를 없애야 한다.

상품의 손실과 검수과정에 발견한 사고는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 (식료품의 저장, 랭동)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지와 소비지에 저장, 랭동시설을 꾸리고 식료품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식료품저장, 랭동시설에는 식료품보관에 피해를 줄수 있는 물건을 둘수 없다.

제58조 (상품의 포장용기)

상업기관, 기업소는 자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상품품종별포장용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포장용기는 회수하여 다시 리용할수 있다.

제59조 (상품의 실사)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품실사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60조 (상품과 상업시설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품과 상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경비성원을 배치할수 있다.

제61조 (물자재산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업봉사시설과 상품을 비롯한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제62조 (봉사망의 관리)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요구이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봉사망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며 인민들에게 편리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봉사망의 조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봉사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

제64조 (봉사구역담당제)

상업기관, 기업소는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며 상점매대에 상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어야 한다.

제65조 (공로자에 대한 상업봉사)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등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훈을 세운 공로자에 대한 상업봉사활동을 적극조직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66조 (상품의 포장)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물리화학적특성과 용도, 규격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포장하며 상표와 가격표를 문화성있게 만들어 붙여야 한다.

제67조 (상품의 진렬, 조명, 광고)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진렬, 광고와 조명을 문화성있게 하여야 한다.
상품광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68조 (봉사형식과 방법)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침, 저녁봉사와 순회봉사, 주문송달봉사, 자체봉사 같은 여러가지 봉사형식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지켜야 한다.

제69조 (상업일군의 임무)

상업일군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이다.

상업일군은 상품수요장악과 공급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리용하여 얻은 경험을 본받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 판매하며 언제나 인민들에게 문화성있고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

제70조 (상업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의 기본요구)

상업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업경영을 정보화, 과학화하는 것은 나라의 상업을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워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상업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봉사건물과 설비, 비품, 도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며 상업경영활동을 정보화, 과학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1조 (봉사망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설계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살림집을 건설하려 할 경우 봉사망건설을 예견하며 연간 살림집건설계획가운데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봉사망건설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봉사망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제72조 (상업시설의 현대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작업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로봇트화하며 식료상점, 식당에 랭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설비, 비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상업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 비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73조 (간판, 붙장식의 설치)

지방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망의 업종별특성과 규모에 맞게 간판, 붙장식 같은것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 (상업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상업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75조 (상업건물, 구조물, 설비의 등록리용)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봉사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상업봉사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것을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없이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76조 (상업경영의 정보화, 과학화)

상업기관, 기업소는 현대적인 정보설비와 정보체계,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상업경영을 정보화, 과학화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상업체계를 구축, 리용하며 모든 상품을 상품등록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류통시켜야 한다.

제77조 (상품의 계량)

상업기관, 기업소는 계량수단을 현대화하고 상품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인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기술기능수준제고)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일군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79조 (상업부문 과학연구사업)

상업과학연구기관은 상업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상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80조 (상업시설보수)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정비, 보수하여야 한다.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81조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상업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

요담보이다.

국가는 상업부문에 대한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2조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83조 (영업허가)

상점, 식당, 편의봉사망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으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국영봉사망을 활성화하는 원칙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봉사망에 대한 영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84조 (상품류통계획)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품류통계획을 비롯한 상업부문계획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상품의 생산과 수입, 공급계획은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조절할수 없다.

제85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상업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고 류통비를 체계적으로 낮추며 재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86조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상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체제로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87조 (전형창조와 그 일반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에서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88조 (시장의 관리운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시장을 지역별로 꾸리고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시장에서는 팔지 못하게 되어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도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판매할수 없다.

제89조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0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91조 (변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1. 상품을 비법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2. 상품조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상품을 부패, 변질, 파손시켰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3. 상업시설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

제92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3만~10만원
2. 상품의 공급, 판매에서 정해진 량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3. 음식물봉사에서 위생문화적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4. 상품광고에서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00만원
5.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50만원

제93조 (중지처벌)

이 법 제92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94조 (몰수처벌)

비법적으로 상품을 거래하였거나 봉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95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수요를 고려함이 없이 상업부문의 계획을 작성, 시달하였을 경우
2. 생산, 수입한 상품을 상품공급계획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3.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을 어겼을 경우
4. 신용보증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5. 체화되었거나 못쓰게 된 상품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6. 정해진 상품예비를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7.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였거나 상품을 비법적으로 처리하였거나 상품의 공급, 판매에서 정해진 량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8. 구매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9. 음식물의 생산과 봉사에서 위생문화적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 상품의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상품을 부패, 변질, 파손시켰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11. 봉사망배치와 봉사업종을 정하는 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을 경우
12. 상품광고에서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상품을 상품등록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고 유통시켰을 경우
14. 상업시설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
15. 영업허가질서를 어겼을 경우

앞항 1~15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9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주체98(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1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7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3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7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4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제1조 (살림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살림집의 구분)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유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눈다. 국가는 살림집소유권과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원칙)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준다.

제4조 (살림집건설원칙)

살림집건설을 적극 벌리는 것은 늘어나는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살림집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살림집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원칙)

살림집의 이관, 인수와 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살림집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원칙)

국가는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살림집리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 (살림집의 관리원칙)

살림집의 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살림집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살림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8조 (다른 법의 적용)

살림집의 건설과 이관, 인수, 등록, 배정, 리용, 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건설법과 기관, 기업소 및 주민자금에 의한 살림집건설규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살림집의 건설

제9조 (계획적인 살림집건설)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따라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설승인절차준수)

살림집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의 발급, 건설설계 및 계획의 승인, 토지리용허가, 건설허가 같은 승인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건설승인을 다 받지 않고는 살림집건설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살림집건설대상에 대한 문건검토와 현지료해를 구체적으로 한 다음 국가가 정한 살림집건설원칙과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건설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살림집건설설계)

살림집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하며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한 다음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살림집건설설계를 세대당 면적기준을 비롯하여 정해진 기준이 보장되게 하며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특색있게 하면서도 건설자재와 자금이 최대한 적게 들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 같게 작성된 살림집건설설계는 승인할수 없다.

제12조 (살림집건설계획의 맞물림과 시공계약체결)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살림집건설의 시공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가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협동시공으로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와 어긋나게 살림집협동 시공계약을 맺거나 파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하부구조건설선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건설하는 경우 하부구조의 설계와 시공을 앞세워야 한다.

하부구조시설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시설능력이 모자라는 곳에는 살림집을 건설할수 없다.

제14조 (시공)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정해진 기관이 승인한 설계와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를 어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5조 (시공의 질검사)

건설감독기관과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과정에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를 통한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중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제16조 (건설자금, 자재, 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및 주민자금으로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관은 주문자와 살림집주문계약을 맺으며 계약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제때에 해당 은행기관에 입금시키고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주문계약은 해당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은행기관은 살림집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배정담보의 명목으로 자금과 자재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거나 조성된 자금과 자재를 국가의 재정 및 자재공급체계밖에서 망탕 지출, 처분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구획정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건설한 다음 살림집건설설계에 따라 주민생활보장과 도시경영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난방, 전기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며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된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수 없다.

제18조 (준공검사)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살림집이 완공되면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해당 전문부문의 일군들과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에서는 설계에 준하여 하부구조건설상태, 시공의 질보장상태, 구획정리상태 같은 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살림집에 대하여서는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결함을 퇴치하고 다시 준공검사를 받는다.

제20조 (살림집의 질보증)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제21조 (살림집의 이관, 인수)

완공된 살림집은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준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준공검사에 참가하여 해당 살림집이 설계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살림집을 넘겨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넘겨주거나 받을수 없다.

제22조 (살림집이관, 인수 때 넘겨줄 문건)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관리기관에 살림집을 넘겨주는 경우 건설명세서, 토지리용허가증, 건설허가증, 지질측량조사서, 설계도면, 시공경력서,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같은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문건이 없이 살림집을 넘겨주거나 받을수 없다.

제23조 (관리대상이 다른 살림집의 이관, 인수)

살림집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에 따라 다른 살림집관리기관에서 관리하던 살림집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살림집관리기관에서 관리하던 살림집을 넘겨받을 경우에는 살림집의 구조적안정성과 관리상태, 상하수도, 난방, 전기, 승강기시설의 기술상태 같은 것을 확인하며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 정확히 넘겨받아야 한다.

제24조 (개인소유살림집의 이관, 인수)

개인소유살림집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경력관계와 잔존가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소유로 되어있던 살림집이 국가소유로 전환되었다 하여도 해당 살림집은 그것을 소유하였던 공민이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제25조 (살림집등록체계확립)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넘겨받은 살림집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등록은 새로 건설한 살림집을 넘겨받았을 경우에 하는 처음등록과 관리과정에 하는 정상등록, 관리관할에 따라 하는 자체등록과 국가등록으로 구분하여 한다.

제26조 (살림집등록방법)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을 갖추고 살림집의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정형,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그 운영상태, 건구, 비품 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과정에 등록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살림집등록정형보고)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정형을 년에 1차씩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제28조 (살림집의 배정기관)

살림집의 배정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살림집배정신청 및 등록)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배정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

해하고 대장에 등록하며 살림집이 마련되는데 따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0조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살림집의 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3.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도시계획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4.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5. 국가는 협동농장에 지어준 살림집과 협동단체소유의 살림집은 농장에 직접 복무하는 농장원, 로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새로 건설한 살림집의 배정)

새로 건설한 살림집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되고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된 조건에서 배정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살림집은 배정할수 없다.

제32조 (리용하던 살림집의 배정)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은 그것을 리용하던 공민이 살지 않을 경우에만 배정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비어있는 살림집을 제때에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살림집리용신청)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살림집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리용신청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4조 (살림집리용허가)

살림집리용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신청리유와 거주조건, 살림집이 비어있는 정형 같은 것을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에게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 해주어야 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에는 리용자의 이름, 직장직위, 가족수, 살림방수, 살림집의 주소, 번호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35조 (살림집의 교환)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수 있다.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조건이 부당할 경우에는 살림집을 교환할수 없다.

제36조 (살림집입사)

살림집리용허가를 받은 공민은 해당한 수속을 하고 제때에 살림집에 들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정해진 기간안에 살림집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살림집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살림집리용허가증의 반환)

공민은 살림집을 리용하다가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바쳐야 한다.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바치지 않고는 다른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제38조 (살림집의 동거)

공민은 동거살림을 하려 할 경우 동거로 들어가려는 살림집리용자와 합의한 다음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동거살림을 하려는데 대하여 승인하였을 경우 동거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의 인계, 인수)

이사를 가는 공민은 리용하던 살림집을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원상대로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의 상태를 현장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넘겨받아야 한다.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 것을 떼갔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대로 해놓도록 한 다음 넘겨받아야 한다.

제40조 (살림집꾸리기)

공민은 살림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농촌살림집에서는 울타리를 문화성있게 치고 주변에는 과일나무를 심으며 집짐승우리와 창고 같은 것을 알뜰하게 꾸려야 한다.

제41조 (살림집의 현판, 문패)

공민은 살림집의 출입문 또는 대문에 층과 호, 살림집리용자의 이름을 밝힌 문패를 달아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호동마다 호동표식판을 붙이며 다층살림집의 현판이나 단층살림집구역의 일정한 곳에 구역,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을 밝힌 현판을 달아야 한다.

제42조 (사용료의 지불)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물어야 한다.

살림집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3조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살림집을 배정하거나 살림집을 2중으로 배정하는 행위
2. 비법적으로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3. 리기적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4. 돈,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살림집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5.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6. 비법적으로 둘이상의 살림집을 하나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
7. 승인없이 살림집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을 파손시키는 행위
8. 살림집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된 장소에 비법적으로 들어가 사는 행위
9. 이사를 가면서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떼가거나 파손시키는 행위
10. 살림집 또는 그 지하에 충격, 진동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승인 없이 살림집가까이에서 폭발물을 터치는 것 같은 행위
11. 담장 또는 울타리를 높게 치거나 터밭을 정해진 면적보다 더 늘이는 행위
12. 그밖에 살림집의 수명과 관리,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장 살림집의 관리

제44조 (살림집관리체계확립)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를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살림집과 그 주변은 언제나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며 살림집의 수명을 늘여야 한다.

제45조 (살림집관리분담)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분담을 정확히 하고 지구별로 담당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담당관리원은 순회점검일지를 갖추고 담당한 지구의 살림집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기록하며 이상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살림집보호)

살림집관리기관은 소화시설, 피뢰시설 같은 살림집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을 늘 정비하여

화재나 자연피해로부터 살림집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7조 (선전 또는 장식용시설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이나 벽체에 선전용 또는 장식용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미화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수 없다.

살림집이나 벽체에 설치하였던 시설을 철수하였을 경우에는 살림집상태를 원상대로 해놓아야 한다.

제48조 (살림집의 보수주기)

살림집관리기관은 정해진 살림집보수주기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살림집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49조 (살림집의 보수분담)

살림집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는 살림집관리기관이, 소보수는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이 한다.

제50조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은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살림집의 보수설계보장)

살림집의 보수는 살림집보수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살림집보수설계를 작성하여 보수에 앞서워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보수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 (살림집의 소보수)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해줄수 있다. 이 경우 공민은 해당한 보수비를 물어야 한다.

제53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영)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살림집의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을 철거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을 철거하거나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이상현상에 대한 통보)

공민은 살림집의 기초가 내려앉거나 벽체, 층막에 금이 생기거나 비가 새거나 상하수도, 난방관이 터진 것 같은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6조 (살림집의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의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관리,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6장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7조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8조 (도시미화의 날 운영)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정한 4월과 10월 《도시미화월간》과 매월 첫주 일요일 《도시미화의 날》에 살림집과 그 주변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과 그 주변을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59조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살림집의 건설과 이관, 인수, 등록, 배정, 리용, 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 (중지 및 원상복구, 변상처벌, 회수)

건설질서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거나 중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시킴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승인없이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이사를 가면서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같은것을 떼가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처벌을 준다.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샀거나 승인없이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살림집을 회수한다.

제6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는 5만~10만원의 벌금처벌을 준다.

1. 살림집건설시공질서를 어겼을 경우
2.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살림집보수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62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건설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건설절차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였을 경우
2. 국가의 살림집건설정책과 도시경영정책의 요구에 맞지 않게 살림집건설승인을 망탕 하였을 경우
3. 살림집건설부지나 건설명시서같은것을 팔고 샀을 경우
4. 정해진 질서와 어긋나게 살림집협동시공계약을 맺거나 파기하는 경우
5. 설계와 시공규정, 공법의 요구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였거나 반복시공으로 로력, 자재, 자금을 낭비하였을 경우
6.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어겼을 경우
7. 살림집배정담보의 명목으로 자금과 자재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었을 경우
8. 조성된 살림집건설자금과 자재를 국가의 재정 및 자재공급체계밖에서 망탕 지출, 처분하였을 경우
9.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준공검사질서를 어겼을 경우
10. 상하수도, 난방, 전기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계획을 정리하지 않아 주민생활과 도시경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살림집의 이관, 인수,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12. 이 법 제43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3. 살림집의 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3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

주체98(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4호로 채택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제1조 (상수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은 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상수도시설은 생활용수를 생산하여 소비대상에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설비이다. 상수도시설에는 물잡이구조물, 뽐프장, 정화구조물, 송수관, 배수관, 맑은물저장 및 조절구조물, 수도관, 소화전과 그 부속설비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상수도시설의 건설원칙)

상수도시설건설을 잘하는 것은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에서 상수도시설건설을 앞세우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상수도시설의 관리원칙)

국가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원칙)

국가는 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수질이 좋은 생활용수를 수요에 맞게 생산, 공급하며 극력 아껴쓰도록 한다.

제6조 (상수도시설의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상수도시설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상수도분야에서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수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다른 법의 적용)

상수도시설의 건설, 관리,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에 따른다.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제9조 (상수도시설건설의 계획화)

상수도시설건설은 생활용수의 보장조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수도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상수도시설건설계획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상수도시설건설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수도시설건설의 선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하려 할 경우 상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켜야 한다.
상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대상건설을 진행할수 없다.

제12조 (상수도시설건설설계)

상수도시설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의 용도, 규모, 능력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상수도시설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수도시설건설에서 설계의 요구준수)

상수도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는 상수도시설건설을 할수 없으며 승인된 설계를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14조 (인입관련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용중에 있는 상수도관에 인입관을 연결하려 할 경우 상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건설감독기관에 인입관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의 합의와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시서를 받지 않고서는 인입관을 연결할수 없다.

제15조 (완공된 상수도시설의 준공검사)

상수도시설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는 합격되지 못한 상수도시설은 상수도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제16조 (새로 건설할 상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완공된 상수도시설을 상수도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합격통지서와 설계도면 같은 상수도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17조 (관리대상이 다른 상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상수도관리기관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대상이 다른 상수도시설을 넘겨주거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수도시설의 관리운영정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거나 받아야 한다.

제18조 (상수도시설의 등록)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수도시설관리체계의 확립)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담당한 상수도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하여 불비한 개소가 나타나았을 경우에는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 준수)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와 그 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1조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바로 정하고 보수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정하는 상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 (상수도시설의 대보수와 유지보수)

상수도시설에 대한 보수는 대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어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대보수, 유지보수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수도시설의 자체보수)

상수도시설을 자체로 관리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4월안으로 상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기술검사 또는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상수도시설의 동파, 부식방지)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상수도시설이 얼어터지거나 부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25조 (상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퇴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수도시설에 사고 또는 고장이 생겼을 경우 상수도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원인을 알아보고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생보호구역의 설정)

상수도시설을 보호하며 수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원지와 배수지, 뽕프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위생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7조 (위생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위생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상수도시설의 관리와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2. 밭을 일구거나 짐짐승을 기르며 땅을 파거나 나무를 찍는 행위
3. 목욕, 빨래, 사냥, 낚시질, 뱃놀이 같은 것을 하는 행위
4. 산업폐수, 생활오수 같은 것이 위생보호구역안으로 흘러들게 하는 행위
5. 금지된 곳으로 관리성원이 아닌 사람이나 배가 나드는 행위
6. 폭발물질, 독약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7. 그밖에 수원을 오염시키거나 수질에 영향을 주며 수원의 물량이 줄어들게 하는 행위

제28조 (수원지, 배수지, 뽕프장과 그 주변의 위생성보장)

상수도관리기관은 수원지, 배수지, 뽕프장과 그 주변을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려과지, 정수탱크, 배수탱크, 뽕프장 같은 상수도시설은 분기에 한번이상 청소 및 소독하며 그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기공구와 작업복은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여야 한다.

제29조 (상수도관리일군과 검진)

수원지와 정화장, 배수지, 뽕프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일군은 분기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보건기관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전염성질병이 있는 일군은 수원지와 정화장, 배수지, 뽕프장 같은 곳에서 일할수 없다.

제30조 (송배수관보호)

상수도관리기관은 중요 송수관, 배수관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뚝 같은 것을 쌓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부터 일정한 구간안에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을수 있다.

제31조 (우물, 졸짱의 관리)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물, 졸짱에 대한 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물과 졸짱은 정상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며 분기에 한번이상 보건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상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

상수도시설을 폐기하거나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상수도관리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상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리유와 생활용수의 보장실태 같은 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상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에 대한 합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제33조 (생활용수생산계획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생활용수의 수요와 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생활용수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생활용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생활용수의 수질기준보장)

상수도관리기관은 생산하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수질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생활용수는 공급할수 없다.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제35조 (수질검사)

상수도관리기관과 보건기관은 생활용수의 수질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정해진 기준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생활용수의 공급)

상수도관리기관은 생산된 생활용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7조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전력보장)

전력공급기관은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전시키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수도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활용수공급)

생활용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40조 (생활용수공급의 일시적인 중지)

상수도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일시 중지하려 할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들에게는 사전에 생활용수공급을 중지하려는 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1조 (생활용수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급받은 생활용수를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생활용수는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42조 (생활용수의 재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여 생활용수를 재리용하여야 한다.

제43조 (생활용수의 도중손실방지)

상수도관리기관은 생활용수의 도중손실을 막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수도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상수도망에서 도중에 생활용수를 뽑아쓰거나 설치된 변들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생활용수의 사용료납부)

생활용수를 리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데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 (상수도사업의 지도)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 (상수도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7조 (과학연구 및 인재양성)

중앙도시경영지도기과노가 해당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상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용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상수도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8조 (상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상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상수도시설관리와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손해보상)

상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폐기, 용도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0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건설질서를 어기고 상수도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사용중에 있는 상수도관에 인입관을 연결하였을 경우
3. 생활용수를 계획대로 생산,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상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폐기, 용도변경하여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상수도시서로간리와 운영에 필요한 보장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7. 제27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어 그 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승인없이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리용하였을 경우

제51조 (형사적책임)

제50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주체111(2022)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5호로 채택

제1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기본

제1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은 시, 군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농촌특유의 문화발전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원칙)

시, 군에 세멘트를 보장해주어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이며 중요정책이다.

국가는 시, 군에 대한 세멘트보장의 계획화와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시, 군에 세멘트를 2022년에 5,000t씩, 2023년부터 해마다 1만t씩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세멘트의 질제고원칙)

국가는 세멘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 및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여 시, 군에 공급할 세멘트의 세기를 200마르까이상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시, 군에 대한 세멘트보장과 련관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

제5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의 구분)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은 세멘트생산계획과 공급계획으로 나누어 세운다. 공급계획에는 수송계획도 포함된다.

제6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의 작성, 시달)

내각과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을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7조 (기초자료제출)

중앙통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과 관련한 계획작성을 위하여 중앙계획지도기관이 요구하는 기초자료를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8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의 수행)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바로하여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수행정정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수행정형을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 상급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수행정형총화)

내각과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통계기관,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중앙육해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수행정형을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제3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생산과 조건보장

제11조 (세멘트생산활성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존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세멘트생산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멘트생산능력조성)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빠른 기간안에 순천, 천내, 승호지구에 각각 연간 200만t, 강동지구에 연간 75만t의 세멘트생산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세멘트공장건설 및 확장)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멘트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이미 꾸려진 생산공정들의 능력을 확장하여 2022년까지 연간세멘트 생산량을 15만~20만t수준으로 늘여야 한다.

제14조 (세멘트생산설비의 정비보강, 현대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멘트공장의 생산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15조 (원료, 설비,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국산화목표를 바로세우고 원료, 설비, 자재의 국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업부산물을 재자원화하여 세멘트부가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원료, 연료보장)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회석광산, 탄광의 생산을 정상화하며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의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최대한 자체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력보장)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송배전기관, 해당 기관은 송전선로들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정비보강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급전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세멘트 생산용전력을 계획대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증소형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자기 지역의 세멘트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재, 설비, 자금보장)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 중앙대의 경제지도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세멘트생산 및 원료보장단위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물동수송보장)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중앙륙해운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세멘트생산부문에 필요한 원료, 설비, 자재를 비롯한 물동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20조 (과학기술적문제해결)

해당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세멘트생산활성화와 생산공정의 개진보수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세멘트생산부문에 필요한 국내외의 선진적인 기술자료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장 시, 군건설세멘트의 공급과 수송, 리용

제21조 (시, 군건설세멘트공급)

내각과 중앙계획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촌문화살림수준이 한심하고 제일 뒤떨어진 국경연선을 비롯한 시, 군부터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모든 시, 군에 세멘트를 계획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군건설세멘트는 시, 군까지 전진공급한다.

제22조 (시, 군건설세멘트수송)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중앙육해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화차, 자동차, 짐배 등 각종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세멘트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눈, 비, 습기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수송도중 세멘트가 못쓰게 되거나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시, 군건설세멘트검수)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세멘트를 싣고 부릴수 있는 화물장과 창고를 능력에 맞게 꾸리고 세멘트가 도착하는 즉시 자기 지역의 로력, 기재, 수단을 총동원하여 제때에 검수받아야 한다.

세멘트검수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수송수단을 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4조 (시, 군건설세멘트리용에 대한 심의)

공급받은 세멘트리용과 관련한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심의한다.

해당 기관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일신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세멘트리용과 관련한 문제를 심의하며 그 정형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시, 군건설세멘트배정)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지역별에 따르는 세멘트배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세멘트를 배정하여야 한다.

시, 군에서는 농촌문화수준이 락후한 농장가운데서 알곡생산계획수행률이 높은 농장부터 먼저 세멘트를 배정해주고 살림집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제26조 (시, 군건설세멘트리용)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세멘트리용순차를 바로 정하고 세멘트를 효과 있게 써야 한다.

세멘트를 농촌살림집건설에 쓰지 않고 문화회관건설이나 도로포장 같은것을 하는데 먼저 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7조 (시, 군건설세멘트보관관리)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세멘트창고를 합리적으로 건설하고 보관관리를 바로하여 한g의 세멘트도 루실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시, 군건설세멘트류용금지)

시, 군에 공급되는 세멘트는 국가적인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며 다른 사업에 절대로 쓸수 없다.

시, 군건설세멘트를 재해구조, 복구에 쓰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9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조직사업에 대한 복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에 세멘트를 보장하기 위한 내각의 조직사업에 무조건 복종 하여야 한다.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내각의 조직사업에 불응하거나 도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 (법적감시)

검찰기관은 시, 군건설세멘트의 계획화사업과 생산 및 조건보장, 공급, 소비정형에 대한 법적감시를 강화하여 세멘트생산에 지장을 주거나 세멘트를 비법처분, 류용, 량비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단속통제)

사회안전기관은 철도역, 화물장, 항 또는 부두, 보관창고, 세멘트생산 및 공급 단위에 대한 순찰과 검열단속사업을 강화하여 세멘트를 훔치거나 밀매하는자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엄격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시, 군건설세멘트생산과 공급계획시달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2. 시, 군건설세멘트생산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전량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3. 품질감독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질이 보장되지 않은 세멘트가 출하되게 하였거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세멘트를 시, 군에 공급하였을 경우
 4. 시, 군건설세멘트생산 및 공급정형에 대하여 거짓보고하였을 경우
 5. 조건보장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시, 군건설세멘트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수송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여 시, 군건설세멘트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시, 군건설세멘트수송 및 보관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세멘트를 못쓰게 만들었거나 루실, 분실하였을 경우
 8. 시, 군건설세멘트를 자의대로 다른 부문에 빼돌리거나 배정된 세멘트를 비법처분, 류용, 낭비하였을 경우
 9. 세멘트검수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수송수단을 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하였을 경우
 10. 법적감시와 감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세멘트보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앞항 1~10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3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

주체110(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채택

제1장 시, 군발전법의 기본

제1조 (시, 군발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은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우리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시, 군의 위치와 역할)

시, 군은 우리 당정책의 말단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이다.

제3조 (시, 군발전의 기본원칙)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것은 우리 국가의 총적목표이다.

국가는 모든 시, 군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발로 걸어나가며 정치와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우리 공화국특유의 발전면모와 자기 지역의 특성이 응축된 지방도시,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시키도록 한다.

제4조 (국가적투자와 지도방조강화원칙)

시, 군강화이자 국력강화이며 시, 군발전이자 우리 국가의 부흥이다.

국가는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시, 군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특혜조치도 취해주면서 국가적인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 (해당 법규의 적용)

시, 군발전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

제6조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화사업의 기본요구)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은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

의 중요한 전망목표이며 계획이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시, 군급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기관, 기업소, 단체라고 함.)는 자기 지역,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전망목표와 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작성을 위한 군중토의사업)

시, 군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작성을 위한 군중토의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군중토의과정에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 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책임일군모임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야 한다.

제8조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초안작성과 승인)

시, 군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시, 군발전정책과 군중토의과정에 제기된 의견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전망목표초안을 작성하여 시, 군인민회의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발전전망목표초안에는 시, 군발전의 기본방향과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 경제적특성에 맞게 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문제, 지방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시, 군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및 집행)

시, 군인민위원회는 경제발전전망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년차별계획을 세워 시, 군인민회의 또는 그 휴회중에 인민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하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 및 계획의 조절변경)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을 자의대로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자기 지역,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시, 군인민회의 또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장악과 대책)

시, 군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수행정형을 시, 군인민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상반년, 년간으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경제발전

제1절 지방공업의 발전

제13조 (모범지방공업군칭호쟁취운동)

시, 군인민위원회는 모범지방공업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간장, 된장, 먹는기름, 학습장, 빨래비누 등 1차소비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어린이영양식품과 일용잡화, 건재상품을 비롯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적특성에 맞는 지방공업공장, 기업소건설과 생산활성화)

시, 군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공업공장, 기업소를 잘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하며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자기 군을 상징할수 있는 명상품, 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15조 (인민생활과 직결된 공장의 우선적발전)

시, 군인민위원회는 기초식품공장, 식료공장과 같은 인민생활과 직결된 공장부터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공장을 최첨단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자기 지역안의 모든 지방공업공장을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꾸리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17조 (중소형발전소건설)

시, 군인민위원회는 과학적인 조사자료와 설계에 기초하여 지역안의 강하천들에 중소형발전소를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공장의 생산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주민조명 등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

시, 군인민위원회는 풍력과 조수력, 지열, 태양열 등 자연에네르기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한다.

제19조 (인민소비품의 질보장)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생산제품의 질등급관계를 분기에 한번씩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소비품전시회, 품평회, 경험발표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제20조 (인민소비품종확대)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206가지의 일용잡화, 102가지 건재상품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하는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분기에 한번씩 종합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찾는 상품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인민소비품종을 적극 늘여야 한다.

제21조 (재배원료기지조성)

시, 군인민위원회는 재배원료기지를 200정보이상 조성하고 기름작물과 섬유작물, 향료작물, 당작물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연원료기지조성)

시, 군인민위원회는 수유나무림 500정보, 종이원료림 200정보를 조성하는것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의 원료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자연원료기지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국산화목표를 바로세우고 국제적인 품질기준에 맞게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자원화와 수매사업)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및 건설, 경영활동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나오는 폐기폐설물, 오물 등 재자원화할수 있는 원천을 남김없이 찾아내어 최대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수매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

시, 군인민위원회는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수 있게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6조 (자연지리적유리성과 자연부원의 효과적 리용)

시, 군인민위원회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며 관광을 할수 있는곳에서는 관광을 하는것을 비롯하여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유리성과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특산물, 특산품의 보호, 장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지방의 특산물, 특산품을 보호, 장려하여 지방경제발전에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로력자원의 효과적리용)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역안의 로력자원과 로력원천을 정확히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로력배치와 조절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 군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을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와의 합의없이 자의대로 동원, 리용할수 없다.

제29조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2절 농촌경리의 발전

제30조 (시, 군농업지도기관의 임무)

시, 군농업지도기관은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영농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와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짜고들어 농업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제31조 (농장의 임무)

농장은 부침땅의 지력과 리용률을 높이고 선진영농기술과 집약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알곡 및 축산물생산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농업발전의 5대요소와 식량문제해결)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 해당 기관은 국가의 농업정책에 맞게 종자혁명과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농업부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높이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33조 (토지의 효과적리용)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토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농촌주민지와 생산시설물 등을 옹게 배치하고 부침땅과 포전물길, 구조물을 규모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높

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여야 한다.

제35조 (다수확운동)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알곡을 정보당 10t이상 내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 단위와 농장원대렬을 늘여나아가야 한다.

제36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제고)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로력일 평가사업을 바로하여 농장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물질적부가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국가알곡수매계획을 망탕 변경시키거나 수매계획을 빗대고 평균주의를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농촌지원 및 농업생산저해행위금지)

시, 군인민위원회는 농사를 잘 짓는데 총집중, 총동원하는 원칙에서 지역안의 모든 로력을 주요영농 시기별로 농촌지원에 동원하며 중소농기구지원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영농물자보장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업부문, 농업과학연구부문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류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부업지, 원료기지에서의 농산물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리용하는 부업지와 원료지에서 두벌농사, 감자농사, 콩농사에 힘을 집중하며 정보당수확고를 높여 농업생산물을 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부업지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농산물자체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온실남새와 버섯생산)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남새온실과 버섯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생산의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와 버섯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과수업발전)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야산과 산기슭을 비롯한 과수적지와 농촌마을의 집집마다 기후 풍토에 맞으면서도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과일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41조 (축산업발전)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군중적운동으로 풀판을 조성하고 염소, 양, 토끼 등 풀 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고기와 젓생산량을 늘이며 농장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42조 (수산업발전)

시, 군인민위원회는 바다를 낚는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할데 대한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수역의 특성에 맞게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바다가양식과 세소어업을 발전시켜 바다나물과 조개, 물고기 등 수산물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43조 (양어기지운영)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양어기지를 꾸리고 양어에서 로력절약형, 부지절약형, 물질약형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바다양어, 그물우리양어, 논판양어 등을 널리 전개하여 물고기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44조 (뽕밭조성과 누에고치생산)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야산과 산기슭을 비롯한 비경지에 뽕밭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뽕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누에고치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3절 국토환경보호 및 도시경영의 발전

제45조 (국토환경보호모범군칭호쟁취운동)

시, 군인민위원회는 군을 국토환경보호모범군으로 만들기 위한 전망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장악지도사업을 짜고들어 산림조성과 도로건설, 하천정리, 환경보호 등 국토건설과 관리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보호 및 관리)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등 지역안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조사등록하며 토지보호 및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제47조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

시, 군인민위원회는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양묘장을 실리있게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며 용재림, 경제림, 보호림, 풍치림, 땀나무림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자기 지역의 산들을 푸른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48조 (림농복합경영)

시, 군인민위원회와 산림경영기관, 농업토지관리기관은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지적수,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나무심기과제와 농산물생산과제를 바로 정해주며 산림토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알곡생산을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도로 및 철길관리)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역안의 전반적인 도로와 철길, 그 주변실태를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도로와 철길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된 구간의 길닦기와 자갈추기, 나무심기, 꽃밭조성, 잔디입히기, 표식물설치, 살림집 및 공공건물정리, 도로청소 등 도로와 철길, 그 주변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50조 (강하천정리, 해안시설물건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안의 강하천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 등록하고 갑문건설, 강하천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강바닥파기, 배길관리 등 강하천정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해안방조제, 방파제를 비롯한 시설물을 태풍과 해일에도 끄떡없게 건설, 보강하여야 한다.

제51조 (환경보호)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유해가스, 먼지, 산업폐수, 생활오수, 소음 등 공해요소를 측정하고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오물처리공장과 오수정화장을 비롯한 환경보호시설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살림집, 공공건물, 상하수도, 난방시설보수와 관리)

시, 군인민위원회는 살림집, 공공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대보수를 주기에 맞게 진행하여 건물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상하수도과 난방시설의 보수와 관리를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하며 하수처리능력을 보장하고 열생산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53조 (모범원림군칭호쟁취운동)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의 수림화, 원림화, 공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모범원림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안에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어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 (도시미화)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안의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 등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하여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일터를 알뜰히 꾸려야 한다.

제55조 (비상설도시경영위원회운영)

시, 군인민위원회는 비상설도시경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자기 지역의 도시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4절 지방건설 및 지방운수의 발전

제56조 (지방건설)

시, 군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지방건설정책에 기초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반드시 건설해야 할 대상을 기본으로 하여 지방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설계연구소와 건설전문단위를 꾸리고 인원과 설계수단, 건설장비, 기공구 등을 갖추어주어 건설의 전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57조 (시, 군소재지건설)

시, 군인민위원회는 시, 군소재지를 산골군은 산간도시맛이 나게, 해안지역군은 해안도시맛이 나게 하면서도 현대문명이 응축되게 도시건설총계획을 작성하고 년차별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건물과 교육기관, 보건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물을 조화롭고 특색있게 배치하며 설계와 시공,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58조 (농촌마을건설)

시, 군인민위원회는 농촌마을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망계획을 세우고 년차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농촌마을을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하며 수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59조 (건재생산기지건설)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자기 지역의 흔한 원료와 자재로 건설에 필요한 질 좋고 다양한 건재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 (려객 및 짐수송)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편리에 맞게 자동차와 배에 의한 렬객수송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짐수송을 짜고들어 지역안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 (농촌빠스화)

시, 군인민위원회는 농촌빠스화를 실현할데 대한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산간벽촌에 있는 리에까지 빠스운행을 정상화하여 농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절 상업류통과 지방무역의 발전

제62조 (상업망의 합리적배치와 정보화, 과학화)

시, 군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상업망배치원칙에 기초하여 지역안의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상업경영활동을 정보화, 과학화하여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 (상업봉사)

시, 군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상업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4조 (사회급양사업)

시, 군인민위원회는 사회급양망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개진하고 새로운 급양시설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사회급양기관, 기업소는 음식물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강습, 요리경연, 음식물품평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사회급양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65조 (편의봉사사업)

시, 군인민위원회는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수선편의, 리용편의 등 편의봉사망을 꾸리고 봉사업종을 다양하게 늘이며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여야 한다.

제66조 (지방무역의 활성화)

시, 군인민위원회는 원천동원기지,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한해에 50만~100만외화원이상 벌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모든 무역활동을 도무역관리기관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역관리기관은 시, 군이 번 외화를 시, 군발전에 리용할 수 있게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4장 지방문화발전

제67조 (지방문화발전의 기본요구)

시, 군은 사회주의문화혁명수행의 중요한 거점이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대적 요구와 문명의 높이에 맞게 교육, 과학, 보건, 체육사업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68조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

시, 군인민위원회와 교육기관은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9조 (교원진영강화와 자질향상)

시, 군인민위원회와 교육기관은 교종별교원구성실태와 부족되는 교원수를 반년에 한번씩 료해하고 교원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교육기관은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인 시범교수, 학술토론회, 경험발표회, 교수경연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70조 (학교건설과 후원사업)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방자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학교와 학생소년화관을 비롯한 과외교양거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주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학교를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도록 하며 후원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제71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시, 군인민위원회는 미래원을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거점으로 꾸리고 모든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키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 (인재관리 및 양성)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발전의 기본자원이며 귀중한 역량인 경영인재, 관리인재,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내세워주며 자체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시, 군의 인재들을 망탕 소환하여 시, 군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73조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

시, 군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은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예방사업과 위생문화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74조 (의사담당구역제)

시, 군인민위원회는 치료예방기관들의 담당구역분담안과 의사배치안을 년에 한번씩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회하는것을 제도화하며 의사담당구역제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75조 (의료봉사의 질개선)

시, 군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은 선진적인 진단, 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의학과 고려

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완비하고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제76조 (의료봉사거점)

시, 군인민위원회는 병원과 진료소를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거점답게 현대적으로 꾸리고 물질적보장사업과 위생방역사업을 잘하며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켜야 한다.

제77조 (고려의학의 발전)

시, 군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은 고려의학부문의 의료일군대렬을 늘이고 고려치료를 전문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을 끼고있는 시, 군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은 300정보의 약초산과 10정보의 약초채종기지를 조성하며 가치있는 민간료법들을 치료예방사업에 널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약초자원을 적극 찾아내어 효능 높은 고려약을 만들어야 한다.

제78조 (민족유산보호사업)

시, 군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력사유적유물과 우수한 민족음악, 민족무용, 민족음식, 민족체육, 이름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등 민족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제79조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

시, 군인민위원회는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체육사업을 개선하여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

제80조 (군중문화예술활동)

시, 군인민위원회는 문화회관을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과 문화정서생활의 거점답게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다양하게 벌려 혁명적량만과 정서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제81조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정신문화적으로 개명시키고 정책적으로 무장시키며 농촌을 현대적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장과 농업근로자는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자기가 사는 마을과 살림집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제82조 (농촌기술력량의 강화)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야간교육과 원격교육, 이동강습, 단기강습, 농업 직업기술학교운영 등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현실성있고 효과적인 교육체계와 수단,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의 기술력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3조 (농업과학기술보급)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농장농업과학기술보급실, 작업반농업과학기술선전실을 꾸리고 실속 있게 운영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주인답게 농사와 관련한 과학기술지식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 (붉은기동, 인민반칭호쟁취운동, 모범가정창조운동)

시, 군인민위원회는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인민반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붉은기동, 인민반칭호쟁취운동과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가정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제85조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확립하며 자기 지역, 자기 단위를 범죄와 위법행위가 없는 안정된 지역, 안정된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제5장 시, 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지원

제86조 (시, 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지원의 기본요구)

시, 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시, 군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시, 군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며 시, 군의 자체발전을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지어주고 투자와 지원을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7조 (시, 군인민위원회의 지도사업개선)

시, 군인민위원회는 계획화사업과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사업, 교육과 보건, 국토관리와 도시경영사업을 비롯한 지역안의 경제, 문화사업전반에 대한 작전과 지휘, 지도를 부단히 개선 하여야 한다.

제88조 (시,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제고)

시,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수준과 능력을 높이고 지방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제89조 (모범적인 시, 군에 대한 소개선전강화)

내각과 출판보도기관은 모범적인 시, 군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강화하여 경쟁열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 (시, 군권한부여)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는 시, 군이 자체로 일떠서고 발전해나갈수 있게 권한을 주고 해당한 실무적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해당 시, 군인민위원회와 합의없이 자원을 망탕 개발, 리용, 동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91조 (세멘트생산보장)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매 시, 군에 해마다 1만t의 세멘트가 차례 질수 있게 200만t의 세멘트를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하여 지방건설을 다그치게 하여야 한다.

제92조 (지방공업의 본보기창조와 일반화)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는 현대화수준과 위생환경, 실리적건지 등 모든 면에서 표준, 기준으로 될수 있는 지방공업공장을 꾸려주고 일반화하여야 한다.

제93조 (영농설비, 자재, 자금보장, 지방유지금 납부)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농업지도기관, 도인민위원회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농촌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전기, 화학비료, 연유, 트랙도르부속품을 비롯한 영농설비와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지역살림살이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지방유지금납부률을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인민생활수준, 인구밀도, 수입액수준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군예산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지방유지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4조 (농촌진지의 강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촌출신제대군인을 비롯한 제대군인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농촌에 많이 파견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농촌로력이 다른 부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농장지역에 거주하고있는 로동자, 사무원부양가족들을 농장에 배치해주어 농촌 진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95조 (농업과학발전)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종자문제, 영농기술문제, 종합적기계화문제 등 국가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절실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완성하여 시, 군의 농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96조 (시, 군인민위원회의 조직사업에 의무적 참가)

시, 군지역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지원, 비상재해위기대응, 국토관리, 도

시경영, 주민행정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 군인민위원회가 조직하는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97조 (시, 군발전저해행위금지)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은 시, 군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거나 시, 군의 로력과 자금, 물자를 자의대로 동원시켜 시, 군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시, 군의 로력과 자금, 물자를 동원한 경우에는 시, 군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

주체99(2010)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14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원림법의 기본

제1조 (원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은 조성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원림의 정의)

원림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식물로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놓은 녹화지역이다.

원림에는 공원, 유원지, 도로와 건물주변의 녹지, 도시풍치림, 환경보호림, 동식물원, 온실, 양묘장, 화포전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원림계획의 작성, 실행원칙)

원림계획을 바로세우는 것은 도시원림화정책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전국의 도시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원림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제4조 (전인민적인 원림조성 및 보호관리원칙)

원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은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원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원림부문의 투자를 늘일데 대한 원칙)

국가는 원림부문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6조 (기술자, 기능공양성 및 과학연구사업강화원칙)

국가는 원림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원림부문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원림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원림의 조성

제8조 (원림조성의 기본요구)

원림조성은 승인된 원림계획에 따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9조 (원림계획작성기준)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은 원림계획작성의 기준이다.

원림계획작성기관은 도시건설정책에 기초하여 원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원림계획의 구분)

원림계획은 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으로 나눈다.

원림총계획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또는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세부계획은 원림총계획에 따라,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제11조 (원림총계획과 세부계획의 작성기관)

원림총계획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원림총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해당 도시경영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제12조 (원림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원림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유원지, 정원, 걸음길록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거리형성에 맞게 가로수와 록지, 꽃밭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도시환경보호의 요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원림총계획과 세부계획의 승인)

평양시와 도소재지의 원림총계획은 내각이 승인하며 시, 군원림총계획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승인한다.

제14조 (도시와 마을의 원림조성)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리며 살림집구획안에 록지를 규모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원과 유원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생울타리, 잔디밭, 꽃밭 같은 것을 조성하며 그와 어울리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 문화오락시설, 봉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원림 조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덩굴식물 같은 것을 심어 록화면적을 늘이며 유해가스와 먼지, 소음이 많이 나는 산업지구와 공장, 기업소주변에는 환경보호림, 소음막이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정휴양소구내의 원림 조성)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휴양소, 료양소, 정양소구내와 그 주변에는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의 교육과 문화휴식, 건강증진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록음이 우거지게 하며 여러 가지 꽃나무와 약초도 심어야 한다.

제17조 (강하천, 철길주변의 원림 조성)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안의 강하천기슭, 철길주변에 환경보호와 재해방지역할을 하는 풍치림을 조성하며 경사가 급한 곳에는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지피식물을 심어야 한다.

제18조 (건설대상의 원림 조성)

대상건설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이 끝나면 구획정리단계에서 원림조성을 원림계획대로 하여야 한다.

원림조성을 하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검사는 할수 없다.

제19조 (원림식물의 사름률보장)

원림을 조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식물을 심은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사름률을 보증하여야 한다.

사름률보증기간에 죽은 원림식물에 대하여서는 원림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20조 (원림관리구역안에서의 건물, 시설물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관리구역안에 건물, 시설물,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자연풍치와 지형지물에 어울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나무모와 꽃모, 지피식물의 생산보장)

도시경영기관은 채종장, 양묘장, 화포진, 온실 같은 것을 잘 꾸리고 원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와 꽃모, 잔디, 지피식물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나무모와 꽃모, 꽃종자, 잔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동물원, 식물원의 공원화)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동물원과 식물원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공원화하여 동물원과 식물원이 동식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교양기지, 문화휴식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원림의 관리

제23조 (원림관리의 기본요구)

원림의 관리는 도로주변, 살림집지구, 공공장소 같은 곳의 풍치를 아름답게 꾸리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시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제24조 (원림관리구역의 분담)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원림관리기업소의 전문관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군중관리를 옹계 배합할수 있게 m²당관리제의 원칙에서 원림관리구역을 바로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원림의 등록)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관리구역안의 원림과 원림관리시설을 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원림관리구역안의 원림과 원림관리시설을 폐기할수 없다.

제26조 (원림의 정상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관리구역안의 록지와 나무에 대한 물주기, 김매기, 모양만들기 같은 원림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병충해의 방지)

도시경영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높은 농약과 생물학적방법, 현대적인 기술자입 같은 것을 연구도입하여 병해충의 피해를 미리 막으며 원림관리구역에 대한 병해충예찰체계를 세워 발생한 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28조 (원림의 보호)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원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원림관리구역안의 나무를 찍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 록지구역을 다른 용도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공원, 유원지에서의 봉사활동)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원림관리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원림관리구역안에서는 승인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수종을 바꾸거나 나뭇가지, 꽃을 꺾는 행위
3. 나무와 잔디를 뜨거나 열매, 종자를 따는 행위
4. 관상용동식물을 잡거나 채집하는 행위
5. 록지를 못쓰게 만드는 행위
6. 원림관리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7. 농작물을 심는 행위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1조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시경영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2조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원림조성과 관리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 (원림조성과 관리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해당 기관은 원림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비료, 농약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원림법규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5조 (원상복구의무)

원림구역안에서 공사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사가 끝나면 곧 원림구역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원림계획을 바로 작성하지 않아 도시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원림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원림조성을 되는대로 하여 원림식물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고 손해를 주었을 경우
4. 원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와 꽃모, 잔디, 지피식물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지 못하여 원림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분담받은 구역에 대한 원림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원림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6.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원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7. 이 법 제30조의 금지사항을 어기었을 경우

제37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

주체87(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호로 채택
주체105(2016)년 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79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5호로 수정보충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제1조 (주민연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은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연료사업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주민연료의 정의)

주민연료는 주민생활보장에 쓰이는 연료이다.
주민연료에는 석탄, 석유, 가스, 땃나무 등과 그 대용연료가 속한다.

제3조 (주민연료의 확보원칙)

주민연료를 충분히 확보하는것은 주민연료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주민연료의 공급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켜나가도록 한다.

제4조 (주민연료수송원칙)

주민연료의 수송은 주민연료사업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주민연료수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확보된 주민연료를 제때에 수송하도록 한다.

제5조 (주민연료공급원칙)

국가는 주민연료공급대상과 기준을 바로정하고 주민연료를 제때에 골고루 공급하도록 한다.

제6조 (주민연료의 생산, 공급계획화원칙)

국가는 주민연료의 생산, 공급계획을 수요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한다.

제7조 (주민연료절약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민연료를 아껴 쓰도록 한다.

제8조 (주민연료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주민연료봉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제9조 (주민연료확보의 기본요구)

주민연료의 확보는 주민연료원천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주민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연료생산계획의 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주민연료생산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연료기업소의 조직)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을 위하여 해당 법규에 따라 주민연료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12조 (탄광에서 주민용석탄보장임무)

국가계획기관과 석탄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용석탄을 보장하는 탄광을 바로 정하고 주민용석탄보장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해당 탄광은 계획된 주민용석탄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중소탄광개발)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중소탄광을 내오고 주민용석탄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매장량이 부족한 중소탄광은 모체탄광의 현행 및 전망채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확장 또는 위치변경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중소탄광개발 또는 확장, 위치변경과 관련한 토지리용허가, 자원개발승인 등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4조 (주문계약에 의한 주민용석탄확보)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로 공급할 석탄이 부족되는 경우 해당 탄광과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주민용석탄을 확보할수 있다.

제15조 (초무연탄, 니탄, 저열탄, 버럭선별탄, 연재의 확보)

지방인민위원회는 초무연탄, 니탄, 저열탄, 버럭선별탄, 연재를 주민연료로 확보하고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력발전소와 석탄을 연료로 하는 공장, 기업소에서 나오는 연재를 주민연료로 리용할수 있게 계획화하여 주민연료

기업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6조 (석유, 가스의 확보)

국가계획기관과 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용석유, 가스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기업소는 주민연료보장을 위하여 석유, 가스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고 구입할수 있다.

제17조 (땃나무의 확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땃나무림지를 바로정하고 빨리 자라면서도 땃감에 좋은 나무종자를 심어 땃나무림을 적극 조성하며 그 보호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땃나무림의 조성과 보호를 위하여 주민세대당책임제, 기관, 기업소담당책임제를 실시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림업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나무채벌과정에 나오는 초두, 아지를 전량 회수하여 주민연료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연료의 수공급계약)

주민연료기업소는 계획에 기초하여 석탄, 석유, 가스를 비롯한 연료생산기관, 기업소와 수공급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주민연료를 정확히 넘겨주거나 넘겨받아야 한다.

제3장 주민연료의 수송

제19조 (주민연료수송의 기본요구)

주민연료를 제때에 수송하는것은 주민연료의 공급을 원만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교통운수기관,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수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주민연료를 계획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주민연료수송계약의 체결 및 리행)

주민연료기업소는 주민연료수송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교통운수기관과 주민연료수송계약을 맺고 주민연료를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주민연료의 수송조직)

주민연료는 기차, 자동차, 배로 수송한다.

해당 교통운수기관은 주민연료수송을 위한 운수수단보장과 수송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민연료수송용연유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수송에 필요한 연유를 계획화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주민용석탄집중수송월간)

국가계획기관과 교통운수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5~7월과 9~11월을 주민용석탄집중수송 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주민용석탄을 집중적으로 수송하여 주민연료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주민연료의 인계인수)

교통운수기관은 수송한 주민연료를 주민연료기업소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수송도중 주민연료의 손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운수기관이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4장 주민연료의 공급

제25조 (주민연료공급의 기본요구)

주민연료공급을 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주민연료공급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주민연료공급기관)

주민연료공급은 그 대상에 따라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민세대와 지방인민위원회에 등록된 비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주민연료의 공급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따로 정한 대상에 대한 주민연료의 공급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27조 (주민연료공급정형의 등록)

주민연료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대장을 갖추고 공급정형을 세대별, 단위별로 정상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수, 종업원수, 살림집 또는 건물형식, 난방조건, 방수, 사용할 연료의 종류 등을 정확히 밝힌다.

제28조 (주민연료공급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주민연료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료공급등록신청문건을 지방인민위원회에 내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 (주민연료의 공급기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은 주민연료공급기준을 바로 정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를 정해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주민연료의 공급방식)

주민세대에는 주민연료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공급하거나 집중적으로 공급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주민연료를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제31조 (구멍탄, 착화탄, 연소첨가제생산 및 공급, 판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멍탄공장과 석탄연소첨가제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구멍탄, 착화탄, 연소첨가제를 생산하여 공급 또는 팔아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땀감상점운영)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지역마다 땀감상점을 내오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주민연료공급소의 배치)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공급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주민연료공급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주민연료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를 자체로 생산, 수입, 판매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의 합의 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연료의 생산, 수입, 판매정형은 분기 1차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수송, 공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 (주민연료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교통운수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수송,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사업에 종사하는 로력은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37조 (연소효율과 대용연료의 연구개발)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의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대용 연료를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 개발된 기술과 대용연료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38조 (전력을 리용한 난방, 취사)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력,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는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세대의 난방, 취사 같은것을 전력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며 도시와 농촌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오물, 농부 산물, 짐짐승배설물같은것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주민연료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제39조 (주민연료사업의 성과와 경험소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사업에 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40조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 보관,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주민연료의 수송설비, 보관용기 같은 것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 (연료공급의 중지)

주민연료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주민연료공급을 중지할수 있다.

제43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1. 주민연료의 생산, 공급계획작성과 그 실행을 바로하지 않아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주민연료보장탄광에서 주민용석탄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지 않아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주민용석유, 가스를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지 않아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땀나무림지를 정하는 사업, 주민세대당책임제, 기관, 기업소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사

- 업을 바로하지 않아 땀나무림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주민연료수송질서를 어겨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주민연료공급질서를 어겨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구명탄공장, 땀감상점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주민연료를 생산, 수입, 판매하였을 경우
 9. 그밖에 주민연료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제44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주체103(2014)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4호로 채택
주체108(2019)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호로 수정보충

제1장 편의봉사법의 기본

제1조 (편의봉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은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편의봉사란 인민들의 문화후생적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사회적봉사의 한 형태이다.

편의봉사에는 위생편의봉사, 리용편의봉사, 가공편의봉사, 수리수선편의봉사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편의봉사망의 조직원칙)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늘어나는 편의봉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편의봉사망을 인민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주민지대 또는 주민지대가끼이에 조직하도록 한다.

제4조 (편의봉사망의 운영원칙)

편리성과 문화성, 위생성,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편의봉사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편의봉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편의봉사망의 운영에서 편리성과 문화성, 위생성, 봉사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편의봉사업종의 확대원칙)

국가는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하게 보장할수 있게 편의봉사업종을 끊임없이 확대하도록 한다.

제6조 (편의봉사일군의 활동원칙)

편의봉사일군은 영예로운 인민의 복무자이다.

국가는 편의봉사일군들이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편의봉사활동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한다.

제7조 (과학연구 및 기술자, 기능공양성원칙)

국가는 편의봉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 (편의봉사부문 발전원칙)

국가는 인민들의 편의를 위한 봉사업종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며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편의봉사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9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법규의 적용)

이 법은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개별적기관, 기업소, 단체의 편의봉사사업도 이 법에 따라 한다.
편의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편의봉사망의 조직

제10조 (편의봉사망의 조직기관)

편의봉사망의 조직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망을 자기 지역의 인구수와 업종별특성, 리용에 편리하면서도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게 합리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봉사계획)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현존편의봉사능력을 최대한 리용하며 업종들사이의 종합적균형, 세부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12조 (편의봉사망의 건설계획)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살림집건설계획에 필요한 능력의 편의봉사망건설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중요 대상의 편의봉사망건설계획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편의봉사망설계의 작성, 승인)

편의봉사망의 건설설계는 대상에 따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작성한 설계는 정해진 설계심의승인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편의봉사망의 배치)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와 류동인구수, 교통발전 정도, 도시와 농촌의 발전전망,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 같은 편의봉사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타산한데 기초하여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봉사업종의 확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편의봉사수요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장악하며 그것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봉사업종을 늘여야한다.

제16조 (편의봉사망의 이설)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망을 전문 편의봉사단위가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편의봉사망을 넘겨주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편의봉사망의 능력조성)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망의 능력을 인민들의 수요와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 (편의봉사망의 등록)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통계기관은 편의봉사망의 등록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전문편의봉사단위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편의봉사시설을 부문별로, 종합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봉사실의 꾸리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실, 대기실, 휴게실 같은 봉사시설을 손님들이 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편의봉사원들이 작업능률을 높일수 있게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하게 꾸려야 한다.

제20조 (편의봉사원의 자격)

편의봉사원으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높으며 편의봉사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 자격을 가졌거나 해당 업종에서 일정한 기간의 견습과정을 거친자만이 될수 있다.

제21조 (간판 및 건물장식)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판설치와 건물장식을 인민들의 편의보장과 업종별특성, 건물의 규모,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미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편의봉사활동 및 영업허가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종업원들을 위한 편의봉사시설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전문편의봉사단위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편의봉사시설을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편의봉사영업승인신청문건을 해당 시, 군인민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낸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봉사업종, 봉사능력, 봉사시설위치,

조직근거 같은 것을 밝힌다.

제23조 (영업허가신청문건의 심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영업허가신청문건을 받은날부터 30일안으로 봉사운영조건과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고 영업을 허가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편의봉사영업허가와 관련한 정형은 중앙상업지도기관에 보고한다.

제24조 (영업허가증의 발급기관)

편의봉사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로부터 편의봉사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편의봉사활동을 할수 없다.

제25조 (봉사활동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활동을 승인받은 봉사업종과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제3장 편의봉사망의 운영

제26조 (편의봉사망운영의 기본요구)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편의봉사 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봉사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제27조 (편의봉사망의 정상운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시설을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자재보장을 앞세워 편의봉사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 (편의봉사망의 위생문화적관리)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업종의 특성에 맞게 환경위생을 잘 지키며 설비, 비품, 도구에 대한 소독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봉사료금의 제정과 적용)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가를 보상하고 일정한 소득이 조성되게 하는 원칙에서 봉사료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제30조 (편의봉사조직)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편익에 맞게 봉사시간과 쉬는날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편의봉사방법의 다양화)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봉사와 함께 여러 가지 보조봉사와 보충봉사를 옹계 배합하며 주문봉사, 이동봉사, 우선봉사, 초청봉사 같은 다양하고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봉사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제32조 (봉사의 질제고)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시설을 현대화하고 편의봉사원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수리보증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보증제를 도입하여 봉사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33조 (편의봉사계약)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받는자와 계약을 맺고 봉사를 할수 있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에 따라 봉사를 제공하며 봉사를 제공받은자는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제34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한 책임을 진다.

1. 잘못 봉사한 결과를 회복할수 없을 경우
2. 계약과 어긋나게 봉사하였을 경우
3. 봉사과정에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
4. 봉사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불편을 주었을 경우
5. 신용 및 수리보증기일을 어겼을 경우
6. 봉사공정을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제35조 (편의봉사활동정형 등록)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접수대장, 봉사일지 같은 편의봉사업무계산문건을 갖추고 봉사활동정형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 (가내편의봉사)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내편의 작업반을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편의작업반의 작업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7조 (우선봉사)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교원, 과학자 같은 사회적으로 우대하여야 할 대상들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38조 (봉사업종과 지표의 변경, 봉사중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거나 편의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편의봉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편의봉사사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0조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편의봉사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 (편의봉사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사용자재와 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정확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2조 (타사업동원금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부문의 로력과 자재, 자금을 편의봉사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편의봉사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민사적책임)

편의봉사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것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파괴하였거나 제 34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보상 또는 원상복구시킨다.

제4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영업허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비법적으로 편의봉사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4. 봉사료금을 망탕 적용하였을 경우
5. 업종에 어긋나게 봉사를 하였을 경우
6. 편의봉사시설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7. 해당 자격이 없는자가 봉사하였을 경우
8. 편의봉사시설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9.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추지 않거나 위생성을 보장하지 않고 봉사를 하였을 경우
10. 편의봉사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편의봉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켰을 경우
11. 이밖에 편의봉사법규를 어겼을 경우

제46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

주체98(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6호로 채택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제1조 (하수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은 하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버림물의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하수도시설은 생활오수, 산업폐수, 비물 같은 버림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설비이다.

하수도시설에는 오수망, 우수망, 뿔프장, 정화장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하수도시설건설원칙)

하수도시설건설은 잘하는 것은 버림물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에서 하수도시설건설을 앞세우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하수도시설관리의 과학화, 현대화원칙)

국가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세우며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하수도시설의 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 (버림물의 처리원칙)

버림물의 처리는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오수망, 우수망, 정화시설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버림물을 제때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하수도시설의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하수도시설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과학연구 및 기술자, 전문가양성)

국가는 하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버림물의 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하수도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 (다른 법의 적용)

하수도시설의 건설, 관리, 버림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제9조 (하수도시설건설의 계획화)

하수도시설건설은 버림물의 처리조건을 갖추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수도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수도시설건설계획의 작성)

하수도시설건설계획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처리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하수도시설 건설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수도시설건설의 선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하려 할 경우 하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켜야 한다.

하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대상건설을 진행할수 없다.

제12조 (하수도시설건설설계)

하수도시설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의 용도와 규모, 능력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하수도 시설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해당 하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한다.

제13조 (하수도시설건설에서 설계의 요구준수)

하수도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수도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는 하수도시설을 건설할수 없으며 승인된 설계를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14조 (인입관련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용중에 있는 오수관에 인입관을 연결하려 할 경우 하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은 하수도시설의 능력을 정확히 따져보고 인입관건설과 관련된 합의를 하거나 건설명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의 합의와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사서가 없이는 인입관을 연결할수 없다.

제15조 (완공된 하수도시설의 준공검사)

하수도시설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하수도시설은 하수도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제16조 (새로 건설한 하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완공된 하수도시설을 하수도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17조 (관리대상이 다른 하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하수도관리기관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대상이 다른 하수도시설을 넘겨 주거나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정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거나 받아야 한다.

제18조 (하수도시설의 등록)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하수도시설관리체계의 확립)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담당하 하수도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하며 불비한 개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하수도관리기관과 하수도시설의 관리와 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1조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바로 정하고 보수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 (하수도시설의 대보수와 유지보수)

하수도시설의 보수는 대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어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대보수, 유지보수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3조 (하수도시설의 자체보수)

하수도시설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4월안으로 하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하수도관리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버림물을 내보낼수 없다.

제24조 (하수도시설의 파손방지)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자연적영향으로부터 하수도설비와 관이 부식되거나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수관, 우수관입구에는 모래잡이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제25조 (오수관, 우수관의 보호)

오수관, 우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을수 없다.

제26조 (하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퇴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수도시설에 사고 또는 고장이 생겼을 경우 하수도관리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하수도관리기관은 즉시 하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원인을 알아보고 퇴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생보호구역의 설정)

하수도시설을 보호하고 버림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뽕프장과 정화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위생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8조 (위생보호구역의 관리)

하수도관리기관은 위생보호구역안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위생보호구역에는 위생보호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9조 (하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

하수도시설을 폐기하거나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하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하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리유와 버림물의 처리상태를 따져보고 합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제4장 버림물의 처리

제30조 (버림물의 정화, 멸균)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정해진 배출기준대로 정화, 멸균한 다음 하수방출구역으로 내보내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버림물은 내보낼수 없다.

제31조 (배출기준준수정형의 조사)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버림물의 배출기준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폐수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생활오수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제32조 (오수망을 통한 산업폐수의 처리)

산업폐수를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도시경영기관으로부터 오수망인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는 산업폐수의 수질지표가 달라졌거나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오수망인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3조 (산업폐수의 수질분석결과통보)

산업폐수를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폐수의 수질을 정상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경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는 버림물)

다음의 버림물을 정확하지 않고는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다.

1. 오수관을 부식시킬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버림물
2. 오수정화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버림물
3. 유독성폐수와 병원성폐수
4.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버림물

제35조 (미광물과 모래, 오물의 처리)

미광이나 모래, 오물이 들어있는 버림물은 그것을 거두어낸 다음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36조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하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비물처리)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수망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비물을 제 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비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와 시설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하수도사업의 지도)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하수도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전력,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0조 (하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하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하수도시설의 관리와 버림물처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 (손해보상)

하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폐기, 용도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건설질서를 어기고 하수도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사용중에 있는 오수관에 인입관을 연결하였을 경우
3. 하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폐기, 용도변경하여 버림물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하수도시설물관리에 필요한 보장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버림물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버림물을 내보내었을 경우
6. 오수망인입허가없이 산업폐수를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었을 경우
7.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하였을 경우
8. 오수관, 우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어 그 관리와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우수망시설을 정비하지 않아 비물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그밖에 이 법을 어겨 하수도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제43조 (행정적책임)

이 법 제42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

주체87(1998)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8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령 제1901호로 수정보충

제1조 (화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은 화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장을 장려하고 장례를 간편하게 하며 자연풍치와 국토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화장의 장려원칙)

화장은 묘를 쓰지 않고 불로 령구를 처리하는 문화적인 장례방법이다.

국가는 인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화장방법을 적극 받아들일도록 한다.

제3조 (화장터건설원칙)

화장터전을 잘하는 것은 화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화장터전건설계획을 바로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 화장터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제4조 (화장터의 위치, 규모)

지방정권기관은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는 교통조건, 인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구수 같은 것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령구의 처리방법)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묘를 쓸수 있다.

제6조 (화장의 신청)

화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장기업소에 화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화장신청의 등록)

화장신청을 접수한 화장기업소는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난날, 직장직위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8조 (관의 생산보장)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례에 필요한 관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령구의 접수)

령구접수는 화장터 또는 령구가 안치된 장소에서 한다.

화장기업소는 령구를 접수한 다음 령구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령구안치)

접수한 령구는 화장터에 안치한다. 이 경우 고인과 영결하는 의식을 할수 있다.

제11조 (화장의 보장)

화장기업소는 화장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묘지에서 파낸 유골도 화장할수 있다.

제12조 (령구의 운반수단)

령구운반에 필요한 운수수단은 화장기업소가 보장한다. 그러나 화장기업소가 령구운반에 필요한 운수수단을 보장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수단을 쓸수 있다.

제13조 (유골함)

화장한 유골은 함에 넣는다.

유골함에는 사망자의 이름을 밝히며 유골임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붙여줄수 있다.

제14조 (유골함의 인계 또는 처리)

유골함은 유골임자에게 넘겨준다.

유골임자는 유골함을 보관실에 보관시키거나 집에 가져갈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매장할 수 있다.

제15조 (유골함의 보관접수)

보관시키려는 유골함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고 유골임자에게 보관증을 준다.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와 보관날자, 유골임자의 이름, 주소 같은것을 밝힌다.

제16조 (유골함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보관시킨 유골함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유골함을 보관시킨 때부터 10년까지의 사이에 유골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치 취할수 있다.

제17조 (유골보관시설과 매장장소)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유골보관시설과 매장장소를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장소에 꽃생산지 같은 것을 꾸려 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8조 (화장사업에 대한 지도)

화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화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19조 (화장설비의 운영)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앞선 화장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화장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제때에 하여 그 정상적운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화장부문 일군의 우대)

국가는 화장부문에 필요한 로력을 선발배치하며 화장부문 일군들을 우대하도록 한다.
화장부문의 로력은 다른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21조 (화장, 유골보관료금)

화장하거나 유골함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문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2조 (관생산용목재와 화장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립업기관,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관생산용목재와 화장에 필요한 설비, 전력, 연유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화장질서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장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화장시설을 못쓰게 만들거나 화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화장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화장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국토·
환경보호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

주체94(2005)년 7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9호로 채택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제1조 (간석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은 간석지의 조사와 개간, 구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를 넓히고 간석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간석지의 정의, 등급규정원칙)

간석지는 밀물때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때 드러나는 바다가의 땅이다.
개간면적의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간석지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 (간석지의 리용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간석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국가는 간석지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4조 (간석지의 조사원칙)

간석지의 조사를 잘하는 것은 그것을 개간하고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간석지의 조사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 (간석지의 개간원칙)

간석지의 개간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개간하도록 한다.

제6조 (간석지의 구조물관리원칙)

간석지의 구조물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개간한 간석지를 보호하고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간석지의 구조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간석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8조 (과학연구 및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간석지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키우도록 한다.

제9조 (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간석지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간석지의 조사

제10조 (간석지의 조사요구)

간석지의 조사는 간석지의 형성과 특성을 료해하고 개간, 리용대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간석지조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석지의 조사기관)

간석지의 조사에는 간석지개간, 리용을 위한 조사,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 같은 것이 속한다.

간석지의 개간, 리용을 위한 조사는 간석지설계기관이,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제12조 (간석지조사구분)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자연지리학적조사, 지질학적조사, 생물학적조사, 해양기상학적조사, 수문학적조사로 구분한다.

제13조 (간석지의 조사방법)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항공촬영 같은 선진조사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간석지의 조사속도와 과학성을 높이고 개간, 리용할수 있는 간석지를 적극 찾으며 방조제법선과 배수갑문을 비롯한 간석지구조물의 건설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석지조사에서 협동, 조사자료제출)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간석지의 조사에서 서로 협동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한 간석지의 조사자료는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3장 간석지의 개간

제15조 (간석지개간계획의 집행)

간석지개간을 잘하는 것은 간석지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간석지의 개간계획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석지의 개간에서 지켜야 할 요구)

간석지의 개간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농경지로 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갈밭, 소금밭, 양어장, 양식장, 조수력발전소와 바다저류지, 큰물조절지, 산업부지, 살림집부지, 배대피지 같은 것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국방상요구와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하여야 한다.
3.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빨리 개간할수 있는 지대부터 먼저 개간하며 모래가 많고 수심이 깊은 간석지에는 감탕잡이뚝건설을 앞세워야 한다.
4. 채석장, 부재생산기지, 부두, 철도, 송배전선, 도로건설 같은 준비건설을 앞세워야 한다.
5. 구조물을 강한 해일에도 견딜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6. 로력과 설비, 자재를 집중하여 토지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7. 개간한 간석지를 빠른 기간에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석지의 개간계획작성)

간석지의 개간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작성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간석지개간설계에 기초하여 개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 기술설계작성)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는 건설주기관이, 기술설계는 간석지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와 기술설계를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 간석지설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는 국가계획기관이, 기술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심의, 비준한다.

제19조 (간석지개간의 구분)

간석지의 개간은 외부망건설과 내부망건설로 나누어 한다.

외부망건설에는 방조제건설과 마감막이공사, 배수문건설이, 내부망건설에는 제방건설, 포전정리, 도로, 수로, 살림집건설 같은 것이 속한다.

제20조 (간석지개간의 담당자)

간석지의 외부망건설과 내부망의 하천제방, 조절지제방건설은 간석지건설기업소가, 그밖의 내부망건설은 내부망건설기업소와 간석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간석지개간의 선후차)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을 확고히 앞세우며 막은 간석지를 리용하기 위한 내부망건설을 적극 따라세워야 한다.

제22조 (간석지개간에서 협동)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과 내부망건설에서 협동하여야 한다.
간석지개간에서 서로 피해를 주거나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간석지개간설계의 준수)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지키며 선진공법을 적극창안, 도입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대상은 건설할수 없다.

제24조 (간석지의 외부망건설방법)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에서 방조제를 콘크리트돌, 아스팔트 같은 재료로 피복하며 배수문과 배갑문, 방조제의 바닷물면변동부분과 물속부분의 건설에는 국가가 정한 자재만을 써야 한다.
외부망건설은 함형부재공법, 판부재공법, 콘크리트중량부재공법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간석지의 내부망건설방법, 시설배치)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망건설을 룝지와 잇닿은 높은 지대로부터 낮은 지대로 하며 농업용포전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고 그에 맞게 도로, 수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갈밭, 소금밭, 양어장, 양식장은 기술공학적으로요와 관리운영에 유리하게 계획을 형성하며 서로 다른 대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방풍림의 조성)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간한 간석지에 방풍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로, 주민지와 양어장, 소금밭 같은 생산기지의 주변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제27조 (시설건설의 담당자)

개간된 간석지의 리용을 위한 살림집, 상하수도, 주민지까지의 도로건설은 해당도, 시, 군인민위원회가, 전기, 통신시설의 건설을 해당 기관이 한다.

제28조 (개간한 간석지의 준공검사)

외부망과 내부망의 건설이 끝나는 차체로 준공검사를 받는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간석지는 리용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긴다.

제29조 (개간한 간석지의 등록)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간석지를 넘겨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한 간석지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간석지를 제때에 알곡생산과 갈생산, 소금생산, 양어 같은

데 리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개간된 부침땅의 소금기를 빨리 빼야 한다.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제31조 (간석지구조물관리의 요구)

간석지구조물의 관리는 방조제 같은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보수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간석지의 구조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준공검사전까지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개간한 간석지에 건설된 구조물의 관리를 위하여 간석지구조물관리소를 조직하여야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외부망의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구조물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33조 (준공검사후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외부망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간석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간석지구조물관리소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석지구조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제34조 (간석지구조물의 피해대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의 구조물보호에 필요한 막돌, 부재 같은 보수자재를 확보 하여놓아야 한다.

발생한 자연재해를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35조 (간석지구조물의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구조물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간석지구조물의 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제36조 (간석지제방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는 간석지의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석지제방축선으로부터 제방안쪽과 바깥쪽의 일정한 구간을 간석지제방보호구역으로 한다.

간석지제방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7조 (간석지제방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간석지제방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부두시설이 없는 제방에는 배를 정박시킬수 없다.

제38조 (간석지제방의 관리)

간석지제방과 하천제방, 조절지제방에 농작물을 심거나 그곳에서 집짐승을 방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간석지제방, 하천제방, 조절지제방안쪽에 조성한 방풍림을 꺾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균증적인 간석지제방의 보호)

공민은 간석지의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거나 구조물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제때에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요구)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간석지개간정책을 실현하기위한 중요 담보이다.

국가는 간석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간석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간석지개간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정한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간석지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3조 (개간기간 간석지의 리용)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의 개간기간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마련하는데 간석지의 일부를 리용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4조 (간석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간석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간석지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 (간석지개간, 리용의 중지)

간석지의 개간, 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간석지개간계획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간석지개간을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승인없이 간석지를 개간하거나 리용할 경우
4. 간석지개간설계에 없는 대상을 건설할 경우

제46조 (손해보상)

간석지의 구조물을 파손시켰거나 개간한 간석지를 류실시켰거나 또는 계획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정한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여 이미 한 투자를 허실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간석지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

주체90(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0호로 채택

제1장 갑문법의 기본

제1조 (갑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은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 자원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갑문의 건설원칙)

갑문은 만년대계의 창조물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갑문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새로운 갑문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제3조 (갑문의 관리원칙)

갑문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갑문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갑문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 (갑문의 운영원칙)

갑문운영은 갑문설비를 조작하고 운수수단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갑문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5조 (갑문부문의 과학연구와 일군양성원칙)

국가는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6조 (갑문사업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조)

국가는 갑문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갑문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갑문을 리용하는 다른 나라의 운수수단과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갑문건설

제8조 (갑문건설의 기본요구)

갑문건설을 바로하는것은 수송능력을 높이고 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국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갑문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 (갑문의 설계기관)

갑문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갑문건설주기관은 해당 설계기관에 기술과제를 정확히 주어야 한다.

제10조 (갑문의 규모와 위치확정)

갑문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리구조물, 지반탐사자료, 수문학적동태 및 수리모형실험자료, 화물류통량, 물소요량, 갑문건설조건과 운영조건 같은것을 타산하여 갑문의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갑문의 설계)

갑문설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송과 관개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의 보장, 수력자원의 리용, 퇴적물과 큰물, 고인물의 처리, 갑문수역의 생태환경변화와 오염방지대책 같은것을 고려하여 갑문을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갑문건설에 대한 주문 및 계약)

갑문건설은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사이의 주문과 계약에 따라 한다.

필요에 따라 갑문건설을 건설주기관이 직접 할수도 있다.

제13조 (갑문건설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준수)

갑문시공주기관은 갑문건설에서 공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기술규정과 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제14조 (갑문구조물의 건설)

갑문에는 갑실, 무넢이언제, 물받이구조물, 접근수로, 갑실유도부, 급배수시설, 계선장, 물고기길 같은 구조물을 건설한다.

큰 규모의 갑문에는 등대와 조종탑, 교량구조물,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

제15조 (갑문설비의 설치)

갑문에는 수문과 수리수문, 수밀장치, 권양설비를 설치한다.

계류설비, 안내설비, 뿔프 같은 보조설비도 설치한다.

제16조 (배길개척, 갑문운영에 필요한 배의 배치)

갑문저수지의 류역이 넓고 수상운수에 의의가 있는 큰 규모의 갑문에는 배길개척과 갑문운영에 필요한 준첩선, 수로안내선, 끌배, 쇠빙선, 기름 및 오물포집선, 수문관측선을 둘수 있다.

제17조 (갑문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갑문구역에는 갑문운영을 위한 신호설비와 배길표식물, 지휘통신수단을 설치한다.
기상, 수문 및 해양관측설비와 측정설비도 설치할수 있다.

제18조 (갑문의 준공검사)

갑문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갑문은 넘겨주고 받을수 없다.

제19조 (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의 퇴치)

갑문구조물과 설비의 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서는 갑문시공주기관 또는 설비제작기관이 책임진다.
갑문시공주기관과 설비제작기관은 갑문구조물건설과 설비제작에서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개용수문과 취수구의 개조, 건설)

갑문저수지의 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마철 큰물처리를 위한 최저수위에 맞게 저수지류역의 관개용수문과 취수구를 개조하거나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3장 갑문관리

제21조 (갑문관리의 기본요구)

갑문관리는 갑문구조물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갑문저수지의 물을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갑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운수수단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할수 있도록 갑문관리를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갑문언제의 집중검사)

갑문언제에 대한 집중검사는 해마다 한다.
갑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갑문언제의 침하, 변위, 부식, 패임 같은 변화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문과 설비의 기술검사)

갑문운영기관은 수문과 권양설비,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주기를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술검사를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수도 있다.

제24조 (시설물의 보수정비)

갑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의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길표식물, 등대, 방파제 같은 시설물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 (갑문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는 갑문시설물과 수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문보호구역을 정한다.
갑문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 (갑문저수지구역에서의 건설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저수지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이설작업을 하려 할 경우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문보호구역에서는 폭파, 굴착, 준칩 같은 갑문과 배길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7조 (물깊이의 측정)

갑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깊이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갑문저수지의 퇴적과 세굴 상태를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갑문저수지의 퇴적과 세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갑문시설물의 점검보수)

갑문운영기관은 장마철전으로 갑문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조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갑문저수지의 수위조절)

갑문저수지의 수위조절사업은 갑문운영기관이 한다.
갑문운영기관은 지령체계를 세우고 갑문저수지의 물량을 타산하여 기준수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갑문저수지의 수위조절에 필요한 기상수문예보와 관측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갑문저수지의 물관리)

장마철 갑문저수지의 물관리는 큰물지휘부가 한다.
큰물지휘부는 기상수문기관이 낸 기상수문예보와 관측자료, 수리운영자료와 관련저수지들의 관리운영실태를 장악하고 물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갑문별류입량과 방수량의 통보)

갑문운영기관은 갑문별류입량과 방수량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버림물의 정화)

버림물을 갑문저수지로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을 갑문저수지로 내보낼수 없다.

제33조 (갑문수역에서 지켜야 할 질서)

갑문을 통과하는 배는 갑문수역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배는 갑문을 통과할수 없다.

제34조 (갑문저수지구역의 관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저수지구역에 풍치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사방야계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4장 갑문운영

제35조 (갑문운영의 기본요구)

갑문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갑문운영기관은 갑문운영조직을 바로하여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36조 (배의 갑문통과시간)

배의 갑문통과는 낮에 한다.

필요에 따라 배를 밤에도 통과시킬수 있다.

제37조 (배의 갑문통과순위)

배의 갑문통과는 도착순위대로 한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배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먼저 갑문을 통과시킬수 있다.

제38조 (배의 갑문통과신청)

갑문을 통과하려는 배는 갑문운영기관에 갑문통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속기관명, 배의 길이, 너비, 흘수, 총톤수, 순톤수, 기관출력, 화물종류와 수량, 호출대호, 대기지점도착예정시간을 알려야 한다.

제39조 (갑문운영기관의 임무)

갑문운영기관은 배의 조종상특성과 기관의 기술상태를 확인하고 갑문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경우 배의 크기, 기술적특성, 일기조건을 고려하여 갑실을 정하며 필요에 따라 끝배를 붙이고 배를 떼거나 붙이는 작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40조 (무역잡배의 배길안내)

갑문을 통과하는 무역잡배는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으며 갑문운영기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는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41조 (갭문을 통과하려는 배의 대기)

갭문을 통과하려는 배는 대기지점에서 기다려야 한다.

갭문을 통과하지 않을 배와 룬전기재는 갭문보호구역에서 들어올수 없다.

제42조 (배통과작업을 할수 없는 사유의 통보)

갭문운영기관은 재해성 기상 및 해상현상, 큰물처리, 갑실보수, 사고복구 같은 일로 배통과 작업을 할수 없을 경우 갭문통과를 의뢰한 기관이나 배에 알려야 한다.

제43조 (갭문수역에서 사고발생시의 책임)

갭문수역에서 배와 재산을 가라앉혔거나 표류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견져내거나 끌어내야 한다.

제44조 (갭문의 통과료금)

갭문을 리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갭문통과료금을 물어야 한다.

갭문통과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장 갭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 (갭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갭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국가의 교통운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갭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6조 (갭문사업에 대한 지도)

갭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갭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갭문지도기관은 갭문건설과 관리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 (갭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갭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갭문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는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제48조 (갭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갭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갭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갭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갭문건설과 관리운영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

갑문구조물과 설비, 표식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0조 (벌금 및 억류)

갑문저수지수역을 오염시켰거나 갑문통과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배와 인원을 억류할수 있다.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갑문사업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1호로 채택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기본

제1조 (공원, 유원지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은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원, 유원지의 정의와 분류)

이 법에서 공원, 유원지는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휴식, 교양을 위하여 꾸려진 문화정서생활장소이며 휴식터이다.

공원에는 그 사명과 규모, 리용범위에 따라 구역공원, 구획공원, 종합공원, 유희공원, 아동공원, 청년공원, 민속공원, 분수공원, 화초공원, 해안공원, 기념공원, 조각공원, 체육공원같은 것이 속하며 유원지에는 그 위치와 지대적특성에 따라 도시안에 있는 유원지와 도시주변에 있는 유원지, 사적지, 명승지를 기본으로 꾸린 유원지와 자연풍치를 기본으로 꾸린 유원지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공원, 유원지의 건설원칙)

공원, 유원지건설은 날로 늘어나는 공원, 유원지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와 마을, 풍치좋은 지역에 공원, 유원지를 더 많이 질적으로 건설하며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도록 한다.

제4조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원칙)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을 잘하는 것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공원, 유원지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공원, 유원지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도록 한다.

제5조 (공원, 유원지의 리용질서준수원칙)

공원, 유원지는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공원, 유원지를 아끼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제6조 (국가적투자를 늘이는 원칙)

국가는 공원, 유원지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는데 맞게 유원지를 더 훌륭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7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8조 (해당 법규의 적용)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공원, 유원지의 건설

제9조 (건설계획)

공원, 유원지건설계획의 작성은 공원, 유원지건설의 선행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공원, 유원지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건설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0조 (건설위치선정)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의 건설계획작성에 앞서 해당지역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건설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능력, 자연풍치와 환경 같은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설계)

공원, 유원지건설설계는 국토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원림설계기관 또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공원, 유원지건설설계에는 공원, 유원지의 사명과 규모에 따르는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과 협의하고 대상에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건설기관)

공원, 유원지의 건설은 공원, 유원지건설기관, 기업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른 건설기관, 기업소도 공원, 유원지의 건설을 할수 있다.

제13조 (설계의 요구와 건설물의 질보장)

공원, 유원지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건설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기간까지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제14조 (준공검사)

공원, 유원지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는 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기관은 공원, 유원지가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설되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조 (건설한 공원, 유원지의 인계인수)

건설한 공원, 유원지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 기업소에 넘겨줄수 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공원, 유원지는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수 없다.

제16조 (건설에서 자연풍치의 손상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조성을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

제17조 (관리운영체계의 수립)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은 공원, 유원지를 원상대로 유지관리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운영기관)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은 그 관리운영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가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를 정상운영, 정상보수, 정상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원, 유원지의 등록과 이관, 폐기)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와 그 관리구역안의 건물, 시설물, 설비, 기재, 동식물같은 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공원, 유원지와 그 관리구역안의 재산을 이관하거나 폐기할수 없다.

제20조 (관리분담과 고정담당관리제의 실시)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관리인원과 정량에 따라 공원, 유원지의 관리분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분담된 구간에 대한 고정담당관리제를 실시할수도 있다.

제21조 (시설물의 관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휴식시설,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 시설, 조명시설, 도로시설, 안전보호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원, 유원지안의 시설물관리를 정해진대로 하며 시설물이 부족하거나 고장,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설치, 수리, 교체하여야 한다.

운동시설과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은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조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원림조성과 관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고 잘 가꾸어 공원, 유원지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23조 (공동위생실의 설치 및 관리)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필요한 장소에 공동위생실을 위생문화적으로 설치하고 리용자들이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생실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오물통의 설치 및 리용)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리용자들이 편리하게 공원, 유원지의 곳곳에 오물통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공민은 오물을 반드시 오물통에 버려야 한다.

제25조 (공원, 유원지의 보수)

공원, 유원지의 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대보수와 중보수는 담당한 기관, 기업소가 하며 소보수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가 자체로 한다.

필요에 따라 공원, 유원지의 보수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 할수도 있다.

제26조 (공원, 유원지의 개선)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낡고 뒤떨어진 공원, 유원지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개선은 승인된 개선설계에 따라 한다.

제27조 (자연피해방지대책)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무더기비, 사태, 산불에 의한 자연피해로부터 공원, 유원지를 보호할수 있게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8조 (공원, 유원지에서의 공사)

공원, 유원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작업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나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작업장과 그 주변을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원, 유원지의 운영)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의 운영시간과 운영을 하지 않는 날은 인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원, 유원지에서의 봉사활동)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공원, 유원지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원, 유원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운영수입금의 리용)

공원, 유원지의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금은 공원, 유원지의 정상유지관리에 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공원, 유원지운영수입금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4장 공원, 유원지의 리용

제32조 (공원, 유원지리용질서의 준수)

공원, 유원지의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공원, 유원지를 원상대로 유지관리하는데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33조 (휴식시설의 리용)

공원, 유원지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휴식하며 휴식시설의 리용을 바로 하여야 한다.

휴식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못쓰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정해진 질서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의 리용과 관련한 질서를 바로 정하고 게시하며 공민이 해당 시설을 리용할수 있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것을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리용에 필요한 기제는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에서 봉사해주거나 리용자들이 자체로 가지고와서 리용하게 할수 있다.

제35조 (의료대책)

보건지도기관은 공민이 운동시설이나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리용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거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때에 구급의료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치료인원과 설비, 의약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의료조건을 갖추지 않고 해당 운동시설과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운영할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원, 유원지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체적으로 공원, 유원지를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와 미리 연계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를 리용한 후에는 그 장소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입장 및 시설리용요금)

공원, 유원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입장 및 시설리용 요금을 내야 한다.

입장 및 시설리용료금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38조 (자연환경의 파괴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를 리용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공원, 유원지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0조 (지도기관)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

당 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 (로력보장)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관리운영기관, 기업소의 기구와 정원수를 바로 정하고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공원, 유원지관리운영로력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2조 (설비, 자재, 자금, 전력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전력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공원, 유원지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 전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교양사업)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공원, 유원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인답게 관리하고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금지사항)

공원, 유원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료전기재의 통행이나 주차, 청소가 금지된 곳에서 료전기재를 물고 다니거나 주차하거나 청소하는 행위
2. 정해진 장소가 아닌데서 불을 피우거나 식사를 하거나 운동 및 오락, 휴식을 하는 행위
3.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변을 어지럽히는 행위
4. 시설물을 옮기거나 가져가거나 파손시키는 행위
5. 휴지와 담배꽁초 같은 오물을 망탕 버리거나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6. 록지와 꽃밭으로 다니거나 나무와 꽃을 꺾거나 또는 나무와 지피식물을 떠가는 행위
7. 나무열매를 따거나 약초를 캐는 행위
8. 관상용동물에 피해를 주는 행위
9. 집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10. 이밖에 금지된 행위

제45조 (감독통제)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원, 유원지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공원, 유원지의 시설물과 운동기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공원, 유원지관리사업에 대한 장악지도를 바로하지 않아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공원, 유원지관리운영부문의 로력을 다른데 돌려쓴 것으로 하여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설비, 자재, 자금, 전력 같은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공원, 유원지건설질서를 어겼을 경우
5.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관리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공원, 유원지시설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시설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7. 공원, 유원지의 원림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원림의 원상유지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승인없이 공원, 유원지의 나무를 벤 경우
9. 공원, 유원지의 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승인없이 공원, 유원지에서 공사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11. 공원, 유원지를 정상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12. 공원, 유원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13. 오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았거나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14.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15. 의료조건을 갖추지 않고 해당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16. 의료조건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고발생시 제때에 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을 경우
17. 이 법 제44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제4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주체87(1998)년 5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6호로 채택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제1조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은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국토와 자원, 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토환경보호단속원칙)

국토환경보호단속은 국토환경보호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국토환경보호단속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국토환경보호단속기관)

국토환경보호단속은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토환경보호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4조 (범위반자의 신분확인)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범위반자를 단속하면 신분을 확인하며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단과 물건을 확인하거나 각종 문건을 볼수 있다.

제5조 (단속된자와 증인의 동행요구)

범위반자의 신분이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된자와 증인에게 해당 기관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수 있다.
단속된자와 증인은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위법행위의 고착)

위법행위는 단속조서에 고착시키며 증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록화할수 있다.

제7조 (위법행위현장, 수단, 물건의 검증)

위법행위현장, 위법행위와 관련한 수단, 물건을 검증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이 경우 조서에 검증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8조 (단속조서, 확인서의 작성)

단속조서 또는 확인서는 범위반자나 증인의 자필로 받을수 있다.

단속조서에는 위법내용, 작성자와 범위반자, 증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9조 (범위반자의 억류)

범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억류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도 억류할수 있다.

억류한 운수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제10조 (억류기간)

범위반자의 억류기간은 8시간까지이다.

필요에 따라 단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범위반자의 억류기간을 24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다.

제11조 (신변보호기재, 무기의 사용)

범위반자를 단속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재 또는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제12조 (위법행위의 조사)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범위반자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수수단을 세우고 조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수수단을 세우고 조사할수 있다.

범위반자단속에 필요한 인원과 수단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억류한 운수수단, 압수한 물건, 문서를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제13조 (범위반자의 처리)

범위반자의 처리는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한다.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의 위험성정도를 침작하여 범위반자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범위반자의 처리기관)

범위반자의 처리기관은 위법행위를 단속한 때로부터 30일간이다.

제15조 (범위반자의 이관)

범위반자를 단속한 감독통제기관은 그를 거주한 지역의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와 증거물, 해당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16조 (교양처분)

위법행위의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교양처분을 한다. 이 경우 범위반자의 보호자나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으로부터 해당한 담보서를 받는다.

제17조 (대책적의견제기)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적의견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8조 (벌금, 손해보상)

국토와 자원, 환경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19조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방법)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은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이나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물리는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은 해당 중앙은행기관에, 개별적공민에게 물리는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서를 보내어 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국토자원의 리용중지, 리용권박탈)

위법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국토자원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그 리용권을 박탈한다.

제21조 (몰수)

위법행위에 리용된 수단과 부당하게 얻은 생산물, 금액은 몰수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몰수품목록 2통을 만든다.

몰수품목록에는 작성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2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국토환경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주체101(2012)년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20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9호로 수정보충

제1장 대기오염방지법의 기본

제1조 (대기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은 대기오염의 감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정화, 대기환경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를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로운 물질이다.
2. 대기오염감시란 대기환경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농도분포, 그 변화상태를 측정하는 사업이다.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내보내는 시설이다.
4.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이다.

제3조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대기오염방지사업은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대기오염방지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 (대기오염감시원칙)

대기오염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대기오염감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감시방법을 개선하여 대기오염감시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정화원칙)

국가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바로정하고 정화대책을 철저히 세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극력 줄이도록 한다.

제6조 (재생에너지개발과 리용의 장려원칙)

국가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화석연료의 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수력과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조수력, 생물연료를 적극 개발, 리용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한다.

제7조 (전군중적인 대기환경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과학지식보급을 강화하여 그들이 대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 (대기환경보호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대기오염을 막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 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도록 한다.

제9조 (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대기오염방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상주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대기오염의 감시

제11조 (대기오염감시체계의 수립)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감시망을 형성하고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상태를 엄격히 감시하여야 한다.

대기오염감시를 위하여 중앙과 도, 그밖의 필요한 지역에 대기오염감시지점을 설치한다.

지역별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제12조 (대기오염감시대상)

대기오염감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속에 포함되어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2. 대기오염원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3. 특수기상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환경의 오염상태를 감시한다.

제13조 (대기오염감시방법)

대기오염감시는 정상감시, 집중감시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감시지표, 감시지점의 설정)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대기오염원천의 분포와 배출량에 따라 대기오염감시지표와 감시지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상감시를 조직하여야 한다.

오염원천이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감시지표와 감시지점을 제때에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측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이러와 공업로 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배출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측정자료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제16조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대기가 심히 오염되어 사람의 생명, 건강과 생태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국토환경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조사를 제때에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7조 (대기오염현상에 대한 집중감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대기오염원천의 규모가 크거나 대기오염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대기오염감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대기오염감시내용의 기록 및 보고)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대기오염원천과 대기오염상태에 대한 감시정형을 정확히 기록하고 중앙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종합된 대기오염감시자료에 기초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안을 세워 내각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특수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황사와 산성비, 기온역전과 같은 특수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방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대기오염측정수단의 현대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감시를 위한 현대적인 측정수단을 갖추고 대기오염감시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기오염측정수단은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강화

제2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준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지키며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의 주요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허용한계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국가환경보호기준에 준한다.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대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환경보호기준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보다 엄격한 배출기준을 정할수 있다.

제22조 (건설대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건설대상을 신설, 확장, 개건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대상에서 발생될수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국토환경 보호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와 생산공정들에 밀폐장치와 배풍장치, 가스, 먼지잡이장치 같은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할수 없으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없이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운영을 중지할수 없다.

제24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가)

자동차, 기관선을 제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물질배출 허가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유형과 특성, 연료 및 원료의 종류와 소비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정화대책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문건검토와 현지료해를 정확히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동차, 기관선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사회안전기관과 해사감독기관은 자동차와 기관선에 대한 기술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자동차의 운행과 기관선의 운항단속을 엄격히 하여 자동차, 기관선에 의한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상태가 불비하여 대기를 오염시킬수 있는 자동차나 기관선은

운행 또는 운항할수 없다.

제26조 (연료 및 연료첨가제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기오염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연료나 연료첨가제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대기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의 제작, 판매, 수입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판매,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선진적인 과학기술의 도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제4장 대기환경의 보호

제29조 (대기환경보호계획의 작성과 집행)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전략에 따라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호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기환경보호계획에 기초하여 지역별, 대상별에 따르는 대기오염방지세부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 (평양시의 대기환경보호)

내각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를 수립화된 도시, 녹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꾸려 대기의 정결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평양시에서는 대기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계획작성과 개발, 건설,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할수 없다.

제31조 (대기환경특별보호지역의 설정)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게 된 지역과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 휴양소, 료양소, 유원지, 관광지, 생활거주지역, 산업지역의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기환경특별보호지역으로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기환경특별보호지역에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대기오염원천의 합리적인 배치)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순환상태, 자연정화능력, 자연지리적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유해가스, 먼지 같은 것을 많이 내보내는 공장은 정리하거나 도시와 주민지구밖으로 내보낸다.

제33조 (나무잎, 오물의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도로와 철길주변에 생기는 나뭇잎이나 오물 같은것을 아무데나 모아놓고 불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잎이나 오물은 일정한 지역에 실어내가거나 거름을 만들어 리용하여야 한다.

제34조 (석탄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보호)

석탄을 연료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기술과 현대적인 설비, 생산공정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이 탈 때 내보내는 가스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제35조 (오존층파괴물질로부터의 대기환경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존층파괴물질과 그것이 들어있는 설비나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리용을 극력 줄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과 그것이 들어있는 설비나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로부터의 대기환경보호)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취급질서를 엄격히 지켜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은 해당 자격을 가진 성원만이 취급할수 있다.

제37조 (자연재해, 설비사고로부터의 대기환경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와 설비사고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와 설비사고로부터 중대한 대기오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입을수 있는 단위와 주민들에게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악취로 인한 대기환경의 보호)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장, 침전지, 위생시설, 오물장 같은 것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화장, 침전지 같은 곳에 쌓인 침전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자연정화능력의 제고)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며 도시와 농촌의 주민지구, 철길주변, 공원에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심어 자연정화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5장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기오염방지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 (대기오염방지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대기오염 방지사업에 필요한 전력,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대기오염방지사업에서의 협력)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사회안전기관, 해사감독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대기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3조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대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기오염의 감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정화, 대기환경의 보호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손해보상)

대기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대기오염을 일으켜 인명 및 재산상피해를 주었거나 생태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대기오염감시조직과 집행을 바로하지 않아 대기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대기오염물질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
4.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자동차, 기관선을 운행 또는 운항하였을 경우
5. 오존층파괴물질,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같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대기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6. 도시의 중심구역에서 나무잎이나 오물 같은것을 불태워 대기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7. 대기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전력,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대

기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이밖에 대기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대기환경을 심히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6조 (형사적책임)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주체97(2008)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97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4호로 수정보충

제1장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기본

제1조 (대동강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은 대동강의 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동강오염이란 사람의 생활과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대동강에 흘러들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강물의 질적지표와 생태환경상태가 달라진것을 말한다.
2. 대동강과 그 류역이란 대동강의 본류와 합장강과 같은 지류하천, 그 주변의 일정한 류지구역을 말한다.
3. 오염방지시설이란 정화시설과 침전지, 뽕프장, 우수망, 우수망을 비롯하여 대동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란 대동강과 그 류역의 오염발생요인들을 분석, 평가하고 오염방지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상태, 주변환경실태를 료해하며 부정적인 요소들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5. 대동강관리기관이란 대동강과 그 류역의 오염방지와 생태환경보호사업을 맡아하는 해당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동강오염방지구역의 설정)

국가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대동강오염방지구역을 정한다.

대동강오염방지구역에는 평안남도 대동군 평덕리 한태령으로부터 서해갑문까지의 본류와 지류, 그 류역이 속한다.

대동강오염방지구역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할수 있는 계획과 개발, 건설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4조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대동강오염을 막고 대동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존, 개선하는것은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대동강오염방지사업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 (도시와 마을, 산업시설의 배치원칙)

도시와 마을, 산업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것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 산업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6조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원칙)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선차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제때에 세우도록 한다.

제7조 (오염방지대책의 실행원칙)

생산과 건설에 앞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대동강류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오염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대동강의 오염방지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8조 (대중적인 오염방지원칙)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것은 나라와 인민, 후대들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대동강의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과학연구)

국가는 대동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10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대동강과 그 류역을 관리,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대동강의 관리, 리용,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원칙

제11조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체계수립)

대동강관리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대동강의 수질과 그 변화상태, 류역의 생태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감시,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동강의 수질조사)

대동강관리기관은 대동강과 그 지류에 수질조사지점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매월 3차이상 수질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수위와 물량, 물흐름속도의 변화가 심한 경우, 록조현상이 나타나거나 물고기가 죽는것과 같은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환수전과 환수후에는 해당 구역들의 수질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3조 (대동강류역의 생태환경조사)

대동강관리기관은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오염방지시설의 건설 및 보수, 정비상태와 강바닥 정리상태, 감탕과 모래쌓임상태, 물길변화상태, 큰물위험요소, 물고기와 물풀 등 수생생물의 서식상태, 수역별오염물질배출실태 같은것을 매월 3차이상 정상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 (균중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으로 오수, 폐수가 흘러들거나 그밖에 생태환경파괴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대동강관리기관 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5조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자료의 기록)

대동강관리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상태에 대한 조사자료를 장소별, 날자별로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수질 및 생태환경이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과 대책정형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의 제출)

대동강관리기관은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를 매월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해당 자료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분기1차 해당 조사자료와 대책적문제를 종합하여 내각과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그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오염물질의 배출과 처리

제17조 (오염방지시설의 완비)

오염방지시설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은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능력에 맞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지구와 산업지구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

국가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 소독하지 않은 오수, 폐수는 대동강에 내보낼수 없다.

제18조 (오염방지시설건설계획, 설계의 작성)

건설설계기관은 건설총계획에 반영된 건설대상의 위치, 규모, 정화공정 같은것을 타산하여 오염방지시설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오염방지시설건설계획에 맞게 과학성과 전망성이 담보된 건설설계를 작성하며 낡은 오염방지시설의 개건, 현대화에 필요한 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오염방지시설건설과 준공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방지시설건설을 상부구조건설에 앞세워 진행하며 건설감동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대상은 생산, 운영, 리용할수 없다.

제20조 (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방지시설의 정비보수와 관리운영을 정상화하며 실비가동시간, 오염물질의 정화실태, 비상방출량과 같은 자료를 매일 정상적으로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 제때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1조 (오염물질의 배출허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수 없다.

제22조 (산업폐수의 정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과학적인 정화방법을 받아들여 산업폐수를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맞게 정화하여야 한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국가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산업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망

탕 내보내는 기업소는 운영할수 없다.

제23조 (도시오수망을 통한 산업폐수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폐수를 도시오수망을 통해 내보내려 할 경우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의 합의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폐수의 수질지표가 달라졌거나 변경시키려는 경우 오수망인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오수망인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폐수를 정상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경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는 산업폐수)

다음의 산업폐수는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다.

1. 오수관을 부식시킬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산업폐수
2. 오수정화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산업폐수
3. 유독성폐수와 병원성폐수
4. 미광물 또는 모래가 섞여 오수관을 매게 할수 있는 산업폐수

제25조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오염물질의 정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수정화시설을 따로 갖추고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수를 정해진 기준대로 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기폐설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 핵안전감독기관, 보건기관과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소독 또는 소각, 매몰하여야 한다.

제26조 (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설치)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은 오수관, 우수관, 우수합거와 개거, 오수, 우수방출구 같은 곳에 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을 설치하여 모래나 감탕, 오물이 대동강과 그 지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쌓인 모래, 감탕, 오물은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비료, 농약에 의한 오염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류역에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료나 농약을 담았던 용기는 대동강에서 세척할수 없다.

제28조 (미광, 버력, 오물처리, 사금채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과 그 지류에 버력, 오물 같은것을 버리지 말며 사금을 채취하면서 대동강과 그 지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산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침전지를 건설하여 미광이 대동강과 그 지류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기름류출의 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자갈채취, 배의 해체, 난파선제거와 같은 작업과정에 배와 설비, 룬전기재의 기름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며 작업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을 해당 오염물질접수처리기관에 넘겨 처리하여야 한다.

차세척장과 전문급양봉사단위는 기름분리시설을 규정대로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제마음대로 설비와 룬전기재를 세척할수 없다.

제30조 (배의 오수, 오물, 발라스트물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오염물질배출계통을 차단하고 배운영과정에 나오는 오수, 오물을 해당 오염물질접수처리기관에 넘겨 처리하여야 한다.

대동강에서는 배의 발라스트물을 뽑을수 없다.

제31조 (유해물질의 류출방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운항과정에 기름같은 유해물질이 류출되지 않도록 한다. 해사감독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은 유해물질의 류출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항, 부두, 포구, 갑문구역에 오염방지시설 설치)

항, 부두, 포구, 갑문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름찌끼, 오수, 오물, 유독성물질 같은 오염물질을 접수 및 처리할수 있는 시설 또는 봉사선, 기름차단띠와 흡수설비 같은 기름오염제거수단을 정해진 기준에 맞게 갖추고 배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정해진대로 처리하며 대동강수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제때에 거두어내거나 파내야 한다.

항, 부두에는 현대적인 환경보호시설과 상하선설비를 갖추고 침전지와 배수로를 만들며 우개시설, 살수장치 같은것을 설치하여 기름, 석탄, 광석 같은것이 류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접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제4장 대동강의 생태환경보호

제33조 (대동강생태환경보호사업의 기본요구)

대동강의 생태환경보호는 대동강을 오염이 없고 아름다운 강으로 보존하고 대동강류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대동강을 아름답게 꾸리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34조 (대동강관리분담)

대동강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대동강관리구간을 정확히 분담하고 그 관리정형

을 엄격히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구간에서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강바닥파기, 물줄기바로잡기 같은 것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위생보호구역의 설정)

급수원수역의 수질의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위생보호구역에서 목욕, 빨래를 하거나 자원채취, 개발 등 급수원을 오염시킬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위생보호구역과 그 주변에는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기관, 기업소를 배치하거나 공업용취수구를 설치할수 없다.

제36조 (사방야계시설물의 설치, 수원함양림의 조성)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원함양림을 조성하여 큰물과 산사태로부터 대동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원함양림은 채벌할수 없다.

제37조 (대동강류역의 원림조성)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류역에 원림록화와 생태환경개선을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수종이 좋은 잔디와 나무를 심어 계획적으로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8조 (대동강제방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바닥파기를 정해진 기준과 설계대로 하며 작업과정에 제방과 보호구조물을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대동강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39조 (환경보호담보증의 발급)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종류와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보호담보증이 없거나 환경보호검사를 받지 않은 배는 대동강에서 운항할수 없다. 이 경우 오염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배는 해당 협약에 따른다.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40조 (유독성물질, 기름의 신고부리기)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유독성물질, 기름을 싣거나 부리려 할 경우 수량, 농도, 용기와 설비의 상태를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유독성물질과 기름을 싣거나 부릴수 없다.

제41조 (배기름오염비상대응)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대동강오염방지와 관련한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세우고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연계하여 오염제거사업을 조종하여야 한다.

해상환경보호기금에 적립한 자금은 기름오염제거를 비롯한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리용한다.

제42조 (대동강과 그 지류의 환수)

대동강관리기관, 갑문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서해갑문을 비롯한 대동강갑문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대동강의 감탕을 빼고 대동강물을 정상적으로 환수시키며 내각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갑문의 수문조절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환수설비의 운영과 정비보수,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계획된 환수량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장강과 보통강의 환수량보장정형과 환수설비운영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매월 1차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대동강과 그 지류의 정리)

대동강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과 그 지류의 강바닥파기를 년차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물풀과 오물제거, 호안정리 같은 대동강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대동강과 그 지류의 정리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물고기의 서식보호)

대동강과 그 지류에서 그물우리양어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의 수질상태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며 해당 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동강에서 물고기의 서식에 지장을 주는 행위, 폭약이나 농약, 유독성물질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5조 (건설, 탐사,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동강에 갑문, 물길, 항, 부두 같은 시설물과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류역에서 지하자원을 탐사,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과 공장의 건설,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은 할수 없다.

제46조 (오염을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의 이설, 정리)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부문별중앙기관, 해당 인민위원회는 대동강오염을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들을 년차별계획에 반영하여 대동강오염방지구역밖으로 이설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 (오염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도입)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오수, 폐수정화기술, 수질정화기술과

생태복원기술, 침전물의 재자원화기술을 비롯하여 하천보호관리부문의 선진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계획을 년차별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하천보호관리분야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와 설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대동강관리기관은 오염방지를 위한 선진과학기술을 대동강보호관리 사업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5장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대동강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오염방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대동강과 그 지류에 대한 오염방지사업은 도시령역안에서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이, 도시령역밖에서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그밖의 영역에서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49조 (전력,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오염방지에 필요한 전력과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폐수, 오수정화정형료해대책)

대동강관리기관은 산업폐수, 생활오수를 국가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하여 내보내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2조 (기관별금처벌의 적용)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외국투자기업에는 10만~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오수, 폐수정화장 또는 침전지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건설하였거나 그 능력이 부족한것을 개선확장하지 않았을 경우
2. 오수, 폐수정화장 또는 침전지의 불비점을 대책하지 않았거나 침전물을 제때에 걷어내지 않았거나 정화되지 않은 오수, 폐수를 내보낸 경우

3. 승인없이 폐수관을 우수망에 연결하였거나 우수관을 우수망, 우수함거, 개거에 연결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사금, 혼석, 모래를 채취하였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정화대책을 세우지 않고 채취하였을 경우
5.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허가, 수역토지리용허가, 하천리용허가 등 해당한 승인을 받지 않고 대동강을 리용한 경우
6. 각종 폐수, 오수,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그것을 대동강에 류출시켰을 경우
7. 대동강에 오물을 버렸을 경우

제53조 (개인벌금처벌의 적용)

다음의 경우 개별적공민(외국인 포함)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살림집우수관을 우수망과 우수함거, 개거에 연결하였을 경우
2. 대동강에서 룬전기재, 설비, 비료용기 같은것을 세척하였을 경우
3. 대동강에 각종 오물과 수생동식물의 서식에 해로운 물질을 버렸을 경우
4. 위생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수원함양림에서 채벌을 하였거나 금지된 시기에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6. 대동강보호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7. 그밖에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4조 (원상복구 또는 변상)

대동강과 그 류역에 설치한 오염방지시설을 파손시켰거나 각종오염물질을 배출시켰을 경우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시킨다.

제55조 (중지 또는 폐업)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1. 건설계획 또는 설계대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2.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정화시설을 건설, 개건하지 않았거나 국가환경보호 기준을 초과한 폐수, 오수를 내보냈을 경우
3. 승인없이 폐수관을 우수망에 연결하였거나 우수관을 우수망, 우수함거, 개거에 연결하였을 경우
4. 미광침전지를 꾸리지 않고 미광을 대동강과 그 지류로 흘러보냈을 경우
5. 운항 또는 생산과정에 기름 같은 유해물질을 류출시켰을 경우
6. 환경보호담보증이 없거나 환경보호검사를 받지 않고 배를 운항할 경우
7.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건설, 지하자원탐사 및 개발을 하

였을 경우

8. 자체정화장, 침전지의 수질측정분석자료를 3개월이상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지 않았을 경우
9. 대동강수역토지이용질서를 어졌을 경우

앞항 1~9호의 행위를 여러번 반복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56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오염방지시설건설 및 개건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건설 및 개건하지 않았을 경우
2. 정화장, 뽕프장, 오수망과 우수망의 건설, 보수, 정비, 운영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를 보장해주지 않아 오수정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하여 정화되지 않은 오수, 폐수가 대동강과 그 지류에 흘러들게 하였을 경우
4.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사와 분석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도시오수망을 통한 산업폐수배출질서와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수, 폐기폐설물처리질서를 어졌을 경우
6. 갑문과 환수설비의 운영, 정비보수,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모래, 갑탕, 오물을 제때에 거두어내지 않았을 경우
7. 대동강제방에 승인없이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농작물을 심었거나 축조한 돌을 뺐았거나 흙을 파내고 제방과 시설물, 란간 등을 손상 또는 파괴시켰거나 수원함양림을 채벌하였을 경우
8. 대동강과 그 류역에 비료, 농약이 흘러들게 하였거나 설비와 룬전기재 같은것을 세척하면서 기름, 유해물질을 류출시켰거나 미광, 버럭, 오물을 버렸을 경우
9. 승인없이 대동강과 그 류역에서 자원채취를 하였거나 건설계획과 설계의 요구대로 오수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다음단계의 건설을 하였을 경우
10. 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제거를 위한 설비를 정해진 기준에 맞게 갖추지 않았거나 각종 오염물질을 정해진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11. 승인없이 연유, 석탄 같은것을 취급하는 항, 부두를 건설하였거나 환경보호적요구에 맞지 않는 항, 부두, 저탄장, 공재장, 하선장 같은것을 철수 또는 유키지 않았을 경우
12. 항, 부두에 환경보호시설과 상하선설비, 침전지와 배수로, 우개시설, 살수장치 같은것을 설치하지 않아 기름, 석탄, 광석같은것이 류출되게 하였을 경우

13. 정당한 이유없이 대동강오염방지를 위한 감독통제에 불응하였거나 자료요구를 거부하였거나 감독사업을 방해하였을 경우
앞항 1~13조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7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주체86(1997)년	9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3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2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2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6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9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79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2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로법의 기본

제1조 (도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은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도로건설원칙)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도로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도록 한다.

제3조 (도로관리원칙)

도로관리를 잘하는 것은 도로의 리용률을 높이고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도로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도로관리를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4조 (도로의 리용원칙)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국가는 도로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5조 (전인민적도로애호교양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도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

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과학연구, 기술자, 전문가양성, 과학기술도입원칙)

국가는 도로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강화하며 도로건설과 관리에서 선진과학기술과 공법을 적극 받아들일도록 한다.

제7조 (도로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도로건설

제8조 (도로건설의 기본요구)

도로건설을 잘하는 것은 나라의 전반적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완성하고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근거하여 도로를 계획적으로,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 (도로건설계획)

도로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건설할 도로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도로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며 도로건설을 대상건설에 앞세울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0조 (도로설계)

도로설계는 도로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도로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고 세계적인 도로기술발전추세에 맞게 도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와 주요도로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와 주민지대를 우회시키며 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도로건설의 담당자)

도로건설은 도로건설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고속도로와 주요도로의 건설은 도로건설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도로건설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2조 (설계에 기초한 도로건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건설을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도로건설을 할수 없다.

제13조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리, 굴길을 비롯한 도로구조물건설과 지하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고 로반쌓기, 로반다지기, 도로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와 표준공법을 지켜야 한다.

제14조 (도로의 포장)

주요도로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장한다.
도로포장은 세멘트 또는 아스팔트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제15조 (도로건설작업의 기계화)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고 도로건설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도로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도로건설의 점검사)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건설에 대한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엄격히 하여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중간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공사를 할수 없으며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도로는 도로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제3장 도로관리

제17조 (도로관리의 기본요구)

도로관리는 도로를 보수정비하여 그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도로의 급수)

도로는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급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한다.

제19조 (도로관리의 담당자)

도로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고속도로와 1급부터 4급까지의 도로는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이, 5급, 6급도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제20조 (도로실태의 조사와 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실태를 조사 장악하고 도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로등록대장에는 등록명, 도로의 급수와 길이, 너비, 포장실태 같은 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로의 보수정비)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수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도로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포장도로의 파손된 부분은 제때에 수리하며 토사도로는 깐자갈 또는 석비레를 퍼거나 도로바닥을 깔고 다지는 방법으로 평탄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차세척)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입구도로 같은 필요한 장소에 차세척장을 꾸리고 도시로 들어오는 차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먼지, 흙탕물 같은것이 묻어 어지러워진 차는 도시로 들어올수 없다.

제23조 (도로의 주변관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옆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성격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으며 나무사이의 간격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제24조 (도로관리구간의 분담)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m²당관리제의 원칙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며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구간의 도로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도로의 안전성, 문화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의 필요한 구간에 도로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보수나 청소, 눈치기 같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성원들이 발광조끼를 입도록 하며 차단물표식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대책을 철저히세워야 한다.

발광조끼를 입지 않고서는 도로에 나와 작업을 할수 없다.

제25조 (도로보수정비기간)

국가는 도로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보수정비기간을 정한다.

도로보수정비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 (집중적인 도로보수정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보수정비기간에 로력과 운수수단을 동원하여 도로보수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도로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고속도로와 중요도로로부터 정한 거리안에 건물을 짓지 말고 나무숲을 조성하며 고속도로주변에 있는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로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승인없이 고속도로에 인입도로를 내거나 가로수를 찍는 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제4장 도로리용

제28조 (도로리용의 기본요구)

도로리용을 잘하는 것은 교통의 안전성,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29조 (도로리용허가증)

해당 차는 도로리용허가증이 있어야 도로로 운행할수 있다.
도로리용허가증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도, 시, 군도로관리기관이 해당 은행기관의 도로사용료납부확인서에 따라 발급한다.

제30조 (고속도로의 리용금지)

고속도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어지럽거나 제정된 속도를 낼수 없는 차는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고속도로의 승인되지 않은 인입도로로는 차를 운행할수 없다.
공민은 고속도로로 걸어나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며 고속도로주변에서 개를 기르거나 집짐승을 방목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짐수송시의 도로관리)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포장도로에 흙을 문혀들이지 말며 석탄, 세멘트 같은 것을 수송하면서 도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도로에 손상을 줄수 있는 짐을 수송하려 할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2조 (도로표식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의 정해진 곳에 경고, 금지, 지시, 안내표식 같은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도로리용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표식물은 빛반사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도시도로의 차운행)

도시도에서 차의 운행은 정해진 도로로만 할수 있다.
무한궤도차는 승인없이 세멘트, 아스팔트포장도로로 다닐수 없다.

제34조 (도로리용에 지장을 주는 공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같은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와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차운행에 지장이 없게 돌림길, 교통안전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제35조 (도로사용료)

도로로 차를 운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관광, 짐수송 같은 목적으로 도로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문다.
도로사용료는 도로건설 및 보수 같은 해당 용도에만 쓴다.
도로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자격기관이 한다.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로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도로판정검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마다 도로판정검열을 조직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도로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도로부문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도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0조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도로건설의 중지)

승인없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도로건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건설을 중지시킨다.

제42조 (운행중지, 원상복구, 손해보장)

도로리용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며 도로와 그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

주체86(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108(2019)년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9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0호로 수정보충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제1조 (물자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은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물자원과 그 구성)

물자원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리용할수 있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물이다.
물자원에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 있는 물과 온천, 약수, 샘, 지열수, 지하초염수 같은것을 포함한 땅속의 물이 속한다.

제3조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 개발원칙)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을 잘하는 것은 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물자원을 적극 찾아내고 전망성있게 개발하도록 한다.

제4조 (물자원의 보호원칙)

물자원의 보호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물자원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전체 인민이 물자원보호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물자원의 리용원칙)

물자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며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물자원부문의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물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도록 한다.

제7조 (물자원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제8조 (물자원조사 및 탐사, 개발의 기본요구)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은 물자원을 장악하고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물자원조사 및 탐사기관)

땅겉면에 있는 물자원의 조사는 기상수문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물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해당 과학연구 및 설계기관도 땅겉면에 있는 물자원을 조사할수 있다.
땅속에 있는 물자원의 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밑에 전문지하자원탐사기업소가 한다.

제10조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방법)

물자원을 조사 및 탐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물자원을 정확히 조사 및 탐사하여야 한다.
하천, 저수지, 호소에 있는 물자원의 조사자료는 중앙기상수문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며 땅속에 있는 물자원의 탐사자료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내여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물자원개발계획의 작성)

물자원의 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물에 대한 인민경제의 전망적인 수요를 타산하여 물자원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2조 (물자원의 개발승인)

물자원의 개발승인은 대상에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 있는 물자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땅속에 있는 물자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물자원 개발목적과 규모를 밝힌 물자원개발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첨부한다.
농촌, 산간지역 등에서 농업생산용, 주민생활용으로 리용하려는 지하수자원이나 용출량이 적어 경제적리용가치가 적은 지하수자원은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데 따라 리용할수 있다.
물자원개발대상에 따르는 구체적인 심의, 승인, 등록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3조 (물자원의 개발설계)

물자원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설계기관은 물자원개발설계를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물자원조사 및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물자원의 개발기준)

물자원의 개발은 물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물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개발을 설계대로 하며 시공에서 앞선 공법을 받아들이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3장 물자원의 보호

제15조 (물자원보호의 기본요구)

물자원의 보호는 물의 질과 량을 보존하고 물의 손실을 막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특성에 맞게 물자원보호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물자원의 보호분담)

하천, 저수지, 호소에 있는 물자원의 보호는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땅속에 있는 물자원의 보호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7조 (물자원의 조성)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원함양림을 조성하고 저수지, 호소, 우물, 굴포 같은 물잡이시설물의 보수와 하천정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필요한 물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된 물은 쓸모없이 흘러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버림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장, 침전지를 건설하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거나 침전시켜야 한다.

정화되지 않았거나 침전시키지 않은 버림물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내보낼수 없다.

제19조 (큰물의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장마철에 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물관리에 필요한 기상수문관측자료와 기상예보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비상설큰물관리지휘부)

국가는 장마철기간 물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큰물관리지휘부를 조직한다.

큰물관리지휘부조직은 내각이 한다.

제21조 (장마철기간의 물관리)

장마철기간 물관리를 큰물관리지휘부의 지령에 따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관리지휘부의 지령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큰물관리지휘에 필요한 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물빼기시설물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큰물로 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장악하고 장마철전으로 대책을 세우며 수문, 양수장을 비롯한 물빼기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물빼기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하천의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에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물체를 버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며 모래, 자갈 같은 것을 쌓아놓지 말아야 한다.

제4장 물자원의 리용

제24조 (물의 절약)

물자원의 리용을 잘하는 것은 물을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의 량비를 없애고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5조 (계획적인 물리용)

물자원의 리용은 물리용계획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물을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

제26조 (다른 지역 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물자원부족으로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의 물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물리용시설의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추공, 용수관, 물길을 비롯한 물리용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 물손실을 없애야 한다.

물손실이 많은 시설물은 리용할수 없다.

제28조 (용도에 맞는 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
먹는물은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29조 (물의 수출승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이 좋은 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수질이 좋은 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물리용소비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물리용소비기준을 초과하지 말며 물을 아껴써야 한다.

제5장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제31조 (물자원의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2조 (물자원관리에 대한 지도)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 (물리용률의 제고)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물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물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물자원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물자원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물의 리용중지, 손해보상)

물리용계획을 초과하였거나 물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거나 버림물을 정화, 침전시키지 않고 내보낸 경우에는 물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주체86(1997)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103(2014)년 9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7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14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9호로 수정보충

제1장 바다오염방지법의 기본

제1조 (바다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다오염이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여러가지 유해물질들이 바다에 퍼져 바다수질이 나빠지는것을 말한다.
2. 수중공사란 방파제, 호안, 방조제, 항과 부두, 대륙붕구조물의 건설, 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같은 바다물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3. 배란 물우 또는 물속에서 수송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쓰이는 모든 형식의 부유수단의 총체를 말한다.
배에는 고정 및 이동식해상시추구조물도 속한다.
군함이나 경기용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배오염물질이란 배운영과정에서 생기는 폐유, 기름찌꺼기, 기름섞인 물, 화물찌꺼기, 생활오수 및 오물, 유독성물질, 발라스트물 같은것을 말한다.
5. 배의 오염방지시설이란 배의 항행 및 운영과정과 선원들의 생활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분리, 저장,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6.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란 배기름오염사고발생시 국가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긴급동원되어 류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오염방지사설의 설치 및 운영원칙)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깨끗이 정화하는 것은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해안연선의 주민지구와 산업시설, 배와 해상시설물들에 오염방지사설을 갖추고 그 운

영을 정상화하여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제4조 (바다오염방지사업을 전인민적사업으로 할데 대한 원칙)

바다오염방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바다오염방지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과학기술성과를 바다오염방지분야에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원칙)

국가는 바다오염방지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분야의 과학기술성과를 바다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받아들일도록 한다.

제6조 (바다오염방지분야에서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바다오염방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바다오염방지계획과 바다환경조사

제7조 (바다오염방지사업을 계획적으로 할데 대한 요구)

바다오염방지계획은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중요계획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오염방지계획을 바다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바다오염을 미리 막고 오염사고를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세워야 한다.

제8조 (바다오염방지계획의 구분 및 작성기관)

바다오염방지계획은 전국적인 바다오염방지계획과 지역별 바다오염방지계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바다오염방지계획으로 나눈다.

전국적인 바다오염방지계획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지역별 바다오염방지계획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바다오염방지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제9조 (바다오염방지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오염방지계획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0조 (바다오염방지계획의 심의, 승인 및 실행)

전국적인 바다오염방지계획은 내각이, 지역별 바다오염방지계획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방지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며 그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질보호구역의 설정)

바다의 해당 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보호구역을 정한다.
수질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2조 (바다의 수질조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수질보호구역, 륙지오염물질배출구역, 수중공사구역과 그밖에 바다오염이 생길수 있는 구역에 수질조사지점을 정하고 바다에 대한 수질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바다동식물의 조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바다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 시기별에 따르는 조사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 (바다의 수질, 동식물조사자료의 분석, 생태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상태를 비롯한 바다생태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며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바다오염의 원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바다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바다오염평가기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바다오염평가기준에 따라 바다오염상태를 정상적으로 측정하며 바다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다오염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제16조 (바다환경조사자료의 통보와 그에 따르는 대책)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바다환경을 조사장악하고 연구하는 해당 기관은 바다의 수질조사, 동식물조사자료를 비롯한 생태환경조사자료와 그에 따르는 의견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과 해당 기관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바다의 오염을 막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제17조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의 수립)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전국적인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지역별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세운다.

제18조 (해안관리분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안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안관리구역을 분담하고 그 관리정형을 엄격히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해안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바다환경이 어지럽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바다오염방지를 위한 노력, 설비, 자금의 동원)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가 심히 오염되었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력과 설비를 동원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노력과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륙지오염물질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제20조 (바다오염방지대책을 건설에 앞세울데 대한 요구)

환경보호사업을 건설에 앞세우는것은 국가의 중요정책이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해안연선의 주민지구, 산업지구건설에 앞서 바다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21조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륙지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바다에 내보낼수 있는 배출기준은 내각이 정한다.

기름, 유독성물질, 병원성폐기폐설물, 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 중금속폐수 같이 바다를 심히 오염시킬수 있는 오염물질은 바다에 내보낼수 없다.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륙지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려할 경우 해당 지역국토환경보호기관에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량, 농도, 정화설비의 기술자료, 오염물질 배출장소 같은것을 밝힌다.

제23조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의 검토승인, 배출기준의 준수)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을 받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정한 기간안에 신청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지료해를 한 다음 오염물질배출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의 배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배출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승인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4조 (오염물질배출장소의 선정)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오염물질배출장소를 정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바다의 흐름과 생태환경조건, 경제활동과 생활환경에 주는 영향 같은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제25조 (오염물질의 정화, 소독)

해안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능력에 맞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앞선 정화방법을 받아들여 주민지구와 산업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

유독성, 병원성폐수는 정화시설을 따로 갖추고 정해진대로 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의 요구를 어기고 정화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바다에 내보낼수 없다.

제26조 (항, 부두, 포구, 갑문수역과 바다로 흐르는 강하천의 관리)

항, 부두, 포구, 갑문수역과 바다로 흐르는 강하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수역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며 기름과 오물, 침전물같은것을 제때에 거두어내야 한다.

제27조 (농약이 섞인 물의 처리)

농약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수 있는 논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채광으로 인한 바다환경의 파괴금지)

해안연선에서 모래, 사금같은 것을 채취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주변의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끝냈을 경우에는 작업장을 원상대로 정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제29조 (폐기물에 의한 바다오염방지)

폐기물은 바다에 버릴수 없다.

부득이하게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려 할 경우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해양과학연구기관과 합의한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해준 곳에 버려야 한다.

제30조 (문화휴식장소에서 바다오염방지)

바다기슭의 솔밭, 기암절벽, 풍치좋은 섬과 관광지, 해수욕장, 휴양소, 료양소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을 방지할수 있도록 위생시설,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다를 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상류들에 오물잡이시설과 흙, 모래잡이시설을 표준대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바다나 해안에 생활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 (바다오염행위에 대한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 또는 바다오염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가까운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수중공사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제32조 (수중공사를 하는 단위의 바다오염방지의무)

바다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수중공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중공사를 하는 경우 바다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중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중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서는 수중공사를 할수 없다.

제34조 (바다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수중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사대상에 맞는 바다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중공사금지대상)

바다가의 명승지보호구, 해수욕장, 수산자원보호구, 양식장 같은 수역을 오염시키거나 경관을 파괴하는 수중공사는 할수 없다.

제36조 (기름 및 오염물질류출사고의 방지)

수중공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류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하여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제37조 (폭파질서, 방사성 및 유독성물질의 리용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중폭파를 할 경우 바다의 오염을 막고 동식물을 보호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 또는 잘 용해되는 유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재료는 수중공사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수중공사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중공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사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을 배출기준에 맞게 정화한 다음 해당 지역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하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름찌꺼기나 유독성 및 방사성물질, 중금속폐수가 들어있는 오염물질은 바다에 배출할수 없다.

제39조 (오염제거를 위한 비상안전대책계획)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중공사과정에 기름 및 오염물질을 류출시킬수 있는 위험과 오염을 제거할수 있는 비상안전대책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안전대책계획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제40조 (양식장에서 바다오염방지)

바다가양식장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식밀도를 과학적으로 정하며 먹이와 비료, 약물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5장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

제41조 (배에 의한 바다오염방지의 요구)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는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의한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오염방지는 이 법과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42조 (바다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배의 설계, 건조, 개조)

배를 설계하거나 건조, 개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한 해당 규정에 따라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한 해당 규정에 맞게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였는가를 정확히 심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한다.

제43조 (배의 오염방지설비와 오염제거수단의 구비)

배는 기름려과장치와 소각기를 비롯한 오염방지설비와 기름분산제와 같은 오염제거수단을 갖추고 운항하여야 한다.

배의 종류와 크기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와 오염제거수단의 설치기준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배오염방지설비와 오염제거수단을 생산, 변경, 개조하거나 배에 설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발라스트물과 배의 오염물질의 처리)

배는 발라스트물과 오염물질을 정해진 구역에서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바다의 배출할수 없는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접수 및 처리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배와 오염물질접수 및 처리기관은 오염물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은 정형을 기록하며 확인문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 (해상시추구조물과 부유식 봉사시설물에 의한 바다오염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 봉사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우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류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하여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 봉사시설 물은 운영할수 없다.

제46조 (유해물질의 취급 및 적재, 수송)

배는 유해물질을 수송하려 할 경우 유해물질의 취급 및 적재, 수송과 관련한 문건을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배는 유해물질의 특성과 취급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같은 자료를 사전에 항무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7조 (오염방지관련문건 구비)

배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방지기준에 따르는 증서와 문건, 기록부를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바다오염방지기준에 맞는 배에 오염방지증서 또는 문건을 발급하거나 해당 기록부의 기록정형을 감독한다.

제48조 (접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항, 부두, 포구, 갑문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름찌끼, 오수, 오물, 유독성물질 같은 오염물질을 접수 및 처리할수 있는 시설과 기름차단띠와 흡수설비같은 기름오염제거수단을 정해진 능력에 맞게 갖추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오염물질의 접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해주며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배의 건조 및 수리, 해체에서 오염방지)

배를 건조 및 수리, 해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기름, 기름찌끼, 폐설물 같은 것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접수 및 처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침몰, 좌초된 배를 구조 또는 해체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배와 배짐에서 오염물질이 확대되지 않도록 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구조 및 해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배연유오염피해민사책임증서)

해당 배는 연유오염사고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수 있다는 재정담보증서와 그것을 확인하는 해사감독기관의 배연유오염피해민사책임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51조 (운항하는 배에 리용하는 연유)

해당 배는 연유기록부를 갖추고 연유의 질과 량을 기록하며 연유의 질분석자료와 견본시료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연유기록자료와 질분석자료 및 견본시료는 3년간 보관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연유는 배의 연료로 쓸수 없다.

제52조 (배기름오염비상계획 작성)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전국적인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해사감독기관은 전국적인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지역별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인민정권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국적 또는 지역별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단위별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배는 자체의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따로 세워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배기름오염비상대응)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세우고 필요한 지역에 배기름오염사고에 비상대응할수 있는 해상환경보호조정단위를 내오며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연계하여 오염제거사업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상환경보호기금에 적립한 자금은 기름오염제거를 비롯한 오염방지사업에 리용한다.

제54조 (짐 또는 기름취급시 바다오염방지대책)

배와 항, 부두, 포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 또는 기름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취급하여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5조 (바다오염방지사업의 지도기관)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6조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사감독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사감독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바다에 대한 환경감시체계를 바로 세우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7조 (손해보상, 원상복구)

이 법을 어겨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제58조 (바다오염에 대한 책임관계)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오염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안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바다환경이 어지럽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을 진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진다.

제59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또는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였을 경우
2. 분담받은 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3.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다에 배출하였을 경우
4. 바다나 해안에 폐기폐설물, 오물을 망탕 버렸을 경우
5.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바다 및 해안에서 탐사, 개발, 건설, 양식장을 운영하였거나 탐사, 개발, 건설, 양식과정에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6. 모래, 사금채취질서를 어겨 바다를 오염시켰거나 경관을 파괴하였을 경우
7. 배의 설계, 건조, 개조를 바다오염방지의 요구에 맞게 하지 않았을 경우
8. 발라스트물과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정해진 질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9. 배에 오염방지와 관련한 증서, 문건, 기록부를 규정대로 갖추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0. 항, 부두, 포구, 갑문에 배오염물질접수 및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11. 기술상태가 불비한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봉사시설물을 운영하여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12. 유해물질의 취급 및 적재, 수송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아 바다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배를 건조 및 수리, 해체하면서 오염물질접수 및 처리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침몰된 배의 구조, 해체작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15.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6. 이밖에 이 법에서 정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60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9조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

주체100(2011)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37호로 채택

제1장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기본

제1조 (방사성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방사성물질 및 핵시설의 안전관리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환경방사능의 감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방사성오염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방사능을 띤 물질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방사선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방사선을 내보내는 물질이다. 방사선물질에는 우라늄, 토륨 같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과 플루토늄, 스트론튬, 세슘 같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물질이 속한다.
2. 핵시설이란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 또는 보관하는 시설이다. 핵시설에는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로, 핵가속장치, 방사성물질의 생산, 가공, 저장, 재처리시설 같은 것이 속한다.
3. 환경방사능이란 대기, 물, 토양, 생물 같은 자연환경속에 포함되어있는 자연 및 인공방사능이다.

제3조 (방사성오염의 미연방지원칙)

방사성오염을 철저히 막는 것은 방사선의 피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방사성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며 방사선피해를 제때에 제거하도록 한다.

제4조 (방사성오염방지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그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 (방사성오염방지사업의 과학화, 현대화원칙)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방사성오염방지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전문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6조 (균중적인 방사성오염방지사업원칙)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별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방사성오염의 위험성을 잘 알고 그것을 막기위한 사업에 적극 동원되도록 한다.

제7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방사성물질을 다루거나 핵시설을 운영하거나 그와 련관되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상주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제9조 (방사성안전기준에 따르는 방사성오염방지대책수립)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방사성오염을 막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방사성물질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전에 방사선안전기준에 따르는 방사성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방사성안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제10조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신청)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핵안전감독기관에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리용신청문건을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리용목적과 방법, 방사성오염방지대책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1조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승인)

핵안전감독기관은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신청문건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를 엄격히 한데 기초하여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방사성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승인을 해줄수 없다.

제12조 (방사성물질의 등록)

방사성물질과 그것을 다루는 시설 및 장치는 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방사성물질과 그것을 다루는 시설, 장치는 리용할수 없다.

제13조 (방사성물질의 공급, 이관,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공급하거나 이관, 반환하려 할 경우 핵안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급, 이관,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방사성물질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보관하려 할 경우 방사선을 차폐할수 있게 특별히 제조된 보관용기에 핵종별로 따로따로 넣어 방사선안전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방사선위험표식을 하며 방사성물질보관장소에 다른 물질을 넣지 말아야 한다.

방사성물질보관장소는 핵안전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으며 방사성물질보관장소주변에는 보호구역을 정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5조 (방사성물질의 입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내주거나 받을 경우 입출고문건을 엄격히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성원의 립회밀에 내주거나 받아들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입출고정은 입출고대장에 정확히 등록한다.

제16조 (방사성물질보관장소에서의 금지행위)

방사성물질보관장소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그 량을 승인없이 공개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보관장소를 마음대로 옮기거나 변경시키는 행위
3. 외부인원을 출입시키는 행위
4. 방사성물질보관장소주변에서 인화성, 폭발성물질 같은 것을 다루는 행위

제17조 (방사성물질의 수송시 검사 및 허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려 할 경우 핵안전감도기관의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인민보안기관으로부터 방사성물질수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안전검사와 수송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방사성물질을 수송할수 없다.

제18조 (방사성물질수송시 안전대책)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과정에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측정하며 방사성오염준위가 높아져 주변환경에 방사선피해를 줄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송을 즉시 중지하고 방사성오염방지대책을 세운 다음 수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수송수단에는 방사선위험표식을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사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제19조 (방사성물질의 수출입)

방사성물질의 수출입은 중앙핵안전감독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방사성물질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의 수출입과 관련한 문건을 중앙핵안전감독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방사성물질의 품명과 수량, 기술적특성, 용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0조 (방사성물질의 취급자격)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성원은 해당 자격을 가져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취급자격을 주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해당 자격을 소유하지 못한 성원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할수 없다.

제21조 (방사성물질취급성원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취급성원에 대한 의학적, 선량학적검사를 정상적으로 하며 방사선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방사성물질취급성원에게는 유해가급급제, 보충휴가제를 실시하며 필요한 영양제, 로동보호 물자를 정해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방사성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호의 생산 및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호, 방사선진단 및 치료기구, 방사성약품,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장치를 생산하거나 리용하려 할 경우 핵안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핵기술리용시 방사선안전보장)

진단 및 치료, 지질탐사, 결함탐지, 자동화, 과학연구를 위하여 핵기술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해당 장치나 기구, 방사성물질보관용기, 작업장소에는 방사선위험표식을 하며 관련이 없는 성원을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

제24조 (핵시설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을 건설하려 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대상과 절차, 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5조 (핵안전성분석평가)

핵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안전성과 방사선안전을 담보하는 핵안전성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핵안전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성분석평가는 예비안전성분석평가와 최종안전성분석평가로 나누어 한다.

예비안전성분석평가는 핵시설의 건설허가단계에서, 최종안전성분석평가는 운영허가단계에서 한다.

핵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지조사자료, 핵시설의 사고발생확률분석평가자료,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평가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6조 (통제구역, 보호구역, 감시구역의 설정)

방사선피해를 막기 위하여 핵시설주변의 일정한 구역에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을 정한다.

방사선통제구역은 연간 10mSv이상의 방사선유효선량이 미칠수 있는 범위안에서, 방사선보호구역은 연간 1mSv이상의 방사선유효선량이 미칠수 있는 범위안에서, 방사선감시구역은 방사선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에서 지켜야 할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7조 (핵시설의 방사능감시)

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능감시체계를 세우고 방사능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방사선이 방출될 경우에는 제때에 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리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8조 (핵시설주변에 대한 방사능감시)

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주변의 공기, 물, 토양, 생물에 대한 방사성오염상태를 정상적으로 감시하며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성오염도가 방사선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제29조 (방사성폐기물량을 낮출데 대한 요구)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기술을 갱신하여 생산, 리용과정에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량을 정해진 기준아래로 극력 줄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과정에 나오는 방사성폐기물량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 기관이 한다.

제30조 (방사성폐기물의 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는 과정에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등록한 다음 정해진 질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전문기관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처리)

방사성오염도가 높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는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오염도가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려 할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 및 방법)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와 처리정형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주민지구나 수원지, 농경지, 저수지, 호수, 바다 같은 장소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수 없다.

제33조 (방사성폐기물의 환경배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오염도가 낮은 방사성폐기물을 핵안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환경에 배출할수 있다.

방사성오염도가 정해진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폐기물은 환경에 배출할수 없다.

제34조 (방사성폐기물, 방사성오염물질의 수입금지)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성오염물질의 수입은 금지한다.

방사성폐기물이나 방사성오염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역을 통과 할수 없다.

제5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제35조 (환경방사능감시체계의 수립)

핵안전감독기관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환경방사능감시체계를 세우고 환경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환경방사능감시를 위하여 중앙과 도 그밖의 필요한 지역에 환경방사능감시소를 설치한다.

제36조 (환경방사능의 감시령역)

핵안전감독기관은 중요행사장,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 핵시설 또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변지역 그밖의 필요한 지역과 수역을 환경방사능감시

령역으로 정하고 정상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제37조 (환경방사능감시대상과 내용)

환경방사능감시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기, 물, 토양, 생물속에 포함되어있는 방사성핵종과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2. 감시지역의 유효선량과 연간루적선량 및 집단선량을 감시한다.
3. 핵시설 또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에 포함되어있는 방사성핵종과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4. 건물, 원료, 자재, 설비, 제품 같은것에 포함되어있는 방사성핵종과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제38조 (환경방사능의 감시방법)

환경방사능감시는 정상감시, 특별감시, 이동감시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39조 (탐사시료에 대한 방사능검사)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탐사시료를 채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탐사시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는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방사능검사를 받지 않고 탐사시료를 내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0조 (탄광, 광산개발시 방사선안전검사)

탄광, 광산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승인을 받기전에 핵안전감독기관으로부터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의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사선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해줄수 없다.

제41조 (방사성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탄광, 광산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

핵안전감독기관은 방사성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탄광, 광산을 장악하고 정기적으로 작업장과 생산물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방사성오염발생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생산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건설물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전문부문의 일군을 참가시키고 방사선안전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사선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건설물에는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할수 없다.

제43조 (생산환경, 제품, 수출입품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

핵안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환경과 제품, 수출입품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 체계를 세우고 방사선안전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사선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생산허가 또는 규격승인, 수출입승인 같은 것을 해줄수 없다.

제44조 (방사선안전검사방법)제품 또는 수출입품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는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선안전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방사성오염피해발생시 비상대책)

내각과 중앙핵안전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핵사고 또는 핵폭발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방사성 오염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다음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환경방사능감시대상에 대한 특별감시를 조직한다.
2. 핵사고, 핵폭발이 일어난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같은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3. 방사성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음료수에 대한 방사성오염검사를 엄격히 하고 방사선안전이 담보되는 경우에만 생산, 공급, 판매, 리용하도록 한다.
4.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고 과학적인 시비방법을 받아들여 토양속의 방사성 물질이 농축산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방사성오염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학검진을 엄격히 하고 해당한 치료대책을 세운다.
6. 신문, 방송 같은 선전수단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방사성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때에 알려주도록 한다.

제46조 (방사선측정수단에 대한 검정)

방사선측정수단은 핵안전감독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방사선측정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제6장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 (방사성오염방지사업의 지도)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핵안전감독기관은 방사성오염방지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방사성오염방지
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였을 경우
2. 방사성물질의 등록, 공급, 이관, 반환, 보관, 입출고, 수송, 수출입질서를 어겨 방사성
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및 리용과 핵기술의 리용질서를 어겨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4. 핵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핵안전성분석평가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핵시설과 그 주변의 방사선안전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방사성폐기물의 등록, 처리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방사성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어기고 방사성폐기물을 환경에 배출시켰을 경우
8. 방사성물질을 우리 나라에 들여와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9. 방사선안전담보가 없이 건설을 하였거나 제품을 생산 또는 수출입하여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방사선측정수단에 대한 검정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않아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50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강오염방지법

주체110(2021)년 10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5호로 채택

제1장 보통강오염방지법의 기본

제1조 (보통강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강오염방지법은 보통강의 보호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통강의 오염이란 사람의 생활과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보통강에 흘러들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강물의 질적지표와 상태가 달라진것을 말한다.
2. 보통강의 생태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통강과 그 주변환경을 말한다.
3. 보통강과 그 류역이란 보통강의 본류와 지류, 그 주변의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보통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란 보통강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고 보통강과 그 류역에서의 시설물의 건설과 관리운영상태, 주변환경실태를 료해하며 부정적인 요소들을 장악하는것을 말한다.
5. 보통강관리기관이란 보통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와 보통강보호관리사업을 맡아하는 해당 지역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을 말한다.
6. 환수조직기관이란 대동강물을 되돌려 보통강물을 환수하는 사업을 맡아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 (보통강오염방지구역의 설정)

국가는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염방지구역을 설정한다.
보통강오염방지구역에는 평안남도 평원군에 위치한 건룡저수지로부터 평양시 만경대구역 선내동에 위치한 대동강합수점까지 보통강과 그 류역이 속한다.

제4조 (보통강오염의 미연방지원칙)

보통강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것은 보통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생산과 건설, 경영활동에 앞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보통강류역의 주민지구와 해당 기관, 기업소들에 현대적인 오수 및 폐수정화시설을 갖추고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 보통강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제5조 (과학기술성과의 도입원칙)

과학기술성과의 도입은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년차별과학연구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며 선진과학기술과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제6조 (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보통강오염방지사업은 평양시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좋은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보통강의 리용,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조사

제8조 (보통강오염방지조사체계의 수립)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조사는 수질조사, 생태환경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보통강오염방지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의 내용)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수위와 물량, 물흐름, 수질의 변화상태
2. 오염물질의 배출정형과 강오물의 발생상태
3. 강바닥에 쌓인 침전물상태
4. 수생동식물의 서식상태
5. 보통강보호시설물의 건설 및 보수, 정비, 운영상태
6. 호안림의 보호관리상태
7. 그밖의 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내용

제10조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의 방법)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집중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정기조사는 보통강관리기관이 정한 수질감시지점에서 수질지표를 매월 3차, 생태환경조사대상을 매월 1차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비정기조사는 물량과 물흐름속도의 변화가 심하거나 물온도상승으로 인한 록조현상, 물고기들이 떠오르는것과 같은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다.

집중조사는 보통강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의 연계밑에 1년에 한번씩 조사대상과 내용을 설정하여 한다.

제11조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의 담당자)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1. 보통강의 본류와 지류의 수질조사는 보통강관리기관이 한다.
2. 오수망, 우수망을 통하여 나오는 오수와 우수의 수질조사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3. 공장, 기업소에서 나오는 폐수와 오수의 수질조사는 2급이상 공장, 기업소인 경우 해당 단위가, 3급이하 공장, 기업소인 경우 폐수의 수질조사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오수의 수질조사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4. 보통강관리기관은 2급이상 공장, 기업소에서 나오는 폐수와 오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립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5. 보통강과 그 류역에 대한 환경조사는 보통강관리기관이 한다.

제12조 (수질분석의 의뢰)

폐수와 오수의 수질분석능력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문수질분석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분석자료의 과학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13조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의 기록)

보통강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정형을 해당 항목별로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수질 및 생태환경상태에서 변화가 생겼을 경우 그 원인과 대책정형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의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를 매월 1차 보통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를 종합하여 분기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해당 자료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5조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의 조건보장)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에 과학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동원시키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밀보장과 관련이 없는 한 필요한 인원과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와 그 조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거나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거나 보통강보호시설물이 파괴된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보통강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장 보통강오염물질의 처리

제17조 (정화시설의 건설 및 개건)

보통강관리기관은 해당 지역에 오수망과 오수정화장같은 정화시설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 년차별계획을 세워 제때에 건설하여야 한다.

자체정화시설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수와 오수의 완전정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낡은 정화시설을 과학성이 담보된 정화시설로 개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정화시설건설설계의 선행)

해당 설계기관은 건설대상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과학성과 전망성이 담보된 정화시설건설설계를 선행하며 이미 건설된 낡은 정화시설의 개건, 현대화에 필요한 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오수, 폐수의 정화소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 폐수정화공정을 현대화하고 정화소독체계를 세우며 정화장, 뽕프장의 정상가동, 정상관리를 보장하여 오수, 폐수를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맞게 완전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제20조 (오수의 비상방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정화장과 오수뽕프장의 보수나 오수관교체 등의 사유로 보통강에 오수를 비상방출시켜야 할 경우 보통강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강으로 오수가 비상방출되는 경우 환수조직기관은 환수량을 늘이고 수문을 열어 오염된 물을 제때에 뽑아야 한다.

제21조 (오수망을 통한 폐수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망을 통하여 폐수를 내보내려 할 경우 해당 지역 도시경영관의 합의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수의 수질지표가 달라졌거나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도 오수망인입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2조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는 폐수)

다음의 폐수는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다.

1. 오수관을 부식시킬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폐수
2. 완전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유독성폐수와 염색폐수, 종이폐수, 기름섞인 폐수
3. 소독되지 않았거나 불완전소독된 병원성폐수
4. 미광 또는 모래가 섞여 오수관을 메게 할수 있는 폐수

제23조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수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수정화시설을 따로 갖추고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 폐수를 엄격히 정화, 소독한 다음 정해진 질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도시오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오물의 처리질서를 엄격히 지켜 도시오물과 그에 의하여 오염된 비물이 보통강이나 보통강으로 통하는 우수망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감탕, 모래, 침전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통강과 정화장, 침전지에서 파낸 감탕과 모래, 침전물을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감탕과 모래, 침전물을 버리는 장소는 보통강관리기관이 정한다.

제26조 (물풀과 강오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통강의 물풀과 강오물을 정상적으로 제거하며 우수함거와 개거, 우수, 우수방출구에 모래와 오물잡이시설을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모래, 강오물이 보통강에 흘러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채취, 건설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에 미광, 버력 같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보통강과 그 류역에서 사금, 모래, 기타 광석을 채취하거나 각종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오염방지대책을 세워 흐린물과 미광, 버력이 보통강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름류출에 의한 오염방지)

보통강에서 설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름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워 보통강에 기름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세척장, 급양방사시설을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보통강에서 제마음대로 설비와 룬전기재를 청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비료, 농약에 의한 오염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보통강류역에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보통강으로 직접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료나 농약을 담았던 용기는 보통강에서 세척할 수 없다.

제4장 보통강의 보호관리

제30조 (보통강보호관리사업체계의 수립)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보통강의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도시령역안의 보통강에 대한 보호관리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이, 도시령역밖의 보통강에 대한 보호관리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제31조 (보통강보호관리사업의 계획화)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바닥파기와 석축공사, 시설물공사, 주변환경정리를 비롯한 보통강의 보호관리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계획작성기관, 설계작성기관은 보통강보호관리와 관련한 계획문건, 설계문건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통강의 대중적보호관리)

보통강관리기관은 관할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통강의 보호관리와 관련한 분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구간에 대한 보호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통강시설물의 보수관리)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보통강바닥파기)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바닥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강바닥파기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계와 지도서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35조 (보통강의 호안정리)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호안에 석축과 제방을 쌓고 지피식물 또는 나무를 심는것을 비롯하

여 호안정리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천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36조 (사방야계구조물의 설치와 호안림 조성)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에 흙과 나무, 모래와 돌이 흘러들지 않도록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며 강기슭이 패이거나 토량이 씻기는 것을 막기 위한 호안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보통강의 호안림을 채벌할수 없다.

제37조 (큰물피해의 방지)

보통강관리기관은 큰물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받거나 받을수 있는 지역과 대상들을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고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피해복구 사업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제38조 (보통강주변의 공원, 유원지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주변의 공원, 유원지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제정된 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 보통강과 그 류역의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39조 (수생동식물의 보호)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의 수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동식물의 서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폭약, 농약이나 유독성물질을 리용하여 또는 수산자원보호월간에 물고기를 잡을수 없다.

제40조 (수문관리)

수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문설비를 현대화하고 관리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 보통강의 오염과 큰물피해를 막고 농업용수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보통강의 환수)

환수조직기관은 보통강의 환수를 정상적으로 하며 계획된 환수량을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강의 오염도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전면환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

제42조 (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계획의 수립)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과학연구계획을 년차별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과학연구성과도입)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성과를 보통강 보호관리사업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44조 (보통강관리를 위한 표준지표의 설정)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보통강의 계절별, 시기별 표준물높이와 환수량, 지역별에 따르는 강바닥과 물면과의 정상높이 등 보통강의 보호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표준지표를 확정하여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45조 (하천관리기술의 발전)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물리, 화학적 및 생물학적 정화방법과 자연의 자체정화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수질정화기술, 생태복원기술을 비롯한 하천보호관리부문의 선진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46조 (침전물의 재자원화)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통강과 우수정화장, 침전지에서 나오는 감탕이나 모래, 침전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과학연구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인재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여하천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키워내야 한다.

제48조 (최신과학기술자료의 보장)

대외경제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하천보호와 관리분야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와 설비를 도시경영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 과학연구부문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장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9조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보통강오염방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 (보통강오염방지사업정형에 대한 총화)

보통강관리기관은 매월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분기 1차 보통강의 보호관리정형을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각은 보통강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는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전력, 연유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오수정화장과 오수뿔프장, 준침선, 환수뿔프장의 관리운영과 오수장능력확장공사, 오수통수능력확장공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전력은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보통강오염방지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3조 (기관벌금처벌의 적용)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외국투자기업에는 10만~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오수, 폐수정화장 또는 침전지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건설하였을 경우
2. 오수, 폐수정화장 또는 침전지의 불비점을 대책하지 않았거나 침전물을 제때에 걷어내지 않았거나 정화되지 않은 오수, 폐수를 내보낸 경우
3. 승인없이 폐수관을 오수망에 연결하였거나 오수관을 우수망, 우수함거, 개거에 연결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보통강과 그 류역에서 사금, 혼석, 모래를 채취하였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정화대책을 세우지 않고 채취하였을 경우
5.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허가, 수역토지리용허가, 하천리용허가 등 해당한 승인을 받지 않고 보통강을 리용한 경우
6. 기름폐수, 오수,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름폐수, 오수, 오물을 류출시켰을 경우
7. 소독하지 않은 병원성폐수, 폐설물을 내보냈거나 버렸을 경우
8. 각종 오물을 버렸을 경우

제54조 (개인벌금처벌의 적용)

다음의 경우 개별적공민(외국인 포함)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살림집오수관을 우수망과 우수함거, 개거에 연결하였을 경우
2. 보통강에서 룰전기재, 설비, 비료용기 같은것을 청소하였을 경우

3. 보통강에 각종 오물과 수생동식물의 서식에 해로운 물질을 버렸을 경우
4. 금지된 시기에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5. 보통강보호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6. 그밖에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5조 (원상복구 또는 변상)

제방, 뽕프장, 오물잡이시설, 오수관을 비롯하여 보통강보호관리를 위한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시킨다.

제56조 (중지)

다음의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 영업 또는 상하수도사용을 중지시킨다.

1. 건설계획 또는 하부구조설계대로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2.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정화시설을 건설, 개진하지 않았거나 국가환경보호 기준을 초과한 폐수, 오수를 내보냈을 경우
3. 승인없이 폐수관을 오수망에 연결하였거나 오수관을 우수망, 우수합거, 개거에 연결하였을 경우
4. 정해진대로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5. 3개월이상 자체정화장, 침전지의 수질측정분석자료를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지 않았을 경우
6. 보통강수역토지이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57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보통강오염을 막기 위한 조사와 분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오수 및 폐수정화시설의 건설 및 개진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보통강관리사업에 동원되지 않았거나 분담받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강바닥파기와 파낸 감탕처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물풀과 강오물제거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5. 수생동식물의 서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금지된 시기에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6. 환수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보통강보호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류용한 경우
7. 정당한 리유없이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감독통제에 불응하였거나 자료요구를 거부하

였거나 감독사업을 방해하였을 경우
앞항 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8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주체 110(2021)년 8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산림법의 기본

제1조 (산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산림과 그 소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 (산림의 분류)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땀나무림, 채종림으로 나눈다.

제4조 (산림의 통일적, 계획적건설원칙)

국가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 (산림조성원칙)

산림조성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나라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산림담당구역을 정하여주고 m^2 당관리제를 실시하며 사회주의애국립운동과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산림조성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6조 (산림보호원칙)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

국가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8조 (산림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 산림부문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제2장 산림조사 및 산림건설계획

제9조 (산림조사와 산림건설계획작성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산림조사를 정확히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산림건설계획을 바로 세우는것은 산림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산림을 정확히 조사하며 산림건설계획을 국가의 치산 치수정책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산림조사의 구분)

산림조사는 산림자원총실사와 산림자원변동정형조사 등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산림자원총실사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중앙산림지도기관이 조직하며 산림자원변동정형조사는 해마다 도(직할시)산림관리기관이 조직한다.

제11조 (산림조사방법)

산림조사는 현지조사와 함께 항공촬영, 위성화상자료해석의 방법을 결합하여 진행할수 있다. 산림설계기관, 립업설계기관, 해당 기관은 산림토지와 그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을 비롯하여 산림자원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며 그 질적 및 량적특징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 (산림조사자료의 제출)

산림설계기관, 립업설계기관, 해당 기관은 산림조사자료를 립업기관, 지방인민 위원회,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산림조사자료의 등록)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산림조사자료를 산림자원조사대장에 등록하고 수자 립상도에 반영한 다음 중앙산림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은 전국적인 산림조사자료를 분석, 종합하여야 한다.

제14조 (산림건설총계획의 작성)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산림자원총실사자료에 기초하여 산림건설총계획(순환식채벌총계획 포함)을 작성하여 중앙산림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산림건설총계획은 중앙산림지도기관이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산림건설총계획의 내용)

산림건설총계획에는 경영목적별면적배치전망계획, 수종별면적배치전망계획, 산림조성전망 계획, 산림보호전망계획, 자원리용전망계획, 산림토지리용전망계획, 생산시설건설전망계획 같은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산림건설총계획수행을 위한 전망계획, 년차별계획)

산림경영사업은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산림지도기관,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기관은 산림건설총계획수행을 위한 10년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년차별계획을 정확히 시달하여야 한다.

제17조 (산림설계의 작성)

산림설계는 산림건설총계획과 10년전망계획에 따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기관은 설계주문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설계를 작성하여 중앙산림 지도기관과 립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공에 지장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산림설계의 유효기간은 중앙산림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18조 (산림설계의 요구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자원리용사업을 산림설계에 철저히 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산림설계에는 나무심기설계, 산림개조설계, 립농복합경영설계, 산불막이선설계, 사방야계공사설계, 가끔베기설계, 다자란나무베기설계, 경제림관리설계, 떨나무림관리 설계, 채종림관리설계, 채벌구종합설계 등이 속한다.

제3장 산림조성

제19조 (전망적인 산림조성)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창성이깔나무, 금야흑송, 상원뽕뿌라나무 같은 좋은 수종의 나무와 잣, 밤, 돌배, 단나무 같은 산열매나무를 배합 하여 산림면적을 끊임없이 늘이고 다양화, 다종화를 실현하며 산림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면적당 축적을 늘일수 있도록 산림개조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나무종자 및 나무모생산)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립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세워 산림병해충피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모양과 재질이 좋은 나무품종을 육종하며 주요 수종의 우량나무 채종림조성과 관리, 나무종자생산 및 공급을 기업적방법으로 전문화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원천과 전기 보장조건을 비롯한 생산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나무모 생산에 유리한 곳에

양묘장을 잘 꾸리고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기술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여야 한다.

나무종자의 수매는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21조 (나무종자와 나무모의 검사)

립업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산림조성에 쓸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는 산림조성에 쓸수 없다.

제22조 (식수월간)

국가는 산림조성을 적기에 균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수월간을 정한다. 식수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3조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심기와 심은나무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 나무심기 계획과 심은 나무가꾸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 사름률을 90%이상 보장하며 나무를 경영목적과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키워야 한다.

제24조 (약초와 산나물재배)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제25조 (림농복합경영)

중앙산림지도기관,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을 앞세우면서 경제적수요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산림구역에 립농복합경영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와 함께 농작물, 약초, 산나물, 먹이풀 같은것을 재배할수 있다. 이 경우 립농복합경영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나무심기와 비배관리를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목재림, 경제림의 조성)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림과 섬유제지원료림, 기름원료림, 산과실림 같은 경제림을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쓸모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떨나무림의 조성)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떨나무림지를 바로 정하고 빨리 자라면서도 불땀이 세며 떨감에 알맞는 아카시아나무, 상원뽕뿌라 나무 같은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어 떨나무림조성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산림조성기금)

국가는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보장을 위하여 산림조성기금을 내온다.

제29조 (산림조성기금에 적립하는 자금)

산림조성기금은 다음의 자금으로 적립할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애국의 마음으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기부하는 자금
2. 산림자원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받는 각종납부금의 일정한 몫
3. 산림법규위반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받는 벌금, 변상금
4. 해외동포와 외국인,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산림부문에서의 교류와 협조 과정에 기증받은 자금
5. 그밖에 따로 정한 자금

제30조 (산림조성기금의 리용)

산림조성기금은 산림의 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만 리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조성기금을 망탕 류용랑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산림보호

제31조 (산림보호관리의무)

산림을 잘 보호하는것은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높은 준법의식과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경 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보호관리사업 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32조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구제기간)

국가는 산불과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 구제기간을 정한다.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구제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3조 (입산, 불놓이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구역에 들어가려 할 경우 시, 군산림경영기관의 입산허가를, 산림구역과 그 변두리에서 불을 놓으려는 경우 입산허가와 함께 사회안전 기관의 불놓이허가를 받으며 입산질서와 불놓이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림구역과 그 변두리에서 불을 놓을수 없다.

제34조 (허가없이 입산할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입산허가없이 산에 들어갈수 있다.

1. 답사, 견학, 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산에 들어갈 경우
2. 립업기관, 기업소성원이 작업장에 들어갈 경우

3. 전기, 통신선의 건설 및 보수를 목적으로 산에 들어갈 경우
4. 전문지질탐사기관성원이 탐사를 목적으로 산에 들어갈 경우
5. 묘보러 갈 경우
6. 나무베기허가증, 사냥허가증 같은 산림자원채취와 관련한 허가문건이 있을 경우
7. 그밖에 따로 정한 경우

제35조 (산불예보와 감시, 통보)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산불방지를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산불예보와 감시, 통보를 강화하여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비상설로 산불방지기구를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막이선, 돌뚝차단물, 집수터 등을 계획대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불끄기)

중앙산림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은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 산불끄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여 제때에 꺼야 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끄기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단을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제37조 (산림병해충예찰 및 검역)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병해충예찰 및 검역체계를 세우고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반출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구역에서 산림자원을 내가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을 받아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중앙산림지도 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8조 (산림병해충구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생벌, 생물농약생산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생물학적 방법과 현대적인 기술장비 같은것을 적극 도입하여 균중적운동으로 산림담당구역에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39조 (사방야계공사, 그 시설물의 보수정비)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을수 있는 산림구역의 위험대상지들을 빠짐없이 찾아 사방야계공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40조 (산림생태지역보존)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연보호구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구가 아니라도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산금지지역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해당 산림구역에서 짐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수 있다.

제41조 (유용동식물의 보호증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산림구역에서 유용동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 그것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제5장 산림자원의 리용

제42조 (산림자원리용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산림지도기관, 립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을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산림토지의 리용허가)

산림토지의 리용허가는 해당 단위의 합의를 받는데 따라 내각 또는 중앙산림 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중앙산림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목적, 규모 같은것을 따져보고 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순환식채벌에 의한 목재생산)

순환식채벌은 목재자원을 늘이고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이다.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은 순환식채벌총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며 목재생산을 정상화 하여야 한다.

제45조 (나무베기허가)

나무베기허가는 시, 군산림경영기관(농장림인 경우 시, 군농업지도기관)이 한다.

12시, 군산림경영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나무베기계획에 따라 중앙산림 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로부터 채벌림지를 받은 단위에만 나무베기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연구, 땀나무 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베기허가는 정해진데 따라 나무베기계획이 없이도 할수 있다.

제46조 (나무베기허가사항준수)

나무베기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나무베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나무베기설계대로 나무를 베며 나무를

벤 다음 채벌뒤자리를 제때에 정리하고 나무를 심는것을 비롯하여 나무베기허가증에 지적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7조 (벤 나무의 반출)

벤 나무는 도(직할시)산림관리기관, 시, 군산림경영기관이 발급한 산림자원반출 문건과 담당 산림감독원의 검인이 있어야만 실어갈수 있다.

림업기관에서 생산보장하는 통나무와 쉰나무는 국가계획에 따라 림업기관, 기업소가 발급한 공급지도서와 산림자원반출문건, 담당산림감독원의 검인 이 있어야만 실어갈수 있다. 이 경우 분기 1차씩 다음 분기에 판매할 수량 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48조 (산림자원의 채취와 반출)

나무,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산림 구역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합의를 거쳐 대상에 따라 중앙산림지도기관, 도(직할시)산림관리기관, 시, 군산림경영기관의 채취허가를 받으며 정해진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을 지켜야 한다.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면서 산림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산림을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채취한 산림자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출할수 있다.

제49조 (산림토지, 벤 나무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 국가계획에 따라 벤나무 같은것을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원목은 땔나무로 리용할수 없다.

제50조 (목재소비기준)

목재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소비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며 목재소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제51조 (산짐승, 산새의 사냥)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산림지도 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52조 (산림자원의 수출입)

산림자원은 중앙산림지도기관과 합의하고 국가계획기관의 수출계획을 받아야 수출할수 있다. 그러나 잣의 수출은 중앙산림지도기관만이 할수 있다.

나무와 산짐승,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표본, 약초 같은 정해진 산림자원은 수출할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들여올 경우에는 나무의 학명과 품종이름, 생물생태학적 특성자료를 함께 들여오며 해당 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은 다음 중앙산림 지도기관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53조 (산림구역에서의 금지사항)

산림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승인없이 도로,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승인없이 부엽기지, 원로기지를 조성하거나 땅을 일구거나 묘를 쓰는 행위
3. 승인없이 나무를 꺾거나 꺾질을 벗기거나 뿌리를 캐거나 집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4. 승인없이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행위
5. 승인없이 지피식물, 송진, 정유, 송탄유 같은것을 채취하거나 숲, 석회등을 구워내는 행위
6. 토지, 물,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
7. 보호림에서 사냥, 지하자원채취, 방목, 개간 등을 하는 행위
8. 산림자원을 밀수, 밀매하는 행위
9. 산림감독일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산림감독일군을 폭행, 구타하는 행위
10. 그밖에 해당 법규에 따라 금지하게 된 행위

제6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4조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산림지도기관이 한다.

산림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산림 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담당구역의 산림경영사업을 국가의 산림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55조 (산림경영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 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산림조성과 산불방지, 병해충방지, 사방야계공사, 과학연 구사업 등 산림경영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산림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 용도에 돌려쓸수 없다.

제56조 (산림부문의 교육, 과학연구사업)

산림부문의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며 산림개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지 등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치 있는 산림과학연구성과는 서로 보급, 공유, 도입하여야 한다.

제57조 (산림부문의 실적검사)

림업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산림설계와 지도서에 준하여 산림부문의 실적검사

를 바로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평가할수 없다.

제58조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산림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나무 한 대를 베고 열대를 심는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 병해충, 사태, 산림토지개간, 도벌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산림토지리용, 나무베기, 통나무소비같은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59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제60조 (변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1. 산불을 일으켰거나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사방야계공사를 바로하지 않아 큰물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3. 나무를 도벌하였거나 밀렵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허가없이 산림자원을 채취하였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였거나 산을 개간하였을 경우
5. 허가를 받았으나 정해진 량을 초과하여 산림자원을 채취하였을 경우

제61조 (공민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1. 입산질서를 어겼을 경우 1,000~5,000원
2. 사냥, 채벌, 채취, 개간, 불농이, 방목 등 허가를 받았으나 정해진 시기, 장소, 방법, 수단과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1,000~5만원
3. 승인없이 나무를 꺾었거나 꺾질을 벗겼거나 뿌리, 돌, 흙을 채취하였을 경우 1,000~2만원
4. 승인없이 집짐승을 방목하였거나 불농이를 하였을 경우 1만~6만원
5. 승인없이 건물을 지었거나 묘를 썼을 경우 1만~10만원

제62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1. 집단적으로 입산질서를 어겼을 경우 10만~20만원
2. 산림담당구역을 분담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3. 산림조성, 보호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10만~150만원
4. 산림생태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10만~150만원
5. 사냥, 채벌, 채취, 탐사, 개발, 개간, 건설, 생산, 불놓이, 방목, 반출 등 허가를 받았으나 정해진 시기, 장소, 방법, 수단과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10만~100만원
6. 승인없이 집짐승을 방목하였거나 불놓이를 하였거나 돌, 흙을 채취하였거나 도로,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10만~150만원
7. 리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았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에게 넘겨주어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70만~150만원
8. 목재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제63조 (중지처벌)

이 법 제62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리용승인을 취소한다.

제64조 (몰수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1. 불을 일으킬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갔을 경우
2. 나무를 도벌하였거나 도벌한 나무를 가공하여 목재가공품을 만들었을 경우
3. 나무를 밀수, 밀매(운반, 보관 포함)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약초, 종자, 산열매, 산나물 같은 산림자원을 채취하였거나 채취한 산림자원을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산짐승, 산새를 잡았을 경우
6.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 같은것을 내갔을 경우
7. 승인없이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8. 제재기, 기계톱, 도끼, 톱, 낫 같은 작업도구와 자동차, 트랙토르, 우마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5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산림자원실태에 대한 조사, 장악, 통보, 등록을 바로하지 않아 산림경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산림건설계획의 작성, 시달을 바로하지 않아 산림경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산림설계작성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산림설계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 산림경영에 지장

을 주었을 경우

4. 산림조성 및 보호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5. 양묘장을 꾸리지 않았거나 관리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나무모생산 및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심었을 경우
7.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나무를 경영목적에 맞게 키우지 않았을 경우
8. 입산질서와 불놓이질서를 어겼을 경우
9. 산불을 일으켰거나 산불예보, 감시, 통보체계를 세우지 않았거나 산불끄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산불끄기에 제대로 동원되지 않았을 경우
10. 산림병해충예찰, 검역, 구제를 바로하지 않아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1. 위험대상지를 찾아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방야계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 하지 않았을 경우
12. 산림토지리용허가, 나무베기허가를 망탕 하였을 경우
13. 나무베기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채벌하였거나 나무베기허가사항을 어겼을 경우
14. 산림토지리용질서와 산림자원반출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목재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16. 수출이 금지된 산림자원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권한이 없는 단위가 산림자원을 수출하였을 경우
17. 승인없이 도로,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였거나 부업 기지, 원료기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18. 승인없이 땅을 일구었거나 모를 썼거나 돌, 흙을 채취하였을 경우
19. 승인없이 나무를 꺾었거나 꺾질을 벗겼거나 뿌리를 켜거나 집짐승을 방목하였을 경우
20. 승인없이 지피식물, 송진, 정유, 송탄유 같은것을 채취하였거나 숲, 석회 등을 구워냈을 경우
21. 산림생태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22. 보호림에서 사냥, 채취, 방목, 개간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23. 산림자원을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24. 산림조성기금조성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산림조성기금을 류용, 낭비하였을 경우
25. 산림경영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산림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 용도에 돌려 썼을 경우
26. 산림부문의 실적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산림경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7. 산림감독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산림자원침해행위를 묵인, 조장시켰을 경우
28. 산림감독일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산림감독일군을 폭행, 구타하였을 경우

앞항 1~2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 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주체110(202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5호로 채택

제1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의 기본

제1조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은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수송과 부두, 배길관리와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해 및 강하천이란 해안선으로부터 20n.mile구간에 속하는 바다와 배로 려객이나 짐을 수송할수 있는 하천(호수, 저수지 포함)을 말한다.
2. 연해 및 강하천운수란 연해와 강하천에서 배로 려객이나 짐을 나르는 사업을 말한다.
3. 수송기관이란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4. 부두란 연해 및 강하천에서 려객과 짐, 배를 취급하는데 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정기수송이란 정해진 수송구간과 운항시간표에 따라 려객이나 짐을 나르는것을 말한다.
6. 배길표식기관이란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를 맡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해 및 강하천운수발전원칙)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연해 및 강하천운수에서 최신과학기술과 선진적인 경영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여 연해 및 강하천운수의 사회적,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4조 (배의 안전운항보장원칙)

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는것은 연해 및 강하천운수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배수송을 늘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배와 선원관리를 비롯한 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질서를 바로세우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제5조 (배수송원칙)

국가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배의 리용률을 높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자재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인민들의 교통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부두와 배길관리원칙)

국가는 연해 및 강하천부두를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배길을 적극 개척하며 정상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 (이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연해 및 강하천수송에 종사하는 배와 부두, 배길을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군함과 국제항해배, 고기배, 과학연구배, 경기용배를 비롯하여 수송에 종사하지 않는 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항해배가 국내수송을 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해당 법규의 적용)

연해 및 강하천운수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경에서의 연해 및 강하천운수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연해 및 강하천에서의 배수송

제9조 (배수송담당자)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수송은 전문 연해 및 강하천운수기관, 기업소와 연해 및 강하천운수와 관련한 업종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수송기관이라고 함.)가 한다.

업종승인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다른 나라의 국적배, 경제조직, 개인은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할수 없다.

제10조 (수송기관이 지켜야 할 요구)

수송기관은 다음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배와 선원은 배등록 및 기술검사, 오염방지, 선원등록 및 자격과 관련한 해당 증명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경영범위와 배수송능력에 맞는 관리성원을 꾸려야 한다.
4. 배운영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와 환경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5. 배의 종류와 능력에 맞게 정해진 수의 려객과 화물을 수송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운항구간)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는 정해진 구간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전문 연해 및 강하천운수기관, 기업소배의 운항구간은 우선 정해준다.
배운항구간을 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2조 (수송계획)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수송은 수송계획에 따라 한다.
수송기관은 수송계획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수송계획이 없이는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수송을 할수 없다.

제13조 (려객수송)

려객수송은 정기수송으로 조직한다.
정기수송의 변경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4조 (려객의 안전과 편의보장)

려객은 렬객배로만 수송할수 있다. 이 경우 정원수나 만재잠김선을 초과하여 렬객을 태울수 없다.
려객배에는 렬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송기관은 렬객이 배에 오를 때부터 배에서 내릴 때까지 렬객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15조 (려객의 의무)

려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출항신호가 있는 다음 배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2. 부두에 배를 대고 내리라는 신호가 있기전에는 배에서 내리지 말아야 한다.
3. 배와 대기실에서 정해진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배에서 선장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5. 배의 설비와 의장품, 봉사설비같은것을 파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6. 배의 안전운항, 렬객의 안전을 비롯하여 렬객수송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배표)

수송기관은 렬객수송에서 배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배표는 렬객과 수송기관사이에 맺은 계약을 증명한다.
수송기관과 부두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부두운영기관이라고 함.)는 배 표판매에서 예약제를 널리 도입하여 렬객의 편리를 보장하며 정해진 시간까지 배표를 판매하여야 한다.
배표의 발급은 료해운부문 장표 및 수입금심사기관이 한다.

제17조 (려객수송의 취소)

수송기관은 나쁜 날씨나 자연재해, 긴급항해경보와 같이 안전운항보장에 불리한 조건이 예견되는 경우 배운항을 취소하고 려객에게 알려주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려객의 요구에 따라 수송기관은 이미 판매한 배표를 다음 항차에 리용하게 하거나 해당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에 가지고 오를수 없는 짐)

려객은 다음의 짐을 가지고 배에 오를수 없다.

1. 국가통제품
2. 사고위험성이 있는 짐
3. 역한 냄새가 나거나 어지러운 짐
4. 동물(그릇에 넣은 관상용동물과 애완용동물 제외)

제19조 (려객짐의 한도)

려객은 20kg의 범위에서 짐을 가지고 배에 오를수 있다. 이 경우 짐의 부피는 0.5m³, 길이는 2m를 넘지 말아야 한다.

무게나 부피, 길이가 정해진것보다 초과하는 짐은 따로 부쳐야 한다.

제20조 (짐수송계약)

수송기관은 짐입자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짐입자기관이라고 함.)와 짐수송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짐수송계약에는 수송기관과 짐입자기관의 이름, 배이름, 짐의 이름과 특성, 짐의 수량, 짐을 싣는 기간,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의 비용부담관계, 짐싣고 부리는 부두, 수송기간, 운임과 그 지불방법, 계약위반과 그에 대한 책임관계, 분쟁해결방법같은것을 밝힌다.

짐수송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계약당사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21조 (수송짐의 넘겨주기와 넘겨받기)

수송기관과 짐입자기관은 수송짐의 넘겨주기와 넘겨받기를 부두 또는 배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짐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짐의 넘겨주기 및 넘겨받기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2조 (짐수송에서 수송기관의 책임)

짐수송에서 수송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항해감당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짐을 넘겨받은 때부터 넘겨주기전까지 분실, 파손, 수량부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에서 정한 날자에 짐을 싣지 못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날자로부터 짐을 실은 날자까지의 짐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짐수송에 계약된 배를 보장할수 없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짐임자기관에 통지하며 짐임자기관의 동의를 받아 다른 배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짐수송에서 짐임자기관의 책임)

짐수송에서 짐임자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짐을 해당 배에 실어야 한다.
2. 배가 떠나기전에 짐수송과 관련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짐을 안전하게 싣는데 필요한 깔판재와 삽입재, 결박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도착한 짐을 제때에 부리워야 한다.

제24조 (짐수송에서 수송기관의 책임면제)

다음의 경우 수송기관은 수송하는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면제를 받을수 있다.

1. 배에 호송원이 탔을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짐자체의 물리화학적변화에 기인된 경우
4. 포장 또는 외형상 이상이 없을 경우
5. 감모량이 정해진 허용한계를 넘지 않았을 경우
6. 짐임자기관이 도착짐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았을 경우
7.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짐임자기관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제25조 (짐의 호송)

짐임자기관은 짐수송을 위하여 배에 호송을 따로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호송성원은 짐임자기관이 발급한 호송증명문건을 소지하며 실은 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항해과정에 다른 나라의 경제수역이나 공해, 국제해협을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호송을 조직할수 없다.

제26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려객수송 또는 짐수송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리행한 당사자는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안전운항의 보장)

수송기관은 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요금)

려객과 짐임자기관, 수송기관은 려객수송, 짐수송, 부두리용, 배길 및 배길표식물의 리용과 관련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해당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29조 (긴급수송조직)

국가적으로 긴급한 수송이 제기되는 경우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배를 동원하여 긴급수송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인 수송에 동원되는 배를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검사, 검역기관은 긴급수송배와 짐에 대한 검사와 수속을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 경제수역이나 공해, 국제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국제항해배와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연해 및 강하천부두와 배길의 관리

제30조 (연해 및 강하천부두건설)

연해 및 강하천부두(이 아래부터 부두라고 함.)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한다. 이 경우 중앙해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부두건설에서 지켜야 할 요구)

부두건설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와 연해 및 강하천리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통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미 운영하고있는 부두가끼이에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려객, 짐취급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부두에는 용도에 따라 렬객의 편리보장과 수용능력에 맞는 렬객취급시설 또는 부두통과능력에 맞는 짐취급, 짐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오염물질접수처리시설)

부두에는 배취급 또는 부두운영과정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접수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오염물질접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4조 (배길관리의 분담)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위한 배길의 관리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도인민위원회가 분담한데 따라 한다.

연해와 대동강수역의 배길관리분담은 중앙해운지도기관이, 그밖의 하천수역의 배길관리분담은 해당 도인민위원회가 한다.

제35조 (배길의 준척)

배길관리를 분담받은 기관은 배길의 조사측량과 준척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36조 (배길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에서 양어와 양식, 자원채취, 구조물공사와 같이 배운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며 침몰된 배, 구조물, 자원채취과정에 나오는 버려진것을 제때에 제거하여야 한다.

배길에서 과학연구, 자원채취, 구조물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해운지도기관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

배길표식기관은 배운항을 위한 배길표식물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9조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연해 및 강하천운수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 (분쟁해결)

연해 및 강하천운수계약체결 및 리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제4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승인없이 배운항구간을 변경하였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증서로 운항하였을 경우
2. 짐수송배로 려객을 수송하였거나 정해진 려객인원수, 적재톤수를 초과하여 수송하였을 경우
3. 려객수송에서 배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4. 배길관리와 준침을 바로 하지 않아 배의 운항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배길표식물을 정해진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려객 및 짐취급시설, 배길표식물을 파손 시켰을 경우

제42조 (중지 및 몰수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운항을 중지하거나 배를 몰수하는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인 긴급수송에 동원되지 않고 려객이나 짐을 수송하였을 경우
2. 배, 선원과 관련한 증거가 없이 배수송을 하였을 경우
3.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설비나 물자를 수송하였을 경우
4. 배운항구간을 승인없이 변경하여 운항하였을 경우
5.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배로 려객을 수송하였을 경우
6. 배길에서 양어와 양식, 자원채취, 구조물공사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침몰된 배와 구조물, 자원채취과정에 나오는 버력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아 배운항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배, 경제조직, 개인이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하였을 경우

제43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업종승인없이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하였을 경우
2. 제10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3. 배운항구간을 정하는 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국가적인 긴급수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배로 려객수송을 조직하였을 경우
6. 수송계획이 없이 배수송을 하였을 경우

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3호로 채택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수정보충

제1조 (유용동물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은 리로운 동물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유용동물을 증식시키고 국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유용동물의 종류와 증식원칙)

유용동물은 사람들의 생활에 리익을 주는 사슴, 까치, 클락새 같은 것이다.
국가는 유용동물의 보호증식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 종류와 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3조 (전국가적유용동물보호원칙)

유용동물의 보호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유용동물보호체계를 바로세우고 전체 인민의 유용동물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 (유용동물의 조사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유용동물의 조사등록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용동물의 종류와 분포상태, 자원량 같은 것을 조사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구의 선정)

국가는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하여 동물보호구, 새보호구를 정한다.
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 (보호구에서의 유용동물의 보호)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은 동물보호구, 새보호구에서 유용동물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동물보호구, 새보호구에서 사냥, 채벌, 채취, 방목, 개간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서식장소의 보호)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유용동물의 서식장소를 보호하여야 한다.

필요한 장소에는 새둥지 같은 것을 만들어주며 먹이조건이 불리할 때에는 보충먹이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8조 (새끼, 알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용동물의 새끼를 잡거나 알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유용동물의 새끼와 알을 다른 동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제9조 (유용동물의 인공번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용동물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유용동물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0조 (유용동물의 분포지역 확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일부 지역에만 살고 있는 유용동물을 이주순화시켜 분포지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 경우 자연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용동물의 보호기간)

유용동물보호기간은 해마다 3월부터 7월까지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용동물보호기간에 유용동물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그 번식조건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2조 (희귀한 동물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동물과 희귀한 동물을 잡지 말며 그 마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보존해주어야 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하게 된 동물도 잡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사냥허가신청)

유용동물을 잡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냥허가신청서를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사냥허가신청서에는 사냥목적, 기간, 수단, 지역과 사냥할 동물의 종류, 수량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사냥허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사냥허가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야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만 사냥수단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 (사냥수단의 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냥허가받은 유용동물을 허가받은 수단으로 잡아야 한다.

독약, 폭약, 전기 같은 것을 리용하여 유용동물을 잡을 수 없다.

제16조 (잡은 유용동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잡은 유용동물을 허가받은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유용동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유용동물의 사냥금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유용동물의 자원량을 고려하여 사냥금지기간과 구역, 잡지 말아야 할 동물의 종류를 정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사냥터의 지정)

사냥터를 지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냥터지정신청서를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사냥터를 지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제19조 (사냥터의 관리)

사냥터를 지정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냥터관리시설을 갖추고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유용동물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지 않고는 사냥터를 운영할수 없다.

제20조 (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유용동물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1조 (유용동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

국가는 유용동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필요한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기관은 유용동물보호증식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유용동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 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23조 (유용동물보호증식을 위한 과학지식보급)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과

학지식보급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4조 (유용동물보호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유용동물보호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5조 (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용동물의 보호와 사냥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사냥허가 취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어기고 유용동물을 잡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사냥허가를 취소한다.

제2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유용동물보호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주체98(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5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제1조 (자연보호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자연보호구의 정의)

자연보호구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다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실정한 구역이다.

자연보호구에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자연보호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환경보호정책에 의하여 나라의 곳곳에 수많은 자연보호구들이 설정되어 자연환경보호사업과 과학연구 및 교육사업,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하고 있다.

국가는 자연보호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끊임없이 개선발전시켜 나간다.

제4조 (자연보호구의 설정원칙)

자연보호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를 거점으로 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자연보호구를 설정하고 그 수를 늘여나가도록 한다.

제5조 (자연보호구의 조사원칙)

자연보호구의 조사를 바로하는 것은 자연보호구에서 모든 자연적인 요소들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사의 과학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전인민적인 자연보호구관리원칙)

자연보호구관리사업은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연보호구를 관리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자연보호구관리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자연보호구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이부문에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자연보호구관리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도록 한다.

제8조 (자연보호구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자연보호구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제9조 (자연보호구설정기관)

자연보호구의 설정은 자연보호구대상을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연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0조 (자연보호구의 설정지역)

자연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정할수 있다.

1. 원시림이 퍼져있는 지역
2. 동식물종이 집중분포되어있는 지역
3.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동식물이 있는 지역
4. 특출한 자연경관의 다양성으로 이름난 지역

제11조 (자연보호구의 범위설정)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를 내오려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의 제기)

자연보호구를 내려오는 기관의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를 만들어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에는 보호구의 이름과 보호대상, 목적, 위치, 면적, 보호구로 정하려는 지역의 특성과 현 상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의 심의)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자연보호구평가심의회원

회를 열고 그것을 정확히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해당 지역을 자연보호구로 설정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자연보호구의 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를 설정할데 대한 내각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국가자연보호구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양식과 방법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15조 (자연보호구의 변경)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등록된 자연보호구의 이름이나 면적 같은 것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보호구의 이름, 면적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을 거쳐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의 조직)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관련한 평가심의를 위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로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들로 구성한다.

제17조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 완충구역설정)

자연보호구에는 그 특성에 따라 중심구역, 완충구역 같은 기능구역을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생태통로설정)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린접한 자연보호구들사이에 동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퍼져나갈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제19조 (자연보호구의 조사기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도 할수 있다.

제20조 (자연보호구의 조사사항)

자연보호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조사한다.

1. 지질, 지형, 토양, 기후 같은 자연지리적환경의 변화상태

2. 동식물의 종류와 구조, 분포상태, 이동정형
3.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동식물의 마리수와 분포상태
4. 자연보호구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내외부적인 요인들

제21조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조사수단을 현대화하고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자료의 기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과정에 발견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 대한 조사자료는 없애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조사구역의 설정 및 기재설치)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구역을 따로 정해놓고 필요한 기재를 설치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조사정형에 대한 통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정형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 자연보호구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제25조 (자연보호구관리규범 및 관리체계수립)

자연보호구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자연보호구안의 모든 보호대상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자연보호구의 특성에 맞게 관리규범을 바로 정하고 정연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26조 (자연보호구관리기관)

자연보호구의 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의 관리분담을 바로하고 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연보호구관리계획)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관리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관리계획은 5~10년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 (자연보호구의 표식)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에 경계표식을 하고 필요한 장소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 같은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연피해방지)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에서 산불을 엄격히 방지하며 자연피해로부터 자연보호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제30조 (동식물의 서식조건보장 및 방역)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동식물의 서식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예찰 및 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물전염병,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31조 (동식물의 번식)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안의 동식물을 계획적으로 번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구에서 외래종의 동식물은 번식시킬수 없다.
풍토순화시킨 외래종의 동식물을 번식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금지사항)

자연보호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나무를 베는 행위
2.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3.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4. 탄광, 광산, 채석장 같은 것을 개발하는 행위
5. 땅을 파거나 개간하는 행위
6.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경관을 파괴할수 있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7. 산불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
8. 그밖에 자연보호구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

제33조 (자연보호구중심구역의 질서)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에는 인원의 출입과 건물, 시설물의 건설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같은 목적으로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에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활동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자연보호구완충구역의 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연보호구의 완충구역에 들어가 과학연구, 실습, 표본채집, 답사, 등산 같은 활동을 할수 있다.

제35조 (이상현상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보호구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자연보호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자연보호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자연보호구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보호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사업에 돌려쓸수 없다.

제39조 (과학지식보급, 대중교양)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연보호구에 대한 과학 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널리 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연보호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한다.

제41조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

자연보호구의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 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자연보호구의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피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자연보호구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동식물의 서식조건보장사업과 방역사업을 잘하지 않아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자연보호구에 승인없이 외래종을 번식시켜 생태계를 파괴시켰을 경우
5. 자연보호구중심구역, 완충구역의 질서를 어기었을 경우
6. 제32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

주체109(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4호로 채택

제1장 재자원화법의 기본

제1조 (재자원화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은 재자원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자원화란 생산과 건설, 경영활동과정에 나오는 폐기폐설물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나오는 오물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는것을 말한다.
2.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이란 국가계획위원회를 말한다.
3. 재자원화기관이란 내각 위원회, 성과 그밖의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재자원화사업의 기본원칙)

재자원화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다.

국가는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재자원화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폐기폐설물과 생활오물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한다.

제4조 (재자원화사업의 계획화원칙)

재자원화를 계획적으로 실현하는것은 국가적인 재자원화체계를 보다 완비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자원화발전전략을 바로세우고 재자원화사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5조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재자원화는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세우며 김정일 애국주의교양과 재자원화와 관련한 선전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재자원화사업에 의

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재자원화분야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재자원화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재자원화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제7조 (재자원화분야에서의 국제적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재자원화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8조 (다른 법과의 관계)

재자원화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재자원화계획

제9조 (재자원화계획화사업의 기본요구)

재자원화계획은 재자원화사업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 발전전략과 재자원화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자원화발전전략)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국가의 재자원화정책에 기초하여 재자원화의 발전방향과 도달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재자원화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재자원화발전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제11조 (재자원화발전전략지도서의 시달)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국가재자원화발전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서를 만들어 재자원화 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자원화계획초안의 작성 및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발전전략지도서에 따라 재자원화계획초안을 작성한 다음 해당 재자원화기관을 거쳐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초안에는 재자원화의 적용대상과 리용률, 재처리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 등을 반영한다.

제13조 (재자원화계획의 심의, 승인, 시달)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제기된 재자원화계획초안을 국가재자원화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정확히 심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재자원화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자원화계획의 조절변경)

재자원화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계획을 마음대로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재자원화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의 합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재자원화계획의 실행총화)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재자원화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자원화계획실행정형을 지표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재자원화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평가한다.

제16조 (재자원화통계지표)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재자원화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자원화통계지표를 재자원화의 전 과정을 포괄할수 있도록 세부화하여 설정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의 관리

제17조 (폐기폐설물, 생활오물관리의 기본요구)

폐기폐설물과 생활오물의 관리는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을 품종별로 정확히 분류하여 모두 회수, 수매하며 재리용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국가 재자원화정책의 요구에 맞게 폐기폐설물과 생활오물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의 조사장악)

재자원화기관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의 발생량과 리용률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에 분기에 1차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폐기폐설물의 회수)

재자원화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회수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생산과정에 나오는 리용가능한 폐기폐설물을 빠짐없이 회수하고 종류별로 선별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기폐설물을 쓸모없이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폐기폐설물재처리기술공정, 설비구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처리기술공정과 설비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갖추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제21조 (재처리기술공정에 대한 과학기술심의제기)

재처리기술공정을 꾸리거나 현대화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처리기술공정에 대한 경제효과성, 기술적제원 등 각종 설계 및 기술문건들을 첨부한 과학기술심의문건을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제기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재처리기술공정에 대한 과학기술심의결정)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재처리기술공정과 관련한 과학기술심의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심의를 제때에 진행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심의에서 승인되지 않은 재처리 기술공정은 도입할수 없다.

제23조 (재처리기술공정의 등록)

재자원화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처리기술공정과 관련한 과학기술심을 받은 정형에 대하여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해당 과학기술심의에서 승인된 재처리기술공정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폐기폐설물의 합리적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서 리용할수 없는 폐기폐설물을 기술경제적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재자원화계획에 맞물려 이관, 교환, 구매, 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25조 (생활오물의 분류, 세분화)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재자원화에 리용할수 있는 생활오물의 지표를 바로 정하고 재자원화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각종 생활오물을 수지오물, 종이오물 등으로 분류하여 재자원화에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생활오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경영활동과 생활과정에 나오는 오물을 품종별로 구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오물장과 오물 수집통에 넣어야 한다.

오물을 분류하지 않고 오물장과 오물수집통에 넣거나 아무곳에 망탕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오물수집통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리와 마을, 공공장소를 비롯한 필요한 곳들에 생활오물을 품종별로 분류하여 넣을수 있는 오물수집통을 설치하고 품종별표식을 하여야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 도시경영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오물수집통의 크기와 개수, 품종별표식, 설치장소 등을 규격화하며 오물수집통설치

정형을 료해하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8조 (수매소, 오물장의 설치)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편리한 장소에 생활오물을 분류하여 수집할수 있는 수매소와 오물장을 문화성있게 건설하며 오물분류의 세분화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건하여야 한다.

제29조 (오물수집통, 오물장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자를 선정하여 담당구역안의 오물수집통, 오물장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공민이 오물처리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오물처리공장건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에 오물처리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생활오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31조 (생활오물의 재리용체계수립)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재자원화기관은 수집한 생활오물을 오물처리공장에 보내어 재리용하기 위한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수집한 생활오물을 오물처리공장에 제때에 보내며 오물처리공장은 그것을 정확히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생활오물의 수송)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생활오물을 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송과정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수매체계와 방법)

수매기관은 인민반 및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수매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환수매, 이동수매, 위탁수매 등 여러 가지 형식의 수매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리용가능한 생활오물을 빠짐없이 수매받아야 한다.

수매기관이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생활오물을 수매받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4조 (수매가격)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국가가격기관, 해당 기관은 품종별에 따르는 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현실적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매사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환경오염의 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워 재자원화과정에 유독성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재자원화제품의 품질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품질검사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재자원화를 통하여 생산한 제품이 국가가 정한 품질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의 반입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부터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을 공화국령역 안에 들여올수 없다.

제4장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재자원화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전국적인 재자원화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자원화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재자원화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과학기술적문제해결)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가치있는 재자원화기술을 연구완성하여 재자원화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제42조 (재자원화사업성과의 소개선전)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재자원화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43조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평가)

재자원화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는 경제적실리에 따라 해당하는 평가를 한다.

재자원화사업에서 모범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는 내각이 정한데 따른다.

제44조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재자원화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재자원화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정확히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재처리기술공정을 꾸러놓지 않았을 경우
3. 오물수집통과 오물장을 정해진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4. 재자원화에 리용할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지표를 바로 정하지 않아 재자원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오물을 분류하지 않고 망탕 버렸을 경우
6. 오물수집통, 오물장의 관리자를 선정하지 않아 오물 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재자원화과정에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8. 승인없이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을 반입하였을 경우
9. 그밖에 이 법을 어겨 재자원화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46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관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해당하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주체103(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호로 채택
주체106(2017)년 6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5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6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

제1조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재해방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복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재해란 큰물, 폭우, 가물, 태풍, 해일, 지진, 화산 등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끼치는 엄중한 피해를 말한다.

제3조 (재해의 등급구분)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재해를 특급재해, 1급재해, 2급재해, 3급재해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특급재해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한 대상이나 지역 또는 5개이상의 시(구역), 군을 포괄하는 지역이 엄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어 국가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이다.
2. 1급재해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도(직할시)안에서 2개이상의 시(구역), 군을 포괄하는 지역이 엄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어 도(직할시)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이다.
3. 2급재해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시(구역), 군안에서 2개이상의 리, 동을 포괄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어 시(구역), 군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이다.
4. 3급재해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1개의 리, 동을 포괄하는 지역 또는 개별적기관, 기업소, 단체가 피해를 입어 해당 지역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비

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이다.

제4조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조직)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기 위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내각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성을 비롯한 중앙기관, 인민무력기관,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무력기관, 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 검찰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하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복종한다.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조직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을 위원장으로 하고 필요한 일군들로 구성하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해당 지역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복종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해당 지역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이,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해관리사업을 맡아보는 부서 또는 일군이 한다.

제5조 (재해방지사업의 기본원칙)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방지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은 재해방지사업의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재해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치산치수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며 큰물, 폭우, 태풍 등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대상에 대한 피해막이대책을 사전에 빈틈없이 세워나가도록 한다.

제6조 (비상재해위기대응 및 재해구조, 복구원칙)

국가는 비상재해위기대응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재해위기발생시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즉시적이며 효과적인 구조와 복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7조 (재해와 관련한 지식보급원칙)

국가는 각종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실속있게 하며 신문, 방송, 출판물, 컴퓨터망,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재해를 일으킬수 있는 자연현상과 그밖의 요인, 재해방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발생시 행동질서, 1차구급치료법 등 필요한 지식 또는 상식을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도록 한다.

제8조 (과학연구 및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9조 (재해와 관련한 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10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대표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과의 관계)

산불, 화재사고, 폭발사고, 로동재해, 해난사고, 교통사고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처한 구조, 복구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그러나 규모가 대단히 크고 후과가 엄중한 피해에 대처한 구조, 복구질서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재해방지

제12조 (재해방지전략의 작성)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은 국가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정책에 기초하여 재해방지, 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를 위한 총적목표와 단계별목표, 실행방도를 밝힌 국가재해방지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해방지전략은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지역별 또는 부문별 계획작성 및 실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재해방지전략에 기초하여 관할지역, 자기단위의 재해방지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국가재해방지전략 및 재해방지계획에 반영할 사항)

국가재해방지전략과 지역별, 부문별 재해방지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역, 대상에 대하여 전망적으로 또는 긴급히 수행하여야 할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대책
2. 장마철기간 강하천, 저수지들에서의 물관리를 통일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국가적, 부문별, 지역별 물관리지휘체계의 수립 및 그 운영대책
3. 저수지하류지역, 폭우시 물끓이 형성되는 지역, 산사태발생위험지역, 언제, 강하천제

방, 간석지제방, 해안방조제, 방파제를 비롯한 재해발생위험지역과 대상들에 대한 조사
장악 및 예방대책

4.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산불, 산사태,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
측 및 예보, 경보체계의 수립
5. 각종 재해의 형태와 위험성정도에 따르는 인원과 물자의 대피 및 소개대책
6. 비상재해물자의 조성 및 보관관리 및 공급대책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국가재해방지전략과 지역별, 부문별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지역 또는 부문의 인적 및 물적대
상이나 기후 등이 변화되는데 따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는다.

제15조 (재해위험대상의 장악 및 퇴치)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수지하류침수구역과 폭우시 물굽이 형성되
는 지역, 산사태발생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과 살림집, 제방, 언제, 방파제, 해안방조제를
비롯한 시설물, 구조물이 설계기준허용한계에 있지 못하여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
으로부터 피해를 받을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위험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반영하여 년차별로 계획적으로 진행하 여야
한다.

제16조 (물관리에서의 기능성확보)

물관리에서의 기능성확보는 큰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도(직할시)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국토환경보호부
문, 전력공업부문, 농업부문, 갑문관리부문 등 물관리와 관계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관
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체계를 세우고 물관리지휘에서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방지사업조건의 보장)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재해방지전략
과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재해방지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재해방지에 필요한 로력
과 설비, 자재, 자금 등의 보장과 관련한 계획을 정확히 맞물려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해위험지역에서의 건설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위험지역에서 망탕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
물을 재배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위험지역에 살림집, 공공건물 등을 건설하
지 말며 수륙선과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살림집, 공공건물을 비롯하여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보고 고려하면서 안전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해방지대책정형에 대한 장악)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재해방지대책을 세운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0조 (재해방지대책정형총화)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방지대책을 세운 정형을 사계절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제21조 (재해성자연현상관측에서 지켜야 할 요구)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은 일기상태와 강하천 저수지의 물높이와 흐름량상태, 해양상태의 변화, 지각운동과정을 연속 감시, 측정하여 재해성자연현상을 예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큰물, 폭우, 가물, 태풍, 해일, 폭설, 우박, 지진, 화산 등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감시, 측정 및 예보에서 과학성과 신속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관측의 구분과 방법)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은 관측대상에 따라 기상, 수문, 해양관측과 지진 및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으로 관측방법에 따라 전문관측과 군중감시로 구분한다.

전문관측은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이 관측기재로 진행하며 군중감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일정한 지역단위로 설정한 감시초소를 통하여 강하천과 저수지의 물높이, 산불, 동물의 움직임, 지하수의 변화와 같은 이상자연현상들을 감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 (관측 및 정보통신망의 구성)

중앙기상수문지도기관과 중앙지진관측기관, 해당 기관은 필요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수단들로 연결하여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국가적인 관측 및 정보통신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제24조 (관측자료의 보고)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실시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관측자료는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에 제때에 보고, 전송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피해를 일으킬수 있는 이상자연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재해위험지역과 재해위험대상에 대한 관측)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되는 경우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에 재해위험지역 또는 대상을 제때에 알려주어 해당 지역과 대상에 미칠 수 있는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경보)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그에 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내며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성자연현상의 유형과 세기,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은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인민보안기관에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신속히 통보하고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경보전달)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경보는 국가경보전달체계에 따르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체신기관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경보내용을 방송, 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수단, 통신기술수단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비상통보)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은 비상통보체계를 세우고 재해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즉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지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비상재해위기대응

제29조 (비상재해위기대응의 정의)

비상재해위기대응은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재해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대응사업이다.

제30조 (비상재해위기대응을 위한 사전준비)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발생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대피장소, 설비 및 자재소개장소와 이동경로를 미리 정하며 대피 및 소개훈련

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되는 시기 재해예보 또는 경보에 따라 언제든지 재해위기에 대응할수 있게 비상연락망체계를 세우고 필요한 구조인원과 구조설비를 준비 및 대기상태에 두며 재해성자연현상에 따르는 1차대피 및 소개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대피, 소개략도를 작성, 게시하여야 한다.

대피지휘는 지방인민위원회,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대피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1조 (비상재해위기대응안의 작성, 심의, 비준)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성자연현상에 따르는 비상재해위기대응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안에는 재해위기발생시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의 동원 및 지휘체계, 인원의 대피 및 행동질서, 설비, 자재의 소개질서, 피해정형의 장악과 통보체계, 구조대, 구호대의 조직 및 임무, 피해지역인민들의 생활안정과 구호물자보장대책 등을 반영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안은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는다.

제32조 (비상재해위기상태의 선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특급재해가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재해위기상태를 선포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1급 또는 2급, 3급 재해가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자기 단위의 비상재해위기상태를 선포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3조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위)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통일적인 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를 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부를 조직한다.

제34조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2.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예보 및 경보체계를 더욱 엄격히 세우고 비상재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피해를 입을수 있는 대상과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및 동원대책을 세운다.
4. 발전용저수지, 관개용저수지, 강하천들에 대한 실시간통보체계와 통일적이며 능동적인 지휘실현을 위한 지휘통신체계를 세운다.
5.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과 연합작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사회와 무력, 군수단위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장악보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운다.
7.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개 및 대피를 비롯한 안전대책을 세운다.
8. 재해발생시 피해상황을 정확히 장악하며 재해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세운다.
9.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과 관련한 지시와 사업지도서, 기술지도서를 작성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통제한다.
10.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에 필요한 역량과 수단, 물자의 긴급동원조치를 취한다.
11. 재해발생지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을 차단하거나 인원과 물자의 류동을 차단 또는 제한한다.
12. 사회적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3. 필요에 따라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 또는 단위의 인원, 설비, 물자를 대피시키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14.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15. 이밖에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대책을 세운다.

제35조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도, 시, 군 또는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도(직할시), 시(구역), 군 또는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관할지역 또는 자기 단위의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36조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정형을 매일 총화하고 필요한 조직사업을 하며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장악대책하여야 한다.

3.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재해위험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조직하는데 따라 비상재해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에 필요한 인원, 설비,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5. 정보화기관, 체신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와 관련한 지휘의 정보화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6. 지방인민위원회와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은 재해발생시 민심과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발생시 전기와 식량, 부식물, 땀감, 음료수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8. 지방인민위원회와 교육기관은 재해발생시 학생들의 학업을 중단없이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9. 지방인민위원회와 의료기관은 재해발생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0.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에 대처한 긴급구조대를 조직하고 화물차, 기중기차, 소방차, 불도젤, 구급차, 구급치료설비, 의약품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설비, 물자를 갖추어야 한다.
11.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대한 법적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7조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의 의무)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를 위하여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

제38조 (비상재해위기상태의 해제)

비상재해위기상태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해제된다.

제5장 재해구조 및 복구

제39조 (재해등급에 따르는 구조 및 복구)

재해발생시 구조 및 복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한다.

1. 특급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국가적인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를 진행한다.

2. 1급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도(직할시)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도(직할시)적인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를 진행한다.
3. 2급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시(구역), 군적인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를 진행한다.
4. 3급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를 진행한다.

제40조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의 협력)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1급 또는 2급, 3급재해발생시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다른 도(직할시), 시(구역), 군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역량과 수단을 동원시킬수 있다.

제41조 (재해발생시 구조 및 복구조치)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재해구조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무너진 건물, 구조물에 깔렸거나 갇혔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인원들을 최우선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치
2. 부상자치료와 후송 및 긴급의료조치
3. 파괴된 언제, 제방, 살림집, 도로와 다리, 철도, 전력, 통신, 상하수도 같은 중요시설, 건물의 신속한 복구조치
4. 재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지대소개와 식량, 물, 피복, 침구류, 임시거처지보장 같은 생활조건의 보장조치
5. 사망자치리, 전염병예방같은 위생방역조치
6.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폭발, 산사태, 붕락,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의 류출 같은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7. 재해지역에서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
8. 이밖에 필요한 조치

제42조 (재해복구에서 순차성보장)

재해복구는 피해받은 도로와 다리, 철도, 전력망, 상하수도망, 통신망, 병원, 살림집, 학교, 탁아소, 유치원 등 중요대상부터 먼저 하는 원칙에서 복구규모와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진행한다. 이 경우 복구대상의 설계를 선행시킨다.

당해년도에 복구하지 못한 대상은 다음해 건설 및 대보수계획에 맞물려 빠짐없이 복구한다.

제43조 (2차피해발생시 안전대책)

재해구조사업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 같은 것이 류출되는

것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민보안기관의 지휘에 따라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재해지역의 출입금지 또는 제한과 장애물, 위험대상제거)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해발생지역을 차단하고 재해구조성원과 구조수단을 제외한 기타 인원과 운수수단의 재해지역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재해구조사업에 장애로 되거나 구조성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수 있는 시설물, 설비같은것을 제때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5조 (재해구조 및 복구참가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분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설계와 로력, 설비,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며 재해구조 및 복구임무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재해구조, 복구사업에서 호상협조)

재해발생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 (재해구조사업에 대한 지원)

재해지역과 린접한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지역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지역의 재해구조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물자 같은것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 (재해구조사업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발생시 재해구조사업에 필요한 인원과 운수수단, 전력, 연유, 의약품 같은것을 최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 (재해구조사업에 필요한 건물, 설비, 토지의 리용)

재해구조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건물이나 설비, 토지를 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별한 리유가 없는한 재해구조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 (재해구조 및 복구물자의 긴급동원)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철도역이나 항구 같은 곳에 머무르고있거나 수송도중에 있는 물자와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물자를 재해구조 및 복구에 긴급동원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구조 및 복구에 필요하여 긴급동원시키는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대한 총화)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끝나면 그에 대한 총화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재, 물자소비정형을 정확히 총화하며 재해방지 및 비상재해위기대응을 위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장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과 공급

제52조 (비상재해물자의 정의)

비상재해물자는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긴급히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따로 마련하는 물자이다.

비상재해물자에는 세멘트, 강재, 연유, 판유리, 통나무, 전동기, 뿔프, 전선류 등의 설비와 물자, 식량과 의약품, 침구류, 화식기재, 피복 등 생활필수품이 속한다.

제53조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계획)

비상재해물자의 조성은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계획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표별로 수량을 밝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54조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계획실행)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재해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조성계획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도 따로 정한데 따라 필요한 비상재해물자를 자체로 조성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를 위하여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서 들어온 협조물자는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이 등록하고 관리한다.

제55조 (비상재해물자의 보관, 공급 및 리용)

비상재해물자를 보관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류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책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는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급하거나 리용한다.

비상재해물자를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복구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공급하거나 리용할수 없다.

제56조 (비상재해물자의 공급순위)

비상재해물자는 재해지역의 어린이, 늙은이, 장애인, 녀성 같은 취약한 대상들에 대한 구조사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에 대한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우선적

으로 공급하며 그밖의 대상들은 선후차를 정하여 공급한다.

제57조 (비상재해물자의 수송)

교통운수기관은 비상재해물자를 재해지역 또는 목적지까지 제때에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7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8조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지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 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에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국가적인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제59조 (재해보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은 보험법규에 따른다.

제60조 (감독통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1. 주민들의 대피훈련과 설비, 자재의 소개훈련의 진행, 비상연락망체계와 대피장소와 경로의 준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준비를 바로 하지않아 능히 방지할수 있는 피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
2.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를 바로하지 않아 재해방지 및 비상재해위기대응을 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대한 지휘를 바로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

4.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복종하지 않고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를 바로 수행하지 않아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재해복구에서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의 건설설계와 시공, 감독을 건설법규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날림식으로 하여 반복시공하거나 건설물의 질을 떨어뜨렸을 경우
7. 재해구조 및 복구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바로 하지 않아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세멘트, 강재, 연유를 비롯한 비상재해물자의 조성, 공급질서를 어기거나 략취 또는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등 비상재해물자를 비법처분하여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피해발생상황이나 구조, 복구정형을 거짓보고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팔지 않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1. 류언비어를 퍼뜨려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민심을 소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2. 이밖에 이 법을 어겨 재해방지 및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6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주체100(2011)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36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기본

제1조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원칙)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바로세우는 것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의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작성에서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2조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원칙)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바로세우는 것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의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작성에서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원칙)

지진, 화산의 감시와 예보는 지진, 화산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에 대한 국가감시 및 군중감시체계와 예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지진, 화산의 감시와 예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제4조 (지진, 화산피해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지진, 화산에 의한 피해를 극력 줄이도록 한다.

제5조 (지진, 화산피해구조원칙)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는 지진과 화산에 의한 피해를 제때에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수단을 총동원하여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며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도록 한다.

제6조 (지진, 화산에 대한 지식보급)

국가는 교육기관들에서 학생들에게 지진, 화산에 대한 교육을 정상적으로 주며 신문, 방송,

강연 같은 것을 인민들속에 지진, 화산과 그 피해방지 및 구조에 대한 상식을 잘 알려주도록 한다.

제7조 (지진, 화산에 대한 과학연구)

국가는 지진, 화산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한다.

제8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강화)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9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제10조 (계획작성기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은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이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에 준하여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작성한다.

백두산지구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중앙지진기관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11조 (계획에 반영할 내용)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의 총적방향과 목표
2. 지진, 화산의 감시와 통보, 예보체계
3. 주민대피 및 소개대책
4.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개대책
5.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보호대책
6. 지진, 화산피해발생시 긴급구조 및 치료대책과 구조설비, 자재, 자금보장대책
7.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2조 (계획의 심의, 승인)

중앙지진기관에서 작성한 백두산지구 및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과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

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에서 작성한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비상설도(직할시), 시(구역), 군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제13조 (계획의 변경)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지진, 화산활동상태의 변화에 따라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계획의 실행)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3장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제15조 (지진, 화산감시, 예보의 기본요구)

중앙지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과 감시, 통보 및 예보사업에서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시방법)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는 전문관측과 균중감시로 나누어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전문관측은 지진기관에서 관측기재로 하며 균중감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동물과 지하수 같은 자연이상현상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 (관측망의 형성)

중앙지진기관은 해당 지역마다 필요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수단들로 연결시켜 국가적인 지진, 화산관측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관측보호구역의 설정)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관측시서로가 기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측소의 일정한 구역을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은 중앙지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균중감시초소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 지하수 같은것이 있는 필요한 장소에 지진, 화산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자연이상현상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진, 화산관측자료의 보고, 전송)

지진기관은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을 중단없이 하며 관측한 자료와 그 분석자료를 정해진 기일안으로 중앙지진기관에 보고, 전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연이상현상의 기록, 통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감시기록부를 갖추고 나타나는 자연이상현상에 대하여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자연이상현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백두산화산활동에 대한 감시와 보고)

백두산지구 화산관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과 자연이상현상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관측 및 감시결과를 중앙지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과학연구자료의 통보)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진, 화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집한 자료를 중앙지진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시자료의 분석과 기록, 보존)

중앙지진기관은 지진, 화산과 관련한 전국의 관측자료와 군중감시자료를 종합하여 제때에 정확히 분석하며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관측과 감시자료는 영구보존한다.

제25조 (피해성지진과 화산에 대한 집중감시)

중앙지진기관은 관측자료와 군중감시자료를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피해성지진, 화산이 예견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를 조직하여야 한다.

집중감시결과 피해성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분출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과 해당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예보)

중앙지진기관은 지진, 화산에 대한 예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예보는 국가정보신호체계에 따라 전기통신수단과 기타 정해진 수단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지진, 화산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공동연구)

해당 기관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기관, 단체, 개인과 공동으로 지진, 화산 관측 및 연구사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지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

제28조 (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 화산피해예측도의 작성)

중앙지진기관은 지역별지진세기를 표시한 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발생 또는 화산분출시 피해

예측정도를 표시한 지진, 화산피해예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진세기구획도는 지진자료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지진, 화산피해예측도는 지진 세기구획도와 화산활동자료 같은 해당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제29조 (자료보장)

중앙지진기관은 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 화산피해예측도의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내진기준의 준수)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진기준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내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지진기관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31조 (위험성이 큰 대상의 피해방지대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자력발전소, 언제, 연유 및 가스저장고, 폭발물질, 화학물질, 유독성 및 방사성물질보관고같이 피해가 클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진, 화산피해방지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한다.

제32조 (대피장소 및 이동경로설정)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이 대피하는 장소와 이동경로, 설비, 물자를 소개하는 장소와 이동경로를 바로 정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정확히 알고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피는 해당 단위별로 한다.

제33조 (대피훈련)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에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의 긴급대피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훈련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대피지휘)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 대피지휘는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피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5조 (긴급구조대의 조직)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피해성지진, 화산에 대처한 긴급구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는 구조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36조 (긴급구조훈련)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에 대처한 긴급구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

행하며 구조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백두산화산분출에 의한 피해방지대책)

내각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 해당 지방인민정권기관은 백두산화산분출에 의한 피해로부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5장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

제38조 (긴급구조대책안의 작성, 비준)

중앙지진기관은 국가적인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 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인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에 따라 자기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에 반영할 내용)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에는 긴급구조지휘부의 조직과 지휘체계, 지진, 화산피해정형의 장악과 통보체계, 인원구조 및 생활조건보장대책 같은 내용들을 반영한다.

긴급구조대책안은 실지 상황에 따라 수정할수 있다.

제40조 (구조지휘)

내각과 중앙지진기관, 해당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긴급구조지휘부를 조직하고 구조지휘를 바로하여 피해를 극력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피해정형의 장악과 보고)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정형과 구조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며 해당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긴급구조조치)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의 구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무너진 건물, 구조물에 깔리거나 갇힌 인원들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치
2. 부상자들을 치료 또는 후송하기 위한 긴급의료조치
3. 파괴된 도로, 철도, 전력, 통신 같은 기초시설의 복구조치
4. 피해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하고 그들에게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5. 위생방역조치
6. 지진, 화산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큰물피해, 폭발, 산사태, 붕락, 유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의 류출 같은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7.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

8. 이밖에 필요한 조치

제43조 (긴급구조대의 동원)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긴급구조대를 동원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의하여 유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이 류출되는 것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긴급구조를 위한 설비, 물자동원)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구조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를 동원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구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를 의무적으로 동원시켜야 한다.

제45조 (지진, 화산피해복구)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인민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를 가시기 위한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지역을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6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이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전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자기 관할 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의 조직, 운영)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지방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를 둔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을 토의결정한다.

각급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지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제49조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전력공업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지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지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지진, 화산관측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지진, 화산징후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에서 질서를 어겨 관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자료통보, 예보를 제때에 하지 않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건설에서 내진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내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건설물에 대한 보강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아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6.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제때에 동원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동원되어 손실을 더 크게 주었을 경우
7. 조건보장을 잘하지 않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5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주체66(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 《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 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외래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 제6조** 국가는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기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한다.
-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것으로 만들 수 없다.

제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1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수도 있다.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및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방향,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들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리용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료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전연기념물 및 문화유적유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장 토지보호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류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강과 중소하천정리를 다같이 밀고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강과 중요강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는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정리는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도보호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등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보수관리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정권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별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빼기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경사지의 발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선유원료림, 산과실림, 땀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산림설계기관은 이에 맞게 산림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땀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땀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은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베 때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베는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안에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계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산림을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력처리장과 미광침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밑에서 지하자원을 캘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력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캔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늘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관개체계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땅을 많이 얻어내어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제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사업을 년차별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옹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최뚝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 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집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면시키는 간석지 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개간에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관수체계, 화학적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며 물갈아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닷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다.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재료의 채취가 끝나는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연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며 로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반적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량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 가지 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보호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건설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연안, 령해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령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토지관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 제65조** 논밭은 허가없이 묵이거나 버릴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수 있다.
-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 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인민위원회 또는 내각의 토지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어있거나 조성할것이 예정되어있는 산야와 그안에 있는 여러 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속에서 산림을 램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제74조 수역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리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있게 리용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게는 토지문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며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보호건설 및 관리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법적책임을 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폐기폐설물취급법

주체96(2007)년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15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9호로 수정보충

제1장 폐기폐설물취급법의 기본

제1조 (폐기폐설물취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폐기폐설물취급법은 폐기폐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폐기폐설물의 정의)

폐기폐설물은 생산과 건설, 생활과정에 나오는 경제적리용가치가 없거나 적은 물체 또는 물질이다.

폐기폐설물에는 폐기물, 폐설물, 오수, 오물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폐기폐설물의 취급원칙)

폐기폐설물취급을 바로하는 것은 나라의 환경과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근본 요구이다.

국가는 폐기폐설물을 방사성폐기폐설물, 유독성폐기폐설물, 일반폐기폐설물로 구분하여 취급처리하며 폐기폐설물의 배출량과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재자원화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4조 (산업시설, 주민지구의 배치원칙)

국가는 폐기폐설물의 수송량을 줄이고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산업시설과 주민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5조 (투자원칙)

국가는 폐기폐설물취급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폐기폐설물을 배출하거나 보관, 수송, 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대표부,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폐기폐설물취급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제8조 (폐기폐설물배출, 보관, 수송의 기본요구)

폐기폐설물의 배출을 줄이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송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폐기폐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과정에 폐기폐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 (배출승인문건의 신청)

폐기폐설물을 배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배출승인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배출승인신청문건에는 폐기폐설물의 종류와 수량, 분석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배출승인신청문건검토)

폐기폐설물의 배출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정한 기간안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시킬수 있는 폐기폐설물은 배출승인을 할수 없다.

제11조 (배출조건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승인한 폐기폐설물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배출하려는 폐기폐설물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질 경우에는 폐기폐설물배출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2조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을 배출하는 설비와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검사를 정상적으로 하며 수리보수주기를 지켜야 한다.

제13조 (배출량의 기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의 배출실태를 매일 조사장악하고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폐기폐설물의 배출실태는 월에 1차씩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관시설의 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폐기폐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폐설물보관시설은 사람이나 동물, 자연에 피해가 미치지 않으며 안전성이 담보되는 곳에 꾸리며 유독성폐기폐설물의 보관시설주변에는 경계울타리를 치고 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관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유독성폐기폐설물은 일반폐기폐설물과 함께 보관하지 말며 유독성폐기폐설물을 담은 용기겉면에는 폐기폐설물의 이름과 위험경고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송승인의 신청)

유독성폐기폐설물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폐기폐설물의 종류와 수량, 분석자료, 수송방법, 경로 같은것을 밝힌 수송문건을 내야 한다.

제17조 (수송수단)

폐기폐설물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따르는 환경보호설비를 갖춘 수송수단을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환경보호설비를 갖추지 않은 수송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제18조 (폐기폐설물의 상하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을 신고부리울 경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장 폐기폐설물의 처리

제19조 (폐기폐설물처리의 기본요구)

폐기폐설물처리를 바로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없애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의 처리를 제때에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리의 담당자)

유독성폐기폐설물과 일반폐기폐설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처리한다. 이 경우 유독성 폐기폐설물처리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방사성폐기폐설물의 취급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제21조 (처리시설)

폐기폐설물의 처리는 처리시설이 있는 곳에서 한다.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처리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처리방법)

폐기폐설물의 처리는 재리용하거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방법으로 한다.

폐기폐설물을 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폐기폐설물처리방법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제23조 (처리장소)

폐기폐설물을 처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폐기폐설물처리장소는 환경보호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24조 (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미광, 광재, 연재, 버럭을 망탕 버려 강하천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리용이 끝난 다음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병원성폐기폐설물의 처리)

병원성폐기폐설물은 승인된 소각처리시설에서 철저히 소각하며 버림물은 정화시설에서 정화 소독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26조 (배에서 생긴 폐기폐설물의 처리)

배에서 생긴 유독성폐기폐설물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며 기타 폐기 폐설물은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27조 (철도에서 생긴 폐기폐설물의 처리)

철도운영기관은 중요철도역들에 폐기폐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열차에서 생긴 폐기폐설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폐기폐설물처리금지구역)

주민지구와 공원, 유원지, 명승지, 관광지, 부침땅, 도로, 철길, 항, 부두, 하천, 호소, 저수지, 연안, 령해 같은 곳에 폐기폐설물을 버리거나 매몰할수 없다.

제29조 (폐기폐설물의 재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폐기폐설물을 재자원화의 요구에 맞게 가르고 재자원화할수 있는것은 량적으로, 종류별로 장악하여 효과적으로 재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자원화할수 있는 폐기폐설물을 마구 버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재생자원을 랑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폐기폐설물의 넘겨주기와 받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을 넘겨주거나 받으려 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폐기폐설물의 용도와 처리방법 같은 것을 정확히 따져 보고 합의하여 주어야 한다.

제31조 (폐기폐설물처리설비, 기술의 수출입)

폐기폐설물처리설비,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수출입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 보호담보서, 시료 또는 견본, 성분분석표, 용도, 설비와 기술의 상태, 수준자료 같은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폐기폐설물의 검사, 검역)

국경을 통과시키는 폐기폐설물은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는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수출입합의를 받지 않은 폐기폐설물은 국경을 통과시킬수 없다.

제33조 (다른 나라의 폐기폐설물과 처리설비, 기술의 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폐기폐설물이나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폐기폐설물의 처리설비, 기술 같은 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거나 리용할수 없다.

제34조 (폐기폐설물의 처리기간)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폐기폐설물의 처리기간을 6개월범위안에서 종류별로 따라 정확히 정해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해진 기간안에 폐기폐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처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4장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

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폐기폐설물취급사업감독통제기관)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폐기폐설물취급사업조건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사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 (중지, 손해보상, 벌금)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질서를 어겨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기업운영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주체91(2002)년 1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6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하천법의 기본

제1조 (하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은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하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하천의 소유권)

하천에는 강, 내, 개울과 그 보호시설물이 속한다.

하천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 (하천의 구분)

하천은 규모에 따라 대하천, 중하천, 소하천으로 나눈다.

하천을 나누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하천의 정리원칙)

하천의 정리를 잘하는 것은 큰물피해를 막고 유리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하천정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하천을 전망성있게 정리하도록 한다.

제5조 (하천의 보호원칙)

하천의 보호는 물의 오염과 하천시설물의 파괴, 손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하천보호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천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하천의 리용원칙)

하천의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하천리용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조 (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하천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하천을 정리, 보호,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국경하천의 장려, 보호, 리용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하천의 정리

제9조 (하천정리의 기본요구)

하천의 정리는 하천보호의 선행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수계
별정리전망계획과 년차별하천정리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천의 정리분담)

대하천의 정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중소하천의 정리는 중소하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
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평양시 중심구역안에 있는 대하천의 정리는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받은 하천구간의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하천바닥
파기, 물줄기바로잡기 같은것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천의 조사,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받은 하천의 구간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정형을 대장
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는 하천의 이름과 규모, 정리상태와 대상, 내용 같은 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천의 정리설계)

하천의 정리설계는 하천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하천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하천정리계획과 기술과제에 따라 설계를 과학적으로 하여
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설계요구의 준수)

하천을 정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시공의 질을 보장하여
야 한다.
설계가 없이는 하천정리를 할수 없다.

제14조 (하천정리의 선후차)

하천을 정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에 의한 피해위험이 큰 하천의 구간과 주민지구, 산
업지구, 농경지와 접하고있는 하천의 구간부터 먼저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의 하천정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하천정리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관리총동원계획에 따라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력, 설비, 자재를 하천정리에 동원시킬수 있다.

제16조 (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의 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년간으로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의 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는 총동원기간의 끝나는 차제로 한다.

제3장 하천의 보호

제17조 (하천보호의 기본요구)

하천의 보호를 잘하는 것은 하천을 정상상태로 유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받은 하천구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제18조 (하천보호시설물의 보수, 정비)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의 보수, 정비체계를 세우고 재방, 옹벽, 모래잡이언제, 수문 같은 하천보호시설물을 주기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높아진 하천바닥은 제때에 파내며 물풀과 오물을 정상적으로 걷어내며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방야계시설물의 설치, 수원함양림의 조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원함양림을 조성하여 하천에 흙, 모래, 돌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원함양림은 차별할수 없다.

제20조 (하천제방의 보호)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방에 석축을 하거나 타래붓꽃, 잔디, 싸리나무 같은 것을 심으며 하천주변에 호안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하천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 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21조 (큰물피해의 방지)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조사장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물관리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피

해반은 하천의 복구사업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제22조 (큰물위험에 대한 관측, 통보)

기상수문기관은 하천의 수위와 물흐름량, 예견되는 비내림량 같은 것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

큰물위험에 대한 예보는 지체없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하천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는 하천기슭과 제방, 수질 같은 것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보호구역을 정한다.

하천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4조 (하천에서 금지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하천에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을 내보내거나 유독성물질, 동물의 사체, 오물을 버리지 말며 하천을 오염시킬수 있는 배를 항행시키거나 짐짐승을 목욕시키거나 룬전기재를 청소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하천시설물의 건설, 관리운영)

하천에 언제, 갑문, 발전소, 다리, 물막이뚝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의 흐름이나 배의 항행, 폐목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갑문, 저수지제방 같은데는 물고기의 성장과 보호에 필요한 시설물을 만들어야 한다.

제4장 하천의 리용

제26조 (하천리용의 기본요구)

하천의 리용은 물자원과 수역토지에 대한 경제적수요,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하천의 물자원과 수역토지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하천리용을 승인하였을 경우)

하천의 리용을 승인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의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개용수로 리용하려 할 경우
2. 하천수역토지를 농경지 또는 부업지로 리용하려 할 경우
3. 하천수역에 언제, 저수지, 발전소, 부두, 양어장, 물놀이장, 다리 같은 것을 건설하거나 변경, 폐기하려 할 경우
4. 하천수역에서 사금, 모래, 자갈, 흙 같은 것을 채취하려 할 경우

5. 하천의 물줄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
6. 배를 항행시키거나 폐목을 나르려 할 경우
7. 하천의 주변에 심은 나무를 베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

제28조 (하천리용승인의 신청)

하천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 또는 해당 기관에 하천리용승인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리용대상과 목적, 기간, 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9조 (하천리용승인신청의 심의)

하천리용승인신청문건을 받은 기관은 2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정형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부결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다.

제30조 (하천수역토지의 리용)

하천의 수역토지를 농경지, 부업지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덧제방을 쌓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하천수역토지의 폐경)

농경지, 부업지로 리용하던 하천수역토지를 폐경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이관시켜야 한다.

토지를 이관받은 기관은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준공검사)

하천의 수역에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물, 시설물은 리용할수 없다.

제33조 (하천수역작업장의 정리)

하천의 수역에서 건설 또는 채취작업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리할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주어야 한다.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4조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하천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5조 (하천부문 사업의 지도)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 (하천정리, 보호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하천의 정리,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하천의 정리, 보호에 보장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제37조 (하천부문 사업의 감독통제)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승인없이 하천을 리용하거나 물을 오염시키거나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 손상시키는 것 같은 행위를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 손상시켰을 경우 또는 승인없이 하천을 리용하였거나 물줄기를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탐색 및 구조법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9호로 채택

제1장 해상탐색 및 구조법의 기본

제1조 (해상탐색 및 구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람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상탐색이란 바다, 강, 호수에서 조난상태에 있는 사람과 배의 위치를 확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구조란 조난된 사람과 배를 구원하고 필요한 방조를 제공하며 사람과 배를 안전한 장소에 보내는것을 말한다.
3. 구조조종이란 조난에 즉시 대응하여 구조활동을 조직하거나 지휘하는것을 말한다.
4.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란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과 구조사업을 맡아하는 해사감독부문의 전문기관으로서 여기에는 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지역별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 속한다.
5. 배무선통신설비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배와의 탐색 및 구조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송수신할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배의 설비를 말한다.
6. 배보고란 무선통신설비에 의해 배자료가 자동전송되거나 음성방식으로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보고되는것을 말한다.
7. 배감시란 탐색구조를 위해 항해, 정박과 같은 배의 운항상태 또는 조난상황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8.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란 일반무선통신주파수외에 사람, 배의 조난이나 운항시 방조 또는 협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정해진 주파수를 말한다.
9. 비상대응계획이란 조난이 발생하는 경우 해상탐색구조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과 임무를 비롯하여 구조에 필요한 역량과 수단, 방법을 반영한것이다.
10. 구조통신시설이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 탐색 및 구조통신보장에 리용하는 통신설비와 철탑, 건물을 말한다.

제3조 (해상탐색 및 구조의 기본원칙)

조난된 사람과 배를 제때에 탐색하고 구조하는것은 해난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체계를 세우고 끊임없이 완비하도록 한다.

제4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의 설치원칙)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지역에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을 내오도록 한다.

제5조 (해상탐색 및 구조를 위한 통신유지원칙)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배와의 통신을 유지하는것은 해상탐색 및 구조활동에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통신체계를 세우고 정상유지하도록 한다.

제6조 (구조조종 및 구조원칙)

국가는 비상대응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구조조종 및 구조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다.

제7조 (해상탐색 및 구조부문의 물질기술적보장원칙)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8조 (과학연구 및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9조 (조난의 등급구분)

조난은 그 종류와 범위, 수역에 따라 1급조난, 2급조난, 3급조난으로 구분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조난의 등급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외교류와 협조강화)

국가는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11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배, 공민과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는 다른 나라 배와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해상탐색 및 구조체계

제12조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해상탐색 및 구조의 통일적인 지휘를 위하여 중앙해사감독기관에 비상설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를, 도(직할시), 시(구역), 군해사감독기관에 비상설지역별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를 둔다.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해사감독기관, 국가계획기관, 배운영기관, 항, 부두, 포구 운영 및 관리기관, 보건기관, 체신기관, 기상수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3조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임무)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상탐색 및 구조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를 확정한다.
2. 조난급수에 따르는 대응범위를 확정하고 승인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해당한 구조대책을 세운다.
3. 조난과 그에 대한 탐색 및 구조대책정형을 웃단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한다.
4. 해상탐색구조수역을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5. 비상설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와 해상탐색 및 구조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탐색 및 구조대책을 취한다.
6.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한다.

제14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의 탐색, 구조, 구조조종)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난등급에 따라 조난에 대응하여 탐색, 구조, 구조조종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의 구조조종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5조 (배보고체계의 수립)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무선통신설비에 의한 배보고체계를 세워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보고체계를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배감시체계의 수립)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배자동식별체계, 배장거리식별추적체계, 해상교통관리체계, 전파탐지기감시체계, 영상감시체계를 비롯한 필요한 수단들을 리용하여 배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감시체계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7조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의 설정)

해상탐색구조를 위한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는 전파감독기관이 정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에서 무휴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상대응계획의 작성 및 승인)

비상대응계획은 전국적인 비상대응계획과 지역별 비상대응계획으로 구분한다.

전국적인 비상대응계획은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가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으며

지역별 비상대응계획은 지역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가 작성하여 웃단위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9조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할 내용)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탐색 및 구조의 총적방향과 목표
2. 전국적 및 지역별 해상탐색구조수역과 구조조종기관들사이의 협력
3. 탐색 및 구조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
4. 해상탐색구조력량과 수단의 동원준비상태
5. 안전항해자료의제공과 통보
6. 조난등급에 따르는 탐색과 구조조종
7. 해상탐색구조시 의료봉사대책
8. 구조설비, 물자, 자금보장대책
9. 탐색 및 구조연습

제20조 (비상대응계획의 수정)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비상대응계획에 반영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 또는 설비, 운수수단을 비롯한 구조력량과 수단을 정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동정형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구조력량과 수단의 구비)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무선통신설비, 정보기술설비를 비롯한 조종수단과 지휘용운수수단과 탐색구조선, 장비와 기재같은 구조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에 반영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는 조난경보시 긴급동원될수 있게 구조력량과 설비 및 물자를 비롯한 구조수단을 정해진대로 갖추어야 한다.

려객선은 해사감독기관이 승인한 탐색구조협동계획과 구조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항해정보자료의 제공과 통보)

기상수문기관과 국가수로지도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와 관련하여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

요구하는 항해정보자료를 제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항해정보자료를 배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23조 (의료봉사체계)

보건기관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협력하여 구조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현장 및 먼거리 의료봉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24조 (해상탐색 및 구조연습)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해상탐색 및 구조연습을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르는 무선통신설비, 잠수설비, 구조장비 같은 구조수단들을 갖추고 해상탐색 및 구조연습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장 배보고 및 구조통신

제25조 (배무선통신설비의 설치 및 등록)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라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에 속하는 설비, 배자동식별장치와 같은 배무선통신설비를 배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통신설비의 승인과 리용은 전파관리법규에 따른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국제항해배에 설치된 무선통신설비자료를 해당 국제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 (배무선통신설비의 가동과 기록)

배는 무선통신을 유지할수 있도록 무선설비와 전원보장체계, 예비부품과 예비전원을 규칙의 요구대로 갖추고 항해, 정박, 작업기간 무선통신설비를 가동시켜야 한다.

배무선통신설비의 리용정형과 통신내용을 해당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에서의 무휴통신)

배는 설정된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에서 무휴통신을 보장하며 조난, 긴급 및 안전과 관련이 없는 통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의무적인 배보고)

배는 배자동식별장치를 비롯한 무선통신설비로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배보고를 하여야 한다. 배보고는 우리 나라 배와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과학 연구를 하는 다른 나라 배도 의무적이다.

제29조 (배보고자료의 보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실시간적으로 기록된 배보고자료와 음성통신자료를 정해진 기간까

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삭제 또는 변경, 보여주거나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배보고자료를 보여주거나 넘겨줄수 있다.

제30조 (배보고자료의 구분과 입력)

배보고자료는 배자동식별장치를 비롯한 무선통신설비에 의하여 전송되는 배이름, 배의 식별번호, 국적, 호출부호와 같은 정적자료와 위치, 침로, 속도와 같은 동적자료로 구분한다.
배는 배자동식별장치를 비롯하여 무선통신설비에 배보고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제31조 (통신수단의 구비와 자료기지구축)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통신과 국제통신을 보장할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며 탐색구조와 관련한 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료기지에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의 기술제원 및 주요설계, 연계주소와 국제항해배 무선통신설비를 비롯한 해당 자료가 포함된다.

제32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의 통신유지)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배에서 전송되는 자료를 배감시체계로 실시간적으로 식별, 분석하며 배를 호출하거나 탐색구조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배무선통신설비의 시험통신, 검사, 정비, 증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배의 무선통신설비에 대한 시험통신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술봉사기관의 정비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제항해배는 무선통신설비의 시험통신 및 검사, 정비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34조 (항해위험요소의 발견과 통보)

항해, 정박, 작업과정에 배가 폭풍과 맞닥들거나 주변에서 떠다니는 큰 얼음이나 물체, 기름류출과 같은 항해위험요소를 발견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통보받았을 경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통보받은 자료를 그 수역에 있는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통보)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가 입항하지 못하였거나 통신연계가 끊어진 경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난된 사람과 배를 발견하였거나 그것을 통보받았을 경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조난통신)

조난위험에 처하였거나 조난된 배는 무선통신설비와 신호설비를 비롯한 임의의 수단으로 조

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조난통신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양탐색구조조종기관에 해상구조봉사번호로 신속히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조난통신의 우선권보장)

조난통신은 무선통신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조난통신을 받은 배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에서 구조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허위조난경보의 취소)

배는 허위조난경보가 발신되지 않도록 하며 무선통신설비의 고장, 부주의, 시험으로 조난경보가 발신되었을 경우 조난경보가 허위라는 것을 해양탐색구조조종기관과 주변수역에 있는 배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39조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의 설정)

구조통신시설이 설치된 일정한 지역을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한다.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0조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안에서 무선통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파시설 또는 구조통신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항해정보봉사료금)

배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정보봉사를 받았을 경우 정해진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제4장 구조조종과 구조

제42조 (해양탐색 및 구조조종을 위한 배감시)

해양탐색구조조종기관은 자격을 가진 해양탐색구조조종일군으로 실시간 배감시를 하여야 한다.

해양탐색구조조종일군은 배보고자료 또는 조난경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선통신수단으로 배를 호출할수 있다.

배는 호출에 제때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43조 (조난경보의 식별과 분석, 보고)

조난경보를 받은 해양탐색구조조종기관은 조난경보의 정확성과 조난등급, 위치를 제때에 식별,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비상설해양탐색구조조종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비상대응계획의 실행)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확정된 조난정보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에 준하여 구조조종 및 구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에 반영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는 구조조종 및 구조시 비상대응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45조 (구조임무수행과 협력)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으로부터 조난된 사람과 배에 대한 탐색구조임무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조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6조 (해상탐색 및 구조를 위한 통행 및 항출입)

사회안전기관, 통행검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에서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해상탐색구조성원과 운수수단의 통행 및 항출입, 구조선의 바다출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항로리탈과 구조의무)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으로부터 구조동원지시를 받았거나 주변배로부터 조난정보를 받은 배는 예정항로에서 벗어나 자기 배에 엄중한 위험이 없는 한 조난된 사람과 배를 우선적으로 구조하여야 한다.

항해중 조난된 사람이나 배를 발견한 선장은 즉시 구조대책을 취하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구조에서 순차성)

구조에서는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고 짐과 배를 구조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른 나라 탐색구조기관과 구조협력)

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다른 나라 수역에서 조난된 우리 나라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과 협력할수 있다.

해상탐색 및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협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50조 (우리 나라 수역에서 다른 나라 배의 구조)

우리 나라 수역에서 조난당한 다른 나라 배의 구조를 위하여 해당 나라의 배가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오려 할 경우에는 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1조 (구조후 안전항해감시와 구조한 사람에 대한 의료봉사)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구조선과 구조된 배,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항해감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구조한 사람에게는 의료기관의 현장 또는 먼거리 의료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 (구조후 통보)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구조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구조정형을 통보 해주어야 한다.

배길에서 안전항해보장을 위하여 침몰된 배의 위치에 배길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은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구조에 지출된 재산의 보상)

해난구조를 받은 배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조에 동원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구조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설해상탐색구조조종위원회는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확인해줄 수 있다.

제5장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4조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5조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 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 보건기관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탐색 및 구조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자금, 통신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해상탐색구조조종일군의 자격)

해상탐색구조조종은 해당한 자격을 소유한 자만이 할수 있다.

해상탐색구조조종일군은 3년에 한번씩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당 전문지식을 가진 성원에게 해상탐색구조조종일군자격을 주어야 한다.

제58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1. 비상대응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갱신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2. 정해진대로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자의대로 빌려주거나 조난, 긴급 및 안전주

- 파수에서 작업통화를 진행하여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배보고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거나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4. 무선통신설비를 차단시켰거나 조난, 긴급 및 안전주파수에서 무휴통신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5. 해상탐색 및 구조에 제때에 동원되지 않았거나 해상탐색 및 구조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6. 무선통신설비를 무책임하게 관리하여 사용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7. 허위로 배보고 또는 조난경보를 보내여 해상탐색 및 구조사업에 혼란을 조성시켰을 경우
 8. 배보고자료를 승인없이 삭제, 변경, 램발하였을 경우
 9. 배보고자료 또는 조난정형을 정해진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0. 구조통신시설보호구역에서 통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9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주체75(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5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25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10호로 수정보충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제1조 (환경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
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기환경, 물환경, 토지환경, 야생동식물환경, 지하자원환경, 산림환경, 바다환경, 자연 보호구환경, 명승지환경, 문화유적환경, 도시환경, 농촌환경같은것이 속한다.
2. 환경오염이란 인간활동에 의하여 환경의 구성요소와 상태가 질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기오염, 물오염, 토양오염, 바다오염, 방사성오염과 소음, 진동, 악취, 전자기파, 자외선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또는 후과같은것이 속한다.
3. 환경파괴란 공해나 자연파괴를 비롯하여 환경상태가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4. 환경비상사고란 환경의 질적 또는 물리화학적상태가 돌발적으로 불리하게 변화되어 사람들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위험한 정황을 말한다.

제3조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결합원칙)

환경보호는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취하며 환경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4조 (환경의 과학적관리원칙)

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실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환경보호전략과 환경보호계획, 환경보호기준을 세우고 환경관리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제5조 (환경보호대책의 선행원칙)

생산과 건설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환경보호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6조 (전인민적인 환경보호관리원칙)

환경보호는 나라와 인민, 후대들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조국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환경보호책임제, 관리담당제의 실시)

국가는 나라와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에 따르는 환경보호책임제와 관리담당제를 실시한다.

인민경제부문별 중앙기관과 각급 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과 지역, 단위의 환경보호실태를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담당구역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호분야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의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환경관리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제9조 (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법의 적용대상, 해당 법규의 적용)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상주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환경관리

제11조 (환경관리의 기본요구)

환경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 관리하는것은 나라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내각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환경보호전략의 작성, 시달)

내각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전국적인 환경실태에 기초하여 환경보호사업의 발전방향, 도달목표, 실행방도같은것을 밝힌 국가환경보호전략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기관과 인민위원회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보호계획의 작성, 수행)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시계획설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계획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계획, 도시건설계획에 반영하여 세우며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필요한 정보자료의 보장)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환경보호전략과 국가환경보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자원상태, 인구수, 경제발전전망, 개발 및 건설실태, 환경실태, 위성사진, 지도같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계획의 수행정형총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 인민위원회는 환경보호계획수행정형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계획, 도시건설계획수행정형과 결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환경보호기준의 제정 및 시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기, 물, 토양환경 기준과 오염물질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국가환경보호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 정하거나 수정보충한 국가환경보호기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한다.

제17조 (지역환경보호기준의 제정)

해당 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환경보호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지표에 대하여 지역환경보호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국가환경보호기준에서 이미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엄격한 지역환경보호기준을 정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보호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기준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며 기준을 초과한 대상이나 지역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개선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감시체계수립, 환경상태장악)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적인 환경감시측정망설치계획과 환경감시측정지도서를 작성하여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내려보내며 환경감시측정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환경상태를 조사장악하고 연구하는 기관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시달한 환경감시측정망설치계획과 환경감시측정지도서에 따라 환경감시측정소를 설치하고 자기 부문, 자기 지역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요지역의 환경상태장악대책)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와 중요지역들의 환경상태를 수시로 장악할 수 있게 감시 및 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1조 (환경실태통계자료의 작성과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자기 단위의 환경감시측정자료, 오염물질배출자료, 환경인증을 받은 자료, 재자원화실태자료, 환경보호기금조성과 리용자료, 오염물질배출보상료, 생태환경보호금납부자료, 환경비상사고에 대응한 자료 등 환경관리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해마다 전국적인 환경실태통계자료를 작성하여 내각에 내야 한다.

제22조 (환경영향평가)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한 계획, 개발, 건설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계획, 개발, 건설대상은 심의, 비준할수 없다.

제23조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환경관리를 규격화하며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을 받는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사업은 해당 환경인증기관이 한다.

제24조 (환경보호기금과 생태환경보호금, 오염물질배출보상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소득의 일부를 환경보호기금으로 계획화하여 자기 단위의 환경 보호사업에 리용하여야 한다.

산업폐수, 폐기물, 폐가스, 먼지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량에 따르는 오염물질배출보상료를,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생태환경보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비상사고에 대한 대책)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비상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자기 단위나 지역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환경비상사고에 대하여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에 보고하며 환경비상사고로 피해를 입을수 있는 단위와 주민지구에 제때에 통지하고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6조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

국가는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총동원기간과 연안, 령해관리월간,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같은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을 정한다.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7조 (환경정보의 통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신문, 방송, 출판선전물을 통하여 해당 부문과 지역, 단위의 환경실태자료,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성과 및 도입자료, 생태환경보호사업에서 나타난 성과 및 편향자료같은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정상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28조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은 환경보호사업의 기본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

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의 선정)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한다.

제30조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의 환경보호)

자연보호구, 특별보호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같은 자연 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며 그 정형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백두산생물권보호구를 비롯한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 (자연풍치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주변, 호소와 하천주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철길, 도로와 잇닿아있는 산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며 무립목지를 없애야 한다.

제32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것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혁명사적물과 천연기념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의 관리운영을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3조 (땅의 침하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경우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쓸수 없다.

제34조 (자연생태계의 균형파괴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백두산지구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들에만 있는 희귀종, 특산종과 위기종으로 등록된 동식물을 망탕 잡거나 채취하며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보호종식대상으로 정하였거나 희귀종, 특산종, 위기종으로 정한 동식물은 국토환경 보호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채취할수 없으며 습지를 비롯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 특별보호구에서는 동물사냥, 자원개발, 건설을 할수 없다.

제35조 (자원개발, 건설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원을 개발하거나 건설을 하려 할 경우 자원개발과 건설대상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환경보호부문과학기술심의 또는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으며 자원개발과 건설을 하는 과정에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 및 건설과정에 파괴된 환경은 원상대로 정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허가 및 기간연장 등을 해줄수 없다.

제36조 (치산치수)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과 강하천들의 실태를 세밀히 조사장악하고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산림조성과 사방야계공사, 큰물조절못건설, 하천정리를 계획적으로 하여 큰물, 폭우, 태풍 등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발생 하는 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제37조 (하천 및 바다, 해안생태환경의 보호)

하천 및 바다를 끼고있는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정리계획, 도시건설계획, 수산자원조성계획 등에 환경보호계획항목을 반영하고 하천자원, 바다자원을 적극 보호, 증식시키며 하천정리와 연안관리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천 또는 바다, 해안지역에서 탐사, 개발, 생산, 도시경영, 항행, 관광, 과학연구같은 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및 바다, 해안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문화휴식터건설과 원림, 녹지조성)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같은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공장소에 여러가지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 화초, 잔디같은것을 심어야 한다.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량옆 20m구간의 토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이 나무를 심고 양묘장으로 리용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리용할수 없다.

제39조 (농업생태환경의 보호)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토지정리, 하천정리,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리용, 풀판조성, 물고

기자원조성같은것을 생태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오염의 방지

제40조 (환경오염방지의 기본요구)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 생활과정에 배출되거나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먼지, 악취, 소음, 진동, 전자기파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1조 (가스, 먼지잡이와 공기려과장치의 설치, 운영)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려과장치를 갖추고 가스나 먼지, 악취같은것이 대기중에 류출되지 않도록 하며 로와탱크, 배관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보이라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생산공정은 운영할수 없다.

제42조 (오염방지시설과 준공검사)

개발 및 건설대상의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는 기본 공사와 함께 설계, 시공, 조업, 운영하며 환경영향 평가결정의 요구에 부합되게 갖추어야 한다.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서는 준공검사, 생산 및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

제43조 (오염방지시설과 설비의 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정화효률이 높은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오염방지시설과 설비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없이 철거하거나 그 운영을 중지할수 없다.

제44조 (오염물질의 배출허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으며 오염물질배출기준의 요구에 맞게 오염물질을 내보내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오염물질을 내보낼수 없다.

제45조 (오염물질배출정형의 측정, 측정자료의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분석, 측정, 기록하며 계통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료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과학적으로 측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기록된 측정자료는 정확히 보존하며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오염물질배출총량에 대한 통제)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총량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오염물질배출 총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오염물질배출총량기준은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준수하는것과 함께 자기 단위에 정해진 오염물질 배출총량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총량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증가시킬수 있는 새로운 개발과 건설을 할수 없다.

제47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설비의 가동금지)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 연기를 내보내는 료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료전기재는 운행할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설비는 가동할수 없다.

사회안전기관은 료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을 엄격히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 연기를 내보내거나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료전기재, 먼지를 일으키거나 어지러워진 료전기재가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특수기상조건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황사같은것이 특수한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킬수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가동과 료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는것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한 기상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오물, 오수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리와 마을을 비롯한 주민지구와 공원, 유원지, 명승지, 관광지, 휴양지, 해안가, 해수욕장 같은 문화휴식터, 건설장의 정해진 곳에 각종 오물과 오수처리에 필요한 오물통, 오물장, 오수정화시설, 공동위생실같은것을 정해진대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물과 오수를 망탕 버리거나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와 도시주민구역, 주요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며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

오물장에 모아놓은 오물과 오수처리장에 쌓인 침전물은 제때에 실어내거나 걷어내야 한다.

제50조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의 재자원화)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과정에 나오는 폐기폐설물과 도시와 농촌지역, 관광지역을 비롯한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오물을 최대한 재자원화하며 이 과정에 유독성물질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51조 (버림물의 정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한 다음 상부구조를 건설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건설을 할수 없다.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맞게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같은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상수도시설의 보수정비, 먹는물의 려과소독)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먹는물의 려과소독을 엄격히 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먹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이 정한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주변의 일정한 지역에서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살초제, 살충제같은 해로운 화학물질을 치거나 목욕, 빨래, 짐 짐승방목을 하는 행위, 농사를 하면서 진거름을 뿌리는 행위같은것을 할수 없다.

제53조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의 환경보호)

우리 나라의 령해와 경제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배는 오염방지와 관련한 질서를 지키며 항만, 포구, 갑문,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배는 기름, 버림물, 오물같은것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자원을 개발, 리용하거나 해안공사같은것을 할 경우 바다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받고 바다오염방지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제54조 (배의 오염방지설비)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오염방지와 관련한 문건, 설비, 수단을 정해진대로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방지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 (함, 포구, 갑문, 부두에서의 환경오염방지)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과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에서 나오는 버림물과 오물을 규정대로 처리하며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제때에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무역배의 입항신청을 받으면 기름오염 및 난파선제거에 대한 보험담보가 있

능가를 확인하고 입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정화장, 오물, 공업폐설물처리장, 침전지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먹는물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러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처리장, 침전지를 꾸리고 산림과 하천, 농경지를 오염시키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제57조 (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입, 독성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 할 경우 해당 품질감독기관과 검정기관의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따라 국가가 사용을 금지시킨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은 생산하거나 수입할수 없다.

제58조 (농약의 보관, 리용, 오염된 농산물의 판매, 공급금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여 유기오염물질이나 중금속같은 독성물질이 대기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 흘러들거나 토양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양의 오염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시킨 다음 농작물을 심으며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 공급할수 없다.

제59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림물, 폐설물의 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0조 (방사성물질취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폐기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핵안전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1조 (오염된 물품의 수입금지)

환경보호와 인민들의 건강을 파괴할수 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같은 것은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같은것을 들여올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환경을 파괴시킬수 있는 폐기물, 설비, 기술의 수입과 생산도입금지)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환경을 심히 파괴시킬수 있는 폐기물, 오존층파괴 물질과 그것이 들어있는 설비, 기술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할수 없다.

제63조 (공해를 일으키는 건물, 시설물의 이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밖으로 내가고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으며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을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수 없으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수 없다.

제64조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요구에 맞게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지열, 풍력, 조수력같은 재생에너지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제65조 (재자원화기술의 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부산물과 폐기폐설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환경오염을 막고 원료, 자재의 소비를 극력 줄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6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7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68조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 운영)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내각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중앙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와 도(직할시)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는 국가환경보호전략, 환경보호계획의 집행정형을 비롯한 해당 부문과 지역, 단위의 환경보호실태를 정사적으로 장악하고 총화대책하여야 한다.

제69조 (환경보호사업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 및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환경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70조 (환경보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연과 환경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과 상식을 적극 보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 종업원들과 주민들속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준법교양과 과학지식보급, 해설선전을 강화하여 그들이 환경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감독통제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며 부문별 감독기관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2조 (관리 및 감독사업에 대한 책임)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조사 및 측정결과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켰거나 관리분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진다.

제73조 (신고, 신소와 그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 또는 인민위원회에 신소할수 있다.

신고 또는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74조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의 중지, 폐업, 몰수)

정해진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여러번 초과하였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 또는 파괴시킬 위험을 조

성시켰거나 오염물질배출총량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키며 해당 시설과 설비를 몰수한다.

제75조 (벌금)

이 법에서 규제한 환경보호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제76조 (원상복구 또는 변상)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변상적용대상과 그에 따르는 변상액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77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환경보호전략, 환경보호계획, 환경보호기준을 바로 작성하지 않아 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환경보호계획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계획을 작성하였거나 개발, 건설을 하였을 경우
4. 재자원화과정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5. 오염물질배출보상료, 생태환경보호금을 정해진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환경비상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7. 환경부문과학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 환경오염물질배출허가를 비롯하여 해당한 승인 또는 합의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8.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주민지구, 문화휴식터에 오물, 오수를 망탕 버려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치산치수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비법적인 사냥, 채취, 밀수, 밀매행위를 하였을 경우
11.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 땅이나 공공장소에 나무, 화초, 잔디같은것을 심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12. 국가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대기와 물, 토양을 오염시켰을 경우
13. 환경감시 및 측정수단과 기재를 갖추지 않았거나 측정한 자료를 위조하였거나 제때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4.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주변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15. 항, 포구, 갑문, 부두에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환경오염 및 파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6.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방사성물질의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18. 인민들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물품과 폐기폐설물, 설비, 기술을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하였을 경우
 19. 환경통계자료를 바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된 통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20. 중지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개발 및 건설, 생산,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
 21. 그밖에 환경보호질서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 앞항 1~21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8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주체94(2005)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7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9호로 수정보충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제1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심의,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부정적영향을 없애거나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에는 국토계획과 건설총계획이, 개발에는 자원 및 에너지를 개발이, 건설에는 신설, 기술개선, 증축, 개축, 이개축이 속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원칙)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원칙)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환경피해의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미리 막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원칙)

환경영향평가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환경보호의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 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결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

제6조 (투자원칙)

국가는 정보산업지대의 요구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며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제7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적용대상)

이 법은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개발, 건설을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제9조 (환경영향평가문건신청의 기본요구)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기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계획작성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할수도 있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지 않는다.

제11조 (환경영향평가문건작성을 위한 조사)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 지역의 환경실태와 계획, 개발, 건설의 특성, 그것으로 하여 있을수 있는 환경변화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방법)

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해당 계획에 환경보호편을 주는 형식으로, 개발,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대상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류별로 한다.

제13조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반영할 내용)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개발, 건설의 특성
2. 계획, 개발, 건설이 진행될 현지의 실태
3. 계획, 개발, 건설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예측평가한 자료
4. 부정적영향을 미리 막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

제14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시기)

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작성된 계획초안의 심의전단계, 개발,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건설위치지정서와 건설명시서의 발급신청전단계에서 한다.

제15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에 제기한다.

우리 나라에서 개발, 건설을 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함께 내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제16조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의 기본요구)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는 제기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검토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중요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부문 전문일군들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17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기간)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하여서는 심의기간을 15일간 더 연장할수 있다.

제18조 (환경영향평가에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의무)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작성되었는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심의관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내각과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하는 건설총계획
2. 중앙기관이 담당한 개발, 건설대상과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설계를 승인하는 대상, 합영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3.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대상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

제20조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관할)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과 해당 부문별건설계획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이 담당할 개발, 건설대상

제21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조건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조건의 보장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결정)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부결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3조 (심의에서 제기된 의견의 퇴치)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서 부결된데 대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적된 결함을 고치고 다시 심의해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승인취소)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해당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개발, 건설이 승인되어 3년이 지났으나 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제25조 (환경영향평가결정집행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환경영향평가승인통지를 받는데 따라 해당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설계의 작성)

해당 설계기관은 기술설계에 환경영향평가결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 (발생한 부정적영향에 대한 대책)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계획의 작성, 개발, 건설과정에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요구에 따라 발생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환경영향평가결정집행에 대한 검사)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개발, 건설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는 대상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정형을 검사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요구를 집행하지 않은 개발,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을 줄수 없다.

제29조 (환경영향평가승인을 받지 않은 대상의 부결)

국가건설감독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국가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계획, 개발, 건설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영향평가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1조 (감독통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그 결정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중지, 손해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결정을 어기고 계획을 작성하였거나 개발, 건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환경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재정·금융·
보험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주체94(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2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보충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제1조 (국가예산수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국가예산의 납부,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와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예산수입의 정의)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

국가예산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국가예산수입의 구성)

국가예산수입은 중앙예산수입과 지방예산수입으로 나눈다.

중앙예산수입은 중앙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 지방예산수입은 지방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으로 한다.

제4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원칙)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원칙)

증산하고 절약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생산을 늘이고 절약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가예산수입을 부단히 늘이도록 한다.

제6조 (합법적권리와 리익보장의 원칙)

국가는 국가예산수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국가예산납부밖의 부담을 줄수 없다.

제7조 (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원칙)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문건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예산납부의무의 원칙)

국가예산납부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원칙)

국가는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가예산수입사업은 제정기관이 한다.

제10조 (국가예산수입부문 일군의 자격)

국가는 국가예산수입부문의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예산수입부문의 일군으로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제11조 (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의 기본요구)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국가예산납부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매수입계획, 원가계획, 순소득 또는 소득계획, 리윤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은행돈자리번호 같은 국가예산납부자료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제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되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 경영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등록신청문건을 따로 내야 한다.

제13조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심의)

재정기관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재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신청문건의 심의결정)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부결에 의한 결정을 20일안으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발급)

해당 재정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국가예산납부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아 업종밖의 생산,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6조 (변경된 국가예산납부자료의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국가예산납부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안으로 재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정한 기일안으로 재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변경된 국가예산납부자료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표의 경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 것을 해당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 것은 사용할수 없다.

제18조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의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할수 없다.

제19조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위조와 팔고사기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팔고사지 말아야 한다.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제1절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

제20조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거래수입금은 소비품의 가격에 들어있는 사회순소득의 일부를, 봉사료수입금은 봉사료에 들어있는 순수입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된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을 국가예산에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계산방법)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계산은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요금에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22조 (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의 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은 정한데 따라 판매한 가격 또는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23조 (적용하는 납부비율)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납부비율을 적용한다.

대상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정기관도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납부비율을 정할수 있다.

제24조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납부)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정상납부는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그미 조성될 때마다 한다.

확정납부는 달마다 다음달 10일까지 하며 미납액은 5일안으로 추가납부하고 과납액은 재정기관에서 반환받거나 다음달 바칠 몫에서 공제납부한다.

제2절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

제25조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정의, 납부대상)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조성된 리윤 또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윤 또는 소득의 일부를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기업리익금 또는 협동단체리익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리익금의 계산방법)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계산은 조성된 리윤 또는 소득에서 한다.

대상에 따라 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에서 계산할수 있다.

제27조 (리윤 또는 소득의 계산방법)

리윤은 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에서 원가, 거래수입금 또는 봉사료수입금 같은 것을 덜고 확정한다.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이 적용되지 않는 지표에 대한 리윤은 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

에서 원가 같은 것을 덜고 확정한다.

소득은 판매수입금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원가를 덜고 확정한다.

제28조 (수입금의 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물판매수입, 건설조립작업액, 대보수작업액, 부가금, 봉사료 같은 수입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물판매수입금은 판매한 가격으로, 건설조립작업액과 대보수작업액은 설계예산가격으로, 부가금은 구입가격과 판매가격간의 차액으로,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29조 (리익금의 경상납부)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경상납부는 재정계획에 반영된 국가기업리익금 또는 협동단체리익금이 판매수입계획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판매수입금이 조성될 때마다 한다. 대상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납부비율을 적용할수 있다.

제30조 (리익금의 확정납부)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확정납부는 달마다 리윤 또는 소득에 따라 다음달 10일 까지 하며 미납액은 5일안으로 추가납부하고 과납액은 재정기관에서 반환받거나 다음달 바칠 뭍에서 공제납부한다.

제31조 (지방유지금의 납부)

지(구역), 군예산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유지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지방유지금을 국가기업리익금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2조 (국가예산납부에서 특혜보장)

국가의 투자를 받지 않고 생산, 경영활동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33조 (통합, 분리될 때의 국가예산납부금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 분리될 경우 그 시기까지 회계결산을 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재정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예산소속에 따르는 국가예산납부금을 받아야 한다.

제3절 감가상각금

제34조 (감가상각금의 정의, 납부대상)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자금이다.

감가상각금의 납부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된 생산적고정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35조 (감가상각금납부의 제외대상)

감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정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비생산적고정재산
2.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생산적고정재산
3. 이밖에 감가상각금을 바치지 않기로 한 고정재산

제36조 (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

감가상각금의 계산은 형태별고정재산의 시초가격에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정액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37조 (감가상각금의 구성, 적립규모)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시초가격보상몫과 대보수비보상몫으로 나눈다.

감가상각금의 적립규모는 고정재산의 시초가격을 내용년한기간 한해에 회수할 자기에 따라 정한다.

제38조 (감가상각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감가상각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초가격을 보상한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대보수비만을 납부한다.

제4절 부동산사용료

제39조 (부동산사용료의 정의, 납부대상)

부동산사용료는 국가의 부동산을 리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는 토지, 건물, 자원 같은것에 대하여 한다.

제40조 (부동산사용료의 납부항목)

부동산사용료의 납부항목에는 농업토지사용료, 부지사용료, 생산건물사용료, 어장사용료, 수산자원증식장사용료, 자동차도로시설사용료, 자원비 같은 것이 속한다.

제41조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농업부문의 대학, 전문학교에서 육종에 리용하는 농업토지
2. 새로 개간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토지
3. 자연재해로 류실 또는 매몰된 농업토지
4. 국가 및 협동적소유의 살림집기준부지
5. 철도운영시설부지
6. 협동단체와 기업소의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생산용건물
7. 이밖에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승인받은 부동산

제42조 (부동산사용료의 계산방법)

부동산사용료의 계산은 리용하는 부동산가격 또는 면적에 따르는 부동산사용료기준을 적용하여 한다.

제43조 (부동산사용료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동산사용료를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제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를 비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절 사회보험료

제44조 (사회보험료의 정의, 납부대상)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

제45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사회보험자와 사회보장자가 받는 년금 및 보조금
2. 비재적근로자에게 주는 로동보수자금
3. 이밖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승인받은 수입금

제46조 (사회보험료의 계산방법)

종업원의 사회보험료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협동단체의 공동자금에서 바칠 사회보험료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47조 (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로동보수액의 1%로 한다.

기업소와 협동단체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의 7%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

제48조 (사회보험료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험료를 은행기관에서 로동보수자금을 받는 날 또는 결산분배를 받는 달에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

제6절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제49조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과 자체의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가격편차수입금, 대외경제관계에서 조성된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에는 국가재산판매수입금, 가격편차수입금, 무역편차리익금, 차관 및 연불수입금 같은 것이 속한다.

제50조 (국가재산판매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포장용기, 설비, 비품 같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체의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한 수입금은 자체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1조 (가격편차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가격변동조치로 가격편차수입금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완제품 또는 상품의 가격편차수입금은 판매수입금이 조성되는 차제로 납부하며 류동재산의 가격편차수입금은 가격이 변동된 날부터 3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격변동조치로 생긴 손실은 국가예산에서 보상하여줄수 있다.

제52조 (무역편차리익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활동과정에 조성된 무역편차리익금을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무역편차리익금의 계산은 수출입상품호상간 편차손익을 상쇄하여 한다.

제53조 (차관, 연불수입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관 또는 연불로 들여온 물자를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금을 더한 판매수입금을 3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차관으로 외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대외결제은행의 돈자리에 넣고

환지시세에 따르는 조선원을 받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리익배당금의 납부)

합영, 합작기업의 공화국 당사자는 리익배당금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화로 받는 리익배당금은 환지시세에 따르는 조선원의 25%를, 물자로 받은 리익배당금은 상품판매수입금의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절 기타수입금

제55조 (기타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기타수입금은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수입금과 통제적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성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타수입금에는 무상로력동원수입, 국가수수료, 관세, 벌금 및 몰수품수입,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재산보험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같은 것이 속한다.

제56조 (무상로력동원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에서 생활비를 지불받는 로력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들이 번 로동보수몹을 정한 기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 (국가수수료, 관세의 납부)

해당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받은 국가수수료를, 세관은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자에 부과하여 받은 관세를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 (벌금 및 몰수품수입금의 납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에 부과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품을 처리하고 조성한 수입금을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권자의 지불청구가 없는 채무액을 시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재산보험료의 납부)

보험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은 연간재산보험료에서 피해보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해 1월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의 납부)

공화국령역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른다.

제62조 (개인수입금의 납부)

공민은 시장 같은데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하여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데 따라 수입금을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제63조 (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기본요구)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 계산하고 보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사업에 리용하는 문건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장부의 비치, 기록)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장부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자금리용정형과 판매수입금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자금리용정형과 판매수입금의 기록은 아랫단위의 회계보고문건 또는 기초서류 같은것에 준하여 한다.

제65조 (국가예산납부에 대한 결산)

국가예산의 결산은 년초부터 루계적으로 한다.

결산은 분기별, 년간으로 한다.

제66조 (국가예산수입결산서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확정계산서를 달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결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안으로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국가예산납부문건의 보관기간)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장부와 은행기관에서 발급한 국가납부전표 같은 것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분기표, 년간회계결산서 같은 것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8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9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70조 (재정기관의 국가예산납부사업제도)

재정기관은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1조 (국가예산수입사업조건의 보장)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수입사업과 관련한 재정기관의 요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3조 (계량수단에 의한 통제)

재정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 같은 것을 리용하여 국가예산납부정형을 통과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재정기관이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 (연체료적용)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액에 체납일당 1%를 적용하여 가산한 연체료를 물린다. 이 경우 국가예산강제납부통지서를 해당 은행기관에 보낸다.

은행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지출을 중지하고 수입금이 조성되는 차제로 국가 예산납부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75조 (판매수입금의 회수와 영업중지)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연장받지 않고 생산,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수입금을 회수하거나 그 행위를 중지시킨다.

제76조 (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예산납부금을 적게 바쳤을 경우
2. 국가예산수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중앙예산수입금을 지방예산수입금으로 옮겨놓았을 경우
4.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은행돈자리번호를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6. 국가예산납부자료를 정한 기일안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7.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8.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납부금을 적게 또는 더 받았거나 집금한 돈을 정한 기일안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9. 경유를 받지 않은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 것을 사용하였을 경우
10. 승인없이 정리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

제7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가예산수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수증법

주체110(2021)년 10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3호로 채택

제1조 (령수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수증법은 령수증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거래의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물자와 자금의 류동정형을 통일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령수증이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경제거래관계로 물자 또는 자금을 주고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2. 전자령수증이란 경제거래내용을 정한 항목에 따라 전자문서형식으로 기입하여 발급하는 령수증이다.
3. 령수도장이란 령수증의 발급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이 새겨진 도장이다.

제3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의 대표 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령수증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조 (령수증의 종류와 양식제정)

령수증의 종류와 양식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령수증양식을 부문별, 종류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정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갱신하여야 한다.

령수증양식은 3표로 제정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정할수도 있다.

제5조 (령수증수요장악)

해당 재정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받은 령수증수요타산자료에 기초하여 연간 령수증수요량을 분기별, 단위별, 부문별로 종합하여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6조 (령수증번호의 제정)

령수증번호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부문별, 지역별로 종합된 령수증수요량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령수증번호를 정해주어야 한다.

제7조 (령수증용지의 생산)

령수증용지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단위만이 생산할수 있다.

령수증용지생산단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해진 수량만큼 령수증용지를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과정에 오작이 난 령수증용지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령수증용지생산단위가 아닌 다른 단위에서는 령수증용지를 생산할수 없다.

제8조 (령수증용지의 위조방지)

령수증용지생산단위는 령수증용지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해진대로 위조방지표식을 하여야 한다.

위조방지표식에 리용하는 설비는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줄수 없다.

제9조 (령수증용지의 배포)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령수증용지배포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령수증용지를 제때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령수증용지배포정형을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령수증용지의 인수)

령수증용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해진 성원만이 인수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유하고있는 령수증용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11조 (령수증의 발급단위)

령수증은 경제거래관계에서 자금을 받은 단위가 발급한다. 경우에 따라 물자를 받은 단위도 령수증을 발급할수 있다.

령수증의 발급단위는 령수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발생한 경제거래내용과 맞지 않게 령수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의무적인 령수증발급)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경제거래관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령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령수증은 경제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발급하며 경우에 따라 경제거래가 발생한 후에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령수증의 발급, 리용)

령수증발급단위는 령수증용지에 해당 경제거래내용을 정확히 기입한 다음 발급하여야 한다. 령수증에는 령수증발급단위의 령수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령수증 1표는 령수증원본으로서 령수증발급단위에서 해당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고 보관하는 서류로, 2표와 3표는 령수증을 발급한 단위와 발급받은 단위의 회계서류로 리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전자령수증의 경우에는 전자결제체계에서 해당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령수증발급정형의 기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령수증의 발급정형을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해준 양식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령수증의 전송)

전자결제체계운영단위는 발급한 전자령수증을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6조 (령수증의 보관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령수증보관관리체계를 세우고 령수증용지와 령수증을 규정대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령수증용지와 령수증이 분실, 도난, 소각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3일안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령수증관리사업의 정보화)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령수증관리사업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바로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령수증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령수증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물자,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며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 (령수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령수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재정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령수증용지의 생산과 배포, 령수증의 발급, 보관 등 령수증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0조 (령수증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령수증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2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령수증수요타산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령수증용지의 생산, 배포에 지장을 주었

- 을 경우 10만~30만원
- 2. 령수증발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20만~100만원
- 3. 령수증용지와 령수증의 보관,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분실, 도난, 소각되었을 경우 10만~50만원
- 4. 령수증용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30만~150만원

제22조 (중지처벌)

이 법 제21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23조 (몰수처벌)

승인되지 않은 단위에서 령수증용지를 생산하였거나 령수증발급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제24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령수증수요타산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령수증용지의 생산, 배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령수증용지생산단위에 생산계획을 제때에 맞물리지 못하여 령수증용지의 생산, 배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령수증용지를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승인되지 않은 단위와 개별적공민이 령수증용지를 생산하였을 경우
5. 령수증용지의 생산, 배포를 무책임하게 하여 령수증번호의 중복과 램발을 조성하고 경제계산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6. 령수증용지에 위조방지표식을 하는 설비를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었을 경우
7. 령수증용지배포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배포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령수증발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령수증용지의 인수질서를 어겼거나 령수증용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9. 령수증발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10. 령수증용지와 령수증의 보관, 관리를 무책임적으로 하여 분실, 도난, 소각되었거나 분실, 도난, 소각정형을 제기일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0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5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법

주체77(1988)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제1장 발권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법은 화폐의 발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주적인 민족화폐제도를 공고히 하고 화폐유통을 원활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은행은 중앙은행이다. 발권사업은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는 중앙은행권이다. 중앙은행권이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금속을 비롯한 국가재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한다.
- 제5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화폐교환사업을 조직할수 있다.
- 제6조** 국가는 발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기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2장 화폐제조

- 제7조** 화폐의 제조규모는 국가가 승인한다.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규모안에서 화폐제조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 제8조** 화폐는 돈공장이 찍는다. 돈공장은 중앙은행의 지령에 의해서만 화폐를 찍어야 한다. 중앙은행밖의 그 어느 기관도 돈공장에 화폐를 찍어줄데 대한 의뢰를 할수 없다.
- 제9조** 돈공장은 화폐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화폐를 찍는 과정에 생긴 오작품은 중앙은행의 립회밑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화폐를 찍는 공정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돈공장의 화폐찍는 사업을 장악하고 검토, 총화하여야 한다.
- 제11조** 돈공장과 중앙은행은 화폐를 포장단위로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이 넘겨받은 화폐가운데서 오작품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돈공장이 책임진다.

제12조 화폐원판은 중앙은행이 보관한다. 돈공장은 화폐제조에 쓴 화폐원판을 제때에 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

제13조 우리 나라의 기념화폐를 제조하거나 다른 나라의 화폐, 기념화폐를 주문받아 제조하는 사업은 중앙은행만이 조직할수 있다.

제3장 화폐발행과 회수

제14조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화폐는 예비화폐, 조절화폐, 류통면화폐로 나눈다. 예비화폐의 발행한도는 해당 기관이 승인하며 조절화폐와 류통면화폐의 보유한도는 내각이 정한다.

제15조 중앙은행은 해당 기관이 승인한 발행한도범위안에서 예비화폐를 조절화폐에 넘겨야 한다.

제16조 중앙은행은 보유한도를 넘는 류통면화폐를 제때에 조절화폐에 넘기며 조절화폐의 보유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예비화폐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7조 현돈과 새돈의 교환은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류통과정에 생긴 현돈을 같은 금액의 새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앙은행은 발권상태를 기록한 문건을 따로 가지고있어야 한다. 발권상태를 기록한 문건취급은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4장 화폐관리

제19조 화폐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화폐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앙은행은 예비화폐, 조절화폐, 류통화폐를 갈라 보관하여야 하다. 화폐보관은 과학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된 금고에만 할수 있다.

제21조 중앙은행의 금고는 따로 정해진 성원들이 집체적으로 관리한다.

제22조 화폐수송은 중앙은행일군이 무장경비성원의 호송밑에 안전시설을 갖춘 자동차 또는 열차로 한다. 해당 운수기관은 화폐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화폐를 실은 자동차와 열차의 수화물차에는 다른 짐을 싣거나 화폐수송과 관련이 없는 인원을 태울수 없다.

제23조 현돈과 못쓰게 된 돈의 소각은 국가의 승인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화폐소각사업을 화폐소각위원회의 감독밑에 하여야 한다.

제24조 이 법을 어겨 발권사업과 화폐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주체84(1995)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38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9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89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6호로 수정보충

제1장 보험법의 기본

제1조 (보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험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리용하는 손해보상제도이다.
2. 피보험이익이란 보험대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이익이다.
3. 보험사고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이 현실로 된 것이다.
4. 보험자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는 보험회사이다.
5. 피보험자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사람이다.
6.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사람이다.
7. 보험수익자란 인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8. 보험료란 보험자가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자금이다.
9. 보험금이란 인체보험에서 보험기간이 만기되었거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하는 자금이다.
10. 보험보상금이란 재산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지불하는 자금이다.
11.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때부터 끝나는 때까지이다.

12.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준 피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13. 재보험이란 한 보험회사가 담보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담보시키는 보험이다.

제3조 (보험의 분류)

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불상사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기술보험,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같은 것이 속한다.

제4조 (자원성, 의무성, 신용의 원칙, 보험종류와 의무보험대상을 정하는 기관)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자원보험과 의무보험에 맞게 자원성과 의무성 신용의 원칙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보험종류를 새로 나오거나 의무보험대상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조 (보험업무의 담당자)

우리 나라 령역안에서 보험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가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가, 해외조선동포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대표부, 지사, 대리점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제6조 (보험에 드는 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또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해외동포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 령역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도록 한다.

제7조 (보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보험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법의 적용제한)

이 법은 국가의 시책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보험계약

제9조 (보험계약과 당사자들의 지위)

보험계약은 보험활동의 기초이다.

보험당사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계약당사자)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서면으로 맺는다.

보험계약자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자가 될 수 있다.

제11조 (피보험이익)

보험계약은 보험대상에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맺을수 있다.

피보험이익이 없이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2조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밝힌 보험계약신청서를 보험자에게 내며 보험대상과 관련한 보험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표준조건을 제시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계약의 성립시점)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신청에 동의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한때에 성립된다.

보험증권의 형식과 내용은 보험회사가 정하고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보험증권에 밝혀야 할 사항)

1.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2.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3. 보험대상
4. 보험가격
5. 보험금액
6. 담보하는 위험과 담보하지 않는 위험
7. 보험기간
8. 보험료와 그 납부방법
9.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의 지불방법
10. 이밖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사항

제15조 (보험계약당사자들의 의무)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보험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보험료납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지적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번에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제17조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중지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와 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중지되었던 보험계약의 효력은 다시 발생한다.

제18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1개월안에 보험자와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변경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

수송화물보험계약, 선박항차보험계약 같은 것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 다음 취소할수 없다.

제20조 (보험료의 반환)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계약이 취소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1조 (보험대상의 양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보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보험대상과 함께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22조 (보험사고의 통지와 손해경감의무)

보험계약기간에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쓴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23조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 확인)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현지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손해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해감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보상청구문건의 제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보상청구문건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보상청구문건에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제25조 (보험금과 보험보상금의 지불)

보험자는 보상청구문건을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험금과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2. 보험사고의 원인을 날조하였을 경우

제27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보험계약)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 보험계약, 위법적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일어난 후에 맺은 보험계약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8조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라 맺고 리행한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장 인체보험

제29조 (인체보험의 대상)

인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를 인체보험에 들일수 없다.

제30조 (인체보험에 드는 단위)

인체보험은 개별적으로 들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를 단위로 들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청구권 같은 보험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보험계약에서 당사자의동의)

보험계약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배우자, 부모, 미성인자녀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그러나 형제, 자매나 친척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32조 (보험금액의 합의)

인체보험에서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제33조 (보험수익자의 선정)

보험수익자의 선정은 피보험자가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며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보험금청구서의 제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금청구서에는 사망확인서 또는 로동능력상실확인서 같은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한다.

제35조 (인체보험에서 보험금의 지불)

인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불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과실로 일어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불한다.

제36조 (불상사보험에서 보험금의 지불)

불상사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불한다.

제37조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2.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3.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또는 포기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제38조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생명보험에서 제3자의 잘못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불상사보험에서는 지불한 보험금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제4장 재산보험

제39조 (재산보험의 대상)

재산보험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재산 또는 재산과 련관된 리익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보험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제40조 (보험가격과 보험금액)

보험가격은 화폐로 평가한 보험대상의 가치이며 보험금액의 최고한도이다.

보험금액은 보험가격을 초과하여 정할수 없다.

제41조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낮은 경우의 보상책임)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격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계약에서 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2조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보상책임)

당사자들의 잘못으로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높아졌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가격에 해당하는 보상책임만을 진다.

제43조 (중복보험에서의 보상책임)

한 대상을 같은 보험조건으로 여러 보험에 넣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사실을 매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들이 담보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격을 초과할 경우 매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자기가 담보한 보험금액과 보험금액총액의 비율에 따른다.

제44조 (보험대상의 관리, 안전상태요해)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관리 또는 안전상태에 대하여 료해할수 있으며 결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고칠데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결함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45조 (보험위험의 변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이 변동되면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위험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대상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요구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46조 (보험보상방법)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보상은 수리, 교체 또는 복구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47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

보험사고로 보험대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넘어간다.

제48조 (추가보험료의 납부와 보험보상)

보험계약자는 손해를 입었던 보험대상을 보험보상금으로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면 남은 보험기간에 발생할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9조 (보험기간의 연장)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까지 계약폐기의사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새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

제3자의 잘못으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지불한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진다.

피보험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보험보상금을 지불한다.

제5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의 포기)

보험자가 보험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보상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합의없이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과실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낮출수 있다.

제52조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배상금지불)

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제3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한 중재비용, 소송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5장 보험회사

제53조 (보험회사의 설립승인)

보험회사의 설립승인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한다.

설립승인을 받지 못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무를 할수 없다.

제54조 (보험회사의 설립조건)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사의 규약과 내부준칙

2. 보험의 종류와 업종
3. 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료를
4. 정해진 등록자금
5. 업무장소와 시설
6. 필요한 경영관리성원

제55조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제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고 합의 받은 다음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형식과 내용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다.

제56조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검토기일)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검토하고 60일안에 회사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57조 (영업허가증의 발급, 보험회사의 설립일)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의 설립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을 보험회사의 설립일로 한다.

제58조 (보험회사의 주소등록, 세무등록)

보험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회사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며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설립승인의 취소사유)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개월안에 정해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60조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설립)

보험회사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 나라 영역안에 지사, 대표부, 대리점을 설립할수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은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소재지의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활동에 대한 민사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제61조 (해외보험대표부, 보험회사의 설립)

보험회사는 우리 나라 영역밖에 보험대표부 또는 보험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보험회사와 그 지사, 대표부, 대리점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업무활동을 하여야 한다.

명칭, 규약, 업종, 등록자금, 업무장소 같은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보험담보금의 적립)

보험회사는 정해진 최저보상지불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험담보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담보금의 적립규모와 방법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다.

제64조 (등록자금의 관리)

보험회사는 등록자금을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은행에 넣어야 한다.

등록자금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리용할수 없다.

제65조 (재정총화문건의 제출)

보험회사는 결산년도가 끝날날부터 3개월안으로 업무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보험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년간재정결산문건은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고 낸다.

제66조 (보험대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명부를 갖추고 보험대리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에서 대리업무를 하며 그 정형을 문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제67조 (보험중개인)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중개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인이 한다.

보험중개인은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며 중개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8조 (보험회사의 분리, 통합, 해산)

분리, 통합, 해산하려는 보험회사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업무를 하는 보험회사는 해산할수 없으며 분리, 통합만을 할수 있다.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제69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기관)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개선하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정확히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70조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보험정책과 보험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세칙, 지도서를 작성한다.
2. 세계보험시장과 보험발전추세를 조사분석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3. 보험회사의 규약,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를, 보험업종을 승인한다.
4. 보험회사의 등록자금과 보험담보금의 규모, 적립방법을 정한다.
5. 보험회사, 보험지사,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업무활동을 감독한다.
6. 보험회사와 그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설립, 분리, 통합, 해산을 승인한다.
7.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계약신청서, 보험증권 같은 보험관련문건의 형식과 내용을 승인한다.
8. 재보험업무거래를 승인 또는 제한, 금지한다.
9.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71조 (보험대상,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대상과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대상,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은 전문감정기관과 해당 분야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제72조 (보험관련문건의 보관기일)

기관, 기업소, 단체, 보험회사는 보험사업과 관련한 문건, 자료를 중앙보험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 (보험회사에 대한 벌금부과, 영업중지)

보험회사를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설립하였거나 정해진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를 적용하거나 보험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3. 재정회계관련문건들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4. 정당한 리유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회사의 명칭, 규약, 등록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6. 보험담보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등록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분리, 통합, 해산하였을 경우
8. 어린이를 제외한 행위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인체보험을 조직하였을 경우

제74조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에 대한 벌금부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2. 보험사고와 관련한 거짓통보를 하고 그에 따르는 문건을 만들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3. 문건을 위조하여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
4.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들고도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75조 (개별적일군에 대한 벌금부과)

보험회사의 개별적일군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권을 악용하여 피보험리익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이 보험보상청구수속을 하게 하고 보험보상을 하였을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속였을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법행위를 조장시켰거나 그와 공모하였을 경우

제76조 (형사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책임있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77조 (분쟁해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주체95(2006)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9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제1조 (상업은행법의 사명)

상업은행은 예금, 대부, 결제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은 상업은행의 설립과 업무, 회계, 통합 및 해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업은행의 역할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상업은행의 설립원칙)

상업은행의 설립을 바로하는 것은 국가의 금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상업은행의 설립에서 공정성, 객관성과 실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상업은행의 업무원칙)

상업은행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상업은행업무에서 신용을 지키며 그것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 (상업은행의 운영원칙)

국가는 상업은행이 경영활동에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재산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5조 (상업은행일군의 양성원칙)

국가는 상업은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상업은행의 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제6조 (상업은행사업의 지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상업은행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국가는 상업은행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설립운영하는 상업은행에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상업은행의 설립운영과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8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업은행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제9조 (상업은행의 설립승인)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은 중앙은행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할수 없으며 《은행》이라는 글자를 기관명칭에 리용할수 없다.

제10조 (상업은행설립신청문건의 제출)

상업은행을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립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신청문건에는 은행명칭, 밑자금, 거래대상, 업무범위, 소재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상업은행설립승인문건의 심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설립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된 대상에 대하여서는 상업은행설립승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 (상업은행의 운영준비)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 기간에 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준비를 끝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운영준비기간을 밑자금규모와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정해주어야 한다.

제13조 (상업은행의 설립등록, 영업허가증발급)

운영준비를 끝낸 상업은행은 30일안으로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등록된 상업은행에 10일안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업은행의 기구)

상업은행은 관리부서, 업무부서, 정보분석부서, 금융감독부서, 양성부서, 내부경리부서 같은 필요한 부서를 둘수 있다.

필요에 따라 리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15조 (지점, 대표부의 설치)

상업은행은 국내와 국외의 여러 지역에 지점, 대표부 같은 기구를 내올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상업은행의 변경등록)

상업은행은 은행명칭, 밀자금, 거래대상, 업무범위, 소재지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 변경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변경등록신청문건을 30일안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업은행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17조 (영업허가증의 재교부)

상업은행은 영업허가증을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제18조 (상업은행업무종류)

상업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금업무
2. 대부업무
3. 돈자리의 개설과 관리업무
4. 국내결제업무
5. 대외결제, 수형과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업무
6. 외화교환업무
7. 거래자에 대한 신용확인 및 보증업무
8. 금융채권발행 및 팔고사기업무
9. 귀금속거래업무
10. 고정재산등록업무
11. 화폐의 팔고사기업무
12. 은행카드업무
13. 이밖에 승인받은 업무

제19조 (예금)

상업은행은 유휴화폐자금을 적극 동원하기 위하여 거래자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은행은 예금을 늘이기 위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벌려야 한다.

제20조 (예금의 지불과 비밀보장)

상업은행은 거래자가 예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경우 원금과 리자를 제때에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예금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불준비금의 보유)

예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위하여 상업은행은 정한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불준비금은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22조 (준비금)

상업은행은 정한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적립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적립한 준비금은 상업은행이 통합 및 해산되는 경우에만 찾아쓸수 있다.

제23조 (대부조건)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줄수 있다.

제24조 (대부의 원천)

대부원천은 거래자로부터 받아들인 예금과 자체자금, 중앙은행에서 받은 대부금 같은 것으로 한다.
상업은행은 대부원천을 초과하여 대부를 줄수 없다.

제25조 (대부계약)

상업은행은 상환능력이 있는 거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를 주어야 한다.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대부용도, 담보, 상환기간과 방식, 리자를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6조 (대부금의 담보, 보증)

상업은행은 대부를 주기 전에 차입자로부터 대부금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을 세워야 한다.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대부용도, 담보, 상환기간과 방식, 리자를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7조 (대부의 상환)

상업은행은 계약에 따라 대부원금과 리자를 정한 기간에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원금과 리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하려는 경우 해당 상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예금 및 대부리자률)

상업은행은 정한 기준리자률과 변동폭범위에서 예금리자률과 대부리자률을 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 (결제조직)

상업은행은 거래자가 돈자리를 통하여 화폐거래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결제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결제는 돈자리에 화폐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0조 (돈자리의 개설)

상업은행은 거래자에게 현금 및 환치거래를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여줄수 있다.

거래자는 한 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외국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다.

개인의 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예금할수 있다.

제31조 (대금의 결제)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지불지시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대금결제는 환치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2조 (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에 따르는 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은 승인받은 해당 상업은행이 진행한다.

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33조 (외화의 교환)

해당 상업은행은 외화교환업무를 할수 있다.

외화교환업무는 기준환자시세와 변동폭범위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거래자의 신용확인 및 보증)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거래자의 경영상태와 신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거나 보증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거래자는 경영상태자료를 상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융채권의 발행 및 팔고사기)

상업은행은 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할수 있으며 류통중의 각종 채권을 팔거나 살수 있다.

금융채권의 발행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귀금속의 거래)

귀금속의 거래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

해당 상업은행은 귀금속의 수매와 보관, 판매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37조 (고정재산의 등록)

해당 상업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등록은 부문별, 현물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8조 (화폐의 팔고사기)

상업은행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화폐의 팔고사기는 환자시세에 따라 조선원과 외화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 (금융봉사료금)

상업은행은 거래자로부터 업무에 따르는 금융봉사료금을 받을수 있다.

금융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제40조 (국고업무의 대리)

국고업무대리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

해당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국가예산자금지출문건에 따라 자금을 신속히 지출하며 거래자가 바치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중앙은행에 제때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1조 (통계자료의 제출)

상업은행은 화폐유통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고 정한 기간에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에는 화폐유통정형과 예금, 대부관계 같은 거래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제42조 (회계제도의 수립)

상업은행은 모든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계산, 분석하고 결산하는 회계제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회계는 시초서류 또는 아랫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제43조 (회계결산의 주기)

상업은행은 주기에 따라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제44조 (회계결산서의 작성)

상업은행은 회계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과 지출, 이익금 및 손실금과 그 처리정형, 채권채무관계 같은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5조 (회계결산서의 검증, 제출)

상업은행의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은 회계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회계문건의 보관, 취급)

상업은행은 회계문건을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보여줄수 없다.

제47조 (회계년도, 기준화폐)

상업은행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제48조 (통합 및 해산사유)

상업은행은 경영과정에 거래자의 리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 다른 상업은행에 통합하거나 해산할수 있다.

제49조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제출)

다른 상업은행에 통합하거나 해산하려는 상업은행은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작성은 정한 양식에 따른다.

제50조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심의)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을 받은 중앙은행은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통합 및 해산이 승인된 상업은행의 영업허가증은 즉시 회수한다.

제51조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업무청산)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은 정한 절차에 따라 은행업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의 업무청산을 바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통합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

통합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관계는 통합하는 상업은행에 그대로 넘어간다.

통합한 상업은행은 넘겨받은 채권채무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53조 (벌금)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당하게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예금을 받아들였거나 대부를 주었을 경우
2. 정한 기준리자률과 변동폭범위를 초과하여 예금 또는 대부리자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3. 정당한 리유없이 결제문건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4. 외화교환을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 금융봉사료금을 정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6.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중지하였거나 업무시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제54조 (업무중지)

업무를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하였을 경우
2. 거래자의 요구대로 예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3.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금하지 않았을 경우
4. 업무검열을 방해하였을 경우

제55조 (상업은행설립승인의 취소)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을 취소한다.

제5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업은행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7조 (분쟁해결)

상업은행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관리법

주체110(2021)년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08호로 채택

제1조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은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판매를 정보화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음으로써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상품식별부호의 정의)

상품식별부호는 상품정보내용을 수감부로 읽어 그것을 자동으로 식별, 처리 및 교환하도록 하기위하여 표기하는 부호이다.

제3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및 사용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2차원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조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이 맡아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및 사용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 (상품식별부호사업에서 나서는 요구)

상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1차원상품식별부호를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정받아 상품에 표기하며 2차원상품식별부호를 확대도입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식별부호의 제정신청)

상품식별부호를 제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제정신청문건을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품식별부호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첨부한다.

상품식별부호제정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관등록, 영업허가와 관련한 문건사본을 함께 내야 한다.

제7조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상품식별부호제정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항목별

로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해주어야 한다.

1차원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함께 제정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식별번호는 나라별식별번호, 사용자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정한수만큼 되게 한다.

제8조 (상품식별부호사업료금)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요금은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제9조 (상품식별부호의 등록, 보관)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제정한 식별번호와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사용자별로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은 3중으로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는 사용할수 없다.

제10조 (항목변경정형의 통지)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항목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없어진 항목의 상품식별부호는 3년동안 다른 항목에 사용할수 없다.

제11조 (해산정형의 통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산되는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해산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용자식별번호를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된 사용자식별번호는 3년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줄수 없다.

제12조 (국가규격의 준수)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규격에 따라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품식별부호의 표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의 표기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제14조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의 구비)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장소에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어놓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표기,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품식별

부호를 마음대로 변경시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상품식별부호기술 및 응용분야의 제정, 공포)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품식별부호기술과 그 응용분야를 제정,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 (상품식별부호자료기지봉사)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국내외의 앞선 기술자료들과 등록된 상품식별부호에 대한 자료기지를 조성하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18조 (상품식별부호분야의 국제적협조)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국제상품분류표식협회, 다른 나라들과 상품식별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려 상품식별부호기술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제19조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20조 (손해보상)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상품식별부호를 국가규격에 맞지 않게 표기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2.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항목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 20만~50만원
3.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10만~20만원
4. 상품식별부호를 위조하여 표기하거나 상품식별부호가 표기된 제품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5. 1차상품식별부호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6.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20만~50만원

제22조 (중지 및 폐업처벌)

이 법 제21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23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상품식별부호제정기일을 어겼을 경우
2.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표기에서 국가규격을 어겼을 경우

3. 상품식별부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을 규정대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였거나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를 마음대로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
 5.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6. 상품항목의 변경정형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산정형을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7. 없어진 항목의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기간전에 사용하였을 경우
 8. 삭제된 사용자식별번호를 정해진 기간전에 다른 사용자에게 주었을 경우
 9. 상품식별부호를 비법적으로 제정, 표기, 사용하였을 경우
- 앞항 1~9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25조 (분쟁해결)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이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5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1조 (외화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의 수입과 리용, 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화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다른 나라 화폐와 국가채권, 회사채권, 수형, 행표, 은행카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외화유가증권,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와 귀금속을 말한다.

제3조 (외화관리의 중요원칙)

외화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외화관리의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통일적인 외화관리체계를 세우고 외화의 수지균형을 보장하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외화관리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4조 (외화현금의 류통금지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수 없다.

외화현금은 조선원과 바꾸어 쓴다.

제5조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에 대한 보호)

국가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국민의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외화수입이 있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대외결제은행 포함)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서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적용하는 외화관리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제7조 (국가외화납부률의 제정)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외화수입지출계획에 따라 국가외화납부률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8조 (외화돈자리의 개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부는 대외결제은행에 외화돈자리를 개설하고 외화를 리용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9조 (외화재정계획의 작성,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재정계획을 세워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화재정계획은 외화수입계획과 국가외화납부계획을 포함한 외화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세운다.

제10조 (외화수입계획집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외화수입계획에 따라 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외화지출계획집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외화지출계획에 따라 외화를 리용하여야 한다.

외화지출계획에 지정된 지표, 항목과 다르게 외화를 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국가외화납부계획집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외화납부계획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외화납부계획을 실행한 조건에서 자체자금을 리용할수 있다.

제13조 (외화결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화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결산주기 및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14조 (외화자금리용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항목과 지표, 방법에 따라 외화자금리용에

대한 총화를 받아야 한다.

국가외화자금리용에 대한 총화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5조 (국가외화납부금의 관리)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무역은행에 국가외화돈자리를 개설하고 국가외화납부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외화자금의 지출)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외화돈자리에 조성된 외화자금의 원천범위안에서 계획에 기초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 외화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적인 외화수입과 지출, 잔고의 종합)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외화수입과 지출, 잔고를 종합하여 외화관리사업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민의 외화보유와 팔기, 저금)

공민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보유할수 있다.

외화를 팔거나 저금하려 할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을 제외한 대외결제은행에 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인의 외화저금과 팔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서 송금하여온 외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대외결제은행에 저금하거나 팔수 있다.

제20조 (외화의 리용범위)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수 있다.

1. 대외경제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려비, 경비, 유지비의 지불거래 같은 비무역거래
3.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같은 거래

제21조 (외화의 대부)

대외결제은행은 해당 법규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외화를 대부하여줄 수 있다.

제22조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대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외화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대부받을수 있다. 이 경우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외화유가증권의 발행승인)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제24조 (외화의 반입과 수수료, 관세면제)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 (외화현금의 반출)

외화현금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범위에서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출국하는 공민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한도범위에서 외화교환증명문건이 없이 세관에 신고한데 따라 외화현금을 가지고나갈수 있다.

제26조 (외화유가증권의 반출)

외화유가증권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합의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27조 (귀금속의 반출)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하면서 들여온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에서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가의 리윤분배금의 반출)

외국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분배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없이 송금할수 있다.

제29조 (외국인의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반출)

외국인은 해당 세금을 납부한 조건에서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수 있다.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외화리용에서 국가재정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31조 (외화관리부문 세칙, 지도서의 작성, 집행)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관리법규의 요구에 맞게 외화재정관리 및 회계계산조직과 관련한

세칙, 지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세칙, 지도서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예산소속에 따르는 외화관리)

중앙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직접 한다. 그러나 지방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도인민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제33조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통일적장악관리)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에 대한 외화채권, 채무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외화생활비, 외화려비, 외화수수료에 대한 관리)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외화자금으로 지출하는 생활비, 려비와 외화수수료 같은것을 바로 정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대외결제은행에 대한 관리)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대외결제은행으로부터 분기, 연간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자료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외화관리정형에 대한 검열)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대외결제은행의 외화관리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대외결제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검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강제납부)

국가외화납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을 통하여 강제납부시킬수 있다.

제38조 (연체료부과)

국가외화납부금을 제때에 정확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39조 (손해보상)

외화를 리용하는 과정에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0조 (벌금부과)

외화를 정해진 기간까지 입금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 입금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1조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외화를 몰수한다.

1. 국내에서 외화현금을 유통시켰을 경우
2. 외화를 제정된 용도에 리용하지 않았을 경우
3. 외화를 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4. 외화를 회계계산밖에서 리용하였을 경우
5. 외화를 횡령하였을 경우
6. 외화를 공화국령역밖으로 도피시켰을 경우
7. 이밖에 비법적으로 외화를 거래하였을 경우

제4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외화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주체105(2016)년 4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13호로 채택

제1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기본

제1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금융제도와 사회의 안정, 경제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세척이란 비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들이 속한다.
 - 1) 위법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출처를 속이거나 위장하기 위하여 이전 또는 전환하는 행위
 - 2) 위법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 소유, 리용하거나 그 재산의 특징, 출처, 위치, 처리, 이동, 소유관계, 리권을 속이거나 위장하는 행위
 - 3) 1), 2)의 행위를 시도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방조, 조언을 주거나 사촉, 조장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는 행위
 - 4) 1), 2), 3)의 행위를 감행한 자가 법적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조하는 행위
2. 테로자금지원이란 테로조직이나 테로분자에게 재산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들이 속한다.
 - 1) 테로행위지원 또는 기타 지원의 목적밑에 테로조직이나 테로분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제공하는 행위
 - 2) 합법적 또는 비법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테로조직이나 테로분자를 위하여 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재산을 모으거나 제공하는 행위
 - 3) 1), 2)의 행위를 시도하거나 조직, 지시하거나 방조, 조언을 주거나 사촉, 조장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는 행위
 - 4) 1), 2), 3)의 행위를 감행한 자가 법적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조하는 행위
3. 전제범죄란 자금세척행위에 리용될수 있는 소득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들

이 속한다.

- 1) 조직범죄집단에 가담하여 비법적인 상적행위에 참가하는 행위
 - 2) 테로자금지원을 포함한 테로행위
 - 3) 인신매매 및 이주민밀수행위
 - 4) 아동을 성행위에 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돈벌이목적을 위한 성행위
 - 5) 마약 및 정신자극성물질의 비법거래행위
 - 6) 비법적인 무기거래행위
 - 7) 훔친 물건을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취득한 물품의 거래행위
 - 8) 뇌물행위를 포함한 부정부패행위
 - 9) 사기협잡행위
 - 10) 화폐위조행위
 - 11) 상품위조 및 모조행위
 - 12) 환경파괴행위
 - 13) 살인, 중상해행위
 - 14) 유괴, 인질랍치행위
 - 15) 절도, 강도행위
 - 16) 밀수행위
 - 17) 탈세행위
 - 18) 공갈행위
 - 19) 문서위조행위
 - 20) 해적행위
 - 21) 정보거래 및 시장조종행위
 - 22) 기타 공화국형법에 규제한 범죄행위들중에서 전제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4. 범죄소득이란 전제범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5. 재산이란 취득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동산, 부동산, 유형재산, 무형재산과 그에 대한 소유권, 리권을 증명하는 법적문건 또는 증서를 말한다.
 6. 신고의무기관이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관련한 신고의무를 지닌 은행, 보험, 회계검증, 외화교환, 귀금속 또는 보석취급, 카지노, 변호, 공증과 같은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일군 포함)을 말한다.
 7. 거래자란 신고의무기관과 거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8. 수익권소유자란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거래의 실제적인 당사자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경영상통제권을 가진자를 말한다.
 9. 의심스러운 거래란 신원이 의심스러운 자가 진행하는 거래, 범죄소득, 자금세척 및 테

로자금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말한다.

10. 대량거래란 해당 기관이 정한 한도금액이상의 현금 및 무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같은것의 거래를 말한다.
11. 동결이란 해당 기관이 범죄행위와 련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과 수단의 이전, 전환, 처분, 류동을 일정한 기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금융정보기관이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와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접수, 수집, 분석하며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감독통제기관이란 검찰, 인민보안기관 같은 법기관과 기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 방지와 관련한 감독통제권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 원칙)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조정위원회)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서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조정위원회를 조직한다.

국가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권한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이 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신고의무기관

제7조 (신고의무기관의 의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때에 하는 것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

위를 방지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신원에 대한 확인의무,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거래기록보관의무 같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자의 신원확인)

신고의무기관은 다음의 경우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자가 돈자리개설을 비롯한 거래관계를 맺으려 할 경우
2. 거래자가 자기의 신원자료를 변경하려 할 경우
3. 고정거래자 또는 돈자리가 없는 거래자가 해당 기관이 정한 한도금액이상의 거래를 진행하려 할 경우
4. 거래자 또는 거래가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되어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거래자에 대한 신원자료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

제9조 (거래자, 수익권소유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신고의무기관은 신원확인을 위하여 거래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1. 거래자가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 국민증(시민증), 외국인인 경우 려권같은 신원확인문건
2. 거래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명칭, 영업허가증, 소재지, 연계주소, 기구체계, 책임자의 이름
3.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그의 신원자료와 대리위임관계자료
4. 수익권소유자가 우리 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그의 신원자료
5. 수익권소유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책임자의 이름, 영업허가증, 소재지, 연계주소, 기구체계
6. 기타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10조 (신원자료의 재확인)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로부터 받은 신원자료를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거래정형의 정상적인 확인)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와 거래관계를 맺은 다음에도 거래자의 신원자료, 업종, 자금출처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거래)

신고의무기관은 다음의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1.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대량거래
2. 명백한 경제적 또는 합법적 목적이 없는 거래
3.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는 거래
4. 수익권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거래

5. 거래자가 24시간안에 진행하는 여러건의 거래의 총량이 해당 기관이 정한 한도금액 초과하는 거래
6. 직접 신원확인을 하지 못한 대상과의 거래
7.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지 않은 나라의 기관 또는 인물들과의 거래

제13조 (신고의무기관의 봉사제공금지)

신고의무기관은 다음의 경우 봉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1. 거래자 또는 수익권소유자의 신원이 명백치 않을 경우
2. 거래자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3. 거래자가 수자 또는 익명, 가명으로 돈자리를 개설하려 할 경우
4. 거래자가 국가가 해당 규정에 따라 지정한 제재대상 또는 그와 연관된 단체, 개인과 거래하려 할 경우

제14조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융기관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거래하려 할 경우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업무내용, 신용도, 감독수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 같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거래자의 신원자료와 거래기록의 보관 및 열람보장)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신원자료, 회계문건, 업무통신문건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거래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고의무기관은 금융정보기관과 법기관이 거래자신원자료와 거래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내부보고체계수립)

신고의무기관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체계를 세우고 신고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업무과정에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신고책임자는 제기된 자료를 검토하고 금융정보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

신고의무기관은 대량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48시간안으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 행위와 연관되어있다고 의심되는 거래나 거래시도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의 량에 관계없이 24시간안으로 금융정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서에 반영할 내용)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한다.

1. 신고의무기관의 명칭과 주소, 신고담당자의 신분과 전화번호
2. 거래자 또는 수익권소유자의 신원자료
3. 거래형식과 날자, 돈자리번호와 종류, 거래금액, 화폐종류, 거래관계자
4. 의심하게 된 근거
5. 기타 필요한 내용

제19조 (신고방법)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같은 통신수단을 리용하여 한다. 이 경우 전화로 한 신고자료는 서면으로 고착한다.

통신수단을 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수 있다.

제20조 (비밀준수)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의 신원자료와 거래내용같은 것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기관에 신고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그와 관련한 자료를 보장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누설행위로 되지 않는다.

제21조 (책임면제)

신고의무기관은 신고된 거래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로 하여 초래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 (내부사업준칙의 작성과 집행)

신고의무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내부사업준칙을 작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내부사업준칙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한다.

1. 거래자접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2. 거래자신원확인과 신원자료의 갱신 및 검증절차
3.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처리 및 신고절차
4. 자료보관 및 비밀준수의무
5. 금융정보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시달하는 지시의 접수 및 집행정형 보고절차
6.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전임감독일군의 임무와 사업절차
7.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교육
8. 기타 필요한 내용

제23조 (감독일군)

신고의무기관은 기관안에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을 감독하는 전임일군을 두고 종업원들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법과 규정, 내부사업준칙준수정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사, 감독, 국제적협력에 필요한 자료제출의무)

신고의무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роза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국제적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행비밀,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밀준수의무를 어긴 것으로 되지 않는다.

제3장 금융정보기관

제25조 (금융정보기관의 소속과 지위)

금융정보기관은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에 둔다.

금융정보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роза금지원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사업을 함에 있어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26조 (금융정보기관의 임무와 권한)

금융정보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신고의무기관으로부터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신고를 접수하거나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걸쳐 분석결과를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2. 자금세척 및 테роза금지원방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기관, 감독통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 의뢰하여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수 있다.
3. 거래자돈자리가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роза금지원과 련관되어 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돈자리를 감시할수 있다.
4. 자료의 보관, 배포, 보호, 열람절차를 비롯하여 자료의 안전 및 비밀보장과 관련한 내부사업준칙을 작성 및 집행한다.
5. 신고의무기관에 거래자신원확인과 기록보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신고, 기타 의무와 관련한 지도서를 시달한다.
6. 다른 나라 금융정보기관들과 호상성의 원칙에서 정보교환을 한다.

제27조 (금융정보기관일군의 비밀준수)

금융정보기관의 일군은 직무수행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누설하지 말며 자금세척 및 테роза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범위외에는 그 자료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퇴직, 조동, 해임되는 경우에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기지의 운영)

금융정보기관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비롯하여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роза금지원행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자료기지에 입력하고 그를 통한 자료분석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4장 감독통제기관

제29조 (금융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

금융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신고의무기관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준수정형을 감독한다.
2.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집행을 위한 세칙, 지도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들에 시달한다.
3. 신고의무기관에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들과 자료를 교환할수 있다.
4. 신고의무기관에 대한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한 행정처벌을 적용하거나 법기관에 제기한다.
5. 신고의무기관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교육사업정형을 료해한다.
6. 다른 나라 금융감독기관들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하여 자료교환을 하거나 필요한 협력사업을 한다.

제30조 (세관의 임무)

세관은 출입국하는 공화국국민 또는 외국인이 해당 기관에서 정한 한도금액이상의 현금, 지참인지불증권, 귀금속, 보석 같은 것을 소지한 경우 그 출처와 용도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한도금액이상의 현금, 지참인지불증권, 귀금속, 보석 같은것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압수 또는 몰수하며 그 정형을 금융정보기관에 통보한다.

제31조 (법기관의 임무와 권한)

법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적발, 조사한다.
2. 몰수대상이거나 범죄소득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 및 추적한다.
3. 몰수대상이거나 범죄소득으로 의심되는 재산의 매매, 이전, 처분을 막기 위한 동결 또는 압수같은 조치를 취한다.
4. 금융정보기관, 신고의무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5. 다른 나라 법기관들과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교환을 비롯한 협력사업을 한다.

제5장 국제적협력

제32조 (국제적협력원칙)

국가는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 지원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33조 (국제적협력기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해당 국내법과 조약에 따라 법기관과 금융정보기관,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권한있는 기관이 한다.

제34조 (국제적협력의 형태)

해당 법기관과 금융정보기관,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권한있는 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 지원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과 호상법률상방조, 재산의 동결 및 몰수, 범인인도, 자료 교환 같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적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해당 국내법과 조약에 따른다.

제6장 제재 및 신소

제35조 (동결 또는 압수, 몰수대상)

다음의 재산을 동결 또는 압수, 몰수한다.

1. 세척한 재산
2. 전제범죄나 자금세척행위로 이루어진 소득 또는 그러한 행위에 리용된 수단
3. 테로조직이나 테로분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로 이루어진 소득 또는 그러한 행위에 리용한 재산
4. 1-3에 규정된 재산 또는 수단을 동결 또는 압수, 몰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대등한 가치의 재산

제36조 (동결조치)

해당 법기관은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련관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동결할데 대한 결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소유자에게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통지를 보낸다.

동결기간은 10일을 넘을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걸쳐 20일간 연장할수 있다.

동결결정에 대하여 의견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로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37조 (압수 및 몰수)

압수 및 몰수는 형사소송법에 규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38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강직, 해임, 벌금, 업무중지, 영업허가취소 같은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거래자신원확인과 관련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2. 거래자신원자료 및 거래기록을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4.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거래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은 경우
5. 봉사제공이 금지된 대상에게 봉사를 제공한 경우
6. 내부통제체계를 세우지 않은 경우
7. 해당 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보장을 거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8. 해당 법기관의 동결결정을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 경우
9. 감독통제기관의 법집행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 감독통제기관이 직무수행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1. 감독통제기관이 직무수행과정에 알게 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을 로출시키는 경우
12. 감독통제기관이 법적요구에 맞지 않게 조사, 감독하거나 동결 또는 압수, 몰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39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8조를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0조 (신소와 그 처리)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주체84(199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1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2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7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8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69호로 수정보충

제1장 재정법의 기본

제1조 (재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나라의 재정토대를 강화하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재정의 정의)

재정은 국가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이다.

국가는 재정의 분배적기능과 통제적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3조 (재정의 유일적, 계획적관리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은 사회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한다.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 (화폐자금의 분배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폐자금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돌려진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며 로동에 의한 분배를 옹계 실현할수 있게 화폐자금을 분배하도록 한다.

제5조 (자금리용원칙)

나라의 자금을 아껴쓰고 절약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적은 자금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

제6조 (재정일균양성원칙)

국가는 재정일균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재정일균을 체계적으로 키워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에 따르는 재정일균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국가예산

제8조 (국가예산의 편성, 집행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국가예산은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으로서 국가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균중로선의 원칙에서 국가예산편성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며 편성된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예산의 심의승인)

국가예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승인된 국가예산은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10조 (국가예산의 구성과 예산년도)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한다.

예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11조 (국가예산편성)

국가예산은 수입원천과 자금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항목별로 편성한다.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경제계획작성과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 여러가지 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재정수지균형을 맞추며 국가와 예산납부단위들의 리익을 다같이 도모하고 지출의 선후차와 시기성을 보장할수 있게 국가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예산집행)

중앙예산은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지방예산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집행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중앙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예산을 구체화하여 해당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예산의 집행)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예산체계에 따라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

재정기관은 수입예산을 항목별, 시기별로 정확히 집행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 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지출예산의 집행)

국가예산지출은 해당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은 축적의 우위성과 선차성을 보장하면서 소비를 끊임없이 늘이는 원칙에서 국가예산지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경제, 문화건설과 국방건설, 대외활동,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예산으로 보장한다.

제16조 (부문예산제의 실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예산안에서 부문별로 부문예산제를 실시한다.

부문예산집행기관은 경제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부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어야 한다.

제17조 (부문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부문예산은 해당 부문의 중앙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원천으로 한다.

해당 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부문예산수입으로 보장한다.

제18조 (지방예산제의 실시)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군을 기본단위로 실시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짜고들어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어야 한다.

제19조 (지방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지방경제발전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예산으로 보장한다.

제20조 (재정적특혜)

국가는 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에 재정적특혜를 준다.

예산집행기관은 해당 예산수입계획초과분의 일정한 몫을 우대기금으로 적립하고 리용할수 있다.

제21조 (국가예산자금관리)

국가예산자금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이 관리한다.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권을 옹계 활용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자금적으로 담보하며 경영수입을 체계적으로 늘이고 지출을 줄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는 원칙에서 재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정관리권)

재정관리권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는 권한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권을 활용하여 재정관리사업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실정에 맞게 경영자금의 조성, 리용을 주동적으로 하여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수행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며 종업원생활을 재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과 재정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재정관리권을 원만히 활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정관리의 형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예산제로 관리한다.

제25조 (독립채산제)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단위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독립채산제단위는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생산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리익을 주어야 한다.

제26조 (반독립채산제)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반독립채산제단위는 생활비자금규모이상의 자금을 자체수입으로 보장하며 모자라는 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예산제)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위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
예산제단위는 경리운동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국가예산자금을 최대한 절약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정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정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따라 재정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재정계획은 수행할수 없다.

제30조 (재정계획의 수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재정계획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계획수행정형의 평가)

재정계획수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계획 같은 재정계획수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제36조 (가격, 요금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이나 요금 같은 것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 (경영수입조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권을 옹계 활용하고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영수입을 늘여야 한다.
생산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수입금은 빠짐없이 경영수입에 포함시키고 회계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의 분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수입에서 국가예산납부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원가보상을 하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대재생산과 과학기술발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39조 (경영손실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하여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은행대부금이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의 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 모든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정회계문건의 작성과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증빙문건에 기초하여 재정회계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재정회계문건의 내용은 고칠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총화

제41조 (재정총화의 기본요구)

재정총화를 바로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총화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총화에서는 모든 자금과 물자의 지출과 반출입, 소비관계에 대하여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제42조 (국가예산집행정형총화)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는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43조 (예산별집행정형총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내각에서 한다.
부문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연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회의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44조 (예산집행정형총화방법)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집행정형총화는 수입, 지출항목별계획수행정형을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분석, 총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적지원으로 이루어진 물자와 자금의 등록, 리용정형을 함께 총화하여야 한다.

제45조 (일생산 및 재정총화)

일생산 및 재정총화는 작업반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46조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는 직장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제4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계획에 반영된 경영수입과 지출, 국가예산납부와 자체충당금조성

리용, 로동보수자금지불, 국가예산자금의 리용정형 등 재정활동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순, 월, 분기, 반년, 년간 재정총화는 생산총화와 결부하여 진행한다.

제48조 (재정총화결과의 공개)

재정총화결과는 공개한다.

재정총화에 대한 공개는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하고 직장, 작업반에서도 한다.

재정총화결과에 대한 공시는 월에 1차 한다.

제49조 (재정회계결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재정회계결산을 하며 회계결산서를 만들어 회계검증을 받은 다음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과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재정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계획적지도와 개별적단위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재정계획수행정형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 (국가예산체계에 망라)

내각과 중앙재정지도기관, 해당 재정기관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를 국가예산체계에 망라 시키고 재정수입원천을 최대로 동원하며 재정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재정기관의 임무)

해당 재정기관은 아래단위 또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 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문제를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며 재정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53조 (국가적인 재정문제의 발기, 재정적담보, 채무청산)

국가적인 재정문제의 발기와 국가가 진행하는 대외경제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재정적담보, 다른 나라와의 국가채권, 채무청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4조 (재정일군자격)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일군은 해당 전문자격과 급수를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제55조 (재정검열)

재정검열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

제56조 (재정검열위원회와 재정검사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통제에 생산자대중이 널리 참가할수 있게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를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의 결정집행정형은 해당 재정기관이 장악한다.

제57조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업무계산, 회계계산 같은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8조 (강제납부)

국가예산납부규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한 자금을 강제납부시킨다.

제59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위약금, 연체료의 부과, 손해보상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60조 (변상처벌)

이 법을 어겨 국가사회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제6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국가예산납부규률을 어겼을 경우 10만~150만원
2. 국가예산자금을 류용, 낭비하였을 경우 10만~150만원
3. 해당 지역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50만원
4.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만~100만원
5. 조성된 수입금을 회계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0만~70만원
6. 재정회계문건의 작성, 보관질서를 어겼을 경우 10만~150만원

제62조 (중지처벌)

이 법 제61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63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

벌을 준다.

1. 국가예산집행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국가예산납부규률을 어겼을 경우
3. 국가예산자금을 유용, 낭비하였을 경우
4. 국가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에 재정적특혜를 주지 않았을 경우
5.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관리권활용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해당 지역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7. 재정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지 않았을 경우
8. 재정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9. 재정계획수행정형평가에서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10.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1. 류동자금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12. 조성된 수입금을 회계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3. 종업원생활조건을 재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4. 재정회계문건의 작성, 보관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재정총화와 재정공개질서를 어겼을 경우
16.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합의없이 재정문제를 처리하였을 경우
17. 재정검열조직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8. 재정검열위원회와 재정검사위원회의 운영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결제법

주체110(2021)년 10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2호로 채택

제1조 (전자결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결제법은 전자결제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현금류 통량을 줄이고 무현금류통량을 늘이며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전자결제체계는 경제거래과정에 이루어지는 자금결제를 전자결제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체계이다.

전자결제체계에는 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은행전자결제체계와 은행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자지불봉사체계가 속한다.

전자결제수단에는 컴퓨터, 금융카드 및 카드결제기, 손전화기, 자동현금출납기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전자결제체계를 운영, 리용하는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한다. 외화전자결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조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지도)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은 전자결제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제5조 (은행전자결제체계의 구축)

은행과 은행사이의 전자결제를 보장하기 위한 은행전자결제체계는 중앙은행이 구축한다.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전자결제를 보장하기 위한 은행전자결제체계는 해당 은행이 구축한다.

제6조 (은행전자결제체계의 가입절차)

은행전자결제체계에 가입하려는 은행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은행전자결제체계 가입신청문건을 중앙은행 또는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 또는 해당 은행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결제체계리용을 위한 증명서발급)

전자결제체계를 리용하는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 (전자지불봉사체계의 구축)

전자지불봉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지불봉사업무허가신청 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9조 (전자결제체계에 리용되는 설비의 등록)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결제체계에 리용되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설비를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보설비를 교체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전자결제체계와 관련한 내용의 기록)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결제체계의 운영과 정보설비의 설치, 점검보수 및 교체와 관련한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결제문서의 작성 및 전송)

전자결제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자결제문서를 작성하고 컴퓨터망을 통하여 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결제문서의 심의 및 자금결제)

은행은 전송받은 전자결제문서를 그날로 심의하고 해당한 자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전자결제문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혀 전송받은 날로 돌려보낸다.

제13조 (전자결제문서의 효력)

전자결제문서는 국가전자인증체계에 따르는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전자지불봉사업무)

전자지불봉사체계운영단위는 중앙은행이 승인한 범위에서 전자지불봉사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지불봉사체계리용단위의 등록)

전자지불봉사체계를 리용하는 단위는 전자지불봉사체계운영단위를 통하여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지불봉사정형의 료해대책)

중앙은행은 전자지불봉사체계운영단위의 봉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자지불봉사체계운영단위는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융봉사료률의 적용)

전자결제를 진행하는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는 전자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금융봉사료률을 적용한다.

금융봉사료률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제18조 (전자결제업무의 회계)

전자결제업무와 관련한 회계는 중앙은행이 정한 금융회계절차와 방법에 기초하여 한다.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결제의 형식에 따라 정해진 회계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9조 (전자결제업무자료의 보관)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결제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가 추가, 삭제, 변경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0조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대책, 통보)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자결제체계의 운영, 리용과정에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제때에 대책하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자결제체계의 구축과 운영,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22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없이 전자지불봉사체계를 운영하였을 경우 50만~100만원
2. 전자결제체계에 리용되는 정보설비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100만~150만원
3.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나 전자지불봉사업무를 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4. 정해진 금융봉사료률을 어겼을 경우 10만~50만원

제23조 (중지처벌)

이 법 제22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영업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24조 (몰수처벌)

전자결제체계의 구축과 운영, 리용과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25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전자결제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자금결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전자결제체계와 관련한 신청문건심의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3. 전자결제체계에 리용되는 설비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4. 전자결제체계의 운영과 정보설비의 설치, 점검보수 및 교체와 관련한 내용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5. 전자결제문서의 심의와 자금결제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6. 승인없이 전자기불봉사업무를 하였을 경우
7. 정해진 금융봉사료률을 어겼을 경우
8. 금융회계질서를 어겼을 경우
9. 전자결제업무와 관련한 문건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멋대로 추가, 삭제, 변경시켰을 경우

앞항 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식별부호관리법

주체110(2021)년 10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8호로 채택

제1조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은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와 경제활동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식별부호란 식별하려는 대상의 정보내용을 수감부로 읽어 자동적으로 식별, 처리 및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4각형모양의 평면우에 선, 점, 공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2차원방식으로 표기하는 부호이다.
2. 2차원상품식별부호란 상품식별을 위하여 제품상표에 표기하는 정보식별부호이다.
3. 정보식별체계란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할 목적으로 구축한 체계이다.
4. 정보식별부호의 생성이란 전용프로그램을 리용하여 정보식별부호를 만드는 행위이다.
5. 정보식별부호매체란 정보식별부호를 인쇄한 종이, 테프같은 물리적재료이다.

제3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조 (정보식별체계의 통일적관리)

정보식별체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정보식별에서의 무질서와 불합리를 막고 국가관리와 경제활동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체계를 통하여서만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하여야 한다.

정보식별체계의 관리운영은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의 사업내용)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은 다음의 사업을 맡아한다.

1. 정보식별부호의 사용목적에 따르는 부문별, 단위별사용범위와 사용방식을 규정한다.
2.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의 기술적호환성을 보장한다.

3.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과 관련한 기술연구, 기술교류, 기술봉사를 진행한다.

제6조 (정보식별부호의 생성단위)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에 정보식별부호생성단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은 정보식별부호생성단위를 등록하고 생성서고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보식별부호의 생성은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생성서고를 발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제7조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정보식별부호를 생성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신청문건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야 한다.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받은 정보식별부호를 정확히 생성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식별부호에 해당하는 정보입력)

정보식별부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보를 입력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제9조 (정보식별부호의 인쇄)

정보식별부호의 인쇄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정보식별부호인쇄단위는 인쇄에 필요한 설비, 자재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정보식별부호매체의 부착)

정보식별부호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물품에 정보식별부호매체를 부착시킬수 있다.

수입상품과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같이 사람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품을 비롯하여 정해진 상품에는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시켜야 한다.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시켜야 할 상품품목은 내각이 정한데 따른다.

제11조 (위조방지용 정보식별부호매체의 특수조건구비)

위조방지를 위한 정보식별부호매체로는 특수재질의 재료만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2차원상품식별부호의 표기)

제품상표에 2차원상품식별부호를 표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으로부터 2차원상품식별부호를 제정받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식별수단의 의무적구비)

정보식별부호에 들어있는 정보는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통하여 식별한다.
정보식별부호매체를 부착시킨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봉사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규격의 준수)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하거나 식별수단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등록, 보관)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하고 생성한 정보식별부호와 그에 대응되는 정보를 3중으로 등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요금)

정보식별부호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정보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17조 (정보식별부호리용분야의 확대)

정보식별부호는 상품, 령수증을 비롯한 물품과 문건의 위조방지,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의 보호, 각종 사용자식별,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부호리용분야를 적극 늘여나가야 한다.

제18조 (감독통제)

정보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19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20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승인되지 않은 단위가 정보식별부호를 인쇄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정보식별부호를 비법적으로 만들어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3.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 되어있는 상품에 매체를 부착시키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4. 특수재질의 재료를 리용하지 않아 위조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5.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갖추지 않고 봉사하였을 경우 20만~50만원
6.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 또는 식별수단의 생산에서 국가규격을 어겼을 경우 10만~50만원

제21조 (중지처벌)

이 법 제20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22조 (몰수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돈과 물품, 설비를 몰수한다.

1. 정보식별부호리용질서를 어긴 행위로 비법소득을 얻었을 경우
2. 정보식별부호를 비법적으로 인쇄하였을 경우
3.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 되어있는 상품에 매체를 부착시키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제23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으로부터 생성서고를 발급받지 않고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한 경우
2.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이 규정한 사용범위와 사용방식을 어겼을 경우
3. 정보식별부호에 따르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4. 승인되지 않은 단위가 정보식별부호를 인쇄하였을 경우
5. 정보식별부호를 비법적으로 만들어 리용하였을 경우
6. 정보식별부호매체부착질서를 어겼을 경우
7. 특수재질의 재료를 리용하지 않아 위조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8.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갖추지 않고 봉사하였을 경우
9. 국가규격에 맞지 않게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하거나 식별수단을 생산하였을 경우
10. 정보식별부호와 그에 대응되는 정보를 등록,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0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주체93(2004)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6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제1조 (중앙은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화폐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발권은행)

중앙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권은행이다.

국가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금융사업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3조 (중앙은행권과 화폐류통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는 중앙은행권이다.

국가는 통화조절과 화폐류통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폐의 가치와 환율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제4조 (금융사업의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금융사업은 중앙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국가는 금융사업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 (금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금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 (금융분야의 교류와 협조)국가는 금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특수경제지대에서 금융사업)

특수경제지대에서 금융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제9조 (중앙은행의 구성)

중앙은행은 총재와 약간명의 부총재들로 구성한다.

총재는 중앙은행을 대표하며 중앙은행전반사업을 지도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사업을 도우며 총재가 없을 경우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중앙은행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10조 (은행리사회의 조직)

국가는 금융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로 은행리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은행리사회는 리사장, 리사와 해당 기관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은행리사회의 실무보장은 중앙은행이 한다.

제11조 (은행리사회 리사장)

은행리사회의 리사장은 중앙은행총재가 한다.

리사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내각앞에 책임진다.

제12조 (중앙은행의 소재지)

중앙은행의 소재지는 평양시이다.

제13조 (중앙은행지점, 임무, 권한)

중앙은행은 필요한 지역에 지점을 조직한다.

지점은 해당 지역의 통화조절과 화폐유통을 조직하고 금융사업을 감독한다.

지점은 사업정형을 정기적으로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은행일군의 양성)

중앙은행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일군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제3장 중앙은행권

제15조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 《원》이다.

중앙은행권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6조 (중앙은행권의 제조)

중앙은행권의 제조규모는 국가가 정한다.

중앙은행은 정해진 규모안에서 중앙은행권의 제조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7조 (주화, 기념화폐의 발행)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주화, 기념화폐를 발행할수 있다.

주화, 기념화폐의 형식과 종류, 발행규모는 내각이 정한다.

제18조 (중앙은행권의 교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중앙은행권을 정히 다루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유통시킬수 없게 된 중앙은행권을 제때에 회수하여 새 중앙은행권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 방법)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해당 기관은 정해진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0조 (중앙은행권의 소각)

중앙은행권의 소각은 화폐소각위원회의 감독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중앙은행권의 보관)

중앙은행권의 보관은 안전이 담보된 금고에만 할수 있다.

금고관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22조 (중앙은행권의 위조, 변조금지)

중앙은행권은 위조하거나 변조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위조, 변조된 중앙은행권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제때에 중앙은행에 바쳐야 한다.

제23조 (중앙은행권의 대외반출금지)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권의 견본, 유통이 정지된 중앙은행권 같은 것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제4장 화폐유통조직

제24조 (화폐발행계획의 작성)

중앙은행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폐발행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화폐발행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화폐의 발행)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에서 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된 화폐를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외화, 귀금속, 증권의 팔고사기 같은 방법으로 유통에 내보내거나 유통과정에서 회수한다.

제26조 (통화조절)

통화조절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화폐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조절사업을 시기별, 지역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제조직)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결제를 신속정확히 조직하여야 한다.

결제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제28조 (금융기관의 기부)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이 부족되는 금융기관에 대부를 준다.

대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대부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29조 (화폐의 팔고사기)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을 조절하고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금융기관도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제30조 (기준환률, 리자률의 제정 및 조정)

기준환률, 리자률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환률, 리자률범위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환률과 리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 (귀금속의 관리)

귀금속의 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 은 같은 귀금속의 장악, 보관, 리용, 판매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귀금속의 대외판매는 중앙은행이 위임한 금융기관도 할수 있다.

제32조 (예금돈자리의 개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사이의 결제, 지불준비금의 적립 같은것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채권발행의 등록관리)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채권의 발행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채권발행을 승인받은 기관은 채권발행등록보고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발행된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할수 있다.

제34조 (고정재산의 장악)

중앙은행은 국가의 고정재산을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장악은 부문별, 현물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융정보의 교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 금융,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정보 교환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금융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며 제때에 중앙은행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금융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의 제정)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회계항목과 계산 및 결산방법을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종합된 금융회계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화폐류통자료의 종합)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실태에 대한 통계종합, 조사, 분석, 예측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종합된 자료는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고대리)

중앙은행은 국고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의 연계밑에 국가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며 지출은 수입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39조 (기타 금융사업)

중앙은행은 내각이 승인한 범위의 금융사업 할수 있다.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업무활동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금융기관의 설립승인)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기관은 설립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설립이 승인된 금융기관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 (금융기관의 해산, 통합)

해산하거나 통합하려는 금융기관은 해산 또는 통합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하며 청산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금융기관의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손해보상)

금융사업을 무질서하게 조직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리익을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5조 (벌금)

승인없이 금융사업을 진행하여 국가의 화폐유통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6조 (자격급수의 박탈)

중앙은행에 해당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금융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예산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7호로 채택

제1장 지방예산법의 기본

제1조 (지방예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예산법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지방예산제의 실시원칙)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의 수입으로 꾸려나가는 사회주의예산제도이다.

국가는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지방살림살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지방예산의 편성원칙)

지방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서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지방예산의 수입원칙)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 것은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지방들에서 모든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부단히 늘이도록 한다.

제5조 (지방예산의 지출원칙)

지방예산지출을 바로하는 것은 자금을 아껴쓰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지방예산자금을 정해진 항목에 따라 정확히 지출하도록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범위)

이 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예산제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제2장 지방예산제의 실시

제7조 (지방예산제의 실시단위)

지방예산제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실시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예산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8조 (지방예산제실시의 기본단위)

지방예산제실시의 기본단위는 시(구역), 군이다.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농촌경리와 지방공업을 비롯한 자기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장하면서 지방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제9조 (지방예산제실시의 종합적단위)

도(직할시)는 지방예산제실시의 종합적단위이다.

도(직할시)예산단위에는 도(직할시)급기관과 그에 소속된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예산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속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안의 지방경제, 문화건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해당 중앙기관과의 연계밑에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10조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지켜야 할 요구)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살림살이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방이 책임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2. 지방예산수입에서 웃기관에 바칠 납부금을 먼저 납부한 다음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국가의 리익과 지방의 리익을 옹게 결합시키며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국가에 리익을 준 지방에 물질적우대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예산의 구분)

지방예산은 시(구역), 군예산과 도(직할시)자체예산, 도(직할시)종합예산으로 나눈다.

제12조 (시, 군예산)

시(구역), 군예산은 시(구역), 군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이다.

시(구역), 군예산수입은 시(구역), 군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바치는 예산납부금과 시(구역), 군안의 중앙과 도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바치는 예산납부금으로 이루어진다.

시(구역), 군예산지출은 시(구역), 군예산단위에 공급하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인민경

제사업비,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 국가관리비, 우대기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13조 (도자체예산)

도(직할시)자체예산은 도(직할시)가 직접 맡아보는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이다.

도(직할시)자체예산수입은 도(직할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바치는 예산납부금으로 이루어진다.

도(직할시)자체예산지출은 도(직할시)예산단위에 공급하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인민경제사업비,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 국가관리비, 우대기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 (도종합예산)

도(직할시)종합예산은 도(직할시)안의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이다.

도(직할시)종합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시(구역), 군예산, 도(직할시)자체예산의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진다.

제15조 (지방예산의 집행)

시(구역), 군예산의 집행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자체예산과 도(직할시)종합예산의 집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지도밑에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가 한다.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제16조 (지방예산편성의 기초)

지방예산의 기초는 인민경제발전계획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예산편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지방예산편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해나가면서도 국가에 리익을 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지방예산수입으로 필요한 지출을 보장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3. 웃기관에 바칠 계획된 납부금을 의무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수입으로 웃기관에 바칠 납부몫과 자체의 지출을 보장할수 없을 경우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수입과 지출을 맞출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적시책을 원만히 실시하며 국가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하면서도 예산자금을 극력 절약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 군예산의 편성)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시(구역), 군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종합한 다음 자기 지역안의 중앙과 도(직할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가 시(구역), 군예산에 바치는 예산납부금계획을 포함하여 시(구역), 군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9조 (도자체예산의 편성)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을 종합하여 도(직할시)자체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0조 (도종합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맞물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자체예산과 시(구역), 군예산을 합쳐 도(직할시)종합예산으로 편성한 다음 국가예산에 맞물려야 한다.

제21조 (지방예산의 심의, 승인)

지방예산은 최고인민위원회와 해당 지방인민회의가 심의, 승인한다.

제22조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의 시달)

지방인민위원회는 승인된 지방예산에 따라 해당 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을 내려보내야 한다.

제23조 (지방예산의 조절승인)

지방인민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된 지방예산을 조절하려는 경우 중앙재정지도기관 또는 도인민위원회의의 합의를 거쳐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없이 지방예산을 조절할수 없다.

제4장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의 보장

제24조 (지방예산수입과 지출보장의 기본요구)

지방예산수입과 지출보장을 바로하는 것은 지방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수입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해마다 정해진 인구 한사람당수입액을 부단히 늘이며 벌어들인 자금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방공업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자체의 원료와 자재, 동력으로 생산을 확대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지방원료에 의한 생산액 비중을 60%이상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업발전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알곡과 고기, 남새, 과일, 누에고치 같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먹는 문
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지방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제27조 (수산업발전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수산업과 양어를 발전시켜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
의 수요를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제28조 (상품공급, 사회급양, 편의봉사사업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상품공급과 사회급양,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고 봉사료수입을 늘여 주민
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료수입금의 비중은 20~30%이상 되어야 한다.

제29조 (문화후생시설의 운영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공원, 유원지, 문화회관, 극장, 영화관, 경기장 같은 것을 잘 꾸리고 그 운
영을 개선하며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제30조 (부동산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의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고 부동산사용료납부체계를 엄격히 세
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부동산사용료를 정확히 받아들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여
야 한다.

제31조 (경영활동의 개선에 의한 예산수입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영활동을 개선하여 원가와 류동비지출을 극력
줄이고 순소득을 부단히 창조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제32조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의 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을 계획에 따라 선후차를 옳게 선정하고 공급하
여야 한다.

계획이 없는 대상에는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을 공급할수 없다.

제33조 (지방경제발전, 과학기술발전,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자금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따로 지출하여 지방공업과 농업생산을 늘
이며 과학기술발전과 도시경영, 국토관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인민적시책과 사회문화사업에 대한 자금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
적시책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부족되는 자금의 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본건설자금과 인민적시책비 같은 일부 자금을 지방

예산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중앙과 도예산에 자금계획을 맞물려 필요한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36조 (경비예산자금의 절약)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비예산자금을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비예산자금을 류용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우대기금, 상금기금의 리용)

지방인민위원회는 우대기금, 상금기금을 중앙 또는 도예산에 바치는 납부금계획과 지방예산 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한 정도에 따라 분기마다 적립하고 쓸수 있다.

우대기금과 상금기금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지방자체의 실정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지방예산사업지도기관)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지방예산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사업지도)

지방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지방예산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예산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방인민위원회와 합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제40조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는 재정적특전을 준다.

제41조 (지방예산의 집행총화)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집행정형을 월, 분기마다 총화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년간총화는 지방인민회의에서 한다.

제42조 (분기 및 년간종합결산서의 제출)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및 년간종합결산서를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43조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와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와 감독통제기관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제44조 (연체료의 부과)

국가예산납부금과 지방예산에 바치게 된 납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제4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중앙예산 또는 지방예산에 바칠 납부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2. 중앙예산수입금을 지방예산수입금으로 옮겨놓았을 경우
3.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우대기금, 상금기금을 부당하게 적립하였거나 지출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지방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6. 자금을 사장, 류용, 낭비하였을 경우

제46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류통법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5호로 채택
주체92(2003)년 6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89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제1장 화폐류통법의 기본

제1조 (화폐류통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류통법은 현금과 무현금류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폐류통을 공고히 하고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류통화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류통화폐는 중앙은행권이다.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 《원》이며 보조단위는 《전》이다.

국가는 화폐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자주적화폐제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조 (화폐류통조직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폐류통은 현금류통과 무현금류통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현금류통과 무현금류통을 특성에 맞게 조직하며 그것을 옹계 결합시켜나가기도록 한다.

제4조 (현금류통원칙)

현금류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현금류통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며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 (무현금류통원칙)

무현금류통을 바로 조직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물자류통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간, 지역간 연계가 밀접해지는데 따라 무현금결제 범위를 확대해나가기도록 한다.

제6조 (화폐의 순환원칙)

상품보장은 화폐류통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상품생산을 늘여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고 그 순환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제7조 (다른 나라 화폐의 류통금지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는 다른 나라의 화폐를 류통시킬수 없다.
국가는 중앙은행권과 다른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제8조 (중앙은행권의 관리원칙)

국가는 중앙은행권의 관리를 바로하며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 은행과 맺은 협약에 따라 중앙은행권의 건본, 류통이 정지된 중앙은행권 같은것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제9조 (화폐류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화폐류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화폐류통)

특수경제지대에서의 화폐류통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현금류통

제11조 (현금류통조직)

현금류통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의 상품거래 같은데 적용하는 화폐류통형태이다.
중앙은행은 현금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12조 (현금계획의 작성)

현금계획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과 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지역별, 항목별로 세운다.
중앙은행은 현금계획을 세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현금계획의 집행)

중앙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계획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금계획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제14조 (현금류통의 조절)

중앙은행은 현금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여 적당한 현금류통량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금류통의 조절은 현금계획범위에서 조절화폐로 하여야 한다.
현금계획을 초과하여 현금류통을 조절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유가증권의 발행)

중앙은행은 현금류통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현금수입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판매, 사회급양, 편의봉사수입 같은 것을 적극 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계획과 상품류통액계획은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현금의 수입)

지방정권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은 수입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현금을 자체의 수입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현금의 입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된 현금을 제때에 중앙은행기관에 입금시켜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입금기간을 정하고 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 (현금의 지불)

현금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지불신청서를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현금지불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받은 현금은 정해진 항목과 기준대로 써야 한다.

제20조 (현금지불날자)

중앙은행기관은 시기별현금지불의 균등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지불날자를 정해주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소의 노동보수자금지불날자는 직장별로도 정할수 있다.

제21조 (현금의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정형을 정확히 등록하고 현금을 안전성이 보장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금고관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22조 (현금보유한도의 규정)

중앙은행기관의 현금보유한도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금보유한도는 해당 중앙은행기관이 정한다.

제23조 (현금보유한도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보유한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보유한도를 넘는 현금은 중앙은행기관에 입금시키거나 저금시켜야 한다.

제24조 (유휴화폐의 동원)

지방정권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은 저금, 보험사업을 균중적으로 조직하여 유휴화폐를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제25조 (저금의 비밀과 신용보장)

공민은 저금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저금의 비밀과 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현금의 수송)

중앙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을 안전하게 날라야 한다.
현금수송을 의뢰받은 교통운수기관은 현금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수송을 무장경비성원의 호송밑에 할수 있다.

제27조 (돈의 교환, 회수)

중앙은행은 현 돈과 못쓰게 된 돈을 제때에 교환, 회수하여야 한다.
공민은 돈을 정히 다루어야 한다.

제3장 무현금류통

제28조 (무현금류통조직)

무현금류통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생산수단거래 같은데 적용하는 화폐류통형태이다.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무현금류통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29조 (무현금결제)

무현금류통은 무현금결제를 통하여 실현된다.
무현금결제는 중앙은행기관이 한다.

제30조 (돈자리의 개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은행기관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돈자리도 둘수 있다.

제31조 (돈자리의 승인)

돈자리를 두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돈자리승인신청서를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돈자리승인신청서를 검토하고 돈자리를 승인해주어야 한다.

제32조 (계획과 계약에 따르는 물자의 대금결제)

중앙은행기관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류통되는 물자의 대금결제를 바로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는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제33조 (화폐자금의 지불 및 청구)

화폐자금을 지불 또는 청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제문건을 만들어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결제문건을 검토하고 돈자리에 화폐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결제하여야 한다.

제34조 (환자결제)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점사이의 환자결제를 조직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결제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예산의 결제)

중앙은행기관은 국가예산집행과 관련한 결제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제는 예산소속에 따라 하며 지출은 수입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36조 (결제방법의 개선)

중앙은행기관은 물자류통에 자금류통을 접근시킬수 있도록 결제환절을 줄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제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장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화폐류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적은 자금으로 물자류통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자금의 지불과 리용에 대한 지도)

중앙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생활비자금을 비롯한 로동보수자금을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지불하며 화폐자금을 정확히 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화폐류통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 (금액의 회수, 손해보상)

화폐자금을 류용, 랑비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 (금액의 국고납부, 은행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시키거나 은행거래를 중지시킨다.

1.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어기고 물자거래를 하였을 경우
2.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을 어기고 물자거래를 하였을 경우
3. 계획밖에 건설을 벌려놓았을 경우
4.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기하여 자금을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제4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화폐류통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

주체97(2008)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39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7호로 수정보충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제1조 (회계검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은 회계검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재정규률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회계검증의 정의와 체계확립)

회계검증은 경영회계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회계검증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3조 (회계검증의 분류)

회계검증에는 정기검증과 비정기검증이 있다.

정기검증에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결산검증이, 비정기검증에는 조업검증, 해산 및 통합검증, 인계인수검증, 대외협조검증이 속한다.

제4조 (회계검증기관)

회계검증은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 해당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5조 (회계검증원)

회계검증원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회계검증원의 자격은 해당 자격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준다.

제6조 (회계검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회계검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회계검증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회계검증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8조 (회계검증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회계검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회계검증기관과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검증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제10조 (회계검증의 대상규정과 관할준수)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을 바로 정하는 것은 회계검증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의 대상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관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1조 (회계검증의 대상)

회계검증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
2. 기관, 기업소, 단체가 조업하거나 해산 및 통합되거나 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조동되거나 교체될 경우 해당 시기의 회계결산서
3.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협조한 물자나 자금의 리용에 대한 회계결산서
4. 회계결산서작성의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

제12조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관할)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그에 소속된 해당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회계검증을 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도 할수 있다.

제13조 (도 및 직할시회계검증기관의 관할)

도회계검증기관은 도소재지안에 있는 중앙 및 도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직할시회계검증기관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중앙 및 직할시예산 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도 할수 있다.

제14조 (시, 군회계검증기관의 관할)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중앙 및 도, 시(구역), 군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그러나 도소재지의 시회계검증기관은 자기 지역안에 있는 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제15조 (해당 회계검증기관의 관할)

무력기관 같은 해당 기관과 그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은 그 부문의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제16조 (회계검증질서의 준수)

회계검증절차와 방법을 지키는 것은 회계검증을 편향없이 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회계검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의 신청과 검증, 검증결과의 처리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7조 (회계검증의 장소)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관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할수도 있다.

제18조 (회계검증의 신청)

회계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증형태에 따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재정회계책임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한다.

제19조 (결산검증의 신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기에 따라 분기, 반년, 연간결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결산검증의 신청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결산검증을 받은 회계결산서를 해당 상급기관에 내야 할 기일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결산검증방법)

결산검증은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검증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수행표, 국가예산납부의무수행표, 수입과 지출 및 분배대조표, 원가결산표, 채권, 채무상태결산표 같은 것을 정확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업검증신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새로 창설되었거나 개건현대화되어 조업할 경우에는 조업검증을 받는다.

조업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업하기 15일전에 조업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업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신청할수 있다.

제22조 (조업검증방법)

조업검증은 조업과 관련하여 리용한 재산과 채권채무상태, 조업준비로력비 같은 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업준비기간에 생산하여 실현한 시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문건도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23조 (해산 및 통합검증신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거나 통합될 경우에는 해산 및 통합검증을 받는다.

해산 및 통합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산되었거나 통합된 날부터 15일안으로 해산 및 통합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산 및 통합검증을 받지 않고서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제24조 (해산 및 통합검증방법)

해산 및 통합검증은 해산 및 통합된 시기의 재산과 채권, 채무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산 및 통합되기 전 분기회계결산서와 해산 및 통합통지서에 반영된 내용을 대조하여 검토확인한다.

제25조 (인계인수검증신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조동되거나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검증을 받는다.

인계인수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안으로 인계인수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인계인수검증방법)

인계인수검증은 인계인수를 하기 전까지의 재산과 채권, 채무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계인수검증에서 미결건이 있을 경우에는 실사표를 따로 작성하고 그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혀 검증문건에 첨부한다.

제27조 (대외협조검증)

대외협조검증은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으로부터 협조를 받은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나 자금의 리용상태를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회계결산서에 반영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검증과 관련한 현지료해)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 관련한 현지료해를 하며 회계결산서작성의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에 대한 계산검증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에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회계검증기간)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증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30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회계문건을 위조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 (회계검증결과의 처리)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정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것을 고칠데 대한 의견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기된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고 그 정형을 회계검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2조 (위법행위에 대한 제기)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정에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검증보고서의 작성)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검증내용, 검증과정에 제기된 문제, 회계검증원의 견해, 총체적인 평가, 회계검증원의 이름과 수표, 회계검증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34조 (회계검증보고서의 처리)

회계검증보고서는 회계검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회계결산서에 첨부하며 해당회계결산서에는 검증도장을 찍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증도장을 찍은 회계결산서에 회계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을 받은 회계결산서는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35조 (회계검증과 처리에 대한 의견의 제기)

회계검증과 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제기받은 의견을 10일안으로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재검증)

회계검증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었거나 그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검증을 한다.

재검증은 회계검증을 한 기관의 상급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검증을 한 기관이 재검증을 할수도 있다.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회계검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총화)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사업에 대하여 분기에 1차 총화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회계검증원의 의무)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며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직권을 람용하거나 비법적인 사실을 묵인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회계검증사업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2조 (자격급수강급, 박탈)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1. 회계검증신청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하여 회계검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회계검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4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회계검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주체92(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9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7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 보충

제1장 회계법의 기본

제1조 (회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회계의 정의와 회계원칙)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회계의 분류)

회계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나눈다.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한다.

제4조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원칙)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돈계산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 (회계연도와 회계화폐)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제6조 (회계업무의 정보화할데 대한 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제7조 (회계연구사업,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회계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회계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제8조 (회계분야의 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회계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회계를 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회계계산

제10조 (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자금의 변동을 일상적으로 기록계산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산단계에 따르는 회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경영회계계산은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 저장품, 노동보수, 비용지출과 원가, 생산물, 상품, 물자, 화폐재산, 채권채무, 자금수입과 지출, 경영수입과 지출 및 분배,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지방회계계산은 지방재정기관이 한다.

지방재정기관은 지방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문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부문회계계산은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부문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금융회계계산은 은행기관과 보험기관이 한다.

은행기관은 무현금결제업무, 신용업무, 발권 및 현금출납업무, 대외결제 및 신용업무에 대하여, 보험기관은 보험재정상태와 보험업무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중앙회계계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 외화수지, 국제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계산단계의 구분)

회계계산은 경상계산과 결산으로 나누어 한다.

경상계산은 경제거래가 생길 때마다, 결산은 주기에 따라 한다.

제17조 (회계문건의 분류)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와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한다.

회계문건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 (경상계산의 기초)

경상계산은 시초서류 또는 아랫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거나 경제거래내용과 맞지 않는 시초서류, 회계보고문건은 경상계산의 기초자료로 쓸수 없다.

제19조 (경상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을 종합계산과 세분계산, 시순식계산과 체계식계산, 현물계산과 금액계산을 결합하여 하여야 한다.

경상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제20조 (경상계산결과의 검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상계산결과검토는 시순식계산자료와 체계식계산자료, 종합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틀린 자료는 그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쳐야 한다.

제21조 (회계결산의 근거)

회계결산은 경상계산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에 앞서 빠진 거래를 등록하고 미결거래를 청산하며 재산실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결산의 주기)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경영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회계결산서의 제출기관)

회계결산서의 제출은 다음의 기관에 한다.

1. 경영회계결산서는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2. 지방회계결산서는 상급기관에 한다.
3. 부문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에 한다.
4. 금융회계결산서는 해당 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5. 중앙회계결산서는 내각에 한다.

제24조 (회계결산서의 효력)

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비준받지 않은 회계결산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장 회계분석

제25조 (회계분석의 기본요구)

회계분석을 바로하는 것은 경제실태를 파악하고 재정적타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분석의 내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금보장과 리용의 효과성, 경영수지, 예산집행정형, 화폐류통, 외화수지, 국제수지 같은 것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분석의 근거)

회계분석은 회계결산서에 기초하여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분석에 경상계산자료, 계획 및 통계자료, 업무계산자료, 기술경제적기준자료 같은것도 리용할수 있다.

제28조 (회계분석방법)

회계분석은 대비분석, 분류분석, 연관분석의 방법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석목적에 맞게 그 수법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 (회계분석자료의 종합과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이 끝나면 분석자료를 종합하여야 한다.
분석자료는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재정적타산과 생산 및 재정총화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분석의 주기)

회계분석주기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제4장 회계검증

제31조 (회계검증의 중요성, 당사자)

회계검증은 경영회계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회계검증은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과 해당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32조 (회계검증대상)

회계검증은 경영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검증에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회계서류도 볼수 있다.

제33조 (회계검증장소)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관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에 나가 할수도 있다.

제34조 (회계검증신청)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간에 회계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35조 (회계검증기간의 준수, 검증방법)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에 검증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은 회계결산서의 표와 자료의 정확성, 연관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 (회계검증결과의 확인과 별견된 결함의 처리)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결과를 제때에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검증과정에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고치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주어야 한다.

제37조 (회계검증의 의무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을 받은 회계결산서는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38조 (국가수수료)

회계검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국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국가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의 의무)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계산, 분석, 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회계문건의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문건을 편찬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화재, 자연재해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문서고나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 (회계일군의 자격과 자질향상)

회계사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일군을 꾸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 (회계사업의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하여야 한다.
회계일군은 회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계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 (회계사업의 인계인수)

회계사업에 대한 인계인수는 회계일군이 임명, 해임, 동원, 병치료 같은 원인으로 회계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다.
인계인수는 제3자의 립회밀에 서면으로 한다.

제45조 (감독통제기관)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사업정지, 벌금부과, 손해보상)


회계를 잘못하여 경제적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 (자격급수강급, 박탈)

회계문건을 제때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검정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경제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회계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회계사업에 간섭하거나 또는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 같은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

주체87(1998)년 6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제1조 (공업도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 공업도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도안과 그 분류)

공업도안은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 장식 같은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 것이다.

공업도안에는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약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 같은 제품도안과 장식도안이 속한다.

제3조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원칙)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은 공업도안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공업도안등록의 심의원칙)

공업도안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 것은 공업도안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공업도안등록의 심의체계를 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공업도안권의 보호원칙)

공업도안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소유한 공업도안권을 보호한다.

제6조 (공업도안의 갱신원칙)

국가는 공업도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제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공업도안을 부단히 갱신하도록 한다.

제7조 (공업도안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공업도안사업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제8조 (공업도안등록신청의 기본요구)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 것은 공업도안등록심의를 제때에 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창작한 공업도안에 대한 등록신청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제출)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도안등록신청을 공동으로 하려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된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제10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작성방법)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은 공업도안별로 만든다. 그러나 구조작용상 서로 결합된 제품에 대한 공업도안은 하나의 신청문건으로 만들수 있다.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에는 도안명, 도안의 분류, 신청자 및 창작가의 이름 같은 것을 밝히며 도안과 도안설명서, 평정서를 첨부한다.

제11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은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텔렉스, 팩스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여 낼수도 있다.

제12조 (다른 나라 법인의 공업도안등록신청)

우리 나라에 공업도안을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결합퇴치)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에 결합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 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안에 결합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14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공업도안등록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접수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공업도안등록신청날자)

공업도안등록의 신청날자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정해진 기일에 고쳤을 경우에도 공업도안등록의 신청날자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 (공업도안등록신청의 우선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았을 경우 해당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이 경우 우선권을 증명하는 문건을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은 날부터 3개월안에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다른 나라 법인의 우선권의 효력)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 나라 공업도안등록기관의 해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다른 나라에 하는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공업도안을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도안등록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내야 한다.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제19조 (공업도안등록심의기간)

공업도안등록의 심의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업도안등록기간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업도안등록심의자료의 요구)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공업도안등록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할수 없는 공업도안)

다음의 도안은 공업도안으로 등록할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도안
2. 이미 공개되어 사용하고있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도안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은 도안

4. 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것의 도안
5.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도안
6. 경제적효과성과 실용예술성, 생산도입가능성이 없는 도안

제22조 (공업도안등록심의)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업도안등록의 심의결과는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공업도안등록증의 발급)

등록이 결정된 공업도안은 국가공업도안등록부에 등록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공업도안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등록된 공업도안은 공업도안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4조 (등록된 공업도안에 대한 의견제기)

등록된 공업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에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공업도안등록의 부결에 대한 재심의제기)

공업도안등록의 부결에 대하여 의견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 것을 제기할수 있다.

제26조 (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제기)

공업도안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비상설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제27조 (공업도안권보호의 기본요구)

공업도안권을 보호하는 것은 공업도안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공업도안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업도안권의 소유자)

공업도안권은 공업도안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받은 공업도안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29조 (공업도안권소유자의 권리)

공업도안권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권
2. 등록된 공업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등록된 공업도안의 취소권

제30조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권양도신청문을 만들어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도안권의 양도는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공업도안의 사용허가)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공업도안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사용을 허가하려 할 경우 계약을 맺고 공업도안사용허가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2조 (공업도안에 따르는 제품의 질에 대한 책임)

공업도안사용을 허가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공업도안사용을 허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수 있다.

제33조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의 사용허가금지)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을 허가할수 없다.

제34조 (다른 나라에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의 허가)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을 허가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은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다.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라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을 5년씩 두 번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도안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낸다.

제36조 (공업도안권보호기간의 연장)

공업도안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그 보호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업도안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수도 있다.

제37조 (공업도안등록의 변경)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에 이름, 주소 같은 것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도안등록변경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변경내용을 국가공업도안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업도안등록의 취소)

공업도안등록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등록취소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업도안등록증도 내야 한다.

제39조 (공업도안권효력의 상실)

등록된 공업도안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그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공업도안을 등록한 날부터 2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업도안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공업도안창작을 장려하며 공업도안권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 (공업도안지도기관의 임무)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공업도안지도기관이 한다.

공업도안지도기관은 공업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업도안과 관련한 사항의 공개)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의 등록, 보호기간연장,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과 공업도안등록신청자의 이름, 주소변경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 (공업도안사업료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공업도안사업과 관련한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4조 (공업도안의 창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도안을 창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5조 (공업도안소유권과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공업도안을 승인없이 사용하거나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허가질서를 어기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공업도안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질서를 지키고 공업도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 (손해보상, 몰수)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생산한 제품을 몰수한다.

제48조 (사용중지, 등록취소)

승인없이 등록된 공업도안을 사용하거나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허가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공업도안등록을 취소시킨다.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공업도안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0조 (분쟁해결)

공업도안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기관, 비상설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이나 비상설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주체77(1988)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6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7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1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제1조 (과학기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 심의와 보급,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과학기술인재관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과학기술중시원칙)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전반적과학기술사업에서 비약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도록 한다.

제3조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적립장구현원칙)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조 (핵심기초기술, 기초과학, 기술공학발전원칙)

국가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쏟으면서 기초과학과 중요부문 기술공학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5조 (최신과학기술에 의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제6조 (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의 배합원칙)

국가는 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한다.

제7조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원칙)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한다.

제8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원칙)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정연한 과학기술학습체계를 세워 전체 인민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기술기능수준을 소유하도록 한다.

제9조 (과학기술잠재력의 동원원칙)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직동원하도록 한다.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제10조 (과학기술발전계획화사업의 기본요구)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 전략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학기술발전전략의 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방향과 도달목표, 실행방도를 밝힌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을, 해당 중앙기관은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부문별과학기술발전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제12조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의 시달)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과학 기술발전 계획작성지도서를 만든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3조 (과학기술발전계획 및 과제의 분류)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수행기간에 따라 전망계획과 당해연도 계획으로, 과학기술발전과제는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국가과제와 기관, 기업소과제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4조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작성하여

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는 해당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학기술발전의 총적목표와 년차별목표, 소요조건, 기술경제적효과성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과학기술발전 당해연도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한 국가과제를 기본으로 하는 주문과제, 계약과제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과제를 배합하는 원칙에서 과학기술발전 당해연도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심의비준, 시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해당 과학기술심의를등록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심의회에서 통과된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검토하고 보장조건을 정확히 맞물림한 다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7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조절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추가 또는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과학기술 심의를등록기관과 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등록, 실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고 월별, 분기별, 항목별로 실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의 확인, 평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별, 분기별, 항목별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을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과학기술발전사업비의 공급)

재정은행기관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은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계획실행정형과 함께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항목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제3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제22조 (과학기술연구개발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는 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대상과 목표를 바로 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은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을 조직하고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있는 핵심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첨단돌파전을 벌려 자기 단위를 대표할수 있는 한가지이상의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24조 (응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응용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초과학의 연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은 기초과학연구기관을 조직하고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원리적, 방법론적문제와 세계적으로 풀지못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6조 (공동연구, 협동연구의 조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대상의 규모와 과학기술적내용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 (연구단위의 조직운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요과학기술부문에서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게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단위를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28조 (과학기술연구력량의 집중)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대상을 최대한 다그칠수 있게 과학기술연구기관과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29조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을 새로 조직하거나 변경, 해체하려는 경우 중앙과학

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기술혁신운동)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에게 기술혁신 과제를 주고 발명, 창의고안이 많이 나오게 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형식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을 조직할수 있다.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제32조 (과학기술심의, 보급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의 심의와 보급은 새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과 건설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연구개발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조직)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에 비상설로 다음의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을 조직한다.

1.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는 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 발명심의회위원회, 기술수출입심의위원회
2.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그 아래 공장, 기업소에는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3. 과학, 교육지도기관에는 과학심의회위원회
4.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에는 과학평의회

제34조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임무)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과제와 그 실행정형,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성과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 중요기술개선, 현대화대상을 심의한다.
2. 발명심의회위원회는 발명 및 특허를 심의한다.

3. 기술수출입심의위원회는 합영, 합작, 공동연구, 단독기업창설, 기술수출입대상을 심의 평정한다.
4.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그 실행정형, 과학기술성과를 심의하고 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대책을 세운다.
5. 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평의회는 기관, 기업소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그 실행정형, 과학연구성과를 심의하고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학술적지도를 한다.

제35조 (과학기술의 심의)

과학기술심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제기된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심을 받지 않은 과학기술은 선전, 보급, 류통, 도입, 수출입할수 없다.

제36조 (과학기술성과의 등록)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과학기술심에서 통과된 과학기술성과를 등록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7조 (대외과학기술정보자료의 심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정보자료를 들여온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자료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부문별, 대상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한다.

제39조 (과학기술자료의 보급)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자료보급단위를 꾸리고 과학기술자료봉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선진과학기술자료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40조 (중요과학기술의 도입)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도입 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도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41조 (주문, 계약에 따르는 과학기술도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성과를 주문과 계약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제5장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제42조 (과학기술과 경제결합의 기본요구)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하여 첨단산업을 창설하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결합시키는 것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과학기술연구사업과 경제지도관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조직진행하도록 한다.

제43조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의 창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성과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어있는 지구에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를 창설운영할수 있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창설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획에 맞물려 실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의 우대)

국가는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의 창설, 운영과 관련하여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세금의 감면 같은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45조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원리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관리를 진행하며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제46조 (전문기술개발단위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기술개발력량을 꾸리고 개발능력을 높이며 력량이 마련되는데 따라 전문기술개발단위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47조 (설계기관의 조직운영)

설계기관은 전문화의 원칙에서 부문별로 조직한다.

설계기관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설계기지를 꾸리고 설계력량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설계방법을 받아들여 설계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자문봉사기관의 조직운영)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문봉사기관을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자문봉사기관은 과학기술정보수집과 봉사, 과학기술지적제품의 소개선전과 류통,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상담과 협조, 기업전략, 경영전략 같은것을 봉사한다.

제49조 (과학기술지적제품의 등록, 관리, 류통)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지적제품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와 류통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지적제품의 등록, 관리, 류통과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50조 (기술관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지령체계를 세우고 기술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건설, 운영에 리용되는 기술수단과 기술공정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하며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51조 (기술개선, 현대화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장, 기업소별로 설비 및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목표와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목표와 기간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개선, 현대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52조 (기술개선, 현대화대상의 심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선, 현대화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공장 또는 설비, 생산공정을 납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기술개선, 현대화 실행 및 확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를 기술과제와 설계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기술개선, 현대화한 설비와 생산공정은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다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적극 벌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발전과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55조 (기업소경영관리평가기준의 제정)

중앙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업소, 단체의 경영관리평가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새 기술연구도입,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와 기술관리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제6장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제56조 (과학기술인재관리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인재의 관리는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그 전도를 좌우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를 계획적으로 키우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과학기술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인재를 비롯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실현을 위한 부문별, 학문별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제58조 (기술자, 기능공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운 대상을 건설하거나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선, 현대화하는데 맞게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59조 (핵심과학기술인재의 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주도해 나갈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며 국내과학기술수상자와 국제과학기술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유능한 과학기술인재의 배치)

해당 기관은 수재양성체계를 거쳤거나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교육을 받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과학기술연구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61조 (과학자, 기술자의 자질제고)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전공분야의 깊은 지식과 창조적인 연구개발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자격급수사정)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적과 실력에 따라 과학자, 기술자의 자격급수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격급수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제63조 (학위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특출한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한 공민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해당 기관은 학위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4조 (원사, 후보원사의 역할제고)

원사, 후보원사는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발전을 학술적으로 주도하며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많이 키워야 한다.

제65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공로평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에게는 공로와 업적에 따라 해당 과학기술상과 명예칭호를 비롯한 표창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거나 선진과학기술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공민에게 상금을 비롯한 물질적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제7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제66조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조건을 잘 보장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과학기술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7조 (과학기술발전자금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부문에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 수 있게 그 규모를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8조 (과학기술연구기지강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실, 실험실, 중간시험공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연구기지를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지장이 없게 꾸려야 한다.

제69조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계획에 맞물려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70조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창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지적창조물에 기초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의 공동리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의 보유 및 리용정

형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72조 (과학자, 기술자의 사회적동원면제)

로동행정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그들을 과학기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73조 (과학자, 기술자의 우대)

과학자, 기술자는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8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74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5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임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기 지역의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76조 (과학행정지도기관의 임무)

과학행정지도기관은 산하 과학연구기관이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학기술연구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그에 대한 학술적 및 과학행정적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과학기술통계지표분석, 년보작성)

중앙통계기관은 과학기술활동과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과학기술통계지표를 바로 정하고 해마다 집계분석하며 과학기술발전에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통계자료에 따라 과학기술활동을 평가하는 과학기술년보를 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78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계기관이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계기관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회와 보급,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9조 (중지사유)

과학기술심의회를 받지 않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선, 현대화하거나 기술을 수출입하여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제80조 (학위, 자격급수박탈사유)

과학연구결과를 과장하고 다른 공민의 저작, 발명, 특허, 창의고안을 표절 또는 침해하여 학위나 자격급수를 사정받았거나 과학기술활동에 제대로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급수와 학위를 강급 또는 박탈한다.

제8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제때에 시달하지 않았을 경우
2.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제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조절변경하였을 경우
3.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미달하였거나 계획실행률을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4.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과학기술발전로력과 자금, 설비, 자재를 다른 사업에 유용하였을 경우
5.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조직, 변경, 해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6. 과학연구사업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과학기술심의회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7.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과학기술을 선전, 보급, 류통, 도입, 수출입하였을 경우
8. 중요 과학기술연구성과 또는 선진과학기술의 도입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
9. 과학기술연구성과를 과장하였거나 망탕 도용하였을 경우
10. 과학자, 기술자 자질향상사업과 자격급수사정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1. 과학자, 기술자의 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를 바로 평가해주지 않았을 경우
12. 과학기술지적제품의 등록, 관리, 류통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3. 기술관리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기술경제적지표를 제때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14.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제82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8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주체109(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6호로 채택

제1장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기본

제1조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성과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며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성과도입은 과학기술성과를 생산과 경영활동에 받아들여 예견된 기술경제적 지표와 효과를 달성하는것이다.
2. 과학기술성과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도입할 수 있는 응용과학기술성과, 발명, 창의고안으로서 과학기술심의회에 심의등록된것이다.
3. 중요과학기술성과는 새로운 공업을 창설하거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으로서 국가계획에 맞물려 도입하는 과학기술성과이다.

제3조 (과학기술성과도입의 계획화원칙)

과학기술성과도입을 계획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이며 과학기술성과를 생산과 경영활동에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제4조 (과학기술성과도입에서 계약준수원칙)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은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중요한 공정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계약을 정확히 맺고 어김없이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 (과학기술성과도입의 과학기술적담보원칙)

과학기술성과도입의 전과정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것은 과학기술성과도입실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제6조 (과학기술성과도입의 장려원칙)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적극 장려하여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과학기술성과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여러가지 특혜와 우대를 적용하도록 한다.

제7조 (군수부문과학기술성과의 이전원칙)

국가는 군수부문의 과학기술성과가운데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대상을 제때에 민수부문에 이전하도록 한다.

제8조 (과학기술성과도입에서 지적소유권의 보호원칙)

국가는 과학기술성과도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9조 (해당 법규의 적용)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실행

제10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구분)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부문 또는 지역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기관, 기업소, 단체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으로 구분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성과도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기본건설계획이나 대보수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항목에 반영하여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1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시기)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국가적인 계획화시기와 단계에 맞추어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히 제기되는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또는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라고 함.)가 자체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시기에 관계없이 작성할수 있다.

제12조 (도입할 과학기술성과의 선정원칙)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전략에 따라 생산과 경영활동에 도입할 과

과학기술성과를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2. 생산정상화와 질제고에 이바지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3. 로력, 에네르기, 원가, 부지를 절약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4. 환경보호에 이바지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5. 선진적이고 실리적이며 실정에 맞는것이여야 한다.

중요과학기술성과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선정한다.

제13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초안의 작성과 제출)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초안의 작성과 제출은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가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선정된 과학기술성과의 도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밝힌 계획초안을 작성하여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심의를 받아 상급기관 또는 국가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기술과제서와 기술설계,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에 대한 기술과제서의 작성)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에 대하여 기술과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술과제서는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심의와 기술과제서심사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기술과제서의 심의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제15조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에 대한 기술설계의 작성)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에 대한 기술설계는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에 기초하여 해당 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작성된 기술설계는 해당 설계심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기술과제서와 기술설계작성에서의 협력보장)

과학기술성과를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아래부터 과학기술성과개발단위라고 함.)은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에 대한 기술과제서와 기술설계의 작성에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해당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시달)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부문 또는 지역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성, 중앙기관 및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계획실행을 위한 보장조건을 정확히 맞물림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해당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

인을 받는다.

제18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등록)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정해진데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실행할수없다.

제19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실행)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계획실행준비와 경제조직사업을 바로하여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단계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0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실행률의 확인, 평가)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실행률에 대하여 단계별로 해당 기관의 확인과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확인 및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실행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실행총화)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평가한다.

제3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

제22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

과학기술성과를 공동으로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을 맺어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23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종류)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는 과학기술성과의 양도 또는 리용허가와 관련한 계약과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자문 및 기술봉사와 관련한 계약 같은것이 속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당사자는 양도 또는 리용허가, 자문 및 기술봉사와 관련한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을 따로따로 맺거나 하나의 계약으로 맺을수 있다.

제24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효력발생)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당사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

진다.

특허의 양도나 리용허가와 관련한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은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25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서에 밝힐 사항)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서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성과
2. 과학기술성과도입의 형식과 내용, 규모
3. 계약리행의 기간과 단계
4. 기술이전의 내용과 방법
5. 계약리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과 검수방법
6. 리득금분배의 절차와 방법
7. 계약위반과 그에 대한 책임관계
8. 과학기술성과도입과정에 창조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권리관계
9. 분쟁해결방법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수정)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합의하여 계약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24조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27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대상에 대한 담보)

과학기술성과개발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대상으로 되는 과학기술성과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담보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성과개발단위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8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리행)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무의 리행과 관련한 비용을 자체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서의 비밀보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 또는 리행과정에 알게 되는 계약상대방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비밀을 부당한 목적에 리용하거나 제3자에게 루설하지 말아야 하다.

비밀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제30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리행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1조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과 기타 계약과의 관계)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의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제3자와 맺는 계약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2조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중개)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을 위해 중개봉사를 받을수 있다.

중개봉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성과자료의 소개와 평가, 계약당사자의 주선같은 봉사를 진행하거나 위임계약에 따라 대리인으로 활동할수 있다.

제4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의 조건보장

제33조 (과학기술성과등록 및 도입자료의 공개)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비밀에 속하는것을 제외한 과학기술성과의 등록 및 도입자료를 서로 교류하고 공유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하는 과학기술성과등록 및 도입자료에는 과학기술성과명, 개발단위, 도입단위, 해결한 과학기술적내용, 도달한 기술경제적지표와 효과같은것을 정확히 반영한다.

제34조 (과학기술성과도입의 기술경제적효과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조직사업과 경영관리를 바로하여 과학기술성과도입에 의한 기술경제적효과와 그 지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성과도입에 의한 기술경제적효과와 그 지속성이 보장될수 있게 경제부문들사이의 생산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5조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에 대한 특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에 특혜를 준다.

1. 생산량을 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경우 계획지표분담에 관계없이 생산계획을 높이지 않으며 증산한 생산물은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투자로 증산한 생산물에 대하여서는 국가납부를 면제한다.
2. 중요 원료, 연료, 자재같은것을 절약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경우 절약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장려금을 준다.
3. 식료품, 의약품을 제외하고 새로 개발한 제품은 계획기관, 가격기관, 규격기관에 등록만 하고 판매하여 그에 대한 국가납부를 면제한다.

제36조 (과학기술성과도입리득금의 분배와 리용)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여 얻어지는 리득금은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가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서 정한데 따라 분배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는 분배된 자금을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자금과 기술혁신표창자금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상금의 적용)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는 과학기술성과의 연구개발, 도입에 기여한 공민에게 상금을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치있는 과학기술자료를 국가망에 등록한 경우 그 수준정도에 따라 상금을 줄수 있다.

제38조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소개선전)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39조 (과학기술성과도입에서 공로를 세운 공민에 대한 표창)

국가는 과학기술성과도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공민에게 명예칭호, 훈장, 메달을 수여한다.

제40조 (지적소유권의 강제리용허가)

중요과학기술성과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나 개발단위는 제3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강제리용허가를 해당 기관에 신청할수 있다.

지적소유권의 강제리용허가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5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계획의 작성과 실행, 계약의 체결과 리행, 조건보장산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에 대한 검토확인)

새로 건설하였거나 개건현대화한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의 준공검사는 과학기술성과도입결과에 대하여 해당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검토, 확인을 받은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제43조 (규격, 지표, 기준의 갱신)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

련한 여러가지 규격, 지표, 기준같은것을 부단히 갱신하여 과학기술성과의 도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규격, 지표, 기준같은것은 적용할수 없다.

제44조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 (과학기술성과도입의 중지)

과학기술성과도입을 해당 기관의 심의와 심사승인을 받지 않고 하거나 기술과제서와 설계에 맞지않게 하는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제46조 (분쟁해결)

과학기술성과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

주체94(2005)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8호로 채택

제1장 기상법의 기본

제1조 (기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시설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상사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2조 (기상사업의 본질과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기상사업은 대기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기상정보를 얻어내며 그것을 예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상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기상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3조 (기상관측원칙)

기상관측을 바로하는 것은 기상정보의 과학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상관측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상관측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기상예보원칙)

기상예보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여러 가지 기상정보에 의거하여 예견되는 기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발표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기상예보와 과학성을 보장하며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상예보를 하도록 한다.

제5조 (기상시설의 관리원칙)

기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것은 기상시설의 파손을 막고 기상관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기상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그 가동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기상과학연구와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기상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튼튼히 꾸리고 기상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기상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기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기상관측

제8조 (기상관측의 정의와 구분)

기상관측은 날씨와 대기변화과정을 연속 감시하고 측정하여 기상사업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상관측은 관측위치에 따라 지면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해상기상관측 같은 것으로 구분한다.

제9조 (기상관측을 할수 있는 기관)

기상관측은 기상관측기관이 한다. 그러나 과학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관측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10조 (기상관측장의 선정과 승인)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장을 해당 지역의 기상상태를 대표하며 기상관측에 지장을 주는 건물, 전기와 통신시설 같은 장애물과 하천수역으로부터 떨어진 개활지대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상관측방법)

기상관측기관은 기사용소와 기상현상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은 관측기재로,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은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 (기상관측자료의 기록)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제때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직접 관측한 자료에 대해서만 한다.

제13조 (기상전보문, 월보, 년보의 작성)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에 기초하여 기상전보문, 기상월보, 기상년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상전보문은 정한 시간에, 기상월보와 년보는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상급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4조 (기상월보, 년보의 심사, 보존)

중앙기상자료심사기관은 기상월보와 년보의 심사에서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월보와 년보는 영구보존한다.

제15조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는 기상관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장의 일정한 지역을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한다.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6조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안에서 기상관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열, 고주파복사장치와 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 같은 것을 건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기상예보

제17조 (기상예보의 중요요구와 구분)

기상예보를 과학성있게 하는 것은 예견되는 날씨조건에 대처하여 사전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기상예보는 날씨의 예견기간에 따라 초단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로 구분한다.

제18조 (기상예보자료의 작성)

기상예보기관은 정기기상관측자료와 기상통신망으로 받는 기상정보에 기초하여 과학성있는 기상예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상예보자료는 대기운동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상예보의 기관)

기상예보는 중앙기상예보기관과 지방기상예보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예보기관은 전반적지역의 기상예보를, 지방기상예보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상예보를 한다.

제20조 (기상예보의 통보)

기상예보의 통보는 방송보도기관이 한다.

방송보도기관은 기상예보를 접수하면 제때에 TV와 소리방송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문을 통하여 기상예보를 낼수도 있다.

제21조 (재해성기상경보)

기상예보기관은 폭우와 센 바람, 태풍, 우박, 황사, 산불, 해일, 한파 같은 기상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재해성기상경보를 하여야 한다.

방송보도기관은 재해성기상경보를 신속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상재해의 방지)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해성기상경보를 받으면 즉시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극력 줄여야 한다.

보험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재해조사와 평가에 해당 시기의 기상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상정보의 봉사)

기상정보자료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기상기관에 의뢰하여 기상정보봉

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상정보봉사료금을 내야 한다.
기상정보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4조 (기상과학지식보급)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 날씨, 기후특징과 태풍, 해일, 황사 같은 재해성기상현상과 피해방지대책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기후자료의 조사, 평가와 통보)

기상기관은 기후자료에 대한 종합적조사와 평가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평가된 기후자료로 기후통보를 낸다.

제26조 (비법적인 기상자료의 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 시설물건설과 자원개발, 기상재해, 대기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제27조 (기상시설의 구분)

기상시설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자료처리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기상시설에는 기상관측장과 기상측정수단, 기상위성 및 레이다설비, 통신설비 같은 것이 속한다.

제28조 (기상시설의 관리기관)

기상시설의 관리는 해당 기상기관이 한다.
해당 기상기관은 기상시설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상시설의 등록과 검정, 보수)

기상기관은 기상시설을 등록하고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불비한 것은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이 의뢰하는 기상측정수단도 검정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상관측장의 위치변경금지)

기상관측장의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중요대상건설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장을 불가피하게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장과 필요한 건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31조 (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기상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장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2조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상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3조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지도기관은 기상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4조 (과학기술적지도)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자료심사와 보존, 기상시설의 리용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 (기상관측, 예보일군의 자격)

기상관측, 예보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지 못한자는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할수 없다.

제36조 (기상측정수단생산과 전력, 통신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기상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기상측정수단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측정수단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전력공급기관은 기상부문 사업에 필요한 통신과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감독통제)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8조 (벌금, 손해보상)

기상관측과 재해성기상예보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재해성기상경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거나 기상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 (원상복구)

승인없이 기상관측장을 옮겼거나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제4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기상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법

주체107(2018)년 7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6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

제1장 기상수문법의 기본

제1조 (기상수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법은 기상수문법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시설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자연부원과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기상수문사업의 정의)

기상수문사업은 대기와 하천, 저수지, 해양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측하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기상수문정보를 얻어내며 그것을 예보하는 사업이다.

기상수문관측과 예보는 기상관측과 예보, 수문관측과 예보, 해양관측과 예보로 구분한다.

제3조 (기상수문관측원칙)

국가는 기상수문관측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기상수문관측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기상수문예보원칙)

국가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예견되는 기상수문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기상수문예보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기상수문시설의 관리원칙)

국가는 기상수문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기상수문관측과 예보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정상유지, 정상관리, 정상가동하도록 한다.

제6조 (기상수문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기상수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기상수문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기상수문사업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제7조 (기상수문과학연구와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기상수문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기상수문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8조 (기상수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기상수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기상수문관측

제9조 (기상수문관측의 기본요구)

기상수문관측은 대기와 하천, 저수지, 바다에서 기상수문요소들의 변화과정을 감시하고 측정하여 기상수문사업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요소들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감시하고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상수문관측의 구분)

기상수문관측에는 지면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농업기상관측, 하천관측, 저수지관측, 바다가관측, 해상관측같은것이 속한다.

제11조 (기상수문관측을 할수 있는 기관)

기상수문관측은 기상수문기관이 한다. 그러나 과학연구와 교육, 농업생산, 하천, 저수지관리, 해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수문관측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12조 (기상수문관측장의 선정과 승인)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관측장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역의 기상수문상태를 대표할수 있는곳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수문관측장주변에는 관측에 지장을 주는 건물, 전기와 통신시설같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기상수문관측방법)

기상수문기관은 기압, 기온, 바람, 습도, 하천과 저수지에서 물높이와 흐름량, 바다에서 물결높이, 물온도, 염도, 해류를 비롯한 기상수문요소와 현상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요소에 대한 관측은 기상수문관측기재로, 기상수문현상에 대한 관측은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기상수문관측자료의 기록과 보고)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정확히 기록하고 중앙기상수문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은 직접 관측한 자료에 대해서만 한다.

제15조 (기상수문조사와 평가, 통보)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현상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한다.

조사평가된 자료는 기상수문통보로 낼수 있다.

제16조 (기상수문관측자료의 심사, 보존)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관측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관측자료의 심사는 관측소심사, 도급심사, 중앙급심사로 나누어 하며 심사에서 정확성과 시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관측자료는 영구보존한다.

제17조 (기상수문관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기상수문관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상수문관측장의 일정한 지역을 기상수문관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한다.

기상수문관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8조 (기상수문관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허가없이 기상수문관측환경보호구역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기상수문관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열, 고주파 복사장치와 전기시설같은것을 설치하는 행위
2.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3. 도로, 건물, 시설물같은것을 건설하는 행위

제19조 (위탁관측)

기상수문기관은 필요에 따라 기상수문관측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기상수문관측을 위탁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측정수단을 갖추고 기상수문관측을 책임적으로 하며 관측한 자료를 기상수문기관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위탁에 따라 해상관측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별히 선정된 배를 해상관측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장 기상수문예보

제20조 (기상수문예보의 기본요구)

기상수문예보사업에서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것은 예견되는 기상수문상태에 대처하여 사전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기상수문기관은 대기와 하천, 저수지, 바다의 변화상태를 신속정확히 예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상수문예보의 구분)

기상수문예보는 일기예보, 하천과 저수지물량예보, 해상예보, 해일예보, 태풍예보, 황사예보, 대기질예보같은것으로 구분한다.

제22조 (기상수문예보기관)

기상수문예보는 중앙기상수문기관과 지방기상수문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수문기관은 전반적지역의 기상수문예보를, 지방기상수문기관은 해당 지역 또는 특정한 대상의 기상수문예보를 한다.

기상수문기관이 아닌 다른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상수문예보를 할수 없다.

제23조 (기상수문예보자료의 작성)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관측자료와 위성전송자료, 계산자료, 조사분석자료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과학성있는 기상수문예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예보자료는 기상수문상태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상수문예보자료의 통보)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예보자료를 방송 및 출판보도기관, 재해방지기관, 국가수리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매일 4회이상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수문예보자료에 대한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TV와 소리방송, 통신수단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재해성기상수문경보)

기상수문기관은 폭우와 무더기비, 큰물, 센바람, 태풍, 폭설, 우박, 황사, 가물, 해일, 한파, 안개, 서리같은 재해성기상수문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재해성기상수문경보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는 기상수문예보대책)

기상수문기관은 필요한 물질기술적준비를 원만히 갖추고 임의의 정황속에서도 기상수문예보를 중단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기상수문재해의 방지)

재해방지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재해성 기상수문경보를 받으면 즉시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극력 줄여야 한다.

보험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재해조사와 평가에 기상수문기관에서 발표한 해당 시기와 지역의 기상수문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상수문정보봉사)

기상수문정보봉사는 기상수문기관이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정보봉사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하여 그 질은 높여야 한다.

기상수문정보봉사를 따로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기상수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수문정보봉사료금을 내야 한다.

기상수문정보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29조 (비법적인 기상수문자료의 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 시설물건설과 자원개발,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에 필요한 기상수문자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기상수문시설의 관리

제30조 (기상수문시설관리의 기본요구)

기상수문시설은 기상수문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자료처리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담보하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기상수문시설의 구분)

기상수문시설에는 기상수문관측장과 측정수단, 컴퓨터 및 통신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제32조 (기상수문시설의 관리기관)

기상수문시설의 관리는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시설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기상수문시설의 등록과 검정, 보수)

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시설을 등록하고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불비한것은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이 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수문관측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측정수단을 기상수문기관의 검정을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제34조 (기상관측장의 위치변경금지)

기상수문관측장의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기상수문관측장을 불가피하게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5조 (기상수문관측시설의 현대화)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측정수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현대적인 측정수단을 계획적으로 연구개발, 생산하여 기상수문관측과 예보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기상수문관측환경과 기상수문시설, 통신수단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수문관측환경과 기상수문시설, 통신수단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관측환경과 기상수문시설, 통신수단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

시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장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상수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상수문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수문기관은 기상수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과학기술적지도)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자료심사와 보존, 기상수문 시설의 리용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 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 (기상수문관측, 예보일군의 자격)

기상수문관측 및 예보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기상수문관측과 예보사업을 할수 없다.

제41조 (기상수문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체신기관,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기상수문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전력, 통신, 자료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상수문과학지식보급)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 날씨, 기후특징과 태풍, 해일, 황사, 큰물같은 재해성기상수문현상과 피해방지대책, 기상수문과학지식같은것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제43조 (감독통제)

기상수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기상수문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4조 (국제기상협약에 따르는 기상수문자료의 관리)

기상, 수문, 해양의 관측과 예보, 경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해당 나라에서 보내오는 자료는 중앙기상수문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중앙기상수문지도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기상, 수문, 해양의 관측과 예보, 경보와 관련한 자료를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원상복구)

승인없이 기상수문관측장이나 기상수문시설을 옮겼거나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제4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 처벌을 준다.

1. 기상수문관측을 무책임하게 하여 예보자료의 과학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기상수문예보 및 재해성기상수문경보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3. 기상수문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4. 이 법 제18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5. 검정을 받지 않은 측정수단을 기상수문관측에 리용하였을 경우
6. 기상수문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하지 않아 기상수문관측과 예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이 밖에 기상수문법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제47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주체87(1998)년	5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발명법의 기본

제1조 (발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의 리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이다.

발명에는 제품발명과 방법발명이 있다.

제3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원칙)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발명권, 특허권보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원칙)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발명행정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원칙)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6조 (발명창조사업의 장려원칙)

국가는 발명창조사업을 적극 장려하며 발명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늘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명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발명사업에서 국가의 안전 및 중요이익보장)

국가는 발명사업에서 나라의 안전 및 중요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제9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의 제출)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아래부터 신청자라고 함.)은 신청서와 개요, 설명서, 주장범위같은것을 포함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자는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가운데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발명권에는 실용기술발명권이, 특허권에는 실용기술특허권이 포함된다.

제10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의 작성언어)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이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자로부터 3개월안에 조선어번역문을 제출한다.

정해진 기간에 조선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을 하지 않은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할수 있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

직무상 임무수행과정에 창조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창조한 발명(이 아래부터 직무상발명이라고 함.)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한다.

발명가가 퇴직, 조동된 때부터 1년안에 신청하는 발명이 이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직무상 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에 대한 권리는 이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다.

제12조 (발명가의 명의로 할수 있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

직무상발명이 아닌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 등록신청은 발명가가 한다.

제13조 (공동으로 또는 위탁에 따라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

둘이상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공동으로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따로 합의된것이 없는 한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공동으로 하며 위탁에 따라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따로 합의된것이 없는 한 그

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한다.

발명창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보장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합의에 따라 공동신청자로 될수 있다.

제14조 (특허권등록신청권리의 양도)

특허권등록신청권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할수 있다. 공동으로 창조한 발명인 경우 개별적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자기의 신청권리를 양도할수 있다.

특허권등록신청권리를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등록을 신청할 경우 양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리기관을 통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발명대리기관을 통하여 할수 있다. 다른나라의 신청자가 우리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명대리기관에 위임하여야 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을 위임받은 발명대리기관은 신청문건과 함께 대리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대리기관은 신청내용을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기전에 공개할수 없다.

제16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날자)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날자는 발명행정기관이 신청서, 개요, 설명서, 주장범위가 포함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자로 한다.

제17조 (발명으로 될수 없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발견, 과학적리론, 수학적방법
2. 미학적창조물
3. 정신활동이나 유희, 경영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법
4. 정보의 표시방법

제18조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없는 발명)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거나 사회공동의 이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 식물이나 동물의 품종,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방법,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과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원자핵변환의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에 대한 발명은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제19조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 있다는것은 신청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다는것이다.

2. 발명수준이 있어야 한다.

발명수준이 있다는것은 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수 없다는것이다.

3. 도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도입가능성이 있다는것은 발명을 인민경제의 해당 부문에서 리용할수 있다는것이다.

제20조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

발명수준은 없어도 신규성이 있고 도입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서는 실용기술발명권이 나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수 있다.

제21조 (례외적인 신규성인정조건)

발명내용이 신청자에 의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학술토론회나 전시회에 처음으로 발표 또는 전시되었거나 신청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그 날자로부터 6개월안에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문건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것으로 본다.

제22조 (우선권주장)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자기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첫 특허권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우리 나라에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국제조약에 따라 그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첫 특허권등록신청문건사본을 제출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특허권등록신청권리를 넘겨받은 자가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우선권주장의 결함퇴치)

발명행정기관은 우선권주장에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통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치한 날자로부터 2개월안에 신청자가 그것을 퇴치하지 않으면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것으로 인정한다.

제24조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을 할데 대한 요구)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개개의 발명에 대하여 따로따로 한다.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발명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발명개념을 이루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문건으로 제출할수 있다.

제25조 (신청의 취소 및 변경)

신청자는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심의를 끝나기 전에 자기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발명권을 실용기술발명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실용기술특허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발명권으로, 실용기술특허권을 실용기술발명권으로 변경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발명권을 특허권으로 변경해줄데 대한 요구는 형식심의를 끝나고 공개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26조 (다른 나라에 하는 특허권등록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발명행정기관에 특허권등록신청을 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대리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27조 (미생물표본의 수탁)

미생물과 관련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자는 신청날자전에 정해진 기관에 미생물표본을 맡기고 해당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특허권등록의 수속료금)

특허권등록신청자는 신청, 심의, 등록과 관련한 해당한 요금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3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

제29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단계)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는 형식심의, 본질심의 방법으로 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심의를 위하여 발명행정기관에 비상설로 발명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

제30조 (형식심의)

발명행정기관은 신청날자를 받은 차례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에 대한 형식심의를 하여야 한다.

형식심의에서는 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를 갖추었는가를 심의한다.

형식심의에서 통과되면 그 신청문건을 공개한다.

제31조 (결합있는 신청문건의 처리)

발명행정기관은 형식심의과정에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날자로부터 2개월안에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문건을 수정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기각한다.

신청자가 2개월안에 신청문건을 수정하였거나 의견을 제기하면 그것을 심의하고 정해진 요구에 맞을 경우 해당 신청문건을 공개하며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한다.

제32조 (공개한 신청문건에 대한 의견제기)

형식심의를 하고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그에 대한 본질심의를 끝나기 전에 발명행정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33조 (본질심의)

발명행정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형식심의를 하고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에

대하여 본질심의를 하여야 한다.

본질심의에서는 신청된 발명이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는가를 심의한다. 본질심에서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출제 대한 결정을 하고 등록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34조 (증서발급)

발명행정기관은 발명권,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명권증서는 발명도입실적이 확인된 다음에, 특허권증서는 해당한료를 납부한 다음에 발급한다.

제35조 (심의의견통지서)

발명행정기관은 신청된 발명이 본질심과정에서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심의의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낸 날자로부터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답변을 보내오지 않으면 그 의견을 인정한것으로 본다.

제36조 (같은 날자에 신청된 같은 발명에 대한 처리)

발명행정기관은 같은 날자에 신청된 둘이상의 발명이 본질상 같은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신청자로 나서거나 공동신청자로 나설수 있다.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도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제37조 (심의도중 신청문건의 수정)

신청자는 자기의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에 대한 본질심의도중에 그것을 수정할수 있다. 이 경우 처음의 설명서와 주장범위에서 공개한 내용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부결)

발명행정기관은 본질심에서 신청된 발명에 대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을 부결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39조 (재심의)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의 부결결정에 의견이 있는 신청자는 발명행정기관이 부결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개월안에 재심을 요구할수 있다.

발명행정기관은 재심의요구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0조 (발명권 및 특허권등록을 무효로 할데 대한 제기)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은 발명행정기관에 그것을 무효로 해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그에 대하여 해당 발명권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무효로 결정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본다.

제41조 (발명재심의위원회의 조직)

발명행정기관은 부결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에 대한 재심의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무효제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발명재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제42조 (발명권, 특허권보호의 범위)

발명권, 특허권보호의 범위는 주장범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 경우 주장범위를 해석하는데 설명서와 그림을 리용할수 있다.

제43조 (발명을 리용하는 행위)

발명을 리용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속한다.

1. 제품발명인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하는 행위
2. 방법발명인 경우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제품을 사용, 판매, 수입하는 행위

제44조 (발명권을 받은 발명의 리용)

발명권을 받은 발명의 리용은 발명권자의 승인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45조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을 받은 발명의 리용은 특허권자가 한다.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또는 정당한 리유나 법적근거없이 특허권을 받은 발명을 리용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권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6조 (발명가의 권리)

발명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과 발명권, 특허권증서에 자기의 이름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제47조 (특허권의 보호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5년이며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실용기술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실용기술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0년이며 연장할수 없다.

제48조 (특허권유지료금의 납부)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받은 해부터 발명행정기관에 정해진 유지료금을 내야 한다.

특허권유지료금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계산한다.

제49조 (발명가에 대한 보상)

직무상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명의 리용이나 특허권의 이전, 기술봉사로부터 얻어지는 리득금에서 정해진 몫을 발명가에게 주어야 한다.

제50조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자는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발명의 리용을 허가하거나 특허권을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은 발명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그 발명의 리용을 허가할수 없다.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의 이전에 대하여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 (공민의 특허권행사방법)

공민의 특허권행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자기의 발명을 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2조 (공동으로 받은 특허권의 행사방법)

공동으로 특허권을 받은 발명의 리용과 특허권의 이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특허권의 이전에 의하여 얻어지는 리득금은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배한다.

제53조 (특허권을 받은 발명의 강제리용허가)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이 등록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리유없이 리용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제3자가 리용을 허가해줄것을 제기하거나 국가적,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발명의 리용을 허가해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에게 그에 대하여 통지하며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리용허가는 그 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제한다.

제54조 (강제리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보상)

발명행정기관으로부터 강제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이 정해줄수 있다.

제55조 (특허권을 받은 발명의 교차리용허가)

특허권자가 자기의 발명에 다른 특허권자의 발명을 리용하려는 경우 서로 교차리용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발명을 리용할수 있다. 해당 당사자가 교차리용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에 강제리용허가를 신청할수 있다.

발명행정기관은 제기된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리용허가를 해줄수 있다.

제56조 (특허권의 기한전소멸)

다음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보호기간에 관계없이 소멸된다.

1.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2. 특허권유지료금을 정해진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
3. 발명행정기관이 특허권의 효력을 없앨데 대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
4. 특허권을 넘겨받을 권한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

제57조 (효력이 소멸된 특허권의 등록 및 공개)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의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보호기간안에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것을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 (발명권,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의 처리)

발명권,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발명행정기관이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제59조 (특허분쟁처리를 위한 조사)

발명행정기관,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해당 조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와 담화, 문건검토, 감정뢰, 자료확인 같은것을 진행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진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0조 (특허권침해행위의 중지요구)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제기된 내용이 특허권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그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특허권침해행위를 한 당사자가 중지요구를 받은 때부터 30일안으로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기관에 특허권침해행위를 중지시켜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발명행정기관이 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1조 (특허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1. 특허권침해행위로 특허권을 침해당한자가 실지 입은 손해
2. 특허권을 침해당한자가 실지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한자가 실지 얻은 이익
3. 특허권을 침해한자가 실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당한자가 발명에 대한 리용허가를 하여 얻을수 있는 이익

제62조 (특허권등록심 의기간의 발명리용에 대한 보상)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이 공개된 때부터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그 발명을 리용하였을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등록된 다음 그에게 보상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63조 (특허권침해로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

1. 특허권자 또는 리용허가를 받은자가 특허권을 받은 제품 또는 특허권을 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3자가 그 제품을 사용, 판매, 수입하는 경우
2. 특허권등록신청날자전에 그와 같은 발명을 합법적으로 리용하고있었거나 리용하려고 필요한 준비를 갖춘 제3자가 그 범위에서만 해당 발명을 리용하는 경우
3. 발명을 우리 나라를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르고있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운영상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발명을 과학연구와 실험에 사용하는 경우
5. 발명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개별적인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제조에만 리용하는 경우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4조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발명행정기관이 한다.

발명행정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5조 (발명대리기관의 조직운영)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발명대리기관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발명대리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와 관련한 대리사업을 할수 있다.

발명대리기관은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내용을 공개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66조 (발명가, 도입자에 대한 우대와 평가)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발명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여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발명가와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평가하도록 한다.

제67조 (발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발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발명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발명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

호질서를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법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7호로 채택

제1장 방송법의 기본

제1조 (방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법은 방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을 사상 문화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방송의 정의와 구분)

방송이란 말과 음악, 음향과 화면을 전파 또는 선로수단을 통하여 내보내는 방법으로 사회현실을 알려주는 보도선전 및 사상문화교양수단이다.

방송에는 소리방송과 TV방송, 인터넷방송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방송사업에서의 주체성확립원칙)

방송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방송의 성격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방송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방송사업을 주체성의 원칙으로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방송은 나라의 목소리이고 얼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방송사업에 대한 유일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 (방송일군의 양성원칙)

국가는 방송일군양성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능력있는 방송일군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제6조 (방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방송설비와 방송기술은 방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이다.

국가는 방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방송설비와 방송기술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제7조 (방송분야의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방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방송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방송기관과 여러 형태의 방송사업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제2장 방송기관

제9조 (방송기관의 구분)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제작과 송출을 위한 전문인원과 설비를 가지고 방송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방송기관에는 중앙방송기관과 지방방송기관, 부문방송기관이 속한다.

제10조 (방송기관의 조직에 대한 승인)

방송기관의 조직에 대한 승인은 국가가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방송활동을 할수 없다.

제11조 (중앙방송기관)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국가방송을 대표하는 중앙방송기관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파장별소리방송과 유선소리방송, 무선 및 유선TV방송, 인터넷방송을 직접 조직운영하면서 지방방송기관들의 방송사업을 지도하며 부문방송기관들과의 사업을 한다.

제12조 (지방방송기관)

도(직할시)방송위원회는 지방방송기관이다.

지방방송기관은 정해진 시간에 해당 지역의 방송을 조직운영하면서 도(직할시)안의 시(구역), 군방송사업을 지도한다.

제13조 (부문방송기관)

철도방송위원회, 평양전차방송위원회, 평양지하철도방송위원회 같은 것은 부문방송기관이다.

부문방송기관은 해당 기관의 지도밑에 방송활동을 한다.

제14조 (구내 및 현장방송)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구내방송 또는 현장방송을 할수 있다.

제15조 (비상설방송편집기구의 조직운영)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제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부문편집위원회 같은 비상설방송편집기구를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방송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망라되어 집체적협의의 방법으로 방송편집물제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방송기관의 비상설 최고 편집기구이다.

제3장 방송일군

제16조 (방송일군양성 및 선발배치의 기본요구)

방송일군은 방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일군양성 및 선발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방송일군의 구분)

방송일군에는 기자, 작가, 번역원, 교열원, 검열원 같은 집필부문에 종사하는 일군과 방송원, 연출가, 촬영가, 배우, 조명사, 화면편집원, 녹음편집원, 미술가, 분장사, 의상사 같은 형상일군, 방송편집물제작과 송출에 필요한 설비관리운영 및 기술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일군이 속한다.

방송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될수 있다.

제18조 (방송일군의 양성)

방송부문의 집필일군과 형상일군, 기술일군은 해당 대학들에서 양성한다.

형상일군과 기술일군이 아닌 전문일군은 방송기관들에서 전습과정을 통하여 양성한다.

제19조 (방송일군의 단기양성)

중앙방송기관은 방송일군재교육과 방송원후비육성을 위한 방송일군강습소를 운영한다.

강습소에서는 방송부문의 집필일군, 형상일군, 기술일군을 위한 전문실무강습을 주며 방송원후비육성을 위한 과외학생화술소조를 운영한다.

제20조 (방송원후비선발)

중앙방송기관의 국가방송원은 방송화술국가심의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는 전국화술경연에서 당선된 성원들과 화술전문대학교육을 받은 성원들을 일정한 기간 방송일군강습소의 재교육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방방송기관과 부문방송기관의 방송원은 방송화술국가심의위원회 또는 부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원들로 선발한다.

제21조 (실무학습을 통한 자질향상)

방송기관은 방송일군들의 전문자격자질을 높이기 위한 실무학습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 (현실체험을 통한 자질향상)

방송기관은 방송원과 취재활동을 하지 않는 기자, 편집일군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현실체험을 계획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방송일군들의 자격급수사정)

방송기관의 전문일군들은 직종별로 정해진 자격급수를 사정받아야 한다.

제24조 (방송일군들에 대한 표창)

국가는 방송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방송기관의 전문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하거나 해당한 표창을 하도록 한다.

제4장 방송편집물

제25조 (방송편집계획의 성격과 종류)

방송편집계획은 방송활동의 기초이며 방송사업의 첫 공정이다.
방송편집계획에는 편집물제작계획과 그에 따른 방송편성계획이 속한다.

제26조 (방송편집계획의 작성)

방송편집계획은 방송기관 또는 편집단위별로 정책적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되게 작성한다.

제27조 (방송편집물제작의 기본원칙)

방송의 실효성은 방송편집물에 의하여 담보된다.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의 제작에서 종자를 바로 쥐고 최상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방송편집물제작의 기본요구)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제작에서 사상성, 예술성, 문화성, 과학성, 진실성, 현실성을 보장하며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원고집필과 형상편집)

방송원고집필은 개별적으로 또는 여럿이 협력하여 할수 있다.
집필일군, 현상일군, 기술일군은 해당 편집물제작과제를 직종별, 공정별로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방송화술형상)

방송편집물에 대한 화술형상은 방송화술국가심의위원회 또는 부문심의위원회가 인증한 방송원, 양성방송원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방송화술은 문화어로 하며 외래어, 한자말, 우리 식이 아닌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방송화술형상은 편집물의 양상에 따라 방송원별로 전문화하도록 한다.

제31조 (방송편집물의 결재와 심의, 승인)

방송으로 내보내는 편집물과 창작 및 인입작품은 정해진데 따라 편집단위책임 일군들의 결재와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결재와 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집물과 인입물은 방송으로 내보낼수 없다.

제32조 (편집계획실행에 대한 평가)

방송기관은 편집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제작된 편집물의 질과 량에 따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3조 (편집물과 방송자료의 보관)

방송기관은 방송으로 내보낸 방송편집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표준조건에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방송편집물과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단위에 넘겨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5장 방송기술사업

제34조 (방송기술사업의 내용)

방송기술사업은 방송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사업이며 방송기술을 현대화, 정보화하는 사업이다.

방송기관은 방송설비의 관리운영과 리용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방송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제35조 (방송설비의 관리운영 및 리용)

방송설비의 관리운영 및 리용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기술인원, 또는 편집물에 작성원만이 할 수 있다.

방송설비의 관리운영 및 리용성원은 방송설비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에 정통하고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설비를 적극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방송기술연구)

방송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방송기술을 끊임없이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중앙방송기관은 국가적인 방송기술발전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7조 (중계 및 전송보장)

방송중계 및 자료전송은 방송실현을 위한 필수적공정이다.

방송을 중계하는 체신기관, 기업소는 현행방송과 중앙과 각도 특파원실을 포함한 지방의 해당 장소들에서 방송전파를 신속히 중계 및 전송하기 위한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방송을 중단없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는 방송준비)

방송기관은 임의의 정황속에서도 방송을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를 원만히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6장 방송사업의 조건보장

제39조 (방송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의 기본요구)

방송사업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망라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높은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방송기관의 취재 및 사업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0조 (방송출연자와 조건보장)

방송에는 일군들과 어린이, 년로자, 장애자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대중이 출연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에 출연하는 대상들의 조건보장을 책임적으로 맡아하며 출연 시간을 로력가동일수로 계산해주어야 한다.

제41조 (방송활동에 참가하는 군중의 편의보장)

방송활동에 참가하는 군중의 숙식 및 편의보장사업은 정해진데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와 상업 및 편의봉사기관이 맡아한다.

제42조 (취재촬영단의 교통운수조건보장)

해당 인민보안기관, 교통운수기관은 방송사업으로 류통하는 취재 및 촬영성원들과 중계록화차 같은 운수수단의 교통운수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취재촬영단의 숙식조건보장)

취재촬영성원들의 숙식조건은 정해진 자금한도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제44조 (방송사업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보장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에 필요한 전력, 연유,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외국취재촬영단의 취재합의)

다른 나라의 취재촬영단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방송기관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의문건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46조 (방송에 따른 요금지불)

다른 나라 단체 또는 개인은 우리 나라에서 취득한 화면 및 음성자료를 자기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방송기관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 해당한 요금을 중앙방송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7장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방송기관안의 질서확립)

방송기관은 기관안에 정연한 질서를 세우고 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9조 (방송사업에 대한 균중의견청취)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에서 로동통신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청취자, 시청자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방송의 형식과 내용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제50조 (방송요금)

방송을 청취 또는 시청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요금을 문다.

방송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51조 (방송저작권의 보호)

방송저작물의 리용권을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기관, 단체, 개인에게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중앙방송기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방송기관에 해당 방송저작물의 리용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2조 (방송기관에 대한 경비사업)

중앙방송기관에 대한 경비사업은 인민보안기관이, 해당 방송기관에 대한 경비사업은 기관보위대가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방송기관은 경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 (방송사업을 감독통제하는 기관)

방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방송기관들의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4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국가의 권위와 리익에 어긋나게 방송하였을 경우
2. 국가기밀을 루설하였을 경우
3. 집필, 형상, 기술사업에서 사고를 내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방송편집물, 방송자료를 비법복사하여 영리적목적에 리용하거나 잘못 관리하여 손상시

켰을 경우

5. 방송교류활동질서와 절차를 위반하여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6. 방송조건보장사업을 잘못하여 방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방송기관의 건물과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제55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4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시설법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6호로 채택

제1장 방송시설법의 기본

제1조 (방송시설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시설은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란 음성, 음향, 음악, 영상 등을 전파 또는 선로수단에 의거하여 송신하는 선전수단이다.
2. 방송시설이란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위한 방송기, 중계기, 선로, 전원설비 같은 것이다.
3. 방송설비란 방송프로를 보거나 듣기 위한 고성기, 라디오, TV 같은 것이다.

제3조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원칙)

국가는 방송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방송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방송시설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시설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송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방송에 대한 사회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방송시설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방송시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방송시설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제6조 (방송시설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방송시설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7조 (방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방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제8조 (방송시설건설계획의 작성)

방송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방송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방송시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9조 (방송시설건설설계)

방송시설건설설계는 체신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체신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술적조건과 자연지리적 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방송시설건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10조 (방송시설건설의 담당자)

방송시설건설은 체신기관의 기술적지도밑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위치 지정, 건설명시,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설계에 기초한 방송시설건설)

방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건설을 설계대로 하며 건설이 끝난 다음 주변을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방송시설건설을 할수 없다.

제12조 (방송시설설치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준수)

방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의 설치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3조 (방송시설의 전원구성)

방송시설의 전원은 기본전원선로와 예비전원선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선로를 구성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본전원선로를 가장 부하가 적은 변압기에 연결하여야 한다.

제14조 (무선방송시설의 건설장소)

무선방송시설은 전국적이며 세계적범위에서 방송프로를 전송, 중계할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방송시설관리운영성원의 생활에 편리한 장소에 건설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선방송시설의 설치)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무실, 살림집, 작업장, 공공장소에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될수 없다.

제16조 (건설이 끝난 방송시설의 기술검사)

방송시설건설이 끝나면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방송시설을 운영할수 없다.

제17조 (방송시설의 균중적인 보호관리)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방송시설에 대한 균중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방송시설을 알뜰히 다루고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파손시키거나 기타 방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8조 (방송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방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방송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9조 (방송시설보호구역안의 질서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시설보호구역안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방송시설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 (방화선)

산에 위치하고있는 방송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물 주위에 일정한 너비의 방화선을 쳐야 한다.

제21조 (전기선 같은 것을 늘일 경우 방송선로의 보호대책)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선로와 사귀게 전기선, 식도줄 같은 것을 늘이려 할 경우 해당 체신기관과 합의한 다음 필요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건설 같은것과 관련한 방송선로의 이동)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방송선로를 옮기려 할 경우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선로를 옮기는데 필요한 로력과 자재는 해당 건설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제3장 방송시설의 관리운영

제23조 (방송시설관리운영의 담당자)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과 관련한 기술적지도와 수리, 보수 같은 것을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24조 (방송시설의 정상운영)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의 관리를 바로하여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방송프로의 중계시간과 주파수, 질보장)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정해진 시간과 주파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시설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켜 방송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전력공급)

전력공업기관은 방송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중단없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7조 (방송기계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방송기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 근무성원의 다른 인원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2. 방송중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방송기계실을 비우지 말아야 한다.
4. 근무교대시 방송시설의 기술상태와 방송중계정형을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방송기계실을 깨끗이 거두고 온도와 습도를 기술규정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방송시설운영자)

방송시설의 운영은 전문기능급수를 가진 성원이 한다.

체신기관은 방송시설운영성원들이 방송시설을 원만히 다룰수 있도록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주어야 한다.

제29조 (방송시설의 점검)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30조 (방송시설의 보수)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보수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의 보수는 방송을 중계하지 않는 시간에 한다.

제31조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운영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 방송시설의 운영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32조 (방송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설비를 리용하려 할 경우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

고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33조 (방송시청료금)

방송을 시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방송시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4조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방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방송시설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 (방송시설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방송시설의 건설과 보호,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시설부문의 로력은 고착시키며 타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36조 (방송시설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방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방송시설건설과 보호,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방송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8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방송시설건설을 바로하지 않아 국가적인 방송망을 구성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방송시설보호질서를 어겼을 경우
3. 방송시설건설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방송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방송시설의 수리, 정비,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방송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방송시설운영질서를 어겨 방송프로의 전송 및 중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
6. 전력보장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방송프로의 전송 및 중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방송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8. 방송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제39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

주체87(1998)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80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상표법의 기본

제1조 (상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상표의 정의)

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글자, 그림, 수자, 기호, 색깔, 3차원적인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는 표식이다.

상표에는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상표등록의 신청원칙)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상표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상표등록의 심의원칙)

상표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 것은 상표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상표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상표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상표권의 보호원칙)

상표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소유한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이름난 상표를 고찰시키도록 한다.

제6조 (상표의 조형화, 예술화, 상표도안창작에서 지켜야 할 요구)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생산과 봉사업종이 늘어나는데 맞게 상표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며 상표도안창작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1. 상표도안을 보기가 좋으면서도 의미가 뚜렷하고 특성이 살아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2. 상표도안을 인위적으로 과장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볼맛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만화적으로 생동하면서도 실감이 나게 형상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제품이나 봉사에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4. 너무 원색만 써서 천한감이 나게 하지 말고 상표의 특성에 맞게 색을 조화롭게 잘 써야 한다.
5. 규격, 상품식별부호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공통된 내용들과 표기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7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제8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상표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상표심의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 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상표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상품 및 봉사분류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며 상표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제기하는 상표등록신청문건에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생산 및 봉사와 관련한 공증문건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10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상표등록신청문건은 상표등록기관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팩스같은 여러가지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여 낸다.

제11조 (외국인의 상표등록신청문건제출)

우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신청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어로 된 상표 등록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12조 (외국에 하는 상표등록의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등록기관에 등록된 상표를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상표등록신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접수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상표등록신청문건의 결함퇴치)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문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3개월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여 줄수 있다.

제15조 (상표등록의 신청날자)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고쳤을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 (전람회, 전시회와 관련한 상표등록신청의 우선권)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한 제품의 등록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문건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가 출품된 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외국인의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의 효력)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자기 나라 또는 임의의 나라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해당 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 나라 상표등록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상표등록의 재신청)

상표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상표에 대하여서는 취소 또는 보호기간이 만기된 지 1년이후부터 등록신청을 다시 할수 있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제19조 (상표등록의 심의기간)

상표등록의 심의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표등록심의자료)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의 심의의 필요한 자료를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상표로 등록할수 없는 표식, 표기)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또는 표기
2. 국호나 그 약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또는 표기
3. 우리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표식 또는 표기
4.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내용을 담은 표식 또는 표기
5. 상품명, 조성, 용도, 특성 같은것만의 표기
6. 검사 및 인증표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학적 표식, 특수한 전문용어나 기호같은것만을 밝힌 표식 또는 표기
7.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또는 표기
8.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단체의 이름이나 그 약자, 기발, 표식물과 같거나 유사한 표식, 국제법과 국제판례에 어긋나는 표식 또는 표기
9.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또는 표기
10. 우리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

제22조 (상표등록의 심의)

상표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상표를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의 심의결과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준다.

제23조 (상표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는다.

제24조 (상표에 대한 의견제기)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가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상표를 신청하였거나 상표를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등록이 부결된 상표에 대한 재심의제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다.

제26조 (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제기)

상표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할수 있다.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표등록기관과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상표권의 보호

제27조 (상표권보호의 기본요구)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도안창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 (상표권의 소유자)

상표권은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29조 (상표권소유자의 권리)

상표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2.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데 대한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4.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

제30조 (상표권의 양도)

상표권을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권소유자와 상표권양도계약을 맺은 다음 상표권양도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이전 상표권소유자에게 발급된 상표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권양도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고 상표권을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등록기관에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상표의 사용허가)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등록된 상표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사용허가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고 허가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상표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한 통제권)

사용허가를 받은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서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책임진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사용허가를 한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33조 (상표권의 양도, 사용허가금지)

해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34조 (상표권의 보호기간)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10년씩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35조 (상표권보호기간의 연장)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의 제기기간)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 수도 있다.

제37조 (상표등록의 변경)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에 이름, 주소 같은 것이 달라졌을 경우 상표등록변경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변경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고 상표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상표권의 취소)

상표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취소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39조 (상표권의 효력상실)

상표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상표권보호기간이 지났거나 상표를 등록한 날부터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품의 질을 높이며 상표권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지도기관)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상표등록기관이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상표공보)

상표등록기관은 국가상표공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표의 등록정형을 정상적으로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일군양성)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필요한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4조 (상표와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상표를 제작, 인쇄, 리용, 매매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들여오거나 가짜상표를 붙인 상품, 상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요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요금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다.

제46조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의 신청, 심의질서를 지키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 (손해보상, 벌금 및 몰수)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가짜상표를 제작, 인쇄, 리용,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상표, 상품같은것은 몰수한다.

제48조 (생산, 봉사의 중지, 등록취소)

상표권을 비법적으로 양도, 사용허가하였거나 등록된 상표를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생산 또는 봉사를 중지시키거나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킬수 있다.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0조 (분쟁해결)

상표와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표등록기관,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보호법

주체110(2021)년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09호로 채택

제1장 소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제1조 (소프트웨어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보호법은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프트웨어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의 등록원칙)

소프트웨어의 등록은 소프트웨어보호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보호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 등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소프트웨어의 개발장려, 저작권보호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며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 및 재산적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4조 (외국인의 저작권보호원칙)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등록된 소프트웨어저작권은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5조 (국가적 관심과 투자를 늘일데 대한 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소프트웨어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도록 한다.

제6조 (소프트웨어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소프트웨어보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의 등록

제7조 (소프트웨어등록기관 및 등록대상)

소프트웨어의 등록은 소프트웨어 등록기관이 한다.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을 정하는 사업은 중

양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소프트웨어등록대상으로는 프로그램저작물, 자료기저작물, 소프트웨어설계저작물같은 소프트웨어저작물이 된다.

제8조 (등록신청서의 제출과 내용)

소프트웨어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등록신청서를 소프트웨어 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소프트웨어의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주소, 신청날자같은것을 밝히며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 소프트웨어개요, 소프트웨어기술설명서, 시험확인서, 비밀내용설명서, 사용설명서같은것을 첨부한다.

제9조 (등록신청서의 접수)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에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등록신청이 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것만을 접수한다.

제10조 (등록날자)

소프트웨어등록날자는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제11조 (등록심의기간)

소프트웨어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루스검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심의방법)

소프트웨어의 등록심의를 소프트웨어개발자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된 소프트웨어와 같거나 유사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등록심의를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가를 료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필요한 자료요구와 보장)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자료의 비밀을 보장하며, 다른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증의 발급, 재발급)

소프트웨어 등록기관은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승인하였을 경우 신청자에게 저작권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소프트웨어저작권자가 이미 받은 저작권증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저작권증을 오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저작권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 (소프트웨어의 등록공개)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16조 (등록과 관련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프트웨어의 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의 보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소프트웨어의 등록신청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를 정해진 보관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고에는 소프트웨어의 파손, 루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 (다른 나라 소프트웨어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소프트웨어는 리용할 수 없다.

제19조 (소프트웨어등록부의 열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소프트웨어등록부를 열람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제20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거나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소프트웨어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를 가진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를 발표할수 있는 권리
2. 소프트웨어에 개발자의 이름을 밝힐수 있는 권리
3. 개발자의 이름, 소프트웨어의 명칭, 내용같은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22조 (인격적권리의 제한)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자만이 가진다.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없다.

제23조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를 복제, 전송, 전시, 번역, 배포할수 있는 권리
2.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저작물을 만들수 있는 권리
3. 소프트웨어의 리용을 허가할 권리와 해당한 요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
4. 소프트웨어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수 있는 권리
5.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생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제24조 (재산적권리의 양도등록)

계약에 따라 재산권을 양도받은자는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재산권을 양도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소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한다.

개인의 이름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가 소유한다.

여럿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는 개발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26조 (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소유)

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소유한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소유와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밝힌다.

제27조 (미성인의 소프트웨어저작권소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미성인도 소유할수 있다.

미성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행사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한다.

제28조 (소프트웨어저작권이 국가소유로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

1.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2. 소프트웨어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3. 저작권을 넘겨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
4. 소프트웨어저작권자가 재산적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제4장 소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제29조 (저작권의 보호기간)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며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제30조 (보호기간의 계산)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등록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받은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제31조 (소프트웨어의 리용범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리용할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리용은 허가받은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 (료금지불)

소프트웨어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제33조 (저작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프트웨어저작물과 과학기술저작물, 문학예술저작물을 비롯한 저작물을 소프트웨어의 개발, 개작에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허가없이 할수 없는 행위)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소프트웨어를 리용, 복제, 전송,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표절, 판매하는 행위
2.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행위

제35조 (허가없이 소프트웨어를 리용할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복제하여 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리용할 경우
2. 법기관에서 사건조사에 리용할 경우
3. 무상으로 배포된것을 리용할 경우
4. 보관고, 전시관같은 곳에 보존하거나 진렬용으로 리용할 경우

제36조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소프트웨어의 명칭,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 저작권침해도구를 제작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 또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보호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소프트웨어의 등록, 보관,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대리기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리기관을 둘수 있다.

대리기관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일군으로 꾸려야 한다.

제39조 (감독통제)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프트웨어등록질서를 어긴 행위와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바이러스를 비롯한 악성프로그램의 제작, 복제, 유포행위, 망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파괴, 비법적인 열람행위같은 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 (분쟁해결)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할수 있다.

제41조 (손해보상)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여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재산상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 (몰수처벌)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비법적으로 얻은 돈과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 소프트웨어는 몰수한다.

제43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소프트웨어를 리용, 전송,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표절,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1만~10만원
2.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프트웨어의 개발, 개작에 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1만~10만원

제44조 (폐업처벌)

저작권침해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45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소프트웨어에 대한 등록, 공보를 바로하지 않아 소프트웨어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소프트웨어의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파손 또는 루실시켰을 경우
3.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소프트웨어의 명칭,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저작권침해도구를 제작하였거나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였거나 그 기술 또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바이러스를 비롯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복제, 류포하였을 경우
6. 소프트웨어를 밀매하였을 경우
7. 기타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앞항 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

주체93(2004)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3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소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제1조 (소프트웨어산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은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과 검사, 유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지위, 발전원칙)

소프트웨어산업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정보산업의 기본부문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 (소프트웨어산업의 계획적발전)

소프트웨어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부문의 계획화사업체계를 바로세워 소프트웨어제품생산을 늘이고 소프트웨어기술봉사를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원칙)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는 생산된 소프트웨어제품의 질을 판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제품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 (소프트웨어제품의 유통원칙)

소프트웨어제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것은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의 중요공간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와 수출입, 소프트웨어기술봉사에서 정해진 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제8조 (소프트웨어제품생산의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본공정이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제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9조 (생산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그 수요, 생산조건, 원가, 수익성, 실현가능성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단위의 조직과 등록신청)

소프트웨어제품생산단위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소프트웨어생산단위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단위명, 기구정원수, 개발분야, 설비보유정형 같은 것을 밝힌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생산단위등록증의 발급)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해당 단위의 소프트웨어제품 개발능력과 전문화수준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생산단위등록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계획지표의 등록)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준된 계획에 기초하여 분기별로 계획지표를 확정하고 월별로 분할하여 그것을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계획지표로 등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제13조 (설계심의)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대상에 대하여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요대상에 대한 설계심의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그 밖의 대상은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가 자체로 한다.

제14조 (계획지표의 우선생산)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소프트웨어제품, 협동생산품을 다른지표보다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제15조 (생산승인대상의 소프트웨어제품)

조작체계소프트웨어, 경영업무소프트웨어, 정보보안소프트웨어 같은 국가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리용할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편집물, 다매체제품생산)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민족의 미풍양속,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제17조 (주문생산)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을 받아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지표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외주문계약의 승인)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제품생산을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문건을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주문받고 생산할 소프트웨어제품의 품명, 납입기일, 지불조건, 분쟁해결, 준거법 같은 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의 정보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품생산의 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연구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생산, 류통하여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 (규격보장과 제정)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부문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 (생산공정확립 및 기술지도)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별생산공정을 세우고 그 요구를 정확

히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

제23조 (검사기관)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바로하는것은 소프트웨어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는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한다.

제24조 (검사받을 의무)

소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자체로 할 수 있다.

제25조 (검사신청서의 제출)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서를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견본과 규격, 요구명세서, 사용설명서 같은 기술문건,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26조 (검사방법)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는 대상에 따라 견본검사 또는 전량검사, 선택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규격과 기술문건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제품의 가능성, 효율성, 신뢰성, 호환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같은 것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요구)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 설비같은 검사조건을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요구되는 검사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제품검사통지서, 품질검사증발급)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을 검사한 다음 제품검사통지서 또는 품질검사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견본검사의 경우에는 제품검사통지서를, 전량검사, 선택검사의 경우에는 품질검사증을 발급한다.

제29조 (검사료금)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제품의 류통

제30조 (소프트웨어제품의 류통질서준수)

소프트웨어제품의 류통은 생산된 소프트웨어제품을 판매, 수출입하거나 소프트웨어기술봉사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제품을 류통시켜야 한다.

제31조 (상표, 생산단위의 표시)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에는 상표가 있어야 하며 제품명, 기술적특성, 생산단위, 제작날자, 규격번호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힌다.

제32조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는 정해진 봉사기업소를 통하여 한다.

소프트웨어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소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판매할수 없는 소프트웨어제품)

다음의 소프트웨어제품은 판매할수 없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
2. 생산중에 있는 소프트웨어제품
3. 검사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
4. 상표가 없는 소프트웨어제품
5. 가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가격등록을 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

제34조 (소프트웨어제품의 수출)

소프트웨어제품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은 수출할수 없다.

제35조 (소프트웨어제품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 교육 같은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제품을 수입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소프트웨어기술봉사)

소프트웨어의 설치봉사, 구축봉사, 보수봉사, 기술지원봉사, 기술자문봉사, 보급봉사 같은 소프트웨어기술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신용보증제)

국가는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와 소프트웨어기술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간은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에 맞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제38조 (소프트웨어제품가격의 제정과 등록)

소프트웨어제품의 가격은 국가가격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또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정한 소프트웨어제품가격은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39조 (소프트웨어산업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이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0조 (과학연구사업의 선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제품의 기술연구, 생산에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1조 (소프트웨어전문가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술장비의 현대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설비와 개발도구를 갱신하며 정보자료기지를 꾸리고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43조 (소프트웨어제품생산 및 기술봉사단위의 확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

에 맞게 전문화수준을 높이며 소프트웨어제품생산 및 기술봉사단위를 늘여야 한다.

제44조 (자금보장)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 소프트웨어기술봉사,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설비, 소프트웨어제품의 구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출항목을 바로 정하고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재정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45조 (정보통신보장)

중앙채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보장을 위한 현대적인 통신하부구조를 완비하며 정보의 고속도화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제6장 소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 (지도기관)

소프트웨어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검사, 류통, 다른 나라와의 공동개발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기업관리의 과학화, 계획맞물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에서 원단위소비기준과 노동정량을 바로 정하며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연구, 전문가양성, 수출입 같은 계획을 제때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49조 (비밀보장)

해당 기관과 공민은 소프트웨어제품생산대상에 대한 설계심의를 하거나 소프트웨어제품검사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설계심 의문건과 제품검사에 리용한 기술문건, 자료, 제품건본은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50조 (감독통제)

소프트웨어산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검사, 류통정

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반출입검사)

세관과 해당 기관은 반출입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은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52조 (몰수)

판매하지 못하게 된 소프트웨어제품을 유통시켰거나 승인없이 소프트웨어제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제품과 돈을 몰수한다.

제5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호로 채택

제1조 (우주개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인공지구위성과 같은 우주기구와 그 운반수단의 설계, 제작, 조립, 발사, 지상관제 및 운영질서를 규제한다.

제3조 (우주개발의 목적과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주개발의 목적은 국가의 리익을 고수하며 우주과학기술을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필수적인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다.

국가는 우주개발에서 주체성과 자립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우주를 평화적목적으로 개발한다.

제4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그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제5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계획을 작성한다.
2. 우리 나라 영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우주활동을 감독, 통제한다.
3. 우주개발기술 및 우주활동과 관련한 질서를 세운다.
4. 우주개발기술과 우주활동을 위한 하부구조건설을 지도한다.
5. 우주기구와 그 운반수단의 제작, 조립, 발사를 지도한다.
6. 우주기구로부터 받은 자료처리와 보급사업을 한다.
7. 우주활동의 안전을 보장한다.
8. 우주개발기술에 대한 인증사업을 한다.
9. 국제우주기구, 다른 나라 우주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진행한다.

10.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6조 (우주개발기관의 임무)

우주개발기관, 기업소는 우주기구제작설비들을 과학화, 정밀화하고 생산능력을 높여 통신위성, 기사위성, 관측위성과 같은 실용위성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우주활동승인을 받은 기관은 우주활동권리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제8조 (우주개발기술과 그 성과의 리용)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기술과 우주활동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국가의 리익과 경제발전, 인민생활을 위한 목적에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

국가는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 우주개발을 다그치고 우주과학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제10조 (우주개발분야의 일군양성)

국가는 우주과학기술분야의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 힘을 넣으며 우주개발분야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11조 (우주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우주개발계획의 작성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의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야 한다.
우주개발전망계획의 승인은 최고인민회의가 한다.

제12조 (우주기구의 설계)

우주기구의 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우주기구의 설계에 대한 심의, 승인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제13조 (우주기구의 제작과 조립)

우주기구의 제작, 조립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우주기구의 제작과 조립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반수단의 개발)

해당 기관은 우주기구를 궤도에 진입시킬수 있는 위력한 운반수단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주기구의 발사와 관련한 통보)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기구를 발사할 경우 유관국가들과 해당 국제기구들에 사전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공할수 있다.

제16조 (우주하부구조의 건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주기구발사시설들과 우주활동에 필요한 지상장비, 설비 같은 우주하부구조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우주기구의 발사와 안전보장)

우주기구의 발사는 정해진 안전조건들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할수 있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발사한 우주기구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우주기구의 등록)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발사한 우주기구를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해당 국제기구에 등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조사 및 구조, 피해보상)

우리 나라 영역에서 우주활동과정에 발생한 사고조사와 사고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은 국가 우주개발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한다.

우주활동과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의 우주활동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업은 국가 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20조 (우주개발분야의 국제협조원칙)

국가는 평등과 호혜, 호상보완의 원칙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우주개발분야에서의 협조를 실현한다.

제21조 (우주개발분야의 지적소유권보호)

국가는 우주개발분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국제법의 존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주개발 및 리용과 관련한 국제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국가는 우주개발과정에 다른 나라의 우주개발이나 국제적인 항행, 통신같은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

제23조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 반대)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국가는 우주활동분야에서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주체92(2003)년 8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64호로 채택

제1장 원산지명의 기본

제1조 (원산지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은 원산지명등록의 신청과 심의, 원산지명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특산품의 질을 보존하고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원산지명으로 되는 조건)

원산지명은 이름난 특산품에 그 생산지를 밝힌 것이다.

원산지명으로는 독특한 자연지리적환경이나 기술기능적조건으로 자기의 고유한 질적특성을 가지는 특산품이 생산된 나라와 지역, 지방의 지리적명칭이 된다.

제3조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원칙)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을 정확히 하는 것은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를 제때에 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원산지명등록의 심의원칙)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는 특산품의 생산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원산지명등록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원산지명권의 보호원칙)

원산지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원산지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제6조 (원산지명사업의 개선강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이름난 특산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원산지명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원산지명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제8조 (원산지명등록신청의 제기)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은 원산지명사업의 첫 공정이다.

특산품에 원산지를 밝히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 (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 밝힐 내용)

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특산품의 생산지를 밝히며 특산품의 기술기능적특성과 생산방법, 자연지리적요인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첨부한다.

제10조 (다른 나라 법인의 원산지명등록신청)

우리 나라에 원산지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선말로 된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나라가 발급한 원산지명등록을 증명하는 문건과 대리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결함있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의 처리)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12조 (원산지명등록신청날자의 인정)

원산지명등록의 신청날자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이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정해진 기일에 고쳐 다시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원산지명등록의 신청날자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3조 (원산지명등록신청접수증의 발급)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산지명등록신청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접수증에는 접수날자, 번호를 밝혀야 한다.

제14조 (원산지명의 다른 나라에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등록한 원산지를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제15조 (원산지명등록신청의 심의기간)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 것은 원산지명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산지명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보장)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산지명으로 등록할수 없는 지리적명칭)

원산지명으로 등록할수 없는 지리적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독특한 자연지리적환경이나 기술기능적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기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특산품이 생산된 곳의 지리적명칭
2.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았거나 허위적인 지리적명칭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은 지리적명칭
4. 상표로 등록되었거나 상표권을 침해할수 있는 지리적명칭
5. 이미 등록된 원산지명과 같거나 유사한 지리적명칭

제18조 (원산지명등록신청서의 심의결과처리)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제때에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를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원산지명등록증의 발급과 공보)

원산지명등록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원산지명을 원산지명등록부에 등록하며 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원산지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한 원산지명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된 원산지명에 대한 의견제기)

등록된 원산지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에 원산지명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원산지명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 (부결된 원산지명에 대한 의견처리기간)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이 부결된 경우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결정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확정된다.

제22조 (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처리기간)

원산지명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심의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다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제23조 (원산지명권보호의 기본요구)

원산지명권의 보호는 원산지명사업의중요요구이다.

원산지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원산지명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산지명권의 소유자)

원산지명권은 원산지명을 등록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한다.

제25조 (원산지명권소유자의 권리)

원산지명권소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원산지명을 사용할 권리 또는 사용을 허가할 권리
2. 원산지명권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와 손해보상을 청구할 권리
3. 등록된 원산지명을 취소할 권리

제26조 (원산지명의 보호기간)

원산지명의 보호기간은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원산지명의 사용을 중지한 날까지이다.

제27조 (원산지명의 등록변경신청)

원산지명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권의 보호기간안에 이름, 주소, 같은 것이 달라졌을 경우 원산지명등록변경신청서를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변경신청내용을 원산지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원산지명의 사용허가계약)

원산지명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권소유자와 원산지명사용허가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 (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보장)

원산지명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에 대하여 책임진다.

원산지명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명권소유자는 원산지명의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30조 (원산지명권의 양도, 변경리용금지)

원산지명권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할수 없으며 등록된 원산지명은 변경시켜 리용할수 없다.

제31조 (원산지명권의 취소)

원산지명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취소문건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명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32조 (원산지명권의 효력상실)

원산지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원산지명을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산지명권의 효력이 없어진다.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3조 (원산지명사업에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특산품의 질을 보장하고 인민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4조 (원산지명사업의 지도기관)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원산지명지도기관이 한다.

원산지명지도기관은 원산지명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 (원산지명사업의 지도내용)

원산지명지도기관은 원산지명을 특산품의 내용에 맞게 정확히 제정하며 원산지명의 등록신청, 등록과 변경, 취소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원산지명과 관련한 요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제때에 내야 한다.

원산지명과 관련한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7조 (비법적인 원산지명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원산지명을 제정, 인쇄, 판매하거나 등록된 원산지명과 같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원산지명사업의 감독통제기관)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원산지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원산지명의 등록신청과 등록, 보호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9조 (등록취소, 리용중지)

원산지명의 등록,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원산지명의 등록을 취소하였거나 원산지명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40조 (벌금, 손해보상, 몰수)

원산지명권에 따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또는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생산한 제품을 몰수한다.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원산지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 (분쟁해결)

원산지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원산지명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원산지명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

주체94(2005)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96호로 채택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제1조 (유기산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은 유기제품의 생산과 품질인증,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유기산업의 정의, 유기제품의 수요보장원칙)

유기산업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만든 비료, 농약, 사료, 수의약품, 원료, 자재, 가공첨가제 같은 것을 거의다 쓰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유익한 농산물, 수산물, 목제품,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공예품, 방직 및 피복제품 같은것을 생산하는 경제부문이다.

국가는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그 구조를 개선완비하여 유기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유기제품생산의 표준화, 규격화, 전문화원칙)

유기제품의 규격을 바로 정하고 생산을 전문화하는 것은 유기제품생산의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유기제품생산을 표준화, 규격화, 전문화하도록 한다.

제4조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원칙)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은 유기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유기제품의 대한 품질인증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 (유기제품의 수출입원칙)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줄이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유기제품의 수출입질서를 바로세우고 더 많은 유기제품을 수출하도록 한다.

제6조 (유기산업부문의 교육발전, 과학지식보급원칙)

국가는 유기산업부문의 교육발전에 힘을 쏟으며 이 부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유기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제8조 (생산계획의 작성)

유기제품의 생산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은 유기제품의 수요와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유기제품 생산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제9조 (규격의 제정, 갱신)

유기제품의 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유기제품의 규격을 환경보호와 생태계의 균형유지, 위생안전성과 질을 보장할수 있게 정하고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공정확립과 기술적문제협의)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련관계획의 실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생산과 련관된 원료, 자재의 생산 및 보장, 수송계획을 제때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생산부문의 균형보장)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규격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기제품의 수요와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제13조 (유기제품의 종자)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종자로 생산을 하여야 한다.

유선자변이종자는 유기제품의 생산에 리용할수 없다.

제14조 (유기제품생산과 비유기제품생산의 구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과 비유기제품을 엄격히 구별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비유기제품을 생산하다가 유기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유기제품지도기관이 정한 전환기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토지, 종자, 생산방법을 바꿀수 없다.

제15조 (새로운 유기제품의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운 유기제품을 자체로 개발하거나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유

기제품산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유기제품의 포장과 표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유기제품을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과 위생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고 재순환 및 재이용할수 있거나 생물학적으로 분배할수 있는 포장재로 포장하며 《유기》라는 표식이 있는 상표를 붙여야 한다.

제17조 (재생에너지의 개발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생산에서 석탄, 원유 같은 화석에너지소비를 극력 줄이고 자기 단위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태양열, 풍력, 생물가스 같은 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자원화기술의 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과정에 폐설물이 극력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은 무독화, 정화하여야 한다.

제19조 (유기제품의 가격제정)

유기제품의 가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중앙가격제정기관은 유기제품의 특성과 수요, 생산 및 보관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유기제품의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제20조 (품질인증기관)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은 중앙품질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에는 제품인증, 관리체계인증, 성원인증 같은 것이 속한다.

제21조 (품질인증신청서의 제기)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인증신청서를 해당 품질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품질인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명칭, 주소, 제품명 또는 관리체계명, 제품 또는 생산공정의 품질관리상태 같은 것을 밝히며 상표등록증, 생산허가증, 위생방역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품질인증신청의 심의기간, 자체검사)

해당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품질인증심의를 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심의에서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품질인증증서를 발급하고 인증표식을 정하여 주며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증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에 대한 검사를 자체로 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설비와 기구를 갖추고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품질인증신청자의 의무)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표준조작법, 제품규격문건, 공정일지 같은 것을 갖추며 해당 품질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설비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인증료금)

유기제품의 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증료금을 물어야 한다.

유기제품의 인증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5조 (유기제품에 대한 의견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품질인증을 다시 해줄 것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기관은 15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국제품질인증신청)

다른 나라의 규격으로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을 해당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 품질인증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품질인증지도기관의 합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제27조 (수출입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유기제품의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줄일수 있도록 유기제품의 수출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생산능력과 시장수요, 실현가능성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제28조 (유기제품을 수출입하는 무역회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을 수출입하려 할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 업종, 지표를 승인받은 무역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술합의신청서의 제기)

유기제품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유기제품을 취급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다음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에 기술합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술합의신청서에는 생산단위, 제품명, 규격, 수량, 생산날자, 대상국, 수송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30조 (기술합의신청서의 검토)

기술합의신청서를 받은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은 그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합의를 받지 않은 무역회사는 유기제품을 수출입할수 없다.

제31조 (수출입기준가격의 제정)

유기제품의 수출입기준가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2조 (관세)

수출하는 유기제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하는 유기제품에 대하여서는 같은 품목의 비유기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제5장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3조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은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장악등록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4조 (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교통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유기제품의 생산과 포장, 보관, 수송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상금, 보조금의 지불)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환기에 있는 유기농산물생산단위에는 해당하는 보상금을, 유기산업부문의 과학연구단위에는 보조금을 지불할수 있다.
유기산업부문에 주는 보상금, 보조금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국가계획기관,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 (과학연구사업강화와 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유기산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감독통제)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기제품의 생산, 품질인증과 검사, 수출입질서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유기제품의 생산 및 취급중지, 손해보상)

유기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이 기준지표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유기제품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그 질과 위생안전성을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해당 유기제품의 생산 또는 취급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유기산업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주체93(2004)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67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10(2021)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1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제1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정의와 법의 사명)

유전자전이생물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생물분류학적《과》의 범위를 벗어난 세포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새로운 유전적특성을 가진 생물체와 그 산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관리, 자료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고 인민들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이바지한다.

제2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원칙)

과학기술적인 담보밑에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는 것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입질서를 바로세우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원칙)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의 류출사고를 미리 막으며 환경에 부정적영향이 미치지않도록 한다.

제4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원칙)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자료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며 자료수집과 교환, 보호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도록 한다.

제5조 (투자원칙)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필요한 설비를 현대적으로 갖추며 전문일군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6조 (대중참가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을 널리 보급하며 그들이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유전자, 유전자운반체,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 우리 나라 주재 다른 나라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해당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인체용유전자전이의약품의 수출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제9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의 기본요구)

유전자전이생물은 위험성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연구개발하거나 생산, 수출입할수 있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와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제10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수출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수입당사자가 위험성평가문건과 해당 기관의 심의문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문건을 내지 않을수 있다.

제11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문건에 첨부할 문건)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리 수출당사자로부터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한 위험성평가문건과 해당 기관의 심의문건을 요구하여 신청문건과 함께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나라 또는 지역에서 위험성평가문건과 심의문건을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한다.

제12조 (과학연구, 전시회용유전자전이생물의 반입승인)

과학연구, 전시회 같은 목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승인을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우리 나라를 경유하는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한 통보)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유전자전이생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그 품명과 수량, 포장 및 표식상태, 출발지와 도착지, 수송방법 같은 것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문건접수검토)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을 접수하면 90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문건의 접수통지절차와 방법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생물안전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다.

제15조 (결합있는 신청문건의 반송)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에 결합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낼수 있다.

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결합을 고치고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16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담당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을 받은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는 전문과학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한다.

제17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방법)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은 과학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유전자전이생물의 특성과 그것이 사람의 건강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위험성평가항목과 기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제18조 (위험성평가보고서제출)

유전자전이생물을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과학연구기관은 위험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위험성평가보고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분석을 요구하거나 전문일군을 참가시킬수 있다.

제20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결과통기기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결과를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70일안으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1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유전자전이생물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전이생물
2.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전이생물

제22조 (재심의제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부결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다시 심의하여 줄데 대한 의견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통지하여주어야 한다.

제23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의 취소)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이 승인된 유전자전이생물이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을 경우
2. 속임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을 받았을 경우
3. 승인받은 목적, 내용과 다르게 유전자전이생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24조 (위험성이 없는 유전자전이생물의 등록 및 공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유전자전이생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유전자전이생물자료교환기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을 공개할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절차의 간소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공개된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서는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제26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험성급수에 따르는 해당 생물안전실험실에서 폐쇄적리용기준과 실험조작규범의 요구대로 연구개발사업을 하여

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연구개발의 위험성등급과 폐쇄적리용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제27조 (유전자등록 및 검정)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에 리용하는 유전자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등록하며 국가검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정받지 않은 유전자는 연구개발에 리용할수 없다.

제28조 (연구개발한 유전자전이생물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새로 연구개발하였을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유전자전이생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전자전이생물은 생산에 도입할수 없다.

제29조 (생물안전인증)

유전자와 관련한 기술봉사를 하거나 첨단생물공학제품 및 유전자전이생물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물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송)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야 한다. 밀폐하지 않은 수단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송할수 없다.

제31조 (유전자전이생물의 표식)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 물품을 포장하고 유전자전이생물표식을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표식을 허위로 하거나 마음대로 변경 또는 삭제할수 없다.

포장, 표식형식과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제32조 (유전자전이검사, 검정)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신청을 하고 유전자전이검사, 검정기관의 검사,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받지 않은 수입동식물(가공품 포함)에 대하여서는 가격을 제정할수 없다.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식료품, 의약품에 대한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은 따로 정한데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다.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들여오는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에 대한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진행한 기관

은 그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검사방법)

해당 검사, 검역기관은 수출입하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승인문건구비상태와 포장 및 밀폐, 표식상태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입승인문건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유전자전이생물과 포장 및 밀폐, 표식상태가 불비한 유전자전이생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억류하고 즉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유전자전이생물의 보관)

유전자전이생물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밀폐된 보관시설을 꾸리며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유전자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관하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35조 (유전자전이생물의 판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험성평가를 받고 안전성이 담보된 유전자전이생물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포장을 하지 않았거나 표식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유전자전이생물은 판매할수 없다.

제36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정형의 기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정형을 정상적으로 살피며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 (피해발생에 대한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과정에서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

제38조 (유전자전이생물의 폐기, 퇴송, 멸균, 소독조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승인없이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였거나 그것이 금지, 제한되었거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폐기, 퇴송, 멸균, 소독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제39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보호의 기본요구)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보호하는 것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보장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자료교환기지를 꾸리고 컴퓨터에 의한 자료교환망을 형성하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집, 교환하여야 한다.

제40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요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비밀엄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취급 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승인없이 누설하거나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2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제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는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신청 문건에 반영된 자료를 특별히 보호해줄데 대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명칭 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일반자료, 사고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그밖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료 같은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43조 (보호자료의 확정)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보호하여 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보호할수 없는 유전자전이생물자료에 대하여서는 그 리유를 밝혀야 한다.

제44조 (보호자료의 공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보호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합의하고 공개할수 있다.

합의되지 않은 자료는 공개할수 없다.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의 지도기관)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관리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과 생물안전에 관한 국제조약의 리행대책을 토의결정한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제47조 (유전자전이생물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강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관리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8조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의 보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출판보도기관, 교육기관, 자연보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인민들속에서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49조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관리부문에 조성된 자금은 새로운 유전자전이검정기술확립과 유전자전이분석에 필요한 시약, 설비보장과 같은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리용하도록 한다.

제50조 (위험성평가료금 및 유전자전이검사, 검정료금)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를 받았거나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에 대한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문다.

해당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51조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 자료보호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공민에게 1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동식물(가공품 포함)에 대한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검정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기 전에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을 처리하였을 경우
2. 생물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전자와 관련한 기술봉사를 하거나 첨단생물공학제품 및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
3. 유전자전이생물을 정해진대로 포장, 표식하지 않았거나 수송, 보관, 판매하였을 경우

제53조 (중지 및 몰수처벌)

이 법 제52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여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위법행위와 연관된 물자를 몰수한다.

제54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와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유전자전이생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공개하였을 경우
3. 유전자를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넘겨주었을 경우
4. 등록되지 않았거나 검정받지 않은 유전자를 연구개발에 리용하였거나 생산에 도입하였을 경우
5.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의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비법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루설하였거나 리용하였을 경우

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5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동통신법

주체109(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8호로 채택

제1장 이동통신법의 기본

제1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봉사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지휘통신과 인민경제의 생산지휘통신을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이란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무선통신이다.
2. 이동통신망이란 임의의 장소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수단과 체계로 이루어진 망으로서 여기에는 망에 등록된 이동통신말단기, 가입자식별카드같은 이동통신수단과 중심조종체계, 이동통신기지국이 속한다.
3. 이동통신말단기란 손전화기, 이동통신망에 등록된 판형컴퓨터, 이동통신모뎀 등이다.
4. 이동통신시설이란 이동통신보장에 리용되는 안테나, 기계장치, 철탑, 선로, 설치를, 건물 등이다.
5. 이동통신가입자란 이동통신망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인과 해외동포이다.

제3조 (이동통신시설의 건설원칙)

국가는 이동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이동통신시설건설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 이동통신망을 현대적으로 완비하도록 한다.

제4조 (이동통신시설의 관리운영원칙)

국가는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이동통신시설의 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제5조 (이동통신봉사와 리용원칙)

국가는 이동통신봉사와 리용에서 신속성, 정확성, 봉사성, 안전성, 문화성, 비밀보장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과학연구사업 및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이동통신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 하며 이동통신분야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이동통신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이동통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적용대상)

이 법은 이동통신시설을 건설, 관리운영하거나 이동통신을 봉사,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동통신을 리용하려는 외국인, 해외동포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제9조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이동통신시설의 건설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가 아닌 기관, 기업소가 이동통신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동통신시설의 건설설계작성)

이동통신시설건설을 위한 설계작성은 체신부문의 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체신부문의 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이동통신시설건설과 관련한 설계합의)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설계에 이동통신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체신기관,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동통신시설건설계획)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계획안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제출한 건설계획안에 기초하여 이동통신시설건설계획을 세우고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설에서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준수)

이동통신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4조 (준공검사와 기술검사)

이동통신시설을 건설한 다음에는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으로부터 준공검사와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와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이동통신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제15조 (이동통신시설보호구역의 설정)

이동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이동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한다.
이동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6조 (이동통신시설관리운영)

이동통신시설의 관리운영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중앙체신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할수 있다.

제17조 (이동통신시설관리운영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설비관리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2. 근무성원이 근무장소를 리탈하거나 근무장소에 외부인원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3. 근무교대시 교대성원에게 기계설비의 기술상태를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력보장)

전력공급기관, 기업소는 이동통신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중단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동통신시설의 정상운동을 보장할수 있도록 자연에 내르기에 의한 전력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19조 (기계설비의 점검과 보수)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과 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고퇴치)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자연재해 또는 그밖의 원인으로 이동 통신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퇴치하여 통신을 중단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이동통신시설의 사고퇴치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1조 (이동통신시설의 빌려주기 및 이동금지)

이동통신시설은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에게 빌려주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수 없다.

제22조 (이동통신망의 보안대책)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보안급수대로 이동통신망에 대한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이동통신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등 이동통신부문에 필요한 조건을 제 때에 보장

하여 이동통신시설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통신의 봉사 및 리용

제24조 (이동통신봉사단위)

이동통신봉사는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이동통신봉사에는 가입자식별카드 및 이동통신말단기의 판매봉사, 이동통신가입자 의 문의 봉사, 요청봉사,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 및 수매봉사, 자료통신봉사같은것이 속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업종승인,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도 이동 통신말단 기의 판매봉사, 수리 및 수매봉사를 할수 있다.

제25조 (이동통신봉사에 대한 업종승인)

이동통신말단기의 판매봉사, 수리 및 수매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중앙체신 지도기관 과 전파감독기관에 기관명, 봉사업종, 소재지같은것을 밝힌 이동통신봉사업종 승인신청문건 을 내고 업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은 이동통신봉사업종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26조 (영업허가증의 발급)

이동통신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봉사업종에 따르는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이 합의한 업종승 인문건에 기초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영업허가증의 기일연장)

이동통신봉사영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영업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 월전에 영 업허가증 발급기관에 신청문건을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기일을 연장받아야 한다.

제28조 (이동통신봉사에서 지켜야 할 요구)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이동통신봉사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영업허가증을 갖추며 승인된 업종에 한해서만 이동통신봉사를 하여야 한다.
2. 영업허가증에 지적된 장소에서만 봉사하여야 한다.
3. 이동통신봉사에서 신속성, 정확성, 친절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료통신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자료통신봉사 또는 이동통신말단기용으 로 개발 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경우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이동통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이동통신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동통신봉사종류에 따르는 이동통신 등록신청서를 체신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이동통신등록신청내용을 검토하고 등록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동통신자료의 관리)

체신기관, 기업소는 이동통신자료를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정한 질서에 따라 등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이동통신자료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열람할수 없다.

제32조 (이동통신등록내용의 변경)

이동통신가입자는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체신기관, 기업소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변경등록하고 그 정형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 (이동통신리용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동통신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이동통신을 리용하는 과정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동통신수단의 조작체계를 변 경시켜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수단을 등록 및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이동통신수단을 상적행위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이동통신수단의 분실통지)

이동통신가입자는 이동통신수단을 분실하였을 경우 제때에 체신기관, 기업소에 알려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분실된 이동통신수단에 대한 이동통신봉사를 립시 또는 완전중 지할수 있다.

제35조 (이동통신설비, 수단의 비법거래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이동통신설비와 수단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거나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이동통신요금지불)

이동통신봉사를 받는 이동통신가입자는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이동통신봉사와 관련한 요금은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제4장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봉사,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벌금, 영업중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1. 업종승인을 받지않았거나, 영업허가증이 없이 이동통신봉사를 하였을 경우
2. 영업허가증의 기일연장을 하지않았거나 정해진 봉사가격을 어기고 이동통신봉사를 하였을 경우
3. 승인받은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봉사를 하였을 경우
4. 승인받지 않은 이동통신말단기체계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을 봉사하였을 경우

제39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이동통신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주체90(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채택
주체95(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4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제1조 (저작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와 저작권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창작품을 말한다.
2. 복제는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록음, 록화하는것을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을 가지고 대중앞에서 출연하는것을 말한다.
4. 상영은 저작물을 영사기, 환등기같은 기술설비를 리용하여 대중앞에서 재현하는것을 말한다.
5. 방송은 대중이 동시에 수신할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통신으로 저작물을 송신하는것을 말한다.
6. 전송은 개인이 선택한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할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통신으로 저작물을 송신하는것을 말한다.
7. 전시는 저작물을 차려놓고 대중에게 보이는것을 말한다.
8. 배포는 저작물을 대중에게 보급, 판매하거나 대출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 (저작권의 보호원칙)

저작권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4조 (저작물의 리용원칙)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저작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 (저작린접권의 보호원칙)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6조 (외국인의 저작권보호)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결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7조 (저작권보호의 제외대상)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8조 (저작권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저작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9조 (저작권대상선정의 기본요구)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저작권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화, 텔레비존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11조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개작한 저작물)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제12조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편집저작물)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

택이나 배열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저작권의 제외대상)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것은 상업적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3장 저작권자

제14조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3.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16조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을 복제, 공연, 상영, 방송, 전송할 권리
2.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3.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4.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제17조 (저작권의 소유)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8조 (공동소유의 저작권)

두명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자들이 공동으로 가진다.

공동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수도 있다.

제19조 (영상저작물저작권의 소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제작한자가 가진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리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 같은것에 대한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수 있다.

제20조 (원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저작물을 개작, 편집한자는 저작권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자만이 가진다.

인격적권리는 양도, 상속할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

제22조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양도)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재산적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계승)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는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제24조 (저작물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5조 (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보호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6조 (저작권보호기간의 계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제4장 저작물의 리용

제27조 (저작물리용의 기본요구)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상영, 방송, 전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저작물의 리용, 허가)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제29조 (저작물의 우선적리용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제30조 (저작물의 리용범위, 저작물리용권의 양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저작물의 출처명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물창작에 이미 나간 사진이나 글 같은 저작물을 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미 나간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저작물은 발표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작물의 출처를 밝힐수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저작물의 리용료금)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3조 (저작물의 무허가리용)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가정적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렬,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3.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작성에 리용할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록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제5장 저작린접권자

제34조 (저작린접권자의 의무)

저작린접권자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자이다.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자는 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저작린접권자의 공연권리)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한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수도 있다.

제36조 (저작린접권자의 록음, 록화물제작권리)

저작물을 리용하여 록음 또는 록화물을 제작한자는 그것을 복제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록음 또는 록화물, 복제물을 배포할수도 있다.

제37조 (저작린접권자의 방송권리)

저작물을 리용하여 방송한자는 그 방송물을 록음, 록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을 할수도 있다.

제38조 (저작린접물의 사용)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9조 (저작린접권의 보호기간)

저작린접권보호기간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까지이다.

보호기간의 계산은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다.

제40조 (저작린접권의 양도, 상속)

저작린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수 있다.

제41조 (저작린접물의 무허가리용)

공연물, 록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은 제32조에서 정한 경우들에 한하여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할수 있다.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저작권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저작권사업의 지도)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문화지도기관, 출판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문화지도기관, 출판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린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4조 (저작권사업의 대리기관조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문화지도기관, 출판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5조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의 등록)

저작권자 및 저작린접권자는 저작물 및 저작린접물의 제목, 종류, 발표날자, 권리의 변경 등을 해당 기관에 등록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저작권자 및 저작린접권자등록정형을 컴퓨터망을 통하여 알리거나 등록부를 열람하게 할수 있다.

제46조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의 침해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침해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 저작물을 발표하거나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공동저작물을 자기의 단독저작물로 발표하는 행위
2.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같은것을 고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표절하거나 모방하는 행위
4. 저작권자 및 저작린접권자의 허가없이 그 저작물 또는 저작린접물을 복제, 공연, 상영, 방송, 전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하는 행위
5. 저작물을 리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6. 기타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을 침해한 행위

제47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문화지도기관, 출판지도기관

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문화지도기관,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 (손해보상)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0조 (분쟁해결)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7호로 채택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제1조 (전기통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지휘통신과 산업통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전기적수단에 의하여 음성, 영상, 글자, 수자, 기호, 그림 같은 것을 송수신 및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망이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송하기 위한 전기통신수단과 체계로 이루어진 망을 말한다.
3. 전기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보장에 리용되는 기계나 장치, 선로 같은 것을 말한다.
4. 전기통신가입자란 전기통신망을 리용하여 전기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제3조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원칙)

전기통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전기통신시설을 현대화하고 그 운영을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원칙)

국가는 전기통신시설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그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전기통신시설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원칙)

국가는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에서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봉사성, 문화성, 비밀보장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전기통신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전기통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전기통신분야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전기통신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기통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전기통신시설을 건설 및 관리하거나 전기통신을 보장,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제9조 (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기통신에 대한 전망적인 수요를 타산하여 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기통신시설건설의 설계작성)

전기통신시설건설설계는 체신설계기관이 한다.

체신설계기관은 건설대상과 규모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기통신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전기통신시설건설의 담당자)

전기통신시설건설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구내전기통신시설을 따로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체신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건설한다.

제12조 (설계에 기초한 전기통신시설건설)

전기통신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전기통신시설건설을 할수 없다.

제13조 (전기통신하부구조시설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 공공건물, 살림집 같은 것을 건설하는 경우 체신기관과 합의하여 전기통신하부구조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검사)

전기통신시설건설이 끝나면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전기통신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제15조 (전기통신시설관리의 담당자)

전기통신시설의 관리는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따로 설치한 구내전기통신시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제16조 (전기통신시설의 점검)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전기통신시설의 보수)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보수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나 그밖의 사정으로 전기통신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

전기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9조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의 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의 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 (전기통신기계실출입금지)

전기통신기계실에는 성원의 다른 인원이 들어갈수 없다.

필요에 따라 성원의 다른 인원을 들여보내려 할 경우에는 기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전기통신시설관리조건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의 관리를 위한 체신기관, 기업소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제22조 (전기통신의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보장)

전기통신을 제때에 보장하는 것은 체신기관, 기업소의 기본임무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의 조직과 운영을 바로하여 전기통신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전기통신계획의 작성)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전기통신의 수요에 맞게 전기통신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전기통신의 수요와 질보장)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시설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통신방식을 받아들여 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전기통신망을 통한 여러 가지 봉사)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과학기술보급, 원격교육, 원격의료봉사, 화상회의 같은 여러 가지 통신봉사를 할수 있다.

제26조 (전기통신리용신청)

전기통신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신종류에 따르는 리용신청서를 만들어 체신기관에 내야 한다.

전기통신리용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7조 (전기통신리용신청에 대한 심의)

전기통신리용신청을 받은 체신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때에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 (명의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가입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려 할 경우 체신기관에 명의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전기통신리용조건보장)

체신기관은 전기통신리용이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1개월안으로 통신을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전기통신가입자자료의 관리)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가입자자료를 정확히 등록하고 규정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전기통신가입자자료는 승인없이 열람할수 없다.

제31조 (전기통신리용질서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전기통신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기통신을 리용하는 과정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전기통신수단에 불건전한 자료를 입력하거나 사용할수 없게 된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32조 (전기통신시설, 수단, 비법적인 반입, 매매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전기통신수단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수단을 정해진데 따라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비법적으로 전기통신수단을 등록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전기통신요금)

전기통신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전기통신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통신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 (전기통신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전기통신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제38조 (행정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전기통신시설건설질서를 어겨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도로, 공공건물, 살림집 같은 것을 건설하면서 전기통신하부구조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망탕 하였을 경우
3. 전기통신관리 및 보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기통신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전기통신리용질서를 어겨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전기통신리용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6.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파손시켰을 경우
7. 전기통신수단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제39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8호로 채택

제1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제1조 (전자인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은 전자인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컴퓨터망과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증이란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한자의 신분, 전자거래의 정확성 같은 것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거래란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 처리, 전송 또는 보관될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가입자란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의 서명자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검증할수 있도록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된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6. 전자인증열쇠란 신분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만드는데 리용하는 정보 또는 장치를 말한다.
7. 전자증명서란 가입자의 신분이나 자격 같은 것을 증명하는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8. 전자인증기관이란 전자인증봉사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전자인증체계의 수립원칙)

전자인증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은 컴퓨터망과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국가적인 전자인증체계를 통일적으로 세우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 (전자인증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자인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6조 (법의 적용)

이 법은 컴퓨터망, 전자거래체계를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리용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의 단체, 기업, 국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제7조 (전자인증대상)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서 전자인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의 신분, 자격
2. 컴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실체
3.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내용의 정확성
4. 기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정한 대상

제8조 (전자인증등급의 구분)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눈다.

전자인증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9조 (전자인증등급의 제정기관)

전자인증등급은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할 부문의 전자인증대상에 대한 등급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인증등급을 바로 정하고 전자인증사업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증명서의 발급)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자인증기관에 신분이나 자격, 컴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유일식별정보 같은 것을 등록하고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인증서발급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1조 (전자인증열쇠의 관리)

가입자는 전자인증열쇠를 정해진 질서대로 안전하게 보관리용하며 그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

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전자인증열쇠를 분실당하였거나 로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전자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다른 가입자의 전자인증열쇠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전자증명서의 사용중지, 회복, 폐기)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전자인증기관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사용중지, 회복 및 폐기를 요구할수 있다.

퇴직 또는 조동 같은 리유로 전자증명서에 기입된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제때에 전자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입자신분 및 컴퓨터실체의 인증방법)

가입자의 신분인증, 컴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실체인증은 전자증명서를 리용하여 전자인증열쇠의 소유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인증열쇠의 비밀을 로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전자문서의 인증방법)

전자문서를 작성하였거나 승인한 가입자는 전자인증열쇠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다음 전자증명서와 함께 발송한다.

제15조 (전자사본의 효력)

종이문서를 전자사본하는 방법으로 입력된 전자문서는 사본자, 사본날자, 원본과의 동일성을 전자서명으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 전자거래의 증빙문서로 리용할수 있다.

제16조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수표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전자서명에 리용되는 전자인증열쇠가 서명당시 서명자의 유일한 소유로서 서명자에 의해서만 리용되고있어야 한다.
2. 전자문서에 서명한 후 그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보관된 전자문서의 효력)

가입자가 보관한 전자문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전자문서내용을 열람, 검색할수 있어야 한다.
2. 전자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재현할수 있어야 한다.
3. 전자문서의 작성자와 송수신자, 시간, 장소 같은 것을 식별할수 있어야 한다.

제18조 (전자인증수단의 리용승인, 규격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자인증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장치수단을 새로 개발하였거나 갱신하였을 경우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거나 보급, 리용하여야 한다. 전자인증과 관련한 규격을 제정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19조 (컴퓨터망, 전자거래체계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려 할 경우 전자인증을 비롯한 보안대책을 세운 다음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자인증봉사료금)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는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장 전자인증기관

제21조 (전자인증봉사신청)

전자인증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물질기술적조건을 갖추고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전자인증봉사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자인증봉사신청의 심의)

전자인증봉사신청문건을 접수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은 전자인증봉사를 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가를 따져보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전자인증봉사의 내용과 범위를 밝힌 전자인증봉사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3조 (전자인증기관의 자격)

전자인증봉사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인증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것과 같은 전자인증봉사를 할수 있다.

제24조 (전자인증업무준칙의 작성 및 등록)

전자인증기관은 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자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전자인증봉사의 안전성보장)

전자인증기관은 봉사와 관련한 업무사항을 가입자에게 알려주고 전자인증봉사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6조 (전자인증봉사의 중지)

전자인증기관은 전자인증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전자인증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인증봉사를 중지하기 30일전에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전자인증봉사의 위임)

전자인증기관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자인증봉사의 일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전자인증봉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전자인증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의 보관관리)

전자인증기관은 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정해진 기간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는 변경, 삭제하거나 루설할 수 없다.

전자인증기관에 보관된 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열람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9조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은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며 전자인증사업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전자인증체계의 부문구조와 전자인증기능을 더욱 완비해나가야 한다.

제30조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자인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1조 (손해보상)

전자인증기관은 전자인증봉사과정에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전자거래업무자료를 류실, 파괴시켜 가입자에게 손실을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3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가입자가 허위로 발급받았을 경우
2. 비법적으로 전자인증열쇠의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거나 다른 가입자의 전자인증열쇠를 도용하였을 경우
3. 전자증명서에 기입된 내용이 달라진 후에도 재발급받지 않고 그대로 리용하였을 경우
4. 전자인증질서를 지키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새로 개발하였거나 갱신한 전자인증관련 프로그램과 장치수단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 보급, 리용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전자인증봉사를 하였거나 중지하였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자인증봉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8. 전자인증업무준칙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9.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변경, 삭제하였거나 루설시켰을 경우

제3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

주체95(2006)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0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제1조 (전파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리익을 지키며 전파장애를 없애고 무선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전파설비의 등록원칙)

전파설비의 등록은 무선통신설비, 방송설비, 특수전자설비 같은 전파설비를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모든 전파설비를 정확히 등록하도록 한다.

제3조 (전파설비의 리용원칙)

전파설비를 바로 리용하는 것은 주파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전파설비의 리용에서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전파관리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전파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파관리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제5조 (전파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파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전파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표부, 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전파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제8조 (전파설비등록의 기본요구)

전파설비를 등록하는 것은 전파설비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의 목적이다.

등록하지 않은 전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따로 정한 전파설비는 등록하지 않고 리용할수 있다.

제9조 (전파설비의 등록신청)

전파설비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에 전파설비등록신청서를 내야한다.

전파설비등록신청서에는 리용자의 이름, 주소, 품명, 용도, 구입경로, 리용하려는 주파수, 출력, 통신시간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등록신청의 처리)

전파설비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전파감독기관은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파설비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전파설비의 기술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또는 수입한 전파설비에 대하여 전파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전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제12조 (전파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이관, 폐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하거나 설치, 구조변경, 이관, 폐기하거나 전파설비의 설치장소를 옮기려 할 경우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전파설비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용 전파설비를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동용전파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전파설비의 등록, 검사, 주파수사용료금지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를 등록하거나 기술검사를 받거나 통신주파수를 할당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제15조 (전파설비리용의 기본요구)

전파설비의 리용은 전파를 통하여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의 리용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6조 (주파수의 사용)

전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에서 할당한 주파수, 호출부호, 통신시간을 지켜야 한다.

할당받은 주파수, 호출부호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17조 (무선통신의 대상)

무선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상과만 하여야 한다.

조난, 자연재해, 해적행위 같은 비상정황을 알리는 무선통신은 승인없이 할수 있다.

제18조 (통신망의 리용)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구성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리용할수 없다.

제19조 (방송설비의 리용)

방송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파감독기관이 승인한 주파수, 출력, 봉사구역, 사용전기마당세기 같은 기술기준한계를 지켜야 한다.

제20조 (제압방송설비의 리용)

제압방송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가동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설비의 가동지령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제21조 (시험전파의 발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파설비의 정상상태를 검사하거나 시험전파를 내보낼수 있다. 이 경우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고주파설비의 리용)

고주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한도에서 장애전파가 발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전파발사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고주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제23조 (컴퓨터의 보안조치)

컴퓨터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를 통하여 비밀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당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전파설비리용문건의 구비)

전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문건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문건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제25조 (무선통신일군)

무선통신은 무전수자격을 가진 전임무전수 또는 무선통신담당 일군이 한다.
무전수의 자격판정은 비상설무전수자격심사위원회가 한다.

제26조 (무선통신의 안전보장)

무선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선통신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무선통신의 안전보장사업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7조 (방송설비의 조작)

방송설비의 조작은 해당 자격을 가진 무선공이 한다.
해당 자격이 없는자는 방송설비를 조작할수 없다.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무선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9조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전파감독기관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 (주파수의 조정)

국가는 전국적인 주파수조정을위하여 해당 기관에 비상설로 주파수조정위원회를 둔다.
주파수조정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리용하는 주파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전파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전파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2조 (전파관리와 관련한 자료요구)

전파감독기관은 전파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파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벌금적용, 전파설비의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1. 전파설비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2.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전파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
3. 허가없이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구성 또는 리용하였을 경우
4. 리용이 금지된 전파설비를 수입하였거나 구입하였을 경우
5. 전파설비를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제34조 (전파설비리용의 중지)

정해진 주파수, 출력, 호출부호 같은 제원을 어기고 무선통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전파설비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35조 (해당한 자격의 박탈)

정해진 무선통신안전보장질서를 어기고 무선통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자격을 박탈한다.

제3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전파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

주체86(199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주체90(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4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체신법의 기본

제1조 (체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은 체신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기통신, 우편 통신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체신에 대한 소유권)

체신은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하는 봉사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 (체신발전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신정책에 의하여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체신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 당과 국가의 사상과 의도가 전국각지에 제때에 가닿게 하며 인민경제의 정보화와 사회경제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실현하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원만히 제공해주도록 한다.

제4조 (전기통신능력을 높일데 대한 원칙)

전기통신은 현대통신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음성, 자료통신과 같은 정보통신을 실현하는 유선 및 이동통신설비들과 정보전송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전기통신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제5조 (우편통신의 보장원칙)

우편통신을 보장하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우편통신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우편통신수단을 늘여 우편물이 수요자에게 더 빨리,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6조 (방송수요의 보장원칙)

방송시설운영은 방송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방송시설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송을 다양화하여 늘어나는 방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체신시설의 관리원칙)

체신시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체신시설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신시설을 사랑하고 적극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 (신속성, 정확성, 비밀의 보장원칙)

국가는 체신활동에서 신속성, 정확성, 비밀을 보장하며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 (체신사업의 정규화, 규범화원칙)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10조 (체신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체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전기통신

제11조 (전기통신보장의 기본요구)

전기통신을 보장하는 것은 체신의 기본사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조직과 운영을 짜고들어 국가지휘통신, 인민경제지휘통신, 인민생활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지휘통신은 우선 보장한다.

제12조 (전기통신계획의 작성과 수행)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음성, 자료통신의 수요에 맞게 정보전송능력과 교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세우고 수행하여야 한다.

전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13조 (정보전송능력의 확장과 질보장)

체신기관, 기업소는 늘어나는 정보전송수요의 요구에 맞게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 리까지 빛섬유케블을 늘이고 다층적인 전송보호체계를 세우며 정보전송능력을 확장하여야 한다.

빛섬유케블을 비롯한 정보전송시설은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정해진 기술기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통신시설운영의 정보화와 보안능력의 강화)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시 또는 재해시에도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형태의 통신망을 2중, 3중으로 구축하며 통신시설운영을 정보화하고 전기통신의 질과 봉사성, 통신선로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망의 보안능력을 강화하여 통신과 정보봉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국제전기통신의 수요와 질보장)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전기통신의 방향별회선수를 늘이고 새로운 통신방식을 받아들여 국제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구내통신시설, 설비의 기술지표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내통신시설과 설비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와 정비사업을 실속 있게 하여 구내통신시설과 설비의 기술지표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통신시설과 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국가통신망에 련결, 설치하거나 철수, 이설, 폐기할수 없다.

제18조 (통신선로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빛섬유케블을 비롯한 통신선로가 있는 구간에서 건설 또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 체신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전기통신수단리용에서 국가기밀루설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는 과정에 국가비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우편통신

제20조 (우편통신의 기본요구)

우편통신은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사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편지, 전보, 소포, 정기출판물 같은 우편물의 체송과 전달공정을 합리적으로 맞물리며 우편통신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21조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의 배치와 우편업종)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와 농촌의 실정에 맞게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를 배치하고 우편업종을 늘여야 한다.

우편업종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22조 (우편통신의 신속성보장)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물취급공정과 배송수단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전자우편운영을 정상화하여 우편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우편통신업무의 정규화, 우편용품의 규격화, 표준화)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통신업무를 정규화하며 우편통신의 정확성과 문화성,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편용품은 규격화,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24조 (우편물의 수송)

체신기관과 교통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철도우편차량, 우편자동차, 비행기 같은 우편 수송수단을 늘여 우편물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25조 (국제우편물의 검사, 검역)

세관과 검역기관은 국제우편물을 다른 짐보다 먼저 검사, 검역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물의 도착, 출발시간을 해당 세관이나 검역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26조 (우편통신원, 배송승무원의 사업조건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편통신원, 배송승무원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역, 무역항, 비행장 같은데는 우편물을 신고부리는 장소와 우편물통로를 정하며 우편수송수단을 제때에 통과시켜야 한다.

제27조 (우편물의 취급)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정해진 우편물의 규격, 형식, 기준질량, 포장방법 같은것을 지켜야 한다.

문건, 신분증명서, 화폐, 량곡, 폭발물, 독성물질,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 같은 것은 우편으로 보낼수 없다.

제28조 (우편물의 퇴송과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달할수 없게 된 우편물을 발송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전달할수 없거나 돌려보낼수 없는 우편물은 정해진데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국제우편통신업무의 당사자)

국제우편통신업무는 해당 체신기업소가 한다.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통신수단을 현대화하여 늘어나는 국제우편통신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우편물사고의 책임)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체송, 전달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발송자의 허물, 우편물자체원인 같은 것으로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4장 방송시설운영

제31조 (방송시설운영의 기본요구)

방송시설운영을 잘하는 것은 체신기관의 중요업무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국, 중계소의 방송기, 중계기 안테나 같은 방송시설운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중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32조 (방송의 출력과 질, 주파수)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와 측정, 조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최신방송기술수단과 새로운 방송방식을 받아들여 방송의 출력과 질을 높이고 주파수를 늘여야 한다.

제33조 (방송체계의 완비)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TV방송체계를 정비하고 방송통로를 늘이며 수자식TV방송과 수자식 소리방송을 전국에 확대하여야 한다.

제34조 (유선방송시설의 정비, 정해진 방송프로그램의 중계)

체신기관, 기업소는 유선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정해진 기술기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방송프로그램을 중계하며 그 중계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35조 (경보방송체계와 시험운영)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우고 각종 경보방송을 원만히 할수 있게 시험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유선방송시설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살림집과 작업장, 공공장소에서 유선방송을 들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해당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전파리용의 효과성제고)

체신기관은 주파수관리체계를 바로세워 전파리용의 효과성을 높이며 여러가지 전파장애를 제때에 극복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전파설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운영하여 통신, 방송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무선방송설비, 위성통신송신설비의 설치, 운영금지)

우리 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무선방송 설비, 위성통신송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수 없다.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제39조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체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은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맞물려 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지휘통신망의 현대화)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지휘통신을 중단없이 신속정확하게 보장할수 있도록 국가지휘통신망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우편물취급단위와 취급시설, 통신취급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 같은 우편물취급단위를 문화적으로 꾸리고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중요철도역, 항공역, 무역항, 호텔 같은데는 통신취급실을 설치한다.

제42조 (방송국, 중계소의 건설)

체신기관, 기업소는 TV방송과 수자식소리방송을 모든 지역에 확대할수 있도록 방송국과 중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방송국과 중계소의 위치는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곳에 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유선방송중계체계의 완비)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력선, 고정통신, 이동통신, 수자식소리방송을 통한 유선방송중계체계를 완비하고 유선방송의 현대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44조 (체신설비, 자재, 부속품의 생산)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체신설비, 자재, 부속품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체신현대화에 필요한 국산화된 제품과 설비를 적극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체신부문의 과학연구사업)

체신부문의 과학연구기관은 통신능력과 방송출력을 높이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체신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야 한다.

제46조 (체신부문의 기술자, 기능공양성)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체신부문의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신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기술자, 기능공양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47조 (체신시설물의 건설과 준공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환경, 농업자원, 산림자원에 피해가 없도록 체신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체신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의 립회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할수 있다.

제48조 (체신시설물의 리용권)

체신시설물의 리용권은 체신기관의 합의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49조 (체신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신부문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체신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체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1조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체신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 우편통신보장과 방송시설운영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전파감시와 주파수관리)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방송전파설비, 장애전파설비의 등록, 운영허가질서를 세우고 전파감독 장비를 현대화하여 전파감시와 주파수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 (통신선로 및 시설의 관리)

통신사업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길과 도로주변, 도시와 마을에 있는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문화성이 보장되지 못한 통신선로와 시설들을 정리보강하고 자연피해에 의한 통신의 두절, 통신시설의 파손, 루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 (통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통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통신시설과 설비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 (벌금처벌)

다음의 체신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1만~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수, 이설, 폐기하였을 경우
2. 국제통신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장애전파설비와 방송전파설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운영하지 않아 통신, 방송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4. 체신기관의 합의없이 체신시설물의 리용권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5. 방송전파설비, 장애전파설비의 등록 및 운영허가질서를 어겼을 경우
6. 체신기관의 합의없이 빛섬유케블을 비롯한 통신선로구간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통신선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57조 (중비, 몰수처벌)

이 법 제5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신을 중지시킬수 있다.

리용이 금지된 체신설비를 리용하거나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제58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체신시설과 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2. 우편물취급과 방송시설운영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전기통신설비를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4. 전기통신설비를 리용하여 상적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전기통신설비를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6. 정해진 보안질서를 어겼거나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7. 로력, 자재, 자금, 설비 같은 조건보장을 제때에 하지 않아 체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그밖에 체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 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9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법

주체64(1975)년 8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로 채택
주체84(1995)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3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출판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법은 출판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출판사업을 발전시키고 출판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사업은 혁명적출판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고무발전시키는데 복무한다. 국가는 출판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출판물의 정치사상성, 대중성, 진실성을 보장하여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을 건전하고 풍부하게 하도록 한다.
- 제3조** 출판물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사회를 문명하게 하는 힘있는 사상문화수단이다. 출판물에는 각종 신문, 잡지, 도서, 지도, 력서 같은 것이 속한다.
- 제4조** 출판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출판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출판사업에 대한 유일적인 지도를 실현한다.
- 제5조** 국가는 출판물에 대한 수요와 현실조건을 타산하여 출판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한다.
- 제6조** 공민은 저작 또는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광범한 대중을 저작 및 창작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한다.
- 제7조** 국가는 인쇄수단과 기술을 현대화하여 출판물의 질을 높이고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8조** 국가는 전체 인민이 출판물을 제대에 정상적으로 보고 리용할수 있도록 한다.
- 제9조** 국가는 출판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제10조** 이 법은 출판사업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조직되어 출판사업을 하는 편집부서, 인쇄실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출판기관

제11조 출판기관은 출판물원고를 집필, 편집하고 출판물을 발행하는 기관이다. 필요에 따라 출판기관은 인쇄사업도 할수 있다. 출판기관에는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 같은 것이 속한다.

제12조 출판기관은 등록하여야 출판사업을 할수 있다. 출판기관의 등록은 새로 조직되었거나 그 성격과 임무, 사업범위가 달라진 경우에 한다. 출판기관을 등록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출판지도기관이 한다.

제13조 출판물은 출판기관이 출판한다. 기관안에서 리용할 출판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출판할수 있다.

제14조 출판기관은 등록된 성격과 임무에 맞지 않는 출판물을 출판할수 없다. 필요한 경우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판할수 있다.

제15조 출판기관은 출판물을 재판, 전제, 복사하거나 수정보충할 경우 저작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저작자와 합의할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출판계획과 계약

제16조 출판계획은 출판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계획이다. 출판계획은 출판물 원고편집계획과 출판물발행계획으로 나눈다.

제17조 출판계획은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세운다. 출판계획의 승인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8조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은 중요저작물, 교과서와 같은 필요한 출판물의 집필계획을 따로 세울수 있다. 세워진 집필계획의 승인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9조 출판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출판물수요를 타산하여 발행규모를 정한다.
2. 출판물의 성격과 리용대상에 맞게 출판물의 형식을 정한다.
3. 출판사업 능력과 조건을 고려하여 출판계획기간을 정한다.

제20조 출판계약은 집필계약과 발행계약으로 나눈다. 집필계약은 출판물원고의 집필계획 또는 편집계획에 기초하여 출판기관과 출판물원고를 집필해야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사이에, 발행계약은 출판물의 발행계획에 기초하여 출판물인쇄를 외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인쇄공장 사이에 맺는다.

제21조 출판계약을 맺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리행담보를 확인한다.
2. 계약리행기일과 보수를 합의한다.
3.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한다.
4. 저작권, 출판권을 담보한다.

제4장 출판물원고의 집필과 편집

제22조 출판물원고의 집필은 개별적으로 또는 여럿이 협력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 출판기관의 기자, 편집원은 출판물원고의 집필, 편집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자, 편집원의 취재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출판기관은 집필계획실행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에게 출판물원고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의뢰받은 출판물원고를 정한 기일안에 질적으로 집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출판기관은 제출된 출판물원고에 대하여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의 심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심사를 조직하지 않을 수 있다. 교과서원고의 심사는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 출판물원고의 교열, 편집은 출판기관의 기자 또는 편집원이 한다. 출판기관에 원고를 교열할 수 있는 기자, 편집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특별히 중요한 원고는 부문별로 조직된 편집위원회 또는 편찬위원회에서 교열, 편집한다.

제27조 교열과정에 제기된 출판물원고의 수정은 집필자가 한다. 집필자의 의도를 변경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자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출판물원고는 인쇄, 제작을 위하여 편성한다. 편성자는 출판물의 성격과 인쇄의 기술적조건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5장 출판물의 인쇄와 발행

제29조 출판물의 인쇄는 해당 인쇄공장에 의뢰하여 한다. 인쇄공장을 가지고 있는 출판기관은 자체로 인쇄할 수 있다.

제30조 출판물을 인쇄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출판물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물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 제31조** 출판물인쇄조직은 인쇄공장이 한다. 인쇄공장은 인쇄공정의 기술적요구를 지켜 출판물을 제때에 질적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제32조** 출판기관은 인쇄과정에 있는 원고를 교정하여야 한다.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없이 인쇄과정에 있는 원고를 수정보충할수 없다.
- 제33조** 인쇄가 끝난 출판물에 대한 검사는 인쇄공장 또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출판물검사과정에 발견한 결함은 다시 인쇄하거나 고침표를 붙이는 방법으로 고친다.
- 제34조** 출판물의 발행은 출판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발행할수 있다. 출판물을 발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출판물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제때에 발행하여야 한다.
- 제35조** 출판기관은 발행하는 출판물에 출판, 인쇄 기관의 이름과 집필, 심사, 편집자의 이름, 인쇄와 발행 날자, 부수, 값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 제36조** 출판물의 값은 생산원가와 사명을 고려하여 정한다. 대중교양용출판물, 교육용출판물의 값은 낮게 정한다.
- 제37조** 출판기관은 발행하는 출판물을 정한 부수대로 납본하여야 한다. 출판물납본 대상과 부수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정한다.
- 제38조** 출판물이 발행되면 원고료를 지불한다. 원고료의 지불기준과 절차, 방법은 내각이 정한다.

제6장 출판물의 보급

- 제39조** 출판물보급은 출판물보급기관이 한다. 기관안에서 리용할 출판들은 해당기관이 배포할수 있다. 출판물보급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정확히 배정하고 제때에 배포하여야 한다.
- 제40조** 출판물은 배포승인을 받아야 보급할수 있다. 출판물의 배포승인은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 제41조** 출판물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 세대별로 한다. 출판물보급기관은 출판물의 성격과 내용, 보급대상의 특성에 맞게 출판물을 배정하여야 한다.
- 제42조** 출판물은 책방을 통하여 배포한다. 필요한 경우 출판물보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배포할수 있다. 신문, 잡지는 예약에 따라 체신기관이 송달한다.
- 제43조** 출판물보급기관은 읽은책 수매보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출판물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제44조 출판물보급기관과 체신기관, 해당 기관은 보급과정에 있는 출판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히 다루어야 한다. 보급, 리용 과정에 손상되었거나 리용가치를 잃은 중요출판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은 출판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공정별 사업 책임량, 소요기일 같은 출판사업기준을 정해주며 출판사업전반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출판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출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 기밀을 루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

제49조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 인쇄설비는 몰수한다.

제50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9호로 채택

제1장 컴퓨터망관리법의 기본

제1조 (컴퓨터망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은 컴퓨터망의 관리운영과 리용, 정보자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를 다그쳐나가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컴퓨터망은 컴퓨터 호상간 또는 컴퓨터와 말단장치들을 통신선로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처리하는 체계이다.

컴퓨터망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컴퓨터와 통신선로, 말단장치, 컴퓨터망보안시설,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컴퓨터망관리체계의 수립원칙)

컴퓨터망관리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은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컴퓨터망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컴퓨터망관리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 (컴퓨터망의 가입원칙)

컴퓨터망가입은 컴퓨터망의 리용을 위한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컴퓨터망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컴퓨터망봉사원칙)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를 실현하는 것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정보봉사령역을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제6조 (컴퓨터망보안원칙)

컴퓨터망보안은 컴퓨터망의 안전과 운영과 정보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컴퓨터망보안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컴퓨터망보안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 (컴퓨터망관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컴퓨터망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제8조 (컴퓨터망의 분류)

컴퓨터는 지역적범위와 리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적인 범위에서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컴퓨터전국망
2. 도, 시, 군별로 단위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컴퓨터지역망
3. 인민경제부문별로 단위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컴퓨터부문망
4.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단위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컴퓨터국부망

제9조 (컴퓨터망구성전망계획의 작성)

중앙체신지도기관은 해당 기관들과의 연계밑에 국가적인 컴퓨터망구성전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의 정보화와 과학기술발전의 요구, 컴퓨터망보안전략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컴퓨터망구성 및 관리운영의 담당자)

컴퓨터망국망과 컴퓨터지역망은 체신기관이, 컴퓨터국부망 컴퓨터부문망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구성하고 관리운영한다.

제11조 (컴퓨터망명역이름의 등록)

컴퓨터망을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명역이름을 해당체신기관에 등록하고 IP주소를 할당받아야 한다.

제12조 (컴퓨터망명역이름, IP주소의 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칭이 달라졌거나 위치를 옮겼을 경우 해당 체신기관에 컴퓨터망명역이름을 변경등록하고 IP주소를 다시 할당받아야 한다.

제13조 (컴퓨터망접속승인 및 설비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컴퓨터전국망에 접속하려 할 경우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말단장치, 경로기의 설치위치, 유일식별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컴퓨터망운영실의 출입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운영실의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성원의 다른 인원을 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성원의 다른 인원을 들여보내려 할 경우에는 기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컴퓨터망의 정상운영보장)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정보통신보장중에 있는 경로기, 교환기, 봉사기 같은 컴퓨터망설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운영을 중지시킬수 없다.

제16조 (통신요금)

컴퓨터전국망을 리용하여 정보통신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통신요금을 물어야 한다.

통신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장 컴퓨터망의 가입

제17조 (컴퓨터망가입의 기본요구)

컴퓨터망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컴퓨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컴퓨터망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컴퓨터망을 리용할수 없다.

제18조 (컴퓨터망가입의 승인기관)

컴퓨터전국망가입승인을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지역망가입승인은 해당 지역체신기관이, 국부망, 관리운영기관이 한다.

제19조 (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의 제기)

컴퓨터망에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컴퓨터망가입신청자의 이름, 주소, 소속관계, 컴퓨터망가입종류, 선로리용조건, 컴퓨터망령역이름, 컴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의 등록정형, 전자증명서소지정형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0조 (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의 심의기간)

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을 접수한 기관은 15일안으로 심의하고 컴퓨터망가입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형을 신청기관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 (심의조건보장)

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을 심의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컴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를 확인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컴퓨터망리용조건보장)

해당 기관은 컴퓨터망가입이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컴퓨터망을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보통신설비의 등록, 전자증명서의 발급)

컴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컴퓨터망에 가입할수 없다.

컴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의 등록은 전파감독기관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은 전자인증기관이 한다.

제4장 컴퓨터망정보봉사

제24조 (컴퓨터망정보봉사의 기본요구)

컴퓨터망정보봉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컴퓨터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 교환,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제25조 (컴퓨터망정보봉사의 승인신청)

컴퓨터망정보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정보봉사승인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컴퓨터망정보봉사의 목적과 업종, 지표, 조건 같은 것을 밝히며 컴퓨터망봉사체계설계문건, 컴퓨터망보안심의문건, 운영소프트웨어의 품질검사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컴퓨터망정보봉사승인신청문건의 심의)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컴퓨터망정보봉사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형을 신청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컴퓨터망정보봉사의 업종준수)

컴퓨터망봉사에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실시간대화, 전자도서관, 원격교육봉사 같은 것이 속한다.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업종과 지표에 맞게 컴퓨터망정보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컴퓨터망정보봉사의 변경, 중지)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의 업종과 지표를 변경하거나 정보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정보자료의 보급)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정보봉사설비와 조건을 갖추고 인민경제의 정보화와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자료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컴퓨터망정보봉사설비의 정상운영)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설비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컴퓨터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컴퓨터바이러스전파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

제31조 (컴퓨터망정보봉사설비의 운영상태기록)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설비의 운영상태를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컴퓨터망봉사설비운영상태를 기록한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한다.

제32조 (컴퓨터망을 통하여 주고받을수 없는 자료)

컴퓨터망정보봉사를 하거나 컴퓨터망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망을 통하여 비밀에 속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자료를 주고받을수 없다.

제33조 (봉사로금)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를 해준데 대한 요금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컴퓨터망정보봉사로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장 컴퓨터망보안

제34조 (컴퓨터망보안체계의 수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망보안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컴퓨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컴퓨터망보안체계를 세우지 않고서는 컴퓨터망을 운영할수 없다.

제35조 (컴퓨터망보안기준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보안기준의 요구에 맞게 신분확인기능, 접근통제기능, 자료확인기능, 사건기록 및 추적기능, 보안관리기능 같은 보안기능을 원만히 갖춘 컴퓨터망보안체계를 세워야 한다.

컴퓨터망보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제36조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신청)

컴퓨터망보안체계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37조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1개월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8조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방법)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는 신청한 문건에 대한 검토와 컴퓨터망체계상에서 보안기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조건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제39조 (컴퓨터망보안체계의 갱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보안체계를 갱신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컴퓨터망보안기술연구개발 및 도입)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컴퓨터망보안과 관련한 새 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고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41조 (컴퓨터망보안프로그램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컴퓨터망보안프로그램의 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새로 개발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컴퓨터망보안프로그램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제42조 (심의과정에 알게 된 비밀준수)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성원은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과정에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 (컴퓨터망보안체계의 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보안체계를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그 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컴퓨터망보안체계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문건은 기요문건취급절차에 따라 보관취급한다.

제44조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에 불법침입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정보산업발전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6조 (컴퓨터망관리사업의 지도기관)

컴퓨터망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컴퓨터망관리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컴퓨터정보봉사, 컴퓨터망보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컴퓨터망관리사업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감독통제)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컴퓨터망관리사업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컴퓨터망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주체92(2003)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1호로 채택

제1장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제1조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은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프트웨어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의 등록원칙)

소프트웨어의 등록은 소프트웨어보호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보호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 등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 하도록 한다.

제3조 (소프트웨어의 개발장려, 저작권보호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며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 및 재산적권리를 보호 하도록 한다.

제4조 (외국인의 저작권보호원칙)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처음으로 등록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은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5조 (국가적관심과 투자를 늘일데 대한 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소프트웨어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 도록 한다.

제6조 (조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와 관련하여 맺은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조 (소프트웨어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등록

제8조 (중요성과 등록기관)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바로하는것은 소프트웨어보호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소프트웨어의 등록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이 한다.

제9조 (등록신청서의 제출과 내용)

소프트웨어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신청서를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소프트웨어의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주소, 신청날자, 같은 것을 밝히며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 소프트웨어개요, 사용설명서 같은 것을 첨부한다.

제10조 (등록심의기간)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심의하고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루스검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심의방법)

소프트웨어의 등록심의를 소프트웨어개발자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된 소프트웨어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등록심의를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가를 료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 (필요한 자료요구와 보장)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권증의 발급)

등록을 승인한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저작권증을 발급한다.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낸다.

제14조 (소프트웨어의 등록공개)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15조 (등록과 관련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프트웨어의 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의 보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소프트웨어의 등록신청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를 정해진 보관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고에는 소프트웨어의 파손,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다른 나라 소프트웨어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소프트웨어는 리용할수 없다.

제18조 (소프트웨어등록부의 열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소프트웨어등록부를 열람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제3장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제19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된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도 저작권자로 된다.

제20조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를 발표할수 있는 권리
2.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름을 밝힐수 있는 권리
3. 개발자의 이름, 소프트웨어의 명칭, 내용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21조 (인격적권리의 제한)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소프트웨어개발자가 가진다.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양도할수 없다.

제22조 (소프트웨어의 재산적권리)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를 복제, 전시, 배포할수 있는 권리
2. 소프트웨어를 개작할수 있는 권리
3. 소프트웨어의 리용을 허가할 권리와 해당한 요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

4. 소프트웨어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수 있는 권리
5.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생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제23조 (재산적권리의 양도등록)

계약에 따라 재산권을 양도받은자는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재산권을 양도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소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한다.

개인의 이름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가 소유한다.

여럿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는 개발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25조 (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소유)

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소유한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소유와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밝힌다.

제26조 (미성인의 소프트웨어저작권소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미성인도 소유할수 있다.

미성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행사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한다.

제27조 (소프트웨어저작권이 국가소유로 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그가 저작권의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거나 저작권을 넘겨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제4장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제28조 (보호의 일반요구)

소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저작권의 보호기간)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기간은 무기한으로 하여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제30조 (보호기간의 계산)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등록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받은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남은기간까지로 한다.

제31조 (소프트웨어의 리용범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리용할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리용은 허가받은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 (요금지불)

소프트웨어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3조 (문학예술저작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학예술저작물을 소프트웨어의 개발, 개작에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허가없이 할수 없는 행위)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소프트웨어를 리용, 복제,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판매, 방영하는 행위
2.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또는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행위
4.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제35조 (허가없이 소프트웨어를 리용할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복제하여 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리용할 경우
2. 법기관에서 사건조사에 리용할 경우
3. 무상으로 배포된 것을 리용할 경우

제5장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요구)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소프트웨어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지도기관)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보호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소프트웨어의 등록, 보관,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대리기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리기관을 둘수 있다.

대리기관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일군으로 꾸려야 한다.

제39조 (감독통제)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민족의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바이러스의 제작, 복제, 유포행위, 컴퓨터망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파괴, 비법적인 열람행위 같은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 (손해보상, 몰수)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고 비법적으로 얻은 돈과 리용된 소프트웨어를 몰수한다.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 (분쟁해결)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할수 있다.



교육·문화·
체육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6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제1조 (고등교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과 교수교양, 과학연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며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력을 갖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고등교육사업의 발전원칙)

고등교육사업의 발전은 유능한 인재육성의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개선완비하고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3조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원칙)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고등교육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술자, 전문가양성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고등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 (고등교육일군대렬강화원칙)

고등교육일군은 고등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고등교육부문의 교육일군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일군후비를 계획적으로 키우며 교육일군대렬을 학위, 학직소유자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한다.

제5조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원칙)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교수교양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도록 한다.

제6조 (고등교육사업조건보장원칙)

국가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고등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고등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제8조 (고등교육체계의 구분)

고등교육체계에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가 있다.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다같이 발전 시키도록 한다.

제9조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나이)

중등일반교육을 받은 16살이상의 국민은 재능과 희망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없이 고등교육을 앞당겨 받을수 있다.

제10조 (무료교육의 실시)

국가는 고등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모든 고등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1조 (고등교육의 형태)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으로 한다.

제12조 (대학교육의 구분)

대학교육에는 본과교육, 박사원교육, 과학연구원교육이 속한다.

제13조 (대학본과교육)

대학본과교육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키워내는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대학교육년한은 3~6년이다.

제14조 (박사원교육)

박사원교육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해당 분야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서 본과교육보다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박사원교육년한은 2~4년이다.

제15조 (과학연구원교육)

과학연구원교육은 세계적수준의 학자들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박사원교육보다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과학연구원교육년한은 3~5년이다.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제16조 (고등교육기관의 구분)

고등교육기관에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과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속한다.

제17조 (고등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

내각과 고등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당 부문과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학의 조직)

대학은 기술자, 전문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수요를 고려하여 종합대학과 부문별 또는 지역별종합대학, 부문별대학, 직업기술대학 같은것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에서 조직한다.

대학을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9조 (박사원의 조직)

교육 및 과학후비를 비롯한 한급 높은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하여 대학 또는 과학연구기관에 박사원을 조직할수 있다.

박사원을 내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과학연구원의 조직)

세계적수준의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마련된 대학에 과학연구원을 조직할수 있다.

과학연구원을 내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조직할수 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내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 (학생모집)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은 해당 교육을 받은 공민가운데서 실력과 품행이 우수한 대상으로 선발하여 모집한다.

학생모집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4조 (입학)

고등교육기관은 입학시험조직을 바로하여 지덕체를 겸비하고 입학시험에서 합격된 대상들을 학교에 받아들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입학시험에서 합격된 대상들을 제때에 등교시켜야 한다.

입학시험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5조 (학부, 강좌의 설치)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의 사명과 규모에 따라 학부, 강좌를 둘수 있다.

학부, 강좌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6조 (원격교육체계확립)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 교육체계를 세우고 교육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제27조 (고등교육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의 설치)

고등교육기관은 도서관, 출판사, 실습장, 박물관, 연구소, 중간시험공장, 인쇄실, 부속학교 같은 것을 실정에 맞게 두고 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제28조 (고등교육일군의 구분)

고등교육일군에는 학생들의 교수교양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고등교육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9조 (교원의 양성)

교원은 대학본과교육, 박사원교육, 대학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을 통하여 양성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교원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능력있는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제30조 (교원의 자격)

교원은 국가의 교육정책, 전공부문의 과학자 기술, 교육리론과 방법에 정통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녀야 한다.

교원의 자격은 대학본과교육, 박사원교육, 대학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였을 경우에 준다.

교원은 전공분야의 학위를 소유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원의 자격급수)

교원자격급수는 1, 2, 3, 4, 5급으로 하며 급수사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1급과 2급의 교원자격급수사정은 비상설급수사정위원회가 그밖의 교원자격급수사정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한다.

제32조 (교원에 대한 재교육)

교원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교원을 위한 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전공분야별로 재교육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3조 (교원의 임무)

교원은 정치사상적수준과 과학리론수준, 교수능력을 부단히 높여 교수사업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교원은 책임교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과학연구과제와 교과서, 참고서지필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 (학생의 임무)

학생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2.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전공분야의 학과목에 정통하고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여야 한다.
3. 과정안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교수와 시험, 실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4. 학생생활준칙과 내부질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35조 (졸업증서)

대학교육과정안에 따르는 교육학적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36조 (장학금)

학생에게는 정해진데 따라 장학금을 주며 학업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준다.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제37조 (교육강령의 작성)

교육강령은 고등교육기관이 작성한다.

작성한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교육강령은 승인없이 고칠수 없다.

제38조 (교육강령의 집행)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39조 (학제, 전공학과지표의 준수)

고등교육기관은 정해진 학제와 전공학과지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제와 전공학과지표는 내각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제와 학과지표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40조 (교육내용의 구성)

고등교육기관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며 전문분야의 과학기술기초교육을 충분히주는 기초우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교육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학생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기술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사고능력, 연구능력, 창조적능력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1조 (교수교양방법)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똑똑히 파악하게 하고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조장발전시킬수 있도록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며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42조 (수재교육)

고등교육기관은 기초과학부문과 전문부문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천성적으로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재교육을 줄수 있다.

수재교육은 수재학급을 조직하여 따로 주거나 개별과정안에 따라 줄수 있다.

제43조 (학생과학연구소조의 운영)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속에서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학생과학연구소조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학생과학연구소조에는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이고 과학적탐구력과 재능이 있는 수재형의 학생들을 망라시킨다.

제44조 (초빙강의)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일군들을 초빙하여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새로운 과학리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의 유능한 교수, 박사를 초빙하여 강의에 출연시킬수 있다.

제45조 (실습, 견학, 답사조직)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할수 있도록 실습, 견학, 답사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46조 (류학생교류)

고등교육기관은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맺은 문화교류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에 류학생을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의 류학생을 받을수 있다.

제47조 (교수교양의 정보화)

고등교육기관은 정보통신기술과 수단을 적극 리용하여 교수와 실험실습을 정보화하여야 한다.

제48조 (학생의 실력평가)

고등교육기관은 정기적으로 시험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교수내용에 대한 인식정도와 활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서는 시험성적과 함께 평상시학습정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교양)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을 지니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50조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고등교육기관은 교수교양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를 풀며 기초과학부문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51조 (과학연구사업의 담당자)

과학연구사업의 담당자는 교원, 연구사이다.

고등교육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연구과제를 바로 선정하고 교원, 연구사에게 정확히 분담하며 그것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는 현실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5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적문제해결)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협력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현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이 경우 유능한 교원, 연구사와 재능있는 학생들을 현장에 파견할수 있다.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제53조 (고등교육사업조건의 계획적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등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 (고등교육부문의 재정예산)

재정은행기관은 고등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부문에 돌려진 자금은 다른 사업에 류용할수 없다.

제55조 (학교건설과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교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라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를 건설하고 주기에 따라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56조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교육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등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 (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특화물의 보장)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특화물 같은것을 교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58조 (실습, 견학, 답사조건의 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 (봉사시설)

고등교육기관은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을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교원, 연구사,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숙사와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0조 (후방사업)

고등교육기관은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개선하여 교원, 연구사, 학생들에게 필요한 후방공급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1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후원)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와 조건보장을 위한 후원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사업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고등교육기관과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62조 (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고등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교사와 기숙사, 실습지 같은 교육시설을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은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할수 없다.

제63조 (교원에 대한 우대)

국가는 교원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한다.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4조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고등교육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실속있게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5조 (교육과학연구사업)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과학연구기관은 고등교육부문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고등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고등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제66조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교육강령집행을 태공하였거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2. 학생모집 및 입학질서를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고등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 학교건물, 시설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교원에 대한 자격급수사정과 학위, 학직수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5. 학생의 실력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6. 장학급수여질서를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7. 고등교육부문에 돌려진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다른 사업에 류용하였거나 랑비하

였을 경우

8. 고등교육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이밖에 고등교육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7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8호로 채택

제1장 교원법의 기본

제1조 (교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은 교원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교육발전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교원의 정의와 구분)

이 법에서 교원은 여러 형태의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수교양사업을 맡아하는 일군이다.

교원은 학교교원과 사회교육기관의 교원으로 구분한다.

학교교원에는 학교전 교육을 위한 유치원(애육원)교양원,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각급 제1중학교 포함), 학원, 대학, 각급 양성기관, 재교육기관, 청소년 체육학교, 기능공학교, 장애자교육을 위한 맹, 룡아학교 교원이 속한다.

사회교육기관교원에는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과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같은 청소년과외교양기지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교원이 속한다.

제3조 (교원의 양성원칙)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교원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대렬을 건전한 사상과 풍부한 지식, 높은 교육자적자질과 고상한 품모를 지닌 인재들로 꾸리며 교원후비를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제4조 (교원의 자질향상원칙)

교육발전은 교원의 수준과 역할에 달려있다.

국가는 교원들속에서 자질향상계획을 바로세우고 자질향상사업을 꾸준히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교원에 대한 우대와 사회적관심제고원칙)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이다.

국가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교육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적극 보장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지도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교원의 자격과 양성

제7조 (교원자격제도의 실시)

교원은 교수교양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해당하는 학력을 가지고 교원자격심의회에 응시하여 합격된 대상에게 교원자격을 주도록 한다.

제8조 (교원자격심의회 응시대상)

교원자격심의회에 응시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통교육부문 교원으로는 교원대학, 사범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또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
2. 고등교육부문 교원으로는 대학 박사원 또는 대학본과를 졸업하고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
3. 기능공학교, 사회교육기관 교원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과 높은기능을 소유한 대상

제9조 (교원자격심의회기관)

교원의 자격심의회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비상설로 조직된 교원자격심의회위원회가 한다.

교원자격심의회위원회는 교육정책과 해당 분야의 과학지식, 교육실무적자질의 소유정도와 정신도덕적풍모를 종합하여 교원의 자격을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양성)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에게도 일정한 기간 사범교육을 주어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으로 양성할수 있다.

제11조 (고등교육부문의 교원양성)

고등교육부문의 교원은 대학본과교육 또는 박사원교육을 마친 졸업생가운데서 우수한 대상을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 사범교육을 집중적으로 주어 양성한다.

제12조 (기능공학교의 교원양성)

기능공학교 교원은 대학본과를 졸업하고 현장경험을 가진 대상으로 선발하여 사범교육을 주어 양성한다.

제13조 (무자격교원의 교원자격심의)

무자격교원은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고 교원자격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발전전망과 교원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교원양성지표와 사범교육부문 학생모집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원선발)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과학리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대상들을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학생선발)

각급 인민위원회는 우수한 대상으로 사범대학, 교원대학 학생모집을 먼저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육강령)

교육지도기관은 사범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원으로서의 높은 교육실무적자질을 소유할수 있도록 교육강령을 과학적으로 작성하여 내려보내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육조건보장)

중앙교육지도기관과 도(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교사, 기숙사를 잘 꾸리며 실험실습기재들과 설비 등 교육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에서는 부속학교, 부속유치원을 두고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학적실습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원의 배치)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졸업생과 사범교육을 받은 다른 대학의 졸업생은 교육기관에 배치한다.

제3장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제20조 (교수사업)

교수사업은 교원의 본분이다.
교원은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를 바로 인식하고 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정해진 책임교수시간을 형태별로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수준비)

교원은 교육강령에 따라 교수준비계획을 세우고 교수진도표, 교수안, 교수자료, 직관연시물, 실험기구, 현실자료, 학습과제 같은 교수준비를 교육발전과 현대과학 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수집행)

교원은 교수내용에 정통하며 강의와 연습, 학과토론, 실험, 실습, 학과논문지도 같은 여러 형태의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수규률의 준수)

교원은 정해진 교수시간과 교육학적공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교수시간에 교수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거나 교육강령을 자의로 변경시켜 교수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4조 (학생교양)

교원은 학생들을 원칙적으로 대하고 교양사업의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상의식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과외학습, 과외생활지도)

학생의 과외학습, 과외생활은 교육사업을 연장이며 그 공고화과정이다.

교원은 학생의 과외학습,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원은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 높은 창조력과 응용능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

제27조 (학생실력에 대한 평가)

교원은 학생의 실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평가하며 시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학연구사업참가)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은 교육정책의 중요요구이다.

교원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29조 (학위, 학직의 소유)

교원은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여 학위, 학직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원의 품모)

교원은 일상적으로 사업과 성실하게 하고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며 높은 문화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 학생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제31조 (교원의 학생존중)

교원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해주며 학생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해주고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제32조 (교원의 학생보호)

교원은 학생의 보호자이다.

교원은 학생들속에서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제때에 저지시키며 비판, 교양하여야 한다.

제4장 교원의 자질향상

제33조 (자질향상체계의 확립)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원들의 자질향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수사업을 통한 자질향상)

교원은 교수준비를 위한 문헌연구와 현실료해,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같은 교수의 과학리론적 및 방법론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제35조 (과학연구사업을 통한 자질향상)

교원은 과학연구사업, 학술교류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교수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통하여 자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제36조 (재교육 및 현장파견을 통한 자질향상)

교원은 정해진 기간에 재교육 및 현장파견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은 중앙대학들과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재교육기지를 꾸리며 파견대상자들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교원들의 재교육과 현장파견사업을 정규화하여야 한다.

제37조 (다른 나라파견을 통한 자질향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원들의 다른 나라파견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이 세계적인 과학 및 교육발전추세를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하여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전문양성기관에서의 학습을 통한 자질향상)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박사원, 강습소 같은 전문양성기관을 통하여 교원의 자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조직)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수참관, 교수경연, 실험기구 및 교편물 전시회, 방식상학, 교수교양경험발표회, 교육과학토론회, 참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우수한 교수교양방법과 경험을 일반화하며 교원의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교원의 자격급수)

교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원자격급수를 정상적으로 사정받아야 한다.

교원자격급수는 고등교육부문 교원자격급수와 보통교육부문 교원자격급수, 기능공학교 교원자격급수로 구분하며 각각 1,2,3,4,5급으로 정한다.

제41조 (교원자격급수 사정주기)

교원자격의 급수사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특출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기한전에 급수를 사정할수 있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주기에 맞게 교원자격급수사정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5장 교원에 대한 우대

제42조 (교원우대의 요구)

교원을 우대하는 것은 교원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교육사업에 전심 전력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조건이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을 우대하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교원명예칭호수여)

국가는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교원에게 인민교원, 인민과학자, 공훈교원, 공훈과학자칭호 같은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제44조 (교원에 대한 국가표창)

국가는 교수교양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교원에게 교원영예훈장, 교원영예메달을 비롯하여 해당한 국가표창을 준다.

제45조 (교원의 생활비제정원칙)

국가는 교원생활비를 비생산부문 사무원들의 생활비에서 높은 수준으로 정하며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교원생활비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제46조 (교원가급금)

국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원에게 기본생활비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가급금을 적용 실시한다.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이부모학원, 맹,聋아학교와 섬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교원에게는 따로 정한데 따르는 가급금을 적용 실시한다.

제47조 (교육자살림집의 건설과 주택배정)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자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교원들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48조 (봉사에서서의 우대)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 급양 및 편의봉사, 의료봉사, 교통운수수단의 리용에서 교원을 우대하며 우선봉사하여야 한다.

제49조 (정휴양)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들을 위한 정휴양소를 잘 꾸리고 정휴양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50조 (답사, 견학, 관광의 조직)

각급 인민위원회와 교육지도기관은 교원들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 평양시와 중요공장, 기업소에 대한 견학과 참관, 명승지관광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제51조 (사회보장에서의 우대)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 근속로동년한과 명예칭호를 가진 교원이 년로보장을 받은 경우 공로자대우를 적용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 (교육자가정의 우대)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부부교원, 교육자가정을 사회적으로 적극내세우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제6장 교원의 사업조건보장과 법적책임

제53조 (교원의 사업조건보장)

내각과 각급 인민위원회, 교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교원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도서, 교수용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 (금지사항)

교원에게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로력동원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5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인 교원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 행정처벌을 준다.

1. 교수사업을 태공하거나 무책임하게 하여 부정적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2. 학생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학생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학생실력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 부정적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4. 교원의 양성, 선발, 배치, 자격급수사정사업질서를 어겨 교원대렬강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교원에게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었거나 로력동원을 시켜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56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

주체105(2016)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3호로 채택

제1장 교육강령집행법의 기본

제1조 (교육강령집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은 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교육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교육강령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도를 규정한 국가의 법적문건이다.

교육강령에는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이 속한다.

제3조 (교육강령의 작성원칙)

교육강령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여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품모와 긴장한 체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작성한다.

제4조 (교육강령의 집행원칙)

교육강령집행은 교육기관의 법적의무이다.

국가는 교육강령집행규률을 세우고 교육사업을 철저히 교육강령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원칙)

국가는 교육강령집행의 조건보장을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강령집행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교육기관과 교육사업에 관련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제2장 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

제7조 (교육강령작성의 담당자)

보통교육기관의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고등교육기관(직업 기술학교 포함)의 교육강령은 해당 교육기관이 작성한다.

제8조 (교육과정안작성의 요구 및 내용)

교육기관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고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교육과정안을 현실성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안에는 교육의 목적과 학년별교육진행과정, 학과목의 구성과 교수형태, 시간수, 집행학기, 총화형식 같은 것을 반영한다.

제9조 (교수요강작성의 요구 및 내용)

교수요강은 교육과정안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에서 과학적으로 작성한다.

교수요강에는 학과목의 총시간수, 적용할 학과, 학년, 학기, 교수목적, 학과목의 구성체계와 중심내용, 교수형태와 총화방법같은 것을 반영한다.

제10조 (교육강령의 심의, 승인제기)

교육강령을 새로 작성하였거나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요강에 대한 심의, 승인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자체로 한다.

제11조 (교육강령심의위원회의 조직)

교육강령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에 비상설로 교육강령심의위원회를 둔다.

교육강령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군과 자격을 갖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조 (교육강령의 심의, 승인)

교육강령승인신청을 받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나 해당 중앙기관은 교육강령을 엄격히 심의하고 통과된 교육강령을 제때에 승인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3장 교육강령의 집행

제13조 (교육강령집행의 담당자)

교육강령의 집행은 교육기관이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강령집행계획의 구분)

교육강령집행계획은 학년도 과정안집행계획, 학년도 교수집행계획, 학년도 교원교수계획으로 나누어 세운다.

제15조 (학년도 과정안집행계획작성)

학년도 과정안집행계획은 과정안에 기초하여 모든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작성한다.

제16조 (학년도 교수집행계획과정)

학년도 교수집행계획은 학년도 과정안에 규정된 모든 교과목들을 해당 학기에 교수형태별로 정확히 집행할수 있게 작성한다.

제17조 (학년도 교원교수계획작성)

학년도 교육교수계획은 학년도 교수집행계획과 교수분담에 기초하여 교원별로 1-2개 교과목을 맡기는 원칙에서 교과목과 교수단위, 교수형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제18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교수집행계획과 교수분담에 기초하여 교과목별로 교수진행요일, 교수형태, 교수시간, 교수장소, 교수자를 밝혀 학기별로 작성한다.

수업시간표의 주당 교수시간은 과정안에 반영된 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제19조 (교수진도표)

교수진도표는 교과목담당교원이 교수집행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교수진도표에 교수시간단위로 교수형태, 교수의 기본내용을 밝힌다.

제20조 (교육강령집행의무)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집행계획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학기별, 학년별로 교육강령을 정해진 기간에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강령을 정해진 기간에 집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강령집행기간을 변경하여 집행할수 있다.

제21조 (교수단위)

교수단위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학급이나 선택반 또는 합반단위로 정한다.

필요에 따라 개별적학생을 대상으로 개별교수를 할수도 있다.

제22조 (교수시간단위)

교수시간단위는 고등교육기관과 보통교육기관에서 따라 정한다.

교수형태와 실정에 맞게 교수시간단위를 합리적으로 정할수도 있다.

제23조 (교수장소)

교수는 교육기관에서 한다.

교수형태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할수도 있다.

제24조 (교수의 형태)

교수의 기본형태는 강의와 연습, 학과토론, 실험, 실기, 실습, 학과논문, 학과설계 같은 것으로 한다.

제25조 (교수의 담당자)

교수의 담당자는 교원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사업을 할수 있다.

제26조 (교수시간의 준수)

교원은 정해진 교수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교수시간에는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할수 있다.

제27조 (교수의 집행)

교원은 교수를 교수진도표와 교수안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교수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교수할수 없다.

제28조 (과외자체학습조직)

교육기관은 일별, 주별로 과외자체학습시간을 교육강령대로 정확히 보장하며 그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야 한다.

제29조 (답사와 견학조직)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에 따라 답사와 견학을 해당 기관과 맞물려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0조 (생산로동의 조직)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에 따라 생산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조직)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에 따라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원칙에서 시험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 (방학조직)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에 따라 방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3조 (금지사항)

다음의 행위는 할수 없다.

1. 수업시간표에 예견된 일별교수시간수와 주별교수일수를 어기는 행위
2. 과외자체학습시간에 교육강령집행과 인연이 없는 다른 사업을 조직하는 행위
3.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생산로동을 조직하는 행위
4. 교육강령집행시간에 교육, 학생을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

제34조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장악통제)

교육기관은 교무행정사업을 강화하여 교육강령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제35조 (교육강령집행정형의 총화)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집행정형에 대하여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교육강령집행행정형총화는 월, 학기, 학년총화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4장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

제36조 (교육시설의 보장)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강령집행에 필요한 교사, 실험실, 실습기와 기숙사 같은 후방보장시설을 계획적으로 꾸려주어야 한다.

제37조 (교육설비의 보장)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교육도서, 교육물 보장)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 학년도를 계기로 교육강령집행에 필요한 교육도서와 각종 교육물의 수요와 리용실태를 료해한데 따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실습, 답사, 견학조건의 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강령에 반영된 실습, 답사, 견학을 위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기관)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교육기관들에서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2조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감독통제)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교육강령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3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책임있는 일군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교육강령에 반영된 형태별교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교육강령집행을 위한 조건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4.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조직하였을 경우
5. 그밖에 교육강령집행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제4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주체88(1999)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55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1조 (교육법의 사명)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확립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3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구현원칙)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

제4조 (교육과 실천의 결합원칙)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며 교육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하도록 한다.

제5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원칙)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교육의 기본형태이다.

국가는 학교교육의 결정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한다.

제6조 (수재교육원칙)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수재교육체계를 바로세워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교육사업조건보장원칙)

교육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원칙)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이다.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며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꾸준히 학습하도록 한다.

제9조 (교육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교육리론과 방법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10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옹호원칙)

국가는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적극 옹호한다.

제11조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제12조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 무료교육의 권리)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것은 온 사회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

공민은 노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다.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2년이다.

제14조 (학령어린이의 취학의무)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취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5조 (주민지역과 떨어져있는 지역의 어린이, 장애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

지방정권기관은 깊은 산골, 외진섬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 어린이와 맹,聋아 같은 장애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무료교육의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수 없다.

제17조 (장학금)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맹,聋아학교의 정한 학생에게 일반장학금을 준다.

학업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군관복무 또는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학생, 박사원생에게는 우대장학금을,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현직생활비를 준다.

제18조 (식량과 학용품, 생활용품의 보장)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보상하여 낮은 값으로 보장한다.

영예군인, 무의무탁학생에게는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보장한다.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제19조 (교육기관, 교육일군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기본요구)

교육기관은 교육사업의 거점이며 교육일군은 교육사업의 담당자이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내오고 교육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교육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20조 (교육기관의 구분)

교육기관은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눈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과 박사원, 과학연구원 같은 것이, 사회교육기관에는 과학기술전당,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같은것이 속한다.

제21조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은 해당 기관의 중요성, 규모, 학위학직을 소유한 교육일군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 (교육기관의 배치)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재에 대한 수요와 지방의 문화발전수준, 학생수, 통학조건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교양, 건강, 발육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지역에는 교육기관을 배치할수 없다.

제23조 (교육기관의 운영비용)

교육기관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교육기관은 재정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기관의 임무)

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건물과 구획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일군과 그 자격)

교육일군에는 교수사업을 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교육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6조 (교수사업)

교원은 교수사업을 직접 맡아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사업을 할수 있다.

제27조 (교육일군의 임무)

교육일군은 고상한 도덕품성과 높은 과학기술적, 교육실무적자질을 갖추고 교수교양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일군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한다.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28조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

교육내용과 방법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육기관은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9조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 예능교육)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있게 하고 체육, 예능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

제30조 (교수교양방법)

교육일군은 학생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도록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수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기관은 교육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높은 교육단계에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

교육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제32조 (교육강령의 구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강령에 반영한다.

교육강령에는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이 속한다.

제33조 (교육강령의 작성)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작성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부문의 전문학과와 과목의 교육강령은 해당 교육기관이 작성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

국가는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비상설심의위원회를 둔다.

해당 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고칠수 없다.

제35조 (교수안작성)

교원은 교육강령에 기초하여 담당과목의 교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교수안은 집체적협의를 거쳐 완성한다.

제36조 (교육강령의 집행)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5장 교육조건보장

제37조 (교육조건보장의 기본요구)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임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교육부문의 재정예산)

재정은행기관은 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은 류용할수 없다.

제39조 (학교건설과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교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라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를 건설하고 주기에 따라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40조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교육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계기를 해당 교육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1조 (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물의 보장)

교육지도기관은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물 같은 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도서출판용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실습, 견학, 답사조건의 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43조 (교육기관과 봉사시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을 꾸려주어야 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는 후방기지도 정해줄수 있다.

제44조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후원사업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할수 있다.
후원사업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사회주의교육을 바로 실시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6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중앙기관은 교육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대책을 세우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교육일군양성,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의 보장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 (지방정권기관의 임무)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의 조직과 건설, 보수, 교육강령의 집행, 보통교육부문의 교원과 교양원양성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학생모집)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교육기관은 학생모집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

제49조 (사회교육에 대한 지도)

지방정권기관은 사회교육시설과 청소년과외교양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가정의 교육교양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 (교육후원기금의 성립)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육후원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수 있다.

교육후원기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해외동포, 국제기구, 다른 나라 자선단체들이 보낸 협조자금, 자선자금과 물자 같은 것으로 적립하여 리용한다.

제51조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교육사업과 교육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교육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주체87(1998)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38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제1조 (도서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조직운영, 출판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관리, 도서관봉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출판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교육기관이다.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도 속한다.
2. 출판물이란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도서와 자료 같은것을 말한다.출판물에는 전자출판물도 속한다.

제3조 (도서관의 조직운영원칙)

도서관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이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망을 더 잘 형성하고 도서관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4조 (출판물의 수집원칙)

출판물의 수집을 잘하는 것은 도서관의 장서를 늘이고 도서관리용자의 출판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출판물수집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 (장서보존관리원칙)

장서의 보존관리는 출판물을 보관하고 원상대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장서의 보존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6조 (도서관봉사원칙)

도서관봉사를 바로하는 것은 사회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봉사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들이 도서관을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제7조 (도서관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서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도서관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도서관실운영도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

제9조 (도서관조직운영의 기본요구)

도서관은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중요거점이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도서관을 내오고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서관의 설립)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지역의 문화발전수준, 장서보관능력, 도서관리용자수, 정보통신조건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합리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서관을 내오려 할 경우 도서관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도서관의 등록)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을 그 류형과 소속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관은 운영할수 없다.

제12조 (도서관일군의 구분과 자격)

도서관일군에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도서관일군은 고등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자가 될수 있다.

제13조 (도서관전문가의 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세우고 도서관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서관일군에 대한 재교육)

도서관일군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서관일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

우고 그들에 대한 재교육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의 운영)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을 갖추고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운영에서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컴퓨터망정보봉사, 컴퓨터망보안과 관련한 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 (도서관운영의 개선)

도서관은 사회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운영을 규격화, 표준화하며 도서관봉사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보수 및 개건, 설비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도서관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출판물의 수집

제17조 (출판물수집의 기본요구)

출판물의 수집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출판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며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출판물수집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도서관은 도서관의 사명과 규모에 맞게 출판물수집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판물수집계획은 장서편성기준표에 맞게 세워야 한다.

제19조 (출판물수집계획의 실행)

도서관은 출판물보급기관을 비롯하여 출판물을 발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련계를 강화하여 계획에 반영된 출판물을 제때에 수집하여야 한다.

출판물보급기관은 인민대학습당과 도서관들에 보장하게 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20조 (출판물의 수집방법)

출판물은 주문예약, 기증, 납본, 구매, 복사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21조 (출판물의 호상교환)

출판물수집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도서관들사이의 호상교환을 통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전자출판물의 수집)

전자출판물은 컴퓨터망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수집한다.

다른 나라의 출판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할수 있다.

컴퓨터망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수집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출판물의 등록)

도서관은 수집한 출판물을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것에 따라 출판물등록대장에 정확히 등록 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재등록은 상급기관의 승인밑에서만 할수 있다.

제24조 (목록자료기지의 구축)

도서관은 장서에 대한 목록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의 목록자료기지구축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

제25조 (장서보존관리의 기본요구)

장서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출판물의 손상을 막고 그 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 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장서의 보존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출판물의 보존)

도서관은 출판물보존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 민족의 지적재부를 후손만대에 전해갈수 있게 출판물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출판물의 보관)

도서관은 출판물의 종류와 형태, 내용, 성격 같은것에 따라 장서를 조직하고 실정에 맞게 배열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은 자료저장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컴퓨터바이러스전파를 엄격히 막으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2중보관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28조 (출판물의 보관조건)

도서관은 서고에 난방시설과 조명,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서고의 온도와 습도는 정해진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출판물의 소독)

도서관은 광선, 유해곤충 같은것에 의하여 출판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출판물에 대한 소독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화재사고의 방지)

도서관은 화기수감장치, 자동소화장치를 비롯한 방화기재를 갖추며 화재사고요소를 제때에

없어야 한다.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에는 인화성물질을 보관할수 없다.

제31조 (출판물의 수복)

도서관은 손상된 출판물을 제때에 수복하며 신문, 잡지합본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출판물의 제적)

쓸모가 없는 출판물은 제적한다.

도서관은 출판물의 제적대상을 바로 정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때에 제적하여야 한다.

제적된 출판물은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출판물의 실사)

도서관은 보관된 출판물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실사과정에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34조 (서고, 컴퓨터망봉사기실의 출입)

도서관은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없이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에 출입할수 없다.

제5장 도서관봉사

제35조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보장)

도서관봉사는 도서관리용자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실을 알뜰히 꾸리고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제36조 (도서관의 일보는 날자)

도서관은 일보는 날자,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승인없이 일보는 날자, 시간을 변경시킬수 없다.

제37조 (도서관의 리용방법)

도서관에 보관된 출판물의 리용은 열람, 대출의 방법으로 한다.

출판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열람, 대출)

열람, 대출신청을 받은 도서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출판물을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대출하는 출판물은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열람, 대출한 출판물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어지럽히거나 손상

시키지 말아야 한다.

열람하는 출판물은 열람실밖으로 내갈수 없다.

제40조 (통신대출, 이동문고)

도서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통신대출, 이동문고 같은 것을 조직할수 있다.

통신대출비용은 대출을 요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부담한다.

제41조 (호상대출, 국제대출)

열람, 대출을 요구하는 출판물이 없을 경우에는 호상대출이나 국제대출을 조직할 수 있다.

출판물의 국제대출은 정해진 도서관이 한다.

제42조 (출판물의 반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해진 기간에 바쳐야 한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제43조 (출판물리용의 실효제고)

도서관은 감상문쓰기, 읽은책발표모임 같은 여러가지 실효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출판물리용의 실효를 높여야 한다.

제44조 (출판물의 소개)

도서관은 출판물소개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출판물소개사업은 도서전시, 새책소개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45조 (출판물소개자료의 편집발행)

도서관은 문헌소개목록, 자료소개색인, 해제자료, 문헌개관 같은 출판물소개자료를 편집발행하여 도서관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도서관리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때에 조사해주어야 한다.

제46조 (과학기술보급)

도서관은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자료통보, 새기술통보강의, 과학리론강의, 과학강연 같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의와 강연은 해당 전문가를 준비시켜 할수 있다.

제47조 (원격강의)

도서관은 영상 및 음성전송을 쌍방향으로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원격강의실을 갖추고 도서관리용자에게 원격강의를 할수 있다.

제48조 (번역, 결심채택지원,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도서관은 다른 나라 출판물에 대한 번역봉사,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결심채택지원봉사,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같은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49조 (전자인증대리봉사)

해당 도서관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 적공민에 대한 전자인증봉사를 대리할수 있다.

전자인증봉사를 위임받은 도서관은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전자인증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봉사료금)

도서관은 도서관리용자의 신청에 따라 출판물의 대출봉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봉사료금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문, 과학연구부문의 도서관에서는 출판물의 대출봉사료금을 받지 않는다.

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1조 (도서관의 건물, 시설물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서관의 건물과 시설을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도서관부문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서관운영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53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4조 (도서관부문의 과학연구사업)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도서관운영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55조 (도서관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도서관 부문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비품,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서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7조 (손해보상, 리용중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분실, 손상시켰거나 도서관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도서관리용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5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서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주체84(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7(2008)년 10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5(2016)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24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38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1호로 수정보충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종류)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낳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이다.

명승지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천연기념물에는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자연로두 같은 자연물이 속한다.

제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통한 교양사업강화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보존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교육교양사업, 과학연구사업 같은데 전적으로 리용되고 있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소개선전사업과 참관사업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산다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나라를 귀중히 여기며 더 잘 꾸리고 빛내어나가겠다는 열렬한 애국심을 키워주도록 한다.

제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간다.

제5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더 많이 찾아내어 그 가치를 평가하고 보호대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에서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7조 (대중적인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제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는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도 할수 있다.

제1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방법)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은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승지의 지형도와 천연기념물의 위치도를 만들고 천연기념물을 사진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제1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내용)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위치
2.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력사적유래
3.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크기와 특성, 리용 또는 보존가치와 전망
4.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있는 지대의 자연지리적상태
5. 명승지 안의 생태계에 대한 자료

제1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면 민족유산보호 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발견을 통보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위원회조직)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비상설자연유산 심의평가위원회를 조직한다.

제1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신청)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에는 등록하려는 대상의 이름, 소재지, 역사적유래, 특성, 보존가치, 현상태, 리용과 보존전망, 자연주위환경, 등록근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형도, 위치도, 사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방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을 받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대상의 역사적유래, 지질학적 및 생태학적특성, 보존가치 같은것에 대하여 정확히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심의에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

내각의 승인을 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름, 등록날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풍치가 전형적이고 희귀하고 독특하며 시공간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지형 또는 지물
2. 정착 또는 희유동물가운데서 학술적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종이거나 의의있는 동물
3. 학술적 및 풍치상 고유한 특성을 가진 식물
4. 지리, 지질학적형성조건과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있는 호수, 온천, 화석, 광석, 로두

제18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삭제사유)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다음의 경우 삭제할수 있다.

1. 지진, 벼락, 화재, 오염 같은 원인으로 명승지, 천연기념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졌을 경우
2. 동식물이 불품이 없거나 사멸되었을 경우

제1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삭제절차)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삭제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삭제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며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제2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확립)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를 잘하는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손상을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그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특수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

해당 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정확히 분담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협의하고 내각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존관리기준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2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담당관리원을 두고 명승지, 천연기념

물보호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상태에 대한 관찰정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표식)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 같은 것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시설관리)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 것을 꾸리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대한 참관 및 관광을 하는 경우 해당한 요금을 내야 한다.

제2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공사)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연제공사 같은 것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존)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고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있는 자연바위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새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명승지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반드시 새겨야 할 경우에는 다른곳에서 돌을 날라다가 새기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산림자원의 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 같은 것을 더 많이 심으며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거나 묘지를 쓰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동식물자원의 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잘 보장해주며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않도록 방역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3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과 관련이 없는 조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조사를 하면서 자연 및 생태환경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는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제32조 (지반침하의 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수 없다.

제3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환경보호질서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룬전기재를 운행하는 행위
2. 시설물의 건설, 운영과정에 정화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소음, 진동, 먼지를 일으키는 행위
3. 식당, 국수집 같은 것을 꾸러놓아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5. 총기류, 폭발물 같은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6.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것을 불태우는 행위
7. 휴지, 담배꽂초, 오물같은것을 망탕 버리는 행위
8. 승인없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9. 룬전기재를 청소하거나 오물을 버려 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3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상현상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파손되었거나 기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민족유산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5조 (천연기념물의 위치이동, 복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려 할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천연기념물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등록된 천연기념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 같은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자료의 영구보존)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상태자료, 력사유래자료, 관찰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강화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지도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3조 (벌금처벌)

이 법 제33조에서 정한 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상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중지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중지처벌을 준다.

1.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과 관련이 없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승인없이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
4. 시설물의 건설, 운영과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경우

제45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 또는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폐기폐설물의 배출로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3. 명승지에서 산불을 일으켰거나 산림을 람벌하였을 경우
4. 명승지에 있는 자연바위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새겼을 경우
5. 명승지에서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6.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등록된 천연기념물을 팔고사기하였거나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앞항 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주체101(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

제1장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제1조 (문화유산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은 문화유산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문화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옹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화유산의 정의)

문화유산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나눈다.

물질문화유산에는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문화유산에는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레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문화유산의 소유권)

문화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았거나 전습받은 문화유산은 개별적공민도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문화유산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제4조 (문화유산보호관리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옹바른 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산이 발굴, 수집, 복원되였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5조 (문화유산을 역사적사실과 현실에 맞게 복원하고 보호관리할데 대한 원칙)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역사적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문화유산보호관리원칙)

문화유산의 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산담당관리제를 실시한다.

제7조 (문화유산의 리용원칙)

국가는 문화유산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 (문화유산보호관리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도록 한다.

제9조 (문화유산보호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제10조 (문화유산의 발굴, 수집의 계획화)

문화유산의 발굴 및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의 발굴 및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유산의 발굴기관과 발굴승인)

문화유산의 발굴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문화유산 보존기관과 전문기관만이 한다. 그러나 비물질문화유산의 발굴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할수도 있다.

제12조 (문화유산의 발굴방법)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이 손상되거나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게 발굴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발굴작업을 끝냈을 경우에는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문화유산발굴자료 및 발굴한 문화유산의 이관)

문화유산을 발굴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문화유산발굴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발굴한 문화유산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4조 (문화유산발견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을 발견하면 문화유산보존기관과 또는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산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 확인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수 없다.

제15조 (문화유산의 수집)

문화유산수집사업은 문화유산보존기관만이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은 문화유산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문화유산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준다.

제16조 (수매과정에 발견한 력사유물의 처리)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력사유물을 문화유산보존기관에 넘겨 주어야 한다.

제3장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17조 (문화유산의 의무적인 평가, 등록)

문화유산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것은 문화유산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문화유산의 심의평가위원회조직)

문화유산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한다.

문화유산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비상설문화유산심의 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9조 (문화유산의 평가신청)

문화유산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 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문화유산평가신청서에는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 보존전망, 보존장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자료, 음성자료, 록화자료와 위치지도도 같은것

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문화유산의 심의평가방법)

문화유산평가신청서를 받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비상설문화유산심의평가 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시기, 보존가치 같은 것을 역사주의원칙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물질문화유산은 역사적의의와 가치에 따라 역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일반유적으로, 역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한다.

비물질문화유산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과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평가한다.

제21조 (문화유산의 등록)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문화유산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등록번호, 명칭, 등록일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화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의 기록)

문화유산보존기관은 등록된 문화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문화유산의 이관, 명칭의 정정)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산을 이관하거나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제24조 (문화유산의 과학기술적인 보존관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파손을 미리막고 원상대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문화유산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문화유산보존관리의 담당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6조 (역사유적보호구역)

국가는 역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은 역사유적보존관리와 근로자들의 참관 및 휴식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7조 (역사유적보호구역안의 시설물철수)

문화유산보존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역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제때에 철수시켜야 한다. 농경지가 역사유적보호구역으로 되었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대토복구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면적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28조 (역사유적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역사유적보호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승인없이 살림집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3. 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5.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제29조 (역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지방정권기관과 문화유산보존기관은 역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 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며 주변을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제30조 (문화유산의 보수, 수복, 소독)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 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준비가 없이는 역사유적, 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수 없다.

제31조 (문화유산보존에서 온도와 습도보장, 사고방지)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 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32조 (역사유적의 리용)

역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산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에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역사유적리용자의 의무)

역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원상대로 보존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역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34조 (역사유물의 보관, 모조품의 리용)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물을 해당한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여야 한다.

손상될수 있는 진귀한 역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역사유적, 유물의 촬영, 벽화무덤의 참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역사유적, 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 할 경우 문화유산보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건설대상의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산보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설대상을 배치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7조 (문화유산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문화유산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문화유산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의 영구보관)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보적의의가 있는 문화유산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유산의 복원

제39조 (문화유산복원의 기본요구)

문화유산의 복원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산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역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문화유산을 복원하여야 한다.

제40조 (문화유산의 형성안)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역사적사실과 해당 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원할 문화유산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화유산형성안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41조 (문화유산의 복원설계)

문화유산의 복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문화유산의 복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복원설계의 승인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42조 (문화유산복원대상의 계획화)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화유산의 복원대상을 기본건설계획지표로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43조 (문화유산복원의 질과 준공검사)

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산의 복원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복원이 끝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력사유적의 이설)

력사유적은 이설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력사유적을 이설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협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문화유산의 복원기관)

문화유산의 복원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제6장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산보호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문화유산보존관리분담)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산보존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49조 (박물관, 력사교양마당, 민속공원의 건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에 박물관, 력사교양마당을 꾸릴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로 보여줄수 있는 민속공원도 꾸릴수 있다.

박물관이나 역사교양마당, 민속공원을 꾸리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문화유산보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산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보호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제51조 (문화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 성과도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산보존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화유산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52조 (문화유산을 통한 교양)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옹계 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문화유산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의 문화유산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53조 (문화유산애호월간)

국가는 해마다 4월과 11월을 문화유산애호월간으로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애호월간에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54조 (비상설문화유산보존위원회의 조직운영)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급 인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문화유산보존위원회는 문화유산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 법집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비상설문화유산보존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문화유산보존기관이 한다.

제55조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문화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문화유산을 발굴하였을 경우
2. 역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철수하지 않았거나 문화유산보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설대상을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합의없이 배치하여 문화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문화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흠쳤을 경우
4. 문화유산을 팔고사거나 거간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문화유산을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6. 발견한 역사유물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7. 제28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법 제5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

주체101(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주체83(1994)년 3월 24일에 채택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이 없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주체107(2018)년 11월 24일] 수정보충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제1조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옹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있으며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제3조 (민족유산의 구분)

민족유산은 대상에 따라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한다.

물질유산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역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과 의술, 사회적관습, 레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기술과 같은것이 속한다.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섬,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강천, 로두와 같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

제4조 (민족유산의 소유권)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공민은 상속 또는 증여받았거나 전습받은 민족유산을 보관, 리용할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민족유산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제5조 (민족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며 민족유산들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하고 원상대로 복구 및 복원,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민족유산의 전국가적, 전인민적보호원칙)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전체 인민이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다바치도록 한다.

제7조 (민족유산의 리용원칙)

국가는 민족유산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민족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9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제10조 (민족유산의 계획적인 발굴)

민족유산의 발굴은 민족유산발굴계획에 따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민족유산발굴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족유산발굴에 대한 청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과 관련한 력사적사실을 발굴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발굴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청원할수 있다.

민족유산발굴에 대한 청원을 접수한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력사적사실을 확인하고 발굴가치와 의의가 있을 경우 계획에 반영하여 발굴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족유산의 발굴기관과 발굴절차)

민족유산의 발굴은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물질유산을 위한 조사, 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고 진행할수 있다.

비물질유산과 자연유산의 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

와 공민이 할수도 있다.

제13조 (민족유산발굴에서 지켜야 할 요구)

민족유산발굴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물질유산을 발굴하기 전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으로부터 물질유산발굴과 관련한 해당 증서를 발급받으며 긴급보존처리준비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2. 발굴과정에 민족유산이 손상되거나 그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거나 주변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발굴이 끝나면 민족유산발굴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4. 발굴한 민족유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존대책을 세운 다음 그것을 해당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4조 (민족유산의 공동발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필요에 따라 우리 나라 영역안에서 다른나라 단체 또는 개인과 고고학적조사, 탐사, 민족유산의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할수 있다.

제15조 (발견한 민족유산에 대한 통보)

민족유산을 발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공사 또는 작업과정에 민족유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족유산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6조 (민족유산의 수집)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민족유산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민족유산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보상하여준다.

제17조 (수매 및 몰수한 력사유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받았거나 몰수한 력사유물을 제때에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수매 또는 몰수한 력사유물이 다른 나라의것인 경우에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준다.

제18조 (민족유산의 계획적인 복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당대의 력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민족유산을 계획적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제19조 (민족유산의 복원안작성)

민족유산의 복원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작성한 민족유산복원안에 따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민족유산복원안을 작성한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민족유산복원기관)

민족유산의 복원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민족유산을 복원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복원과정에 민족유산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력사유적의 복원설계)

력사유적의 복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승인한 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력사유적의 복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력사유적복원의 질과 준공검사)

력사유적을 복원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복원을 승인된설계에 따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의 복원이 끝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제3장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제23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 및 등록요구)

민족유산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심의평가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민족유산심의평가를 위한 비상설위원회의 조직)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로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해당 심의평가위원회는 과학,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제25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

민족유산을 심의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민족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와 보호가치, 보존전망, 보존 장소, 비물질유산인경우 그것을 보유하고있는자, 그와 련관된 수단과 도구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위치지정도를 비롯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제26조 (민족유산의 평가방법)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민족유산에 대한 심의평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민족유산을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물질유산은 역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역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한다.

비물질유산은 국가비물질유산과 지방비물질유산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비물질유산보유자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한다.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평가한다.

제27조 (민족유산의 등록)

민족유산의 심의과정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민족유산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등록한다.

그러나 일반역사유물인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민복유산보호기관에 등록한다.

등록된 비물질유산보유자에게는 해당하는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제28조 (민족유산의 삭제 및 폐기)

민족유산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고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에서 삭제하고 폐기할수 있다.

제29조 (민족유산명칭의 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민족유산의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민족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판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제1절 물질유산의 보호관리

제31조 (물질유산보호관리의 담당자)

물질유산의 보호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특수지역안에 있는 역사유적의 보호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32조 (력사유적관리의 분담)

해당 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력사유적의 관리를 분담해주어야 한다.

력사유적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에 대한보호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력사유적에 대한 보호관리를 집중적으로 한다.

제33조 (력사유적보호구역)

력사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력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력사유적보호구역을 해당 국제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중앙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34조 (력사유적보호구역의 정리)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력사유적보호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 묘지 같은것을 철수시켜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력사유적보호구역에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하며 보호구역안을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제35조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3.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5.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6. 묘지를 쓰는 행위
7. 짐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제36조 (력사유적의 원상보존)

력사유적은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력사유적을 이설 또는 구조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37조 (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의 설치)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세계유산표식을 한다.

제38조 (력사유물의 보관, 진렬)

력사유물은 해당한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와 기타 정해진 장소에 규정대로 보관, 진렬한다. 이 경우 손상될수 있는 국보유물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모조품을 만들어 진렬할수 있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력사유물을 이관할수 없다.

제39조 (력사유적유물의 보수, 수복, 소독)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유물에 대한 보수, 수복, 소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과 또는 기능공이 하거나 그의 기술적지도를 받는다.

제40조 (비물질유산의 온습도 및 조명보장, 사고방지대책)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력사유적유물의 보호에 필요한 온습도와 조명을 규정대로 보장하며 분실, 화재, 파손, 벼락, 큰물을 비롯한 사고와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절 비물질유산의 보호관리

제41조 (비물질유산보호관리의 담당자)

비물질유산의 보호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한다.

제42조 (비물질유산의 목록작성)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등록된 비물질유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물질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와 유래, 현상태, 보호가치, 보존전망, 보존장소, 그것을 보유하고있는 자, 비물질유산과 련관된수단, 도구,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비물질유산목록은 비물질유산이 보충되는데 따라 갱신한다.

제43조 (비물질유산의 소실, 손상방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비물질유산이 소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비물질유산의 내용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4조 (비물질유산보유자에 대한 우대)

해당,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비물질유산보유자를 우대하며 그의 공로에 따라 해당하는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제45조 (비물질유산의 전수)

비물질유산보유자는 비물질유산을 후대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줄수 있도록 전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물질유산을 전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비물질유산의 계승발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 민족체육, 민속놀이, 민족음식, 조선옷, 전통공예기술, 우리 말과 인사법, 고려의학, 민족적건축형식 같은 비물질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제47조 (비물질유산의 보급)

민족유산보호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 출판보도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비물질유산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비물질유산과 관련한 축전, 전시회, 전람회 같은것을 조직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3절 자연유산의 보호관리

제48조 (자연유산보호관리의 담당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특수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49조 (자연유산관리의 분담)

해당 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분담해주어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집중적으로 한다.

제5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하여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합의하고 내각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찰, 기록, 통보체계)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을 제때에 통보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53조 (자연피해방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벼락과 큰물,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4조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판의 설치)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판 같은것을 규정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 (명승지보호구역에서 참관 및 봉사시설의 건설, 개건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보호구역에서 참관 및 봉사와 관련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개건보수하려 할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

제56조 (력사유적의 이관)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을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57조 (민족유산에 대한 참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에 대한 참관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낸다. 특별히 지정된 민족유산을 참관하거나 촬영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58조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건설과 그 관리)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민족유산이 집중되어 있거나 필요한 지역에 우리 나라의 력사와 민족전통을 실물로 보이줄수 있는 박물관, 민속공원, 민속거리, 력사교양마당, 비물질보급시설 같은 력사교양거점을 꾸릴수 있다.

이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제59조 (민족유산과 역사교양거점을 통한 교양)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과 역사교양거점에 대한 참관 및 견학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미풍량속을 잘 알고 민족적 긍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역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

교육,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은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하고 역사상식 도서를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역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을 널리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과 관련한 출판물 및 편집물을 제작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61조 (비물질유산의 마크리용)

비물질유산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마크를 정한다.

비물질유산마크의 리용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비물질유산마크를 상업적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한료를 낸다.

제62조 (민족유산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민족유산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같은 목적으로 민족유산 또는 그와 관련한 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3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64조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의 조직운영)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급 인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민족유산보호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법집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제65조 (민족유산애호월간)

국가는 해마다 4월과 11월을 민족유산애호월간으로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 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애호월간사업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66조 (민족유산보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없다.

제67조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 성과도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를 위한 전망계획과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민족유산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관리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68조 (민족유산보존사의 조직운영)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민족유산보존사를 전문분야의 실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에 대한 조사와 발굴, 복원 및 보수설계, 보존과 관련한 과학연구와 자문, 집필, 편집, 출판, 자료기지화, 과학기술교류와 같은 사업을 한다.

제69조 (종합적인 자료기지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을 자료기지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한다.

국보적의의가 있는 민족유산은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0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민족유산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1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민족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 년징,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7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1. 민족유산을 비법적으로 소유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역사유적유물을 발굴하였을 경우
3. 이 법 제13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4. 발견하였거나 수매 또는 몰수한 역사유적유물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지 않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민족유산의 복원, 보수, 수복, 소독을 바로하지 않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민족유산의 심의평가, 등록질서를 어겨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보호구역안에서 해당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 묘지같은것을 철수시키지 않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이 법 제35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민족유산을 파손 또는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10. 민족유산을 밀매하였을 경우
11. 그밖에 이법을 어겨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제7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7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주체100(2011)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5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55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제1조 (보통교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은 무료의무교육의 실시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교육교양사업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통교육사업을 개선하고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보통교육사업의 발전원칙)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 보통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3조 (보통교육의 정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

보통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일반교육이다.
보통교육에는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속한다.
국가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모든 새 세대들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4조 (교육교양조건의 보장원칙)

학생들의 교육교양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학교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학생도서관, 소년단야영소, 유치원 같은 교육교양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도록 한다.

제5조 (교원양성원칙)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보통교육부문의 유능한 교원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6조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보통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보통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보통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단계의 교육사업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보통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제9조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은 누구나 다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령기에 있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공부시킨다.

제10조 (중등일반의무교육의 학제)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2년이며 학교전교육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한다.

제11조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는 5살부터 16살까지이다.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나이 또는 학년에 제한없이 교육을 앞당겨 받을수 있다.

제12조 (학령어린이의 취학)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그러나 육체적 및 지적장애를 받는 어린이는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취학나이를 늦출수 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

제13조 (무료교육)

중등일반교육은 무료이다.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일체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통교육기관은 학생이나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일체 요금을 받을수 없다.

제14조 (장학금)

국가는 맹, 룡아학교, 제1중학교, 학원의 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제15조 (무의무탁자, 장애자의 교육 및 생활조건보장)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맹,聋아 같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생활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준다.

제16조 (교과서 및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같은 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때에 출판,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식량과 학용품, 생활용품의 보장)

교원, 학생에게는 식량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낮은 값으로 보장한다.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제18조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운영기준의 제정)

보통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통교육기관의 구분)

보통교육기관은 학업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1년제 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
2. 5년제 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3. 3년제 낮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초급중학교
4. 3년제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급중학교
5. 장애자교육을 위한 맹,聋아학교
6. 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
7. 수재형의 학생들을 위한 제1중학교

제20조 (학교의 배치)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도시 및 마을건설계획 학생수와 통학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학교건설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맡아 우선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 운동장, 수영장 같은 교육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21조 (학교의 명칭)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명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하며 맹, 룡아학교, 학원의 명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학교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운영)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는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생수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함께 운영하거나 분교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제1중학교의 운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과 도에 제1중학교를 내오고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재교육을 주어야 한다. 제1중학교의 학생선발기준은 실력본위의 원칙에서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제1중학교 학생들의 기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학원의 운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특정한 대상들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학원을 내오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원관리운영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학원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5조 (맹, 룡아학교의 운영)

맹, 룡아학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하는데 따라 필요한 지역에 배치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맹, 룡아학교의 관리운영을 바로하며 학생들에 대한 학습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보통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학교건물과 구획, 시설을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사와 실험실, 실습지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은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할수 없다.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제27조 (보통교육일군의 구분)

보통교육일군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보통교육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8조 (교원양성)

국가는 중앙과 도에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내오고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범교육체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사범교육을 위한 학생선발과 졸업후배치)

사범교육을 위한 학생선발과 사범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의 배치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30조 (교원의 자격)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은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자에게 준다.

제31조 (교원자격급수)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급수는 교종별로 1, 2, 3, 4, 5급으로 하며 급수판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교원자격급수판정을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교원급수사정위원회를 둔다.

교원자격급수사정절차와 방법, 평가기준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2조 (교원에 대한 재교육강습)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교원을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종별, 과목별로 단기강습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한다.

제33조 (교수능력제고)

보통교육기관은 교수참관, 교수경연, 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교원들의 교수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원의 책임과 역할)

교원은 앞날의 역군을 키워나가는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지니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

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도록 한다.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제35조 (교육교양사업의 개선요구)

교육교양사업을 잘하는 것은 보통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보통교육기관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게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제36조 (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조직)

보통교육기관은 중앙교육지도기관에서 내려보낸 교육강령에 따라 교육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육강령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제37조 (학급편성)

보통교육기관은 일정한 수와 비율의 남녀학생들로 학급을 편성하고 학급단위로 교육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남학생과 녀학생은 차별없이 평등한 교육교양을 받는다.

제38조 (학급담임제, 학과목담당제의 실시)

보통교육기관은 교육단계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학급담임제와 학과목담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등교육단계의 수업은 학급담임제로, 중등교육단계의 수업은 학과목담당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9조 (분과의 조직)

보통교육기관은 교원이 자질과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대책하기 위한 분과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소학교에는 학년을 단위로 하는 학년분과를, 중학교에는 학과목별로 학과목분과를 둔다.

제40조 (정치사상교육, 일반지식교육, 체육, 예능교육)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 다방면적이며 깊은 지식, 튼튼한 체력과 품만한 정서를 지닐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국어문학, 력사, 지리 같은 일반과목에 대한 교육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를 비롯한 기초과학기술 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 예능, 체육과목에 대한 교육을 옹게 결합시켜야 한다.

제41조 (교육교양방법)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은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한다.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 (교육강령의 의무적인 집행)

보통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학생들이 모든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들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43조 (학생의 실력평가)

보통교육기관은 실력평가를 위한 시험을 정해지는데 따라 실속있게 조직하며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소화정도와 활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서는 시험성적과 함께 평상시 학습정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조직을 무질서하게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 (수재교육)

보통교육기관은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엄선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주어 그들이 기초과학부문과 전문부문의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실력이 특출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학업년한을 단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졸업시키거나 해당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시킬수 있다.

제45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국가는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을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이있고 다방면적인 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도록 한다.

보통교육기관은 청년동맹조직, 학부형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도덕과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보통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

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교육과학연구사업의 강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교육과학연구기관은 보통교육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보통교육발전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

보통교육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재정은행기관은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은 류용할수 없다.

제50조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의 강화)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중시기종을 철저히 세우고 보통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교육사업과 교육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
2. 학교배치 및 건설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거나 학교건물, 시설관리를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교사와 운동장 같은 학교시설을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하여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교원양성, 배치사업을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교육강령집행을 태공하였거나 학생들을 승인없이 학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6. 시험조직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교과서 같은 것을 비법적으로 출판, 인쇄하여 상적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9. 리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미술법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0호로 채택
주체110(2021)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2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산업미술법의 기본

제1조 (산업미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미술법은 산업미술계획의 작성과 산업미술의 창작, 심의, 보급, 리용, 인재양성 및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산업미술의 정의)

산업미술은 공업제품과 생활환경 같은것을 아름답고 편리하고 쓸모있게 만들며 꾸리기 위한 도안을 선행시켜주는 미술로서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을 포괄하는 실용미술의 기본형식이다.

제3조 (산업미술선행원칙)

산업미술은 인민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척후대의 사명을 수행한다. 국가는 설계와 생산, 건설에 산업미술을 확고히 선행시켜 생산물, 건설물의 질과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4조 (산업미술에서 주체적립장, 창조적립장구현원칙)

산업미술을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산업미술분야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산업미술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5조 (산업미술의 계획성보장원칙)

산업미술을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산업미술을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6조 (산업미술의 창작원칙)

산업미술창작사업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한다.

제7조 (산업미술심의원칙)

산업미술에 대한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산업미술심의회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 (산업미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산업미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산업미술발전의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산업미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산업미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제9조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제고원칙)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산업미술과 관련한 소개선전사업을 강화하여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10조 (산업미술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산업미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1조 (이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산업미술계획의 작성과 산업미술의 창작, 심의, 보급, 리용, 인재양성 및 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상표, 공업도안 같은 지적소유권의 심의, 등록,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산업미술계획

제12조 (산업미술발전의 계획화요구)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발전전략과 그 수행을 위한 산업미술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산업미술발전전략작성)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은 국가의 산업미술정책에 기초하여 산업미술발전방향과 도달목표, 실현방도를 밝힌 국가산업미술발전전략을 적성하여야 한다.

국가산업미술발전전략은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산업미술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계획을 작성하여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미술계획은 국가산업미술발전전략에 기초한 국가과제수행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제를 배합하는 원칙에서 작성한다.

제15조 (산업미술계획의 맞물림과 시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계획을 국가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승인된 산업미술계획을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6조 (산업미술계획수행정형총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계획수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미술의 창작

제17조 (산업미술창작체계수립)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체계를 바로세우고 산업미술도안창작에서 순차와 공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8조 (산업미술창작기지설치 및 운영)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선진적인 산업미술창작방법과 기법을 적극 받아들여 산업미술도안창작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산업미술창작에서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결합)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에서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을 옹기결합시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우리 식으로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여야 한다.

제20조 (산업미술창작에서 시대성, 실용성, 미학적보장)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에서 현실적요구를 구현하여 산업미술도안의 시대성과 실용성, 미학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산업미술창작에서 조형화, 예술화의 요구보장)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창작수법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조형화, 예술화가 보장된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여야 한다.

제22조 (산업미술창작에서 독창성의 요구보장)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에서 독창성의 요구를 구현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여야 한다.

제23조 (합의에 기초한 산업미술도안설계)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단위와 합의한데 기초하여 산업미술도안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제24조 (현지창작활동조직)

산업미술지도기관과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현지창작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25조 (균중적인 산업미술창작)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도안현상모집과 산업미술창작토론회, 경연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이 산업미술도안창작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창작)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은 산업미술분야에서 다른나라와 여러가지 형식의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창작을 조직할 수 있다.

제27조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가치평가)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업미술도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수 있도록 산업미술도안평가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미술의 심의

제28조 (산업미술심의대상)

정해진 산업미술도안은 심의를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심의를 받아야 할 산업미술도안은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9조 (산업미술심의기관)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는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도(직할시)산업미술지도기관이 한다.

제30조 (산업미술도안심의신청)

산업미술도안심의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전자수속체계를 통하여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 또는 도산업미술지도기관에 산업미술도안심의신청문건을 내야한다.

제31조 (산업미술도안의 심의)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도산업미술지도기관은 산업미술도안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심의에서는 산업미술도안에서 시대성과 실용성, 미학성을 구현하였는가, 국제적인 공용기호, 부호를 정확히 표현하였는가, 과학성과 도입가능성이 보장되었는가 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32조 (산업미술도안심의결과와 기록)

산업미술지도기관은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속대리업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심의회와 관련한 수속을 산업미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에 위임하여 할수 있다.

제5장 산업미술의 보급, 리용

제34조 (산업미술의 보급)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산업미술과 관련한 지식, 상식, 국제관례같은 자료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제35조 (산업미술전시회, 전람회)

산업미술지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산업미술전시회, 전람회를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전시회, 전람회에는 각종 산업미술도안과 모형, 실현제품, 산업미술관련출판물을 전시하며 관람자들의 요구에 따라 판매하여줄수도 있다.

제36조 (산업미술도안의 도입 및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산업미술도안을 제때에 도입, 리용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산업미술도안은 도입, 리용할수 없다.

제37조 (산업미술정보봉사기지설치 및 운영)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정보봉사기지를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산업미술정보봉사기지는 산업미술정보수집과 보급, 소개선전, 산업미술도안의 창작 및 도입 과 관련한 상담, 협조 같은 사업을 한다.

제38조 (산업미술견본제작기지설치 및 운영)

산업미술지도기관은 실습공장 같은 산업미술견본제작기지를 꾸리고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 들이 제때에 생산과 건설에 도입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간판제작업종의 승인 및 제작단위의 선정)

간판은 전문제작단위에서만 제작할수 있다.

간판제작업종을 승인하고 제작단위를 정해주는 사업은 산업미술지도기관이 한다.

제40조 (산업미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도입)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분야에서 이룩된 세계적으로 앞선 성과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6장 산업미술인재양성 및 조건보장

제41조 (산업미술반전을 위한 토대구축)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며 산업미술부문의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고 산업미술창작 및 연구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산업미술전문가양성)

산업미술지도기관과 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부문별 산업미술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전망성있에 키워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망성있는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여 양성할수도 있다.

제43조 (산업미술전문가배치)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전문가를 비롯하여 산업미술전문교육을 받은 공민을 산업미술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산업미술전문가자격 및 급수평가)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공적과 실력에 따라 산업미술전문가자격과 급수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전문가는 자격급수사정에 정기적으로 응시하여 자격급수를 평가받아야 한다.

제45조 (산업미술전문가재교육)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전문가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산업미술전문가들을 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한다.

제46조 (산업미술연구기지의 조직, 운영)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연구기지와 연구력량을 실정에 맞게 꾸리고 운영하여 산업미술발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내야 한다.

제47조 (산업미술사업조건구비)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산업미술창작 및 연구사업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48조 (산업미술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금, 자재 같은것을 계획에 맞물려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금, 자재 같은것은 다른 사업에 돌려쓸수 없다.

제49조 (산업미술가의 사회적동원면제)

로동행정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가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그들을 산업미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50조 (산업미술가의 우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가들을 우대하며 그들이 산업미술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51조 (산업미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에 대한 평가)

국가적으로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여 산업미술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민에게는 해당하는 평가를 한다.

제7장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요구)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산업미술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3조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은 산업미술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4조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산업미술발전전략과 산업미술계획의 작성과 수행, 산업미술의 창작, 심의, 도입, 보급, 리용, 인재양성, 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 (손해보상)

산업미술도안과 관련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산업미술도안을 제작,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2. 승인된 산업미술도안을 자의대로 수정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3. 산업미술도안을 위조하여 표기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4. 산업미술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단위가 간판을 제작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제57조 (중지처벌)

이 법 제5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58조 (몰수처벌)

승인받지 않은 제품상표를 제작, 판매, 구입, 리용하였거나 산업미술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단위와 개별적공민이 간판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제59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산업미술도안을 선행시키지 않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였을 경우
 2. 산업미술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미달하였을 경우
 3.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기일을 어겼을 경우
 5. 산업미술도안심의결과를 정확히 기록,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6. 승인을 받지 않은 산업미술도안을 도입, 리용하였을 경우
 7. 승인된 산업미술도안을 자의대로 수정하였을 경우
 8. 승인을 받지 않은 단위 또는 개별적공민이 간판을 제작하였을 경우
 9. 산업미술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 하지 않아 산업미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산업미술가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그들을 산업미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켜 산업미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산업미술도안과 관련한 수속을 하면서 부당한 리유와 구실로 돈과 물자를 받을 경우
- 앞항 1~11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0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주체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제1조 (어린이의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2조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원칙)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3조 (어린이양육에서 부모의 자유보장원칙)

어린이들을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제4조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혁명전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이다.

제5조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는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다.

제6조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7조 (어린이에 대한 배려의 중대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제8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양하는 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제9조 (망명자의 자녀양육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10조 (어린이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11조 (어린이보육교양에서 주체사상의 요구관철)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제12조 (어린이보육교양조건보장)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탁아소, 유치원의 건설과 비품)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 것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제14조 (아동공원과 놀이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15조 (어린이식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자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제16조 (어린이식료품)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 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 (어린이용품)

국가는 어린이옷, 신발과 여러 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18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의 양육)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는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제19조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보호)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20조 (어머니의 보호)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기간의 생활비와 식량, 분배몹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여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험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 시간안에 젓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로동시간을 줄이고 그들에게 응급 생활비를 준다.

제21조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의 보호)

국가는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배준다.

한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젓제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제22조 (어린이양육의 기본요구)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3조 (어린이의 생활환경)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구범과 위생방역구범의 요구에 맞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하며 공기, 햇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

제24조 (주식과 새참)

탁아소와 유치원은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여야 한다.

제25조 (의료봉사)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

제26조 (아동병동)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

제27조 (어린이료양)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8조 (어린이의 건강과 발육)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제29조 (어린이교육교양의 기본요구)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 것은 조국의 융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30조 (계급교양)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휘황한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제31조 (집단주의교양)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한다.

제32조 (로동을 사랑할데 대한 교양)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일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할데 대한 교양)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34조 (도덕교양)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을 레절바른 품성을 가지며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능교육)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주어야 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노래와 춤, 악기타는 법을 배워주며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36조 (학교전의무교육)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준다.

학교전의무교육기간에는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같은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준다.

제37조 (어린이교양의 형식과 방법)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제38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성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장하며 지능이 발달되고 문화적소양이 높은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 기관이다.

제39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분류)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제40조 (탁아소, 유치원의 배치)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녀성들의 일터가끼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와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제41조 (보육원과 교양원)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 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요하고 보람찬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보육원, 교양원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보육원, 교양원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일군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배려를 돌린다.

제42조 (보육원, 교양원의 품모)

보육원, 교양원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총복, 진정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제43조 (보육원, 교양원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44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의 자격)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일할수 없다.

제45조 (혁명가적품성의 소유)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46조 (어린이를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울 의무)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임무)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한다.

1.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한다.
2.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4.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관련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

제49조 (지방정권기관의 임무)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해당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한다.
2.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50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방법)

국가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료해 하고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주도록 한다.

제51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의 정규화, 규범화)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2조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

국가는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제53조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과학연구사업, 문예작품창작)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문예기관은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 같은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제54조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

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한다.

제55조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같은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사회협동단체에 의한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보장)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닭, 염소, 젓소, 같은 짐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필요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육아원, 애육원의 어린이보육교양)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은 이 법에 따른다.

제58조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9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 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

주체109(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

제1장 원격교육법의 기본

제1조 (원격교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연한 원격교육체계와 질서를 세워 전민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한다.

제2조 (원격교육의 정의)

원격교육은 교수자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과 수단을 리용하여 진행되는 먼거리교육형태이다.

제3조 (원격교육의 발전원칙)

원격교육의 발전은 전민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원격교육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4조 (원격교육체계의 수립원칙)

원격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 것은 원격교육의 선차적 요구이다.

국가는 부문별, 직종별에 따르는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기관들과 전국의 모든 부문, 지역, 단위들에 원격교육을 실현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제5조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원칙)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시키는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원격교육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 시켜나가도록 한다.

제6조 (원격교육일군대렬강화원칙)

원격교육일군은 원격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원격교육을 위한 교수와 프로그램개발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교육일군들을 능력있는 인재들로 꾸리도록 한다.

제7조 (원격교육조건보장원칙)

국가는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 (원격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원격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원격교육에 적용한다.

제2장 원격교육체계의 수립

제10조 (원격교육기관)

원격교육은 종합대학과 중요부문별대학에서 한다.

해당 대학은 원격교육학부를 통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에 원격교육학부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11조 (원격교육학부의 기구)

원격교육학부에는 교무행정, 원격교수준비, 학습교류, 컴퓨터망관리와 운영, 정보기술봉사, 프로그램개발 등을 담당수행하는 실과 직제를 둘수 있다.

제12조 (원격교육학부의 학과)

해당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부문별직종, 교육발전추세와 현실을 고려하여 원격교육학부의 학과를 내올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원격교육학부가 갖추어야 할 설비)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컴퓨터망봉사설비와 원격교수준비, 실시간원격강의, 교무행정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원격교육홈페이지 개설)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원격교육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5조 (원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도입)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대책)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망의 보안대책을 정해진 보안급수대로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장 학생모집

제17조 (학생모집대상)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다.

제18조 (대학추천)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대학추천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발전전략과 인재양성계획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을 해당 대학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학추천시기)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대학추천은 년중 어느때나 할수 있다.

제20조 (대학추천절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을 대학에 추천하려 할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대학입학문건을 작성한 다음 거주지역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를 거쳐 해당 대학에 제기하여야 한다.

입학문건에는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이름, 직장 및 직위, 직종과 함께 전자인증의 식별자와 지망하는 학과, 원격교육을 받을 장소, 원격으로 학기, 학년말시험을 칠 장소 등을 정확히 밝히고 공인을 찍는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입학문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대학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1조 (입학결정 및 입학통지서의 발급)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입학문건을 접수한 대학은 그것을 제때에 심의, 결정하고 입학이 결정된 대상에게 입학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통지서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의 경유를 받는다.

제22조 (입학통지)

중앙교육지도기관은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를 경유한 다음 해당 인민위원회에 제때에 보내야 한다.

입학통지서를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7일안으로 입학한 공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학생의 입학)

입학통지서를 받은 공민은 해당 대학의 원격교육학부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가입승인을 받아 과정안에 반영된 학습을 하여야 한다.

학생의 입학날은 원격교육홈페이지가입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제24조 (학생의 전학과 전과, 제명)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은 재학기간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전학, 전과할수 있다.

전학, 전과하려는 학생은 소속된 단위에서 전학, 전과의뢰서를 받아 대학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1년이상 학습하지 않은 학생은 제명한다.

제4장 원격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

제25조 (원격교육강령작성의 담당자)

원격교육강령은 대학이 작성한다.

원격교육강령에는 원격교육과정안과 원격교수요강 등이 속한다.

제26조 (원격교육과정안작성원칙과 내용)

원격교육과정안은 학생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알고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하는 혁명인재, 현실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 인재로 키우는 원칙에서 원격교육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격교육과정안에는 양성목표와 교수진행계획, 교수요목 등을 반영한다.

제27조 (원격교육과정안의 심의, 승인)

원격교육과정안은 대학교육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 (원격교수요강작성원칙과 내용)

원격교수요강은 원격교육과정안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원칙에서 과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격교수요강에는 학과목의 시간수, 적용할 학과, 학기, 학과 목의 구성체계와 중심내용, 교수형태와 총화방법 등을 반영한다.

제29조 (원격교수요강의 심의, 승인)

원격교수요강에 대한 심의, 승인은 대학에서 한다.

제30조 (원격교수안의 작성)

원격교수안은 원격교수과목을 담당할 교원과 원격교육학부에서 작성한다. 이 경우 원격교수안을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하며 해당 학과목과 원격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육학적효과를 보장할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 (원격교수안과 원격교육편집물의 심의, 출판승인)

원격교수안은 해당 강좌와 원격교육학부, 대학의 심의를 받으며 원격교육편집물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출판승인을 받는다.

제32조 (원격교수안의 적재)

원격교육학부는 심의, 승인을 받은 원격교수안을 원격교육 봉사기에 적재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비실시간원격강의의 조직과 집행)

원격교육학부는 학생이 비실시간원격강의를 받을수 있도록 봉사기운영을 정상화하며 학생의 학습정형을 정확히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를 식별할수 있는 첨단기술을

리용하여 학습과정에 부정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4조 (실시간원격강의와 질의응답의 조직과 집행)

원격교육학부는 실시간원격강의와 질의응답계획을 작성, 게시하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실천실기교수형태의 집행)

원격교육학부는 과정안에 반영된 실험실습, 학과설계, 논문 집필 등을 학문별, 대상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실력평가)

원격교육학부는 학생의 지적능력과 창조적응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원칙에서 평상시성과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실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과목시험과 졸업시험은 정해진 장소에서 컴퓨터망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37조 (학생의 의무)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은 국가망과 연결된 컴퓨터, 휴대용정보통신수단을 리용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학습할수 있다. 이 경우 과정안에 반영된 모든 강의와 실천실기, 실시간질의응답, 시험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며 원격교육을 받는 과정에 대리학습과 대리시험 등 부정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원격교육진행정형총화)

해당 대학은 원격교육진행정형에 대하여 월별, 년별로 총화하여 그 정형을 중앙교육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자기 단위 종업원의 학업진행정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제39조 (원격교육문건과 자료의 보관)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과정안, 학적부, 졸업증수여대장, 학습리력, 시험리력, 성적자료 등을 정해진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학적부, 졸업증수여대장은 영구보존하며 원격교육과정안과 성적자료는 과정안집행이 끝날 때까지, 학습리력과 시험리력 자료는 두학기분을 보관한다.

제40조 (졸업)

원격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졸업증서를 받은 대상은 현장체험기간을 거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전공부문에서 일하고있는 경우 졸업전 일한 년한을 현장체험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제5장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보장

제41조 (원격교육을 위한 통신조건보장)

정보통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원격교육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도록 원격교육봉사기의 자료전송, 망통신설비의 정상가동을 비롯한 모든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2조 (전자증명서발급)

전자인증기관은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제때에 접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43조 (원격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보장)

해당 대학은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학습지원프로그램 등 학습자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원격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4조 (원격교육을 위한 학습교류보장)

원격교육학부는 학습교류를 담당한 전문일군을 두고 컴퓨터망을 통한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사이의 학습교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원격학습장소의 조건보장)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이 도서관을 비롯한 필요한 장소에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원격학습장소에는 국가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비롯한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46조 (원격교육을 위한 시간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습과 시험, 실천실기 등 교육과정안집행을 위한 시간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7조 (실험실습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과정에 반영된 실험실습을 위한 장소와 설비, 시약, 자재를 비롯한 실험실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과정에 반영된 실험실습을 조직, 장악할 수 있는 겸직일군을 두어야 한다.

제6장 원격교육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 (원격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원격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대학의 원격교육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9조 (원격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원격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원격교육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0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대학추천과 입학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원격교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원격교육을 위한 준비와 집행을 바로 하지 않아 원격교육과정안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원격교육을 위한 전자증명서발급, 정보통신보장, 원격학습장소와 시간보장 등을 바로 하지 않아 원격교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원격교육망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원격교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원격교육망에 비법적으로 가입하여 원격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습과 시험에서 부정적 행위를 조장, 묵인시켰을 경우
7. 그밖에 이 법을 어겨 원격교육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51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0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해당한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

주체110(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1호로 채택

제1장 청년교양보장법의 기본

제1조 (청년교양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은 국가의 청년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청년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청년중시원칙)

청년중시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언제나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어 그들이 자기의 본태와 피줄을 똑바로 알고 혁명의 대를 깨끗이 이어나가도록 한다.

제3조 (청년사업조건보장원칙)

청년사업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청년사업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청년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전체 인민이 청년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 도와주어 청년들이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방조속에서 혁명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충실한 담당자로 자라나도록 한다.

제4조 (사회주의생활기풍확립의 원칙)

청년들을 사회주의도덕과 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습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며 청년들속에서 혁명적이며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다.

제2장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청년의 임무

제5조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

청년들은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교대자,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이다.

청년은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제6조 (청년전위)

청년전위가 되는것은 조선청년들의 본분이다.

청년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는 청년전위가 되여야 한다.

제7조 (신념화된 충실성)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청년들의 제일생명이다.

청년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간직하고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제8조 (혁명전통무장)

청년들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청년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거점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 등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백두산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주의애국주의구현)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청년들은 사회주의미래의 주인공, 건설자이다.

청년은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참된 애국청년이 되여야 한다.

제10조 (반계급적의식무장)

청년들이 반계급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고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청년은 투철한 반계급적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계급진지,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제11조 (고상한 도덕기풍확립)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명맥을 잇는에서 나서는 중대한 요구이다.

청년은 언어례절, 인사례절, 공중도덕과 같은 레의범절과 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과 혁명,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국보위)

조국보위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국사이며 피끓는 청년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청년은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하고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며 민간군사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13조 (말은 혁명임무에 대한 헌신성)

말은 혁명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청년은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말은 혁명초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어렵고 힘든 과제를 솔선 맡아 돌파구를 열어제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학기술발전의 선도자)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국력경쟁은 과학기술경쟁이며 부강조국의 미래는 새것에 민감하고 창조적열정에 불타는 청년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청년은 청년과학기술행군에 적극 참가하여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학과 기술로 선도하는 실력가, 유망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제15조 (사회주의문명창조의 선구자)

우리 사회의 고유하고 우월한 도덕과 문화를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청년은 문화수준을 높이고 여러가지 정치문화활동과 대중체육활동, 군중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회주의 새 문명창조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습제일주의)

사회주의건설의 전도는 청년세대의 두뇌와 과학기술수준에 달려있다.

청년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꾸준히 학습하여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력사와 문학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깊이있는 지식과 폭넓은 상식을 겸비하며 전공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집단적, 련대적혁신)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

청년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고 청년돌격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에 참가하여 이 땅우에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집단적,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제18조 (주체성, 민족성고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원칙이다. 청년은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수입병을 배격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녀을 지켜나가야 한다.

제3장 청년사업부문의 조건보장

제19조 (청년사업부문조건보장의 기본요구)

청년사업을 적극 밀어주는것은 우리 국가 청년중시정책의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훌륭히 키울수 있도록 청년사업부문에 필요한 사회적환경과 조건, 물질적토대를 원만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0조 (청년사업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물자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청년교양과 관련한 회의, 행사, 강습, 답사, 출판물발행, 청년돌격대활동, 사회주의경쟁상품보장 등 청년동맹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물자를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학교꾸리기 및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학교를 잘 꾸려주고 그 운영에 필요한 수단과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 각종 모임을 비롯한 청년교양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청년학교는 청년교양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22조 (청년회관, 청년야외극장에 대한 후원)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청년회관과 청년야외극장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후원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회관과 청년야외극장건설과 그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청년교양일과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동맹조직에서 청년의 날, 대학생의 날 운영을 비롯한 제정된 일과에 따라 진행하는 학습회, 강연회, 청년학교운영, 사회정치활동과 같은 청년교양사업에 필요한 조건과 시간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청년동맹조직의 제정된 일과는 침해할수 없다.

제24조 (답사, 참관, 견학조건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동맹답사숙영소를 잘 꾸려주며 청년들의 답사와 참관, 견학에 필요한 식량과 기초식품, 의약품, 연유를 비롯한 숙식조건, 치료조건, 수송조건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년동맹일군양성기관의 교육조건보장)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청년동맹일군양성기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26조 (청년동맹원의 이동수속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동맹원의 입직, 입학, 거주, 퇴거 등 이동수속을 해당 청년동맹조직에서 발급한 청년동맹원이동증이 있는 조건에서 해주어야 한다.

제4장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

제27조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의 기본요구)

학교와 가정, 사회가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은 청년교양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구나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교양자, 스승이 되어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과 애국주의, 고상한 인생관을 지닌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 (학교교양)

교육기관과 교원은 사회주의교육의 사명에 맞게 고급중학교와 대학에서 학생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어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열렬한 혁명가,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제29조 (학부모회의를 통한 교양)

교육기관과 교원은 학부모회의를 정기적으로 교양적의의가 있게 조직하여 가정에서 자녀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정교양)

부모는 가정교양에서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자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며 맡은 일터와 초소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조국보위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탄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문학예술, 출판보도물,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교양)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혁명적인 영화와 노래,

시, 소설과 같은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문학예술작품과 출판보도물, 다매체편집물을 더 많이 창작, 편집, 제작, 보급하여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체육활동)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들의 대중체육, 국방체육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준법교육과 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법교육의 비중을 높이며 준법교육과 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청년들이 나라의 법을 잘 알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데 습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도덕적인 현상에 대한 투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이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비도덕적이며 비문화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외면하거나 묵과하지 말고 즉시 투쟁을 벌려 그들이 사회적인 비난과 압력 속에 배겨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 (회의와 모임을 통한 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총회, 주민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와 모임을 계기로 자녀교양을 바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종업원, 주민들을 비판각성시켜야 한다.

제36조 (자녀교양시간과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의 자녀교양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대책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양할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가정을 혁명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

제37조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의 기본요구)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본태를 지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청년은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산주의기풍확립)

청년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록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인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제39조 (외모단장)

청년은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머리단장과 옷차림을 항상 단정하고 고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준법기풍확립)

청년은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2. 성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
3. 종교와 미신행위
4. 불순출판선전물을 류입, 제작, 복사, 보관, 류포, 시청하는 행위
5.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
6.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개인재산을 약취하는 행위
7. 구타, 폭행, 패싸움을 비롯한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8. 끼리끼리 밀려다니거나 패를 못는 행위
9. 가정사정과 신병을 구실로 군사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사복무를 하지 않은 목적으로 조혼, 신체검사와 생활평정을 부당하게 받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도주하는것과 같은 군사복무동원을 기피 하거나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행위
10. 무직건달을 부리거나 조직생활에서 리탈되어 떠돌아다니는 행위
11. 우리 나라 노래를 외곡하여 부르거나 우리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12.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13. 리혼, 조혼을 하거나 사실혼생활을 하는 행위
14.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15. 저속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확립에 장애를 주는 행위
16. 그밖에 공화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록화물, 편집물, 인쇄물을 만들어주거나 봉사해주는 행위

2. 이색적인 촬영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 촬영, 편집하는 행위
3. 이색적인 물품을 끌어들이거나 밀수, 밀매하는 행위
4. 이색적인 결혼식봉사를 하는 행위
5. 우리 식이 아닌 옷을 만들어 팔거나 머리단장을 해주는 행위
6. 청년들에게 비법적으로 돈과 물자를 주고 일을 시키는 행위
7. 청년동맹조직들에 로력, 물자, 자금보장과제를 망탕 주어 청년교양에 전심할수 없게 하는 행위
8. 청년동맹조직들에 일감을 맡겨주고 그에 대한 조건보장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

제43조 (검열감독통제기관의 임무)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검열감독통제기관은 청년들속에서 범죄 및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청년교양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4조 (신고 또는 통보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속에서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청년교양보장질서를 어기는 현상들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

주체86(1997)년 3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5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110(2021)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6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체육법의 기본

제1조 (체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은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체육사업성과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육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체육제도가 굳건히 마련되고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체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체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원칙)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체육사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대중체육경기를 널리 조직하고 모범체육군, 모범체육단위칭호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한다.

제4조 (체육과학기술발전원칙)

체육과학기술의 발전이자 나라의 체육발전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목표를 높이 세우고 우수한 체육과학기술을 적극 개발완성하여 훈련과 경기, 후비선발과 육성, 체육시설건설과 관리, 체육기자재생산 등 체육부문의 모든 사업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5조 (체육선수양성원칙)

체육선수는 체육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체육선수를 체계적으로 전망성있게 양성하고 체육선수의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제6조 (체육부문의 물질적보장원칙)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체육사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체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이 부문의 물질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 (체육사업지도원칙)

국가는 체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체육사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8조 (체육선수, 일군의 우대원칙)

국가는 체육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체육선수와 일군에게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하며 그들을 우대한다.

제9조 (체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체육부문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제10조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사업의 계획화)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인민들을 체육활동에 참가시켜 그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상설군중체육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군중체육조직을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비상설군중체육조직은 대중체육을 조직하고 필요한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마련하는 사업을 한다.

제12조 (학교체육)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서 기본은 학교체육이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교육의 질을 높여 청소년학생들의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그들이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며 룽상, 구기, 체조, 수영 같은 체육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과외체육활동)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 단체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과외체육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과외체육활동은 청소년학생들의 소질과 취미, 계절적조건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조직하며 실정에 따라 체육종목별소조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학령전어린이의 체육)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학령전어린이들의 연령과 성장발육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체육활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5조 (집단체조)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기교와 예술성이 배합된 집단체조를 창작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집단체조를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조직성과 규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한다.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7조 (대중체육)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의 체력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아침체조, 업간체조, 집단달리기 같은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체육의 날에는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조직할수 있다.

제18조 (가정체육)

해당 기관은 인민들이 가정에서 체력을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체력단련은 체조, 걷기, 달리기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19조 (인민체력검정)

국가는 인민들의 체력단련상태를 판정하기 위하여 인민체력검정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체력검정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인민체력검정대상자는 체력검정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20조 (대중체육경기조직)

체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체육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대중체육경기조직은 부문별, 종목별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국적인 경기대회도 조직할수 있다.

제21조 (대중체육본보기단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체육의 본보기단위를 꾸리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3장 체육기술

제22조 (체육교수훈련강령과 기술발전계획)

체육기술은 체육운동을 수행하는 수법이며 체육발전수준의 기본표징이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체육교수훈련강령과 체육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

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체질적특성, 기호에 맞는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며 경기전술과 경기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부단히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제24조 (파악있는 체육종목기술)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축구, 룡구, 마라손을 비롯한 파악있는 체육종목의 기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체육종목의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제25조 (체육선수훈련의 과학화)

체육단체는 체육교수훈련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체육훈련은 체육선수를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며 체육기술을 련마하고 전술체계를 완성하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체육단체와 과학연구기관, 의료기관은 체육훈련과 경기에서 협동작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6조 (체육경기조직)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부문별, 종목별, 나이별, 남녀별 체육경기를 많이 조직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경기심판을 공정하게 서며 감독과 선수는 경기도덕을 준수하는것을 비롯하여 경기행사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체육선수는 체육경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약물과 체육기재를 쓰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체육인급수)

국가는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목별체육인급수를 정한다.

체육인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육지도기관이 한다.

제28조 (선수후비육성사업)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 해당 기관은 선수후비육성기관을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하며 체육발전전망과 종목별 선수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전도유망한 대상들을 선발하고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들과 특기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체육선수후비선발은 중앙체육지도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9조 (체육종목의 증대)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 해당 기관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종목을 정하거나 늘여야 한다.

제30조 (체육일군양성)

중앙체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일군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능력있는 체육기술, 과학, 의료일군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체육과학

제31조 (체육과학발전계획)

체육과학은 체육운동에서 인간이 가지고있는 육체적기능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게 하는 과학이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나라의 현실과 현대체육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과학발전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대중체육연구)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중체육에 대한 연구방향과 지표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대중체육에 대한 연구는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제33조 (체육기술연구)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종목별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4조 (체육기초과학발전)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의학, 체육생화학, 체육심리학, 생물리학 같은 체육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체육과학분야도 개척하여야 한다.

제35조 (체육영양연구)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선수에 대한 영양공급을 과학화하며 선수의 육체적능력향상에 필요한 영양식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6조 (체육시설, 기재연구)

체육과학연구기관은 체육시설과 기재, 과학실험기구 같은 것을 창안제작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체육과학기술성과도입)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과 관련한 협동연구를 강화하고 체육과학기술에 대한 심의를 바로 하며 그 성과를 체육실천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38조 (체육과학연구기지축성)

중앙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39조 (체육정보사업)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체육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정보사업을 강화하고 수집한 체육

정보를 체육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제40조 (물질적보장의 기본요구)

체육의 물질적보장은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체육부문에 필요한 기자재와 공급물자를 생산보장하는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체계를 세우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체육시설물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체육지도기관, 건설기관,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체육시설물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체육시설물설계는 중앙체육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2조 (체육시설물의 관리)

국가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물관리는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이, 자체 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물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체육시설물과 기재를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고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43조 (체육시설물의 보수)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물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한 체육시설물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체육기자재생산, 보장)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체육기자재생산의 국산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체육기자재를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체육교수훈련단위를 가지고있는 기관, 지방정권기관은 교수훈련과 경기에 필요한 체육기자재를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대중체육시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의 대중화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공원, 유원지 같은 장소에 필요한 체육시설, 기재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46조 (체육인영양물자공급기지)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인영양물자공급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체육인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47조 (체육인영양공급기준)

체육인영양공급기준은 체육종목과 선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정한다.

체육인영양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따라 중앙체육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건장한 체력을 보장하고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9조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육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은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체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 (지방정권기관의 임무)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 (체육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육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시상품,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 (체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체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3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4조 (벌금처벌)

체육경기행사규률을 어긴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1,000~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대중체육활동을 바로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2.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 운영을 바로 조직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인민체력검정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체육기술발전계획과 교수훈련계획의 작성, 집행을 바로하지 않아 체육기술발전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5. 체육인자격 및 급수사정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체육일군과 체육선수의 양성사업을 바로 하지 않아 양성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7. 체육교수훈련을 과학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국제경기를 비롯한 경기대회들에서 순위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8. 체육과학발전계획작성과 집행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9. 체육과학기술에 대한 심의, 성과도입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 연구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체육과학기술발전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11. 체육경기행사규률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12. 심판사업에 간섭하였거나 복종하지 않아 체육경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체육경기에 부정선수를 참가시키거나 경기과정에 편심을 썼을 경우
14. 경기과정에 폭행, 구타행위를 하였을 경우
15. 경기과정에 금지된 약물과 체육기재를 리용하였거나 그것을 묵인하였을 경우
16. 체육선수의 선발, 양성, 훈련, 경기조직을 부당하게 하였을 경우
17. 체육선수의 선발, 소환, 파견사업과 선수, 감독, 과학기술일군의 등록, 제명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8. 체육시설물의 건설, 관리, 보수와 체육기자재, 소비품, 영양제공급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체육기술발전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19. 체육사업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체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 1~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시설법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2호로 채택

제1장 체육시설법의 기본

제1조 (체육시설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체육강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체육시설의 정의와 분류)

이 법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 및 그것들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체육시설에는 체육관과 체육경기장, 운동기재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건설원칙)

체육시설건설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체육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고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많이 건설하며 곳곳에 체육공원을 꾸려 온 나라가 체육시설망으로 뒤덮이도록 한다.

제4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원칙)

체육시설관리운영을 잘하는 것은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체육시설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누구나 다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리용질서준수원칙)

체육시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체육시설을 아끼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제6조 (투자확대원칙)

국가는 세계적인 체육시설발전추세에 맞게 체육시설을 건설하며 현대적으로 개건하도록 투

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7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체육시설건설과 관리운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해당 법규의 적용)

체육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체육시설의 건설

제9조 (체육시설건설의 계획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체육활동을 널리 진행하며 국제경기를 원만히 치를수 있게 전문체육시설과 대중체육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육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체육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국가체육발전전략목표와 체육시설건설의 발전 추세, 체육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체육시설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체육시설건설기술과제서의 작성)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건설위치와 립지조건,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체육종목과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조건, 공사비, 건설기간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체육시설건설기술과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체육시설건설설계)

체육시설건설설계는 건설총계획과 건설명시서, 체육시설건설기술과제서에 기초하여 체육시설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체육시설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체육시설건설의 담당자)

체육시설건설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국가투자에 의한 체육시설건설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가, 자체투자에 의한 체육시설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4조 (설계의 요구와 건설물의 질보장)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간까지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제15조 (체육시설의 개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낡고 뒤떨어진 체육시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개건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16조 (준공검사)

체육시설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체육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제3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17조 (체육시설관리운영체계의 수립)

체육시설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시설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체육시설을 정상운영, 정상보수, 정상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관)

국가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중앙체육시설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하며 자체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9조 (체육시설의 등록과 이관, 폐기)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 설비, 체육기자재 같은 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재산은 승인없이 이관하거나 폐기할수 없다.

제20조 (체육시설의 관리)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체육기자재, 측정설비, 득점설비, 조명, 음향, 랭난방시설 같은 체육시설관리를 규정대로 하며 시설이 부족되거나 고장,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설치, 수리,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시설의 보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보수주기를 바로정하고 계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육시설의 운영)

체육시설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시설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운영을 정

상화하여 인민들이 체육시설을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체육시설의 다기능화)

체육시설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전문체육훈련과 각종 체육경기 같은것을 널리 조직하여 체육시설을 다기능화하며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4조 (체육기자재의 생산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기자재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질좋은 체육기자재를 수요에 맞게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경기관람조직과 편의보장)

체육시설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기관람조직을 바로 하며 관람자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경기관람표는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팔아주거나 체육관이나 경기장의 매표소에서 팔아준다.

제26조 (봉사활동)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체육시설과 그 구획안에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제4장 체육시설의 리용

제27조 (체육시설리용질서의 준수)

체육시설의 리용을 바로 하는것은 체육시설을 원상대로 유지관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체육시설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28조 (체육시설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체육시설의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며 리용과정에 체육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재는 체육시설관리운영기관, 기업소에서 봉사해주거나 리용자들이 자체로 가지고와서 리용하게 할수 있다.

제29조 (체육경기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시설을 리용하여 체육경기를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0조 (의료대책)

보건지도기관은 공민이 체육시설을 리용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거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는 경

우 제때에 구급의료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치료인원과 설비, 의약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시설리용 및 관람료금)

체육시설을 리용하거나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시설리용 및 관람료금을 내야 한다.

시설리용 및 관람료금은 체육시설의 급수에 따라 해당 가격기관이 정한다.

제32조 (수입금의 리용)

체육시설의 운영과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금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금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33조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체육시설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체육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
2. 체육기자재를 못쓰게 만들거나 가져가는 행위
3. 체육시설구획안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4. 체육시설구획안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
5. 경기관람을 하면서 비도덕적이며 비문화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
6. 체육기술을 배워주면서 돈벌이를 하는 행위
7. 체육시설구획안에 다른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8. 이밖에 금지된 행위

제5장 체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4조 (체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체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육시설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체육시설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 (체육시설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전력공업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감독통제)

체육시설부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육시설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7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체육시설과 체육기자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8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체육시설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장악지도를 바로하지 않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체육시설건설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아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설계의 요구대로 체육시설을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
4.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체육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5. 체육시설관리를 바로 하지 않아 시설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6. 체육시설의 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체육시설운영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승인없이 체육시설안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9. 경기관람조직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0. 체육시설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이 법 제33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제39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보건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주체87(1998)년 7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3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보충

제1조 (공중위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중위생부문의 물질기술적수단현대화)

국가는 공중위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3조 (공중위생교양)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공중위생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이 이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 (위생월간)

국가는 공중위생사업을 활발히 벌이기 위하여 위생월간을 정한다.
위생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조 (대기오염의 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기, 가스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 (독성물질의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의 처리장을 꾸리고 그것을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은 처리장이 아닌 곳에 버릴수 없다.

제7조 (물의 수질기준보장)

물은 용도에 따라 먹는물, 생활용물 같은 것으로 나누며 그 수질기준을 보장한다.
수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8조 (물위생시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위생시설을 갖추었거나 보수하였을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물의 소독)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물소독은 염소소독, 자외선소독, 오존소독, 끓여서 하는 소독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물원천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 산업용물의 생산에 리용되는 하천, 호소, 저수지, 지하수 같은 것을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버림물을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양의 오염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에 의한 토양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토양에서 독성물질이나 기생충알 같은 것은 위생기준이하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건물위생)

설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향좌, 크기와 건물사이의 거리를 위생적요구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난방, 환기의 위생기준)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난방, 환기를 위생기준에 맞게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살림집, 공공건물의 난방, 환기시설을 없애거나 그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14조 (건물의 조명)

살림집과 공공건물에는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자연 또는 인공조명을 보장한다.

조명보장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수 없다.

제15조 (오물장, 변소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주변에 오물장, 변소 같은 시설을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오물은 정해진대로 수집운반하고 무해화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장소의 위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관, 영화관, 극장, 체육관, 역기다림칸, 광장, 공원, 거리 같은 공공장소에 위생시설을 꾸리고 정상적으로 청소, 소독하여야 한다.

공공장소를 리용하는 공민은 담배를 지정된 곳에서 피워야 한다.

제17조 (숙박소의 위생)

편의봉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텔, 려관, 합숙을 비롯한 숙박소의 손님방, 휴

계실, 세면장 같은 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세면대, 침구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세척, 소독하지 않은 시설, 비품으로 손님봉사를 할수 없다.

제18조 (목욕탕, 수영장의 위생)

목욕탕, 수영장,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한중간, 욕실, 욕조, 수영조, 탈의실 같은 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소독대책을 세우며 수질검사를 제때에 하여 정해진 수질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염성질병이 있는자, 술에 취한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건강과 위생문화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자는 목욕탕, 수영장, 물놀이장을 리용할수 없다.

제19조 (리발관, 미용원의 위생)

리발관, 미용원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실, 대기실 같은 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리발, 미용을 할 경우에는 도구와 수건을 건당 소독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원, 유원지, 유희장시설의 위생)

공원, 유원지, 유희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휴식시설, 체육 및 운동시설, 유희 및 오락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에 대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빨래집의 위생)

편의봉사기관은 빨래집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전염병을 전파할수 있는 빨래감은 소독한 다음 빨래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급양시설, 수단의 위생)

사회급양기관은 식사실, 주방, 옷보관실을 위생적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음식그릇, 수저가락, 수건 같은것은 매번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제23조 (화장품, 위생용품의 위생)

화장품, 위생용품생산은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장품, 위생용품을 위생기준에 맞게 생산하고 포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생강습, 건강검진)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편의봉사, 상업 및 사회급양기관, 어린이보육교양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당 일군들에 대한 위생강습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위생강습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일군은 해당 부문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

제25조 (공중시설리용)

공민은 공중시설리용에서 위생규범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며 불결한 몸차림이나 해로운 물질에 오염된 상태로 공중시설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공중위생감시와 검사)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중위생감시와 검사를 과학적으로 하며 그 결과를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27조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지도)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공중위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중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공중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중위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중위생상태가 불결한 단위의 운영중지)

공중위생상태가 불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영은 중지시킨다.

제31조 (손해보상, 벌금부과)

공중위생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3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공중위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

주체109(2020)년 1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6호로 채택

제1조 (금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은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금연운동강화원칙)

금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며 금연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과 물질적조건을 보장하여 모든 공민들이 금연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 (흡연통제원칙)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흡연금지장소와 단위를 바로 정하고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흡연률을 체계적으로 낮추도록 한다.

제5조 (국가금연전략작성)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의 금연정책에 기초하여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발전방향과 단계별 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금연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금연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제6조 (금연계획작성과 실행)

해당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금연전략에 따라 년차별로 금연계획을 과학성,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7조 (흡연률조사장악)

지방인민위원회와 금연연구보급기관은 자기 지역의 흡연률을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중앙 보건지도기관에 년에 1차씩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금연분야의 과학연구)

중앙보건지도기관과 금연연구보급기관, 과학연구기관은 금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금연치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약품과 기능성식품같은것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9조 (금연봉사활동)

중앙보건지도기관과 금연연구보급기관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금연봉사체계를 세우고 금연선전과 상담, 금연치료 등 금연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

제10조 (흡연금지장소와 단위)

다음의 장소와 단위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비와 표식비 같은 정치사상교양장소
2. 극장, 영화관, 회관, 도서관, 전람관, 체육관, 광장, 정류소, 대합실, 공동위생실같은 공공장소
3. 탁아소,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
4. 소학교, 중학교, 대학, 양성소 같은 교육기관
5. 병원, 진료소, 료양소 같은 의료보건시설
6. 려관, 호텔, 상점, 식당, 리발소, 목욕탕같은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7. 려객기, 려객렬차, 려객선, 지하전동차, 궤도전차, 버스 같은 공공운수수단
8. 산림구역, 목재공장, 종이공장, 탈곡장 같은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
9. 화약창고, 연유판매소, 연유창고, 가스공급소 같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10. 그밖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정한 장소

제11조 (금연마크의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의 필요한 곳에 금연마크를 붙이며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금연마크를 규격화하며 그 설치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대책하여야 한다.

제12조 (흡연장소)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환기시설이 있는 방과 야외의 필요한 곳에 담배를 피울수 있는 장소를 정할수 있다.

공민은 담배를 피울수 있게 정해진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할수 있다.

제13조 (건강위험경고그림의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흡연을 위하여 정해놓은 방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무안을 당할 정도

로 담배의 해독성을 저참하게 형상한 각종 건강위험경고그림을 게시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경고그림을 규격화하며 정상적으로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거리에서의 흡연금지)

공민은 평양시를 비롯한 도, 시, 군소재지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거나 담배꽂초를 아무데나 망탕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흡연금지대상)

미성년과 학생은 담배를 피울수 없다.

제16조 (담배의 해독성과 금연에 대한 선전)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과 흡연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비판방송, 자료통보를 정상적으로 하며 금연방법을 널리 소개선전 하여야 한다.

제17조 (담배생산 및 판매허가제한)

국가계획기관과 조선담배협회,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제품의 생산량을 줄이고 담배생산단위를 계획적으로 통합, 축소하며 담배의 공급과 판매허가를 극력 제한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해물질허용한도의 규정)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담배의 니코틴, 타르같은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측정 과 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유해물질의 허용한도가 초과된 담배는 생산 및 판매할수 없다.

제19조 (담배곽의 표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의 함량같은 것을 정해진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20조 (담배판매의 통제)

담배는 승인된 봉사기관에서만 판매할수 있다.

미성년과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

제21조 (담배판매장소의 알림문 게시)

해당 봉사기관은 담배판매장소에 담배의 해독성과 미성년,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담배판매를 위한 선전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제품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하는 상표와 장식, 표 기같은것을 하지 말며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담배판매를 위한 광고나 선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모방한 장식물과 놀이감, 식료품같은것의 생산, 수입, 판매는 할수 없다.

제23조 (담배반입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승인없이 담배와 담배생산원료를 수입하지 말며 외국 출장, 외국여행 등 다른 나라에 갔다오면서 무연담배와 전자담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세관은 담배와 담배생산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높이 부과하여야 한다.

제24조 (감독통제)

금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검찰기관과 사회안전기관, 위생검열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검찰기관과 사회안전기관, 위생검열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금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5조 (금연질서를 어긴 국민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금연질서를 어긴 국민에게는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평양시를 비롯한 도, 시, 군소재지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거나 담배꽂초를 망탕 버렸을 경우 5,000 ~1만원
2.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1만~10만원
3. 개별적국민이 담배를 팔았을 경우 5만~10만원

제26조 (금연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금연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흡연장소를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을 경우 10만원
2. 담배판매를 위한 광고나 선전을 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3. 담배판매장소와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알립문을 규정대로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4. 담배제품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하는 상표와 장식, 표기를 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5. 승인된 봉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6.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량을 초과한 담배를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 100만 ~150만원
7. 미성년,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150만원

제27조 (금연질서를 어긴 국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금연질서를 어긴 국민에게는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비 같은 정치사상교양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2. 화약창고, 연유창고 같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3. 산림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4. 미성년, 학생에게 담배를 여러번 팔았을 경우

제28조 (금연질서를 어긴 일군에 대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처벌)

다음과 같은 금연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건강위험경고문, 담배조성같은것을 표기하지 않은 담배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
2. 담배수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3. 담배생산 및 판매허가를 망탕 하였을 경우

제29조 (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26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중지 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30조 (형사적책임)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해당한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31조 (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금연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적용원칙, 절차와 방법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주체94(2005)년 7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00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7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8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6호로 수정보충

제1조 (담배통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은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담배는 잎담배와 그것을 가공하여 사람이 리용할수 있게 만든 담배제품을 말한다.

제3조 (담배통제원칙)

담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담배의 생산과 수입, 판매를 제한하며 흡연률을 낮추도록 한다.

제4조 (금연운동강화원칙)

전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을 벌리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들 속에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 그들이 금연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흡연의 통제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흡연의 통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해당 법규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담배생산기관)

담배는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 생산할수 있다.

잎담배의 생산승인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담배제품의 생산승인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이 한다.

담배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을 받기 전에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지 않은 담배생산은 승인해줄수 없다.

제7조 (담배생산승인신청)

담배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생산승인신청서를 만들어 대상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생산목적과 생산량, 제품의 규격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 (담배생산승인신청의 심의)

담배생산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보건,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9조 (담배생산계획)

담배는 계획에 따라 생산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담배생산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계획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할수 없다.

제10조 (잎담배의 생산, 수매)

잎담배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 좋은 잎담배를 생산하여 제때에 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잎담배의 수매는 계획에 맞물린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배의 제조)

담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를 계획의 범위안에서 정해진 규격대로 생산하여야 한다.

생산한 담배는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 상업기관에 넘겨준다.

제12조 (담배의 포장과 표기)

담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곽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과 니코틴함량, 타르함량, 일산화탄소함량같은 것을 밝힌 설명문을 잘 보이게 표기하여야 한다.

담배곽에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밝힌 경고문과 니코틴함량, 타르함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 (담배곽의 표기)

담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법의 요구대로 등록된 담배상표를 붙여야 한다.

같은 원료와 제조기술, 방법으로 생산한 담배에 서로 다른 상표를 붙이거나 사람의 흥미를 끌게 하는 장식, 표기 같은 것을 할수 없다.

제14조 (담배의 합영, 합작, 임가공)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은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이 경우 담배생산을 합영, 합작하거나 담배를 임가공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지 않은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은 승인해줄수 없다.

제15조 (담배의 수출입)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지 않은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의 수출입수속은 할수 없다.

제16조 (담배의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합의신청)

담배생산을 합영, 합작하거나 담배를 임가공하거나 담배 또는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전에 그와 관련한 합의신청서를 조선담배협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합의신청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합의신청서양식은 조선담배협회가 정한데 따른다.

제17조 (담배의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합의)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 담배 또는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의 수출입과 관련한 합의신청서를 접수한 조선담배협회는 15일안으로 심의하고 합의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합의 또는 부결결정정형을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한다.

제18조 (합의신청서심의에 필요한 자료보장)

조선담배협회는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 담배 또는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의 수출입과 관련한 합의신청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앞담배의 수출제한)

앞담배는 수출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앞담배를 수출하려 할 경우에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수출용담배의 처리)

수출용담배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전량 수출하여야 한다.

수출용으로 생산한 담배는 상업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제21조 (담배의 수출입검사, 검역)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에 대한 검사, 검역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담배의 판매장소)

담배는 정해진 상점 또는 매대에서만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수 없다.

담배판매장소에는 잘 보이는곳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미성인과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수입한 담배와 수입원료, 자재로 생산한 담배를 판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 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담배판매가격)

담배는 국가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담배판매가격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24조 (담배를 팔아줄수 없는 대상)

미성인에게는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

제25조 (담배의 수출입, 판매금지)

다음의 담배는 수출입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1.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담배
2.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니코틴함량, 타르함량, 일산화탄소함량 같은 것을 표기하지 않은 담배
3. 무연담배, 전자담배같은 승인되지 않은 담배

제26조 (담배선전금지)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을 제외하고 일체 담배와 관련한 선전은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담배가 잘 팔리게 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선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모방한 장식물과 놀이감, 식료품같은것의 생산, 수입, 판매는 할수 없다.

제27조 (흡연장소)

담배를 피우려는 공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 피우는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재털이를 갖추어놓으며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제28조 (흡연금지장소)

다음의 장소에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2. 극장, 영화관, 회관, 회의실, 박물관, 전람관, 전시장, 도서관,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같은 공중집합장소
3. 탁아소, 유치원, 학교같은 어린이보육교양시설과 교육시설
4. 병원, 진료소, 료양소같은 의료보건시설
5. 사무실, 실내작업장
6. 리발소, 미용원, 목욕탕, 상점, 식당
7. 려객기, 려객렬차, 려객선, 지하전동차, 버스, 택시 같은 려객운수수단
8. 길거리와 역대합실, 항공역사, 정류소

- 9. 산림보호구, 자연보호구, 동물원, 식물원
- 10.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11. 이밖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정해놓은 장소

제29조 (금연마크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를 피울수 없는 장소의 잘보이는 곳에 금연마크를 붙여야 한다.

제30조 (흡연금지대상)

미성인, 학생은 담배를 피울수 없다.

부모와 후견인, 교육기관은 미성인과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교양을 정상적으로 하며 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31조 (담배의 해독성선전)

보건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담배가 사람의 건강에 해로우며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준다는데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건의학적인 금연방조)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과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33조 (조선담배협회)

담배의 생산과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 판매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에 비상설로 조선담배협회를 둔다.

조선담배협회는 식료일용공업, 보건, 무역, 세관, 품질감독, 담배생산부문의 일군들로 조직한다.

조선담배협회는 담배의 생산과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 판매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이 법에서 정한데 따라 해당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4조 (감독통제)

담배통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담배피우는 질서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중지, 몰수)

비법적으로 담배를 생산, 수출입,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시키며 위법행위에 리용된 담배와 설비, 물자를 몰수한다.

제3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 1. 승인없이 담배를 생산하였을 경우

2. 조선담배협회의 합의없이 담배생산을 승인해주었을 경우
3. 계획에 없는 담배를 생산하였을 경우
4. 앞담배를 계획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매하였을 경우
5. 조선담배협회와 합의없이 담배를 생산, 임가공하였거나 담배 생산을 합영, 합작하였거나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6.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과 니코틴함량, 타르함량, 일산화탄소함량같은 것을 밝힌 설명문을 정해진대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담배를 판매 또는 수출입하였을 경우
7. 승인된 상점과 매대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8. 담배판매장소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미성인과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9. 미성인과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10. 담배를 피울수 없는 장소에 금연마크를 붙이지 않았을 경우
11. 담배를 피울수 없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거나 담배꽂초를 아무데나 버렸을 경우

제37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36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

주체92(2003)년 8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35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31호로 수정보충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제1조 (마약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은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과 리용,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 마약에 의한 사회적위험을 미리 막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마약의 정의)

마약은 만성적인 중독 및 습관성현상을 일으키고 정신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상현상을 나타내는 마약원료식물 같은 천연 및 합성물질이다.

마약의 규정은 이 법의 부록 1,2에 따른다.

제3조 (마약의 생산, 공급원칙)

마약의 생산과 공급은 마약관리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치료와 교육,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마약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한다.

제4조 (마약의 보관, 리용원칙)

마약의 보관과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마약의 변질과 류실을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마약의 보관에서 기술적요구를 지키며 그것을 정해진 용도에 쓰도록 한다.

제5조 (마약의 수출입원칙)

마약은 필요에 따라 수출, 수입할수 있다.

국가는 마약의 수출과 수입을 정해진 무역질서와 국제질서에 맞게 하도록 한다.

제6조 (마약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마약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 (마약관리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마약을 생산, 공급, 보관, 리용,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부록 3, 4에 지적된 물질을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제8조 (마약의 생산근거)

마약생산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받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마약을 생산할수 없다.

제9조 (마약의 생산허가기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마약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예방부문에서 마약생산허가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수의방역부문에서 마약생산허가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마약원료식물의 재배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제10조 (마약생산허가신청)

마약생산허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서를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마약생산허가신청서에는 생산목적, 능력, 기간, 기술적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마약생산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마약원료식물재배에 필요한 토지의 리용허가)

마약원료식물을 재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관리기관에 마약원료식물의 재배목적, 능력, 면적 같은 것을 밝힌 토지리용허가신청서를 생산허가문건과 함께 내야 한다.

국가적으로 승인된 마약원료식물재배토지의 리용허가는 받지 않는다.

제12조 (마약원료식물의 재배)

마약원료식물재배 토지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원료식물의 비배관리를 기술규범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마약원료식물재배에 리용하는 토지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 그루바꿈을 할수 있다.

제13조 (마약원료의 채취)

마약원료의 채취는 필요한 인원으로 경비를 세우고 한다.

채취한 마약원료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이관, 처리한다.

제14조 (마약의 생산준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생산장소와 공정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마약생산과 관련한 기술규범을 만들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생산장소를 변경하거나 생산공정을 보수하거나 기술규범을 수정보충할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마약의 생산기술적요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과 제정된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마약의 규격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16조 (마약의 검정)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의약품검정기관, 수의약품검정기관은 마약검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마약을 제때에 정확히 검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마약생산자의 자격)

마약생산은 제약기사, 약제사, 의사 같은 해당한 기술자격을 소유하였거나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마약생산일군은 마약생산에서 기술 및 위생규범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8조 (마약생산현장의 출입질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생산현장의 출입질서를 세워야 한다.

마약생산과 관련이 없는자는 마약생산현장에 들어갈수 없다.

제19조 (마약의 포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마약을 종류와 용도별로 갈라 정확히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장의 겉면에는 마약의 종류와 표시기호, 주의 또는 경고표식이 첨부된 약표와 사용설명서 같은 것을 붙여야 한다.

제20조 (마약생산설비의 관리)

마약생산에 리용한 시설과 설비, 토지는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마약생산에 리용한 시설, 설비, 토지를 다른 용도에 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마약의 공급기관)

마약의 공급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정한 의약품공급기관 또는 수의약품공급기관이 한다.

일반판매형식으로 마약을 공급할수 없다.

제22조 (마약의 공급)

마약공급기관은 공급계획에 따라 마약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에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마약을 공급할수 없다.

제23조 (마약의 계량)

마약공급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을 갖추고 마약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해당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수단은 쓸수 없다.

제24조 (마약의 공급순위)

마약공급기관은 먼저 생산한 마약부터 공급하여야 한다.
변질되었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과 약표, 사용설명서 같은 것이 없는 마약은 공급할수 없다.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은 검정기관의 검증을 받아 처리한다.

제25조 (마약소개선전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학, 수의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도서 또는 정기간행물, 대중보도수단으로 마약과 관련한 자료를 출판, 발행하거나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마약의 수송기관)

마약의 수송은 그것을 생산 또는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마약공급기관, 교통운수기관이 한다.
마약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이 눈, 비를 맞거나 일거나 변질, 류실,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마약의 수송)

마약의 수송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발급한 수송지령서에 따라 한다.
수송지령서에는 정해진 표식을 한다.

제28조 (마약의 호송)

마약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송원을 붙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에 마약수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집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호송원을 보장한다.
많은 량의 마약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에 마약의 호송을 의뢰할수 있다.

제29조 (마약의 수송수단)

마약은 무개차량이나 배의 갑판우에 실을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개차량으로 마약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마약수송의 신속성보장)

마약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을 제때에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경우 운수기관은 마약을 실은 수송수단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제31조 (마약의 보관기관)

마약의 보관은 해당 보건지도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마약을 보관할수 없다.

제32조 (마약보관시설의 관리)

마약의 보관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2중관건장치가 되어있는 마약창고, 마약장, 마약함 같은 보관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건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마약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의 보관을 약리학적,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하며 경비조직을 하여야 한다.

보관된 마약의 입출고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4조 (마약의 실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한 마약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실사는 2명 이상의 정해진 인원이 하여야 한다.

제35조 (공민의 마약보관금지)

공민은 마약을 보관할수 없다.

환자인 공민은 해당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의료예방기관에서 공급한 마약을 정해진 한도에서 가지고있을수 있다.

제36조 (마약의 폐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마약의 폐기는 해당 의약품검정기관 또는 수의약품검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이 경우 마약을 소각 또는 화학적변화를 시키거나 땅속깊은 곳에 묻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37조 (마약제조용물질의 보관)

천연 또는 합성방법으로 마약제조에 리용되는 물질의 보관은 마약보관질서에 따른다.

제38조 (마약사고의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마약을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과정에 변질, 류실, 분실 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곧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보건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9조 (마약의 리용허가)

마약의 리용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고 한다.
마약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리용허가신청서를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또는 수의방역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예방기관과 수의방역기관은 마약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40조 (마약의 리용범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마약을 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마약을 원료로 의약품 또는 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사람 또는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경우
3. 교육실습과 과학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이밖에 내각이 승인한 경우

제41조 (병치료에 마약의 리용)

공민은 의료기관의 병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치료에 마약을 리용할수 있다.
마약의 리용은 의료예방기관에서 또는 그 기관의 립회밑에 가정에서도 할수 있다.

제42조 (마약의 취급자)

마약을 생산, 공급, 보관,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취급자를 정하여야 한다.
마약취급자는 약제사, 의사, 수의사 같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일군이 될수 있다.

제43조 (마약의 리용결정)

마약을 리용할데 대한 결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와 마약취급자 2명이상이 참가한 협의회 또는 군급이상 인민병원 의사협의회에서 한다. 이 경우 마약의 종류, 사용형태, 사용기간, 하루 사용량, 한 출고지령서당 또는 한 처방당 한도량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4조 (지령과 처방에 의한 마약의 리용)

마약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출고지령서 또는 처방전에 따라하여야 한다.
마약출고지령서 또는 처방전은 권한있는 약제사, 의사, 수의사자격을 가진 일군만이 발급한다.
의사, 수의사는 자기를 위하여 처방하거나 병진단서가 없이 처방할수 있다.

제45조 (마약의 긴급처방)

의료예방부문 또는 수의방역부문에서 마약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구급치료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협의회 결정이 없이 병상태에 따라 정해진 량의 마약을 처방할수 있다.

제46조 (마약의 사고통보)

마약은 담당약제사와 의사, 수의사, 교원, 연구사의 립회, 감시밑에서 제조, 치료, 실습, 실험 같은 사업에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의 리용과정에 중독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해당 인민보안기관, 의료예방기관,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치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 (자체 또는 시험적으로 만든 마약과 그 성분이 있는 물질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허가를 받고 자체로 만들었거나 시험적으로 만든 마약 또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을 치료 및 과학연구사업에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마약 또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을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도 리용할수 있다.

제48조 (마약의 회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쓰고 남은 마약을 제때에 마약공급기관에 바쳐야 한다.

마약보유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제49조 (정해진 용도에 따르는 마약의 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유하고있는 마약을 정해진 용도에만 써야 한다.

승인없이 마약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팔수 없다.

제4장 마약의 수출입

제50조 (마약의 수출입기관)

마약의 수출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가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무역회사는 마약의 수출입을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1조 (마약의 수출입승인)

마약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계획된 범위안에서 마약수출입승인신청문건을 중앙보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마약수출입승인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52조 (마약의 수출입수속)

마약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출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을 통과시킬 나라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마약의 대량수입)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많은 량의 마약이 요구될 경우 마약의 수입을 승인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마약통제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마약의 세관검사)

수출입승인을 받은 마약은 세관검사를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수 있다.
마약은 중계무역을 위하여 들여올수 없으며 정해진 목적지를 변경할수 없다.

제55조 (년간 마약수출입계획의 통지)

중앙보건지도기관은 해마다 상반기안으로 년간 마약수출입계획을 국제마약통제기구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56조 (마약수출입의 요구)

마약은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고 국제질서에 따르는 상표와 설명서가 있어야 수출입할수 있다.
우편물로 마약을 수출입할수 없으며 수출입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돈자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할수 없다.

제57조 (특수경제지대에서 마약의 수출입)

무관세지역과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는 마약을 수출입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질서에 따른다.

제58조 (마약밀수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마약을 밀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59조 (부록 3, 4에 해당되는 물질의 수출입)

의존성이 있는 정신자극성물질(부록3)과 마약 및 각성제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물질(부록4)의 수출입은 마약의 수출입질서에 따라 한다.

제5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0조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마약부문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1조 (마약관리사업의 지도)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마약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2조 (마약의 보관리용, 수출입정형의 보고)

마약을 보관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에 분기 1차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과 관련한 장부와 문건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 (마약관리사업의 감독통제기관)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마약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4조 (마약의 생산, 수출입승인취소)

마약의 생산, 수출입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마약의 생산, 공급, 수출입계획을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2. 정해진 생산공정,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술규범을 어기고 마약을 생산할 경우
3. 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 마약을 보관하였을 경우
4. 정해진 질서를 어기고 마약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5. 마약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마약관리정형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7. 이밖에 마약관리질서를 심히 어겼을 경우

제65조 (손해보상)

마약관리를 잘못하여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6조 (몰수)

위법행위에 쓰인 마약생산설비와 마약,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을 몰수한다.

제6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수출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 1(마약)

1. 노르레보르파놀
2. 노르모르핀
3. 노르메타돈
4. 노르코데인
5. 노르피파논
6. 노르아시메타돌
7. 니코디코데인
8. 니코모르핀
9. 니코코딘
10. 드로테바놀
11. 디메녹사돌
12. 디메틸티암부텐
13. 디메페프타놀
14. 디페녹신
15. 디피파논
16. 디페녹시레트
17. 디히드로모르핀
18. 디히드로코데인
19. 디암프로미드
20. 디옥사페틸부티레트
21. 디에틸티암부텐
22. 대마수지
23. 데조모르핀
24. 텍스트로모라미드
25. 텍스트로프록시펜
26. 라세모라미드
27. 라세모르핀
28. 레보르파놀
29. 레보모라미드
30. 레보메트로판
31. 레보펜아실모르핀
32. 모라미드중간체
33. 모르핀
34. 모르핀메토브로미드
35. 모르핀-N-옥시드
36. 모르페리딘
37. 미로핀
38. 메타돈
39. 메타돈중간체
40. 메타조신
41. 메타히드록시펜타닐
42. 메트로폰
43. 메틸디히드로모르핀
44. 메틸데소르핀
45. 베타메타놀
46. 베타메프로딘
47. 베타세틸메타돌
48. 베타트라미드
49. 베타프로딘
50. 베타히드록시펜타닐
51. 벤졸릴모르핀
52. 벤질모르핀
53. 벤제티딘
54. 3-메틸티오펜타닐
55. 3-메틸펜타닐
56. 수펜타닐
57. 진삭각농축물
58. 코데인
59. 코데인-N-옥시드
60. 코덱심
61. 코카인
62. 클로니타젠

63. 케토베미돈
64. 트리메페리딘
65. 티오펜타닐
66. 탈리딘
67. 테바콘
68. 테바인
69. 파라-플루오로펜타닐
70. 폴코딘
71. 푸레티딘
72. 프로피람
73. 프로페리딘
74. 프로헵타진
75. 피리트라미드
76. 피미노딘
77. 페나독손
78. 페나조신
79. 페남프로미드
80. 페노모르판
81. 페노페리딘
82. 페티딘중간체B
83. 페티딘중간체C
84. 페티딘중간체A
85. 페테딘
86. 페파프
87. 펜타닐
88. 히드로모르폰
89. 히드로모르폰-N-옥시드
90. 히드로모르피놀
91. 히드로코돈
92. 히드록시페티딘
93. 헤로인
94. 아닐레리딘
95.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96. 아세틸메타돌
97. 아세틸- α -메틸펜타닐
98. 아편
99. 아제토르핀
100. 알릴프로딘
101. 알파메타돌
102. 알파-메틸티오펜타닐
103. 알파-메틸펜타닐
104. 알파메프로딘
105. 알파세틸메타돌
106. 알파프로딘
107. 알펜타닐
108. 옥시모르폰
109. 옥시코돈
110. 이소메타돈
111. 에크고닌
112. 에토니타젠
113. 에톡세리딘
114. 에트로핀
115. 에틸모르핀
116. 에틸메틸티암부텐
117. 엠피피피
118. 워세메토르판
119. 대마
120.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121. 염산디히드로엔트로핀

부록 2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자극성물질)

1. 브로람페타민(DOB)
2. 까티논
3. 디이티(DET)
4. 디엠에(DMA)
5. 디엠에치피(DMHP)
6. 디엠티(DMT)
7. 디오이티(DOET)
8. 엔-에틸테남페타민(MDE)
9. 에티찌클린딘(PCE)
10. 에트랏타민
11. N-히드록시테남페타민(N-OHMDA)
12. (+)-리제르기드(LSD)
13. 엠디엠에(MDMA)
14. 에스칼린
15. 메트까피논
16. 4-메틸아미노렉스
17. 엠엠디에(MMDA)
18. 파라헥실
19. 피엠에(PMA)
20. 프실로찐
21. 프실로찌빈
22. 롤리찌틀리딘
23. 에스티피, 디오엠(STP,DOM)
24. 테남페타민
25. 테노찌틀리딘
26.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의광학이성체와립체이성체들
27. 티엠에(TMA)
28. 암페타민
29. 텍삼페타민
30. 드로나비놀
31. 페네틸린
32. 레밤페타민
33. 레보메탐페타민
34. 메클로쿠알론
35. 메탐페타민
36. 메탐페타민라제마트
37. 메타쿠알론
38. 메틸페니다테
39. 펜찌클린딘
40. 펜메트라진
41. 쉘코바르비탈
42. 지페프롤

부록 3 (의존성이 있는 정신자극성물질)

1. 아모바르비탈
2. 부페노르핀
3. 부탈비탈
4. 까틴
5. 찌클로바르비탈
6. 폴루니트라제팜
7. 글루타티미드
8. 펜타조신
9. 펜토바르비탈
10. 알로바르비탈

11. 알프라졸람
12. 암페프타온
13. 아미노렉스
14. 바르비탈
15. 벤즈벤타민
16. 브로마제팜
17. 브로티졸람
18. 부토바르비탈
19. 카마제팜
20. 클로르디아제폭시드
21. 클로바잠
22. 클로나제팜
23. 클로라제파트
24. 클로티아제팜
25. 클록사졸람
26. 델로라제팜
27. 디아제팜
28. 에스타졸람
29. 제트클로르비놀
30. 에티나마테
31. 에틸로플라제파트
32. 에틸암페타민
33. 펜캄파민
34. 펜프로포렉스
35. 플루라제팜
36. 할라제팜
37. 할록사졸람
38. 케타졸람
39. 레페타민
40. 로프라졸람
41. 로라제팜
42. 로르메타제팜
43. 마진돌
44. 메다제팜
45. 메페노렉스
46. 메프로바마트
47. 메소카르브
48. 메틸페노바르비탈
49. 메티프릴론
50. 미다졸람
51. 니메타제팜
52. 니트라제팜
53. 옥사제팜
54. 옥사졸람
55. 페몰린
56. 펜디메트라진
57. 페노바르비탈
58. 펜테르민
59. 피나제팜
60. 피프라드롤
61. 프라제팜
62. 피로발레론
63. 쉐크부타바르비탈
64. 테마제팜
65. 테트라제팜
66. 트리아졸람
67. 비닐비탈
68. 플루디아제팜

부록 4 (마약 및 각성제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물질)

1. 과망간산칼리움
2. 노르에페드린
3. 류산
4. 리제르긴산
5. 에틸에틸케톤
6. 사프롤
7. 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판논
8. 톨루올
9. 프세우도에페드린
10. 피페로날
11. 피페리딘
12. 페닐초산
13. 초산무수물
14. 아세톤
15. 안트라닐산
16. 염산
17. 이소사프롤
18. 1-페닐-2-프로판논
19. 에르고메트린
20. 에르고타민
21. 에틸에테르
22. 에페드린
23. N-아세틸안트라닐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9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67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2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비상방역법의 기본

제1조 (비상방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은 비상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정의)

비상방역은 전염병위기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될수 있거나 조성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높이 조직전개하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사업이다.

제3조 (비상방역의 등급구분)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급은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인원, 동식물, 물자류동을 제한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2. 특급은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을 봉쇄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국내의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3. 초특급은 주변 나라나 지역에서 발생한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국내의 해당 지역과 린접지역을 완전봉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보다 강도 높은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비상방역등급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4조 (비상방역사업의 기본원칙)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역조치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전염병위기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비상방역체계를 수립하고 전시와 같은 엄격한 규률을 세워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도록 한다.

제5조 (비상방역사업에서의 조직성, 일치성, 의무성보장원칙)

비상방역사업에서 조직성,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하는 것은 방역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국가는 비상방역사업에서의 조직성,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하여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고 안정된 방역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제6조 (전군중적인 비상방역동원원칙)

비상방역은 전국가적, 전군중적사업이다.

국가는 비상방역과 관련한 위생선전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속에서 자만과 방심, 만성병을 철저히 경계하고 비상방역규률과 질서를 의무적으로 지키며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방역분위기를 세우도록 한다.

제7조 (비상방역기간 사업조직원칙)

국가는 비상방역기간 인민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적손실을 최소화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도록 한다.

제8조 (비상방역기간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비상방역기간에 방역규률과 질서를 어기거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전시와 같이 무겁게 보고 엄격한 행정적,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법에 규제된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 자백한자에 대하여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거나 형사책임을 가볍게 지운다.

제9조 (적용대상)

이 법은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

제10조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의 기본요구)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를 잘하는 것은 비상방역사업에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비상방역전략)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에 기초하여 방역사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비상방역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제12조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의 시달)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서를 만들어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방역계획작성과 실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에 따라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비상방역계획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비상방역계획의 조절변경)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을 마음대로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비상방역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비상방역예비물자의 조성과 보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에 반영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 소독약, 연유, 설비, 물자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비상방역예비물자는 특성에 따라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보건기관 또는 생산단위에 보관하며 항시적으로 유지, 보강하여야 한다.

제16조 (격리시설건설)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의진자, 접촉자를 따로 갈라 격리시킬수 있는 격리시설을 방역학적, 봉쇄적요구에 맞게 꾸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열나기를 비롯한 이상증상이 있는 대상들을 시급히 격리시킬수 있는 립시격리실을 방역규정의 요구대로 설비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상방역계획의 실행총화)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상방역 계획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전습조직)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의 병원체검출방법, 치료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전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탁상모의훈련 및 실동훈련)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각급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감염자 또는 감염물질발생시

신속대응할수 있는 행동계획과 작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탁상모의훈련과 실동훈련을 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수립

제20조 (국가비상방역체계로의 전환과 선포)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거나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즉시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상방역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조직)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해당 책임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내각, 국방성,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앙급의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와 국가계획기관,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성, 중앙기관, 의료기관의 책임일군들을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2조 (지방비상방역지휘부의 조직)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해당 책임 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인민위원회와 지역안의 무력,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 의료기관,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 체신기관, 전력공급기관 등의 능력있는 일군들을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상방역지휘부 또는 비상방역지휘조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지휘부 또는 비상방역지휘조를 조직하고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비상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방역지휘부의 분과 및 기동소조조직)

비상방역지휘부는 종합분과, 방역분과, 봉쇄 및 검역분과, 위생선전분과, 치료분과, 신속기동방역조, 봉쇄조, 치료조 같은 분과 및 기동소조를 조직하고 임무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비상방역지휘부의 분과 및 기동소조성원들은 능력있는 실무일군들로 꾸려야 한다.

제25조 (비상방역지휘부의 사업조건보장)

내각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지휘부의 건물과 인원, 기

술 및 운수수단 등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사업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와 권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감독통제한다.
2. 국가비상방역대책안을 작성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3.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비상정황이 발생하면 즉시에 긴급포치한다.
4. 비상방역과 관련한 지시와 사업지도서, 기술지도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작성시달하고 그 집행에서 해당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장악통제한다.
5. 국가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지시가 아래단위에 전달포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때에 장악대책한다.
6.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 해당 부문 비상방역지휘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한다.
7. 임의의 시각에 인원, 기재, 수단 등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며 필요에 따라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과 기술력을 총동원한다.
8.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시킨다. 지역을 봉쇄하는 경우 정황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정하고 실시한다. 지역봉쇄 및 해제문제는 비상설국가비상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9.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의료품과 물자의 생산, 수입, 공급을 긴급히 조직한다. 10. 격리기간과 격리시설, 격리조건을 정한다.
10. 격리기간과 격리시설, 격리조건을 정한다.
11.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에 대하여 승인한다.
12. 필요에 따라 행사와 회의를 비롯한 집체모임과 체육경기, 공연, 영업, 학업, 관광 등을 제한 또는 금지시킨다.
13.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비상방역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금과 물자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공급한다.
14. 비상방역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에 대하여 제때에 경종을 울리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27조 (지방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해당 지역에서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제28조 (신속기동방역조의 임무)

신속기동방역조는 전염병환자나 의진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에 기동하여 역학조사,

림상적진단을 진행하고 전염병과 그 발생원인, 역학적 위험대상, 위험지역을 확진 또는 확정 하며 현지역학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상방역지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봉쇄조의 임무)

봉쇄조는 전염병의진자나 감염물질에 대한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에 기동하여 봉쇄구역을 확정하고 대상과 주변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진행한다.

제30조 (치료조의 임무)

치료조는 전염병감염자가 발생하는 즉시 감염자를 격리병동 및 격리장소로 후송하며 감염자와 격리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한다.

제31조 (비상방역정보 및 통보체계의 구축)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으로부터 말단까지 비상방역지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장악보고하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정보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독약생산과 공급체계)

비상방역지휘부와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은 소독약생산을 과학적으로 하며 격리장소와 예방적소독단위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3조 (소독수단개발 및 소독방법연구완성)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새로운 소독수단을 개발하며 물자의 품종별에 따르는 소독방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고 적극 받아들여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입물자의 반입체계)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출입통로와 물동량, 무역거래 단위를 줄이고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입물자들을 한선에서 들어오는 원칙에서 수입물자의 반입체계를 세워야 한다.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과 현행생산,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와 방역물자, 의약품에 대하여서만 반입할수 있다.

제4장 전염병위기사 대응

제35조 (봉쇄 및 제한 또는 차단, 경비조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가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은 비상방역등급과 지역별봉쇄등급에 따라 국경과 해상, 공중 또는 해당 지역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하며 봉쇄 및 차단경비근무를 방역규정의 요구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경비근무성원은 근무장소를 자의대로 리탈하거나 봉쇄 및 차단지역과 장소에 비법출입하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경비근무수행을 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전염병환자, 의진자적발 및 격리치료)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적발하여 물리적, 방역학적으로 격폐시킨 격리시설에 후송하며 격리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비상방역지휘부의 행동질서)

전염병발생시 비상방역지휘부의 행동질서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방역지휘부는 전염병의진자로 의심되는 대상이 통보되는 즉시 신속기동방역조를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임상적진단을 하고 검체를 채취한 다음 정해진 실험검사실에 신속히 넘겨주어야 한다.
2.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1차검사를 실시간종합, 지휘하며 1차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즉시 실시간검사설비로 환자를 포함한 모든 접촉자들에 대한 2차검사를 최긴급으로 조직한다.
3.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전염병의진자의 1차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즉시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에 긴급통보하며 감염자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비상방역 및 봉쇄사업을 조직지휘한다.
4. 비상방역지휘부는 환자후송에 동원된 인원들이 개인보호기재를 착용하도록 하며 환자는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긴급후송하여 격리시키고 그가 있던 장소를 차단하며 마감소독을 엄격히 진행한다.
5.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전염병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바로 조직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의료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치료력량을 보강한다.
6. 비상방역지휘부는 치료장소에 일반치료실과 집중치료실, 화상진단실, 실험검사실을 전개한다.

제38조 (접촉자 및 발열자장악, 의학적감시)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전염병환자나 의진자와 접촉한자,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입국한자와 그들과 접촉한자를 빠짐없이 찾아 역학관계확인고 임상증상관찰, PCR검사를 비롯한 현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장소에 정해진 기간까지 격리시켜 의학적감시를 하며 격리가 해제된 다음에는 일정한 기간 그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계속하면서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이 나는 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자택격리시키며 열이 나는 상태에서 출근 또는 등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격리장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질서)

격리장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질서는 다음과 같다.

1. 격리자는 정해진 질서와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필요없이 호실밖으로 나다니거나 다른 격리자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2. 격리자는 개체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호실을 깨끗이 거두며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담당의사 또는 해당 성원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3. 위생방역일군은 격리자와 보장성원이 위생방역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장악, 통제하며 격리자와 봉사자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위생방역일군은 격리장소에 대한 예방적소독사업을 조직진행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장악하여 제때에 비상방역지휘부에 보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의료일군은 격리자와 접촉할 때 개인보호기재를 착용하며 격리자에 대한 검병, 검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제기된 문제를 즉시 비상방역지휘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의료일군은 위생선전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격리자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과 통제를 하여야 한다.
7. 봉사자는 개체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생방역일군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봉사자는 격리자가 식사하고 남은 음식과 오물을 위생방역규정대로 처리하며 주방도구와 집기류를 소독하여야 한다.

제40조 (격리해제)

격리자에 대한 격리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격리자를 격리해제시키려 할 경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격리자가 있던 장소에 대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간 격리해제된 대상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방역초소)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가 정한 장소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인원과 기재, 물자에 대한 체온재기 및 소독을 규정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발생장소와 격리지역에 대한 소독)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와 격리지역에서 나오는 오물, 하수, 변을 규정대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43조 (공공장소와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공장소와 열차, 지하철도, 무궤도전차, 버스, 택시 등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사업을 매일 정확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진, 예방접종)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여 의진자를 제때에 찾아내며 주민들에 대한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수도의 안전보장)

사회안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기간 평양시출입을 극력 제한하며 수도경비사업과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평양시에 비법출입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와 지역의 물품을 소독확인서가 없이 가지고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평양시출입에 필요한 확인서를 망탕 발급해주거나 위조사용하여 수도안전보장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검사검역 및 적지물처리)

비상방역지휘부와 검사검역기관,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인원, 물자, 동식물에 대한 검사검역과 적지물처리를 방역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하며 검사검역 및 적지물처리조성원을 외부인원과 격폐시켜 의학적감시속에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검역 및 적지물처리조성원 또는 그들이 리용하는 기재, 수단, 도구 등과 비법적으로 접촉하거나 격리장소에 드나드는것을 비롯하여 전염병전파위험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7조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소독할수 없는 물자는 수입할수 없다.

제48조 (대표단파견 및 초청금지와 해외체류공민보호)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대표단파견과 초청을 중지하며 다른 나라에 나가있는 우리 나라 공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9조 (비상방역기간 외국인의 출국)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기간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국인가운데서 출국을 희망하는 대상은 해당 나라로 출국시켜야 한다.

이 경우 격리중에 있는 대상은 정해진 격리기일이 지난 다음 출국시킨다.

제50조 (수질검사 및 오수, 오물처리에 대한 통제)

위생방역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해사감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강하천, 호수, 저수지, 수원지의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우리 나라 령해와 강, 호수에서 배들이 오수, 오물을 망탕 버리지 않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의 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전력공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보장과 봉쇄지역, 격리장소에 대한 전기, 식량, 부식물, 딸감, 음료수, 생활필수품 등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전염병치료예방의 과학연구사업과 자료보장)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전염병치료예방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며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치료약물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역학과 예방, 검사 및 진단, 치료와 관련한 국내외자료를 제때에 수집하여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 보내 주어야 한다.

제53조 (의료일군들에 대한 보호대책)

비상방역지휘부는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된 의료일군들을 비롯하여 전염병의진자나 접촉자를 취급하는 성원들이 보호복, 보호안경 등 개인보호기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며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54조 (인민생활의 안정)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기간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부식물, 딸감, 생활필수품 등을 수요대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 (방역선전 및 평가사업)

출판보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공민들이 비상방역전은 조국보위전, 인민보위전이며 자기자신과 자기 가정을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방역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방역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방역장벽에 파공을 내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할수 있는 행위를 비롯하여 방역규률위반행위를 제때에 신고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자들을 직접 적발한 성원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제56조 (적지물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의 처리)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국가보위기관,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은 공민들이 적지물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에 손을 대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도록 하며 적지물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에 대한 검사와 취급처리를 방역학적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대기오염, 강하천오물감시 및 대책)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대기오염과 강하천오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장마철기간 국경지역의 강하천들에서 소독과 오물수거, 소각, 매물처리를 바로 하여 공기와 강하천오물에 의한 전염병류입을 막아야 한다.

제58조 (조류와 야생짐승에 대한 감시 및 대책)

비상방역지휘부는 조류와 야생짐승에 의하여 전염병이 전파될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수의방역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류와 야생짐승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진행하고 이상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비상방역지휘부에 통보하며 주민, 종업원, 학생들이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9조 (비상방역기간 공민과 외국인의 의무)

비상방역기간 공민과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
2. 열나기, 마른기침, 호흡곤란 등 방역위기를 조성할수 있는 전염병증상이 나타나면 위생담당성원, 호담당 의사, 단위책임자에게 알리며 전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해당 지역의 위생방역기관 또는 비상방역지휘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하지 말며 적지물을 비롯한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을 발견하는 즉시 국가보위기관,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체온재기와 손소독, 마스크착용, 방역학적거리두기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5. 어떤 경우에도 전염병위험표식같은 해당 표식이 있는 구역이나 건물, 시설, 룬전기재 같은것에 접근하거나 그안에 있는 성원들과 비법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평양시에 검사, 검역을 받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비법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7. 국경과 바다에 비법출입하거나 밀수밀매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8. 불필요하게 다른 지역으로 류동하거나 국경, 전연지역의 강물 또는 강기슭에 밀려나 온 오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9. 봉쇄지역, 격리장소안의 성원들은 지정된 장소를 리탈하지 말며 물자와 물품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0. 단속성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구타, 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무데기로 사들이지 말며 환률파동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3. 가짜약품, 의료용소모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4. 집단적으로 모여 술판, 먹자판을 벌려놓거나 공공장소에서 유희, 오락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5. 유용동물보호구와 그밖의 지역들에서 사냥을 하지 말며 국경과 전연지역의 강, 호수에서 물고기잡이를 하거나 세면과 목욕, 빨래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16. 승인없이 짐짐승을 놓아기르거나 애완용동물을 밖에 놓아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7. 승인되지 않은 장소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방역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8. 류언비어를 날조류포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며 비상방역질서를 어기거나 그것을 묵인조장하는 행위를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9.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하며 비상방역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20. 그밖에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0조 (운전수, 승무원의 임무)

비상방역기간 교통운수기관에서 근무하는 운전수, 승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수수단의 환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운행시 전염병예방선전사업을 하여야 한다.
4.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5.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손소독 및 체온재기를 방역규정대로 하며 전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태우지 말아야 한다.
6. 지정된 인원을 초과하여 태우지 말아야 한다.

제61조 (최대비상체제)

최대비상체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경우 취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비상방역조치이다.

최대비상체제가 선포되는 경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해당 기관은 국경과 전연, 지상, 공중, 해상을 완전봉쇄하는 동시에 지역별, 구역별격폐조치, 격리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전주민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전염원과 전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최대급의 방역조치로 격상시켜 조성된 전염병전파위기를 즉시 차단, 제거하여야 한다.

제62조 (국가비상방역체계의 해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

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들어오는 경우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게 되었거나 우리 나라에서 발생 하였던 전염병이 인민들의 생명안전에 주는 위험이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 국가적인 비상방역 체계를 해제한다는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5장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제63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방역학적요구에 어긋나는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경우 1,000~5,000원
2. 보건기관에서 조직한 검병, 검진, 예방접종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거나 평방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진행되는 사무실과 담당구역에 대한 소독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0원
3. 비상방역조치에 따르는 자택 또는 일반격리질서를 어기거나 황사, 태풍을 비롯한 재해성기후와 관련하여 취해지는 류동금지조치를 어겼을 경우 5,000원
4.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본인이나 가족성원, 수상한 물품 또는 원인모르게 죽은 동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5,000~1만원
5. 정해진 방역규정을 어기고 여러명이 모여 술판, 먹자판을 벌리거나 유희, 오락 등을 하였을 경우 1만~5만원
6. 국경과 전연, 해안지역의 강, 호수에서 물고기잡이 또는 세면, 목욕, 빨래 등을 하거나 국경과 전연지역을 넘어들어온것으로 의심되는 풍선같은 출처가 불명확하고 이상한 물건과 접촉하였을 경우 1만~5만원
7. 승인없이 집짐승을 놓아기르거나 애완동물을 밖에 놓아주었을 경우 5만~10만원
8. 비법적으로 영업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명을 끌어들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소와 길 거리에서 장사행위를 하거나 소독확인서가 없는 수입물자를 운송하였을 경우 5만~10만원
9.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대량이상의 상품을 사들이면서 무질서를 조성하였거나 역학 확인서 같은것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 밀매하였을 경우 5만~10만원
10. 미성년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비상방역사업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5만~10만원

제64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검병, 검진 및 의학적 감시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방역선전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만~20만원
2. 소독수의 농도를 규정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운수수단, 해당 장소들에 대한 소독, 인원에 대한 손소독, 체온재기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3. 버스, 궤도전차, 무궤도전차를 비롯한 공공운수수단에 사람들을 비좁게 태우고 운행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4. 영업봉사단위들에서 영업봉사시간이 지나도록 봉사하였거나 결혼식같은 대중봉사를 하면서 인원규모를 초과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5.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상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대량 이상의 상품을 개인들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10만~50만원
6. 수입물자의 방치기일, 소독질서를 어기고 물자를 반입, 반출하였을 경우 50만~100만원
7. 격리장소에서 버림물을 정화하지 않고 방출하였을 경우 50만~100만원
8. 꿩같은것을 놓아기르거나 방목질서를 어겼을 경우 50만~100만원

제65조 (중지 또는 폐업, 몰수처벌)

이 법 제64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업처벌을 준다.

방역초소근무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차를 몰수한다.

제66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격리시설 또는 해당 근무장소에서 자의대로 리탈하거나 봉쇄 및 차단근무성원이 외부 인원과 비법적으로 접촉하거나 물자같은것을 주고받는것을 비롯하여 근무수행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검열, 단속에 불응한다고 하여 구타, 폭행을 하거나 방역사업과 관련한 검열, 단속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3. 전염병위험표식같은 해당 표식이 있는 구역이나 건물, 룬전기재 등에 망탕 드나들거나 그안에 있는 인원과 비법적으로 접촉하였을 경우
4. 평양시와 국경, 전연지역 또는 차단구역에 비법출입하였을 경우
5. 적지물과 바다오물 또는 국경과 전연, 해안지역의 강하천오물,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하거나 자의대로 처리하였을 경우
6. 정해진 방역규정을 어기고 술판, 먹자판, 유희, 오락 등을 조직하였거나 추동하였을 경우

7. 이 법 제63조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

앞항 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67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 대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계획작성 및 시달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지시, 포치를 제때에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2. 검병, 검진체계 또는 소독수단 및 시설 같은것을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 파손된 혹은 불비한 검병, 검진, 소독수단 및 시설 같은것을 제때에 대책하지 않았을 경우
3. 격리병동 또는 시설을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꾸리지 않았거나 격리자들에 대한 교양사업과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리탈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4. 해당 장소들에 대한 소독사업을 조직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방역규정을 어기고 유희장, 오락장 같은것을 망탕 운영하였을 경우
5. 격리장소에서 물품,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과 의료폐기물, 배설물, 시체에 대한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해당 지역 또는 자기 단위에서의 비상방역실태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7. 전염병비루스검출방법, 치료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전습과 전염병감염자 또는 감염물질발생시 신속대응할수 있는 탁상모의훈련과 실동훈련을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8.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된 의료일군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봉쇄, 차단, 감시근무를 비롯한 방역사업에 동원된 근무성원들에 대한 생활조건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9. 국경에서 물자의 반출입 및 검사검역 또는 바다출입질서를 어기거나 그에 대한 장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0. 강하천, 호수, 저수지, 수원지의 수질검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들의 오수, 오물처리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1. 적지물과 바다 및 강하천오물 또는 조류와 야생짐승에 대한 감시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검사와 취급처리를 방역학적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2. 조직사업과 장악통제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작업같은것을 하면서 집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운전수가 방역초소근무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13. 유열자 또는 자택격리된 대상을 불러냈거나 호담당 의사, 위생담당성원이 체온재기와 손소독을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검병 및 소독일지를 허위기록 하였을 경우

14. 평양시에 대한 출입승인 또는 역학확인서발급 같은것을 비법적으로 해주었거나 검열, 단속사업을 망탕 하였을 경우
 15. 시장과 허용되지 않은 장소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봄비지 않도록 장악통제하지 못하였거나 집체모임같은것을 자의대로 또는 방역규정에 어긋나게 조직, 진행하였을 경우
 16. 이밖에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 지시를 무책임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 앞항 1~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8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 대한 구금처벌)

검찰기관과 해당 기관은 이 법 제67조의 행위를 한 일군이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개조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금처벌을 준다.
구금처벌적용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구금처벌규정에 따른다.

제69조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군급이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아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묵살하였거나 그 집행을 위한 장악지도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 전염병전파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을 어긴 행위가 극히 엄중할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0조 (비상방역의무태만죄)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된자가 관할지역 또는 단위에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장악 및 의학적감시를 태공하였거나 비상방역활동과 치료를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전파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의 전염병의진자를 대책하지 못하였거나 규정대로 검사검역을 하지 않고 물자를 통과시켰거나 비상방역사업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의무태만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비상방역조건보장태만죄)

격리시설 및 병동을 꾸려주지 않았거나 치료 및 생활조건보장을 위한 자재, 자금, 설비, 물자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환자후송에 필요한 수송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은것 같은 조건보장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방역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전염병환자, 의진자들에 대한 격리를 보장할수 없게 하였거나 여러명이 격리장소에서 리탈하게 한것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조건보장태만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국경, 지상, 해상, 공중봉쇄태만죄)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봉쇄의무를 지닌자가 경비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비법적으로 국경 또는 봉쇄구역으로 사람이나 물자가 드나들게 하였거나 바다에 비법출입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돈과 물건을 받고 하였거나 국경 또는 봉쇄구역, 바다의 비법출입을 묵인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지상과 해상, 공중봉쇄의무태만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3조 (비상방역사업방해죄)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요구에 반항하면서 구타, 폭행하였거나 검열, 감독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격폐된 격리장소에서 리탈하였거나 격리된 대상을 밖으로 불러내었거나 격리된 대상이 격리장소로 사람을 불러들였거나 비법적으로 사냥을 하였거나 국가적인 봉쇄구역에 비법출입하는것 등을 비롯하여 비상방역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하였거나 승인없이 수입물자를 끌어 들였거나 밀수행위를 하였거나 밀수품을 류포시켰거나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를 묵인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4조 (최대비상체제시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최대비상체제기간에 비상방역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75조 (외국인에 대한 법적제재)

비상방역기간 우리 나라에 상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상방역과 관련한 국가적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1만~100만원의 벌금을 적용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공화국령역에서 추방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과 련관법규와의 관계)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조사취급과 처리원칙, 절차와 방법 등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처벌법, 벌금규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조 (법의 적용시점)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한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 법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행정처벌이 결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

주체110(2021)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5호로 채택
주체110(2021)년 5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26호로 수정보충

제1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수입물자소독의 의무성)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수입물자는 비상방역기간은 물론 비상방역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국경통과지점 또는 해당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자연방치 및 소독을 한다.
자연방치 및 소독을 하지 않은 수입물자는 국경통과지점 또는 해당 장소를 통과할수 없다.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수입물자를 들여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외국투자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포함)에 적용한다.

제4조 (수입물자소독담당자)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이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수입물자소독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5조 (소독시설의 구비)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소독장에 수입물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건열소독, 증기소독, 자외선소독, 세척소독, 오존소독 등의 소독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현대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개인보호기재 및 소독기재의 구비)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방독복, 보호안경, 마스크, 얼굴보호막, 장갑, 덧신 등의 개인보호기재와 각종 분무기를 비롯한 소독기재를 항상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7조 (수입물자소독신청서의 제출)

수입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물품검사검역기관에 수입물자소독신청서를 내야한다.
수입물자소독신청서에는 물자의 종류와 수량, 질지표, 종류에 따르는 물리화학적성질 및 기술적조건, 포장상태 등을 밝혀야 한다.

제8조 (수입물자소독신청서의 제출시점)

수입물자소독신청서는 계약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물자인 경우 가격승인을 받기 전에, 기증물자, 투자물자인 경우 반입승인을 받기 전에 내야 한다.

가격승인 또는 반입승인없이 들어오는 물자인 경우에는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한 즉시에 내야 한다.

제9조 (수입물자소독신청서의 검토)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수입물자소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소독장의 소독능력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소독경유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의 소독경유확인이 있는 조건에서 수입물자에 대한 가격승인, 반입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제10조 (수입물자의 자연방치 및 소독)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수입물자가 들어오는 경우 국경통과지점 또는 해당 장소에 꾸러진 자연방치구역, 소독장에서 비상방역기간에는 정해진 기간, 비상방역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7~10일정도 자연방치한 다음 소독하여야 한다.

자연방치 및 소독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간을 비롯한 해당 기관이 한다.

수입물자에 대한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은 소독이 끝난 다음에 한다.

제11조 (수입물자가 아닌 물자,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

수입물자가 아닌 기타 물자와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은 따로 정한 질서에 따른다.

제12조 (소독확인서의 발급)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소독을 끝낸 수입물자에 한하여 소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소독확인서에는 소독한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밝히고 소독성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세관과 무역화물검수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소독확인서가 없는 수입물자에 대한 검사검역과 검수, 기타 수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소독시 방역학적요구준수)

소독성원은 방독복,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기재를 규정대로 착용하고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소독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독시 손상방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소독과정에 손상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해당한 대책을 세운 다음 소독하여야 한다.

수입물자소독신청서에 물자의 특성과 물리화학적 성질, 기술적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소독시 물자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수입물자소독신청자가 책임진다.

소독하는 성원이 정해진 소독방법대로 소독을 하지 않아 물자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소독한 성원이 책임을 진다.

제15조 (소독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물자소독사업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금, 자재 같은 것을 제 때에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독방법연구, 도입)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물자에 따르는 소독방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연구완성된 소독방법을 제때에 받아들여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17조 (소독료금의 지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물자를 소독한 경우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에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소독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18조 (수입물자소독사업에 대한 지도)

수입물자소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수출입품검사검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수출입품검사검역지도기관은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벌금처벌)

자연방치 및 소독질서를 어기고 수입물자를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제20조 (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경유확인을 받지 않고 가격 및 반입수속을 하였을 경우
2. 자연방치 및 소독을 하지 않고 수입물자를 들여왔을 경우
3. 소독확인서가 없는 수입물자를 통과시켰을 경우
4. 수입물자의 자연방치와 소독을 정해진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4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1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른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

주체87(1998)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78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4호로 수정보충

제1조 (식료품위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은 식료품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식료품의 위생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식료품위생부문의 물질기술적수단현대화)

국가는 식료품위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3조 (식료품생산취급일군의 위생성보장)

국가는 식료품생산취급일군들속에서 식료품위생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 (식료품생산취급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생조건보장)

보건지도기관과 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판매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생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위생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판매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보건지도기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위생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생산 및 영업허가를 해줄수 없다.

제5조 (식료품생산, 판매공급에서 위생기준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 판매공급에서 정해진 위생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위생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6조 (식료품생산표준조작법)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의 위생상태를 보장할수 있는 식료품생산표준조작법을 만들어야 한다.

식품생산표준조작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의 오염방지)

식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생산의 특성에 맞게 환기 같은 것을 보장하며 해로운 물질에 의한 식품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오염막이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식품을 생산할수 없다.

제8조 (위생보호물자의 리용)

식품생산취급일군은 위생시설과 옷, 모자, 마스크, 신발 같은 위생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시설을 표준대로 갖추고 위생보호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생기준에 맞는 원료, 자재의 리용)

식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기준에 맞는 원료자재를 리용하여야 한다.

부패변질되었거나 오염된 원료자재로는 식품을 생산할수 없다.

제10조 (생산공정의 위생)

식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생산에서 살균, 가열, 랭각 같은 공정을 지켜야 한다.

식품생산공정은 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식품의 첨가물)

식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람의 건강에 해롭지 않은 자연색소, 향료, 알카리, 맛내기, 방부제 같은 첨가물을 넣어 식품을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식품의 포장)

식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포장을 위생문화적으로 하여야 한다.

포장겉면이나 설명서에는 식품생산날자, 보존기간, 보관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3조 (식품의 위생안전성 검사, 검정)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검사, 검정하여야 한다.

검사,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식품은 판매공급할수 없다.

제14조 (수입하는 식품의 합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을 수입하려 할 경우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식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을 품종별로 등록하고 그에 대한 위생안전성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았거나 위생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과 그원료, 자재, 첨가물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수 없다.

제15조 (식료품의 보관)

식료품보관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부패변질, 오염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부패변질, 오염 같은 피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식료품의 운반)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조건에 맞는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식료품을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식료품수송수단은 세척하거나 소독하여야 한다.

제17조 (판매공급하는 식료품의 위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식료품만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식을 정해진 요구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식료품, 변질되었거나 벌레가 생긴 식료품은 판매공급할수 없다.

제18조 (이동판매하는 식료품의 위생)

식료품을 이동판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식료품중독사고대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샀거나 공급받은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중독사고가 나타났을 경우 위생방역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료품중독사고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식료품의 판매공급을 중지하고 사고원인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생산의 위생)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생산에서 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생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료자재로는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을 생산할수 없다.

제21조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의 위생검사)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은 위생검사를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는 위생방역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2조 (식료품용기, 포장재의 회수리용)

식료품용기와 포장재는 회수하여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한 식료품용기와 포장재는 세척, 소독한다.

제23조 (위생관리에서 앞선 수단과 방법의 도입)

식료품을 생산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

서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처음 받아들여려는 위생관리수단과 방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식품생산취급시설의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생산취급시설의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수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위생적인 식품생산취급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제25조 (식품생산취급일군의 검진)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생산취급일군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일군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공급할수 없다.

제26조 (식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

식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식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식품위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 (식품생산취급기업소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식품일용공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식품을 생산취급하는 기업소를 위생환경과 조건을 보장할수 있게 꾸려야 한다.

제28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식품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식품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식품위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0조 (식품생산취급의 중지)

식품위생상태가 불결한 경우에는 식품생산과 취급을 중지시킨다.

제31조 (손해보상)

식품위생관리를 잘하지 않아 식품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식품위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

주체93(2004)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9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약초법의 기본

제1조 (약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은 약초의 재배,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약초의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약초자원을 적극 늘이고 고려약생산을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약초의 정의)

약초는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약초에는 재배하였거나 자연적으로 자라 약재로 쓰이는 식물의 뿌리, 껍질, 꽃, 잎 열매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약초재배원칙)

약초 재배를 잘하는것은 고려약생산을 늘이기위한 선차적인 요구이다.
국가는 약초재배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약초재배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 (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원칙)

약초 자원의 조성과 보호는 산에 약초를 심으며 자연적으로 자라는 약초를 관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관리체계를 세우며 약초 한뿌리를 캐고 두 뿌리, 세 뿌리를 심는 원칙에서 약초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 (약초의 수매원칙)

약초의 수매를 바로하는 것은 생산, 채취한 약초를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약초수매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며 계획수매, 계약수매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약초를 수매하도록 한다.

제6조 (약초에 대한 과학연구원칙)

국가는 약초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하여 약초를 재배하고 그 자원을 보호하는데서 나

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일도록 한다.

제7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과학지식보급사업강화)

국가는 인민들속에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약초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약초를 재배하고 약초자원을 조성보호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 (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약초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약초의 재배

제9조 (약초의 과학기술적인 비배관리)

약초의 재배는 약초를 심고 가꾸며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를 제때에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약초재배계획의 작성과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약초에 대한 국가적수요, 재배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약초재배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 (약초의 전문재배와 군중재배)

약초재배는 전문재배와 군중재배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재배는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이, 군중재배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제12조 (약초재배면적보장과 약초생산의 전문화)

약초재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재배면적을 적지에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은 약초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13조 (약초의 품종배치)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의 품종배치를 의약품생산과 치료예방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연지리적조건, 약초의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작업)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심기, 비료주기, 김매기 같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병해충,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약초에는 유기질비료, 생물비료를 위주로 주며 화학비료를 줄 경우에는 허용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여러가지 방법의 약초재배)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약초를 재배하여야 한다.

다른 지방에서 자라는 약용가치가 좋은 약초를 재배하려 할 경우에는 풍토에 점차적응시키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약초밭의 지목변경)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은 약초밭을 묵이거나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지 말아야 한다. 약초밭에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할 경우에는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다른 나라의 약초재배)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약초종자를 들여다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 국토환경보호지도 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 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약초재배월간)

국가는 약초를 전군중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약초재배월간》을 정한다.

《약초재배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9조 (균중적인 약초재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고려약생산관리기관은 약초재배월간에 기관, 기업소, 단체, 마을과 살림집주변, 산기슭, 하천주변을 비롯한 빈땅에 여러 가지 약초를 심고 가꾸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마약원료로 쓰이는 약초의 재배)

마약원료로 쓰이는 약초의 재배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이 경우 재배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1조 (약초수확과 생산량보고)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은 약초수확시기를 품종별, 포전별로 정하고 제때에 거두어들이며 그 생산량을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은 약초생산량을 품종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 and 보호

제22조 (전망적인 약초자원의 조성 and 보호)

약초자원을 적극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약초자원을 늘이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은 약초자원의 조성 and 보호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

야 한다.

제23조 (약초자원의 조사)

약초자원에 대한 조사는 약초자원조사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약초자원조사기관과 해당 기관은 약초자원의 분포상태와 자원량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자료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약초자원조성계획의 시달)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산림경영기업소와 약초관리기업소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약초자원조성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25조 (약초자원조성설계의 작성)

약초자원조성설계는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조건 같은 것을 조사분석하고 약초자원조성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약초자원조성설계요구의 준수)

약초자원의 조성은 약초자원조성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조성설계의 요구대로 정해진 산림토지에 약초를 적기에 집중적으로 심어 약초자원조성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약초의 조성면적확장과 사름률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조성면적을 계획적으로 늘이며 약초심기와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약초자원보호구설정)

국가는 약초자원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하여 약초자원보호구를 정한다.

약초자원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9조 (약초자원보호구에서의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약초자원보호구에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약초자원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약초자원보호증식에 지장을 주는 작물을 심거나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약초자원에 대한 소개선전)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보호할 약초자원의 종류와 생물학적특성, 약초채취시기와 방법 같은 것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31조 (약초원종보존과 새로운 약초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만 있거나 특이한 약초원종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새로 발견한 약용식물은 제때에 약초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허가를 받아 채취할수 있는 약초)

자원이 줄어들거나 중요한 야생약초는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수 있는 약초의 종류는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이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 (약초채취허가신청서의 제출)

약초를 채취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 약초관리기업소에 약초채취허가신청서를 하여야 한다.

약초채취허가신청을 받은 약초관리기업소는 채취하려는 약초의 종류와 목적, 수량 같은 것을 밝힌 약초채취허가신청서를 만들어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제34조 (약초채취허가증의 발급)

약초채취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약초채취계획과 자원량에 근거하여 약초채취허가증을 제때에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약초채취허가증에는 약초를 채취할 지역과 시기, 종류와 수량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35조 (대용약초의 채취)

국가적으로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약초는 일정한 기간 채취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대용할수 있는 약초를 채취할수 있다. 대용할수 있는 약초의 종류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이 한다.

제36조 (약초채취에서 지킬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약초자원의 보존과 증식에 지장이 없도록 약초채취를 적기에 하여야 한다. 뿌리채로 리용하는 약초의 채취는 씨가 여문 다음 종자를 받고 하며 잎, 꽃, 열매를 리용하는 약초의 채취는 뿌리나 덩굴에 손상을 주거나 나무를 찍지 말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약초의 수매

제37조 (약초수매계획시달)

약초의 수매는 생산, 채취한 약초를 사들이는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약초생산량과 채취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약초수매계획을 세우고 제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8조 (약초수매기관)

약초수매사업은 약초관리기업소가 한다.

약초관리기업소는 약초수매계획에 따라 약초를 제때에 수매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약초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39조 (약초수매방법)

약초관리기업소는 약초의 등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받아야 한다.
수매가격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0조 (약초의 보관과 공급)

약초관리기업소는 수매받은 약초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관관리하여 약초의 부패, 변질을 막아야 한다.
수매받은 약초는 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41조 (약초수출)

약초를 비롯한 고려약원료는 수출할수 없다.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요구)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약초생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약초부문에 대한 지도기관)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은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약초부문 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균중적인 약초의 재배와 조성, 보호)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약초의 재배와 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사업을 균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육종체계, 채종체계수립과 종자공급)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세우며 약초종자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우량품종의 약초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초종자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험재배에서 평가된 종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약초부문 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약초재배와 수매, 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에 필요한 로력과 토지,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약초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제48조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약초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약초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약초부문 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벌금, 손해보상)

채취가 금지된 약초를 채취하거나 약초채취를 망탕하여 약초자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0조 (약초의 수매와 수출, 밀매중지, 몰수)

약초의 수매, 수출입질서를 어겼거나 약초를 밀매한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약초를 몰수한다.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약초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주체86(1997)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3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3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의료법의 기본

제1조 (의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은 의료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의료부문성과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보건정책에 의하여 선진적인 의료제도가 마련되고 의료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의료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료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 (무상치료제혜택의 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의료사업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기초한다.

국가는 무상치료제에 의한 혜택이 인민들에게 원만히 차례지도록 한다.

제4조 (의사담당구역제 실시원칙)

의사담당구역제는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국가는 의사담당구역제를 바로 정하고 의료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의사담당구역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 (병의 예방원칙)

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예방을 치료에 앞세우고 위생방역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벌려 병을 미리 막도록 한다.

제6조 (의학과학기술발전원칙)

의료사업은 인간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이다.

국가는 의료사업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의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의료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일도록 한다.

제7조 (고려치료방법의 적응원칙)

고려의학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의료사업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옹계 배합하여 발전시키고 치료사업에 고려치료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 (의료활동에서 정성원칙)

의료일군은 의료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의료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의료활동에서 정성을 다하도록 한다.

제9조 (의료부문의 물질적보장원칙)

국가는 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10조 (의료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의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제11조 (의료검진과 진단의 기본요구)

의료검진과 진단은 의료사업의 첫 공정이다.
의료기관은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병을 조기에 찾아내고 병의 원인과 본태를 밝혀야 한다.

제12조 (의료검진장소)

의료검진은 의료기관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직장 또는 가정 같은데서도 의료검진을 할수 있다.

제13조 (의료검진방법)

의료기관은 의료검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의료검진은 개별검진과 집단검진, 선택검진, 전반적검진, 전문과적검진, 정기검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의료검사에서 사망 같은 불량한 결과가 나타날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의료일군의 검진)

의료일군에 대한 의료검진은 정기적으로 한다.
검진에서 전염병균이 나타난 의료일군의 의료활동은 중지시킨다.

제15조 (환자의 등록과 확보)

의료기관은 의료검진에서 발견한 환자를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진결과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진단)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에 기초하여 빠른 시간안에 진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하거나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 (생체조직, 가검물의 채취)

의료기관은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생체조직과 가검물을 채취할수 있다.
환자의 생체조직은 채취할 경우에는 그에 심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진단방법의 창조와 도입)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 유리한 진단방법을 창조하거나 도입하여야 한다.
새로 창조하였거나 처음 도입하려는 진단방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확정된 진단의 기록)

의료기관은 확정된 진단을 환자병력서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진단에 대한 기록은 필요에 따라 외래어로 할수 있다.

제20조 (진단의 통지)

확정된 진단은 환자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진단에 대하여서는 보호자에게만 알려줄수 있다.

제21조 (전염병의 통보)

의료기관은 진단과정에 전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현장소독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환자치료

제22조 (환자치료의 기본요구)

환자치료는 환자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서 집체적협업제와 개별적책임제를 강화하며 환자의 병상태와 체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를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제23조 (환자치료장소)

환자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환자가 있는 직장, 가정 같은데서도 환자를 치료할수 있다.

제24조 (치료일군의 자격)

환자치료는 의료일군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의료일군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자는 환자치료를 비롯하여 비법적인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제25조 (구급환자의 치료)

의료기관은 구급환자를 먼저 치료하여야 한다.

담당구역의 구급환자가 왕진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치료조작내용의 통고)

의료기관은 예견하는 치료조작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수술을 예견할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치료방법)

의료기관은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한다.

피부이식을 비롯한 조직이식, 장기이식, 인공장기치환술, 레이자치료, 복강경하수술, 유전자 치료 같은 치료는 의학적적응관계를 의사협의회에서 엄격히 검토하고 하여야 한다.

산사람 또는 뇌사상태에 있거나 죽은 사람의 장기조직을 환자치료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특별의료조작)

의료기관은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데 따라 인공임신조작을 하며 선천성대기형, 유전자병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의료조작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적응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 (약물처방)

의료기관은 약물처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병적고통이 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마약성진통제 같은 것을 정해진 량보다 더 처방할수 있다.

제30조 (소생가능성없는 환자의 의학적평가처리)

수술 같은 것을 하면서 기술규정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였는데도 불량한 결과가 나타났거나 뇌사상태같이 환자를 소생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에 대한 의학적평가처리는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데 따라 한다.

제31조 (고려의학적방법, 자연인자의 도입)

해당 의료기관은 고려약료법, 침료법, 뜸료법, 부항료법 같은 고려의학적방법과 약수, 온천, 감탕 같은 자연인자를 환자치료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32조 (환자치료문건)

의료기관은 병력시, 진단서, 처방전 같은 환자치료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환자치료문건은 원본 또는 부분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 (환자치료에서 책임성과 봉사성)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서 책임성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어야 한다.

제34조 (다른 나라에서 받은 의료일군자격)

다른 나라에서 의료일군자격을 받은 우리 나라 국민 또는 다른 나라 국민이 우리 나라에서 의료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자격인증을 받는다.

제4장 의료감정

제35조 (의료감정의 기본요구)

의료감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사고나 로동능력상실정도를 과학적으로 확증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의료감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의료감정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36조 (의료감정대상)

의료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1. 감독통제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료감정을 의뢰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통보 또는 국민이 의료감정을 청원한 경우
3. 의료검열과정에 의료감정사유가 나타난 경우
4. 그밖에 필요한 경우

제37조 (의료감정장소)

의료감정은 의료기관에서 한다.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청원한 국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의료감정을 할수 있다.

제38조 (의료감정형식)

의료기관은 의료감정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의료감정은 생체감정, 시체감정, 증거물감정, 문서감정 같은 형식으로 한다.

제39조 (의료감정의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의료감정의뢰문건을 의료기관에 내야 한다.

의료감정의뢰문건을 접수한 의료기관은 의료감정대상에 대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감정에 해당 일군을 립회시키며 전문일군협의회 같은 것을 조직할수 있다.

제40조 (시체감정)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체감정을 한다.

시체감정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시체감정을 할 수 있다.

제41조 (의료감정결과의 통지)

의료기관은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청원한 공민에게 감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감정문건을 발급할수 있다.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보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의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지방보건지도기관의 임무)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의료활동과 의료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 (의료기관의 신설, 통합, 분리)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을 신설, 통합, 분리하거나 없앨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전문 의사인정위원회)

국가는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사급수를 정하며 전문의사인정위원회를 조직한다.

의사급수를 정하고 전문의사인정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47조 (의료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의료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의학과학연구사업, 의료일군양성)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의학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의료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9조 (의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의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의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0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의료시설, 설비, 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의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주체86(1997)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1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제1조 (의약품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은 의약품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치료예방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의약품생산원칙)

의약품생산을 늘이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신약과 고려약의 생산을 정상화하며 의약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도록 한다.

제3조 (의약품검정원칙)

의약품검정은 의약품의 질을 검사하고 판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의약품검정수단을 현대화하며 의약품검정의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의약품보관, 공급원칙)

의약품보관과 공급을 잘하는 것은 치료예방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요담보이다.
국가는 의약품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제5조 (의약품리용원칙)

의약품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의약품을 병의 예방과 치료목적에 맞게 정확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의약품관리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의약품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 (의약품에 대한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의약품관리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약제사를 비롯한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 (의약품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의약품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의약품생산

제9조 (의약품생산의 계획화)

의약품생산은 의료약, 예방약 같은 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기관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의약품생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약품생산자)

의약품생산은 생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의료예방기관은 자기 기관에서 사용할 의약품을 생산할수 있다.

의약품의 생산허가는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11조 (의약품생산능력조성)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의약품 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품종별에 따르는 의약품생산능력을 조성하여야 한다.

의약품생산능력조성은 보건부문의 수요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약품생산기술일군의 책임성과 역할)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생산에서 기술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의약품생산기술일군은 제약기사, 약제사 같은 기술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제13조 (약전과 의약품규격)

의약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과 의약품규격에 맞게 생산한다.

약전과 의약품규격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4조 (의약품생산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생산과 관련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의약품의 포장)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포장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의약품포장용기와 재료는 해당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써야 한다.

제16조 (의약품생산공정의 위생)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의약품생산에서 위생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의약품검정

제17조 (의약품검정의 기본요구)

의약품검정을 바로하는 것은 의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약물사고를 막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의약품검정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약품검정일군)

의약품검정일군은 약제사, 의사와 화학, 생물학 같은 부문을 전공한 기술자, 전문가가 될수 있다.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의약품검정에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약품검정대상)

의약품검정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규격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의약품
2. 생산, 공급, 판매하는 의약품
3. 수매공급하는 고려약재
4. 다른 나라로 내보내거나 다른나라에서 들어오는 의약품
5. 약물사고와 그밖의 사유로 조사심의하는 의약품
6. 수요자와 공급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의약품
7. 그밖에 질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제20조 (검정의 기준)

의약품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 또는 의약품규격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해당 나라의 약전 또는 의약품규격에 따라 한다. 그러나 해당 나라의 약전이나 의약품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 의약품 검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한다.

제21조 (검정의 구분)

의약품검정은 의뢰검정과 검열검정으로 나누어 한다.

의뢰검정은 의약품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의뢰, 검열검정은 의약품검정 기관 또는 검열기관의 계획에 따라 한다.

제22조 (검정의뢰문건과 검정시료의 제출)

의약품을 검정받으려는 기관은 의약품검정기관에 검정의뢰문건과 검정시료를 내야 한다.

검정시료는 의약품의 질을 정확히 판정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제23조 (검정의 과학화, 표준화)

의약품검정기관은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의약품검정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의약품검정 수단과 방법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24조 (검정의 판정)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이 끝난 다음 판정문건을 작성하여 의약품검정을 의뢰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의약품검정에 대한 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25조 (검정시료의 보관)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에 리용한 시료를 등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관기일이 1개월이 못되는 의약품에 대하여서는 검정시료를 보관하지 않을수 있다.

제26조 (검정시료의 처리)

보관기일이 지난 의약품검정시료의 질이 보존된 경우에는 수요자기관에 넘겨준다. 그러나 의약품검정시료가 변질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폐기처리한다.

제27조 (불합격된 의약품의 처리)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에서 불합격된 의약품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된 의약품처리안을 만들어 상급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제28조 (의약품보관, 공급의 기본요구)

의약품보관과 공급은 의약품의 질을 보존하고 손실을 막으며 그것을 수요자에게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을 책임적으로 보관하고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의약품보관시설)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의 특성과 보관량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의약품의 보관방법)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는 보관방법을 적용하여 의약품의 손상, 부패변질 같은 피해를 막고 그 량과 질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 (독약, 극약, 마약의 보관)

독약, 극약, 마약, 정유함유고려약, 방사성의약품, 방사성동위원소 같은 의약품은 정해진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한다.

제32조 (의약품의 보관용기)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보관용기를 잘 관리하며 그 회수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33조 (의약품의 입출고)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창고에서 의약품의 입출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창고에 보관하고있는 의약품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의약품보관시설의 보수)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보관시설을 현대화하고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한 의약품보관시설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의약품의 계량)

의약품공급기관은 계량수단을 갖추고 공급하는 의약품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으로 검정받아야 한다.

제36조 (의약품의 공급순위)

의약품공급기관은 먼저 생산한 의약품부터 공급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소비단위에 도착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날수 있는 의약품과 약표, 설명서 같은것이 없는 의약품은 공급할수 없다.

제37조 (의약품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의약품수송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눈, 비, 동파, 류실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 (의약품의 판매)

의약품은 정해진 약국 또는 의약품매대에서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 일반판매지표 또는 치료예방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다.

일반판매지표로 정하지 않은 의약품은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약국에서 판매할수 있다.

제5장 의약품리용

제39조 (의약품리용의 기본요구)

의약품리용을 잘하는 것은 약리작용과 용도에 맞게 의약품의 효과를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 방도이다.

의료예방기관은 의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의약품리용방법과 용량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제40조 (의약품의 리용범위)

의료예방기관에서 만든 의약품은 자기 단위에서만 리용한다.

의료예방기관에서 만든 의약품을 다른 의료예방기관이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1조 (대중의약품의 리용)

공민은 대중의약품을 설명서에 따라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약품이 아닌 다른 의약품을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42조 (독약, 극약, 마약의 리용)

의료예방기관은 독약, 극약, 마약을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독약, 마약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조작, 립회하거나 감시한다.

제43조 (의약품중독사고의 통보)

의료예방기관과 공민은 의약품에 의한 중독사고 같은 것이 나타났을 경우 의약품공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약품중독사고 같은것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제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의약품의 수입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독약, 마약의 소유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독약, 마약을 승인없이 가지고있지 말아야 한다.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의약품관리정책을 철저히 집행하

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의약품관리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의약품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지방보건지도기관의 임무)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약품관리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9조 (의약품관리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의약품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의약품의 생산과 검정, 공급, 보관,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생산중지)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위생규범을 어기고 의약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생산을 중지시킨다.

제52조 (손해보상)

의약품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의약품을 손상, 분실하였거나 의약품공급, 검정질서를 어겨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의약품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주체69(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4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1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인민보건법의 기본원칙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제2조 (인민보건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가 마련되어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된다.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킨다.

제3조 (예방의학제도의 공고발전원칙)

사회주의의학에서는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발전시킨다.

제4조 (치료예방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보건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과 수단을 원만히 보장하여 치료예방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 과학화한다.

제5조 (보건일군의 계획적양성원칙)

국가는 보건일군을 계획적으로 그들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만든다.

제6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보건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의 인민보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망명자의 건강보호원칙)

국가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무상으로 치료하여주며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준다.

제8조 (보건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보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제9조 (무상치료의 권리)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무상치료의 내용)

무료의료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는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제11조 (녀성과 어린이의 건강보호)

국가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녀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제12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의 건강관리)

국가는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제13조 (로동능력상실자, 무의무탁어린이, 만성환자, 년로한 환자의 건강보호)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와 만성환자,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

상치료의 혜택이 잘 차례지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제14조 (환자, 산전산후의 녀성과 그 부양가족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몫의 보장)

환자 및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녀성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몫을 준다. 이 경우 식량, 보조금,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 (의료봉사망의 배치, 의료봉사의 전문화)

국가는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어촌, 침산마을에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산원, 소아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료양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불편없이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제16조 (고려치료)

국가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치료방법인 고려치료방법을 발전시키며 고려의료망을 늘이고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진단에 기초한 고려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이도록 한다.

제17조 (료양치료)

국가는 온천, 약수지대와 기후가 좋은 지대에 현대적인 료양시설을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이 자연인자에 의한 료양치료의 혜택을 더 잘 받도록 한다.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제18조 (예방에 선차적힘을 넣을데 대한 요구)

국가는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며 예방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19조 (위생선전과 교양)

보건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 자신이 위생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과학적으로 건강을 보호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생활문화, 생산문화)

생활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보호하며 안전한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예방의학의 중요내용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위생문화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21조 (살림집, 문화후생시설,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공공시설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배치하고 건설하며 그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22조 (공해의 방지)

국가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로수와 녹지를 많이 조성하며 여러 가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 하천, 토지 같은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산업성질병의 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양제를 비롯한 노동보호물자와 위생보호용구를 보장하며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산업성질병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제24조 (제품의 생산위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을 비롯한 제품을 생산하고 취급하는데서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5조 (어린이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비타민과 성장촉진제 같은 영양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여 인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교육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전염병의 방지)

국가는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보건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의 발생조건을 없애고 소독사업을 강화하며 주민들에 대한 면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사담당구역제)

국가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공고발전시킨다.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제29조 (의학과학연구사업의 기본요구)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기초의학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면서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제30조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의 연구)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은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제31조 (의약품, 의료설비, 기구의 연구)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최신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의약품과 현대적인 의료설비, 의료기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2조 (의학과학자와 보건일군의 협조)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의학과학연구사업에 보건일군을 널리 참가시키며 의학과학자와 보건일군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의학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제33조 (의학과학연구조건보장)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의학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준다.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제34조 (제약, 의료기구공업의 발전)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대규모의 중앙제약, 의료기구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제약,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킨다.

제35조 (의약품, 의료기자재의 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건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약품과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의약품, 의료기자재의 질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과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의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포장의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약초의 재배와 채취)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려약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고려약생산을 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을 보호증식하며 그 재배와 채취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 (약수의 수요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이름있는 약수터에 약수생산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약수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제39조 (보건기관의 성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건기관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의 행복한 생활과 원만한 사회적활동을 보장하는 인민적보건기관이다.

제40조 (보건기관의 분류)

보건기관에는 병원, 진료소, 료양소, 위생방역소, 검역소 같은 치료예방기관과 의약품공급기관, 의약품검정기관이 속한다.

제41조 (보건일군의 임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건일군은 인민들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보건일군은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

제42조 (환자에 대한 보건일군의 정성)

보건일군은 환자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

제43조 (보건위생지식의 보급)

보건일군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인민들이 위생상식과 건강상식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보건일군의 과학기술수준제고)

보건일군은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의료활동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정해진 기술규정과 행동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5조 (보건일군에 대한 국가적배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일군은 인민들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보건일군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여러 가지 혜택을 돌린다.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전국의 인민보건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의 임무)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인민보건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인민보건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인민보건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49조 (보건위생사업의 대중화)

인민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50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인민보건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인민보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주체86(1997)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0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4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제1조 (전염병예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예방과 치료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전염병의 정의)

전염병은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사람이 앓거나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퍼지는 병이다. 국가는 전염병을 지정하고 그가운데서 전파속도가 빠르고 사망률과 로동능력상실률이 높은 병을 특수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같이 전염되어 앓는 병을 인수공통성전염병으로 규정한다.

제3조 (전염병의 적발, 격리원칙)

전염원을 적발, 격리하는 사업을 바로하는 것은 전염병예방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전염원의 적발, 격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에 막으며 외부로부터 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강도높이 취하도록 한다.

제4조 (전염경로의 차단원칙)

전염경로의 차단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발생된 전염병을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고 그 전파경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엄격히 취하도록 한다.

제5조 (예방접종의 원칙)

전염병예방접종을 잘하는 것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전염병예방접종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6조 (방역사업을 위한 비상설기관의 조직)

국가는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에이즈통제위원회 등을 조직한다.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조직한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내각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사업과 련관이 있는 위원회, 성과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 검열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책임일군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안의 보건사업과 련관이 있는 기관, 기업소,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제7조 (방역부문의 물질적보장원칙)

국가는 방역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 (전염병예방사업의 대중화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전염병예방과 관련한 위생선진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염병예방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 (전염병예방사업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염병예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제10조 (전염원의 조사장악)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역학조사, 검병, 보균자조사체계를 세우고 위생검열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전염병환자나 그와 함께 생활하는자, 보균자, 인수공통성전염병을 앓고있는 동물을 제때에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과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과 역학상황을 예리하게 감시하며 그 자료를 중앙보건지도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에서의 전염병전파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 갔다오는 대상은 에이즈를 비롯한 위험한 전염병과 관련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개월이상 다른 나라에 갔다오는 대상은 국경검역기관에서 1차검사를, 위생방역기

관에서 2차검사를 받으며 그밖의 대상은 위생방역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제11조 (전염병환자적발을 위한 검진)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검진대상을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적으로 검진하여야 한다.

검진대상에 대한 검진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한다.

검진대상과 검진주기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2조 (전염병환자 또는 의진자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병환자 또는 의진자를 적발한 경우 위생방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그에 대하여 등록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의 격리)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적발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제때에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살림집에 격리시킬 수도 있다.

병명 또는 병증세가 서로 다른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는 한호실에 들일수 없다.

제14조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의 수송)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키려 할 경우에는 위생차에 실어보낸다. 그러나 위생차가 없는 경우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격리시키는데 리용한 운수수단은 소독한다.

제15조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거처지의 표식)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해당한 표식을 붙인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다는 표식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6조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거처지에 대한 출입)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환자치료를 맡은 의료일군만이 드나들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살림집에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 (전염병환자의 치료)

전염병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은 전염병환자의 병상태에 맞게 치료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치료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염병을 일으킨 병원성미생물을 없애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염병환자의 퇴원)

전염병환자를 퇴원시키려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퇴원기준에 이르지 못한 전염병환자는 퇴원시킬수 없다.

제19조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의 처리)

전염병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체를 살림집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들어 오지 말고 화장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를 매장하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정해진데 따라한다.

제3장 전염경로차단

제20조 (오염물건의 소독)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물건은 정해진대로 소독한다.
소독하지 않은 오염된 물건은 사용할수 없다.

제21조 (전염병발생단위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중지)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을 정해진 기간까지 중지시킬수 있다.
중지기간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2조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과 매개물의 제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현대적인 소독 및 살충수단과 적용방법을 받아들여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과 그것을 퍼뜨리는 파리, 모기, 쥐를 비롯한 매개물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23조 (먹는물의 소독)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먹는물생산공급시설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관리하며 먹는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하지 않은 물은 먹는물로 공급할수 없다.

제24조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의 검사)

도시경영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을 개발하거나 그 생산공급시설을 설치, 보수한 경우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제25조 (버림물의 정화)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버림물정화정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을 정화하여 급수원보호구역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제26조 (변소, 오물장의 소독)

도시경영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소, 오물장을 비롯한 위생시설을 꾸리고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통제)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사회급양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위생방역기관의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하천, 호소, 바다에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물고기, 조개 등을 잡을수 없다.

제28조 (의료기구, 주방도구소독)

의료기관과 식료품을 다루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독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구, 주방도구 등을 정상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구, 주방도구 등은 리용할수 없다.

제29조 (식료품취급일군, 보육교양원의 검진)

식료품을 다루거나 어린이를 보육교양하는 직제에서 일하는 공민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을 일으킬수 있는 병원성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공민은 해당 직제에서 일할수 없다.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제30조 (계획적인 예방접종)

위생방역기관은 정기접종과 림시접종대상을 조사장악하고 전염병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예방접종장소)

전염병예방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다.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전염병예방접종을 할수도 있다.

제32조 (예비접종과 대중접종)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예방약으로 예비접종을 하여 부반응정형을 판정한 다음 대중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예비접종을 통하여 질이 담보되지 않은것으로 판정된 전염병예방약으로 대중접종을 조직할 수 없다.

제33조 (예방약의 보관, 운반)

의료기관은 보관시설과 운반수단을 갖추고 전염병예방약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운반하지 않은 전염병예방약으로는 접종을 할수 없다.

제34조 (보충접종)

보건지도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전염병예방접종효과를 검토하고 집단면역수준이 기준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보충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면역기준을 과학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35조 (인수공통성전염병예방접종)

수의방역기관은 집짐승에게 인수공통성전염병예방접종을 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짐승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집짐승예방접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비상방역

제36조 (비상방역의 정의)

비상방역은 전염병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될수 있거나 조성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높이 조직전개하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사업이다.

제37조 (비상방역의 등급구분)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급은 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인원, 동식물, 물자류동을 제한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2. 특급은 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을 봉쇄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국내의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3. 초특급은 주변 나라나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그리고 국내의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제38조 (비상방역체계로의 전환)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전파되어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거나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인민들의 생명건강보호에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즉시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것을 선포하고 비상방역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비상방역기간 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비상방역기간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인 비상방역 지휘를 한다.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면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 인민무력기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가보위기관,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 중앙체신지도기관 등의 책임일군들을,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 지역안의 무력, 군수단위 등의 책임일군들을 보충하여 비상방역지휘력량을 보강한다.

각급 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제40조 (비상방역기간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비상방역기간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2. 국가비상방역대책안을 작성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3.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전염병사태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4. 비상방역과 관련한 지시와 사업지도서, 기술지도서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작성시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통제한다.
5. 지방인민보건지도위원회들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한다.
6.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시킨다.
7.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의료품과 물자의 생산, 수입, 공급을 긴급히 조직한다.
8. 격리기간과 격리시설, 격리조건을 정한다.
9.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중요하고 긴급한 물자에 대하여 검토승인한다.
10. 필요에 따라 행사와 회의를 비롯한 집체모임과 체육경기, 공연, 영업, 학업, 관광 등을

제한 또는 금지시킨다.

11.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비상방역사업을 위하여 제공 하는 자금과 물자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공급한다.

제41조 (비상방역기간 지방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임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42조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무력, 군수, 특수단위를 포함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 보고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한다.
2. 각급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과의 투쟁을 매일 총화하고 필요한 조직사업을 하며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장악대책한다.
3.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적발하여 물리적, 방역학적으로 격폐시킨 격리병동에 후송하며 격리치료한다.
4.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전염병환자나 의진자와 접촉한 자,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입국한자와 그들과 접촉한자를 빠짐없이 찾아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위험성정도에 따라 부류별로 나누고 정해진 격리장소에 정해진 기간까지 격리시켜 의학적 감시를 한다.
5.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도시경영기관은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와 정해진 인원, 물자, 전염병발생지역 및 격리장소에서 나오는 오물, 하수, 변을 규정대로 소독한다.
6.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감시와 검병, 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여 의진자를 제때에 찾아 즉시 확진하며 주민들에 대한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한다.
7. 위생방역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정하는데 따라 강하천의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버림물을 철저히 정화하여 내 보내도록 감독통제한다.
8.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하며 격리장소에 대한 경비를 조직한다.
9.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단파견과 초청을 중지한다.
10. 검사검역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인원, 물자, 동식물에 대한 검사검역을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정한 질서대로 엄격히 하며 검사검역성원들을 외부인원과 격폐시켜 의학적 감시속에 사업하도록 한다.

11.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령해와 강, 호소에서 배들이 오수, 오물을 망탕 버리지 않도록 장악통제한다.
12.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전염병의 위험성과 전파경로, 증상, 진단, 예방치료와 관련한 위생선전을 집중적으로 강도높이 한다.
13.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봉쇄지역과 격리장소에 전기와 식량, 부식물, 빨감, 음료수, 생활필수품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한다.
14.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인원, 물자, 시설, 설비,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15.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전염병의 예방, 치료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16.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역학과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국내외자료를 제때에 수집하여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
17. 중앙정보화지도기관, 중앙체신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지휘의 정보화를 보장한다.
18.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된 의료일군들에게 필요한 보호대책을 취한다.
19. 지방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사람당, 건당 검토하여 격리를 해제한다.
20. 지방인민위원회와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은 민심과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1. 국가보위기관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의 연계밑에 비상방역대책을 세우고 적지물을 처리한다.
22.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사업에 대한 법적감시를 강화한다.

제43조 (비상방역등급에 따르는 조치)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비상방역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1급인 경우 전염병환자 및 의진자와 접촉한자에 대한 의학적감시조치,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반입의 제한조치, 전염병발생지역에 대한 인원, 동식물, 물자류동의 제한조치 등을 취한다.
2. 특급인 경우 전염병환자 및 의진자와 접촉한 자에 대한 격리 및 의학적감시조치, 국경 또는 국내의 해당 지역에 대한 봉쇄조치 등을 취한다.

3. 초특급인 경우 전염병환자 및 의진자와 접촉한자에 대한 격리 및 의학적감시조치,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또는 국내의 해당 지역에 대한 봉쇄조치, 행사와 회의를 비롯한 집체모임과 체육경기, 공연, 영업, 학업, 관광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 등을 취한다.

제44조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의 의무)

비상방역기간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은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
2.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은 전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해당 지역의 위생방역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을 비롯한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즉시 국가보위기관과 함께 수의방역기관, 위생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민과 외국인은 야외활동과 모임장소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먹는물을 끓여먹어야 한다.
5. 공민과 외국인은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비상방역기간 금지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은 비상방역기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봉쇄지역과 격리장소에서 리탈하는 행위
2. 국경연선지역과 전염병발생지역에 출장, 여행하는 행위
3.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팔지 않거나 가짜 약품을 파는 행위
4. 류언비어를 류포시켜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민심을 소란시키는 행위
5. 공원과 유원지에 비조직적으로 모여 춤을 추고 운동을 하는 행위
6. 봉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결혼식이나 생일놀이 등을 하는 행위
7. 이밖에 비상방역사업에 저해를 주는 행위

제6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비상방역기간에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제47조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 전염병예방부문의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전염병예방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교통운수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수송,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의사를 비롯한 전염병예방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0조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1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전염병예방부문의 설비, 의료기구, 의약품을 파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전염병환자, 의진자를 적발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적발된 전염병환자, 의진자를 격리시키지 않은 경우
2. 전염병환자, 의진자의 적발, 전염병의 발생과 류입, 전파에 대한 보고와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거나 뒤늦게 보고한 경우
3. 전염병환자, 의진자의 적발, 전염병의 발생과 류입, 전파에 대한 보고와 통보를 받고 그에 대하여 제때에 조사확인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경우
4. 전염병환자에 대한 치료를 책임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병원내 감염통제와 담당구역내의 전염병예방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5. 전염병에 오염된 장소, 물품, 의료폐기물에 대한 소독,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우
6. 의료기구를 규정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한 경우
7. 국경과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격리장소를 봉쇄하는 사업과 국경통행, 인원, 동식물, 물자의 류동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8. 전염병예방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9. 전염병예방접종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10. 해상에서 오물, 오수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우
11. 이 법 제 44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제45조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제5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비상방역기간에 저지른 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전시와 같이 보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하게 처벌한다.



사회복지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9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7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43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여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1조 (여성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남녀평등의 원칙)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다.

제3조 (여성에 대한 사회적관심)

여성은 가정의 복리와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전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여성권리보장계획)

국가는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년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성권리보장의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여성권리보장의무)

여성권리보장사업은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중요임무이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여성권리보장사업을 중요직능으로 정하고 관할지역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단체의 여성권리보장의무)

여성동맹은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여성들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와 각급 여성동맹조직은 이 법과 여성동맹규약에 따라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직업총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은 이 법에 따라 자기 조직에 속한 여성들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8조 (법기관의 여성권리보장의무)

법기관들은 각종 범죄 또는 범위반행위에 의하여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9조 (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여성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이 법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여성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여성권리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제11조 (사회정치적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여성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여성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지위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2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각급 인민회의에서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제13조 (국적취득, 변경, 보존의 권리)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국적을 취득, 변경,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여성의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14조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

여성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들은 여성일군을 적극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5조 (여성간부의 등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하여야 한다.

간부선발과 양성, 임명사업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사법분야의 보호)

법기관은 여성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며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소청원의 권리)

녀성은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일안에 책임적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녀성의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제18조 (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 녀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성에 대한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옳바른 녀성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된다.

제19조 (입학, 진학, 졸업배치에서 남녀평등의 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각급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 졸업후 배치받을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특수전공분야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녀학생의 신체와 건강의 보호증진)

교육기관에서는 녀학생의 육체적특성에 맞는 교육을 주며 녀성을 위한 해당 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녀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시켜야 한다.

제21조 (의무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의무)

부모 또는 후견인은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가 중등일반의무교육체계에 따르는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병으로 앓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를 빠짐없이 취학시켜야 한다.

제22조 (직업기술교육조건의 보장)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녀성들이 직업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23조 (문화생활의 권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체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치료받을 권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건기관은 녀성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을 갖추고 녀성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며 녀성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에게 치료받을수 있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5조 (농촌녀성들의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농촌녀성들이 도시녀성들과 똑같이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4장 노동의 권리

제26조 (노동분야에서 녀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노동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노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노동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노동조건외의 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장에 다니는 녀성들이 노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같은 것을 잘 꾸리고 바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 (로력배치에서의 차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을 받을 경우 녀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성별 또는 기타 결혼, 임신, 해산 같은 것을 리유로 녀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녀성을 받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9조 (녀성근로자의 노동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노동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정해진 노동안전시설, 노동위생시설을 갖추어주며 녀성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로동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해진 로동안전시설과 로동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는 여성들에게 작업을 시킬수 없다.
여성은 산전산후기간, 젓먹이는 기간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0조 (여성에게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

로동행정지도기관은 여성들에게 금지시켜야 할 로동분야와 직종을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들을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에서 작업시키는 행위, 젓먹이는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로동보수에서의 남녀평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로동에 대하여 여성에게 남성과 꼭 같은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로동자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를 전액지불한다.

제32조 (기술, 기능자격 및 급수판정에서의 남녀평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자격, 기능자격, 급수판정을 할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국가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여성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제34조 (부당한 제적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젓먹이는 기간 같은 것을 이유로 여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사회보험제의 적용)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병 또는 부상 같은 이유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여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치료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제36조 (인신 및 재산분야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인신 및 재산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여성의 인신 및 재산적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7조 (인신의 불가침권)

녀성은 인신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비법적으로 녀성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폭력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녀성의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녀성의 몸을 수색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8조 (건강, 생명의 불가침권)

녀성은 건강과 생명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녀성이라는 이유로 갓난 여자아이를 죽이거나 여자아이를 낳은 녀성, 임신한 녀성, 앓고있는 녀성, 장애녀성, 년로한 녀성을 학대, 괘시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

제39조 (유괴, 매매행위금지)

누구도 녀성을 유괴하거나 매매, 강간, 룬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녀성에 대한 유괴, 매매, 강간, 룬간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그러한 행위를 한자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제40조 (매음행위금지)

매음행위를 한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매음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조장, 강박한자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41조 (녀성의 인격, 명예존중)

녀성은 인격권과 명예권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녀성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2조 (가정에서 녀성의 재산권)

결혼한 녀성은 가정재산의 소유권을 남편과 공동으로 가진다.

녀성은 수입에 관계없이 남편과 평등하게 가정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다.

녀성은 남편과 리혼할 경우 자기의 개별재산권을 주장할수 있다.

제43조 (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재산상속권을 가진다.

상속순위가 같은 경우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제44조 (결혼, 가정에서 녀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5조 (녀성의 결혼자유권)

녀성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녀성의 결혼자유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6조 (가정폭행의 금지)

가정에서는 녀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 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리혼제기중지사유)

부부간에 리혼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성은 안해가 임신중에 있거나 해산후 1년안에 있다면 리혼을 제기할수 없다.

녀성이 남편을 상대로 리혼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앞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8조 (리혼시의 재산분할)

부부가 리혼하는 경우 가정재산분할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가 쌍방의 구체적실정에 근거하고 자녀와 여자측의 리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해결한다.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해결한다.

제49조 (미성년자녀보호에 대한 권리, 의무)

녀성은 남편과 평등하게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으로 될수 없을 경우에는 녀성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50조 (출산의 자유)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녀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제51조 (임산부에 대한 보호)

녀성이 해산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녀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기의 녀성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제7장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 (여성단체의 임무)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여성동맹조직은 여성권리보장과 관련한 사회적인식과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동맹조직의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제54조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여성권리보장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여성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주체96(2007)년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14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제1조 (년로자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은 년로자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년로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년로자의 나이, 보호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년로자는 남녀 60살이상의 공민이다.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있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이상의 공민은 이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년로자의 지위와 보장원칙)

년로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이다.
국가는 년로자들에게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년로자보호부문의 투자원칙)

년로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와 우월한 시책이다.
국가는 년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년로자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공로있는 년로자의 특별보호원칙)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공로자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주도록 한다.

제6조 (년로자에 대한 사회적관심원칙)

국가는 사회주의도덕교양과 미풍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년로자를 관심하고 도와주며 존

경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한다.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년로자보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년로자의 부양

제8조 (년로자부양의 기본요구)

국가는 년로자에 대한 국가적부양과 가정부양을 결합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년로자에 대한 부양을 사회생활과 인간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 행동준칙으로 여겨야 한다.

제9조 (가정부양의무자)

년로자의 부양의무자로는 배우자,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자녀, 손자녀가 된다.

형제, 자매도 부양의무자로 될수 있다.

제10조 (사회적부양의무자)

년로자의 요구와 해당 공민의 승낙에 따라 가정부양의무자가 아닌 공민도 년로자를 부양할수 있다.

제11조 (가정부양자의 의무)

부양의무자는 년로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도록 돌보아주어야 한다.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년로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12조 (국가적부양)

부양의무자가 없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 년로자는 국가가 부양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년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부양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부양비용은 부양의무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식료품 및 생활용품의 보장)

국가부양기관 일군은 고상한 도덕품성과 친혈육의 심정으로 년로자를 따듯이 보살피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기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로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식료품과 기호에 맞는 생활용품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금, 보조금보장)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연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년로자에게 정해진 연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연금, 보조금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5조 (무장애환경보장)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도시설계기관, 해당 건설기업소는 년로자의 생활상안정과 편리를 도모하도록 도시계획과 살림집 및 대상설계, 건설에서 무장애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의 개성적특성과 생활에 편리하게 살림방을 꾸려주어야 한다.

제16조 (재산보호)

년로자는 개인재산소유 및 처분권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가 리용하고있는 살림집과 그의 재산, 생활용품 같은 것을 해당 년로자와의 합의없이 마음대로 처분할수 없다.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제17조 (건강보장의 기본요구)

년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이 보람찬 삶을 누리나가도록 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은 년로자에 대한 치료간호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병치료 및 간호)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은 해당 지역의 년로자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사업을 하며 왕진을 비롯한 의료사업에서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의 질병간호상식을 배우고 운신할수 없는 년로자에 대한 간호를 특별히 잘하여야 한다.

제19조 (치료방법의 개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년로자의 치료에서 현대의학과과학기술과 고려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한 지역에 년로자전문병원 또는 전문과를 내올수 있다.

제20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로자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비타민, 칼시움 같은 미량원소가 풍부한 영양식품, 장수보약제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로자를 위한 현대적인 보청기, 안경,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와 회복치료기구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중체육의 조직)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년

로자를 위한 대중체육활동을 조직하며 로인물동체조, 로인태권도 같은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장수자보호)

중앙년로자보호기관과 출판보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100살이상의 장수자를 등록하고 장수 경험을 널리 소개하여야 한다.

90살이상의 년로자는 따로 정한 사회적혜택을 받는다.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제24조 (문화정서생활의 기본요구)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은 년로자가 여생을 보람있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문화정서생활거점의 배치)

지방정권기관과 설계기관, 건설감독기관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년로자를 위한 문화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체육오락기재와 회복치료기구를 설치하며 전쟁로병과 년로자를 위한 현대적인 종합문화봉사시설을 수요에 맞게 꾸려야 한다.

제26조 (문화정서생활의 조직)

년로자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적명절이나 년로자의 날을 맞으며 그들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예술활동, 체육오락 같은 것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 (출판물의 편집발행)

출판기관은 년로자를 위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출판물보급기관은 년로자의 가정에 신문, 잡지 같은 출판물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제28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년로자에게 여러 가지 문화오락시설과 기재, 회복치료기구를 보장하여 그들이 공원, 유원지, 낚시터, 놀이터, 명승지 같은 문화휴식장소에서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휴양, 관광, 탐승)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년로자의 요구에 따라 봄과 가을 또는 의의있는 날들에 휴양, 견학, 관광, 탐승 같은 것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제30조 (사회활동의 기본요구)

년로자가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앞선 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경험, 민족문화와 풍습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31조 (사회활동의 내용)

년로자는 강연, 담화, 강의, 전습,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관리, 공중질서유지 같은 사회활동을 할수 있다.

제32조 (년로자의 사회활동참가)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은 년로자의 연령, 건강상태, 지식정도 같은 것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33조 (년로자의 근무연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식있고 능력있는 년로자가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은 직종에서 일하도록 할수 있다. 이 경우 년로자의 사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후대교양)

년로자는 국가의 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활동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고귀한 혁명전통과 민족의 력사와 문화, 앞선 세대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 같은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적표창)

국가는 사회활동에 참가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년로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표창을 한다.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년로자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년로자보호사업의 지도)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년로자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년로자보호기관의 조직)

국가는 년로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내각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년로자보호위원회를 둔다.

년로자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은 중앙년로자보호련맹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39조 (년로자보호기금의 창설)

년로자보호기관은 년로자보호기금을 세울수 있다.

년로자보호기금은 년로자보호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국제기구와 자선단체, 해외동포의 자선자금 같은 것으로 적립하고 리용한다.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서 년로보장으로 들어간 년로자를 따듯이 대해주고 돌보아 주며 풍부한 경험과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여주어야 한다.

제41조 (인재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년로자보호사업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2조 (년로자보호사업조건외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년로자종합문화봉사시설, 국가부양기관 같은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출판보도수단에 의한 소개)

출판보도기관은 신문, 방송 같은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년로자들속에서 발양되는 미풍과 락천적인 생활모습, 년로자를 보호하는데서 모범적인 사실을 널리 소개하여야 한다.

제44조 (사회적우대)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편의봉사, 교통운수기관은 《년로자자리》, 《년로자봉사의 날》의 제정, 주문봉사 같은 방법으로 년로자를 우대하며 《국제년로자의 날》을 맞으며 년로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제45조 (감독통제)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로동행정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년로자보호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6조 (손해보상, 벌금, 몰수)

인격모욕, 천대, 치료거절, 부당한 재산처리, 년로자보호기구 및 보호시설의 파손 같은 년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원상복구 또는 벌금을 물리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을 몰수한다.

제4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년로자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주체110(2021)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4호로 채택

제1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기본

제1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 사회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어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이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질병, 부상, 임신, 해산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 주는 인민적시책이다.
2. 사회보험료란 사회보험을 위하여 국가예산에 바치거나 농장기금에 적립하는 자금이다.
3. 사회보험금이란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 및 사회적시책에 돌려지는 자금이다.
4. 사회보장이란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 장애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주는 인민적시책이다.
5. 사회보장금이란 사회보장에 의한 국가 및 사회적시책에 돌려지는 자금이다.

제3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의 실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를 정확히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 장애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한다.

제4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자금부담원칙)

국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예산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과 근로자들이 받는 노동보수의 일부를 옮겨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분야에서 다른나라, 국제기구 및 해외동포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7조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적혜택

제1절 사회보험금의 보장

제8조 (사회보험금의 원천)

사회보험금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가예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원천으로 한다.

제9조 (사회보험료의 납부, 적립)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동자, 사무원은 국가예산에 정해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농장과 농장원은 농장기금에 정해진 사회보험료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보험료의 납부, 적립기준)

사회보험료의 납부,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사무원은 월마다 받는 노동보수의 1%
2. 농장원은 결산분배의 1%
3. 농장은 자체로 정한 기준

제11조 (사회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의 형태로 주는 보조금
2. 영웅,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 사회보장자에게 주는 우대금(보약값 포함), 년금, 보조금
3.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에게 주는 보조금

4. 장학금과 년봉금
5. 학위학직배려금
6. 그밖에 사회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게 된 자금

제12조 (사회보험료의 납부, 적립방법)

로동자, 사무원이 바치는 사회보험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로동보수몫에서 기준에 따르는 사회보험료몫을 떼내어 달마다 재정기관에 바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농장에서는 결산분배를 하는 달에 농장이 정한 몫과 농장원이 바칠 몫을 농장기금에 사회보험료로 적립한다.

제13조 (사회보험료의 연체료납부)

사회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납한 사회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매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과납액의 반환)

사회보험료와 연체료를 잘못 계산하여 초과납부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더 바친 금액만큼 반환받을수 있다.

제2절 사회보험금의 지출

제15조 (사회보험금의 지출대상)

사회보험금은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의보조금 등의 지불과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의 운영 등에 지출한다.

일시적보조금은 일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와 환자의 병간호, 위생방역조치에 따르는 격리 등을 리유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산전산후보조금은 산전산후휴가기간에 있는 녀성근로자에게, 장의보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성원에게 지불한다.

제16조 (일시적보조금의 지불사유)

일시적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로동재해, 병 또는 부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2. 동거가족성원의 병간호로 간호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3. 국가적인 위생방역조치에 의하여 치료예방기관 또는 위생방역기관의 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4. 정양권(일을 하면서 정양하는 대상 제외)을 발급받고 정양하였을 경우
5. 료양권을 발급받고 료양하였을 경우
6. 교정기구착용을 위하여 교정기구생산기업소에서 숙식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7. 그밖에 따로 정한 경우

제17조 (일시적보조금의 지불기준)

일시적보조금의 지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근속로동년한에 따라 생활비의 30%~50%
2. 일하는 과정에 병 또는 부상당한 근로자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생활비의 50%
3. 3류이상의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가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의 100%

제18조 (일시적보조금의 적용기간)

일시적보조금은 첫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2개월의 범위에서 6개월이상 줄수 없다. 그러나 해당 보건기관이 일정한 기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더 연장하여 지불할수 있다.

병간호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일시적보조금은 간호진단서에 따라 6개월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제19조 (산전산후보조금)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에는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보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0조 (장의보조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성원에게 장의보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장의를 국장, 사회장, 기관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국가예산으로 장의보조금을 추가지불한다.

제21조 (근거물건의 제출)

사회보험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필요한 진단서, 료양권, 정양권, 확인서 등 근거물건을 내야 한다.
근거물건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3절 사회보험에 의한 건강보장

제22조 (사회보험에 의한 건강보장의 기본요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조건과 치료조건을 보장하여주는것은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 등 근로자들의 휴식과 치료에 필요한 사회보험기관을 잘 꾸리고 정양, 휴양, 견학을 널리 조직하도록 한다.

제23조 (사회보험기관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양소와 휴양소, 견학소 등 사회보험기관을 새로 나오거나 없앨수 있다.

사회보험기관은 조용하면서도 경치가 좋고 교통이 유리한 곳에 나오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4조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

국가휴양소, 국가견학소의 관리운영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그밖의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한다.

제25조 (정양, 휴양, 견학기간)

정양, 휴양, 견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을 하면서 정양을 하는 근로자의 정양기간은 15일간
2.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정양을 하는 근로자의 정양기간은 20일간
3. 휴양기간은 15일간
4. 견학기간은 7일간

제26조 (정양, 휴양기간의 조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양, 휴양기간을 줄이거나 늘일수 있다.

제27조 (정양, 휴양, 견학의 기본대상)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웅,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 제대군관, 과학자, 기술자, 교원, 로력혁신자를 기본으로 하여 정양, 휴양, 견학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장원의 휴양, 견학조직)

농장원의 휴양과 견학은 겨울에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모내기기간과 가을걷이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도 조직할수 있다.

제29조 (가족휴양조직)

가족휴양은 탄광, 광산, 립산, 탐사, 수산부문 등 가족과 떨어져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제30조 (휴양, 견학기간의 처리)

휴양, 견학한 기간은 근로자의 휴가기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조치에 따라 휴양, 견학을 하는 근로자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로력혁신자로 등록된 근로자의 휴양, 견학기간은 휴가기간으로 처리하지 않을수 있다.

제31조 (정양, 휴양, 견학금지대상)

전염성질병이 있는 대상은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에 보낼수 없다.

제32조 (정양권, 휴양권, 견학권의 발급)

정양권, 휴양권, 견학권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발급한다.

제33조 (정양, 휴양, 견학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양권과 휴양권, 견학권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 사회보험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운수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송 및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사회보험기관의 임무)

사회보험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생활 및 휴식조건, 치료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참관대상을 정확히 맞물리고 참관을 책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준으로 식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여러가지 형태의 봉사망을 잘 꾸리고 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5. 건물과 시설물, 설비들을 정상관리, 정상보수하며 재산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6.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7. 온실, 버섯재배장, 수산기지, 축산기지 등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제35조 (사회보험기관운영에 필요한 자금보장)

사회보험기관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예산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으로 보장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해진데 따라 사회보험기관이 기타 봉사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도 보장할수 있다.

제36조 (법규범의 준수)

정양, 휴양, 견학을 하는 근로자는 국가의 법, 규정과 내부생활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법규범을 지키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발생시킨대상은 강제퇴소시킬수 있다.

제3장 사회보장에 의한 국가적혜택

제1절 사회보장수속

제37조 (사회보장대상)

사회보장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 장애자, 국가가 특별히 돌봐주어야할 대상 등이 속한다.

제38조 (로동능력의학감정)

일하던 근로자가 병 또는 부상으로 보건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치료를 받고도 회복되지 못한 경우에는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경로동 또는 사회보장대상으로 넘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능력의학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수속을 하는 근로자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의 부류사정 및 해당 증서의 발급)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의 부류사정을 위한 의학감정은 해당 보건기관이 하며 부류사정은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영예군인증, 영예전상자증, 영예근로자증은 정해진데 따라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다.

제40조 (사회보장의 신청)

사회보장신청은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농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사회보장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사회보장신청문건에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의 이름과 나이, 직장직위, 신청리유와 경력, 수훈관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찍으며 로동수첩과 그밖의 필요한 문건을 첨부한다.

병 또는 부상을 리유로 사회보장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의학감정문건을 첨부한다.

제42조 (사회보장신청문건의 심의)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7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데 따라 로동년한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43조 (사회보장자의 등록과 증서발급)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에서 승인된 공민을 사회보장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공민에게는 사회보장증서를 발급한다.

제44조 (사회보장자등록정형 통보)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농장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의 사회보장등록자료를 해당 거주지역 인민위원

회 또는 농업지도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5조 (건강이 회복된 사회보장자의 직업보장)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병 또는 부상으로 사회보장을 받던 공민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1개월안으로 알맞는 직업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46조 (사회보장자의 의무)

사회보장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는 정해진 기간을 주기로 하여 부류사정을 위한 의학 감정을 받아야 한다.
2. 로동능력상실에 의한 사회보장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에 따라 3~6개월을 주기로 하여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3. 거주지, 가족수 그밖의 생활상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5일안으로 해당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농장에 알려야 한다.
4.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지불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5. 사회보장금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 없으며 분실, 오손된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6. 국가의 법규범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2절 사회보장금의 지출

제47조 (사회보장금의 지출대상)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년금, 보조금 등의 지불과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의 운영, 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같은 목적에 지출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 대상에도 사회보장금을 지출할수 있다.

재정, 은행기관,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장은 사회보장금지출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받는다. 이 경우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은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달부터 계산하여 지불된다.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지불을 중지, 변동시켜야 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불을 중지 또는 변동시킨다.

제49조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회수 또는 추가지불)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 더 지불하였거나 적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그해에 한하여 더 지불된 몫을 회수하거나 적게 지불된 몫을 추가로 지불한다.

제50조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의 지불금지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3. 사회보장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4. 국가로부터 생활상방조를 따로 받고있는 경우
5. 이밖에 해당 법규에 따라 사회보장연금,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된 경우

제51조 (한가지 사회보장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불)

사회보장자에게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회보장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라 사회보장금을 추가로 지불할수 있다.

제3절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제52조 (사회보장기관조직운영의 기본요구)

사회보장기관을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은 사회보장자와 장애자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 해주어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기관을 바로 조직하고 그 운영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53조 (사회보장기관의 조직)

사회보장기관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직접 조직하거나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조직한다.

사회보장기관에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사회보장초대소, 경로동직장, 영예군인공장 등이 속한다.

제54조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할수 있는 대상)

돌볼 사람이 없는 사회보장자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할수 있다. 그러나 돌볼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양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달 정해진 부양료를 지불한데 따라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할수 있다.

전쟁로병, 영예군인 등 따로 정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양소에서 단기보양을 시킬수 있다.

제55조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의 제출)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하려는 대상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에는 해당 공민의 이름과 나이, 신청리유, 부양관계 같은것을 밝힌다.

제56조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의 심의)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10일안으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보양소와 다른 도에 있는 양로원, 양생원에 보낼 대상에 대하여서는 상급인민위원회를 거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57조 (사회보장자파송증의 발급)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하게 된 사회보장자에게 사회보장자파송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파송증은 해당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보장자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보낸다.

제58조 (사회보장자의 파송)

사회보장자를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보내는 사업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가 맡아한다.

사회보장자파송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사회보장자를 안전하게 데려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자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까지 가는데 드는 려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 (사회보장자의 생활보장)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는 사회보장자가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침실, 식당, 치료실, 오락실, 리발실, 세목장 같은 후생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는 정해진 부업경리와 봉사활동을 진행할수 있으며, 거기서 얻은 수입을 사회보장자의 생활보장에 리용할수 있다.

제60조 (사회보장자를 내보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사회보장자를 내보낼수 있다.

1. 보호자, 부양자가 나타났을 경우
2. 로동행정기관의 로력파견장을 받았을 경우
3. 부양의무자가 3개월이상 정해진 부양료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
4. 부양을 받지 않고도 자체로 생활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이밖에 법규범을 어겨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의 관리운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61조 (퇴소자의 생활보장)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나오는 대상에게

퇴소증을 발급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나온 대상에게 살림집과 직업같은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62조 (경로동대상)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상실한 공민가운데서 로동능력의학감정결과에 따라 정상로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되어있는 공민은 경로동직장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일할수 있다.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지 않은 공민은 경로동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63조 (경로동직장의 조직, 운영)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경로동직장을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경로동직장은 자체로 생산 및 봉사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며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는다.

제64조 (경로동대상의 처리)

경로동직장에서 일하는 공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에 따라 3~6개월을 주기로 하여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로동능력의학감정결과에 따라 로동을 계속 할수 없는 공민은 사회보장수속을 하여주며 정상로동을 할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공민은 군(시, 구역)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고 적합한 직종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65조 (사회보장초대소의 운영)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초대소를 통하여 자기 지역의 경로동직장들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사회보장초대소는 경로동직장의 경영활동을 장악, 총화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약초 및 보약생산기지, 축산 및 수산기지 등을 잘 꾸리고 운영하여 생산물을 경로동직장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66조 (사회보장자 및 장애자의 건강보장)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와 장애자의 건강에 늘 관심을 돌리며 치료와 간호조직을 잘 짜고 들어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은 해당 운수수단을 갖추고 전문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 생기면 제때에 전문병원에서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제67조 (보조기구의 생산, 공급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

보조기구는 장애자의 필수적인 생활보조수단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제68조 (보조기구의 생산)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의 성별, 나이, 장애정도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보조기구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9조 (보조기구의 공급승인신청)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신청서를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보조기구공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 (보조기구의 공급 및 비용부담)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보조기구공급통지서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조기구공급통지서에 따라 보조기구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보조기구의 값과 장애자가 보조기구를 공급받기위하여 오가는데 든 려비부담관계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71조 (보조기구의 수리)

보조기구를 공급한 기관, 기업소는 사용과정에 보조기구가 못쓰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수리하여주거나 다시 만들어주어야 한다.

제72조 (교정기구초대소의 조직운영)

교정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를 위한 교정기구초대소를 꾸리고 그들이 교정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머무르는 기간에 생활상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4장 공로자에 대한 특별우대

제73조 (공로자에 대한 특별우대원칙)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 근로자와 혁명렬

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등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훈을 세운 공로자와 공로자유가족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는것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실시에서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사회정치활동과 혁명과업수행에서 공훈을 세운 공로자와 공로자유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적극 우대하도록 한다.

제74조 (정양, 휴양, 견학, 보양의 우선적보장)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로자에 대한 정양, 휴양, 견학, 보양조직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5조 (보조기구의 우선적공급)

보조기구를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로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로자에게 공급하는 보조기구의 값은 정해진데 따라 국가부담으로 보장한다.

제76조 (사회보험금 및 사회보장금지불우대)

공로자와 공로자유가족에 대하여서는 각종 보조금, 우대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사회보험금 및 사회보장금의 지불과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77조 (공로자의 건강 및 생활조건보장)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로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의약품과 보약을 우선 공급하며 살림집, 식량, 식료품의 보장, 운수수단리용에서의 특혜제공 등 공로자의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조건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78조 (영예군인공장의 운영)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능력을 일정하게 가지고있는 영예군인, 영예전상자를 위하여 영예군인공장을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로동시간, 생산지표와 계획, 로동정량 등을 영예군인, 영예전상자의 건강과 생활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합 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영예군인공장은 정해진데 따라 영예군인, 영예전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특전자금을 조성, 리용할수 있으며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는다.

제5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79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사회보험, 사회보장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정확히 돌려지도록 한다.

제80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81조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의 적용기준, 지불대상, 지불방법의 규정)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지불대상, 지불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82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보건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 물자, 자금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 사회보장기관에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기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키는 행위,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83조 (로동능력의학감정의 정확성보장)

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보건기관은 로동능력상실정도에 대한 의학감정을 정기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보건기관은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바로 하고 감정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안면관계에 따라 감정결과를 사실과 맞지 않게 평가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84조 (감독통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로동행정지도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85조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사회 보험금, 사회보장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제86조 (변상)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을 비법적으로 지출하였거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제87조 (벌금)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1. 사회보험료를 정해진대로 납부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원~150만원
2. 로동능력의학감정을 정해진 기간안에 받지 않은 공민에게는 1,000원~5,000원
3. 사회보장금증서를 위조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공민에게는 2만원~10만원

제88조 (몰수)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을 횡령하였거나 각종 사업을 해준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한다.

제89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2. 보조금, 년금, 우대금을 정해진대로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3.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의 꾸리기, 관리, 운영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거나 정양, 휴양, 견학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정양생, 휴양생, 견학생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4. 정양, 휴양, 견학조직과 대상선발을 바로 하지 않았거나 정양, 휴양, 견학기일을 어겼거나 전염성질병대상을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에 보냈을 경우
5. 비법적으로 정양권, 휴양권, 견학권을 발급하였을 경우
6. 정해진 기간 치료를 받고도 회복되지 못한 공민을 제때에 경로동 또는 사회보장대상으로 넘기지 않았을 경우
7. 로동능력의학감정,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의 부류사정과 증서발급, 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 사회보장자의 등록과 증서발급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8. 비법적으로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지 않은 공민을 경로동대상으로 지정하였거나 로동능력의학감정결과를 사실과 맞지 않게 평가하였을 경우
9. 경로동직장, 영예군인공장 같은 사회보장기관을 바로 조직, 운영하지 않아 사회보장자와 장애자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10. 사회보장기관에 파송하는 사회보장자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러비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기관에서 퇴소한 공민에게 살림집과 직업 등을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11. 보조기구를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공급하지 않아 장애자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12. 건강이 회복된 공민에게 알맞는 직업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13. 공로자에 대한 정양, 휴양, 견학, 보양조직과 보조기구의 공급조직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건강 및 생활조건보장을 바로 하지 않아 불편을 주었을 경우

14. 영예군인공장의 로동시간, 생산지표, 계획, 로동정량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지 않아 영예군인, 영예전상자의 건강과 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16.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을 류용, 횡령하였거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시설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
17.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 물자, 자금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아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사회보험기관, 사회보장기관에 사회적과제를 주었거나 사회보험기관, 사회보장기관의 근로자들을 타사업에 망탕 동원시켰거나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19.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정형에 대한 감독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앞항 1~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별을 준다.

제90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로 채택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제1조 (아동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아동에 대한 정의)

아동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다.
이 법에서 아동은 16살까지이다.

제3조 (아동의 평등권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출신성분이나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꼭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조 (아동중시원칙)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제5조 (교육, 보건분야에서 아동권리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자, 향유자이다.
국가는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아동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제6조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가정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아동은 사법분야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아동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아동에 대한 물질적보장원칙)

국가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9조 (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아동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리익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한 아동권리보장관련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11조 (생명권과 발전권)

아동은 생명권과 발전권을 가진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해당 기관은 아동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름을 가질 권리,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아동은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사회,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권리)

다음의 아동은 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1.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 아동
2.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3.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4.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제14조 (출생등록)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때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은 해당 거주지의 인민보안기관에 한다.

제15조 (아동의 신원보존)

아동은 자기의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기관은 아동의 신원을 정확히 등록하며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단체가입, 견해표시)

아동은 소년단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 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다.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익에 해를 주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17조 (사생활, 가족, 서신, 명예, 인격보호)

아동의 사생활과 가족, 서신, 명예, 인격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제18조 (아동에 대한 유괴, 매매금지)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아동을 유괴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

제19조 (아동로동의 금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동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아동에게 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0조 (신소, 청원의 권리)

아동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의 신소, 청원을 제때에 접수하며 책임적으로 처리하며 그것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 (망명아동의 보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공화국에 망명한 아동, 개별적으로 공화국령역에 들어온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22조 (아동에게 교육, 보건분야의 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할데 대한 요구)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각과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은 아동에게 돌려지는 국가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제24조 (아동교육기관)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이 마음껏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같은 것이 속하며 사회교육기관에는 도서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같은 것이 속한다.

제25조 (아동의 입학과 졸업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학령아동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입학시켜야 한다.

아동교육지도기관과 부모는 아동이 학교교육과정을 완전히 마치고 졸업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아동의 인격존중)

아동교육일군은 언제나 아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욕설, 추궁, 모욕, 구타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

아동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아동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

아동은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를 가진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극장, 영화관, 공원, 유희장, 동물원, 식물원 같은 시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아동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9조 (출판물, 문예작품의 창작보급)

출판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교양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문예작품을 비롯한 각종 도서들을 아동의 심리와 수요에 맞게 잘 만들어 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장애아동의 보호)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꼭 같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맹,聋아학교를 바로 운영하며 장애아동의 교육, 치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의 양육)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32조 (외진 지역의 아동교육조건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깊은 산골, 외진 섬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의 아동에 대한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러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 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34조 (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아동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한다.

병이 난 아동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아동병원, 병동의 배치)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곳에 전문 아동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동병원 또는 아동병동을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을 튼튼하게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료양시설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료양시설을 잘 꾸리고 아동들이 적극 리용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도록 온갖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아동물자공급기관과 해당 상업기관, 교육기관은 생산된 제품이 아동들에게 정확히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38조 (가정에서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을 보장하며 그들의 교육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39조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

아동은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에게 모범이 되며 그들에 대한 양육과 교양을 잘하여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

제40조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부모 또는 후견인은 신체상결함이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제41조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조건보장)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가정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가정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 (가정에서 처벌금지)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후견인의 선정)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아동의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제45조 (아동의 수양, 립양)

공민은 다른 사람의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있다. 이 경우 수양, 립양한 아동을 친자식 처럼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아동의 수양, 립양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아동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밖에 보육교양능력이 없는자는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없다.

제46조 (아동의 상속권)

아동은 상속권을 가진다.

해당 기관과 공민은 아동이라는 리유로 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47조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의 권리요구)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차례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아동에 대한 형사책임추궁 및 사형금지)

14살에 이르지 못한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에 이른 아동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9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

14살이상에 이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아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아동과 차별하지 않는다.

제50조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

범죄를 저지른 14살이상의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기관은 아동이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의 방조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사건취급처리에서 아동의 인격존중)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 아동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강제적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2조 (증인신문에서 아동의 보호자립회)

법기관은 아동을 증인으로 데려다 심문할 경우 그의 부모나 후견인, 교원 같은 보호자를 립 회시켜야 한다.

보호자의 립회없이 아동을 증인으로 심문할수 없다.

제53조 (체포, 구속의 통지)

법기관은 아동의 부모를 범죄자로 체포, 구속하였을 경우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체포, 구속의 리유와 구속장소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4조 (리혼을 막기 위한 교양)

리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재판소는 아동을 가진 부부리혼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아동의 리익을 위하여 부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55조 (리혼시 아동양육)

부모가 리혼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아래의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56조 (아동의 양육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동의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월마다 지불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아동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7조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8조 (아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

국가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59조 (자금, 자재, 설비, 물자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아동보호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물자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 (아동의 교육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과 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을 위한 교육교양사업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1조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아동권리보장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아동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인민공화국 육아법

주체111(2022)년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4호로 채택

제1장 육아법의 기본

제1조 (육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육아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육아사업의 기본원칙)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육아사업부문에 대한 지도방조강화원칙)

육아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것은 중요한 고산주의적시책이다.

국가는 육아사업부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세우며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이 아래부터 탁아소, 유치원이라고 함.)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잘 관리운영할수 있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제4조 (법의 규제대상과 해당 법규의 적용)

이 법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육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제5조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의 기본요구)

젓제품을 비롯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을 정상화하는것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식료공도기관, 중앙수산지

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제품을 비롯한 어린이 영양식품의 계획화와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영양식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수요대로 원만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 (중앙지표로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장할 식료품)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통제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젓제품, 소금, 물고기, 다시마, 과일, 암가루를 중앙지표로 계획화하여 수요대로 생산, 공급하며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지표로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장할 필수식료품)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 알, 남새, 당과류, 기초식품 같은 어린이들에게 보장할 필수식료품을 지방지표로 계획화하여 정해진 수량, 공급기준대로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젓생산 및 공급계획시달)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젓제품을 먹이는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소젓과 염소젓을 생산하는 모든 단위들에 어린이용젓생산 및 공급계획을 정확히 시달하여야 한다.

제9조 (젓수요보장)

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젓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젓소와 염소를 많이 길러 젓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우량품종의 젓소와 염소를 육종하고 품종의 특성을 유지개량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에서의 젓가공)

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젓을 현장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생산한 젓을 다른 곳에서 가공하려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려과하여 끓인 다음 균검사를 진행하고 위생안정성이 보장된 용기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규격에 맞는 젓제품생산)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이 담보된 원료를 젓가루생산에 리용하며 젓가루생산공정과 설비를 현대화하고 젓가공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규격에 맞는 젓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은 젓가루생산용원료와 젓가공제품의 품질규격을 바 정해주어야 한다.

제12조 (젓제품의 정상보장)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시업소, 단체는 젓가루를 비롯한 젓가공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젓제품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 무역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국내 젓가루생산량이 원만히 확보 때까지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할 젓가루를 제때에 수입,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젓수매)

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젓수매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들이 생산한 소젓과 염소젓을 수매받아 젓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한다. 이 경우 위생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젓을 수매받아야 한다.

국가가가격기관은 종류와 품질에 따르는 젓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매사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어린이영양식품생산의 전문화)

내각과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마다 어린이영양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 또는 작업반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어린이영양식품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15조 (어린이영양식품생산을 위한 과학연구사업강화)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어린이영양식품생산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어린이영양식품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어린이영양식품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16조 (어린이영양식품의 다종화, 다양화)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영양식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좋은 여러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영양식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제17조 (어린이영양식품공급기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의학과학연구기관은 어린이영양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영양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어린이들의 나이별에 따르는 영양식품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어린이영양식품의 품질 및 위생안전성보장)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과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어린이영양식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그리고 어린이영양식품의 품질

및 위생안전성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며 위생안전성에 대한 검사, 검정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품질 및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영양식품은 생산할수 없다.

제19조 (어린이영양식품포장과 상표)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중앙출판지도기관, 어린이영양식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의 동심과 해당 식품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위생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할수 있게 어린이영양식품의 포장과 상표를 으로 특색있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어린이영양식품보관, 수송, 공급)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탁아소, 유치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랭동 및 저장시설, 보관용기를 잘 갖추어놓고 어린이영양식품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제때에 수송하여 부패변질, 오염 등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보관기일이 지났거나 부패변질, 오염된 영양식품은 공급할수 없다.

제3장 어린이양육조건보장

제21조 (어린이양육조건보장의 기본요구)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양육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울수 있도록 양육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2조 (탁아소, 유치원건설위치선정)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며 먼지와 소음이 없고 도로, 저수지, 강하천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가 떨어진 곳같은 자연지리적조건과 위생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장소에 탁아소, 유치원건설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앙건설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건설감독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의 건설부지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선정되었는가를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장소와 건물에는 탁아소와 유치원건설위치를 선정할수 없다.

제23조 (탁아소, 유치원건설계획의 작성, 승인)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수요에 맞게 탁아소와 유치원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탁아소와 유치원건설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4조 (탁아소, 유치원의 건설설계)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지역 설계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의 방과 상하수도시설, 난방시설, 위생시설, 놀이시설, 보건시설 등을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현대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해당 탁아소, 유치원관리운영단위와 협의하고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탁아소, 유치원건설기관)

도시, 협동농장탁아소와 유치원건설은 지방건설기관이, 기관, 기업소, 탁아소와 유치원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26조 (탁아소, 유치원운영준비)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악기, 놀이감, 놀이기재, 출판물, 비품 등을 국가 정한 기준에 맞게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27조 (탁아소, 유치원의 보수기관과 주기)

도시탁아소와 유치원은 공공건물보수기관이,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탁아소와 유치원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정상적으로 보수해주어야 한다.

제28조 (상하수도 및 난방시설의 관리)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상하수와 난방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 먹는물과 방안온도를 국가가 정한 기본대로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생실의 설치 및 관리)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위생실을 실내에 위생문화적으로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위생실을 꾸려주어야 한다.

제30조 (탁아소, 유치원운동장과 마당)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운동장을 규모에 맞게 꾸리고 마당에 여러가지 놀이시설과 모래터, 잔디밭, 꽃밭 같은 것을 만들어주며 그 둘레에 그늘이 잘 지고 벌레가 끼지 않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제31조 (보육교양설비의 관리)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에서 보육교양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며 고장, 파손되었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제때에 수리,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탁아소, 유치원의 개건현대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낡고 뒤떨어진 탁아소와 유치원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의 개건은 승인된 개건설계에 따라 한다.

제33조 (탁아소, 유치원건물의 보호)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시설, 안전시설, 불끄는시설, 피뢰시설 등을 늘 정비하여 각종 사고를 미리막으며 큰물과 비바람, 태풍, 폭설 벼락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의 건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4조 (탁아소, 유치원주변에서의 건설)

탁아소와 유치원주변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 지원관리운영단위와 합의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은 건설할수 없다.

제35조 (어린이용품생산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경공업지도기관과 중앙출판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악기와 지능놀이감을 비롯한 각종 놀이감, 놀이기재, 학용품, 위생용품, 출판물, 교구비품, 어린이교편물, 집기류, 침구류 등 어린이용품과 경영용비품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우선적으로 계획화하여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어린이용품의 질보장)

중앙경공업지도기관과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수수건, 세수비누, 기저귀, 위생종이를 비롯한 위생용품과 학용품, 놀이기재, 놀이감, 풍금, 교구비품 등 어린이용품의 생산을 전문화하여 그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용품은 공급할수 없다.

제37조 (어린이식량공급)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식량을 백미로 전량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농장은 해마다 결산 분배목에서 어린이식량을 때여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8조 (떨감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의 난방 및 취사보장에 필요한 전력과 석탄, 떨나무, 가스 같은 것을 계획화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원자재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경공업

지도기관,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용품자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를 제일 좋은것으로 계획화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후원)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후원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후원사업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1조 (사회적지원월간)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8월과 9월 탁아소지원월간으로, 3월과 10월을 학교지원월간으로 정하고 탁아소 지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42조 (표준설계보장)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교육제도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의 교구비품, 놀이시설 등의 공업도안과 표준설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산전산후휴가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여성들의 산전산후휴가와 휴가기간보조금을 국가가 정한 기본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어린이가 있는 종업원들의 생활조건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가 있는 여성종업원들의 생활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어린이를 돌볼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다른 지방이나 지역으로 나가는 사회적동원을 면제시키고 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종업원은 특별히 우대한다.

제45조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의 교육시설과 비품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의 교사, 기숙사를 비롯한 보육원, 교양원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교재, 교구비품, 실험설비 등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보육원, 교양원의 사업 및 생활조건보장과 우대)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육원, 교양원이 어린이보육교양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보통교육부문의 교원과 같이 사회적으로 우대 해주어야 한다.

제47조 (어린이용품자의 수송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용품자수송에 필요한 운수기재와 연유, 용기를 중앙지표로 계획화하여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8조 (자체의 부업생산)

지방인민위원회와 탁아소 유치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온실과 축사, 버섯재배장 등 자체의 부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어린이 들의 영양관리에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9조 (아동문학예술작품창작)

문학예술기관과 해당 기관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만화영화와 노래, 춤, 동요, 동시, 동화, 그림극 같은 후대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아동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주어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어린이방송시간)

방송기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시간을 따로 정하고 아동문학예술작품과 어린이지능계발, 어린이보육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형식의 편집물을 정상적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 강, 저수지, 사고위험장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52조 (사회적과제수행제외)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용물자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와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육아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3조 (어린이용물자의 비법처분, 류용, 량비금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시, 군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 탁아소, 유치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영양식품과 어린이용품, 경영용비품을 비롯한 어린이용물자를 비법처분하거나 부패, 변질, 류용, 량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4조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5조 (어린이용물자의 생산 및 공급계획수행정형총화)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경공업지도기관,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통제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젓제품을 비롯한 어린이용물자의 생산 및 공급계획수행정형을 지표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어린이용품자의 생산 및 공급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56조 (보육원, 교양원대렬강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을 잘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요에 맞게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탁아소 소장, 유치원 원장은 교육학과 어린이건강 및 영양관리, 위생관리부문의 전문지식을 소유한 대학졸업생으로 배치하며 보육원과 교양원은 보육원직업기술학교와 교원대학 전공학과 졸업생으로 꾸려야 한다.

제57조 (자질향상)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은 탁아소 소장, 유치원 원장, 보육원, 교양원들의 자질향상계획을 바로세우고 집행하며 자격급수사정시험과 자질향상시험, 교수강습, 재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58조 (영예의 모범탁아소, 모범유치원쟁취운동)

탁아소, 유치원은 영예의 모범탁아소, 모범유치원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예의 모범탁아소, 모범유치원쟁취운동을 위한 조건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59조 (육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육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을 비롯한 국가의 육아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어린이용젓생산 및 공급계획을 정확히 시달하지 않았거나 시달된 계획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젓가공 및 공급질서를 어겼거나 국가규격에 맞지 않는 젓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3. 중앙지표 또는 지방지표로 된 어린이식료품을 계획대로 생산,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4. 품질 및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영양식품을 생산하였거나 보관기일이 지났거나 부패변질, 오염된 영양식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5. 탁아소와 유치원의 건설계획작성과 설계, 운영준비 등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바

로하지 않았을 경우

6. 탁아소와 유치원의 건물과 설비,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지 않아 어린이보육 교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낡고 뒤떨어진 탁아소와 유치원을 개건현대화하지 않아 국가의 육아정책관철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8. 어린이보육교양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9.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를 계획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0. 어린이식량을 백미로 전량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11.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후원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2. 어린이용품자수송에 필요한 운수기재와 연유, 용기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13.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용품자를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와 보육원, 교양원양성 기관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 육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어린이용품자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어린이용품자를 비법처분, 부패, 변질, 류용, 량비하였을 경우
16. 보육원, 교양원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어린이보육교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 1~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1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주체92(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7호로 수정 보충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제1조 (장애자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장애자의 정의, 장애자의 권리보장원칙)

장애자는 장기적인 신체상 결함과 주위환경의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자립적으로 참가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장애에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능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가 있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장애자를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장애자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4조 (장애발생의 예방원칙)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것은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며 각종 사고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제5조 (장애자실태조사와 장애정도의 평가원칙)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

장애정도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 (장애자에 대한 협조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고상한 인간애를 지니고 장애자를 차별없이 친절하게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제7조 (장애자의 우대원칙)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우도록 한다.

제8조 (장애자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 및 해외동포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제9조 (장애자회복치료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회복치료는 장애자의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치료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전반적무상 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자의 장악등록)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자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장애류형 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옮긴 장애자의 등록자료는 관할지역의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1조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의 조직)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을 조직한다.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전문적인 회복치료와 함께 장애의 원인, 발병과 관련한 조사,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을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12조 (의료일군의 장애자회복치료)

장애자에 대한 회복치료는 해당 치료기관에서 한다. 그러나 의료일군의 방조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가정에서도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할수 있다.

제13조 (장애자의 회복치료방법)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회복치료에서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면서 자연인자도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회복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과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을 제때에

림상실천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기구의 생산보장)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자전거 같은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생산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장애자의 보조기구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설계하고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장 장애자의 교육

제15조 (장애자교육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장애자에게 풍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게 하는 기본방도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교육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들의 일반교육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16조 (학령전장애자의 보육교양)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령전장애자를 학교생활에 적응할수 있도록 탁아소와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 (학령장애자의 장악등록, 취학보장)

교육기관은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이른 장애자를 빠짐없이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과 장애자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령장애자의 취학을 보장하며 중등 일반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장애자의 고등교육받을 권리)

장애자는 지망에 따라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할수 있다. 이 경우 실력을 위주로 한다.

제19조 (특수학교의 조직운영)

장애자의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내오거나 맹인학교,聋인학교, 지능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학생에게는 일반장학금을 준다.

특수학급을 조직하는 사업은 교육지도기관이, 특수학교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특수학교들에 후원단체를 정해주며 정해진 후원단체는 특수학교실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0조 (특수학교과정안의 작성)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등일반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실습교육을 배합하는 방향에서 특수학교과정안을 바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특수교육교재의 출판)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 및 손말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재를 집필, 출판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수학교의 교육기구와 시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직업학교의 조직운영)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학력, 연령,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 컴퓨터타자수, 미술원, 설계원양성소와 직업학교 같은것을 조직운영할수 있다.

제23조 (점자와 손말의 발전)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와 손말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장애자들을 위한 점자도서와 전자매체를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리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간단한 점자와 손말을 알아야 한다.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제24조 (장애자문화생활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문화생활은 장애자에게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체육, 문화, 오락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장애자의 체육활동조직)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건강에 유리한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체육협회를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제26조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조직)

문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그에 필요한 문화기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예술협회를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제27조 (장애자의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회)

해당 기관은 필요한 지역에 장애자를 위한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회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원만히 갖추어주며 장애자들이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회를 제한없이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장애자의 미풍소개)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들속에서 발양되는 창조적인 생활과 아름다운 소행을 제때에 소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장애자를 위한 출판물의 편집발행)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를 위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편집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제5장 장애자의 로동

제30조 (장애자로동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로동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그들을 사회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능력이 있는 장애자를 장악하고 그들에게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1조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조직)

장애자로동조건보장을 위하여 지역별로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할수 있다.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32조 (장애자의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의 장애정도와 성별, 연령, 체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33조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조건보장)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에는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해당 기관은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실현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4조 (장애자의 로동보호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로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필요한 로동보호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고는 장애자에게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35조 (장애자의 로동나이)

장애자가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16살미만의 장애자에게는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36조 (장애자의 로동시간)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9시간이다.
장애정도가 심한 근로자와 2명이상의 장애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 아래로 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방조를 받는다.

제37조 (장애자의 휴식보장)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동과 휴식을 옹게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동과 휴식을 옹게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장애자의 로동법규준수)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로동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맡은 기계, 설비를 알뜰히 관리하고 분담된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 (장애자의 표창)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제40조 (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자의 보조금지불)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제41조 (장애자의 양생원, 양로원생활보장)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제6장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장애인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장애인보호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장애인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장애인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지방지도기관의 임무)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인보호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장애인보호위원회의 조직)

국가는 장애인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장애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장애인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은 장애인련맹이 한다.

제46조 (장애인보호사업조건외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장애인 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 (장애자의 생활환경보장)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설계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비롯한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제48조 (장애자의 편의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편의봉사기관, 체신기관은 장애인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신수단의 리용에서 편의를 보장하며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맹인같이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시안의 빠스, 배를 비롯한 려객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수 있다.

제49조 (장애자의 날)

국가는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자의 날》을 정한다. 《장애자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0조 (장애자의 후견의무)

장애자의 후견인으로 배우자,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된다.

앞항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선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후견인은 장애자의 장애회복과 자립적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후견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후견의무리행에 대한 감독은 해당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제51조 (장애자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장애자보호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장애자보호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의사, 교원을 비롯한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2조 (장애자후원기금의 설립)

장애자보호기관은 장애자들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자후원기금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장애자후원기금은 장애자보호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국제기구와 자선단체, 해외동포들이 보내오는 협조자금, 자선금, 물자 같은것으로 적립한다.

제53조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54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장애자보호시설과 설비, 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장애자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주체96(2007)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13호로 채택
주체110(2021)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61호로 수정보충

제1조 (적십자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은 적십자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십자회의 지위)

적십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적십자단체이다.

적십자회는 공민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조직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위생 및 구호단체로서 인도주의활동에서 정부의 보조적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적십자회의 활동원칙)

적십자회는 자기 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국가의 해당 법규, 적십자회의 규약,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과 우리 나라가 가입한 적십자관련국제협약에 준하여 활동한다.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과 우리 나라가 가입한 적십자관련국제협약은 부록과 같다.

제4조 (회원의 자격)

공화국공민은 누구나 적십자회의 규약과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적십자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제5조 (적십자회사업의 조건보장)

국가는 적십자회사업을 중시하고 출판보도 및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적십자활동에 대한 소개선전을 하여 적십자회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대회)

적십자회의 최고지도기관은 대회이다.

대회는 각급 적십자단체들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한다.

대회에서는 결산기간 적십자회의 사업총화보고를 심의하고 사업방향들을 결정하며 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제7조 (중앙위원회)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회에서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집행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대회휴회기간 적십자회전반사업을 지도하며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집행한다.

제8조 (적십자회의 산하조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산하조직을 내올수 있다.

제9조 (적십자회의 임무)

적십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큰물, 폭우, 태풍, 해일, 가물, 무더위, 전염병 같은 각종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과 재해발생시 피해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피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 돌봐주어야 할 늙은이, 어린이, 장애인, 녀성 같은 취약한 대상들에 대한 우선적인 구호 및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2. 인민들의 건강복리를 증진시키고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위생선전사업을 진행하며 보건기관의 사업을 협조한다.
3. 전시에는 상병자들에게 의료상방조를 제공하며 인민들에 대한 보호, 구호사업을 한다.
4. 나라의 분렬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사업과 해외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적방조를 제공한다.
5. 적십자활동을 소개선전하며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 인도주의와 관련한 법규를 보급한다.
6. 청소년들속에서 구급처치지식과 도로교통법규를 보급하며 보건위생선전, 재해구조훈련과 나무심기를 비롯한 생태환경보호 같은 사업을 한다.
7. 적십자국제기구, 세계 여러 나라 적십자 및 적반월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8. 그밖에 국가가 위임하는 인도주의사업을 한다.

제10조 (긴급구호활동에서의 협동)

적십자회는 재해발생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보건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동하여 긴급구호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적인 지원의 요청)

적십자회는 큰 규모의 재해발생시에 국제적지원을 요청할수 있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적십자협조사업은 적십자회를 통하여 한다.

제12조 (국제구호활동의 참가)

적십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재해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구호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제13조 (적십자회의 표식)

적십자회의 표식은 원형으로 된 흰색바탕에 적십자를 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라는 명칭이 있으며 테두리선은 청색으로 한다.

제14조 (적십자표식의 사용질서)

적십자표식은 보호와 식별표식으로 사용한다.

적십자표식의 사용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5조 (긴급구호활동의 우선권보장)

자연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십자표식을 하고 긴급구호활동을 하는 인원과 물자, 운수수단에 대하여서는 수송과 봉사의 우선권을 보장한다.

제16조 (적십자회의 예산)

적십자회는 해마다 재정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재정예산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국가가 적십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자금, 기증받는 물자와 자금, 자채수입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17조 (예산의 지출)

적십자회의 재정예산지출은 항목에 따라 한다.

적십자활동밖의 목적에 재정예산을 지출할수 없다.

제18조 (예산지출에 대한 감독)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적십자회의 재정예산지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 (관세면제)

국가는 적십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적십자국제기구에서 기증하는 물자와 자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 같은 특혜를 보장한다.

제20조 (적십자표식의 랍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십자회의 허가없이 광고, 상표, 공업도안 같은데 적십자표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적십자회는 적십자표식을 랍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그것을 중지시킬수 있으며 적십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 대책할수 있다.

제21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적십자회의 허가없이 광고, 상표, 공업도안 같은데 적십자표식을 사용하였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2. 자연재해나 사고발생시 긴급구호활동을 하는 적십자표식을 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3. 적십자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랍취하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 앞항 1~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2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부 록

1.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은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자성, 자원성, 유일성과 보편성이다.
2. 우리 나라가 가입한 적십자관련국제협약
 - 1) 전투장에서의 병상자들의 대우를 개선할데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 2) 해상에 있는 병력성원중 병상자 및 조난자들의 대우를 개선할데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 3)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 4) 전시 사민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 5) 국제적무장충돌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보충의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주체109(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6호로 채택

제1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의 기본

제1조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은 제대군관들의 생활조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대된 장령, 군관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적극 우대하며 전사회적으로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제대군관우대원칙)

제대군관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민군대(사회안전군 포함)에서 장령, 군관으로 성실히 복무하다가 제대된 우리 시대의 공로자이다.

국가는 제대군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한다.

제3조 (배치 및 수속원칙)

국가는 제대군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본인과 그 가족이 사회에 나와 사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수속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한다.

제4조 (살림집건설 및 배정원칙)

국가는 제대군관에게 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살림집이 차례질 수 있게 제대군관 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 수요를 보장하며 정해진데 따라 정확히 배정하도록 한다.

제5조 (생활필수품, 식량, 땀감보장원칙)

국가는 제대군관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식량, 땀감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한다.

제6조 (치료조건보장원칙)

국가는 제대군관이 건강한 몸으로 사업하고 생활할 수 있게 온갖 치료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각급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배치 및 수속

제8조 (제대군관의 배치)

해당 기관은 제대군관을 전직과 능력,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중앙과 도급기관, 그 아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적재적소에 3개월 안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조건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배치되는 경우 그가 빠른 기간에 맡은 사업에 익숙되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해당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장기로력동원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맡은 사업에 정통하고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장기로력동원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수속)

각급 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 로동행정기관, 교육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과 그 가족의 거주, 입직, 입학수속 등 해당한 수속을 3개월 안으로 해주어야 한다.

제12조 (생활비지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에게 배치된 직제, 직종의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제대군관에게는 기본생활비외에 군사복무기간 받고 있던 군사복무년한가급금의 일부를 군사복무년한에 따라 더 첨부 하여준다.

제3장 살림집 건설 및 배정

제13조 (살림집건설의 계획화)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각 도(직할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제대군관살림집 건설수요를 받아 계획화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안의 제대군관살림집 수요를 장악하여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살림집 건설용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살림집 건설용으로 계획화된 세멘트, 강재, 목재 등 자재와 자금을 정해진 대로 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제대군관살림집 건설용으로 계획화된 자재와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 수 없다.

제15조 (살림집건설 경우)

살림집을 건설, 증축하거나 공공건물을 살림집으로 전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

민위원회로부터 제대군관살림집 보장과 관련한 경유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로부터 제대군관살림집 보장과 관련한 경유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림집을 건설, 증축할 수 없으며 공공건물을 살림집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제16조 (건설한 살림집의 이관)

살림집을 새로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의 10%를 제대군관용으로 해당 인민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생활조건이 좋은 층과 호실로 정하여 생활할 수 있게 꾸린 다음 넘겨준다.

살림집을 건설, 증축하였거나 공공건물을 살림집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정해진 데 따라 제대군관용 살림집을 해당 인민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대군관 살림집을 정해진 대로 넘겨주지 않았거나 생활할 수 있게 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와 살림집 배정을 할 수 없다.

제17조 (살림집의 보장)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배치되면 6개월 안에 살림집을 보장하며 주택조건이 해결되는데 따라 더 좋은 살림집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제18조 (숙식조건을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살림집을 배정받을 때까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숙식장소를 따로 정해주고 필요한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살림집의 배정)

각급 인민위원회는 정해진 데 따라 제대군관살림집 배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에 준하여 정확히 배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배정하는 경우 자기 단위 제대군관에게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대군관용으로 인민위원회에 넘겨주게 된 살림집은 배정할 수 없다.

제20조 (이사짐의 수송)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제대군관의 이사짐을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필수품, 식량, 땀값의 보장

제21조 (생활필수품, 땀값공급의 계획화)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각급 인민위원회는 제대군관용 생활필수품과 땀값 공급기준을 바로 정하고 계획화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생활보장물자의 공급)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에게 주민공급체계에 따라 생활필수

품과 기초식품 등 필요한 생활보장 물자를 다른 대상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대군관이 새로 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3개월 안에 생활보장 물자를 집중 공급하여 준다.

제23조 (명절봉사와 우대상품보장)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요명절 때마다 제대군관에게 명절 봉사와 우대상품 보장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식량 보장)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에게 식량을 다른 대상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떨감의 보장)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 공급체계에 따라 제대군관에 대한 연료보장대책을 세워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생활필수품, 식량, 떨감공급정형에 대한 총화대책)

내각과 각급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에 대한 생활필수품, 식량, 떨감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장 치료보장, 사회적 우대

제27조 (제대군관치료과의 조직)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제대군관의 치료보장을 위하여 시(구역), 군인민병원에 제대군관치료과를 따로 조직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은 제대군관을 정해진데 따라 중앙과 도, 시(구역), 군의 해당 병원에 등록하고 각종 전문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제대군관에 대한 건강검진)

보건기관은 제대군관에 대한 건강검진을 매해 1차 이상 조직하고 해당한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9조 (감정제대군관에 대한 치료)

보건기관은 감정제대군관을 따로 장악하여 해당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제30조 (휴양, 료양, 정양생활의 우선보장)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제대군관의 휴양, 료양, 정양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상봉모임, 축하모임 조직)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군절을 비롯한 중요명절, 기념일을 계기로 제대군관과의 상봉모임, 축하모임을 조직하여 제대군관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

제32조 (참관, 공연관람)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들에 대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 명승지참관, 공연관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3조 (교육조건의 보장)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연령과 희망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제대군관과의 사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제대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각급 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각급 인민위원회는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 (검열, 감독통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각급 인민위원회는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각급 인민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검열, 감독통제를 전임으로 하는 기구를 둔다.

제37조 (행정적 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1. 제대군관 배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업과 생활에 안착되지 않은 제대군관을 장기로력동원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3. 제대군관과 그 가족에 대한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았을 경우
4. 제대군관에게 살림집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5. 제대군관용 살림집을 정해진 대로 인민위원회에 넘겨주지 않았거나 생활할 수 있게 꾸리지 않아 제대군관 살림집 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건설명세서 발급과 준공검사, 살림집 배정을 정해진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8. 제대군관에 대한 생활필수품, 식량, 땀감보장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9. 제대군관에 대한 치료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이밖에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38조 (형사적 책임)

이 법 제3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해당한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주체111(2022)년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5호로 채택

제1장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기본

제1조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룡성변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해외동포의 정의)

해외동포는 공화국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민족이다.

제3조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

해외동포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우리 국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정책이다. 국가는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 (주체확립의 원칙)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해외동포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국가는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해외동포의 근본리익, 국제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동포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

제5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과거를 불문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층 해외동포들을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제6조 (내정불간섭의 원칙)

내정불간섭은 국제관계의 정상적발전과 다른 나라와의 친선, 협조관계를 위하여 우리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대외정책이다.

국가는 해외조선공민(단체)이 해당 거주국의 법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옹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7조 (적용대상)

이 법은 해외동포(단체)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한다.

제8조 (해당 법규의 적용)

해외동포의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

제9조 (해외동포사회정치적권익옹호의 기본요구)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사회정치활동의 자유, 선거권행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맞게 해외동포의 공화국국적업적과 사회정치활동, 해외조선공민의 대의원선거참가 등 사회정치적 권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적선택 및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의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과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한 실무적대책을 세우며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할 권리보장)

해외조선공민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각급 선거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의 희망에 따라 성별, 직업, 거주지,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시켜야 한다.

제12조 (사회정치활동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의 애국애족적인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적 위엄과 해외동포운동에 대한 국제적 현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13조 (련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단체)는 국내외 각 정당, 사회단체와의 자유로운 련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단체)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과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야 한다.

제14조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리보호)

해외조선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귀국 및 래왕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는 공화국에로의 자유로운 귀국 및 래왕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출입국사업기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의 우리 나라 귀국 및 래왕과 관련한 수속과 편의를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6조 (귀국한 해외동포의 권리보장)

공화국에 귀국한 해외동포는 국가로부터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국한 해외동포의 거주와 직업선택,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 학업과 살림집보장 등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7조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보장)

해외동포와 그 가족은 우리 나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와 그 가족이 교육, 문화, 보건, 과학, 경제 등 각 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조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릴수 있게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8조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보장)

해외동포와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는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 상속 등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처분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른다.

제19조 (신소청원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는 신소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의 신소청원을 과학적으로 료해하고 공정하게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표창)

조국의 통일발전과 룡성번영을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한 해외동포에게는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해당 기관은 조국의 통일발전과 룡성번영을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한 해외동포와 그 가족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 등 해당하는 국가표창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외조선공민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 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해당하는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옹호

제22조 (해외동포문화적권익옹호의 기본요구)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우리의 민족성을 고수하며 건전하고 문명한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 다방면적인 문화적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여 그들이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민족교육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를 배우는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내각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중시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해외동포(단체)의 민족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제24조 (학업 및 학술연구, 수학여행 등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는 공화국에서 학업 및 학술연구, 수학여행 등을 할수 있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해외 동포사업 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 동포가 우리 나라에서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받거나 학술연구와 수학여행 등을 희망하는 경우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5조 (무료교육의 권리보장)

해외조선공민은 우리 나라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교육, 전습 등을 무료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6조 (우대교육의 권리보장)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그 자녀는 우리 나라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우대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그 자녀가 우리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대해주어야 한다.

제27조 (해외동포의 졸업증서와 자격인정)

해외에 있는 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와 전문가자격은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자격과 같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총련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해외동포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와 전문가자격을 우리 나라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자격과 같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28조 (민족문화전통고수)

해외동포는 그 어디에서 살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해나가야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의 민족문화고수와 민족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제29조 (민족문화보급거점설립과 운영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단체)는 민족문화보급거점들을 설립하고 운영할수 있다.
내각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중앙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가 민족문화보급거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것을 적극 장려하며 필요한 인적,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0조 (민족문화예술교육 및 교류, 협력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단체)는 민족문화예술교육 및 교류, 협력의 권리를 가진다.
내각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중앙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와의 민족문화예술교육 및 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예술단체와 창작가, 예술인의 공연활동, 작품 및 도서출판, 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 각종 민족문화활동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1조 (우대치료를 받을 권리보장)

해외조선공민과 통일애국사업에 공헌한 해외동포는 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 검진, 치료, 입원, 해산, 료양 등 보건의혜택을 받을수 있다.

보건기관은 해외조선공민과 통일애국사업에 공헌한 해외동포에게 우대적인 의료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는 조국에서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을 할 수 있다.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가 조국에서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연구소, 병원설립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 및 치료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3조 (민족체육활동)

해외동포는 민족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펼쳐나가야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조선태권도위원회,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가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비롯한 민족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것을 장려하고 적극 협조하며 해외동포체육단체와 각종 형태의 민족체육활동거점들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4조 (과학기술교류, 협력의 권리보장)

해외동포(단체)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동연구, 공동기술 개발, 합영, 합작 등 교류와 협력을 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 합영, 합작을 널리 진행하며 연구소와 실험공장설립, 보수와 장려금지불에 이르기까지 해당하는 특혜조치도 취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5조 (지적소유권의 보호)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리 나라에 등록된 해외동포의 저작권, 특허권 같은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

제36조 (해외동포경제적권익옹호의 기본요구)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해외동포운동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장려부문에 중심을 두고 해외동포(단체)와의 경제협력사업을 다

각적으로 진행하여 민족경제를 확대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활동과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해외동포기업의 창설과 운영 확대)

해외동포는 국내에서의 단독기업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 공동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 공동기업창설운영과 해외경제협조사업을 강화하여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제38조 (경제협력절차)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는 경제협력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해외동포는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상주대표부 포함), 중앙해외 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 경제협력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계약파기, 양도하려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3.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투자기업체의 관리 및 주요성원임명, 해임 등 기업경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투자당사자 또는 기업체리사회,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4. 해외동포(단체)는 단독 또는 외국인, 비정부국제기구 및 단체를 망라하여 조국지원 및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조국과 경제협력계약을 체결한 해외동포투자가는 해당한 절차를 거쳐 지사, 대리사무소를 내오거나 국내의 공민을 투자대리인으로 내세울수 있다.
6. 조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는 계약체결 및 리행을 위한 실무수속, 대리업무를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경제협력우대조치)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은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참가하는 해외동포(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특혜와 우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적장려부문에 설립한 해외동포기업에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제공, 은행대부의 우선권부여 등 특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와 애국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조선공민의 국가토지리용에 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대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4. 해외동포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데 대하여서는 세금의 감면, 관세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어야 한다.
5. 해외동포투자자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소득세를 반환받거나 면제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해외동포의 기업권침해행위금지)

해외동포의 기업권을 침해하는것은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저해하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위법행위이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 양도 및 상속권을 담보하며 해외동포투자기업의 로력, 설비, 자금, 자재를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외동포가 투자한 재산을 리용할 경우에는 해외동포투자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경제협력금지대상)

해외동포와의 경제협력에서 다음과 같은 대상은 금지한다.

1.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대상
2.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저해를 주는 대상
3.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배치되는 대상
4. 국토환경보호기준에 저촉되는 대상
5. 자원을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제5장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해외동포사업을 일원화하고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와의 모든 교류협력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임무)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은 국가의 해외동포사업을 담당한 정책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각계층 해외동포(단체)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사업을 주관한다.
2. 해외동포(단체)에 대한 국가의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한다.
3. 해외동포의 조국방문사업(초청, 영접, 안내, 면담, 가족 및 친척면회와 방문, 참관 및 관광 등)을 맡아한다.
4. 해외동포(단체)에게 국내의 법자료와 관심사로 되는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5. 해외동포가 조국과 진행하는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과학기술교류, 경제 협력, 재산상속사업 등을 심의하고 실현시킨다.
6. 해외동포(단체)가 제기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 기관, 기업소와의 사업상관계와 협력을 보장한다.
7.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에 특색있게 기여한 해외동포에게 수여할 국가수훈 및 명예칭호, 학위학직, 렬사증을 해당 기관에 내신한다.
8. 지방인민위원회의 해외동포사업을 장악지도한다.
9. 해외동포와 조국의 가족 및 친척들속에서 제기되는 신소청원을 접수하여 심의처리한다.

제45조 (지방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담당부서의 임무)

지방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담당부서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지역안의 모든 해외동포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한다.

제46조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부의 임무)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부(상주대표부 포함)는 실정에 맞게 해외동포사업을 전임 또는 겸직하는 직제를 두고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등록과 통계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에 통보하며 조국과 해외동포(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보장하고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해외동포단체의 지위)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주체의 해외동포조직이다.

총련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같이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는 거주국과 해당 지역에서 조국과 동포의 혈연적뉴대를 이어주며 교류, 협력사업을 맡아한다.

제4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단체)사이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류협력사업은 중앙해외동

- 포사업지도기관과의 합의밑에 해당 부문별 중앙지도기관이 책임진다.
2.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중앙세관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의 초청 및 입출국수속, 참관 및 교류, 협력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수속의 신속성,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해당 기관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이 진행하는 정상적인 검열통제사업을 위한 검열허가증발급 등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각급 검열감독통제기관은 해외동포투자기업에 대한 검열감독(국가위생방역 및 세무기관 조사제외)사업이 제기되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의 합의밑에 진행하여야 한다.
 5.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가 채무상환을 위해 조국에 체류하는 기간 숙식 및 통신, 통행 등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9조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0조 (분쟁해결)

해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과정에 발생한 분쟁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합의를 거쳐 공화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분쟁당사자는 중재, 재판기관의 재결, 결정, 판결, 판정을 의무적으로 접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손해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단체)가 경제협력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이 타당한 근거없이 계약을 리행하지 않아 재산상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2조 (벌금처벌)

해외동포(단체)가 채무상환을 위해 조국에 체류하는 기간 숙식 및 통신, 통행 등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제정된 기간에 채무상환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 결혼, 리혼, 립양, 파양과 관련한 실무적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해외동포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2.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참가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해외조선공민의 사회정치적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3.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법적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4. 해외동포의 우리 나라 귀국 및 래왕보장과 관련한 실무적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조국방문동포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수속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5. 해외동포가 제기한 신소청원을 외면하였거나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그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였을 경우
 6. 우리 나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에 대한 해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 조국과의 교류협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재산의 분할, 상속 등 해외동포의 재산처분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8. 교육 및 학술연구, 수학여행 등을 목적으로 조국에 온 해외동포의 사업과 생활조건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9. 해외동포와의 경제협력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국가와 해외동포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10.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 양도 및 상속권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11. 해외동포기업에 대한 특혜조치, 우대조치를 바로 실시하지 않아 민족경제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해외동포투자기업에 대한 검열감독사업을 자의대로 하였을 경우
 13. 이밖에 해외동포사업질서를 어겼을 경우
- 앞항 1~1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4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북남경제
협력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주체91(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
주체92(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채택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개성공업지구법의 사명)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의 개발방법, 구역구분)

공업지구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3조 (투자당사자와 투자자의 경제활동조건보장원칙)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투자자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로력채용, 토지리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투자의 금지 및 장려부문)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수 없다.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공업지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공업지구사업에 대한 관여제한원칙)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보호원칙)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의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준다.

제8조 (구속, 체포, 수색금지,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합의서, 조약적용)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법규준수, 협의처리사항)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 (공업지구개발업자선정)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토지임대차계약 및 토지리용증발급)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 기관이 발급한 토지리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토지임대기간)

공업지구의 토지임대기간은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13조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 심의)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변경)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비용부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공사의 착수시점과 단계)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7조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수도 있다.

제18조 (기업의 배치,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재임대)

개발업자는 하부구조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리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의 영업활동범위)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제20조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관리기관)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4. 기업이 요구하는 로력, 용수, 물자의 보장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접수보관
6.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7.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8.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23조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협의, 협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파견하는 일군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25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룬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리사장이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편의보장)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제30조 (개성시에 대한 관광 및 봉사제공)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수 있다.

개성시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광고 및 야외광고물설치에 대한 승인)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물자의 반출입)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자는 반출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반출입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33조 (관세의 면제 및 부과사유)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및 검역방법)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제35조 (기업창설신청 및 승인, 부결)

투자자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의 로력채용)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업의 업종과 그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물자의 구입 및 판매, 가공위탁)

기업은 공업지구밖의 공화국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에 판매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40조 (상품가격 및 봉사료금)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료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류통화폐와 기준화폐)

공업지구에서 류통화폐는 전환성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수 있다.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의 은행돈자리)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제43조 (세금납부, 소득세률)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외화의 반출입, 송금)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수 있다.

제45조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제5장 분쟁해결

제46조 (분쟁해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1조 (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합의서의 효력)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법의 해석권)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주체94(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

제1조 (북남경제협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북남경제협력에는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북남경제협력원칙)

북남경제협력은 전민족의 이익을 앞세우고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여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한다.

제5조 (지도기관)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북남경제협력계획안의 작성
2. 북남경제협력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3.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합의서, 계약서의 검토
4. 북남경제협력에 필요한 로력의 보장
5. 북측지역에 있는 남측당사자와의 사업
6. 남측당사자의 북측지역 출입방조
7.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승인
8. 북남당사자사이의 연계보장
9. 북측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발급

10. 이밖에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

제7조 (협력사업의 기초, 방법)

북남경제협력은 당국사이의 합의와 해당 법규, 그에 따르는 북남당사자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직접거래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 (협력금지대상)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민족의 미풍량속에 저해를 줄수 있는 대상의 북남경제협력은 금지한다.

제9조 (협력장소)

북남경제협력은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한다.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북남경제협력을 할수 있다.

제10조 (북남경제협력의 승인)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승인없이 북남경제협력을 할수 없다.

제11조 (협력신청서의 제출)

북남경제협력을 하려는 북측 또는 남측당사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에 해당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남측당사자는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서의 양식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2조 (신청서의 검토처리)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제13조 (출입증명서의 지참)

북남경제협력의 당사자는 남측 또는 북측지역에 출입할 경우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르는 증명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수송수단에도 정해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검사, 검역)

북남경제협력당사자 또는 해당 수송수단은 출입지점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같은 검사와 검역을 받아야 한다.

북남당국사이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검사, 검역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15조 (남측당사자의 체류, 거주)

북남경제협력을 하는 남측당사자는 출입사업기관의 승인을 받고 북측지역에 체류할수 있다.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서의 체류, 거주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 (재산리용 및 보호)

북남당사자는 경제협력에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같은 것을 리용할수 있다.

투자재산은 북남투자보호합의서에 따라 보호한다.

제17조 (로력채용)

북측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남측당사자는 필요한 로력을 북측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남측 또는 제3국의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반출입승인)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19조 (관세)

북남경제협력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공업지구와 관광지구
에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북측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제20조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북남당국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 (결제은행, 결제방식)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결제업무는 정해진 은행이 한다.

결제방식은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제22조 (사고에 대한 구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 또는 그 수송수단에 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제때에 구조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북남경제협력사업내용의 비공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상대측 당사자와 합의없이 공개할수 없다.

제24조 (사업조건보장)

해당 기관은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하여
야 한다.

제25조 (감독통제)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북남경제협력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 (제재)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사업중지, 벌금부과 같은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수도 있다.

제27조 (분쟁해결)

북남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수도 있다.



외교.
대외경제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주체89(2000)년 1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8호로 채택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제1조 (가공무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은 가공무역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가공무역의 원칙)

국가는 가공무역을 장려한다.

가공무역은 거래대상자, 거래형식, 가공지표를 잘 선정하고 가공능력과 국제시장수요를 타산하여 외화수입을 늘이며 신용을 지키는 원칙에서 한다.

제3조 (가공무역의 형식)

가공무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받아 그 요구대로 가공, 조립하여주고 가공비를 받는 위탁가공무역과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제관의 감독밑에 무관세로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 조립하여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같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한다.

제4조 (가공무역을 할수 있는 지역)

가공무역은 여러 지역에서 한다. 그러나 보세가공무역은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만 할수 있다.

제5조 (가공무역의 당사자)

가공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가 한다.

필요에 따라 공장, 기업소도 가공무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급기관과 합의한다.

제6조 (관련법규)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무역법과 대외경제계약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가공무역을 외국인투자기업관련법규에 따라 한다.

제7조 (가공무역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가공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제8조 (가공무역대상선정의 요구)

가공무역대상의 선정은 가공무역의 선행공정이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경제기술적잠재력과 신용있는 대상, 가공능력을 리용하여 리익을 많이 낼수 있는 대상, 과학기술발전과 해당 단위의 설비갱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체결전의 합의사항)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대상자로 선정된 외국기업과 계약을 맺기 전에 품명, 수량, 생산보장기간, 상표, 원산지명, 가공비와 그 지불방법 같은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가공무역신청의 심의기관)

가공무역신청의 심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지대관리운영기관이 심의한다.

제11조 (가공무역신청서의 내용)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해당 가공무역심의기관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힌 가공무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1. 위탁가공무역신청서에는 무역회사 또는 공장, 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외국기업의 명칭과소재지, 외국기업에서 제공받을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명세, 가공, 조립할 제품명과 그 수량, 생산보장기간, 가공능력, 경제기술타산자료, 가공비와 그 계산기초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2. 보세가공무역신청서에는 보세지구명, 보세가공무역을 할 공장, 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가공능력, 수입할 원자재, 반제품, 부분품의 명세, 수입액, 가공제품명과 그 수량, 설비 및 기술상태, 수익성타산자료, 수출실현담보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가공무역승인을 할수 없는 대상)

가공제품생산을 맡아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상, 가공비를 낮게 정한 대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줄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가공 무역승인을 할수 없다.

제13조 (가공무역신청심의기간, 결과통지)

가공무역심의기관은 가공무역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가공무역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제14조 (가공무역신청이 승인된 다음 계약을 맺을데 대한 요구)

가공무역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는 것은 가공무역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신청이 승인된 다음 외국기업과 가공무역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5조 (가공무역계약서에 밝힐 사항)

위탁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원료, 반제품, 부분품명과 그 수량, 가공, 조립할 제품명과 그 수량, 상표, 원산지명, 생산보장기간, 가공비의 규모와 지불방법, 위약책임 및 손해보상, 분쟁해결 같은 것을 밝히며 보세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거래상품명과 그 수량, 규격 및 품질, 가격, 제품을 주고받는 방법, 위약책임관계 같은 것을 밝힌다.

제16조 (세관등록)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계약을 맺은 날부터 5일안으로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리행, 담보금적립요구)

계약당사자는 가공무역계약을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에 계약리행담보금을 세울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8조 (위약금지불 및 손해보상청구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가공무역계약당사자는 위약금의 지불,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1. 정당한 리유없이 계약리행을 지연시켰거나 거절한 경우
2. 포장, 품질, 수량 같은 것이 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가공비 또는 상품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4. 그밖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19조 (가공조립품의 접수거절사유, 위약금)

외국기업은 가공조립품의 포장을 계약조건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공, 조립하였을 경우 재포장을 요구하거나 가공조립품의 접수를 거절할수 있다. 이 경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지출되는 비용을 자체로 부담하며 위약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제20조 (가공조립품을 넘겨받지 않을 경우의 처리)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이 가공조립품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과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가공조립품을 넘겨받을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것을 판매 처분할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변경과 그에 대한 통지)

가공무역계약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기간을 변경시킬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해당 가공무역심의기관과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2조 (제공된 기술의 비밀보장)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공한 기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제23조 (경영질서준수의 요구)

경영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은 가공무역의 중요한 요구이다.

가공무역을 하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국가가 정한 질서대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물자반입에 대한 허가과 관세면제)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포장재, 기계설비, 경영용물자를 외국기업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수입할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받지 않으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 (국내로력, 원료, 자금 같은것의 신청과 공급)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작업에 필요한 국내의 로력, 원료, 동력, 용수, 포장재, 자금 같은것의 소요량을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상급기관은 제기된 소요량을 검토하고 국가계획 또는 지대계획에 맞물려 공급해주어야 한다.

제26조 (가공의뢰계약)

가공능력의 부족으로 일부 특수한 부분을 가공할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공장,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그 가공을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맺는다.

제27조 (국가의무납부금의 납부, 감가상각금납부면제대상)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으로 얻은 수입가운데서 정해진 몫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가공무역에 쓰이는 기계설비, 룬전기재 같은 고정 재산은 감가상각금납부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28조 (번 외화의 리용)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을 하여 번 외화를 거래은행에 넣고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몫을 기계설비, 경영용물자, 우대상품의 구입과 무역상당, 기술교류, 연구 및 실습비용으로 쓸수 있다.

제29조 (당사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가공무역을 하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번 외화를 류용하거나 외국에 예금하는 행위
2. 승인없이 업종, 지표를 변경하거나 늘이는 행위
3. 가공조립품을 국내에 파는 행위
4. 가공용물자를 류용하는 행위

제30조 (세관에 통지하여야 할 사유)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국가적조치로 가공용물자를 다른데 돌려쓰거나 가공품을 국내에 판매하려 할 경우 계약상대측과 사전합의를 한 다음 해당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31조 (가공무역업종변경신청 및 심의승인)

가공무역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신청문건을 가공무역심의기관에 내야 한다.

가공무역심의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 (채무의 보상)

가공무역을 하는 과정에 생긴 채무는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의 비용으로 보상한다.

제33조 (기술자초빙 및 견습)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제품의 가공, 조립을 위하여 다른 나라 기업의 기술적 방조를 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를 초빙하거나 자기 기술자, 노동자를 기술전습을 위하여 외국에 보낼수 있다.

제34조 (외국기업품질검사원의 체류, 가공설비의 반출입)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의 품질검사원을 체류시킬수 있으며 외국기업이 제공하였던 가공설비를 교체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반출입할수 있다.

제35조 (가공무역경영기간, 세관등록취소사유)

가공무역기업의 경영기간은 가공무역계약기간과 같다.

가공무역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그밖의 사유로 가공무역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등록취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요구)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가공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

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가공무역사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지도기관)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특수경제지대관리운영기관을 통하여 가공무역사업을 장악지도한다.

제38조 (상금 같은 우대실시사유)

가공무역을 하여 국가에 큰 이익을 준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에는 상금을 주는 것 같은 우대를 한다.

제39조 (세관의 통제강화)

중앙세관지도기관은 가공무역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세관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운영기관의 연계밑에 가공무역을 위하여 들여온 물자를 류용하거나 가공품을 국내에 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영업중지, 가공무역승인취소, 몰수, 벌금부과사유)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가 가공용물자를 다른데 돌려썼거나 가공품을 국내에 판매하였거나 번 외화를 류용 또는 해외에 예금시켰거나 가공무역업종을 변경 또는 확대시켜 가공무역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가공무역승인을 취소시키며 해당 물자를 몰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가공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 지도통제기관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 (분쟁해결)

가공무역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
주체106(2017)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1호로 수정
주체108(2019)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6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93호로 수정보충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제1조 (경제개발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경제개발구의 정의와 유형)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제3조 (관리소속에 따르는 경제개발구의 구분)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선정과 경제개발구에 대한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의 보장, 경제개발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의, 대책하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로 국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조 (경제개발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경제개발구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장악과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투자당사자)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도 정해진 경제개발구에 투자하여 경제활동을 진행할수 있다.

제7조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8조 (투자가의 권익보호,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보장)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의 권리와 투자재산, 합법적인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투자가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 한다.

제9조 (신변안전의 보장)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 (적용법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

경제개발구법규의 내용이 다른 법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경제개발구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제11조 (경제개발구의 창설근거)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경제발전과 관련한 전망계획에 따라 한다.

제12조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2.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지역
3.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4.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

제13조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기된 내용을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제기받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도(직할시)안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5조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6조 (련관기관들과의 합의)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하기 전에 련관중앙기관들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할 경우 련관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제개발구의 창설공포)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제19조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2.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3.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4.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5.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6.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7.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제20조 (개발당사자)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수 있다.

제21조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개발기업을 등록하고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경제개발구의 개발계획은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개발총계획은 지역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세부계획은 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한다.
개발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23조 (개발방식)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할수 있다.

제24조 (토지임대차계약)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를 임대받으려는 투자가는 해당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토지의 임대기간과 면적, 구획, 용도, 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세무기관에 납부한 투자가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 (토지임대기간 및 임대기간연장)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26조 (토지리용권의 출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데 따라 토지리용권을 출자할수 있다.

제2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비용부담)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한다.

제28조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건설은 개발기업이 한다.

개발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하부구조,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할수 있다.

제29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거래)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을 저당하거나 빌려줄수 있으며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할수 있다.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거래가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30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기업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고 해당 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제31조 (경제개발구관리의 담당자)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관리운영을 직접 맡아하는 국가관리기관으로서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수 있다.

관리기관의 기구조직은 내각이 한다.

제32조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기업의 독자성보장
3.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국제관례의 참고

제33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망계획작성
2. 경제개발구의 개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른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기구, 민간단체들과의 협조
3.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연계
4. 관리기관사업에 대한 지도방조
5.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준의 검토승인
6. 경제개발구법규시행을 위한 세칙, 지도서의 작성과 시달
7.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4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소속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관리기관의 조직과 관련한 실무사업
2.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같은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한 국가관리문건의 작성 및 시달
3.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4.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 전기 및 용수의 보장
5.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5조 (관리기관의 구성과 책임자)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과 실리에 맞게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하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책임자는 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리기관사업을 주관한다.

제36조 (관리기관의 사업내용)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6.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7.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8.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9.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0. 관리기관의 규약작성
11. 경제개발구법규준수정형에 대한 감독통제
12. 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37조 (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기관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데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제38조 (기업의 창설, 운영)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종의 기업, 국내기업의 창설, 운영과 관련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창설, 운영과 관련한 각종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제39조 (기업의 창설신청)

경제개발구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0조 (기업등록과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지사, 사무소는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41조 (로력의 채용)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에 로력채용신청문건을 내고 로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2조 (종업원 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경제개발구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한다.

제43조 (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개발구에서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구안의 기업과 개발구

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 (기업의 회계)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경제개발구에 적용하는 재정회계관련법규에 준하여 한다.

재정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45조 (기업소득세률)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46조 (류통화폐와 결제화폐)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

제47조 (외화, 리윤, 재산의 반출입)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들어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48조 (지적소유권의 보호)

경제개발구에서 지적소유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지적소유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9조 (관광업)

경제개발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풍치와 환경,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투자가는 정해진데 따라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50조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투자가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유가증권거래)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6장 장려 및 특혜

제52조 (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제53조 (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준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반환특혜)

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55조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유리한 봉사업종에 대한 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6조 (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대상)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7조 (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개발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낸다.

제58조 (통신보장)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59조 (신소와 그 처리)

경제개발구에서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0조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61조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62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해당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부 칙

제1조 (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제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주체109년(202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호로 채택

제1조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은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바다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은 외국인이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진행하는 어로, 양어, 양식, 기술전습, 바다자원의 조사, 관측, 탐사, 채취 등과 같은 활동이다.
2. 외국인은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인이다.
3. 경제수역은 기산선으로부터 200n.mile까지, 200n.mile을 그을수 없는 곳에서는 바다반분선까지이다.
4. 군사경계선안의 수역은 동해에서는 기산선으로부터 50n.mile까지, 서해에서는 기산선으로부터 바다반분선까지이다.
5. 작업수역은 국가가 승인한 외국인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수역이다.

제3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련관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과의 관계)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질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원칙)

정부간협정이나 권한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외국인은 우리 나라 경제

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임시배등록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경제활동허가)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바다자원의 조사, 관측, 탐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 데 따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7조 (경제활동허가신청문건의 제출)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경제활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경제활동허가신청문건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경제활동목적과 대상에 따라 중앙수산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어로, 양어, 양식, 기술전습과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청문건은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모래채취와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신청문건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낸다.

제8조 (경제활동허가신청문건의 검토 및 합의)

중앙수산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경제활동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가보위기관, 중앙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해당 자원개발분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기초하여 경제활동허가신청문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경제활동허가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경제활동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0조 (요금납부)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서의 경제활동을 허가받은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해당한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1조 (경제수역출입통보)

경제활동을 위하여 우리 나라 경제수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경제수역경계선을 넘어서기 24시간전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배 또는 항공기의 항행좌표, 검사지점도착날자와 시간 등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가보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2조 (검사지점통과)

외국인은 정해진 검사지점으로만 경제수역에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연합검사를 받는다.

제13조 (지휘설비 및 기재구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수역에서 외국인경제활동을 지휘할수 있는 배와 설비, 기재를 갖추고 임의의 시간에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감독통제기관과 연계할수 있도록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제활동질서준수)

외국인은 경제활동과정에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1. 배에 해당 기관이 정한 식별표식을 하며 배의 이름과 번호, 식별표식이 잘 알릴수 있게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에 우리 나라 해당 법규와 국제해사법규의 요구에 맞게 해도작업문건, 항해일지, 어로작업일지, 탐사 및 어군탐지기록문건 등 필요한 증빙문건을 갖추며 경제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경제활동을 국가가 허가한 범위안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하여야 한다.
4. 경제활동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월별, 년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사항)

외국인은 경제활동과정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공화국의 주권과 리익,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적대행위
2. 작업수역을 벗어나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
3. 허가받지 않은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
4. 동해군사경계선 또는 어로금지계선을 침범하는 행위
5. 다른 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폭발물, 독성물질, 무기 등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들여오거나 사용하는 행위
7. 바다자원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바다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
9. 경제활동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승인없이 우리 나라밖으로 내가는 행위
10. 승인되지 않은 설비와 기재, 수단,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파기통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국인과 맺은 경제활동계약이 변경 또는 파기되었을 경우 10일 안으로 중앙수산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제활동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

제17조 (감독통제기관)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 (감독통제기관의 권한)

감독통제기관은 외국배를 단속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서 또는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강제수단을 적용할수 있다.

제19조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대한 복종)

경제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복종하며 감독통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과에 대하여서는 외국인이 책임진다.

제20조 (외교적대책)

감독통제기관은 외국인의 경제활동과정에 제기되는 위법행위자료를 국가대외사업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며 국가대외사업지도기관은 해당한 외교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1조 (벌금적용)

이 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규정된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1만~3,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000만~5,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정상에 따르는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2조 (손해보상)

바다생태환경을 파괴시켰거나 바다자원보호에 지장을 주었거나 다른 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3조 (몰수)

위법행위에 리용된 수단과 도구, 비법적으로 얻은 생산물과 그것을 처분하여 이루어진 소득은 몰수한다.

제24조 (중지 또는 취소)

비법적인 경제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중지 또는 취소할수 있다.

제25조 (형사적책임)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 공화국의 주권과 이익,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적대행위를 하였거나 그밖의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상품전람회법

주체110(2021)년 10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4호로 채택

제1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상품전람회법은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운영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상품전람회는 해당 나라의 상품들을 전람회장에 전시하고 소개선전하는 국제적인 경제회합이다.
2. 국제상품전람회장은 상품을 전시하고 소개선전하는 보세장소이다.
3. 출품자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상품을 전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기업이다.

제3조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원칙)

국가는 국제상품전람회를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대외시장을 다방면적으로 개척하는 원칙에서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법은 출품자와 그밖에 국제상품전람회사업과 련관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적용범위)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정부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을 위한 무역계획의 맞물림)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 기관에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과 관련한 무역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7조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운영기관)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운영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제8조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신청문건의 제출, 심의)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람회의 조직목적과 명칭, 기간, 장소, 규모 같은것을 밝힌 신청문건을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 하여야 한다.

제9조 (국제상품전람회참가신청문건의 제출)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려는 출품자는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에 기관명, 상품종류, 전람회장사용면적 등을 밝힌 전람회참가와 관련한 신청문건과 함께 해당 증빙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지품을 제외하고 다종다양한 상품을 출품시킬수 있다.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은 전람회참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청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 대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품의 반입수속 및 수송과 관련한 의뢰)

다른 나라 기업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려는 경우 출품하려는 상품의 반입수속과 수송을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물의 전시 및 방영)

출품자는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이 정해진 전람회장구역에서 상품소개와 관련한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방영할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은 직접 또는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것이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 기재, 비품의 임대)

출품자는 상품전시를 위하여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으로부터 시설물, 기재, 비품 같은것을 임대받을수 있다.

제13조 (국제상품전람회준비정형에 대한 료해 및 대책)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은 전람회 개막 3일전에 전람회준비정형을 료해하고 해당 출품자가 상품 전시준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람회참가를 취소시킬수 있다.

제14조 (봉사조직)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기간 해당 기관과의 연계밑에 예술공연, 체육, 관광, 참관 등 출품자들과 참관자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조직할수 있다.

제15조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운영, 상품의 출품 및 참관)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운영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상품을 출품하거나 국제상품전람회를 참관할수 있다.

제16조 (상품출품 및 참관과 관련한 신청문건의 제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상품을 출품하거나 국제상품 전람회를 참관하려는 경우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에 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전시품의 반출수속)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출품시킬 상품의 반출을 위한 수속은 자체로 또는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제18조 (국제상품전람회비용의 지출)

국제상품전람회사업과 관련한 비용지출은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이 맡아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이 국제상품전람회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비용지출을 제때에 승인해주어야 한다.

제19조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협력)

중앙세관지도기관과 중앙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 해당 기관은 검사검역, 수속 등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과 관련한 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요금의 지불)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는 출품자는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21조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지도)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국제상품전람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화)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총화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총화는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이 제출한 총화보고서에 준하여 한다.

제23조 (감독통제)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4조 (벌금적용)

국제상품전람회장에서 상품출품과 관련한 질서를 어기거나 참관질서를 어긴 출품자와 공민, 외국인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제25조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

출품자가 임대받았던 시설물, 기재, 비품 같은것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6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켰거나 국가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운영하였을 경우
3. 전시품의 반출입, 광고물의 제작과 관련한 경유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4. 승인받지 않은 광고물을 전시하였거나 방영하였을 경우
5.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과 관련한 요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6. 국제상품전람회총화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1호로 채택

제1장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제1조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은 국제철도화물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제철도화물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보호원칙)

국가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당사자들의 민사상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 (신용준수원칙)

국가는 국제철도화물수송에서 당사자들이 신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국제철도화물수송의 보장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송조직과 방법을 개선하며 수송수단을 현대화하여 국제철도화물을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한다.

제5조 (국제철도화물수송의 지도기관)

국제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 (대외협조와 교류원칙)

국가는 국제철도화물수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

이 법은 철도를 통하여 화물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적용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어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가 승인할 철도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제8조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작성)

국제철도화물수송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과 그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제9조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분기별로 된 년간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을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시달받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을 월별로 구체화, 세부화하여 해당 철도운수기관과 철도를 통하여 화물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하래부터 짐임자라고 한다.)에 보내야 한다.

제10조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변경)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에 변경신청문을 내고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로는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가 될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근거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2조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제의)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 화물의 품명과 수량, 발송역과 통과하는 국경역, 도착역, 화물을 보내는자와 받는자의 이름, 수송조건, 수송기간 같은 것을 밝힌 짐부침문건을 해당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체결)

짐부침문건을 받은 철도운수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제철도화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짐부침문건과 화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짐부침문건에 발송역의 확인도장을 찍는다.

제14조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효력)

철도운수기관의 확인도장이 찍힌 짐부침문건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문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변경)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금지대상)

반출입이 금지된 물자, 철도수송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3장 국제철도화물의 수송자

제17조 (국제철도화물수송의 담당자)

국제철도화물수송의 담당자는 철도운수기관이다.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히 수송하여야 한다.

제18조 (철도운수기관의 책임기간)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넘겨줄 때까지 계약에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 화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9조 (국제철도화물의 취급역과 배차조직)

국제철도화물은 정해진 화물역에서 취급한다.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역에 화차를 제때에 대야 한다.

제20조 (국제철도화물의 신기)

국제철도화물은 차관짐, 적은짐, 짐함짐으로 나누어 신는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입자는 화물의 화차의 적재량과 해당한 규정의 요구대로 실어야 한다.

제21조 (국제철도화물의 보관관리)

철도운수기관은 수송과정에 국제철도화물이 류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송하는 화물은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22조 (국제철도화물의 직송)

철도운수기관은 계약에서 정한대로 목적지까지 국제철도화물을 직송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제철도화물의 도착통지)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2시간전에 짐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국제철도화물의 넘겨주기)

철도운수기관은 수송한 국제철도화물을 짐입자에게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화물도착통지를 받고도 짐입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짐입자에게 알리고 화물을 임의의 창고나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25조 (국제철도화물의 신기와 부리기작업)

국제철도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계약에서 정한 당사자가 한다.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화물을 정해진 시간안에 신고부려야 한다.

제26조 (철도운수기관의 손해보상책임)

철도운수기관은 수송기간이 지연되었거나 수송과정에 국제철도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 손상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액은 화물전부의 값을 초과할수 없다.

제27조 (철도운수기관의 책임면제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국제철도화물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의 발생에 대하여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지지 않을수 있다.

1.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화물자체의 자연적특성 또는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짐입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4. 이밖에 철도운수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책임면제를 받으려는자의 입증책임)

국제철도화물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철도운수기관은 자기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9조 (책임면제권의 상실)

철도운수기관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법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짐입자

제30조 (국제철도화물의 넘겨주기)

짐입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철도운수기관에 화물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건강과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신기와 보관관리, 부리기에 적합한 화물을 넘겨주어야 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화물은 넘겨줄수 없다.

제31조 (국제철도화물에 대한 자료제공)

짐입자는 국제철도화물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질량, 부피, 성질 같은것과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철도운수기관에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화물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지

지 않는다.

제32조 (실물 화물의 보장)

짐입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화물신기작업을 끝낼수 있도록 화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화물신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물신기를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화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국제철도화물의 수속)

짐입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 가격승인 같은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34조 (운임 및 요금)

짐입자는 국제철도화물을 수송하는데 드는 운임 및 요금을 철도운수기관에 물어야 한다.

운임 및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5조 (국제철도화물의 넘겨받기)

짐입자는 국제철도화물이 도착하면 철도운수기관으로부터 화물을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짐입자와 철도운수기관은 도착한 화물의 손실, 손상정형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

검사비용은 검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검사비용을 부담한자는 화물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있는자에게 검사비용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제36조 (국제철도화물의 손실, 손상에 대한 통지)

짐입자는 넘겨받은 국제철도화물이 손실, 손상되었을 경우 화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4일안으로 철도운수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수기관과 함께 확인한 화물에 대하여서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수 있다.

정해진 기간안에 화물의 손실, 손상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제37조 (짐입자의 손해보상청구)

짐입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을 어겨 손해를 발생시킨 철도운수기관에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근거와 금액을 밝힌 손해보상청구서와 짐부침문건, 해당 철도역에서 작성한 사고조서를 정해진 기일안으로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철도운수기관은 손해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의 리용)

짐입자와 철도운수기관은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을 리용하여 국제철도화물을 수송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송이 끝나면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을 제때에 돌려보내야 한다.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은 국제철도화물수송에 리용할수 없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 (체차료의 부과)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초과시킨 경우에는 허물있는자에게 해당한 체차료를 물린다.

제40조 (제재)

이 법을 어겨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을 준 당사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1조 (신소와 그 처리)

국제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분쟁해결)

국제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주체100(2011)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채택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제1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이하로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제관광특구의 지위와 위치)

국제관광특구는 관광 및 그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관광지구이다.

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제3조 (국제관광특구발전원칙)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는 금강산을 여러 가지 관광목적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4조 (투자장려 및 경제활동조건보장원칙)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수 있다.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조 (재산보호원칙)

국가는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조 (국제관광특구관리의 담당자)

국제관광특구의 관리는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 (이하로부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라고 한다.)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이 아래부터 ‘국제관

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한다.

제7조 (국제교류와 협력)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관광기구,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 (법규적용)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관광 및 관광업 기타 경제활동은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에 따라 한다.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제9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지위)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다.

제10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지도
2. 국제관광특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3. 대상건설설계문건사본의 접수보관
4. 국제관광특구의 세무관리
5.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11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지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를 관리하는 현지집행기관이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제12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작성 및 실행
2. 관광자원의 조사, 개발, 관리
3. 관광선전과 관광객모집, 관광조직
4. 국제관광특구에서의 질서 유지, 인신 및 재산보호
5. 토지, 건물의 임대
6.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7. 토지리용권, 건물, 료전기재의 등록

8.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보장
9.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10. 국제관광특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
11. 국제관광특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12.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반출입에 대한 협조
13. 이밖에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제13조 (공동협의기구의 조직운영)

국제관광특구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투자가,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공동협의기구 같은 것을 내올수 있다.

공동협의기구는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협의, 조정한다.

제14조 (국제관광특구의 출입관리)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질서, 국제관광특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15조 (검사, 검역)

국제관광특구에 출입하는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통행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사업을 과학기술 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관리)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통신수단의 리용)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제18조 (관광당사자)

국제관광특구에서의 관광은 외국인이 한다.
공화국공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수 있다.

제19조 (관광형식과 방법)

관광은 등산과 유람, 해수욕, 휴양, 체험, 오락, 체육, 치료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관광객은 국제관광특구안에서 자유롭게 관광할수 있다.

제20조 (관광환경과 조건보장)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광객을 위한 봉사)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에서 숙박, 식당, 상점, 카지노, 골프, 야간구락부, 치료, 오락 같은 여러 가지 관광봉사시설을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할수 있다.

제22조 (국제적인 행사진행)

국제관광특구에서는 국제회의와 박람회, 전람회, 토론회, 예술공연, 체육경기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할수 있다.

제23조 (교통보장)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비행장과 항만, 관광철도, 관광도로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의 교통상편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제24조 (기업창설)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여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제25조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준수)

국제관광특구의 개발은 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하부구조를 건설하거나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26조 (기업창설승인, 등록)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기업창설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하부구조건설승인)

국제관광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승인은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28조 (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국제관광특구에는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올수 있다. 이 경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돈자리의 개설)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리용할수 있다.

제30조 (외화유가증권의 거래)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31조 (보험가입)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수 있다.

제32조 (버림물의 처리)

기업은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관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33조 (로력채용)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공화국의 로력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력을 채용할수 있다.

제34조 (류통화폐)

국제관광특구에서 류통화폐는 전환성외화로 한다.

전환성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35조 (외화의 반출입과 송금, 재산의 반출)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왔던 재산과 국제관광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36조 (세금)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해당 법규에 정해진 세금을 물어야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건설 같은 특별장려부문기업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제37조 (물자의 반출입)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정해진 금지품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제38조 (관세면제 및 부과대상)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 투자가에서 필요한 정해진 규모의 사무용품, 생활용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면제대상의 물자를 국제관광특구밖에 팔거나 국가에서 제한하는 물자를 국제관광특구안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39조 (인원, 수송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개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정된 비행장을 통하여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할 경우에는 비행장통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0조 (제재)

이 법을 어겨 국제관광특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개인에게 피해를 준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공화국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1조 (분쟁해결)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로 해결하거나 공화국의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

주체87(1998)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제1조 (기술수출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 수출입허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기술의 수출입대상)

기술의 수출입대상에는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술과 상표, 공업도안, 과학기술저작, 기술비결 같은 것이 속한다.

국가는 기술의 수출입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기술수출을 늘여가도록 한다.

제3조 (수출입기술의 심의원칙)

수출입하려는 기술을 정확히 심의하는 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과학기술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기술의 수출입허가원칙)

기술의 수출입허가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지표를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출입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기술의 수출입허가를 하도록 한다.

제5조 (기술수출입계획 및 계약규률준수원칙)

기술의 수출입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국가는 기술의 수출입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기술수출입의 당사자)

기술의 수출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다.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는 기술수출입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 (기술수출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기술의 수출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제8조 (수출입기술의 심의기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는 기술수출입허가의 선행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에 대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수출입기술의 심의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신청문건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심의신청문건에는 기술심의신청서, 기술문건, 기술평정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출입기술의 심의기간, 내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기술의 수출입심의에서는 과학기술적담보, 기술경제적효과성, 수출입가능성, 기밀담보 같은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출입기술의 심의의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의 수출입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필요한 분석을 의뢰하거나 심의에 전문일군을 참가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출입기술의 심의결과통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의 수출입심의결과를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제13조 (기술수출입허가기관)

기술의 수출입허가를 바로하는 것은 기술수출입사업발전의 기본담보이다.

기술수출입허가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4조 (기술수출입허가신청)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에는 수출입계약서를 첨부하며 거래할 나라, 회사명칭, 기술명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의 검토)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허가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부결할데 대한 결정문건은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제기한 무역회사에 보내야 한다.

제16조 (기술수출입허가방식)

기술의 수출입허가는 기술건당으로 한다.

같은 기술이라도 수요자가 다를 경우에는 수출입허가를 다시 받는다.

제17조 (기술수출우선권과 위탁수출)

기술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수출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 기술에 대한 수출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기술수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무역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수출입허가취소)

내각은 필요에 따라 기술수출입거래를 중지시키고 기술수출입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리익에 지장을 줄수 있는 기술은 수출입할수 없다.

제19조 (수출입기술의 반출, 반입승인)

수출입허가를 받은 기술은 반출, 반입승인을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수 있다.

기술의 반출, 반입승인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 (기술의 수출입승인문건검토)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수출입허가문건, 가격승인문건, 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반출, 반입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1조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술수출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2조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수출입계획작성,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준비, 판로개척 같

은 기술수출입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술수출입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적담보, 기술경제적효과성,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전망 같은것을 타산하여 기술수출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술수출입계획에는 기술수출계획, 기술수입계획, 기술준비계획, 기술준비협동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제24조 (기술수출입계약의 체결과 리행)

무역회사는 기술수출입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기술수출입계약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술수출입거래의 기준가격, 운임)

기술수출입거래는 정해진 기준가격, 운임으로 한다.

기준가격, 운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26조 (기술수출입거래방식)

무역회사는 정해진 은행을 통한 신용장결제방식으로 기술수출입거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결제방식으로 기술수출입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수출입기술의 질과 납입기일보장)

세관과 해당 기관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할수 있게 제때에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준비, 반출입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9조 (번 외화의 리용)

기술을 수출하여 번 외화의 일정한 몫은 과학기술발전에 쓴다.

제30조 (기술수출입의 중지, 기술자료, 번 외화의 몰수)

수출입하려는 기술을 심의받지 않았거나 기술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반출입승인 같은 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입을 중지시키거나 기술자료, 번 외화를 몰수한다.

제3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결제법

주체109(2020)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1호로 채택

제1조 (대외결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결제법은 대외결제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결제를 원만히 보장하고 외화수지의 균형을 맞추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외결제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정부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무역 및 비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결제이다.
2. 대외결제은행은 국가로부터 대외결제업무를 하도록 승인받은 은행이다.

제3조 (대외결제관계의 확대원칙)

국가는 나라의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발전되는데 맞게 다른 나라 은행들과의 대외결제관계를 넓혀나가며 대외결제에서 신용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대외결제은행과 무역 및 비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제5조 (대외결제사업에 대한 지도)

대외결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무역은행이 한다.

무역은행은 대외결제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대외결제은행책임일군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대외결제은행의 돈자리개설)

대외결제은행은 해당 계약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 은행에 대외결제를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 은행에 개설한 돈자리관계자료는 무역은행에 등록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할수 없다.

제7조 (대외결제보장에 필요한 외화의 예금)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다른 나라 은행에 개설한 돈자리에 정

상적으로 예금하여야 한다.

제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돈자리개설)

무역 및 비무역거래와 관련한 결제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한 경우 다른 대외결제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 (돈자리개설의 승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외결제를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려 할 경우 돈자리개설신청문건을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대외결제은행은 돈자리개설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돈자리개설을 승인해주어야 한다.

제10조 (다른 나라 은행과의 결제협정체결)

다른 나라 정부와 맺은 협정에 따라 은행들 사이에 결제협정을 맺고 리행하는 사업은 무역은행이 맡아한다.

무역은행은 다른 나라 정부와 맺은 협정에서 지정된 은행과 결제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적인 지불체계에 의한 대외결제)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를 국제적인 지불체계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외결제방식)

대외결제은행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신용장결제와 보증장결제, 송금 및 현금결제, 수체결제, 맞바꿈무역결제, 청산 및 차관결제, 행표결제 등의 방식으로 대외결제를 할수 있다.

제13조 (대외결제신청문건의 제출)

대외결제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제방식에 따르는 신청문건을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화지출신청문건과 수출입계획문건, 계약문건, 가격승인문건 등 대외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증거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외결제신청문건의 검토, 승인 및 부결)

해당 대외결제은행은 제출된 대외결제신청문건을 2영업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신청문건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15조 (계획과 계약에 따른 물자의 대외결제)

대외결제은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류통되는 물자에 대한 대외결제를 바로하여야 한다.

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는 대외결제를 할수 없다.

제16조 (대외결제화폐)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를 전환성화폐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 정부 또는 은행과 대외결제화폐와 관련한 협정이나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대외결제환자시세와 대외결제수수료의 제정)

대외결제환자시세와 대외결제수수료는 무역은행이 정한다.

무역은행은 국제금융시장경기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대외결제환자시세와 대외결제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외결제환자시세 및 대외결제수수료의 적용)

대외결제은행은 정해진 대외결제환자시세를 대외결제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외결제방식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출입거래에 대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거래를 진행하려 할 경우 자기의 돈자리가 있는 대외결제은행의 경우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외화의 리용정형에 대한 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 및 비무역거래를 완료한 다음 외화의 리용정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에 해당 대외결제은행과 재정지도기관의 총화와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대외결제업무의 회계)

대외결제업무와 관련한 회계는 무역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회계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22조 (대외결제의 조직)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업무에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을 도입하여 대외결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여러가지 방식의 대외결제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결제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23조 (확인과 등록, 통보질서의 준수)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확인과 등록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대외결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외결제업무자료의 비밀엄수)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업무자료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대외결제업무자료는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일군에게 보여줄수 없다.

제25조 (대외결제업무자료의 보관)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전에 대외결제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없애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대외결제은행일군의 자격)

대외결제은행의 일군은 해당 부문의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의 일군에 대한 자격사정사업은 비상설국제금융일군자격사정위원회에서 한다.

제27조 (대외결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대외결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무역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무역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외결제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8조 (정리)

대외결제은행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리한다.

제29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정해진 기일안에 결제문건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2.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였을 경우
3. 외화를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다른 대외결제은행이나 기관 또는 다른 나라 은행이나 기관, 개인의 돈자리에 도피시켰을 경우
4. 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에 대한 대외결제를 하였을 경우
5. 외화지출신청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하여 대외결제은행에 제출하였을 경우
6.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출한 외화를 정해진 기일안에 총화하지 않았거나 사장시켰을 경우
7. 수출입거래에 대한 경유를 받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총화와 검토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8. 외화를 탐오, 류용, 낭비하였을 경우
9. 이밖에 대외결제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30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2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31조 (분쟁해결)

대외결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주체84(1995)년 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1호로 수정보충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제1조 (대외경제계약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대외경제계약의 분류)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과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

제3조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로는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 된다.

해외동포도 계약당사자로 될수 있다.

제4조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원칙)

국가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제5조 (조약과 국제관례의 존중원칙)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6조 (계약체결과 책임원칙)

국가는 대외경제계약당사자들이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으며 그 리행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제7조 (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한다.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감독통제할수 있다.

제8조 (대외경제계약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리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

을 규제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제9조 (계약체결범위와 신용상태의 확인)

계약당사자는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법인등록과 재산, 리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맺는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달리 정하려 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제11조 (계약서초안의 제출 및 심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계약서초안을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체결방식)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여 한다.

경우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의 참가없이 한편 당사자가 제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체결형식)

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팩스나 전자우편 같은 통신수단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효력을 가진다.

1.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 때
2. 계약서에 지정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
3. 외국투자기업의 창설, 해외투자, 로력과전, 중요대상에 대한 투자 등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계약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승인한 때

제15조 (위임, 위탁계약)

계약은 위임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도 맺을수 있다.

제16조 (계약서의 부록과 계약전문서의 효력)

상품목록, 기술자료 같은 것은 계약서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계약을 맺기 전의 합의서나 통신교환문서 같은 문서는 계약이 맺어진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7조 (계약서의 수표)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표한다.

제18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계약)

법에 저촉되는 계약, 나라의 안전에 해를 주거나 경제적리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기만이나 강요로 맺은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제19조 (계약리행기간, 계약내용의 준수 의무)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리행할수 없다.

제20조 (계약당사자의 권리)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리행할 경우 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기의 계약상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

제21조 (어찌할수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리행의 중지)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계약의무리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어찌할수 없는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제22조 (상대방의 허물에 의한 계약리행의 중지)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리행을 태공하거나 계약을 리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그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리행을 중지한데 대하여 알려야 한다.

제23조 (중지되었던 계약의무의 리행)

계약리행을 중지한 계약당사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리행을 담보하는데 따라 계약의무리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무리행에 대한 동의)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는 그 의무를 계속 리행하려 할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계약리행기간의 변경)

계약리행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수 있다.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제26조 (계약의 양도)

계약당사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리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

제28조 (계약의 취소 경우)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할수 있다.

1. 정한 기일에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그 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리유없이 계약의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5.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계약리행기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6. 이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제29조 (계약의 취소범위)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어겼거나 리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30조 (계약취소에 대한 권고)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이상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수 있다.

제31조 (계약에서 손해보상, 청산, 분쟁해결조항의 효력)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제32조 (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형식과 절차)

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제33조 (손해보상청구권과 손해보상의무)

계약을 어긴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손해발생에 책임있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의무를 진다.

제34조 (위약금 또는 손해보상)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은 화폐,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비용으로 허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 (손해보상청구기간)

손해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한다.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 수 있다.

제36조 (보증조건이 설정된 계약대상이 손해보상청구기간)

보증조건이 설정된 계약대상의 허물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는 보증기간에 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한다.

보증기간에 계약대상의 허물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을 완전히 확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먼저 알리고 허물이 확증된 다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허물을 확증하는 기간이 보증하는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기간은 확증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37조 (손해보상청구서의 제기)

손해보상을 받으려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서에는 계약서번호와 계약대상, 손해의 형태와 범위,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을 밝히고 해당 검사기관의 확인문건 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손해보상과 그 거절)

손해보상청구서를 받은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손해보상을 청구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보상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거절은 손해보상청구기간 또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났거나 손해보상청구근거가 명백하지 못하거나 혹은 허물을 보여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허물있는 계약대상물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 같은 경우에 한다.

제39조 (리자, 연체료)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계약금과 손해보상금, 위약금 같은 것을 정한 기간에 물지 않았을 경우 늦어진 일수에 해당하는 리자 또는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40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면제)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행하지 못하였거나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책임면제사유를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41조 (손해를 막을 의무, 보상받을수 없는 손해)

계약당사자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것을 제때에 막아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수 없다.

제42조 (분쟁해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주체88(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6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1조 (대외경제중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중재는 당사자들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을 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중재부의 재결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2.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사이의 계약 또는 그밖의 경제법률관계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약속이다.
3. 중재부는 대외경제분쟁사건의 취급처리를 맡은 단독중재원 또는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원집단이다.
4. 재결은 대외경제분쟁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부가 내린 결정이다.
5. 외국적요소는 당사자들가운데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거나 업무장소, 거주지, 주소지 또는 분쟁재산이나 중재장소 같은것이 다른 나라와 련관되는 조건들이다.
6. 중재위원회는 대외경제분쟁해결사업을 조직하고 중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설중재기관이다.
7. 재판기관은 중앙재판소 또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이다.
8. 해당기관은 재판기관밖의 권한있는 국가기관이다.
9.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조정인이 되어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 또는 타협하도록 노력하는 행위이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구분과 관할)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조선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 같은 중재위원회가 한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 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선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는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분쟁을 심리해결한다.

제4조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적요소와 함께 당사자들사이의 중재합의가 있는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
2.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이관한 분쟁

제5조 (중재의 당사자)

대외경제중재의 당사자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이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 해외동포도 당사자로 될수 있다.

제6조 (분쟁해결원칙)

대외경제중재에는 지역관할과 심급을 두지 않으며 중재부가 내린 재결을 최종결정으로 한다.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는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 (통지의 효력)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통지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었거나 그의 업무장소 또는 거주지, 우편주소에 전달되었을 경우 접수된것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업무장소, 거주지, 우편주소로 통지가 발송되었을 경우에만 접수된것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기권과 그 효력)

당사자가 중재와 관련한 합의 또는 이 법에 어긋나게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또는 정해진 기간안에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중재사건의 취급이 계속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의견제기권을 포기한것으로 한다.

제9조 (중재사건의 이관)

재판기관과 해당 기관은 당사자들사이 중재합의가 있는 분쟁사건을 제기받는 경우 해당 중재위원회에 사건을 넘겨준다.

제10조 (중재부의 독자성보장)

국가는 대외경제중재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중재부의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의 취급과 처리에 간섭할수 없다.

제11조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대외경제중재활동에서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중재합의

제12조 (중재합의와 그 방법)

당사자들은 대외경제중재활동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중재합의는 해당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계약서와 별도로 중재합의문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할수 있다.

제13조 (중재합의의 형식)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수표한 문건이나 당사자들사이에 주고받은 서신, 팩스, 전자우편 같은데 중재의사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와 중재합의가 구두 또는 행동, 그밖의 수단이나 형식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중재합의로 인정한다.

제14조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일방의 중재합의제기에 상대방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의 중재제기를 부인하지 않고 항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할수 있다.

제15조 (중재합의의 무효사유)

다음의 경우 중재합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1. 중재합의가 법이 정한 중재관할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2. 중재합의당시 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일 경우
3. 강요에 의하여 중재합의를 하였을 경우

제16조 (중재합의와 보존조치와의 관계)

중재제기를 하기전이나 사건취급단계에서 당사자일방이 중재위원회, 중재부 또는 재판기관, 해당 기관에 제기하는 재산보존조치, 수속중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해줄데 대한 신청과 그에 대한 승인은 중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제17조 (통합 및 분리, 채권채무의 이전에 따르는 중재합의의 효력)

기업이 통합, 분리되거나 제3자에게 채권채무가 양도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효력은 권리의무

를 계승한 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제18조 (중재제기와 접수 및 부결)

당사자는 대외경제거래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중재절차로 해결하려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중재제기서를 내야 한다.

중재제기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분쟁내용과 청구근거 등을 밝히고 중재위원회가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당사자들에게 중재제기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접수통지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9조 (대리인에 의한 중재제기)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제기를 하거나 항변할수 있다.

대리인으로는 공화국국민이나 외국인이 될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에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3장 중재부

제20조 (중재부의 구성)

중재부의 중재원수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원수를 1명 또는 3명으로 정한다.

제21조 (중재원의 선정절차)

중재원의 선정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중재원을 선정한다.

1. 중재부를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하려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각각 1명의 중재원을 선정한 다음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15일안에 책임중재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이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책임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

2. 중재부를 중재원 1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안에 중재원선정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가 중재원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은 2항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수 없다.

제22조 (중재원선정에서 중재위원회의 의무)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을 선정할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 또는 이 법에 규정한 중재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독자적인 중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재원의 자격)

중재원으로는 다음의 성원이 될수 있다.

1. 중재위원회의 성원
2. 분쟁사건을 심리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 또는 경제부문의 일군
3. 변호사,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일군
4. 중재분야에서 권위있는 해외동포 또는 외국인

제24조 (중재원의 배제사유)

중재원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때부터 사건의 취급처리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공정성과 독자성에 대하여 의심이 제기될수 있는 모든 사유를 중재위원회와 당사자들에게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의 공정성과 독자성에 대하여 의심받을 사유가 있거나 이 법에 정해진 자격 또는 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재원은 배제될수 있다.

제25조 (중재원의 배제절차)

당사자들은 중재원의 배제절차에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원을 배제하려는 당사자는 이 법 제24조에 규정된 중재원의 배제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이유를 밝힌 중재원배제신청문건을 중재부에 보내야 한다.

배제신청을 받은 중재원이 사임하지 않거나 상대측당사자가 배제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부는 배제신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배제절차나 앞항의 절차에 따라 중재원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배제신청자는 중재부의 배제신청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중재위원회에 배제신청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원배제신청과 관련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수 없으며 중재원은 자기에 대한 배제신청이 제기된 기간에도 해당 사건을 취급하고 재결을 내릴수 있다.

제26조 (중재원의 사임, 교체사유)

중재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와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재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중재원이 자기 사업을 할수 없는 법적 또는 실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2. 중재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해결을 지연시킬 경우

제27조 (중재원을 다시 선정하는 절차)

중재원이 배제, 사임, 교체되는 경우 다른 중재원의 선정은 배제, 사임, 교체되는 중재원의 선정에 적용하였던 절차에 따른다.

제28조 (중재부의 권한)

중재부는 중재합의의 존재여부, 효력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 증거를 분쟁해결과 판단의 기초로 삼을 것인가와 증거의 타당성, 중재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합의의 존재여부와 효력에 대하여 결정할 경우 중재부는 계약서의 중재조항을 다른 조항의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

분쟁과 관련한 계약이 무효한 것으로 결정되어도 중재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9조 (중재부와 관련한 의견제기)

당사자들은 중재부가 관할권이 없다는데 대한 의견을 첫 항변서의 제출기간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가 중재원을 선정하였거나 그 선정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부가 권한범위를 벗어나 사업하는데 대한 의견은 사건취급기간안에 해당 사유가 나타난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부는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제기가 정당한 사유로 늦어졌을 경우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30조 (중재부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처리)

중재부는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의견에 대하여 별도로 먼저 결정하거나 재결에 포함시켜 결정할 수 있다.

중재부가 별도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다시 해줄 것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의견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서는 의견을 제기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가 제기된 의견을 처리하는 기간에도 중재부는 해당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거나 재결을 내릴 수 있다.

제31조 (림시조치)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재산보존조치, 수속중지 같은 림시조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림시조치에 해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림시조치결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부는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그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림시조치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재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 (림시조치의 해제, 취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는 림시조치에 대한 결정과 그 집행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즉시 그것을 취소하거나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중재절차의 진행

제33조 (당사자들의 지위)

당사자들은 분쟁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자기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진술할수 있다.

제34조 (중재절차의 결정)

중재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35조 (중재장소)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부가 당사자들의 편의, 사건해결의 전반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장소를 정한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장소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중재원들의 협의, 증인이나 감정인 기타 사건관련자들과 사실확증, 재산이나 문건의 조사 같은것을 할수 있다.

제36조 (중재의 시작일)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는 피신청자가 중재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제37조 (중재언어)

당사자들은 중재언어에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부가 중재언어를 결정하며 중재부의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한다.

정해진 중재언어는 당사자들의 문건, 중재심리, 재결, 결정과 그 밖의 통지에도 사용된다.

제38조 (청구와 항변)

원고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부가 정한 기간안에 자기의 청구사실과 분쟁내용, 요구사항을 주장하여야 하며 피고는 그에 대한 항변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문건이나 증거물을 제출할수 있으며 사건취급 기간안에 자기의 청구내용, 항변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할수 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청구내용 또는 항변내용의 수정, 보충이 부당하여 사건해결이 지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수 있다.

제39조 (중재심리방식의 결정)

중재부는 중재심리를 구두 또는 문건으로 할수 있다.

중재심리를 문건으로 하려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0조 (당사자의 의무불리행에 대한 처리)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취급을 중지하고 결속을 하며 피고가 충분한 이유없이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앞항의 경우 피고가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으로 되지 않는다. 중재부는 원고와 피고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재심리를 하고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재결을 내릴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1조 (감정인, 증인)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부는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당사자들이 감정과 관련한 문서, 물건 등을 감정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당사자일방의 요구 또는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인, 증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답변하게 할수도 있다.

제42조 (증거의 제출 및 증거조사의 의뢰)

당사자는 중재부가 정해진 기간안으로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중재부는 그 접수를 거부할수 있다.

중재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거나 재판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증거조사를 의뢰할수 있다.

당사자도 중재부의 승인을 받아 증거조사를 의뢰할수 있다.

제43조 (증거조사결과의 통지)

증거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15일안에 증거조사를 한 다음 증인심문조서등본이나 감정조서 등본, 검증조서등본 같은 증거조사문건을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부에 보내야 한다.

제44조 (맞중재)

피고는 접수된 중재사건에 대하여 맞중재를 신청할수 있다.

맞중재는 기본중재와 직접 관련되는것이여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맞중재로 중재사건처리가 지연된다고 인정할 경우 맞중재신청을 접수하지 않을수 있다.

제5장 재결문의 작성과 중재절차의 종결

제45조 (재결의 준거법)

재결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재결의 준거법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부는 분쟁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적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과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결정하거나 재결을 내려야 한다.

제46조 (중재부의 의사결정방법)

중재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다수가결로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부성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중재원이 의사결정을 한다.

제47조 (화해)

당사자들은 중재사건취급처리의 임의의 단계에서 언제든지 서로 화해할수 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이 화해하였을 경우 사건처리를 결속하고 화해결정을 하여야 한다.

화해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8조 (조정)

대외경제분쟁은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수 있다.

조정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9조 (재결문의 작성형식)

재결문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재결문에는 중재원의 수표와 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한다.

중재부가 1명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단독중재원의 수표가, 중재부가 3명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과반수중재원의 수표 또는 책임중재원의 수표가 있어야 한다.

제50조 (재결문의 내용)

재결문에는 재결의 근거로 되는 사유와 재결문의 작성날자, 중재장소 같은것을 밝힌다.

재결은 재결문에 밝혀진 날자, 장소에서 내린것으로 한다.

제51조 (재결문의 발송)

재결이 내려지면 중재위원회는 재결문등본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하거나 직접 주어야 한다.

제52조 (중재절차의 종결)

중재절차는 재결 또는 다음의 경우 중재부의 결정으로 끝난다.

1. 원고가 중재제기를 취소하였을 경우
2. 원고와 피고가 중재를 끝내는데 합의하였을 경우

3. 중재부가 중재를 계속하는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부는 원고가 중재제기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며 분쟁을 끝까지 해결하는
것이 피고에게 정당한 리익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취급을 끝내지 말아야 한다.
중재부의 사업은 이 법 제54조와 제5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의 종결과 함께 끝난다.

제53조 (재결문의 정정, 해석 및 추가재결의 신청)

다음의 경우 당사자들은 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재결문
의 정정이나 해석 또는 추가재결을 신청할수 있다.

1. 재결문에서 계산상 또는 문구상 결함 같은것을 정정하려 할 경우
2. 재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3. 청구는 하였으나 재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추가재결을 요구할 경우
4. 중재부는 일방당사자가 재결문에 대한 정정이나 해석 또는 추가재결을 신청하였을 경
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재결문의 정정, 해석 및 추가재결)

중재부는 재결문에 대한 정정, 해석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안에 정정이나 해석을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석문은 재결문의 한 부분으로 된다.

추가재결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45일안에 추가재결을 내려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중재부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재결문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재결기간
을 연장할수 있다.

재결문의 정정과 해석, 추가재결의 형식은 이 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른다.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제55조 (재결의 효력발생일)

재결의 효력은 재결문을 작성한 날부터 반생한다.

제56조 (재결에 대한 취소제기)

당사자는 이 법 제57조에 따르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기관에 재결을 취소시켜줄것을 신청
할수 있다.

재판기관은 당사자가 재결취소신청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결취소신청
을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57조 (재결의 취소제기사유)

재결의 취소제기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만 할수 있다.

1. 당사자가 중재합의당시 준거법에 따라 무능력자라는 사실

2.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
3. 당사자가 중재원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수 없었다는 사실
4. 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
5.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어긋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제58조 (재결취소신청기간)

재결취소신청기간은 당사자들이 재결문이나 그 정정문, 해석문, 추가재결문을 받은 날부터 2개월간으로 한다.

재결취소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재판기관의 집행문이 발급된 후에는 재결취소신청을 제기할수 없다.

제59조 (재결의 취소와 관련한 재판기관의 조치)

재판기관은 재결의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재결의 취소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다시 하도록 통지하며 재결의 취소사유가 재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퇴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요구할수 있다.

제7장 재결의 집행

제60조 (재결의 집행)

당사자는 재결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재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재결문에 재결집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재결의 집행신청)

책임있는 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리행할 경우 상대측당사자는 직접 또는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재판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재결집행신청문건에는 재결문의 등본을 첨부한다.

제62조 (재결의 집행, 제재조치)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재결집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재결을 집행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돈자리동결, 료전기재, 류동재산의 억류 및 몰수, 대외경제단위가 소유한 부동산(국가투자분 제외)의 이관처분, 벌금부과, 경영활동중지, 반출입물자의 수속중지, 출입국중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63조 (해당 나라의 재판기관에 집행신청)

재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공화국령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나라의 재판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제64조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65조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거부사유)

다음의 사실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을 거부할수 있다.

1. 당사자가 중재합의당시 준거법에 따라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
2. 당사자가 중재원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수 없었다는 사실
3. 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
4.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5. 재결이 아직 당사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재결을 내린 나라의 재판기관 또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집행정지되어있다는 사실
6. 해당 분쟁이 재결을 내린 나라의 법에 의하여 중재절차로 해결할수 없다는 사실
7. 재결의 집행이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사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1호로 채택

제1조 (대응조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은 공화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비우호적인 행위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대응조치의 적용원칙)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그러나 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한다.

제3조 (비우호적인 행위의 정의)

비우호적인 행위란 다른 나라의 정부나 기관, 단체, 개인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리익, 평화와 안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
2. 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3.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합법적 경제활동과 경제적리권을 침해하는 행위
4.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
5. 교육, 과학, 보건, 체육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의 공화국의 합법적교류활동과 필요한 설비, 물자의 반출입을 금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비우호적인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7. 비우호적인 행위를 조직 또는 추동, 공모한 행위

제4조 (대응조치의 내용)

대응조치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속한다.

1. 공동성명을 비롯한 쌍방조약의 파기 또는 다방조약의 탈퇴

2. 외교관계의 중지 또는 단절, 외교관계급수의 저하, 외교인원수의 축소, 외교인원의 추방
3. 경제관계의 제한 또는 단절
4. 교육, 보건, 체육, 관광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교류의 제한 또는 단절
5. 공화국에로의 여행제한 또는 금지
6. 공화국 영토 및 령공, 령해통과, 리용의 제한 또는 금지
7. 국제적협력의 중단
8. 공화국에 있는 해당 나라 기관, 단체, 개인의 재산과 자금의 압수 또는 동결
9. 기타 비우호적인 행위에 상응한 조치

제5조 (대응조치의 적용대상)

대응조치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리익, 평화와 안전,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관, 단체,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 (대응조치의 실시)

공화국은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관, 단체, 개인이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성격과 엄중성정도에 따라 이 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할수 있다.

대응조치의 실시는 국가의 결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를 결정하고 실시할수 있다.

제7조 (대응조치의 해제)

공화국은 대응조치실시의 동기로 되었던 상황이 해소되는데 따라 대응조치를 해제한다.

대응조치의 해제는 국가의 결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실시하였던 대응조치의 해제를 결정하고 대응조치를 해제한다.

제8조 (대응조치의 리행의무)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국가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9조 (대응조치실시와 손해보상청구권행사와의 관계)

대응조치는 비우호적인 행위로 하여 피해를 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인격적 및 재산적 손해보상청구권행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라선경제무역지대를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위)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다.

제3조 (산업구의 건설)

국가는 경제무역지대에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1차기공공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구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제4조 (투자당사자)

경제무역지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우리 나라 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수 있다.

제5조 (경제활동조건보장의 원칙)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회사,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 같은 분야에서 투자자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무역지대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

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에 저해를 줄수 있는 대상,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7조 (투자자의 재산과 리익, 권리보호원칙)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자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한 법적절차를 거치며 차별없이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하고 효과있게 보상하여주도록 한다.

제8조 (경제무역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관여금지원칙)

경제무역지대에서 산업부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 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관리위원회가 맡아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제9조 (신변안전과 인권의 보장, 비법구속과 체포금지)

경제무역지대에서 공민의 신변안전과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 (적용법규)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을 적용한다.

경제무역지대의 법규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하며 경제무역지대밖에 적용하는 법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경제무역지대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제11조 (개발원칙)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조건,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우세보장
2. 토지,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인 리용

3.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보호
4. 생산과 봉사의 국제적인 경쟁력제고
5. 무역, 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편의보장
6. 사회공공의 이익보장
7.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보장

제12조 (개발계획과 그 변경)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한다.
 개발계획에는 개발총계획, 지구개발계획, 세부계획 같은 것이 속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개발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13조 (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

경제무역지대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 기업에게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경영권을 특별히 허가해주어 개발하는 방식, 개발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방식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할수 있다.
 개발기업은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할수도 있다.

제14조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개발기업에게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발기업의 위임, 개발사업권승인증서의 발급신청은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제15조 (토지종합개발경영과 관련한 토지임대차계약)

토지종합개발경영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식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개발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6조 (토지임대기간)

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로 한다.
 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17조 (부동산의 취득과 해당 증서의 발급)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규정에 따라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토지리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와 임대가격)

개발기업은 개발계획과 하부구조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개발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 임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양도, 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19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과 그 등록)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안에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을 하고 토지리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 (건물, 부차물의 철거와 이설)

철거, 이설을 맡은 기관, 기업소는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지역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 부차물 같은 것을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21조 (개발공사착수시점과 계획적인 개발)

개발기업은 개발구역안의 건물과 부차물의 철거, 이설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2조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의 개발리용)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도급생산방식으로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제23조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관리위원회와 기업의 독자성보장
3. 무역과 투자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경제발전의 객관적법칙과 시장원리의 준수
5. 국제관례의 참고

제24조 (관리위원회의 설립, 지위)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내온다.

관리위원회는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이다.

제2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과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에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26조 (관리위원회의 책임자)

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주관한다.

제27조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관리위원회는 자기의 관할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5.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6. 대상설계문건의 보관
7.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
8.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9.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10.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11.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12. 관할지역의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3.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
14. 관리위원회의 규약작성
15. 이밖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28조 (관리위원회의 사무소설치)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소 같은 것을 둘수 있다.

사무소는 관리위원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안에서 사업을 한다.

제29조 (사업계획과 통계자료의 제출)

관리위원회는 해마다 사업계획과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통계자료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 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30조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무역지대법과 규정의 시행세칙작성
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보장

3. 이밖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제31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무역지대의 발전전략작성
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건설과 관련한 국내기관들과의 사업연계
3.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연계
4. 기업창설심의기준의 승인
5.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국내기업의 선정
6. 경제무역지대생산품의 지대밖 국내판매협조

제32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 경우 예산작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33조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협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제34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경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해당 성원, 주요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35조 (원산지관리)

경제무역지대에서 원산지관리사업은 원산지관리기관이 한다.

원산지관리기관은 상품의 원산지관리사업을 경제무역지대법규와 국제관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제36조 (심의, 승인절차의 간소화)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처리방법으로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제37조 (기업의 창설신청)

투자가는 산업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관리위원회에, 산업구밖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라선시인민위원회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 (기업의 등록,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기업은 우리 나라 법인으로 한다.

제39조 (지사, 사무소의 설립과 등록)

경제무역지대에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해당한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기업의 권리)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리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
를 가진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은 할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
거나 의무를 지을수 없다.

제41조 (기업의 업종 및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42조 (계약의 중시와 리행)

기업은 계약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며 계약을 성실하게 리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대밖 우리 나라 기업과의 경제거래)

기업은 계약을 맺고 경제무역지대밖의 우리 나라 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수 있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44조 (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들사이의 거래되는 상품과 봉사가격, 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과 지대
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
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식량, 기초식품 같은 중요 대중필수품의 가격과 공공봉사로금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정한
다. 이 경우 기업에 생긴 손해에 대한 재정적보상을 한다.

제45조 (무역활동)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 같은 여러 가지 형식의 무역활동을
할수 있다.

제46조 (특별허가경영권)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허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하여 특별허가대상으로 경영하게 할수 있다. 특별허가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그것을 다른 기업에서 양도하거나 나누어주려 할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자연부원의 개발허용)

경제무역지대의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보장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대의 자연부원을 개발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밖의 자연부원개발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48조 (경제무역지대상품의 구입)

경제무역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맺고 지대안의 기업이 생산하였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할수 있다.

제49조 (로력의 채용)

기업은 우리 나라의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월로임최저기준)

경제무역지대의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1조 (광고사업과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경제무역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광고업과 광고를 할수 있다.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52조 (기업의 회계)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회계계산과 결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할수 있다.

제5장 관 세

제53조 (특혜관세제도의 실시)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54조 (관세의 면제대상)

관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필요한 물자
2.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수입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오는 물자
4.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화물
6. 다른 나라 정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기증하는 물자
7. 이밖에 따로 정한 물자

제55조 (관세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관세상점의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면제대상으로 들어온 물자를 경제무역지대안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56조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부과)

기업이 경제무역지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또는 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할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시킬수 있다.

제57조 (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무역지대에서 관세면제대상에 속하는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관세면제대상에 속하는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반출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제58조 (관세납부문건의 보관기일)

기업은 관세납부문건, 세관검사문건, 상품송장 같은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통화 및 금융

제59조 (류통화폐와 결제화폐)

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60조 (은행의 설립)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지점을 내고 은행업무를 할수 있다.

제61조 (기업의 돈자리)

기업은 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 나라 령역밖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지대외화관리기관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자금의 대부)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이나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제무역활동에 필

요한 자금을 대부받을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교환한 조선원은 중앙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63조 (보험기구의 설립과 보험가입)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지사, 사무소를 설립운영 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은 우리 나라 법령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며 의무보험 은 정해진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4조 (유가증권의 거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7장 장려 및 특혜

제65조 (소득의 송금, 투자재산의 반출)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합법적인 리윤과 리자, 리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 같은 소득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법령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없이 경제무역지대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66조 (수출입의 장려)

경제무역지대의 기업 또는 다른 나라 개인업자는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상품, 봉사, 기술거래를 할수 있으며 수출입대리업무도 할수 있다.

제67조 (기업소득세률)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68조 (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무역지대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정해진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준다.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해당 규정에서 정 한다.

제69조 (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

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70조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71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반환)

경제무역지대에서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72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73조 (경영과 관련한 봉사)

경제무역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은행, 보험, 회계, 법률, 계량 같은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할수 있다.

제74조 (관광업)

경제무역지대에서는 바다기슭의 솔밭과 백사장, 섬 같은 독특한 자연풍치, 민속문화 같은 유리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널리 조직하도록 한다.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75조 (편의보장)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거주자, 체류자에게는 교육, 문화, 의료, 체육분야의 편리를 제공한다.

제76조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경제무역지대에는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올수 있으며 그것을 보관, 가공, 조립, 선별, 포장하여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반출입을 금지하는 물자는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다.

제77조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78조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의 출입)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은 경제무역지대의 라진항, 선봉항, 응상항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항출입질서에 따라 나들 수 있다.

제79조 (외국인의 출입, 체류, 거주)

외국인은 경제무역지대에 출입, 체류, 거주할수 있으며 려권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정해진 통로로 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나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80조 (신소와 그 처리)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 또는 개인은 관리위원회, 라선시인민위원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1조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분쟁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82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중재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83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경제무역지대의 관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의 행정소송절차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법의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의 해석권)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주체86(1997)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9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호로 수정보충

제1장 무역법의 기본

제1조 (무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무역의 기본원칙)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무역구조와 무역방법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한다.

제3조 (다각화, 다양화원칙)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무역을 여러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 (신용준수원칙)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수입품에 대한 지불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 (무역계획, 계약규률준수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무역에 대한 지도원칙)

국가는 무역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최혜국대우, 자국민대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민대우를 하도록 한다.

제8조 (제재 또는 제한, 금지와 관련한 대응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9조 (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0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질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

제11조 (무역거래를 할수 있는 기관)

무역거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2조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명칭과 기구
2. 규약
3. 업종 및 지표
4. 영업장소
5. 자금원천
6. 필요한 전문기와 보장성원
7. 대외시장에 실현할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원천

제13조 (영업허가증의 발급 및 경유)

무역거래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업종과 지표에 따라 수출품생산기지등록증을 첨부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승인하였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해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경유를 받는다.

제14조 (무역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무역거래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5조 (무역거래범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업종과 지표에 맞게 수출입수속과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업종, 지표로 무역거래를 하거나 비법적인 방법으로 수출원천동원을 하는 행위, 무역계획을 승인없이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 등을 할수 없다.

제16조 (무역계약의 체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거래당사자와 무역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거래당사자와 무역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계약서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제17조 (위탁수출입업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와 재정총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무역거래의 재정총화는 수출입품계산신청문건과 수출입품검사증, 검수증, 가격승인문건과 계약서사본 등 증빙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제19조 (수출입품의 가격 및 반출입승인의 전담)

모든 수출입품에 대한 가격 및 반출입승인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전담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품에 대한 가격, 반출입승인을 엄격히 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불량품, 체화품, 모조품, 재생품과 같은 녹거리상품을 들여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가격승인신청문건의 제출 및 승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 상품을 내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오려 할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가격승인신청문건을 내고 가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격승인신청문건에는 다른 나라에 상품을 내가려는 경우 생산지, 수량, 품질확인서 등 수출품과 관련한 확인문건을,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오려는 경우 수입품제안서와 기술자료 등을 첨부한다.

제21조 (반출입승인신청문건의 제출 및 승인)

다른 나라에 상품을 내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 무역지도기관에 수출입품종합신고문건을 내고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와 사회단체에서 원조와 지원을 목적으로 기증하거나 제공하는 무상물자에 대하여도 반출입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지사, 사무소, 출장소의 설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지사, 사무소, 출장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업종, 지표, 명칭의 변경)

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속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의 수속절차는 따로 정한 질서에 따른다.

제24조 (지적소유권의 침해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과정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의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선불금지불, 상품, 기술, 봉사제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행담보서 같은 법적담보문건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전자무역수속체계가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전자무역수속체계에 가입하여 수출입수속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속문건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한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무역거래과정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는 거래당사자들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제28조 (채권, 채무의 이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질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통합될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간다.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제29조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및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통합되거나 해산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장 무역계획

제30조 (무역계획의 내용)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수출입계획, 가공무역계획, 비무역계획, 수출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외화수입 및 외화지출과 관련한 계획 등이 속한다.

제31조 (무역계획의 작성과 시달)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2조 (국가계획기관의 계획화방법)

무역계획은 예비수자, 통제수자, 계획수자단계를 걸쳐 세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계획초안과 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무역계획초안, 수출입가격자료, 수출기지등록자료, 회사영업허가자료, 외화봉사단위영업허가자료 등에 기초하여 무역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33조 (해당 단위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하여 시달한 무역계획에 준하여 월별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출입결과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계획수행정형을 월별로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해당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무역계획실적자료를,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재정결산자료를 국가계획기관에 분기별로 내야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수출입실적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통계국에 월별로 내야 한다.

제35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을 년간, 분기별, 월별로 세워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시달, 무역화물수송계약의 체결)

국가계획기관은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무역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7조 (무역계획의 변경)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제38조 (무역사업지도기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무역사업을 위한 비상설위원회 조직)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바로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대외경제지도위원회와 무역사고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

대외경제지도위원회와 무역사고심의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0조 (무역발전의 대외적환경조성)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 (국제시장조사)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정상적으로 국제시장조사를 진행하여 나라별, 지역별, 지표별에 따르는 상품수요관계를 장악하여야 한다.

제42조 (무역수지의 타산안작성)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년간 무역수지를 타산하고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무역수지타산 및 종합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월별로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43조 (국가전자무역수속체계를 통한 수출입수속사업에 대한 료해대책)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가전자무역수속체계를 통한 수출입수속사업에서 신속성,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정상적으로 료해대책하여야 한다.

제44조 (통계자료의 집계)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월간 수출입품취급자료를 중앙통계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무역발전을 위한 전략작성안의 제출)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연간 무역수지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안을 작성하고 국가계획기관을 통하여 내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수출입물자교류장소의 설치 및 운영)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주요 국경통과지점들에 수출입물자교류장소를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 (무역거래확대를 위한 조치)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조절, 장려금의 적용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8조 (수출입의 제한경우)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요보장과 자연부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
2.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3.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4.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5.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49조 (수출입의 금지경우)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침해할수 있을 경우
2.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경우
3.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위험을 줄수 있을 경우
4. 경제적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경우
6.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50조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51조 (수출입품의 검사, 검역, 검수)

해당 기관은 가격승인문건, 반출입승인문건,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 위생검역신청서, 검수신청서에 근거하여 수출입품의 검사와 검역, 검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52조 (무역거래의 편리보장)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와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거래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 (지방무역의 활성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방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지조성과 판로개척 같은 무역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54조 (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장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계무역, 가공무역, 보세창고의 운영 같은 무역거래형식과 수출을 위한 신용대부, 관세반환제도의 도입, 품질 및 환경관리인증체계의 도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55조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가격 및 반출입수속, 무역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 (반출입의 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입품의 반출입을 중지시킨다.

1. 국가의 무역정책에 어긋나게 수출입지표를 선정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무역계획을 받지 않았을 경우
3.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무역계약심의, 가격 및 반출입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4. 비법적으로 상품을 원천동원한 경우
5. 그밖에 무역관련법규에 어긋나게 수출입을 하는 경우

제57조 (영업허가증의 회수)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1. 영업허가증을 경유받지 않았을 경우
2. 가격 및 반출입승인문건을 위조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3. 국가납부계획을 3년동안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무역실적이 없을 경우
5. 가짜상품, 불량상품을 수입하였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6. 제한 또는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7.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 상품수입원천이 없을 경우

제5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9조 (분쟁해결)

무역거래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주체99(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6호로 채택

제1조 (상업회의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은 상업회의소의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업회의소란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무역촉진단체이다.
2. 회원이란 상업회의소에 가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법인이다.

제3조 (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원칙)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제적리익을 보호하기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상업회의소를 설립한다.

국가는 상업회의소의 활동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4조 (상업회의소활동에 대한 법적보호)

상업회의소는 자기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하여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5조 (적용대상)

이 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제6조 (상업회의소의 구성)

상업회의소는 소장, 부소장, 서기장과 그밖에 필요한 수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상업회의소의 최고결의기관)

상업회의소의 최고결의기관은 회원총회이다.

제8조 (회원총회의 소집)

회원총회는 매해 1차씩 상업회의소가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상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회언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비정기회원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9조 (회원총회의 소집통지)

상업회의소는 회원총회를 소집하기 1개월전에 회의소집날자와 장소, 토의문제 같은 것을 회

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업회의소의 운영자금)

상업회의소는 회원가입비와 회비, 봉사료 같은 것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운영한다.

회원가입비와 회비, 봉사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업회의소가 정한다.

제11조 (상업회의소 분소의 설치)

상업회의소는 필요한 지역에 분소를 두고 운영할수 있다.

분소는 상업회의소의 지도밑에 활동한다.

제12조 (사무소, 대표부의 설치)

상업회의소는 다른 나라의 사무소, 대표부를 두고 운영할수 있다.

제13조 (비상설부문별위원회의 조직)

상업회의소는 자기 사업을 위하여 비상설부문별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비상설부문별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토의한다.

제14조 (상업회의소의 임무와 권한)

상업회의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 상업회의소, 기업, 단체들과 대외경제협력 및 교류를 위한 합의서 같은 것을 체결하고 리행한다.
2. 법인확인서, 수출입상품용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불가항력증명서 같은 대외무역활동에 필요한 인증문건들을 발급한다.
3. 국제무역거래조건의 해석과 관련한 규칙, 신용장통일규칙, 표준상업양식 같은 국제적인 관례, 관습, 협정내용들을 회원들에게 보급한다.
4.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박람회, 전람회, 상담회 같은 것을 조직한다.
5.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기업 또는 개인사이에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상업적련계를 맺어준다.
6. 수출상품, 특허기술제품, 상표의 소개, 수출기지조성, 판로개척, 물자교류, 투자유치 같은 문제들에 대한 자문봉사를 한다.
7. 특허권소유자 또는 상표권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특허와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한 대리봉사를 한다.

제15조 (회원의 가입대상)

상업회의소의 회원으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입할수 있다.

제16조 (회원의 가입신청)

상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상업회의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상업회의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 (회원가입심의회와 회원등록)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상업회의소는 그것을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원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회비납부)

회원은 상업회의소에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루설금지)

상업회의소는 사업과정에 알게 된 회원들의 내부자료를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회원의 제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에는 제명한다.

상업회의소는 회원이 제명되었을 경우 회원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회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소청원과 그에 대한 료해처리)

상업회의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신소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30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주체72(1983)년	10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
주체76(1987)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호로 수정보충
주체79(1990)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수정보충
주체82(1993)년	1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1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68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7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8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1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79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6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2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4호로 수정보충
주체106(2017)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51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6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9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세관법의 기본

제1조 (세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립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 기타 물품에 대한 통관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며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립시반출입물품이란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가 다른 나라로 다시 내가는 조건하에서 관세가 보류, 면제되는 물품이다.

립시반출입물품에는 중계무역품, 되거리무역품, 가공무역품, 외국투자기업이 생산 및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거나 생산하여 내가는 물품, 국제상품전람회, 전시회를 목적으로 들여오거나 내가는 물품, 보세물품, 임대물품 등이 속한다.

2. 기타 물품이란 상업적거래의 성격이 없거나 자체소비를 위한 물품이다.

기타 물품에는 지원, 협조, 기증물품, 다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기관, 우리 나라 주

재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과 그 성원들이 들어오거나 내가는 생활용품, 경영
용물품, 식료품과 상품견본, 수하물 등이 속한다.

3. 면세상품이란 해당 제한된 인원에게만 판매할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시킨 물품이다.
4. 반출입금지품이란 국가적조치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 나
라에서 다른 나라에 내보내는것이 금지된 물품이다.
5. 반출입통제품이란 국가적조치에 따라 해당 시기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
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내보내는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물품이다.
6. 세관통제구역이란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임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
물, 국민의 휴대품, 기타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검사와 감독이 진행되는 장소이다.
세관통제구역에는 국경교두와 종합무역장, 무역항의 부두, 구내, 창고 및 야적장, 국경
철도역구내, 국제비행장과 국제우편국의 지정된 검사장소와 수하물 또는 우편물의 보관
장소, 해상무역장, 국내지역과 특수경제지대의 출입통로를 비롯한 해당 장소가 속한다.
7. 임시세관통제구역이란 세관통제구역밖에 있는 수출입화물과 임시반출입물품을 비롯한
해당 물품을 검사, 감독하기 위하여 세관이 임시로 정한 장소이다.
임시세관통제구역에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현지세관검사, 이동세관검사가 진행되는곳,
임시반출입물품을 취급하는 공장, 창고를 비롯한 해당 장소가 속한다.
8. 관세경계선이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
는 경계선이다.
관세경계선에는 국경통과지점과 해상무역장, 국내지역과 특수경제지대사이 출입통로
가 속한다.

제3조 (세관의 지위 및 설치)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임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국민의 휴대
품, 기타 물품을 검사하고 관세, 선박톤세를 부과하며 관세가 보류, 감면된 물품의 리용, 보
관, 처리정형을 감독하고 밀수행위를 조사단속하는 감독통제기관이다.

국가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비행장, 국제우편물취급장소, 특수경제지대 같은
필요한 곳에 세관을 설치한다.

제4조 (세관의 임무)

세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정형을 감독통제한다.
2.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을 검사하며 감독한다.
3. 관세와 선박톤세를 부과한다.
4. 관세가 보류, 감면된 임시반출입물품, 면세상품의 리용과 보관, 처리정형을 감독한다.

5. 보세물품의 보관, 가공, 조립, 전시와 면세상점운영과 관련한 조건들을 검토심 의한다.
6. 정해진 기간안에 내가지 않거나 정해진 용도와 어긋나게 처리한 립시반출입물품, 면세 상품에 대한 처분대책을 세운다.
7. 밀수행위를 조사단속한다.
8. 세관통계를 작성한다.
9.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5조 (세관의 권한)

세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을 검사할수 있으며 밀수혐의가 있을 경우 에는 해당 장소와 운수수단, 공민의 몸을 수색한다.
2.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의 통관과 관련한 문건을 요구한다.
3. 세관검사 및 감독과정에 나타난 위법행위를 단속처리하며 그에 대한 시정대책을 요구 한다.
4. 수출입화물과 립시반출입물품, 면세상품의 리용, 보관, 처리와 관세, 선박톤세, 세관료 금납부와 관련한 문건과 장부를 조사하거나 검열한다.
5. 위법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수출입화물과 립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기타 물품, 공민에 대한 통관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억류, 압수, 몰수한다.

제6조 (단속통제강화원칙)

국가는 반출입금지품과 반출입통제품, 통관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국경통과지점에서 소독하 지 않은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단속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반출입금지품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으며 반출입통제품은 국가의 승인을 따로 받았을 경우에만 들어오거나 내갈수 있다.

반출입금지품은 우리 나라 령역을 거쳐 중계수송할수 없다.

제7조 (통관절차의 간소화원칙)

국가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기술장비들을 현대화하여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 공민 에 대한 통관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제8조 (관세부과원칙)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면제하 거나 낮게 부과하며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도록 한다.

제9조 (세관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원칙)

국가는 세관과 그와 련관된 기관들의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가르도록 한다.

세관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0조 (세관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제고,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세관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세관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세관일군은 근무시 세관제복을 착용하며 세관일군이 아닌 성원은 세관제복을 착용할수 없다.

제11조 (세관분야의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2조 (세관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국경을 통하여 수출입화물과 임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휴대품, 기타 물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법인, 외국인도 속한다.

특수경제지대의 세관사업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13조 (세관등록)

무역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단체로부터 지원, 협조, 무상기증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조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은 세관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14조 (세관등록신청과 승인)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관등록신청서와 함께 영업허가증을 비롯한 필요한 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15조 (세관등록의 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업종과 경영범위 같은 세관등록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해당 세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이 해산 또는 파산되는 경우 투자관리기관과 재판기관은 해산 또는 파산정형을 제때에 해당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수속)

수출입화물과 임시반출입물품, 기타 물품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세관수속은 해당 수출입화물, 임시반출입물품, 기타 물품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제17조 (세관수속의 당사자)

세관수속은 수출입화물과 임시반출입물품, 기타 물품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세관수속을 할수 있다.

국경통과지점에서 반출입을 위한 세관수속은 무역화물입자대리기관이 한다.

제18조 (세관수속문건의 제기)

세관수속문건은 전자무역수속체계를 통하여 중앙세관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출입계획, 가격, 반출입승인문건과 상품매매계약서, 계산서를 비롯한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로 지정된 대상은 세관수속문건을 해당 세관에 직접 낼수도 있다.

제19조 (세관수속의 변경)

세관수속을 끝낸 다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관수속문건에 밝힌 국경통과지점, 수하인, 도착지 같은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중앙세관지도기관에 신고하여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우리 나라를 경유하는 운수수단의 세관수속)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여야 통과할수 있다. 이 경우 세관수속당사자는 운수수단에 대한 문건과 실은 화물의 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임시반출입물품의 처분과 관련한 수속)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반출입물품을 우리 나라에서 처분하려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제19조에 따라 수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중계수송화물의 세관수속)

우리 나라 영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화물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화물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이 경우 반출입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세관수속을 할수 있다.

제23조 (공민의 휴대품과 짐에 대한 신고)

공민은 국경통과지점, 국내지역과 특수경제지대사이의 출입통로로 통과하는 경우 휴대한 물품과 귀금속, 보석, 화폐, 유가증권, 따로 부친 짐에 대한 세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제24조 (세관의 검사대상)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수출입화물과 임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

우편물, 공민의 휴대품, 기타 물품은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갈수 없다.

제25조 (세관검사면제대상)

당, 국가, 정부대표단성원,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의 외교
려권소지자,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령사협약에 따라 세관검사를 면제하기로 되
여있는 대상과 운수수단, 그밖에 따로 정한 공민의 휴대품과 짐, 외교우편물과 신서물에 대
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세관검사를 할수 있다.

제26조 (세관검사장소)

세관검사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비행장, 해상무역장, 국제우편물취급장소와
그밖의 정해진 곳에서 한다.

공민의 휴대품과 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나 배 같은 운수수단안에서도 할수 있다.

제27조 (세관도착신고)

수출입화물과 임시반출입물품, 국제우편물, 기타 물품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짐입자
또는 운수수단책임자, 국경철도역, 국제비행장, 체신기관은 세관에 도착신고를 하고 해당 문
건들을 내야 한다.

제28조 (세관검사방법)

세관검사는 짐입자 또는 대리인의 립회밀에 2명의 세관일군이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짐
입자 또는 대리인밖의 인원은 검사장소에 들어갈수 없다.

세관검사는 기계로 하거나 헤쳐보는 방법으로 한다.

세관은 수속문건과 현품을 대조확인하여 수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 승무원실 같은 필요한 장소를 검사할수 있다.

다른 나라 운수수단에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이 있다고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물품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감독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한다.

제30조 (국경통과지점에서의 상하차, 운수수단의 이동)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한 화물과 운수수단은 세관검사를 받았거나 세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
우에만 짐을 싣고 부리우거나 이동할수 있다.

제31조 (세관의 봉인)

세관은 필요에 따라 세관이 감독하는 짐 또는 그것을 보관한 창고, 짐함, 운수수단의 짐칸 같
은것에 봉인을 할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수 없다.

제32조 (검사, 검역, 검수, 검열기관들과의 협력)

세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있는 통행검사기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 무역화물검수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검사과정에 검사, 검역, 검수, 검열을 받게 되어있는 대상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넘겨받은 대상물에 대한 검사, 검역, 검수, 검열결과를 세관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제33조 (잘못 들여온 화물의 처리)

잘못 들여온 다른 나라의 화물,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수 있다.

제34조 (세관이 관할하는 짐에 대한 감독)

세관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비행장 같은데서 관할하고있는 짐이 손실되거나 승인없이 처분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 임자없는 짐 같은것은 세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 (관세가 보류, 감면된 물품에 대한 감독)

세관은 관세가 보류, 감면된 임시반출입물품과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공장, 창고, 면세상점에서 물품의 리용, 보관, 처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중계무역품, 되거리무역품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밖에 내다가 보관할수 없다.

제36조 (임시반출입물품의 취급에서 금지사항)

임시반출입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수입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세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시반출입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7조 (정해진 기간안에 내가지 않는 임시반출입물품의 처리)

우리 나라에 들여온 임시반출입물품은 정해진 기간안에 다른 나라로 다시 내가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내가지 않는 임시반출입물품은 세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관세가 보류, 감면된 물품에 대한 신고자료의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시반출입물품의 리용과 보관, 처리와 관련한 신고자료를 정기적으로 세관에 정확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이동세관검사, 통과화물의 검사)

세관은 이동검사를 하거나 우리 나라 영역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 화물을 검사할수 있다.

이동세관검사절차, 우리 나라 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의 세관검사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0조 (세관검사의뢰와 회보)

세관은 국경통과지점에서 검사할수 없는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화물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화물임자는 화물의 도착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화물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세관검사를 의뢰한 화물의 수송)

세관검사를 의뢰한 화물은 감독이송조건을 갖춘 운수수단으로만 수송할수 있으며 도착지까지 세관의 감독밑에 수송한다.

해당 교통운수기관은 세관검사를 의뢰한 화물을 책임적으로 수송하며 세관의 승인없이 수송도중에 부리우거나 도착지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2조 (세관검사와 감독조건의 보장)

세관검사를 받거나 세관이 감독하는 화물을 수송, 보관, 리용, 가공, 처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검사 또는 감독과 관련한 세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국제우편물의 리용에서 금지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나 인쇄물 속에 물품을 넣지 말며 소포속에도 편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 같은것을 넣지 말아야 한다.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반출입금지품과 반출입통제품을 들어오거나 내가는 행위, 장사를 목적으로 물품을 들어오거나 내가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 (공민의 휴대품과 물품)

우리 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휴대품과 정해진 기준의 물품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제45조 (이사짐과 상속재산의 반출입)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이사짐과 상속재산이라도 반출입금지품은 들어오거나 내갈수 없으며 반출입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어오거나 내갈수 있다.

제4장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제46조 (관세의 부과와 납부)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해당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의 부과는 해당 세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부과기준가격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승인한 가격한도에 기초하여 무역거래대방과 맺은 계약가격에 준한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공민의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기준가격은 소매가격으로 한다.

제48조 (관세의 계산)

관세의 계산은 세관수속당시에 신고한 해당 물품의 가격과 관세률, 국가기준환률에 따라 한다.

세관은 반출입물품의 가격이 신고한 가격과 차이나는 경우 가격을 사정하고 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 (수출입관세의 부과대상과 관세률의 제정, 공포)

수출입관세의 부과대상은 관세품목에 따른다.

수출입관세품목규정과 관세률의 제정 및 조정은 해당 비상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수출입관세품목과 관세률을 공포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0조 (면세한도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공민의 물품에 대한 관세납부)

정해진 면세한도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공민의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면세한도기준과 관세률은 중앙세관지도기관이 정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데 따른다.

제51조 (특혜관세의 적용)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 협정, 협약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특수경제지대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제52조 (특수경제지대에서 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률적용)

특수경제지대에 들어온 다른 나라 상품을 특수경제지대밖의 국내지역으로 내오는 경우 기본 관세률에서 특혜관세률을 뺀 관세률을 적용한다.

제53조 (관세률이 정해져있지 않은 물품의 관세률)

관세률이 정해져있지 않은 물품에는 그와 유사한 물품의 관세률을 적용한다.

제54조 (수출입관세의 납부시점)

수출입관세는 해당 화물과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끝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화물과 물품은 세관을 통과할수 없다.

제55조 (관세의 납부방법)

수출입관세는 관세납부계산서에 따라 전자결제체계를 통하여 납부한다.
정해진 면세한도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공민의 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납부통지서에 따라 정해진 기일안에 세관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관세의 면제대상)

다음의 화물과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국가적조치에 따라 들여오는 물품
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 협정, 협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게 되어있는 화물과 물품
3. 임시반출입물품과 면세상품, 기타 물품
4. 정해진 기준의 국제우편물과 공민의 물품

제57조 (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온 설비, 물품가운데 반입통제 품이 있거나 들여온 설비와 물품,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 영역에서 판매하려 할 경우
2. 면세상품을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게 판매하였거나 처리하였을 경우
3. 국제상품전람회, 전시회를 목적으로 임시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반출입물품을 국내에서 처분하는 경우
5. 외교려권을 가진 공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나 그 성원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
6. 국제우편물 또는 공민의 물품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58조 (면제대상의 관세납부절차)

이 법 제57조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관세의 추가부과)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거나 적게 부과하였을 경우 해당 화물을 통과시킨 날부터 3년 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수 있다.

세관은 해산 또는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이 반입한 임시반출입물품을 국내에서 처분하려는 경우 그 가치에 따르는 관세액을 계산하여 청산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0조 (관세의 반환사유)

세관은 수입품을 퇴송시키거나 수출품이 퇴송되어오는 경우와 관세의 부과 또는 계산을 잘못하여 관세를 초과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관세를 반환한다.

제61조 (관세의 반환신청)

관세납부당사자는 이 법 제60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으로 해당 관세를 돌려줄것을 세관에 요구할수 있다.

세관은 관세반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의 설립운영)

대외경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을 설립, 운영한다.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을 설립,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보세기간)

보세기간에는 보세물품에 대한 관세를 임시보류한다.

보세공장, 보세창고의 보세기간은 2년이며 보세전시장의 보세기간은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64조 (보세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짐임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65조 (보세물품의 반출입담보)

보세물품을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역밖으로 내가려는 경우에는 관세액에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보세물품이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보세물품이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수 있다.

보세기간이 지난 다음 보세지역밖으로 내가지 않는 물품은 세관이 매각처리한다.

제66조 (면세상점의 설치, 운영)

면세상점은 국경통과지점 또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위한 봉사구역 같은곳에 내을수 있다.

면세상점의 운영은 내각의 승인을 받은 대외봉사기관과 외교단봉사기관이 한다.

제67조 (면세상점의 리용과 면세상품의 판매기준)

면세상점은 다른 나라에 오가는 공민, 관세면제특전을 가진 외교관과 그 가족들만이 리용할

수 있다.

면세상품의 일인당 판매기준은 중앙세관지도기관에서 정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데 따른다.

제68조 (면세상점운영에서 금지할 사항)

대외봉사기관과 외교단봉사기관은 면세상점운영과정에 판매기준을 초과하여 상품을 파는 행위, 정해진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상품을 파는 행위, 상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9조 (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의 부과조치)

중요공업부문과 나라의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의 부과대상과 세률, 부과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70조 (선박톤세의 부과)

우리 나라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우리 나라 소유의 배,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 소유의 배에는 선박톤세를 물린다.

선박톤세는 세관이 발급한 선박톤세납부통지서에 따라 외국선박대리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받아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한다.

제71조 (선박톤세의감세)

정기선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항에 나드는 배에 대하여서는 선박톤세의 20%를 덜어준다.

제72조 (선박톤세의 면제대상)

다음의 배에 대하여서는 선박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선박톤세가 면제된 무역항에 들어온 배
2. 군함, 구조선, 실습선, 탐사선, 병원선
3. 수리하러 온 배와 해난사고 또는 고장으로 들어온 배
4. 연료, 음료수,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립시로 항에 들어왔다가 48시간 안으로 나가는 배
5. 선원과 려객의 의료상방조를 받기 위하여 들어온 배
6.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협정, 협약에 따라 선박톤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된 배
7.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우리 나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을 싣고 들어오는 배

제73조 (선박톤세의 계산)

선박톤세는 배의 순톤수와 톤당 세액에 준하여 계산한다.

톤당 세액은 중앙세관지도기관이 정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데 따른다.

제74조 (세관료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료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기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료금을 내야 한다.

세관료금에는 이동세관검사료금, 세관검사설비리용료금, 세관감독료금 같은것이 속한다.

세관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75조 (국경료금)

세관통제구역에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검역, 검수료금과 같은 국경료금은 세관이 통일적으로 받는다.

해당 기관은 국경료금계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세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76조 (관세와 톤세, 각종료금의 납부화폐)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국경료금은 국가가 정한 화폐로 납부한다.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77조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세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8조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와 복종)

세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아래 세관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모든 세관은 중앙세관지도기관에 복종한다.

제79조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의 처리)

국경통과지점에서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세관과 통행검사기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을 비롯한 련관기관일군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집체적으로 협의대책한다.

협의회는 세관장이 주관하며 합의된 문제들은 세관장의 지휘밑에 처리한다.

제80조 (세관과의 합의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대방과 맺는 협정, 합의서, 계약서에 세관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중앙세관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81조 (세관의 협조의뢰)

세관은 밀수행위를 조사, 단속하거나 또는 관할하고있던 집, 운수수단이 없어졌거나 기술장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기관, 국경경비기관, 전문감정기관, 과학연구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협조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때에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제82조 (세관의 조사, 검열)

세관은 무역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세납부와 관련한 문건을 조사하거나 관세가 보류, 감면된 립시반출입물품, 면세상품의 리용과 보관, 처리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제83조 (세관통계작성)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립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기타 물품의 반출입과 국민의 입출국정형에 대한 통계자료작성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84조 (벌금)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1,000~5,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세관검사와 관련한 요구에 불응하여 세관검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관세,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정해진 기일안으로 물지않을 경우
3. 세관통계구역에서 환경보호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85조 (통관중지, 억류, 압수, 몰수)

세관은 화물,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물품을 비법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경우 통관을 중지시키거나 억류, 압수할수 있다.

밀수품과 밀수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과 물품,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은 몰수한다.

제86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2. 외화와 귀금속, 보석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내갔거나 내가도록 도와주었을 경우
3.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빼내갔을 경우
4. 세관이 감독이송하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수송하지 않았거나 수송도중에 빼돌렸을 경우
5. 립시반출입물품을 비법적으로 국내에서 처분하였거나 관세를 탈세하였을 경우
6.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세관이 지정한 은행에 넣지 않았을 경우

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87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88조 (신소와 그 처리기간)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세관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

주체98(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6호로 채택

제1조 (수출품원산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품원산지란 수출품을 생산한 나라의 명칭이다.
2. 수출품원산지증명이란 수출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여주는 사업이다.
3. 수출품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기관이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인증 문서이다.
4. 수출당사자란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5. 수입당사자란 공화국령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다.

제3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협약의 효력)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 사이에 맺은 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은 조선상업회의소와 해당기관이 한다.

제6조 (원산지를 우리 나라로 하는 수출품)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품의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 공화국령역에서 채취한 광물과 그 가공품
2. 공화국령역에서 채집한 식물과 그 가공품

3. 공화국령역에서 사육한 동물과 그 가공품
4. 공화국령역에서 잡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
5. 우리 나라의 원료, 자재로 생산한 제품
6. 다른 나라에서 부분품을 들여다가 새롭게 만든 제품
7. 수입한 원료, 자재를 리용하여 공화국령역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제품

제7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원칙)

원산지증명기관은 해당 수출품이 원산지증명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품원산지증명의 신청당사자)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신청은 수입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당사자가 한다.
수출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대리위 임장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기관에 수출품원산지 증명신청서를 내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품명, 수량, 생산지 같은 것을 밝히 고 신청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제10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원산지증명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신청서를 접수 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당사자와 수입당사자의 명칭, 수송수단, 품명, 수량, 발급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부수에 따르는 유일번호와 인증도장을 찍는다.

제11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발급의 부결)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의 내용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고치도록 신 청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신청자가 결함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언어)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조선어와 함께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를 표기할수도 있다.

제13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원산지증명기관에 수출 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을 할수 없다.

제14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 주소, 재발급리유, 발급받았던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분의 부수, 발급날자, 번호 같은 것을 밝히고 원산지증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표식을 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에 기입했던 번호를 다시 기입한다.

제16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회수)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오손리유로 그것을 다시 발급할 경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요금)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해진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18조 (자료의 보관기일)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한 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산지증명관련자료요구에 대한 처리)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입당사자가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알려줄수 있다.

제20조 (감독통제)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중지, 회수, 벌금부과)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였거나 승인없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하거나 발급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23조 (신소와 그 처리)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주체91(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03호로 채택

제1장 정치

- 제1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 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 제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
- 제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수 있다.
- 제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제

- 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 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 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 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리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
-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 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 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수 있다.
- 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로임기준을 구행정부와 공화국 해당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같은 로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수 있다.
-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률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립법회의결정은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수 없다.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3장 문화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사회과 학과목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한 주민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수 없다.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 유물을 구 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 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받을 수 있다.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리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 공화국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이상 거주한 자
4. 최고립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제43조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

제44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7살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45조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해당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6조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47조 주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48조 주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민의 신소와 청원을 공정하게 심의, 처리한다.

- 제49조** 주민은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50조** 주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희망과 재능에 따라 주민은 직업을 선택할수 있으며 노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
- 제51조** 주민은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은 공화국이 정한 공휴일, 명절일의 휴식을 보장 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은 민족적풍습에 따르는 휴식을 보장 받을수 있다.
- 제52조** 주민은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한 물질적방조를 받는다.
- 제53조** 주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54조**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 제55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산전산후휴가제같은 시책으로 애기 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한다.
- 제56조** 주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보호한다.
- 제5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 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제5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국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닌다. 신의주특별 행정구에서 군대초모질서는 따로 정한다.
- 제59조** 법규는 주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구관리의 기본수단이다. 주민은 신의주특별 행정구에서 제정한 법규를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구

제1절 립법회의

- 제60조** 립법회의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립법기관이다. 립법권은 립법회의가 행사한다.
- 제61조** 립법회의 의원수는 15명으로 한다. 립법회의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 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62조 립법회의 의원으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국민이 될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립법회의 의원으로 될수 있다.

제63조 매기 립법회의 임기는 5년이다. 립법회의 의원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64조 립법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 폐지한다.
2. 구의 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 승인한다.
3. 채택한 법규를 해석한다.
4. 장관으로부터 행정부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5. 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6. 구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판사, 지구재판소 소장, 판사를 임명, 해임한다.

제65조 립법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분기 1차, 비정기회의는 정기회의 휴회기간에 립법회의 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회의 기간은 년에 100일이상으로 한다.

제66조 립법회의는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67조 립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둔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68조 립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립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의장,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립법회의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선거된다.

제69조 립법회의 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립법회의를 사회한다.
2. 립법회의 소집날자를 정하고 공포한다.
3. 립법회의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70조 립법회의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의장이 결원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한다.

제71조 립법회의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다. 장관과 행정부도 립법회의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72조 립법회의는 결정을 낸다. 립법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채택된다.

제73조 립법회의는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 1개월안에 다시 심의한다. 다시 심의하여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에는 립법회의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채택한다. 이 경우 장관은 의무적으로 동의한다.

제74조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은 1개월안으로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최고립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하여 등록하거나 돌려 보내여 수정시킬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돌려보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75조 립법회의 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 받는다. 립법회의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립법회의 승인없이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다.

제2절 장관

제76조 장관을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립법기관 앞에 책임진다.

제77조 장관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수 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립법기관이 한다.

제78조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충실할 것을 선서한다. 선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제79조 장관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사업을 지도한다.
2. 립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며 명령을 낸다.
3. 행정부성원을 임명, 해임한다.
4.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5. 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검찰소 부소장, 검사, 지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6. 구경찰국 국장을 임명, 해임한다.
7. 구경찰국 국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경찰국 부국장, 부서책임자, 지구경찰서 서장을 임명, 해임한다.
8. 상장을 제정, 수여한다.
9.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이밖에 제기되는 사업을 한다.

제80조 장관은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이 구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립법회의에 돌려 보내어 다시 심의하게 할수 있다. 립법회의가 내린 한건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은 2차례까지 돌려 보낼수 있다.

제3절 행정부

제81조 행정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다.

제82조 행정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이 된다.

제83조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집행사업을 조직한다.
2. 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3.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환경보호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4. 주민행정사업을 한다.
5. 사회질서유지사업을 한다.
6. 건설총계획을 작성한다.
7.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한다.
8. 투자유치를 한다.
9. 기업의 창설신청을 심의, 승인한다.
10. 토지리용권, 건물을 등록한다.
11. 세무사업을 한다.
12. 세관검사, 위생, 동식물검역 사업을 한다.
13. 하부구조시설물을 관리한다.
14. 소방대책을 세운다.
15. 국가가 위임한데 따라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제84조 행정부는 지시를 낸다.

제4절 검찰소

제8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

제86조 검찰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가를 감시한다.
2. 법이 정한데 따라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기소를 하며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87조 구검찰소 소장으로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88조 지구검찰소 검사의 임명, 해임은 지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 검찰소 소장이 한다.

제89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검찰사업에 대한 지도는 구검찰소가 한다. 지구 검찰소는 구 검찰소에 복종한다.

제90조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앞에 책임진다.

제5절 재판소

제9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해당 재판소의 명의로 선고한다.

제92조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한다.
2.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3. 재판활동을 통하여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양한다.
4. 판결, 판정을 집행한다.

제93조 재판은 오직 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한다. 누구도 재판활동에 간섭할수 없다.

제94조 구재판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95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재판할수 있다.

제9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특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97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9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

제6장 구장, 구기

제99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한다. 구장, 구기 사용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10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장은 원형하늘색선과 흰색으로 된 띠안의 좌우아래부분에 하늘색의 오각별이 그려져 있고 그 윗부분에 하늘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씌여져 있으며 흰색의 띠로 둘러 막힌 하늘색 바탕의 중심에는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원형 밑부분과 겹친 하늘색의 띠부분에는 두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라고 흰색으로 씌여 있다. 원형하늘색 바탕의 밑부분과 하늘색띠와 겹친 부분에는 흰색선이 있다.

제10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기는 하늘색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비는 1:1.5이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령해, 령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법규제정은 이 법에 엄격히 준하여 한다.

제4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31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4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1조 (외국인기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의 창설운영을 통하여 세계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인기업의 정의)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기업의 창설부문과 창설금지대상기업)

외국투자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기공공업, 피복기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수 없다.

제4조 (투자보호원칙)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가의 법규준수의무)

외국투자는 우리 나라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외국인기업에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의 제출)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경우 기업창설신청문건을 투자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종업원수, 존속기간 같은 사항을 밝힌 기업창설신청서와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투자자의 자본신용확인서 같은 것이 속한다.

제8조 (외국인기업창설신청의 심의, 기업의 창설일)

투자관리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제9조 (외국인기업의 등록)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등록, 세무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10조 (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외국인기업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 것을 내올수 있다.

제11조 (건설의 위탁)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 나라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12조 (투자기간)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13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의 취소사유)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자가 정한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업종의 변경)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생산 및 수출입계획의 제출)

외국인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년, 분기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외국인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우리 나라에서 원료, 자재,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17조 (외국인기업의 돈자리)

외국인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제18조 (재정회계)

외국인기업은 재정회계문건을 기업에 두어야 한다.

기업의 재정관리와 회계는 외국인기업에 적용하는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한다.

제19조 (로력의 채용)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제20조 (직업동맹조직)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리윤의 재투자와 국외송금)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을 재투자할수 있으며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22조 (보험가입)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에 들어야 한다.

제23조 (세금의 납부)

외국인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외국인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24조 (관세의 면제)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내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 (등록자본)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수 있다.
등록자본은 존속기간안에 줄일수 없다.

제26조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의 료해)

투자관리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을 료해할수 있다.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7조 (기업의 해산 및 존속기간연장)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 (제재)

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중지, 기업해산 같은 제재를 준다.

제29조 (기업의 해산 및 파산등록과 재산처리)

외국인기업은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제30조 (분쟁해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주체98(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3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7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제1조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로력과 채용, 로동과 휴식, 로동보수, 로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정업원의 해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장하며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로력채용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기본으로 채용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관리 인원이거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제3조 (로동조건의 보장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4조 (로동보수지불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수를 정확히 지불하며 로동보수액을 체계적으로 늘인다. 종업원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5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공민인 종업원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6조 (타사업동원금지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은 자연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제7조 (지도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8조 (적용대상)

이 법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는 외국인투자은행과 외국기업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제9조 (로력보장기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는 사업은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이 한다.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보장 사업을 할수 없다.

제10조 (로력보장신청)

로력을 보장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력보장신청서를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로력보장신청서에는 채용할 로력자수와 성별, 연령, 업종, 기술기능급수, 채용기간, 로동보수관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11조 (로력모집 및 보장)

로력보장신청을 받은 로동행정기관은 30일안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로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의 로력을 다른 지역에서 보장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로동행정기관과 합의한다.

제12조 (로력채용)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로동행정기관이 보장한 로력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은 채용하지 않을수 있다.

제13조 (외국인로력채용)

외국인투자기업은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외국인로력채용문건을 내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문건에는 이름,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지식정도, 기술자격, 직종 같은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4조 (로동계약의 체결과 리행)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직업동맹조직과 로동계약을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로동계약에는 로동시간, 휴식, 로동조건, 생활조건, 로동보호, 로동보수지불, 상벌문제 같은 것을 밝힌다.

제15조 (로동계약의 효력)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과 맺은 로동계약문건을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로동계약의 변경)

로동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변경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로동과 휴식

제17조 (로동시간)

종업원의 로동시간은 주48시간, 하루 8시간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로동시간을 정해진 시간보다 짧게 정할수 있다.

계절적영향을 받는 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연간 로동시간범위에서 실정에 맞게 로동시간을 달리 정할수 있다.

제18조 (로동시간의 준수)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정해진 로동시간안에 로동을 시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시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다.

종업원은 로동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9조 (일요일, 명절일의 휴식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일요일에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절일과 일요일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정기휴가, 보충휴가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를 주며 중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종업원에게는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산전, 산후휴가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임신한 여성종업원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로동보수

제22조 (로동보수의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로동보수를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주는 로동보수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

제23조 (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투자관리기관이 한다.

월로임최저기준은 종업원이 로동과정에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보상하고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24조 (로임기준의 제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생산수준과 종업원의 기술기능숙련정도와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지는데 맞게 로임기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5조 (휴가비의 지불 및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정기 및 보충휴가비는 휴가전 3개월간의 로임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로임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산전산후휴가비의 지불규모와 방법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6조 (생활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이 기업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27조 (휴식일로동에 따르는 가급금)

외국인투자기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절일과 일요일에 종업원에게 로동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못하였을 경우 일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28조 (연장작업, 야간작업에 따르는 가급금)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시간외의 낮연장작업을 시켰거나 로동시간안의 밤작업을 시켰을 경우 일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로동시간외의 밤연장작업을 시켰을 경우에는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상금의 지불)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30조 (로동보수의 지불)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수를 정해진 날자에 전액 화폐로 주어야 한다.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기업에서 나가는 종업원에게는 해당 수속이 끝난 다음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5장 로동보호

제31조 (로동안전, 산업위생조건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미리 막으며 종업원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로동안전교양)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로동안전기술교육기관과 내용은 업종과 직종에 맞게 자체로 정한다.

제33조 (위험개소 제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종업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개소를 정비한 다음 생산에 계속하여야 한다.

제34조 (로동안전조치)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과정에 가스, 먼지, 고열, 습도, 방사선, 소음, 진동, 전기마당 같은 유해로운 요소들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는 안전주의표식을 하며 로동재해발생에 대처할수 있는 보호수단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35조 (여성종업원의 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은 여성종업원을 위한 로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임신하였거나 젖먹이어린이를 키우는 여성종업원에게는 연장작업, 밤작업을 시킬수 없다.

제36조 (탁아소, 유치원운영)

외국인투자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제37조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보호약제, 해독제약, 피부보호제, 세척제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사고의 처리 및 사고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해당하는 치료대책을 세우며 기업소재지의 노동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기업소재지의 노동행정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기관은 사고심의를 조직하고 사고원인을 밝히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제39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나라 종업원이 병, 부상 같은 원인으로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 년금의 지불과 정양, 휴양, 견학 같은 것이 속한다.

제40조 (보조금, 년금의 계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 년금은 해당 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제41조 (사회보험기금의 조성)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로 조성한다.

제42조 (사회보험료의 납부)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은 달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비율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43조 (문화후생기금의 조성 및 리용)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일부를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하고 쓸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의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체육사업, 후생시설운영 같은데 쓴다.

제7장 종업원의 해임

제44조 (종업원의 해임의 기본요구)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력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이나 일할 나이가 지나기 전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종업원을 내보낼수 없다.

종업원을 내보내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5조 (종업원의 해임사유)

종업원을 내보낼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질병, 부상으로 자기의 현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서 일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로력이 남을 겨우
3. 로동규률을 위반하여 엄중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4. 기술기능수준의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수 없을 경우
5.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을 경우

제46조 (종업원해임에 대한 합의 및 통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을 내보내려고 할 경우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 다음 사전에 당사자와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7조 (종업원을 해임시킬수 없는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내보낼수 없다.

1. 병, 부상으로 치료받고있는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2. 산전, 산후휴가, 어린이에게 젖먹이는 기간일 경우

제48조 (종업원의 사직)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직할 것을 제기할수 있다.

1. 병이 생겼거나 가정적인 사정으로 일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기술기능이 부족하여 맡은 일을 수행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대학, 전문학교, 기능공학교에 입학하였을 경우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9조 (벌금 및 기업활동의 중지)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게는 벌금을 물리거나 기업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0조 (신소와 그 처리)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분쟁해결)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주체97(2008)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7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4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65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기본

제1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관리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 리용하는 기업관리의 한 부분이다.
2. 재정수입이란 경영활동과정에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형태의 화폐자금이다.
3. 재정결산이란 일정한 기간 기업의 경영활동결과를 재정적측면에서 수자적으로 확정, 검토, 총화하는 경제활동이다.
4. 비용이란 기업이 생산 또는 봉사에 쓴 모든 화폐적지출이다.
5. 자본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밑천을 화폐적으로 표현한것이다.
6. 등록자본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기업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한 자본이다.
7. 고정재산이란 현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산과정에 여러번 참가하여 자기의 가치를 새로 생산되는 생산물에 일부분씩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8. 류동재산이란 한번의 생산순환과정에 완전히 소비되어 새로운 생산물에 자기의 가치를 전부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9. 차입자본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끌어들인 자본이다.
10. 총자본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자본의 총액이다.

제3조 (재정관리의 책임자)

외국투자기업에서 재정관리의 제1책임자는 기업책임자이며 제2책임자는 기업재정 회계책임자이다.

제4조 (기업의 돈자리)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지역에 있는 대외결제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세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재정계획의 작성 및 등록)

외국투자기업은 재정계획을 자체로 세운다. 이 경우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한다.

제6조 (재정관리문건의 작성양식과 보관기일)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관리문건은 중앙세무지도기관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며 문건 분류표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한다.

제7조 (투자재산의 보호원칙)

국가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지사, 사무소, 대리점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자본의 조성

제9조 (자본의 조성 방식)

외국투자기업은 출자, 신용, 증여, 리윤축적 같은 방식으로 자본을 조성할수 있다.

제10조 (자본의 구성)

외국투자기업의 자본은 등록자본과 차입자본으로 구성한다.

등록자본에는 투자가가 기업창설을 위하여 투자한 자본, 재투자한 자본, 증여자본같은것이 속하며 차입자본에는 신용, 대부자본 같은것이 속한다.

제11조 (자본의 규모와 비율)

외국투자기업의 총자본과 등록자본, 차입자본의 규모와 비율은 해당 법규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자체로 정한다.

제12조 (출자)

투자가는 외국투자기업 창설을 위하여 재산, 재산권, 기술비결을 출자할수 있다.

출자의 종류와 구성비율은 자체로 정한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의 출자비율은 등록 자본의 20%를 넘을수 없다.

제13조 (출자재산의 가치평가)

외국투자기업창설을 위하여 출자하는 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치는 해당 시기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출자당사자들이 정한다. 이 경우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는다.

제14조 (출자기간)

출자는 외국투자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1년범위안에서 연장할수 있다.

제15조 (출자완료의 확정시점)

외국투자기업의 출자완료확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재산은 거래 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때
2.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내고 영업장소에 가져다 놓았을 때
3. 부동산은 해당 등록기관에서 명의변경을 하였을 때
4. 재산권은 해당 증서를 넘겨받아 이전수속을 끝냈을 때

제16조 (고정재산의 등록)

외국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장소별, 형태별로 구분하여 고정재산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등록가치는 계약서와 령수증, 계산서에 반영된 시초가격으로 한다.

제17조 (고정재산의 폐기, 양도, 저당, 재평가)

외국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폐기하거나 양도, 저당, 재평가하려 할 경우 해당 세무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류동재산의 실사)

외국투자기업은 달마다 류동재산을 현물재산과 화폐재산으로 나누어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화폐재산의 관리)

외국투자기업의 현금, 예금 같은 화폐재산은 재정회계일군이 관리한다.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은 은행에 입금시킨다.

제3장 재정수입

제20조 (재정수입의 구성)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수입은 기본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구성한다.

기본수입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업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입이 속하며 기타 수입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수입이 속한다.

제21조 (기본수입의 구분)

외국투자기업의 기본수입은 업종에 따라 생산물판매 수입, 상품판매 수입, 건설공사인도수입, 봉사수입, 운임수입, 요금수입, 임가공수입 같은것으로 구분한다.

제22조 (기타 수입의 구분)

외국투자기업의 기타 수입은 고정재산 및 류동재산판매수입, 배당수입, 리자수입, 고정재산 및 부동산임대수입, 특허권사용료수입, 지사 또는 국외투자기업수입, 환자시세편차리익금수입, 위약금수입, 종업원들에게 적용한 변상수입 같은것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재정수입의 확정시점)

재정수입의 확정시점은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출하를 시작하였거나 봉사제공을 시작한 날이다.

재정수입은 최종적으로 생산물과 봉사대금이 출납, 금고, 은행돈자리에 입금되었을때와 창고에 화폐적가치로 계산할수 있는 현물이 입고되었을때 확정한다.

제4장 비용

제24조 (비용의 구성)

외국투자기업의 비용에는 원가와 세금 및 요금, 기타 지출이 속한다.

제25조 (원가항목)

외국투자기업의 원가항목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감가상각금, 로력비, 물자구입경비, 판매비, 기업관리비 등 업종수행을 위하여 자체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출한 자금이 속한다.

제26조 (세금항목)

외국투자기업의 세금항목에는 기업소득세를 제외한 재산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 관세가 속한다.

제27조 (요금항목)

외국투자기업의 요금항목에는 사회보험료, 토지사용료, 도로사용료, 오염물질 배출보상료와 기타 수수료같은것이 속한다.

제28조 (기타지출항목)

외국투자기업의 기타 지출항목에는 연상비, 리자, 환자시세편차손실금, 합숙 및 기능공학교 운영비, 출퇴근빠스비, 직업동맹사업비, 원가초과비, 연체료, 위약금, 벌금 등 업종과 관련없이 지출된 모든 자금이 속한다.

제29조 (비용지출의 확정시점)

외국투자기업의 비용지출확정시점은 기업의 출납이나 은행돈자리에서 비용이 지출된 때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비용지출확정시점에서 발급된 령수증, 전표같은 근거문건에 따라 지출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5장 리윤

제30조 (리윤의 확정기간)

외국투자기업의 리윤은 분기 또는 년에 1차 확정한다.

생산주기의 특성으로 재정수입이 분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설, 수산, 농업 같은 부분의 외국투자기업은 년에 1차 리윤을 확정한다.

분기리윤확정은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안에, 연간리윤확정은 다음해 2월안에 한다.

제31조 (리윤확정방법)

외국투자기업의 리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원가와 세금 및 요금, 기타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2조 (재정결산문건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의 분기재정결산문건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연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에 해당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제33조 (기업소득세의 확정)

외국투자기업은 연간재정결산때마다 세금법규에 따라 계산한 결산리윤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적립기금의 확정)

외국투자기업은 연간재정결산때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적립해야 할 기금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청산

제35조 (재정청산사유와 담당자)

외국투자기업은 해산 또는 파산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경우 재정청산을 하여야 한다.

재정청산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제36조 (재정청산보고서의 작성)

재정청산보고서는 청산위원회에 망라된 재정일군이 작성한다.

재정청산보고서에는 청산당시의 재정회계결산서와 재산실사표, 재산처분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 (재정청산보고서의 제출)

청산위원회는 재정청산보고서를 세무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정청산순위)

청산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청산수속비, 종업원 로임 및 보상금, 세금 및 요금 같은 재정을 우선 청산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통제 및 신고

제39조 (감독통제 기관)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세무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해당 세무기관이 한다. 세무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조 (자료요구 및 보장)

세무기관은 감독통제와 관련하여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해당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제재)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중지 같은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하여 범죄가 구성될 때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2조 (신고와 그처리)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신고받은 기관은 신고를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주체89(2000)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04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제1조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사업에서 제도와 실서를 엄격히 세워 파산되는 기업의 채권채무를 정확히 청산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파산의 정의)

이 법에서 파산이란 재판소가 채무를 리행할수 없게 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기업을 해산시키는 행위이다.

제3조 (기업의 파산조건)

채무를 정한 기간안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채무가 자기 재산을 초과하거나 엄중한 손실로 기업을 더 유지할수 없거나 일반절차로 기업을 해산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을 파산시킬수 있다.

기업파산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다.

제4조 (기업파산의 중지)

우리 나라에서 자금을 방조받을수 있거나 상환기간이 된 채무를 파산제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안에 청산할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을 파산시키지 않을수 있다.

제5조 (화해에 의한 기업파산수속의 중지)

기업파산이 제기된 후 당사자들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행중의 파산수속을 중지할수 있다.

제6조 (기업파산사건의 재판관할)

기업파산사건은 해당 기업소재지에 있는 도(직할시)재판소가 취급처리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기업파산사건은 해당 특수경제지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취급 처리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에 적용한다.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제8조 (파산제기의 당사자)

파산제기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기업과 그 채권자가 한다.
기업의 해산처리를 맡은 청산위원회도 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파산제기는 해당 재판소에 서면으로 한다.

제9조 (채권자의 파산제기)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채권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파산시킬데 대하여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3명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1명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산제기서에는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법정대표와 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 파산시킬 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밝히고 채권을 상환 받지 못한 리유, 파산제기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의 파산제기)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회의 결정에 따라 면책을 목적으로 자기 기업의 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파산제기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손해정형,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리유를 밝히고 채무 및 재산목록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산위원회의 파산제기)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절차에 따라 조직된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과정에 그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소에 파산제기를 하여야 한다.
파산제기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재산 및 채무자료와 청산절차로 기업을 해산할수 없는 리유를 밝혀야 한다.

제12조 (파산제기의 취소)

파산제기자는 기업의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파산제기를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파산제기취소신청을 해당 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파산제기의 접수, 부결)

재판소는 파산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파산제기를 접수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다.

제14조 (파산의 판결)

재판소는 파산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기업파산을 선고하고 판결서등본을 파산제기자와 해당 기업에 보내야 한다.

판결서에는 파산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이름, 파산근거, 판결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파산판결을 받은 기업의 경영활동중지)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판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회계계산과 정상적인 재산거래 및 경영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파산선고의 통지)

파산선고를 통지받은 기업은 그날부터 2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파산기업법정대표의 의무)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의 파산수속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소의 허가 없이 기업소까지,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파산과 관련한 질문에 설명을 하거나 파산수속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파산기업거래의 무효인정)

파산기업이 파산제기 6개월전 또는 파산제기후에 재산을 감추었거나 분배하였거나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 파산제기후 또는 그 30일전에 자기 채권을 법적근거없이 포기한 행위, 기업파산을 예견하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준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9조 (청산위원회의 조직)

재판소는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5일안에 2~3명으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으로서는 해당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 재정은행기관 일군 그밖의 일군이 될 수 있다.

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재판소가 임명한다.

제20조 (청산위원회의 사업)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60일까지의 채권신고기간,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과 파산선고후 20일안에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날자,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에 진 채무를 반환하여야 할 날자, 파산기업의 재산을 가지고있는자가 그것을 신고 및 반환하여야 할 날자 같은 파산수속시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파산기업의 채권자, 채무자, 파산재산소지자들에게 파산통지를 한다.
3. 파산기업의 공인, 회계장부, 재산목록 및 채권자명단 기타 문건을 넘겨받는다.
4. 파산기업법정대표의 립회밑에 기업재산의 가격을 평가한다.
5. 파산기업의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판소에 낸다.
6. 필요에 따라 파산기업의 재산에 봉인을 하고 해당한 조서를 작성한다.
7. 파산기업의 경영업무를 결속한다.

8. 기업파산선고때까지 리행하지 않은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그 리행을 중지시킨다.

제21조 (제1차 채권자회의)

청산위원회는 정한 날자에 제1차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차 채권자회의는 채권자들속에서 채권자회의 책임자를 정하고 청산위원회로부터 기업의 파산경위와 재산 및 채무 실태에 대하여 보고받는다.

제22조 (채권자회의결정)

채권자회의결정은 회의에 참가한 채권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고 그들의 채권액이 파산채권 총액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채택된다.

채권자회의결정은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제23조 (채권자의 채권신고)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안에 청산위원회에 서면으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 및 채권발생근거 같은 것을 밝히며 채권밖의 청구권을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그와 관련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채권의 등록)

청산위원회는 채권신고를 받는 차제로 채권등록을 하여야 한다.

채권등록은 채권신고문건의 양식에 따라 한다.

제25조 (채권신고의 무효)

채권신고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무효이다.

파산에 대하여 통지한 청산위원회는 그에대하여 답변이 없는 채권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청산위원회의 채권조사)

청산위원회는 채권조사기간안에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채권조사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는 관계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알아보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 (의견있는 채권의 처리)

청산위원회는 의견이 제기된 채권에 대하여 관계있는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의견제기자를 대상으로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채권확정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재판소는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고 그 결과를 청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8조 (채권의 확정)

신고내용과 조사내용이 차이나는 채권,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채권의 확정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제29조 (채권표의 작성)

채권의 조사 및 확정을 끝낸 청산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채권표를 만든다.

1. 우선권의 유무에 따라 채권을 구분하고 채권액크기의 순위로 기록한다.
2. 채권밖의 청구권은 리자, 손해보상금, 위약금, 벌금, 수수료, 소송비용 같은 것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3. 상환기간이 되지 않은 채권은 파산선고시점을 상환기간으로 하고 채권금액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4. 채권금액과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안에 제기된 내용은 채권별로 기록한다.

제30조 (채권표의 효력)

청산위원회는 작성된 채권표를 채권자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 재판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된 채권표는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채권신고서, 채권표의 보관, 열람)

채권신고서, 채권표는 재판소에 보관한다.

재판소는 파산기업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문건을 보여줄수 있다.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제32조 (파산재산의 구성)

파산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파산재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화폐재산과 현물재산, 지적소유권 및 기타재산권 같은 것이 속한다.

파산수속과정에 취득한 재산도 파산재산에 속한다.

제33조 (파산재산의 확보)

분배할 파산재산의 확보는 청산위원회가 한다.

청산위원회는 미납된 출자몫을 받아들이고 파산기업의 채권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이 되지 않은 채권은 파산선고날을 시점으로 해당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34조 (채권과 채무의 상쇄)

청산위원회는 파산기업의 채무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있을 경우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쇄시킬수 있다.

상쇄는 무역은행이 당일 발표하는 외화교환시세표에 따라 한다.

제35조 (재산의 현금화)

청산위원회는 재산분배를 위하여 생산제품 또는 기계설비, 지적소유권 같은 재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제36조 (파산재산의 분배순위)

파산재산의 분배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수수료 및 파산수속비용
2. 로임과 보험금
3. 세금을 비롯한 국가의무납부금
4. 파산수속중에 계약취소로 생긴 위약금
5. 담보채권
6. 무담보채권
7. 채권박의 청구권

제37조 (국가수수료, 파산수속비용지출정형의 통지)

국가수수료 및 파산수속비용의 지출정형은 청산위원회가 채권자회의 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청산위원회의 통지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의 처리는 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조 (우선분배순위의 채권)

무담보채권가운데서 우선분배순위로 설정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먼저 분배하도록 그 순위를 정한다.

제39조 (파산재산분배표의 작성)

청산위원회는 분배순위와 채권표에 따라 파산재산분배표를 만들어야 한다.

파산재산분배표에는 분배하여야 할 총금액, 실지로 분배하는 금액, 분배받을 채권자의 명칭 (이름), 주소, 분배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0조 (담보채권의 리자, 부족되는 파산재산의 분배액계산)

청산위원회는 파산재산분배표의 담보채권분배액에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재산분배날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 제36조에 규정한 순위에 따라 분배액을 정하다가 재산이 부족되어 더 할당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 분배순위의 채권에 대한 분배액은 같은 비율로 정한다.

제41조 (파산재산분배표의 효력)

파산재산분배표는 청산위원회가 채권자회의에 제출한다.

채권자회의에서 파산재산분배표가 가결된 경우에는 재판소의 비준을 받으며 부결된 경우에는 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파산재산분배표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다.

제42조 (파산재산분배의 실시, 기업파산총화보고서의 작성)

파산재산의 분배는 재판소가 비준한 파산재산분배표에 근거하여 청산위원회가 한다.

청산위원회는 파산재산분배를 끝낸 날부터 10일안에 기업파산총화보고서를 만들어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43조 (기업파산총화보고서의 심의, 기업파산종결의 판정)

재판소는 청산위원회의 기업파산총화보고서를 심의하고 판정으로 파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산종결에 대하여 청산위원회에 통지하여 파산관계자들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기업파산종결판정에 대하여 상소할수 없다.

제44조 (청산 못한 채권, 파산종결후 발견된 재산의 처리)

파산기업의 재산부족으로 청산하지 못한 채권은 무효로 한다.

파산이 종결된 후에 발견된 파산기업의 재산은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재판소가 은행을 통하여 처리한다.

제5장 화 해

제45조 (화해제기의 당사자)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에서 토의하고 화해를 제기할수 있다.

제46조 (화해제기서의 제출)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화해제기를 할 경우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안에 화해제기리유, 채무상환방법, 담보 같은 것을 밝힌 화해제기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화해조건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여야 한다.

제47조 (화해제기의 심의)

청산위원회는 화해제기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그에 대하여 재판소에 알리고 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채권자회의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해심의를 위한 채권자회의에는 채권자, 화해제기자, 청산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한다. 채권자들의 제기에 따라 파산기업의 채무를 대신 반환하여줄자도 참가할수 있다.

제48조 (화해제기자의 설명, 화해조건변경)

화해제기자는 채권자회의에서 화해제기리유와 화해조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조건을 변경시킬수 있다.

제49조 (화해제기의 가결)

화해제기는 채권자회의에 참가한 채권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그들의 채권액이 파산채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가결된다.

제50조 (가결된 화해에 대한 재판소의 판정)

재판소는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된 화해에 대하여 판정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화해에 대한 재판소의 판정은 채권자 및 화해제기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1조 (화해가결판정의 통지, 화해취소의 제기)

재판소는 채권자회의 화해가결에 대한 판정을 한 날부터 5일안에 그에 대하여 화해제기자에게 알려야 한다.

화해승인판정통지를 받은 기업은 화해조건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의무이행을 태공한 기업에 대하여 재판소에 화해취소를 제기할수 있다.

제52조 (화해취소제기에 대한 판정)

재판소는 화해취소제기가 있는 날부터 10일안에 판정으로 화해취소제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화해취소승인판정이 있을 경우 중지하였던 파산수속은 계속된다.

제6장 제 재

제53조 (손해보상, 벌금)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손해보상을 시키거나 벌금을 물릴수 있다.

1.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리유없이 채권자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청산위원회와 채권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적인 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
2. 파산재산을 감추었거나 채무문건을 위조하였거나 허위적인 채무를 승인한 경우
3. 회계장부 또는 전표를 위조, 소각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수 없게 하였거나 청산위원회가 마감한 회계장부를 고친 경우
4.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재판소의 허가없이 기업소재지, 거주지를 리탈 하였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 통신연락을 하여 파산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기업의 채무자 또는 파산재산의 소지자가 재판소가 정한 기간안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거나 파산기업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아 파산수속에 지장을 준 경우
6. 이밖에 파산수속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제5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기업의 파산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1호로 수정보충

제1조 (외국인투자법의 사명과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은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가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재산이나 재산권, 기술 비결을 들여오는 것이다.
2. 외국인투자자란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우리 나라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다.
5.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6.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7. 외국인기업이란 외국인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8. 외국기업이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9. 외국인투자은행이란 우리 나라에 설립한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다.
10.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 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은행의 창설)

외국인투자자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은행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투자관리기관에는 해당 중앙기관과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이 속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는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투자당사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우리 나라에 투자할수 있다.

해외동포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수 있다.

제6조 (투자부문 및 투자방식)

외국투자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할수 있다.

제7조 (투자장려부문)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 (장려부문 투자의 우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외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는 특수경제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물자구입 및 반출입, 제품판매, 로력채용, 세금납부, 토지리용 같은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들의 입출국편리보장)

국가는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입출국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투자의 금지 및 제한대상)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에 저해를 주는 대상
2. 자원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
3. 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
4.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5.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

제12조 (투자재산과 재산권)

외국투자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외국인투자기업과 합병은행, 외국인은행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내올수 있으며 다른 나라 회사들과 연합할수 있다.

제14조 (법인자격대상)

외국인투자기업과 합병은행, 외국인은행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은행지점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토지의 임대기간)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여 준다.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

임대받은 토지는 토지임대기관의 승인밑에 임대기간안에 양도하거나 저당잡힐수 있다.

제16조 (로력의 채용)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과 협의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17조 (세금의 납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투자은행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정해진데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리윤의 재투자)

외국투자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나라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부문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

제19조 (투자재산의 보호)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거두어들여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법적절차를 거쳐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준다.

제20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 또는 은행업무에서 얻은 합법적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 또는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21조 (경영비밀의 보장)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자와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 (분쟁해결)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8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6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1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세무관리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관리는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세무기관이 한다.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세무기관은 세무관련법규를 집행하는 감독통제기관이다.

제3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의무)

외국투자기업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 분리, 해산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우리 나라에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도 세무등록을 한다.

제4조 (재정회계계산과 문건보관)

외국투자기업의 세무회계는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재정회계계산과 관련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며 중요계산장부는 기업의 해산이 종결되는 날까지 보관한다.

제5조 (세금의 계산화폐와 납부당사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계산하여 해당 세무기관에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6조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령역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 포함)과 외국인(해외동포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7조 (해당 조약의 적용)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8조 (기업소득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나라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같은 기업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같은 기타 소득이 속한다.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0조 (기업소득세의 세률)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제11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세률)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같은 기타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한다.

제12조 (기업소득세의 계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며 계산한다.

제13조 (기업소득세의 예정납부)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분기마다 예정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납부서를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 (기업소득세의 확정납부)

외국투자기업은 연간결산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확정하여 미납금을 추가납부하며 과납액은 반환받는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5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부터 15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6조 (기업소득세적용에서의 특혜)

기업소득세의 적용에서 특혜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0%로 낮추어준다.
2.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4. 국가가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한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하여줄수 있다.
5. 정해진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여줄수 있다.
6.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장려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전부 돌려준다.

제17조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의 적용)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외국투자기업이 창설된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제출)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경영기간, 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창설일, 소재지, 업종, 리윤이 생긴년도, 총투자

액,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같은것을 밝힌다.

제19조 (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의 회수조건)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기업이 감면기간에 해산, 통합, 분리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이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하여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물린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20조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우리 나라 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리자소득
3. 배당소득
4. 고정재산임대소득
5. 재산판매소득
6.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7.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8. 증여소득

제22조 (개인소득세의 세률)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5~30%로 한다.
2.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2~15%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23조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배당소득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

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해당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5조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6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7조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때 공제하여 5일안으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로동보수를 지불받아 10일안으로 납부한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4장 재산세

제28조 (재산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서 소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우리 나라에 등록한 건물과 선박, 비행기 같은 재산이다.

제30조 (재산등록)

외국인은 재산을 해당 세무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을 소유한 날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제31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32조 (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등록된 재산값의 1~1.4%로 한다.

제33조 (재산세의 계산)

재산세는 등록된 다음달부터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4조 (재산세의 납부)

재산세는 해마다 1월안으로 재산소유자가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제5장 상속세

제35조 (상속세의 납부의무)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 영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상속재산값의 평가)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38조 (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받은 금액의 6~30%로 한다.

제39조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0조 (상속세의 납부)

상속자는 상속세를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할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41조 (거래세의 납부의무)

생산부문과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거래세의 과세대상)

거래세의 과세대상에는 생산물판매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 같은 것이 속한다.

제43조 (거래세의 세률)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의 1~15%로 한다.

기호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의 16~50%로 한다.

제44조 (거래세의 계산)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 거래세와 영업세를 따로 계산한다.

제45조 (거래세의 납부)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수입금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납부한다.

제46조 (거래세적용에서의 특혜)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제7장 영업세

제47조 (영업세의 납부의무)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 (영업세의 과세대상)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통신,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으로 한다.

제49조 (영업세의 세률)

영업세의 세률은 해당 수입금의 2~10%로 한다. 그러나 특수업종에 대한 세률은 50%까지로 할수 있다.

제50조 (영업세의 계산)

영업세는 업종별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영업세를 업종별로 계산한다.

제51조 (영업세의 납부)

영업세는 봉사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제52조 (영업세적용에서 특혜)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오수 및 오물처리 같은 하부구조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외국투

자기업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영업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수 있다.
첨단과학기술봉사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영업세를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제8장 자원세

제53조 (자원세의 납세의무와 자원의 구분)

외국투자기업은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 또는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원에는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같은 자연자원이 속한다.

제54조 (자원세의 과세대상)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자원세의 세률)

자원의 종류에 따르는 자원세의 세률은 내각이 정한다.

제56조 (자원세의 계산방법)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에 해당 세률을 적용하며 계산한다.

채취과정에 여러가지 자원이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자원의 종류별로 계산한다.

제57조 (자원세의 납부)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자원을 소비할 때마다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제58조 (자원세적용에서 특혜)

다음의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하여줄수 있다.

1.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5~10년간 자원세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2. 자원을 그대로 팔지 않고 현대화된 기술공정에 기초하여 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국가적조치로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3.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에 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서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제9장 도시경영세

제59조 (도시경영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도시경영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월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의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61조 (도시경영세의 계산과 납부)

도시경영세의 계산과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달마다 종업원월로임총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의 달마다 수입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경우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할수도 있다.

제10장 자동차리용세

제62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자동차의 등록)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차와 오토바이가 속한다.

제64조 (자동차리용세액)

자동차류형별에 따르는 리용세액은 중앙세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65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자가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제11장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6조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세무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세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세무지도기관은 해당 세무기관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7조 (세무감독)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세무기관은 세무등록과 세금징수, 세무조사사업을 세금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속에서 탈세행위와 위법행위가 나타나지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8조 (연체료부과)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69조 (영업중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벌금통지서를 받았으나 1개월이상 벌금을 물지 않을 경우, 해당 세무기관의 정상적인 조사사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보장하여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70조 (몰수)

고의적인 탈세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제71조 (벌금)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등록, 재산등록, 자동차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 연간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내지 않았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에게는 110~5 500US\$, 외국인에게는 11~1 100US\$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공제납부의무자가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부당한 목적으로 장부와 자료를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거나 고쳤을 경우 또는 2중 장부를 리용하거나 장부를 없앴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에게는 1 100~11만 US\$, 외국인에게는 110~1 100US\$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세무일군의 세무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110~5 500US\$의 벌금을 부과한다.
5.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와 재산 또는 소득을 빼돌렸거나 감추었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73조 (신소와 그 처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해당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주체95(2006)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0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9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제1조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은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기업등록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외국투자기업등록이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이다.

제3조 (등록기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은 투자관리기관이 하며 주소등록은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세무등록은 해당 재정기관이, 세관등록은 해당 세관이 한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의 의무적등록원칙)

외국투자기업은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은 운영을 할수 없다.

제5조 (등록된 외국투자기업의 보호원칙)

등록된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6조 (수수료납부)

등록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7조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등록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8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등록)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장 창설등록

제9조 (기업창설등록의 기본요구)

외국투자기업은 창설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을 형태별, 부문별, 업종별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창설등록증, 설립허가증의 발급)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을 등록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기업창설등록증을, 지사, 사무소, 대리점에는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법인자격)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은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2조 (창설등록의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은 창설등록을 변경하려 할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창설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창설등록변경신청서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이유 같은 것을 밝힌다.

제13조 (창설 및 설립등록의 삭제)

투자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사무소, 대리점이 해산되거나 파산되었을 경우 창설 및 설립등록을 삭제하고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소등록

제14조 (주소등록기관 및 명칭)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을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이 승인한 명칭으로 한다.

제15조 (주소등록신청서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은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 (주소등록신청서의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등록하려는 주소, 업종, 존속기간,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고 창설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주소등록신청서에는 명칭, 주소, 책임자의 이름, 존속기간,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고 설립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한다.

제17조 (주소등록증의 발급)

주소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주소등록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주소등록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와 투자관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8조 (경영활동보장조건)

주소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은 물, 전기, 통신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받을수 있다.

제19조 (주소등록신청기일의 연장)

외국투자기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일안에 주소등록신청을 할수 없을 경우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기일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소등록기일연장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의 발급일, 연장하려는 이유, 기간 같은 것을 밝힌다.

제20조 (주소등록의 변경)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을 변경한 외국투자기업은 15일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를 다른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옮기려 할 경우에는 이미 한 등록을 삭제하고 새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으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유효기간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소등록의 삭제, 주소등록증의 회수)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주소등록을 삭제하고 주소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등록

제23조 (세무등록신청서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세무등록신청서에 명칭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존속기간,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고 창설등록증과 주소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은 세무등록신청서에 명칭과 주소,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고 설립허가증과 주소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세무등록신청의 심의)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재정기관은 그것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세무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무등록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5조 (세무등록증의 내용)

세무등록증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 업종, 세무등록날자와 번호 같은 것을 밝힌다.

제26조 (세무등록의 변경)

외국투자기업은 세무등록을 변경하려 할 경우 세무등록을 한 재정기관에 세무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무등록변경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기관이 발급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세무등록증의 재발급)

세무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재정기관은 그것을 7일안으로 검토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세관등록

제29조 (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 업종,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같은 것을 밝히며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 주소등록증의 사본, 은행의 재정담보서 그밖에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한다.

제30조 (세관등록신청의 심의)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고 세관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세관등록대장에 등록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31조 (세관등록의 변경)

외국투자기업은 세관등록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관등록변경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기관이 발급한 변경등록승인문건을 첨부한다.

제32조 (세관등록의 삭제)

세관은 외국투자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세관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신소

제33조 (제재)

등록을 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였거나 등록증을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제34조 (신소와 그 처리)

외국투자기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10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7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3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8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6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기본

제1조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회계검증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검증이란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회계계산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증하는 사업이다.
2. 투자검증이란 투자가가 출자한 재산실적의 정확성과 합법성, 효과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3. 결산검증이란 외국투자기업이 결산기간마다 제출하는 회계결산서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4. 계산검증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의 기록과 계산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일상적으로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5. 청산검증이란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과 관련하여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재정회계결산서의 정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6. 인계인수검증이란 기업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새로 임명되었을 경우 그 당시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7. 대외협조검증이란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 정부, 단체, 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상기증물자 또는 자금의 리용정형을 해당 기관의 의뢰에 따라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8. 송금검증이란 외국투자자에게 리윤분배금과 투자상환금, 청산분배금 같은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그 정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9. 고정재산변경검증이란 고정재산을 새로 구입, 폐기,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고정재산변경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10. 회계검증기관이란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한 회계검증기관 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 (회계검증의 담당자)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은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다른 나라 회계검증사무소나 공인회계사도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할수 있다.

제4조 (적용법규)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은 이 법과 해당 법규에 따라한다.
회계검증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있는 관습도 적용할수 있다.

제5조 (회계검증원칙)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적법성, 독자성, 비밀준수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조 (적용대상)

이 법은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우리 나라 영역에서 3개월이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이 다른 나라에 설립한 기업 또는 지사, 사무소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회계검증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회계검증기관의 설립과 운영

제8조 (회계검증기관의 설립신청)

회계검증기관을 설립하려는 당사자는 설립신청문건을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설립신청문건에는 기관명칭과 소재지, 업무내용, 정원수, 자격관계 같은 사항을 밝힌다.

우리 나라에 회계검증사무소를 설립하려는 다른 나라 회계검증기관은 설립신청문건과 함께 규약, 소개자료, 운영계획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9조 (회계검증기관설립신청의 심의)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회계검증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의 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발급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필요한 경우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회계검증기관을 정리할수 있다.

제10조 (주소등록)

회계검증기관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사항변경수속)

회계검증기관은 명칭 또는 검증성원, 소재지 같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회계검증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30일안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검증기관의 재정관리)

회계검증기관은 해당 법규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며 정해진 납부금을 바친 다음 기금을 세우고 쓸수 있다.

회계검증기관은 분기, 연간결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결산문건을 다음분기 첫달 20일까지, 연간결산문건을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손해보상준비금과 손해보상)

회계검증기관은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고 회계검증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검증의뢰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검증보고문건의 보관기일)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대상에 따라 회계검증보고문건을 5년 또는 10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검증보고문건은 해당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제15조 (회계검증사업정형보고서의 제출)

회계검증기관은 해마다 1~2차씩 회계검증사업정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회계검증 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제16조 (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와 자격시험)

회계검증원자격은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가 준다.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는 해마다 회계검증원자격시험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검증원자격증의 발급과 유효기간)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는 회계검증원자격시험에서 합격된 자에게 회계검증원자격증을

발급한다.

회계검증원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18조 (외국회계검증원의 자격등록)

우리 나라에서 회계검증업무를 하려는 외국회계검증사무소의 검증원 또는 공인회계사는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검증원의 의무)

회계검증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검증사업에서 과학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검증과정에 나타난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자료적으로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4. 검증과정에 위법행위를 용화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5. 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20조 (회계검증원의 권한)

회계검증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계검증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서류를 검토할수 있다.
2. 회계검증과정에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위협, 공갈, 매수 같은 방법으로 검증사업을 방해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제21조 (회계검증원이 될수 없는 대상)

형벌을 받았거나 법기관의 조사를 받고있는자, 회계검증원자격증이 없는자는 회계검증원이 될수 없다.

제4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제22조 (회계검증을 받을 의무)

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회계검증기관의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3조 (투자검증신청)

새로 창설하는 기업과 통합, 분리되는 기업,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새로 창설하는 기업은 조업전에, 통합, 분리되는 기업은 기업창설승인기관에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가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회계검증기관에 투자검증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측 출자정형에 대한 우리측 당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투자검증의 요구)

투자검증을 투자당사자들사이에 체결하고 해당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계약서에 기초하여 한다.

계약조건과 맞지 않거나 기술적성능이 정해진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현물재산, 승인된 업종 밖의 현물재산, 기업의 은행돈자리에 넣지 않은 화폐재산은 출자재산으로 평가할수 없다.

제25조 (투자검증기간)

회계검증기관은 투자검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증을 끝내고 투자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6조 (결산검증신청)

기업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해부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증신청은 검증주기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해 1월안으로, 반년이 지난 다음달 15일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산검증에서 검토, 확인할 내용)

결산검증에서 검토,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회계계시와 회계계산방법을 적용하였는가
2.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투자검증에서 확정한 금액과 일치한가
3. 재정상태표의 항목별금액이 허위기록되지 않았는가
4. 수입과 지출이 누락되거나 과장, 은폐되지 않았는가
5. 리윤계산과 분배방법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6. 세금과 기타 납부금을 정확히 계산하였는가
7. 회계결산서의 기본표와 부표가 정확한가
8. 기타 회계관련법규를 지켰는가

제28조 (결산검증기간)

회계검증기관은 결산검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증을 끝내고 검증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제29조 (청산검증대상)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은 회계검증기관의 청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업해산, 파산과 관련하여 조직된 청산위원회는 기업재산을 청산하기 전에 재정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증기관에 내야 한다.

제30조 (청산검증기간)

회계검증기관은 재정회계결산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그 정확성을 검토하고 검증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제31조 (계산검증의 신청)

기업은 회계기록과 계산자료에 대하여 계산검증을 받을수 있다.
계산검증의 신청은 반년에 1차씩 회계검증기관에 한다.

제32조 (인계인수검증대상)

기업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새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계인수검증을 받을수 있다.

제33조 (인계인수검증의 신청)

인계인수검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안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할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를 하고 인계인수검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송금검증)

기업은 외국투자가의 리윤분배금과 투자상환금, 청산분배금을 지출하는 경우 회계검증기관에 송금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검증의뢰서에는 리윤분배 또는 투자상환과 관련한 외국측투자가의 의뢰서, 우리측 당사자의 동의서, 회계결산서, 계약서사본을 첨부한다.

제35조 (고정재산변경검증)

기업은 고정재산을 새로 구입, 폐기, 양도하려는 경우 회계검증기관에 고정재산변경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정재산변경검증의뢰서와 회계처리설명서, 해당 증빙문건을 낸다.

제36조 (대외협조검증)

회계검증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의뢰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정부, 단체, 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상기증물자, 자금의 리용 및 지출정형에 대하여 검증할수 있다.

제37조 (회계검증기간의 연장)

회계검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검증을 정해진 기간안에 끝낼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밝힌 회계검증기간연장문건을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38조 (회계검증방법)

회계검증은 기업이 제출한 투자보고서에 반영된 출자상태, 회계결산서, 회계서류 및 장부, 투자재산변경문건, 재투자자료 같은 각종 회계문건내용을 검토,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의뢰자가 검증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못할 경우 검증을 거절할수 있다.

제39조 (회계검증보고서의 작성방법)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명, 검증내용과 그에 대한 의견, 검증날자를 밝히며 회계검증원이 수표하고 회계검증기관의 도장을 찍는다.

제40조 (상담봉사, 대리업무봉사)

회계검증기관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협조하는 상담봉사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 및 세

금납부와 관련한 대리업무봉사를 할수 있다.

제41조 (회계검증료금)

회계검증을 받은 기업은 회계검증 또는 봉사와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그러나 회계검증기관과 기업사이에 회계검정료금과 관련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42조 (감독통제기관)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회계검증사업을 법규의 요구대로 하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3조 (법위반자료의 제기 및 처리)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정에 법위반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자료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법위반자료를 처리한 다음 그 정형을 회계검증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4조 (영업허가증 발급 및 영업중지)

투자검증, 조업전결산검증, 결산검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제45조 (벌금)

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투자검증을 받지않고 출자자에게 출자증서를 자체로 발급하였을 경우
2. 리운분배, 투자상환, 청산재산의 분배를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정당한 근거없이 결산검증을 받지 않았거나 검증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회계검증신청문건을 거짓으로 꾸미었을 경우
5. 법규의 요구대로 회계검증질서를 지킬데 대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제4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7조 (분쟁해결)

회계검증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주체95(2006)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7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제1조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계산, 회계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 우리 나라에서 3개월이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창설한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조 (회계년도)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새로 창설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조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산 또는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해산, 파산되는 날까지이다.

제4조 (회계의 화폐단위)

외국투자기업의 회계화폐단위는 조선원으로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회계의 화폐단위를 외화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회계결산서는 조선원으로 환산하여 작성한다.

제5조 (회계문건의 작성언어)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한 회계문건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6조 (회계사업의 담당자)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제7조 (회계검증기관)

회계검증은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사무소가 한다.

제8조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외국투자기업회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9조 (회계관습의 적용)

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2장 회계계산

제10조 (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발생한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회계서류를 만들고 장부에 기록계산하며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외국투자기업은 회계계산을 회계관련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계산의 대상)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계산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금 또는 출금한 화폐자금
2. 발행 또는 인수한 유가증권
3. 인수 또는 발송한 현물재산
4. 발생 또는 청산한 채권, 채무
5. 증가 또는 감소한 자본
6. 발생 또는 처리한 수입과 원가, 비용
7. 확정 또는 분배, 처리한 리윤, 손실
8. 이밖에 회계계산이 필요한 대상

제12조 (회계계산의 원칙)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기록을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회계계시와 거래내용을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3. 계산시점, 재산평가방법을 기간별로 비교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초과금과 리윤적립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서류의 작성 및 발행)

외국투자기업은 경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회계서류를 작성발행

하여야 한다.

회계서류에는 전표, 집계표, 분기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14조 (회계서류에 밝혀야 할 사항)

회계서류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목을 쓴다.
2. 발행번호와 날자를 밝힌다.
3.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같은 회계계산자료를 밝힌다.
4. 경제거래내용을 쓴다.
5. 현금거래서류에는 수납인과 출납원의 도장을 찍는다.
6. 발행한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밝힌다.

제15조 (회계서류의 검토, 처리)

다른 기관, 기업에서 발행한 회계서류를 접수한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서류의 양식, 기로내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이 있는 회계서류는 기업책임자 또는 회계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돌려보낸다.

제16조 (회계서류의 재작성)

결함이 있는 회계서류를 돌려받은 외국투자기업은 그것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전표는 수정할수 없다.

제17조 (회계장부의 작성)

외국투자기업은 검토확인한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장부는 분기일기장, 종합계시원장, 세분계산장부로 구분한다.

제18조 (회계장부에 밝힐 사항)

회계장부에 밝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는 회계연도, 장부이름, 계시번호, 외국투자기업의 명칭을 밝힌다.
2. 첫페이지에는 목록과 목록별페이지번호를 밝힌다.
3. 둘째페이지부터는 페이지번호와 기록하는 회계서류의 날자, 분기표번호, 경제거래내용과 금액을 밝힌다.
4. 마지막페이지에는 장부의 마감을 확인한 회계부서책임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19조 (회계장부와 현물의 대조확인)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을 정기적으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맞추어야 한다.

제20조 (회계장부의 수정)

회계장부에 잘못 기록한 내용은 삭제하고 다시 기록하거나 수정분기를 한다. 이 경우 삭제하

고 다시 기록한 부분에는 수정한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21조 (2중장부작성금지)

외국투자기업은 발생한 경제거래를 해당 장부에 사실대로 기록, 계산하여야 한다.
2중장부를 리용할수 없다.

제22조 (장부작성방법의 변경)

회계장부는 시작부터 마감까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작성방법의 변경은 회계관련법규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사유를 재정상태설명서에 밝혀야 한다.

제23조 (회계계시의 리용)

외국투자기업은 정해진 회계계시를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중요경제거래는 새로운 회계계시로, 일반경제 거래는 류사한 회계계시를 리용하여 표시할수 있다.

제24조 (경상계산결과의 검토)

경상계산결과의 검토는 종합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틀린 자료는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친다.

제25조 (회계조정)

회계조정은 회계관련법규의 해당 내용이 수정보충되었거나 회계결산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수 있을 경우에만 한다.

제26조 (미확정거래의 기록)

미확정거래가운데서 손실액을 예측할수 있을 경우에는 결산서에 반영한다. 그러나 손실액을 예측할수 없거나 리익액을 예측할수 있을 경우에는 재정상태설명서에만 반영한다.

제27조 (재정상태표의 작성)

재정상태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목을 류동성배렬법으로 배렬한다.
2. 재산의 합계를 채무, 자본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재산, 채무, 자본상태를 반영한 매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4. 양식을 계시식으로 한다.

제28조 (손익계산서의 작성)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목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배렬한다.
2. 수입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덜어 결산순리운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 수입과 비용상태를 반영한 매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9조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리운분배계산서는 전년도 조월리운적립금, 결산손리운, 예비기금할당액, 기업기금할당액, 리운배당금, 다음연도 조월리운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손실처리계산서는 전년도 조월손실액, 결산손실액, 손실처리에 돌려지는 예비기금, 다음연도 조월손실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리운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30조 (현금류동표의 작성)

현금류동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목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정활동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현금의 기초잔고와 기간증감액을 합계하여 기말잔고로 표시한다.
3. 항목의 기간증가액과 기간감소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4. 간접법으로 작성한다.

제31조 (결산기가 지난 다음 발생한 사항)

결산기가 지난 다음에 발생하여 재정상태표의 작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재산, 채무, 자본에 반영한다. 그러나 재정상태표의 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재정상태설명서에만 반영한다.

제32조 (회계결산서의 작성)

회계결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리운분배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검토하고 종합편찬한다.
2. 결산년도와 전년도의 회계자료를 비교하여 표시한다.
3.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따르는 보조명세표를 만든다.
4. 잘못 이해할수 있는 회계내용을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한다.

제33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는 분기, 년간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분기회계결산서를 분기가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년간회계결산서는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해 2월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결산서의 책임)

회계결산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한다.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는 수표한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 (회계계산의 금지행위)

회계계산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재산, 채무, 자본을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평가기준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는 행위
2. 수입을 숨기거나 지연 또는 앞당겨 계산하는 행위
3. 비용, 원가를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계산시점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는 행위
4. 리익계산, 리윤분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여 허위리익을 조성하거나 리익을 숨기는 행위

제36조 (회계프로그램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

회계프로그램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연관속에서 반영할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리용하여야 한다.
2. 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산방법과 회계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
3. 회계결산지표의 유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화면양식, 인쇄양식은 회계문건양식과 같아야 한다.
5. 회계정보자료에 대한 2중보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회계장부를 외부기억매체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한부를 인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자체로 개발한 회계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기업의 업무분리, 재산실사)

외국투자기업은 출납업무, 회계장부작성업무, 회계문건보관업무, 재산보관업무를 각각 분리시키고 재산실사의 범위, 기간, 실사방법을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제38조 (회계사업의 인계인수)

회계사업의 인계인수는 해당 일군의 립회밑에 한다.

회계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회계부서책임자가, 회계부서책임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기업책임자가 한다.

제39조 (회계문건의 보관)

외국투자기업은 회계문건을 화재, 습기, 퇴색을 방지할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서류는 5년, 회계장부와 년간회계결산서는 10년 보관한다.

제3장 회계검증

제40조 (회계검증의 내용)

회계검증은 외국투자기업회계의 적법성, 정확성을 객관적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회계검증에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 같은 것이 속한다.

제41조 (투자검증)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100만원이상의 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투자검증의 기간)

기업창설에 대한 투자검증은 조업전까지, 통합, 분리에 대한 투자검증은 기업반경등록을 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재투자에 대한 투자검증은 해당 투자가 끝난 날부터 1개월안에 받는다.

제43조 (투자검증의 방법)

투자검증은 외국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검증신청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투자검증신청서에 투자상태표와 화폐재산출자명세표, 현물 재산출자명세표, 부동산출자명세표, 지적소유권출자명세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 (결산검증)

외국투자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분기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도 받을수 있다.

제45조 (결산검증의 방법)

결산검증은 회계결산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검증사무소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리윤분배계산서,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 보조명세표 같은 것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6조 (년간회계결산서의 검증기간)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청산검증)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청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청산검증은 재판소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한다.

제48조 (청산검증의 방법)

청산검증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상태표, 채권채무명세표, 재산실사표, 재산분배표 같은 것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9조 (회계장부, 서류의 열람)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장부, 서류 같은 것을 열람할수 있다.

제50조 (회계검증기간 발생한 결제거래의 통보)

외국투자기업은 결산검증을 신청한 다음 발생한 중요한 경제거래에 대하여 회계검증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과정에 알게 되었거나 통지받은 중요한 경제거래사항을 회계검증보고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 (회계검증보고서의 작성)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 검증의견, 보고날자, 회계검증원의 이름 같은 것을 밝히고 회계검증사무소의 도장을 찍는다.

제53조 (검증의견)

회계결산서를 검증한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당 외국투자기업에 검증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어야 한다.

검증의견은 긍정의견, 조건적긍정의견, 부정의견, 검증거절로 구분한다.

제54조 (검증료금)

회계검증 또는 회계검증과 관련한 봉사를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지도기관이 한다.

제4장 감독통제 및 신고

제55조 (회계감독기관)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6조 (회계감독방법)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7조 (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 없는자를 회계일군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2. 회계서류, 회계장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회계계산을 하였을 경우
3. 정해진 회계계시를 리용하지 않고 승인없이 회계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년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회계문건을 오손시켰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6. 회계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
7. 회계검증사무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58조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9조 (신소와 처리)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제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주체82(1993)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1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8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6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투자은행법의 기본

제1조 (외국투자은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투자은행의 분류와 정의)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 속한다.

합영은행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고 출자몫에 따라 리 운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인은행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은행본점이 투자하여 설립하고 외국은행본점이 운영하는 은행이다.

제3조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지역)

외국투자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합영은행은 우리 나라의 승인된 지역에 설립할수 있다.

외국인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특수경제지대에 설립할수 있다.

제4조 (외국투자은행의 소유권, 경영활동의 독자성)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5조 (외국투자은행의 권리와 리익보호, 우대보장)

국가는 우리 나라에 설립된 외국인투자은행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영업활동에서 우대를 보장한다.

제6조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법규)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제7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중앙세무지도기관이 한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에 설립운영되는 외국투자은행에 적용한다.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영업

제9조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신청서제출)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는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은행설립신청서에는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관련문건들을 첨부 한다.

제10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우리측 투자가가 한다.

우리측 투자는 금융기관만이 될수 있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은행의 계약서, 규약, 경제타산서, 투자의 영업허가증사본, 해당 나라의 회계검증을 받은 투자의 3년간 재정상태표, 투자와 은행총재의 간단한 경력같은 것을 첨부한다.

제11조 (외국인은행의 설립신청)

외국인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외국인은행의 규약, 경제타산서, 투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 나라의 회계검증을 받은 투자의 3년간 재정상태표, 투자와 은행총재의 간단한 경력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2조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외국은행본점이 한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본점의 규약, 년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 타산서,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은행총재의 간단한 경력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3조 (외국투자은행설립의 승인, 부결)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은행은 30일안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4조 (외국투자은행의 영업준비기간)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승인서에 지적된 경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업준비를 끝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외국투자은행이 은행설립승인서에 지적된 경영기간이 시작되기전까지 영업준비를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 은행설립승인을 취소하고 은행설립승인서를 회수하며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은행이 영업준비기간에 할 사업)

외국투자은행은 영업준비기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당 법규에 따라 주소등록과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중앙은행이 정한 은행에 예치금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3. 기구정원수에 따라 은행경력자, 은행전문가, 전문교육을 받은 인원을 은행일군으로 두어야 한다.
4. 은행공인과 명판, 실인, 간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5. 금고와 통신수단, 보안장치를 비롯한 설비와 각종 업무문건, 업무프로그램, 출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업종별에 따르는 내부업무지도를 작성하고 은행일군들이 그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7. 1차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이상 규모에서 중앙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적립하고 그에 대한 투자실적검증을 받아야 한다.
8. 정한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은행의 영업허가신청)

영업준비를 끝낸 외국투자은행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은행설립승인서, 내부업무지도서, 주소등록증, 세무등록증, 투자실적검증보고서, 예치금돈자리개설확인서, 준비금입금확인서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7조 (외국투자은행의 영업허가)

외국투자은행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은행은 30일안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영업준비정형을 현지료해한테 기초하여 은행영업을 허가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은행영업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영업허가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한다.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영업허가증의 경우를 년에 1차 받아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은행의 영업기간과 그 연장)

외국투자은행의 영업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 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

월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은행사무소의 설치)

외국투자은행은 필요에 따라 산하에 경제조사, 자료보장, 대외사업 등을 맡아하는 은행사무소를 내올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는다.

외국투자은행산하에 은행업무를 맡아하는 지점 또는 분점을 내오거나 은행사무소가 영업거리를 하계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20조 (외국투자은행의 등록변경)

외국투자은행은 규약의 수정, 은행의 통합 또는 분리, 등록자본금과 영업장소의 변경, 업종의 변경,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교체같은 사업을 하려 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21조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자본금과 불입기간)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은행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출자하는 화폐재산으로서 은행업무에만 리용한다.

불입자본금의 불입기간은 1차불입자본금이 적립된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2조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자본금규모)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자본금규모는 내각이 정한다.

외국투자은행은 정한 등록자본금규모를 늘일수는 있으나 줄일수 없다.

제23조 (외국투자은행의 준비금적립)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에서 정한 규모의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적립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적립된 준비금은 리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은행을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만 찾을수 있다.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의 예비기금의 적립)

외국투자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결산리윤의 5%범위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금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보상하는데 쓴다.

제25조 (외국투자은행의 기업기금의 확정과 리용)

외국투자은행은 기업기금을 연간결산리윤의 15%범위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기업기금은 상금, 문화후생, 종업원양성과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 같은것에 쓸수 있다.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해산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의 업무내용)

외국투자은행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수 있다.

1. 외화예금업무
2. 외화대부 및 투자업무
3. 외국환자업무
4. 시좌돈자리잔고초과지불 및 외화수형할인업무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리행에 대한 보증업무
6. 외화송금업무
7. 수출입물자대금결제업무
8. 신용조사와 확인 및 상담업무
9. 신탁업무
10. 거래자에 대한 카드발행업무
11. 따로 승인을 받은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

제27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외화대부 및 투자업무)

외국투자은행은 우리 나라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를 대상으로 외화대부 및 투자업무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외화대부 및 투자업무 밖의 다른 업무는 할수 없다.

제28조 (외국투자은행의 자금대출한도)

외국투자은행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한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자본의 25%를 초과하며 자금을 대출할수 없다.

제29조 (외국투자은행의 상시지불준비금의 보유)

외국투자은행은 예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위하여 상시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들로부터 받아들인 자금의 30%를 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년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31조 (외국투자은행의 년간업무결산보고서의 제출)

외국투자은행은 년간업무결산보고서를 다음해 3월안으로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년간업무결산보고서에는 해당 회계검증기관과 세무기관의 회계검증확인서, 세금납부확인서를 첨부한다.

제32조 (외국투자은행의 재정관리와 재정결산문건의 제출)

외국투자은행은 재정관리를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분기재정결산문건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연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우대)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우리 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2. 리운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었을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전부 돌려준다.
3.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제한 없이 송금할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한 자본의 양도)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병은행의 한편 출자자는 상대편 출자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은행의 해산사유)

외국투자은행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1. 승인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 은행이 통합되었을 경우
3. 은행자본이 양도되었을 경우
4. 지불능력이 부족할 경우
5. 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6. 등록자본금, 준비금을 정한대로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
7.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8. 이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

제36조 (외국투자은행의 해산신청)

해산하려는 외국투자은행은 해산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의 판결이나 중앙은행의 해산결정을 받은 외국투자은행은 해산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제37조 (청산위원회의 사업)

외국투자은행해산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은행은 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중앙은행과 해당 세무

기관, 회계검증기관, 외국투자은행의 일군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면 사업총화보고서와 함께 외국투자은행의 은행설립승인서, 은행영업허가증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38조 (외국투자은행의 해산승인과 등록취소수속)

중앙은행은 청산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서를 검토심의하고 외국투자은행의 해산을 승인한다.
해산승인을 받은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 (벌금부과)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에 벌금을 부과한다.

1. 예비기금과 기업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2. 한개 기업에 정한 등록자본금의 규모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한 경우
3. 상시지불준비금을 정한 규모대로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제40조 (영업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의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1. 승인없이 은행의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업종밖의 업무를 한 경우
3. 감독사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한 경우

제41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 (분쟁해결)

외국투자은행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주체87(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9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5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6호로 수정보충

제1조 (조약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은 조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약을 바로 맺고 정확히 리행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약의 정의)

조약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서면합의이다.

조약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 조약, 협약, 협정, 공동선언, 공동성명, 공동보도문, 의정서, 량해문, 교류계획서, 교환각서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조약의 체결 및 리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국가는 조약의 체결 및 리행에서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옹호하며 자주권존중,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4조 (조약의 체결명칭의와 형식)

조약은 국가, 정부 또는 중앙기관의 명의로 쌍방 또는 다방사이에 체결한다.

제5조 (조약체결의 승인)

조약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체결할수 있다. 그러나 기본조약을 리행하기 위한 부속조약과 경제, 과학기술, 문화분야의 실무조약은 외무성의 합의를 받아 체결할수 있다.

제6조 (조약체결관련문건의 제기)

조약을 체결하려는 기관은 조약초안과 조약체결관련문건을 외무성에 제기하여야 한다.

조약체결관련문건에는 조약체결의 승인정형, 조약체결의 목적과 의의, 련관기관합의정형 등을 밝힌다.

제7조 (조약의 협상, 서명)

조약초안에 대한 협상과 조약의 서명은 국가, 정부 또는 중앙기관의 위임을 받은 전권대표가

한다.

전권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조약체결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전권위임장의 발급)

국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정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내각총리 또는 외무상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중앙기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기관책임자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준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약체결명의로 관계없이 전권대표에게 체약상대방과 대동한 위임장을 줄 수 있다.

제9조 (전권위임장의 발급과 관련한 실무보장)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 주는 위임장의 발급과 관련한 실무보장은 의무성이 한다.

전권위임장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조약의 명칭, 전권을 위임받을 일군의 직위와 이름, 조약 체결장소 및 서명예정날자, 조약에 서명하는 상대측 전권대표의 직위와 이름 등을 밝힌 위임장발급의뢰문건을 의무성에 내야 한다.

제10조 (조약의 비준, 승인제기)

중요조약과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비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약의 비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그와 관련한 문건을 의무성에 제기하여야 한다.

외무성은 제기된 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비준 또는 승인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약의 비준, 승인)

중요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비준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다.

국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비준한다.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내각이 승인한다.

제12조 (조약비준, 승인문건의 교환 또는 통지)

조약의 비준 또는 승인문건을 교환하는 사업과 비준, 승인여부를 체약상대방이나 조약수탁국에 통지하는 사업은 의무성이 한다.

제13조 (다방조약의 가입제기)

이미 체결된 다방조약에 가입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기관은 의무성을 통하여 이 법 제11조에 따르는 비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다방조약가입시 보류설정)

해당 중앙기관은 다방조약가입시 조약의 임의의 조항이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 국내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보류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방조약가입문건의 제출)

이미 체결된 다방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통지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는것을 비롯한 수속은 의무성이 한다. 이 경우 다방조약가입통지서에는 의무상이 수표한다.

제16조 (조약의 어문)

쌍방조약은 조선어문과 체약상대방의 어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체약쌍방이 합의한 어문으로 작성할수 있다.

다방조약은 체약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어문으로 작성한다.

제17조 (조약의 등록)

체결된 조약을 유엔사무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등록하는 사업은 의무성이 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조약의 리행의무)

조약은 우리 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부터 리행한다.

조약을 체결한 기관은 조약에서 지닌 의무를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약의 립시적용)

조약은 그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해당 조약에 따라 또는 체약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립시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조약의 수정보충)

이미 효력을 발생한 조약을 수정보충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조약체결절차에 따른다.

제21조 (조약의 효력정지)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1. 체약상대방과 조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2. 체약상대방이 조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조약상의무를 계속 리행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제22조 (조약의 폐기 및 탈퇴)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을 폐기하거나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

1.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이 침해당하였을 경우
2. 체약상대방과 조약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3. 체약상대방이 조약의 본질적내용을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조약상의무를 더는 리행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23조 (조약의 효력정지, 폐기, 탈퇴절차)

조약의 효력정지, 폐기, 탈퇴절차는 이 법에서 규정한 조약의 체결절차에 따른다.

제24조 (조약사업에 대한 실무적지도)

조약사업에 대한 실무적지도는 외무성이 한다.

외무성은 조약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조약사업이 국가의 정책적, 법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약원문의 등록과 이관)

조약을 체결한 기관은 조약원문을 정해진 기간에 외무성에 내야 한다.

외무성은 조약원문을 등록하고 그것을 중앙문헌지도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약리행에 대한 감독통제)

조약의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무성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무성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조약의 리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조약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의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무역장관리법

주체103(2014)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5호로 채택

제1장 종합무역장관리법의 기본

제1조 (종합무역장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무역장관리법은 종합무역장의 관리와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종합무역장이란 국경교두를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의 인도인수와 검사, 검역 및 검수를 종합적으로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다.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한다.

제3조 (종합무역장의 건설원칙)

종합무역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대외무역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종합무역장의 건설에서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종합무역장의 관리원칙)

종합무역장의 관리를 잘하는 것은 국경교두를 통한 반출입화물처리의 편의와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대외무역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무역장관리사업체계를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5조 (종합무역장의 운영원칙)

종합무역장의 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종합무역장의 운영에서 주관 및 련관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제6조 (대외협력원칙)

국가는 종합무역장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종합무역장을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종합무역장의 건설

제8조 (종합무역장건설의 기본요구)

종합무역장의 건설을 잘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의무이다.

해당 기관은 건설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종합무역장을 전망성 있게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 (종합무역장의 건설부지확정)

종합무역장의 건설부지확정은 해당 기관과의 연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10조 (종합무역장의 건설계획)

종합무역장의 건설은 국가계획에 맞물려 한다.

건설계획을 국가계획에 맞물리는 사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종합무역장의 표준설계와 그 승인)

종합무역장의 건설설계는 정해진 설계기관이 하며 설계의 심의,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가건설감독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종합무역장의 규모, 특성, 사업조건에 맞게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설부지의 정리)

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허가받은 건설부지안의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 이설하며 도로, 상하수도 같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창고, 야적장의 건설)

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종합무역장에 반출입하는 화물을 그 종류와 수량,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는 창고, 야적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차장의 건설)

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종합무역장에 나드는 운수수단이 대기할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주차장에는 주차안내표식과 주차바닥표식을 한다.

제15조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의 건설금지)

종합무역장에는 창고, 야적장, 검사장 같은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건물과 시설물만을 건설할수 있다.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은 건설할수 없다.

제3장 종합무역장의 관리

제16조 (종합무역장관리의 기본요구)

종합무역장관리를 잘하는 것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의 의무이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법규의 요구대로 종합무역장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비, 기재의 구비 및 수리정비)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종합무역장에 화물을 싣거나 부리울수 있는 설비 및 기재 같은 것을 갖추어놓고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 기재같은 것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화물을 싣고 부리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8조 (창고, 야적장의 보수)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창고, 야적장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화물이 화재나 수해, 눈, 비, 습기같은것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구내도로의 관리)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운수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에 따르는 도로보수체계를 세우고 도로를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20조 (사과의 방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같은 위험화물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짐입자기관에 넘겨주며 이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21조 (환경보호대책)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환경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종합무역장과 그 주변에서 배기가스, 오물 같은것에 의한 환경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종합무역장의 경비)

종합무역장경비는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맡아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창고, 야적장에 보관한 화물과 건물, 시설물, 설비, 기재에 대한 경비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화물의 파손, 분실, 손상에 대한 책임)

창고, 야적장관리를 잘못하여 화물을 파손, 분실,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세관 또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이 억류하고 있는 화물이 파손, 분실,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해명된데 따라 해당 기관이 책임진다.

제24조 (종합무역장의 재정회계)

종합무역장에서 화물의 취급과 관련한 재정회계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장 종합무역장의 운영

제25조 (종합무역장의 리용질서준수요구)

국경교두를 통한 화물의 반출입은 종합무역장을 거쳐 한다.

국경교두를 통하여 화물을 반출입하려는 짐임자기관은 종합무역장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6조 (화물의 반출입수속)

국경교두를 통하여 화물을 반출입하려는 짐임자기관은 해당 화물이 국경교두를 통과하기 7 일전에 국경통과수속문건과 화물인도인수의뢰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27조 (화물의 반출입과 관련한 통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경통과수속문건과 화물인도인수의뢰서를 검토하고 경유등록한 다음 종합무역장관리기관에 전자우편 또는 문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화물의 인도인수)

화물의 반출입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화물인도인수의뢰서에 기초하여 해당 화물을 정확히 넘겨받거나 넘겨주어야 한다.

제29조 (화물의 국경통과수속)

종합무역장에 들어온 화물의 국경통과수속은 짐임자기관을 대리하여 종합무역장 관리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국경통과수속과정에 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같은 것이 잘못되어 억류 또는 퇴송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짐임자기관에 알려주어 대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종합무역장의 출입)

종합무역장에 출입하려는 인원 또는 운수수단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증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발급한다.

제31조 (화물의 상하차작업)

종합무역장에서 화물의 상하차작업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기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화물의 보관기일)

종합무역장에서 수출입품은 3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같은 위험성화물은 창고나 야적장에 보관할 수 없다.

제33조 (운수수단의 머무름시간)

종합무역장에 들어온 운수수단은 짐을 싣거나 부린후 제때에 나가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 24시간까지 머무를수 있다.

제34조 (화물의 종합무역장통과)

짐입자기관이 종합무역장에서 화물을 내기려 할 경우에는 화물송장과 함께 검사증, 검수증을 경비근무성원에게 내고 경유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유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화물을 종합무역장밖으로 내갈수 없다.

제35조 (연체료의 지불)

짐입자기관은 화물의 보관기일과 운수수단의 머무름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한 연체료를 내야 한다.

제36조 (요금의 지불)

종합무역장을 거쳐 화물을 반출입한 짐입자기관은 종합무역장리용 및 화물취급과 관련한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기관이 한다.

제5장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 (종합무역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

종합무역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무역장관리와 운영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38조 (벌금부과, 손해보상)

종합무역장에서 건물, 시설물과 룬전기재, 화물을 파손시켰거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 (분쟁해결)

종합무역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은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제40조 (신소와 그 처리)

종합무역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나 종합무역장관리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2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설비수입법

주체98(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7호로 채택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제1조 (종합설비수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설비수입법은 종합설비수입계획의 작성과 심의,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조립과 시운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설비란 공장, 학교, 병원, 배, 방송국 같은 해당 대상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일식으로 갖추어진 설비이다.
2. 납입자란 계약에 따라 종합설비의 납입의무를 진 다른 나라의 회사이다.
3. 종합설비수입회사란 종합설비를 전문 수출입하는 무역회사 또는 종합설비를 수입하도록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이다.
4. 수요자기관이란 수입한 종합설비를 운영할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5. 시공주기관이란 수입한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을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제3조 (종합설비수입계획의 작성, 심의원칙)

종합설비수입계획의 작성과 심의는 종합설비수입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종합설비수입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원칙)

국가는 종합설비의 반입에서 기일을 보장하고 종합설비에 대한 검수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5조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원칙)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은 시공주기관의 중요임무이다.

국가는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에서 시공주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표준조작법과 과학기술적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종합설비의 수입당사자)

종합설비의 수입은 종합설비를 전문 수출입하는 무역회사가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도 종합설비를 수입할수 있다.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제8조 (종합설비수입의 계획작성단계)

종합설비의 수입계획은 예비기술과제의 작성, 기술합의단계를 거쳐 만든 초안을 국가계획기관이 심의, 승인하는 방법으로 세운다.

수요자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종합설비수입을 위한 예비기술과제의 작성과 기술합의 및 심의, 계획작성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 (예비기술과제의 작성기관)

종합설비수입을 위한 예비기술과제의 작성은 수요자기관이 한다.

수요자기관의 의뢰에 따라 해당 기관도 예비기술과제를 작성할수 있다.

제10조 (예비기술과제에 기재할 사항)

예비기술과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종합설비의 이름과 기술적특성
2. 설비별능력과 운영조건
3. 납입자나라이름과 납입기간
4. 종합설비의 수송조건
5. 종합설비의 가격, 부피, 질량
6. 종합설비의 수입근거
7. 기타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자료

제11조 (예비기술과제의 합의)

수요자기관은 작성한 예비기술과제를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각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10일안으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20일안으로 예비기술과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설비를 수입할 무역회사를 정해주어야 한다.

제12조 (예비기술과제의 승인)

수요자기관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예비기술과제

를 국가계획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예비기술과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수요자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수입주문서와 예비제안서)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수입회사와 함께 승인받은 예비기술과제에 준하여 수입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수입주문서를 납입자에게 보내어 예비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예비제안서는 입찰의 방법으로 받을수도 있다.

제14조 (예비제안서에 대한 기술합의 및 확정제안서의 접수)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수요자기관과 예비제안서에 대한 기술합의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보내어 확정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납입자로부터 받은 확정제안서는 수요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5조 (납입자가 요구하는 자료보장)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하여 납입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자료는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종합설비수입회사를 통하여 보낸다.

제16조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의 작성)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은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가 각각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17조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의 심의, 승인)

국가계획기관은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가 낸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을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에 시달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종합설비수입계획의 변경)

종합설비수입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설비수입계획을 변경하려는 수요자기관 또는 종합설비수입회사는 국가계획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와의 계약체결)

종합설비수입계획을 시달받은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계약은 예비기술과제에 반영된 사항에 준하여 맺어야 한다.

제20조 (납입자와 종합설비수입계약체결)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수입계획, 수요자기관과 맺은 계약에 기초하여 납입자와 종합설비수입계약을 맺어야 한다.

납입자와 종합설비수입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사본을 수요자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제21조 (종합설비의 반입수속)

종합설비반입수속은 종합설비수입회사가 한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세관, 수출입품검사기관에 정해진 문건을 내고 종합설비의 반입을 위한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송 및 보관관리와 관련한 문건넘겨주기)

종합설비수입회사는 납입자로부터 종합설비의 수송 및 보관관리와 관련한 기술규정, 지도서 그밖의 필요한 자료들을 넘겨받아 종합설비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60일전에 수요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23조 (국경통과지점의 변경)

종합설비의 국경통과지점을 변경하려는 수요자기관은 설비납입기간이 시작되기 3개월전에 그 사유를 종합설비수입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변경통지를 받은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의 국경통과지점변경신청문건을 세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종합설비의 넘겨주기)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수요자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화물송장, 계산서를 함께 넘겨준다.

제25조 (종합설비검수조의 조직)

수요자기관은 검수조를 조직하고 종합설비에 대한 검수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검수조에는 종합설비수입회사, 시공주기관과 해당 기관의 일군들을 망라시켜야 한다.

제26조 (종합설비의 도착검수)

종합설비의 도착검수는 국경통과지점 또는 납입계약에 따르는 도착지에서 한다.

검수조는 종합설비가 도착하면 세관과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밀에 봉인상태와 수량, 외부포장상태를 확인하고 그 정형을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종합설비의 해체검수)

종합설비의 해체검수는 대상건설과 조립순위에 따라 납입자와 세관,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 회밀에 한다.

검수조는 종합설비의 포장을 해체하기 전에 포장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납입자가 보낸 출하문건, 포장명세서에 기초하여 설비의 수량, 기술문건 같은 것을 확인하고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종합설비의 보관)

종합설비의 보관은 수요자기관이 한다.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를 기본공정설비, 건설조립설비, 자재, 시약, 기공구, 예비부속품으로 나누고 건설 및 조립순위, 공정별, 부분별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종합설비의 위탁보관)

수요자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설비를 보관할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종합설비의 보관관리를 시공주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시공주기관이 종합설비를 보관관리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제30조 (종합설비와 그 조립 및 시운전에 필요한 문건의 넘겨주기)

수요자기관은 시공주기관에 종합설비와 그 조립 및 시운전에 필요한 문건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종합설비와 그 조립, 시운전에 필요한 문건을 종합설비수입회사가 넘겨줄수도 있다.

제31조 (종합설비조립을 위한 시공조직설계, 공정계획의 작성)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조립을 위한 시공조직설계, 공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자와 합의한 설계의 요구와 기술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종합설비의 조립)

종합설비의 조립은 시공조직설계, 공정계획에 따라 한다.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의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설비와 기공구, 자재를 미리 준비하며 조립기일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33조 (시공주기관의 변경)

수요자기관은 시공주기관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기관의 립회밀에 인계인수조서를 만들고 종합설비를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설비별, 공정별시운전)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 시운전을 하기 전에 설비별, 공정별시운전을 먼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상태, 시운전정형과 관련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5조 (종합적인 시운전)

시공주기관은 계약조건에 맞게 설비별, 공정별시운전을 한 다음 종합적인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시운전에는 수요자기관, 시공주기관, 종합설비수입회사, 납입자가 참가한다.

제36조 (종합설비의 가동상태확인 및 인계인수)

시공주기관과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의 시운전이 끝나면 납입자와 합의한 생산능력, 제품의 질, 기술조건, 시공 및 조립상태 같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의 가동상태가 계약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종합설비수입회사의 립회밀에 납입자와 시공주기관, 수요자기관사이 인계인수조서를 만들고 종합설비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7조 (종합설비의 운영을 위한 준비)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준비하고 기술자, 기능공을 미리 양성하며 시운전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료, 자재, 연료 같은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38조 (기술자파견 및 초청)

수요자기관과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의 조립,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 기능을 배워오도록 기술자를 다른 나라에 내보내거나 다른 나라의 기술자를 초청하여 방조를 받을수 있다.

기술자를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다른 나라의 기술자를 초청하는 사업은 종합설비수입회사를 통하여 한다.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밀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설비수입사업이 정확히 진행되도록 그에 대한 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조 (자료와 설명의 요구, 전문기관의 인입)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설비수입정형을 료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할수 있으며 제기된 기술감정, 시험분석을 전문기관에 맡길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장하며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적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종합설비수입을 위한 예비기술과제의 작성, 합의 및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아 종합설비수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종합설비를 수입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종합설비수입계획을 변경시켰을 경우
4.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계약을 잘못 맺어 손해를 주었을 경우
5. 반입수속절차를 어기고 종합설비를 반입하였을 경우
6. 종합설비에 대한 검수를 바로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7. 종합설비의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그것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8. 종합설비를 류용, 량비하였을 경우
9.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10. 종합설비의 비정상상태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해당한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필요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11. 종합설비의 수송을 제때에 하지 않아 그 조립과 시운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기타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제4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42조의 행위로 나라의 경제발전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주체85(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23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49호로 수정보충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제1조 (출입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출입국하는 공민과 입출국, 체류, 거주, 여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출입국증명서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사증 같은 것을 말한다.
4. 국경통과지점이란 공포된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같은 출입국할수 있는 통로와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5. 운수수단이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것을 말한다.
6. 체류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7. 거주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
8. 여행이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통과지점과 통행검사기관의 설치)

출입국은 국경통과지점 또는 국가가 따로 승인한 지점으로 한다.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정하고 통행검사기관을 설치한다.

제4조 (출입국증명서의 소지의무)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여행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출입국수속의 당사자)

출국, 입국, 체류, 거주, 여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한다. 그러나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여행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수속할수 있다.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제6조 (출입국수수료)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물린다. 그러나 외국인의 사증수수료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물린다.

제7조 (출입국사업담당기관)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도 출입국사업을 한다.

제8조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공민의 출입국

제10조 (공민의 출입국사유)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11조 (려권, 사증의 발급신청)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렬권, 사증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렬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 사업기관에 한다.

제12조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효력)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공민은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출입국할수 있다.

제13조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

입국사업기관에 한다.

제14조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국민은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 (선원증에 의한 출입국)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진 국민은 무역항으로 출입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진 국민이 무역항이 아닌 다른 국경통과지점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 (해외국민의 입출국)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은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령권 또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입국증명서의 재발급)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국민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18조 (출국할수 없는 국민)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국민,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국민, 법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국민은 출국할수 없다.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제19조 (사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외국인은 우리 나라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무사증제를 실시할데 대한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령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제20조 (외국인이 사증발급신청)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우리 나라의 초청기관이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문건에 출입국사업기관의 동의문건을 첨부한다.

제21조 (선원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무역항으로 입출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이 비행기, 열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입출국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에 입국하여야 한다.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제23조 (관광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우리 나라 관광증을 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제24조 (입국할수 없는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수 없다.

1.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국제테로범
3.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4.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5.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어 확인할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자
6. 해당 기관이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한자

제25조 (외국인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입출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외국인의 체류, 거주등록 삭제)

체류,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등록, 거주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장기 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바친다.

제27조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 출국하려 할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긴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은 입국한 다음 돌려준다.

제28조 (외국인의 출입국시 자동차리용)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승인받은 자동차로 출입국 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9조 (출국할수 없는 외국인)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외국인,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할수 없다.

제4장 통행검사

제30조 (통행검사를 받을 의무)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행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출입국할수 없다.

제31조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의 출입국증명서를 검사한다.
2. 출입국하는 운수수단에 대한 통행검사를 한다.
3. 국경통과지점의 안전보장과 통행질서유지사업을 한다.
4. 기재를 리용하여 출입국하는 해당 공민, 외국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다.
5. 단속한 금지품, 기밀에 속하는 문건과 자료를 해명, 처리한다.
6. 해당 기관 또는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에게 통행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7. 국경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나라의 안전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자와 그 운수수단을 단속, 조사, 검색할수 있다.
8. 국경통행질서를 어긴 공민, 외국인과 해당 운수수단의 통행을 중지시킬수 있다.
9. 이 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32조 (출입국증명서의 검사와 출입국확인)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의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에 출입국증명서와 입출국 수속표를 내고 검사를 받은 다음 출입국증명서의 확인란에 출국 또는 입국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통과지점의 준수)

공민, 외국인은 출입국증명서에 지적된 국경통과지점으로만 출입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출입국하거나 국경통과지점밖에서 통행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4조 (휴대금지품)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수 있는 금지품과 기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운수수단의 출입국자료통보)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입국하는 열차, 비행기, 배의 출발 및 도착시간, 장소, 려객 및 화물자료 같은 것을 해당 운수수단의 도착, 출발전에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행기, 배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해당 운수수단이 국제항공역, 무역항에 도착한 즉시 또는 출발전에 통행검사기관에 승무원명단, 려객명단을 내야 한다.

제36조 (운수수단책임자의 의무)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출국검사를 받고 출국하기전까지, 입국하여 입국검사를 받기전까지 통행검사기관의 승인없이 운수수단에서 인원들이 오르내리게 하거나 짐을 부리우거나 신지 말아야 한다.

출입국이 금지된자를 태우지 말아야 하며 출입국이 금지된자가 운수수단에 오른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통행검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37조 (자동차통행중의 검사, 국경통과시간의 준수)

공민, 외국인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할 경우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발급한 자동차국경통행증을 검사받아야 한다.

자동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국경교두를 통과하는 공민,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통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38조 (다른 나라 배의 통행검사를 받을 의무, 항해질서)

다른 나라 배는 무역항에 입항하기전에 배길안내대기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정해진 항로를 리탈하여 항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다른 나라 선원의 상륙)

무역항에 입항한 다른 나라 배의 선원이 배에서 내리려 할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상륙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륙승인을 받은 선원은 정해진 시간안에 자기 배로 돌아와야 한다.

제40조 (승선, 곁선질서)

공민, 외국인은 배에 오르내릴 때 출입국증명서 또는 해당 승인문건을 통행검사기관에 검사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배와 우리 나라 배가 곁선하려 할 경우에는 통행검사기관에 곁선 또는 승선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되돌려보내는 인원에 대한 책임)

출입국이 금지된자를 태우고 우리 나라에 온 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 운수수단이 속한 기관은 그 대상을 되돌려보낼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제42조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등록, 수속)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려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등록,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43조 (외국인의 체류구분)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제44조 (외국인의 체류등록)

우리 나라 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안에 체류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는 사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외국인의 도중체류등록)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지역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6조 (외국인의 체류등록관할)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도 할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제47조 (외국인장기체류증의 발급)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1. 국회, 정부 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 성원
2.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성원
3.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제49조 (다른 나라 선원, 승조원, 승무원의 체류등록)

다른 나라 배, 비행기, 열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이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장기체류등록의 변경, 외국인장기체류증의 재발급)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7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는다.

제51조 (외국인거주등록증, 출생증의 발급과 그 유효기간)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고 외국인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성인에게는 외국인출생증을 발급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2조 (거주지의 이동수속)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25일안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외국인거주등록의 변경,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 출생증의 재발급)

거주한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거주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4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는다.

제54조 (외국인의 령행)

거주한 외국인, 사사용무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출입국 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령행증을 가지고 령행하여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외국인은 령행증에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 기타 공무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령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령행할수 있다.

제6장 제 재

제55조 (공민에게 주는 제재)

공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6조 (외국인에게 주는 제재)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체류, 여행승인을 취소한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7호 (제재와 관련한 신고)

제재와 관련한 신고는 외무성 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 법기관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주체82(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5호로 수정보충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 (토지임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토지임차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수 있다.

제3조 (임차자의 토지리용권과 그 한계)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4조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밑에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가 맺는다.

제5조 (토지리용권의 출자)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임대기간)

토지임대기간은 50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토지에 대한 임차자의 재산권)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제8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

임차한 토지는 우리 나라 토지관련법규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리용한다.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9조 (토지의 임대방법)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토지를 임대할수 있다.

제10조 (토지임대기관이 제공할 자료)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이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넘겨주는 값을 받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 (입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

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조건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한다.
8.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토지리용권값을 지불한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려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장받을수 있다.
9.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낙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13조 (경매)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입찰희망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3. 낙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제14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 보충계약)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리용권의 양도, 저당과 그 기간)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

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수 없다.

제16조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몹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수 있다.

제17조 (토지리용권의 양도범위)

토지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

제18조 (토지리용권의 판매)

토지리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리용권은 판매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권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 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3.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명의 변경등록을 한다.

제19조 (임대한 토지의 우선구매권)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임차한 토지의 재임대)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토지리용권의 저당)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리용권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22조 (토지리용권의 저당계약체결)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자와 저당받는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자는 저당하는자에게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사본, 토지리용증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23조 (토지리용권의 저당등록)

토지리용권을 저당받으자와 저당한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저당토지의 처분)

토지리용권을 저당받으자는 저당한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리용권, 토지

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수 있다.

제25조 (처분한 저당토지의 리용)

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저당토지의 재저당 및 양도금지)

토지리용권을 저당한자는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받은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리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수 없다.

제27조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의 취소)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자와 저당한자는 10일안으로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제28조 (토지임대료의 지불의무)

토지임차자는 정해진데 따라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임대기관에 문다.

제29조 (토지개발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30조 (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토지종합개발대상같이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이 승인한 기간안에 토지임대료를 나누어 물수 있다.

제31조 (리행보증금의 지불의무)

협상,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차한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리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할수 있다.

제32조 (토지임대료의 미납에 대한 연체료)

토지임대기관은 임차자가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부터 매일 미납금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 50일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33조 (토지사용료의 지불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해당 재정기관에 토지사용료를 해마다 물어야 한다.

장려대상에 대하여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낮추어주거나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제34조 (토지리용권의 반환가 잔존가치보상)

토지리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부작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임대기간이 40년이상인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줄수 있다.

제35조 (토지리용권등록취소수속)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리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권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토지임대기간의 연장)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리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7조 (임차한 토지의 반환비용과 정리)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 시설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8조 (토지리용권의 취소)

토지리용권은 임대기간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기간안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6개월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고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하여준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 (벌금, 회수, 원상복구, 계약무효)

토지리용증이 없이 토지를 리용하였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토지리용권

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저당계약을 취소시킨다.

제40조 (토지리용권의 취소)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총투자액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취소할수 있다.

제41조 (신소와 그 처리)

토지임차자는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일안에 제재를 준 기관이 상급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분쟁해결)

토지임대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주체73(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주체83(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3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합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합영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합영의 당사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합영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합영기업은 생산부문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 (합영부문과 장려대상)

합영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정보산업, 과학기술, 경공업, 농업, 립업, 수산업, 건설 건재공업, 교통운수,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서 할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의 도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같은 대상의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 (합영의 금지, 제한대상)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자연부원을 수출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실리가 적은 대상, 식당, 상점 같은 봉사업대상의 합영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5조 (합영기업의 소유권과 독자성, 채무에 대한 책임)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합영기업은 경영활동과정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등록자본으로 책임진다.

제6조 (합영기업의 법인자격)

합영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합영기업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제7조 (합영기업에 대한 우대)

국가는 장려대상의 합영기업, 해외동포와 하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하도록 한다.

제8조 (법의 적용)

합영기업의 창설, 운영, 해산 및 청산은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 (합영기업의 창설신청, 승인)

합영기업을 창설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고 투자관리기관에 합영계약서사본, 합영기업의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받은 당사자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 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등록, 세관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11조 (출자몫, 출자재산과 재산권)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토지리용권, 자원개발권 같은 재산권으로 출자할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재산 또는 재산권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출자몫의 양도)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합영상대방의 동의와 투자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합영기업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제14조 (출자기간, 지적재산권의 출자)

합영당사자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같은 지적재산권의 출자는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수 없다.

제15조 (등록자본)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30~50%이상 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인 경우 해당 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수 없다.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리사회와 그 지위)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리사회의 권능)

합영기업의 리사회에서는 규약의 수정보충, 기업의 발전대책, 등록자본의 증가, 경영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기업의 해산 같은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의 관리성원)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회계원을 두며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의 재정검열원)

합영기업에는 그 기업의 관리일군이 아닌 성원으로 재정검열원을 둔다.

재정검열원은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의 관리운영기준)

합영기업은 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의 조업기간)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조업할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업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조업기일을 연장한 기업에는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제22조 (합영기업의 영업허가, 조업일)

합영기업은 정해진 조업예정일안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을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제23조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합영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우리 나라에서 원료, 자재,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해당 계획을 내야 한다.

제24조 (관세의 부과)

합영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25조 (합영기업의 업종)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로력채용)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27조 (로력의 관리)

합영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법규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의 돈자리)

합영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 (자금의 대부)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교환한 조선원은 정해진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0조 (재정관리와 회계계산)

합영기업은 재정관리와 회계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의 보험가입)

합영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보험회사에 든다.

제32조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보장)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합영 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방법)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 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운을 확정하며 그 리운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리운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예비기금의 적립)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운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산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제36조 (기금의 종류와 조성)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37조 (리운의 분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운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세금의 납부 및 감면)

합영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합영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39조 (기업손실의 보상)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하여 4년을 넘길수 없다.

제40조 (회계결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결산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낸다.

제41조 (리윤의 재투자)

외국측 투자가는 합영기업에서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나라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을수 있다.

제42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합영기업의 외국측 투자가는 분배받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받은 자금을 제한 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영기업의 해산사유)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리행, 지속적인 경영손실,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의 만기전 해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결정하고 투자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수 있다. 이 경우 청산 위원회는 리사회가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5조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6조 (분쟁해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

제1조 (합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합작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합작의 당사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합작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합작기업은 생산부문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 (합작의 장려부문)

국가는 첨단기술이나 현대적인 설비를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합작을 장려한다.

제4조 (합작의 금지, 제한대상)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자연부원을 수출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실리가 적은 대상, 식당, 상점 같은 봉사업대상의 합작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5조 (합작투자에 대한 우대)

국가는 장려대상의 합작기업, 해외동포와 하는 합작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 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과 같은 우대를 하도록 한다.

제6조 (합작기업의 창설신청, 승인)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당사자는 합작계약을 맺고 투자관리기관에 합작계약서 사본, 합작기업의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 (합작기업의 등록)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받은 당사자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등록, 세관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8조 (영업허가와 조업일)

합작기업은 정해진 조업예정일안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을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제9조 (합작기업의 업종)

합작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출자몫의 양도)

합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합작상대방의 동의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로력의 채용)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12조 (관세의 부과)

합작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3조 (보험가입)

합작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보험회사에 든다.

제14조 (투자의 상황과 리윤분배)

합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상황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리윤분배는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의 우선적리용)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수 있다.

제16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합작기업의 외국측 투자가는 분배받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받은 자금을 제한 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17조 (공동협의기구)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로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재투자 같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8조 (회계결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결산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낸다.

제19조 (세금납부)

합작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합작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20조 (합작기업의 해산)

합작당사자들은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상의무불리행, 지속적인 경영손실, 자연재해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로 합의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수 있다.

합작기업의 해산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허물없는 당사자가 된다.

제21조 (청산위원회의 조직)

합작당사자들은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한다.

제22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연장)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23조 (분쟁해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주체100(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6호로 채택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제1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은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경제지대의 지위와 위치)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는 평안북도의 황금평지구와 위화도지구가 속한다.

제3조 (경제지대의 개발과 산업구성)

경제지대의 개발은 지구별, 단계별로 한다.

황금평지구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하며 위화도지구는 위화도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한다.

제4조 (투자당사자)

경제지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우리 나라 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경제지대에 투자할수 있다.

제5조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투자가는 경제지대에서 회사,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 같은 분야에서 투자가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지대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7조 (경제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관여금지원칙)

경제지대의 관리운영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관리위원회가 맡아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제8조 (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제지대에서 투자가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된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에게 통지하고 해당 법적절차를 거치며 차별없이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하고 효과있게 보상하여주도록 한다.

제9조 (신변안전과 인권의 보장, 비법구속과 체포금지)

경제지대에서 공민의 신변안전과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 (적용법규)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을 적용한다.

경제지대의 법규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하며 경제지대밖에 적용하는 법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경제지대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경제지대의 개발

제11조 (경제지대의 개발원칙)

경제지대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우세보장
2. 토지,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리용
3. 경제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보호
4.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제고
5. 무역, 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편의보장
6. 사회공공의 리익보장

7.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보장

제12조 (경제지대의 개발계획의 그 변경)

경제지대의 개발은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개발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13조 (경제지대의 개발방식)

경제지대에서 황금평지구는 개발기업이 전체 면적의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위화도지구는 개발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방식으로 개발한다.

제14조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개발기업에게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발기업의 위임, 개발사업권승인증서의 발급신청은 관리위원회가 한다.

제15조 (토지임대차계약)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받은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과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개발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준다.

제16조 (토지임대기간)

경제지대에서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로 한다.

지대안의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제1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철거, 이설을 맡은 기관, 기업소는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지역안의 공공건물과 살림 집, 부착물 같은 것을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18조 (개발공사의 착수시점)

개발기업은 개발구역안의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제19조 (하부구조시설 및 공공시설건설)

경제지대의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은 개발기업이 하며 그에 대한 특별허가경영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은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건설할수 있다.

제20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및 임대가격)

개발기업은 개발계획과 하부구조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개발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 임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양도, 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21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과 그 등록)

경제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안에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을 하고 토지리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3장 경제지대의 관리

제22조 (경제지대의 관리원칙)

경제지대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관리위원회와 기업의 독자성보장
3. 무역과 투자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경제발전의 객관적법칙과 시장원리의 준수
5. 국제관례의 참고

제23조 (관리위원회의 설립, 지위)

경제지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대에 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

관리위원회는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이다.

제24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석장과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에는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25조 (관리위원회의 책임자)

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주관한다.

제26조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5.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6.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7. 경제지대의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수립
8.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9.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10.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11.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12. 경제지대의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3.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
14. 관리위원회의 규약작성
15. 이밖에 경제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27조 (기업책임자회의의 소집)

관리위원회는 기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기업책임자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한다.

제28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29조 (평안북도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평안북도인민위원회는 경제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지대법과 규정의 시행세칙작성
2. 경제지대개발과 관리,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보장
3. 이밖에 경제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제30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지대의 발전전략작성
2. 경제지대의 개발, 건설과 관련한 국내기관들과의 사업연계
3.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연계
4. 기업창설심의기준의 승인
5. 경제지대에 투자할 국내기업의 선정
6. 경제지대생산품의 지대밖 국내판매협조

제31조 (사업계획과 통계자료의 제출)

관리위원회는 해마다 사업계획과 경제지대의 통계자료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평안

북도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제32조 (기업의 창설신청)

경제지대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 (기업의 등록,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은 우리 나라 법인으로 한다.

제34조 (기업의 권리)

경제지대에서 기업은 규약에 따라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리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은 할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리윤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지을수 없다.

제35조 (기업의 업종과 그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로력의 채용)

기업은 우리 나라의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월로임최저기준)

경제지대의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 (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업과의 거래)

기업은 계약을 맺고 경제지대밖의 우리 나라 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수 있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39조 (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지대에서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과 봉사가격, 경제지대안의 기업과 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식량, 기초식품 같은 중요 대중필수품의 가격과 공공봉사료금은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기업에 생긴 손해에 대한 재정적보상을 한다.

제40조 (기업의 돈자리)

기업은 경제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 나라 령역밖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지대에 은행 또는 은행지점을 설립하는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보험가입과 보험기구의 설립)

경제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은 우리 나라 령역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며 의무보험은 정해진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경제지대에서 투자가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지사, 사무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제42조 (기업의 회계)

경제지대에서는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하도록 한다.

제43조 (기업의 세금납부의무와 기업소득세를)

경제지대에서 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44조 (지사, 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경제지대에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사, 사무소는 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날부터 정해진 기일안에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45조 (심의, 승인절차의 간소화)

경제지대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처리방법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제46조 (류통화폐와 결제화폐)

경제지대에서는 정해진 화폐를 류통시킨다.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

경제지대에서 외화교환, 환율과 관련한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외화, 리운, 재산의 반출입)

경제지대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운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지대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경제지대에 들어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없이 경제지대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48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경제지대에서 지적재산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관리위원회는 경제지대에서 지적재산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49조 (원산지관리)

경제지대에서 원산지관리사업은 원산지관리기관이 한다.

원산지관리기관은 상품의 원산지관리사업을 경제지대법규와 국제관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0조 (특별허가경영권)

경제지대에서는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하여 특별허가대상으로 경영하게할수 있다.

특별허가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그것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거나 나누어주려 할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경제지대상품의 구입)

경제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맺고 경제지대의 기업이 생산하였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할수 있다.

제52조 (계약의 중시와 리행)

기업은 계약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며 계약을 성실하게 리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 (경영과 관련한 봉사)

경제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은행, 보험, 회계, 법률, 계량 같은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할수 있다.

제54조 (광고사업과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경제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광고업과 광고를 할수 있다.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5조 (건설기준과 기술규범)

경제지대에서의 건설설계와 시공에는 선진적인 다른 나라의 설계기준, 발전시키도록 한다.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경제지대에서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56조 (관광업)

경제지대에서는 자연풍치, 민속문화 같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경제지대에서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57조 (통신수단의 리용)

경제지대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제58조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지대의 개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 (유가증권거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경제지대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6장 장려 및 특혜

제60조 (투자방식)

투자가는 경제지대에 직접투자나 간접투자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할수 있다.

제61조 (수출입의 장려)

기업은 경제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상품거래, 기술무역, 봉사무역을 할수 있으며 수출입대리업무도 할수 있다.

제62조 (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지대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정해진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 하여준다.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다.

제63조 (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지대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64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반환)

경제지대에서 리운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65조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66조 (특별허가대상경영자에 대한 특혜)

관리위원회는 특별허가대상의 경영자에게 특혜를 주어 그가 합리적인 리운을 얻도록 한다.

제67조 (경제지대의 출입)

경제지대로 출입하는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경제지대로 출입하는 질서, 경제지대에서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68조 (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

경제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지대에 들어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경제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그밖에 정해진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9조 (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지대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은 반출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반출입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70조 (교육, 문화, 의료, 체육 등의 편리제공)

경제지대에서는 거주자, 체류자에게 교육, 문화, 의료, 체육 같은 분야의 편리를 보장한다.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71조 (신소와 그 처리)

기업 또는 개인은 관리위원회,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제72조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분쟁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73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경제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중재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74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경제지대의 관할재판소 또는 경제지대에 설치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경제지대에서의 행정소송절차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법의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의 해석권)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가 한다.



법령색인

색인

가격법	上602	교원법	下664
가공무역법	下966	교육강령집행법	下672
가족법	上204	교육법	下678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上80	구타행위방지법	上211
간석지법	下172	국가예산수입법	下374
갑문법	下179	국경동식물검역법	上1182
개성공업지구법	下954	국경위생검역법	上1188
건설감독법	下34	국경통과지점관리법	上1193
건설법	下40	국기법	上92
건설설계법	下52	국장법	上101
검찰감시법	上440	국적법	上105
경제개발구법	下972	국제상품전람회법	下987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下982	국제철도화물수송법	下991
계량법	上1172	국토계획법	上606
고등교육법	下654	국토환경보호단속법	下194
공무원자격판정법	上126	군중신고법	上455
공민등록법	上446	귀금속관리법	上724
공업도안법	下484	규격법	上1201
공원, 유원지관리법	下186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下997
공인법	上130	금속공업법	上728
공중위생법	下778	금수산태양궁전법	上134
공증법	上449	금연법	下782
과수법	上1046	기계공업법	上736
과학기술법	下491	기구법	上140
과학기술성과과도입법	下503	기밀법	上146
광천법	上718	기상법	下511

기상수문법	下517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下693
기술수출입법	下1004	무역법	下1044
기업소법	上612	무역집배용선증개법	上874
내화물관리법	上745	무역화물검수법	上1207
녀성권리보장법	下874	문헌법	上159
년로자보호법	下882	문화유산보호법	下701
농약법	上1052	물자소비기준법	上646
농업법	上1058	물자원법	下224
농작물종자관리법	上1070	민법	上230
농장법	上1077	민사소송법	上264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上868	민용항공법	上879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上151	민족유산보호법	下710
담배통제법	下787	바다오염방지법	下230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上71	발견법	下391
대기오염방지법	下197	발명법	下524
대동강오염방지법	下205	방사성오염방지법	下240
대외결제법	下1008	방송법	下535
대외경제계약법	下1012	방송시설법	下543
대외경제중재법	下1018	배길표식법	上894
대외민사관계법	上215	배등록법	上899
대응조치법	下1030	배안전법	上905
도로교통법	上461	법제정법	上163
도로법	下217	변호사법	上482
도서관법	下685	보통강오염방지법	下249
도시경영법	下62	보통교육법	下722
도시계획법	上622	보험법	下393
도시미화법	下72	부동산관리법	上653
독성물질취급법	上474	부림소관리법	上1096
라선경제무역지대법	下1032	북남경제협력법	下961
량정법	下79	비상방역법	下807
령수증법	下386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下889
로동보호법	上629	사회주의로동법	上660
로동정량법	上641	사회주의상업법	下88
림업법	上1089	사회주의재산관리법	上670
마약관리법	下793	사회주의헌법	上32
마약범죄방지법	上224	산림법	下260

산업미술법	下731	연유법	上773
살림집법	下102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下273
상속법	上304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上1221
상수도법	下114	외국인기업법	下1085
상업은행법	下405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下1089
상업회의소법	下1053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下1096
상표법	下549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下1102
상품식별부호관리법	下413	외국인투자법	下1111
상품식별부호법	上121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下1115
석탄법	上752	외국투자기업등록법	下1126
선원법	上914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下1131
설비관리법	上677	외국투자기업회계법	下1138
세관법	下1056	외국투자은행법	下1147
세외부담방지법	上312	외화관리법	下417
소금법	上1104	우주개발법	下572
소방법	上487	원격교육법	下748
손해보상법	上317	원림법	下142
수로법	上923	원산지명법	下575
수산업	上1113	원자력법	上781
수의방역법	上1120	유기산업법	下581
수의약품관리법	上1128	유색금속법	上788
수입물자소득법	下825	유용동물보호법	下281
수출입상품검사법	上1216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下587
수출품원산지법	下1071	육아법	下913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下121	의료법	下839
시, 군발전법	下127	의약품관리법	下846
식품위생법	下828	이동통신법	下596
신소청원법	上174	인민경제계획법	上685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下1075	인민보건법	下853
소프트웨어보호법	下557	인민보안단속법	上496
소프트웨어산업법	下564	인민보안법	上504
아동권리보장법	下905	인삼법	上1140
약초법	下832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下423
양어법	上1133	자동차운수법	上931
어린이보육교양법	下739	자연보호구법	下285
에네르기관리법	上766	자재관리법	上696

작물유전자원관리법	上1148	지하철도법	上938
잠업법	上1154	철도법	上946
장애자보호법	下923	철도차량법	上959
재산집행법	上702	철도화물수송법	上966
재생에너르기법	上795	청년교양보장법	下755
재자원화법	下292	체신법	下626
재정법	下433	체육법	下763
재판소구성법	上509	체육시설법	下771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下299	총기류관리법	上533
저작권법	下602	축산법	上1162
적십자회법	下931	출입국법	下1170
전기통신법	下610	출판법	下635
전력법	上802	컴퓨터망관리법	下640
전염병예방법	下860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下647
전자결제법	下442	토지법	下321
전자인증법	下615	토지임대법	下1179
전파관리법	下621	통계법	上712
정보보안법	上512	판결, 판정 집행법	上539
정보식별부호관리법	下446	폐기폐설물취급법	下331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下935	편의봉사법	下155
제품생산허가법	上1227	평양시관리법	上185
조선로동당 규약	上54	폭발물처리법	上546
조약법	下1154	품질감독법	上1233
종합무역장관리법	下1158	하수도법	下162
종합설비수입법	下1163	하천법	下337
주물품협동생산법	上818	합영법	下1186
주민연료법	下148	합작법	下1193
주민행정법	上180	항만법	上974
중소탄광법	上822	항무감독법	上985
중소형발전소법	上831	해사감독법	上996
중앙은행법	下450	해사소송관계법	上325
중재법	上521	해상침수송법	上1017
지방예산법	下456	해상탐색 및 구조법	下343
지방주권기관법	上108	해외동포권익옹호법	下941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下313	해운법	上1029
지하자원법	上838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上114

행정검열법	上193
행정구역법	上198
행정처벌법	上550
허풍방지법	上1241
혁명사적사업법	上117
형민사감정법	上335
형법	上339
형법부칙(일반범죄)	上381
형사소송법	上383
화약류취급법	上593
화장법	下168
화폐류통법	下463
화학공업법	上849
환경보호법	下353
환경영향평가법	下368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下1197
회계검증법	下469
회계법	下476
흑색금속법	上858

